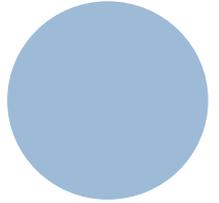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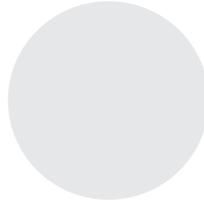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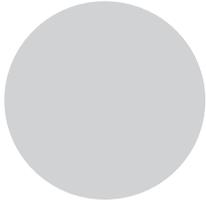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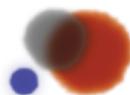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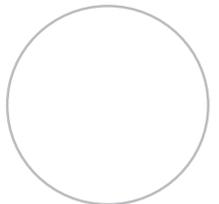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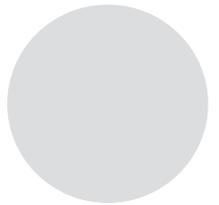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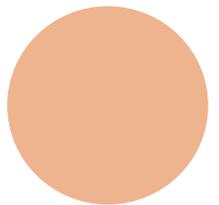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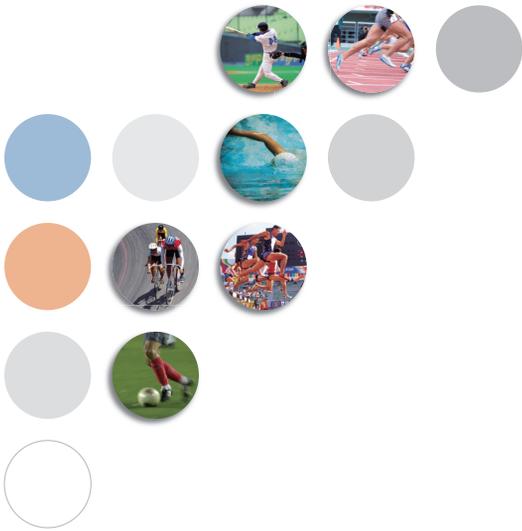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Sport White Paper

체육백서





2012 Sport White Paper 체육백서

발간사 Preface

지난 8월 22일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는 250여 명의 국민이 모인 가운데 ‘스포츠비전 2018 현장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향후 5년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스포츠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자리였는데, 객석을 가득 메운 토론의 열기를 통해 국민들이 스포츠에 가지는 관심과 애정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스포츠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는 100세 시대 국민의 건강수명과 행복증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소프트 파워로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전략산업인 스포츠산업은 경제 규모를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개인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 이러한 가능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2 체육백서’는 2012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체육 정책의 현황과 성과들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체육, 스포츠산업 등 분야별 정책 내용을 포괄하는 한편, 체육시설과 전문

인력, 체육관련 조직 및 단체, 재원, 법제 등 제도적 기반도 정리했습니다.

‘2012 체육백서’는 지난 정책의 정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정부 정책의 기본 틀이기도 합니다.

모든 정부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으며,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내년도 체육백서에 담길 정책 내용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2012 체육백서’가 국민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백서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9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유진룡

목 차 Contents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001
	// 제1절 체육정책의 변천	002
	// 제2절 체육행정 조직 및 단체	013
	// 제3절 체육진흥재원	078
	// 제4절 체육관련 법제	101
02	생활체육	115
	// 제1절 개관	116
	// 제2절 생활체육 참여 실태 분석	122
	// 제3절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제공	138
	// 제4절 동호인클럽 육성 및 활동 지원	146
	// 제5절 직장체육활동 육성	154
	// 제6절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	156
	// 제7절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159
	// 제8절 생활체육 홍보	163
// 제9절 세계한민족축전	169	
03	학교체육	171
	// 제1절 개관	172
	// 제2절 현황	174
	// 제3절 일반학생 지원사업	188
	// 제4절 학생선수 지원사업	197
// 제5절 학교체육 시설 인프라 확충	206	

04

전문체육 209

- // 제1절 개관 210
- // 제2절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211
- // 제3절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내대회 운영 및 훈련시설 확충 234

05

국제체육 249

- // 제1절 국제체육계 동향 251
- // 제2절 우리나라의 국제스포츠역량 269
- // 제3절 국제교류 현황 280

06

장애인체육 299

- // 제1절 개관 300
- // 제2절 장애인체육 조직 및 재정 303
- // 제3절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 316

07

스포츠산업 343

- // 제1절 개관 344
- // 제2절 스포츠소비 현황 359
- // 제3절 스포츠산업 현황 364
- // 제4절 프로스포츠산업 현황 383
- // 제5절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 390

08

체육시설	427
// 제1절 개관	428
// 제2절 체육시설 조성정책	434
// 제3절 공공체육시설 지원 현황	441
// 제4절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및 관리·운영 효율화	456

09

체육전문인력	463
// 제1절 개관	464
// 제2절 체육전문인력 현황	466
// 제3절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	487

10

스포츠윤리	501
// 제1절 개관	502
// 제2절 (성)폭력	504
// 제3절 승부조작	509
// 제4절 불공정스포츠	512

11

남북체육교류	515
// 제1절 개관	516
// 제2절 남북체육교류협력의 정책 환경	520
// 제3절 남북체육교류협력 사업 현황	525

표목차

Table of Contents

표 1-1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의 주요사업	005	표 1-38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 총괄표	089
표 1-2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006	표 1-38-1	광역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 총괄표	090
표 1-3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008	표 1-38-2	기초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 총괄표	090
표 1-4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009	표 1-38-3	기초자치단체별 분야별 체육예산	091
표 1-5	이명박 정부 문화비전 2008-2012의 체육부분 주요 정책과제	011	표 1-39	기금조성 내역	097
표 1-6	박근혜 정부 주요 국정과제	012	표 1-40	기금지원 실적	098
표 1-7	체육조직기구의 변천 요약	016	표 1-41	스포츠산업융자실적	099
표 1-8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체육행정조직과 인력	019			
표 1-8-1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체육행정조직과 인력	020	표 2-1	주2회 이상 규칙적 생활체육활동 참여율 변화	117
표 1-9	지방 체육단체 운영 현황	028	표 2-2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수의 변화	118
표 1-9-1	광역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운영실태	029	표 2-3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 결성 현황	119
표 1-9-2	기초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운영실태	031	표 2-4	등록·신고체육시설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120
표 1-10	역대 대한체육회(KOC) 회장	049	표 2-5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여부 및 빈도 연도별 비교	123
표 1-11	우리나라 역대 IOC위원	050	표 2-6	연령별 주 2~3회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연도별 비교	123
표 1-12	시·도 체육회 현황	051	표 2-7	참여종목 연도별 비교표	124
표 1-13	대한체육회 재외한인체육단체 현황	051	표 2-8	1회 평균 체육활동 참여시간 연도별 비교	125
표 1-14	대한체육회 기맹경기단체 현황	054	표 2-9	평균 체육활동 참여기간 연도별 비교	125
표 1-15	대한체육회 연도별 예산 현황	055	표 2-10	연도별 참여 시간대 연도별 비교	126
표 1-16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및 기맹경기단체의 자체수입 비율	056	표 2-11	참여종목별 참여 장소	127
표 1-17	국민체육진흥공단 인력 현황	058	표 2-12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에 대한 연도별 비교	128
표 1-18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정자산	058	표 2-13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 연도별 비교	130
표 1-19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인회계 예산	059	표 2-14	규칙적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의 연도별 비교	132
표 1-20	2012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060	표 2-15	희망 운동종목의 연도별 비교	133
표 1-21	시·도생활체육회 현황	064	표 2-16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134
표 1-22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 현황	065	표 2-17	관람 종목의 연도별 비교	136
표 1-23	연도별 예산 현황	067	표 2-18	경기관람 빈도의 연도별 비교	136
표 1-24	회원단체 예산과 자체수입 비율	067	표 2-19	경기관람을 못하는 이유 연도별 비교	137
표 1-25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정원·현원표	069	표 2-20	시·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수	138
표 1-26	연도별 도핑검사 현황	070	표 2-21	생활체육광장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140
표 1-27	연도별 교육인원 현황	070	표 2-22	국민체력100 사업 추진경과	141
표 1-28	연도별 홍보물 배포 현황	071	표 2-23	국민체력인증 시범사업의 체력측정 요인, 측정항목, 측정방법	142
표 1-29	WADA 및 IF와 도핑검사 위탁대행 MOU 체결 추진	071	표 2-24	국민체력100 사업의 인증단계 및 수상기준	142
표 1-30	연도별 소재지정보 검사 현황	071	표 2-25	2012년 지역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참가 현황	144
표 1-31	연도별 예산 현황(한국도핑방지위원회)	072	표 2-26	서울시 생활체육프로그램 참가 현황	145
표 1-32	연도별 예산 현황(체육인재육성재단)	074	표 2-27	대전시 생활체육프로그램 참가 현황	145
표 1-33	연도별 예산 현황(태권도진흥재단)	077	표 2-28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 사업추진 실적	148
표 1-34	체육진흥재원의 구성	078	표 2-29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현황	148
표 1-35	분야별 국고 예산 현황	079	표 2-30	전국 어르신생활체육대회 현황	149
표 1-36	정부예산대비 체육예산 현황	080	표 2-31	동호인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실적	150
표 1-37	지방자치단체 체육예산 총괄표	081	표 2-32	시·도 종목별대회 지원 실적	150
표 1-37-1	광역자치단체 체육예산	082	표 2-33	인구 대비 동호인클럽 현황	151
표 1-37-2	기초자치단체 체육예산	082	표 2-34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 현황	151
표 1-37-3	기초자치단체별 체육예산	083			

표 2-35	스포츠클럽리거제 지원 실적	153	표 3-23	2012년 급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현황	192
표 2-36	2012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실적	155	표 3-24	2012년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현황	192
표 2-37	소외계층 응구지원 추진 실적	156	표 3-25	2012년 종목별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현황	196
표 2-38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지원 실적	158	표 3-26	최저학력기준의 단계별 적용 계획	199
표 2-39	체육지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160	표 3-27	연도별 최저학력기준미달률 조사 결과	199
표 2-40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160	표 3-28	연도별 초·중·고 축구리그 참여팀 수 현황	200
표 2-41	시·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	161	표 3-29	2012년도 고등학교 야구 주말리그 참여팀의 리그별 구성	201
표 2-42	2012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실적	162	표 3-30	2012년도 시도별 학생선수 기초학력 프로그램 실시현황	202
표 2-43	스포츠 7330 정책 추진 경과	166	표 3-31	2012년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지원내역	204
표 2-44	스포츠 7330 단계별 목표와 내용	166	표 3-32	2009~2012년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성과	206
표 2-45	스포츠 7330 대중언론매체 캠페인실적	167	표 3-33	2003~2012년도 부문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의 성과	207
표 2-46	범국민생활체육캠페인 추진실적	168	표 3-34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의 예산소요	208
표 2-47	스포츠7330(구, 국민생활체육지) 발간 연도별 추진실적	168	표 3-35	연도별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 현황	208
표 2-48	세계한민족축전 개최 특징	170			
표 2-49	세계한민족축전 개최 현황	170			
표 3-1	정부 내 학교체육 담당 부서의 변천	173	표 4-1	체육영재 육성현황	211
표 3-2	초·중·고등학교 체육과목 및 시간의 변천	174	표 4-2	학생선수 통합지원센터 현황	212
표 3-3	2012년 중학교 체육수업 운영 변화	175	표 4-3	신인선수(꿈나무) 육성사업 추진 현황	213
표 3-4	2012년 중고등학교 체육교원 현황 1(성별)	177	표 4-4	2012년 종목별·세부종목별 꿈나무선수 선발 현황 (2012 대한체육회 내부자료)	215
표 3-5	2012년 중고등학교 체육교원 현황 2(설립별)	177	표 4-5	2012년 세부종목별 꿈나무선수 합숙훈련 현황 (2012 대한체육회 내부자료)	216
표 3-6	2012년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현황	177	표 4-6	2012년 청소년대표선수 선발육성 및 선발기준 현황	218
표 3-7	2012년 학교체육시설 현황	179	표 4-7	2012년 청소년대표선수 동·하계 합숙훈련 지원내용	220
표 3-8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의 연도별 목표 및 소요예산	180	표 4-8	2012년 청소년대표선수 국외전지훈련 현황 (대한체육회 내부자료)	221
표 3-9	연도별 학생신체능력검사 결과	181	표 4-9	후보 선수 발굴 및 최종선발 인원 수	222
표 3-10	2012년도 초등학생 건강체력평가 결과	181	표 4-10	국가대표선수 중 후보 선수 출신비율	222
표 3-11	초등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의 연도별 비교 (2009~2012)	182	표 4-11	2012년 후보선수 훈련종목과 정원 (대한체육회 내부자료)	224
표 3-12	2012년 중학생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182	표 4-12	2012년 후보선수의 훈련육성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지원 내역	225
표 3-13	중학생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의 연도별 비교 (2010~2012)	183	표 4-13	2012년 전임지도자 종목과 정원	226
표 3-14	2012년 고등학생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183	표 4-14	2012년 국가대표선수 훈련규모(대한체육회 내부자료)	227
표 3-15	고등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의 연도별 비교 (2011~2012)	184	표 4-15	연도별 국가대표선수 훈련규모(대한체육회 내부자료)	227
표 3-16	2012년 건강체력 우려학생 현황	184	표 4-16	국가대표선수 훈련인원(대한체육회 내부자료)	228
표 3-17	연도별 학교운동부 현황 비교(2011~2012)	185	표 4-17	국가대표선수 세부 훈련종목	229
표 3-18	연도별 학교운동부 지도자 현황 비교 (2011~2012)	186	표 4-18	연도별 국가대표 국외전지훈련 및 지원 현황	230
표 3-19	2012년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현황	186	표 4-19	외국인코치 초청 현황(대한체육회 내부자료)	231
표 3-20	연도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대표선수 보유현황 비교	187	표 4-20	연도별 지도자 해외연수사업(국외정보수집) 현황(대한체육회)	231
표 3-21	2012년 시도 교육청별 스포츠강사 배치인원 및 인건비 소요예산	190			
표 3-22	2012년 시도 교육청별 토요스포츠강사 배치인원 및 인건비 소요예산	191			

표 4-21	국가대표선수·코치 훈련여건 개선 현황 (대한체육회 내부자료)	233	표 5-32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성적	282
표 4-22	연도별 전국체육대회 개최 현황	236	표 5-33	역대 아시아비치경기대회 참가현황 및 경기성적	283
표 4-23	연도별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 현황	237	표 5-34	아시아비치경기대회의 각국 메달 획득	284
표 4-24	연도별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현황	239	표 5-35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성적	284
표 4-25	국가대표 선수촌 시설 현황	244	표 5-36	하계올림픽대회 개최 및 한국의 참가 현황	286
표 4-26	국가대표 선수촌 훈련시설 연도별 투자 현황	245	표 5-37	제30회 런던하계올림픽대회 참가 국가별 메달획득 현황	287
표 4-27	국가대표 선수촌 연도별 시설 확충 현황	246	표 5-38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성적	288
표 4-28	진천선수촌 시설현황	247	표 5-39	2012년도 올림픽제패기금 지원 사업	290
표 4-29	진천선수촌 조성 연도별 추진 현황	248	표 5-40	2012년도 국내에서 개최된 종목별 국제대회 지원 사업(33건)	290
표 5-1	주요 국제체육기구 및 단체 현황	252	표 5-41	2012년도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및 국제대회 파견	291
표 5-2	IOC 위원 국가별 배출 인원수 현황	252	표 5-42	2012년도 친선경기대회 초청 및 파견사업(32건)	293
표 5-3	IOC 위원 대륙별 배출 인원수 현황	253	표 5-43	2012년도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사업	294
표 5-4	올림픽 정식 종목 국제경기연맹의 회장국적	253	표 5-44	2012년도 국가간 체육교류 후속지원사업	295
표 5-5	올림픽 정식종목 국제경기연맹 회장의 대륙별· 국가별 분포	255	표 5-45	2012년도 국제스포츠기구 파견사업(8건)	295
표 5-6	올림픽 정식 종목 국제경기연맹 본부 소재지	256	표 5-46	2012년도 국제스포츠인재 회의 파견사업(2건)	296
표 5-7	각종 국제기구 위원회 활동 한국인 연도별 위원 수	256	표 5-47	2012년도 국제기구 파견·초청 및 올림픽운동 증진사업(22건)	296
표 5-8	WADA Foundation Board 구성	258	표 5-48	국제연맹총회 초청 및 파견 사업(58건)	297
표 5-9	WADA 금지약물 목록	260	표 5-49	바둑의 중주국화 사업	298
표 5-10	도핑컨트롤센터 연도별 시료 현황	262	표 6-1	체육구조별 정부 및 민간조직	301
표 5-11	도핑방지컨트롤센터 연도별 양성건수	263	표 6-2	국내 장애인체육 발전과정	304
표 5-12	도핑방지교육 연도별 교육인원 현황	264	표 6-3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주요 임무(기능)	305
표 5-13	연도별 홍보물 배포 현황	264	표 6-4	시·도 장애인체육회 현황	307
표 5-14	하계올림픽 방송권 및 방송한 국가의 수	267	표 6-5	대한장애인체육회 기맹경기단체 현황(308
표 5-15	올림픽 공식후원업체의 기별 올림픽 후원금액	268	표 6-6	시·도별 기맹경기단체 등록 선수 현황	310
표 5-16	올림픽조직위원회 후원업체의 기별 후원금액	268	표 6-7	장애유형별 기맹경기단체 등록 선수 현황	313
표 5-17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2003~2007)의 국제스포츠정책	269	표 6-8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314
표 5-18	문화비전(2008~2012)의 국제스포츠정책	270	표 6-9	장애인체육 예산의 연도별 증가추세	315
표 5-19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주요 업무	270	표 6-10	2012년 및 2013년도 장애인체육 예산내역	315
표 5-20	대한체육회 국제교류팀과 국제경기팀의 주요업무	271	표 6-11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의 연도별 증가추세	317
표 5-21	체육교류협정 체결 현황	273	표 6-12	장애인생활체육 사업영역 및 사업실적 현황 ('12. 12월 대한장애인체육회)	317
표 5-22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방안	275	표 6-13	특수체육 관련학과 현황	319
표 5-23	국제스포츠인력 강화 방안	275	표 6-14	2012년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321
표 5-24	국제스포츠인력 양성사업 운영실적	276	표 6-15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예정 현황	323
표 5-25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활동 현황	277	표 6-16	연도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 (2000년 순회개최 이후)	323
표 5-26	IOC 산하 분과위원회(commissions) 위원 진출 현황	277	표 6-17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최 현황	324
표 5-27	국제경기연맹 임원 진출 현황	278	표 6-18	2012년도 장애인선수 훈련지원	325
표 5-28	아시아경기연맹 임원 진출 현황	278	표 6-19	2012년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 현황	325
표 5-29	국제체육기구 임원 진출 현황(IOC 제외)	279	표 6-20	경기력향상연구연금(2005년 이전 명칭:장애인선수 연금) 지급 현황	326
표 5-30	2012년도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현황	280			
표 5-31	국가별 메달획득 및 종합성적 현황	281			

표 6-21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외 체육인복지사업 지급 현황	327	표 7-25	스포츠신문 매출 현황	381
표 6-22	장애인체육 실업팀 현황	328	표 7-26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상품별 구성비	381
표 6-23	이천장애인체육종합체육시설 건립 및 2단계 계획	329	표 7-27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	382
표 6-24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의 종목별 공간사용계획 (14개 종목 활용)	329	표 7-28	주요 프로스포츠 관중 추이	384
표 6-25	2007 제 1회 장애인청소년체육대회 개최 현황	330	표 7-29	주요 프로스포츠 경기 수 및 경기당 평균 관중 수	384
표 6-26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개최 현황	331	표 7-30	주요 프로스포츠 수용규모 및 좌석점유율	385
표 6-27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가입 현황	332	표 7-31	프로단체 현황	385
표 6-28	하계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현황 및 한국 참가성적	334	표 7-32	체육과학연구원의 스포츠산업 연구 조직구조 변화	394
표 6-29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현황 및 한국 참가성적	335	표 7-33	스포츠용품 인증제도를 위한 투자실적	396
표 6-30	역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현황	336	표 7-34	인증 시험·검사장비 도입 현황	397
표 6-31	2012년도 국제대회 국내개최 및 국제대회 참가 현황	336	표 7-35	2012 서울국제스포츠박람회 전시규모 현황	400
표 6-32	역대 농아인올림픽대회(하계) 개최 및 참가 현황	338	표 7-36	지역별 해외 바이어 참가비율(34개국)	400
표 6-33	스페셜올림픽 하계대회 개최 및 참가 현황	340	표 7-37	품목별 참가비율	400
표 6-34	스페셜올림픽 동계대회 개최 및 참가 현황	340	표 7-38	상담 및 계약실적	400
표 6-35	2013 장애인체육 우수지도자 아카데미	341	표 7-39	생산장려 체육용구 지정 현황	403
표 6-36	2012년도 국제심판·등급분류사 양성사업 현황	341	표 7-40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현황	406
표 7-1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항목	348	표 7-41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기금용자 사업개요	409
표 7-2	국내 인터넷 사용자 추이	355	표 7-42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기금용자 현황	410
표 7-3	운동용구 수출입 현황	357	표 7-43	체육시설업체 기금용자 기준	411
표 7-4	도시가구 스포츠용품 및 서비스 품목별 소비	362	표 7-44	체육시설업체 기금용자 현황	412
표 7-5	교양오락비와 스포츠소비	363	표 7-45	연도별 스포츠시설업 관련 규제 개선 현황	415
표 7-6	2011년 기준 스포츠산업 전체 현황	364	표 7-46	스포츠서비스업 기금용자 기준	417
표 7-7	스포츠산업 내 사업체수 현황	365	표 7-47	스포츠서비스업 기금용자 현황	418
표 7-8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	366	표 7-48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 현황	420
표 7-9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종사자 수	367	표 7-49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 과제 현황	420
표 7-10	부문별 고용 현황	368	표 7-50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현황	424
표 7-11	GDP대비 스포츠산업규모 비율	369	표 8-1	운동종목별·시설형태별 체육시설의 종류	429
표 7-12	연도별 스포츠산업 규모	369	표 8-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430
표 7-13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유발계수 추이	370	표 8-3	전국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431
표 7-14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매출액	371	표 8-4	전국 시·도별 체육시설업 현황	433
표 7-15	스포츠산업 전체실적	372	표 8-5	공공체육시설 지원 대상 및 기준	441
표 7-16	사업종류별 내수·수출실적	373	표 8-6	전국체전시설 건립 지원실적	442
표 7-17	운동·경기용품제조업 상품별 구성비	374	표 8-7	2012년 체육진흥시설 예산 지원내역	444
표 7-18	등록체육시설업 현황	374	표 8-8	국민체육센터 연도별·지역별 건립 지원 현황	448
표 7-19	신규체육시설업 현황	375	표 8-9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 추진실적	450
표 7-20	연도별 전국 골프장 이용객 현황	376	표 8-10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연도별·지역별 지원실적	452
표 7-21	경기 및 오락스포츠 서비스업 연간 운영기간 및 이용인원	377	표 8-11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사업 실적	453
표 7-22	2002~2010년도 스포츠서비스업 주요업종 이용자 수	378	표 8-12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454
표 7-23	체육계학과 학생 및 스포츠산업 관련학과 현황	379	표 9-1	종목별 등록선수 수	467
표 7-24	연도별 대한체육회 기맹경기단체 수입 현황	380	표 9-2	연도별 선수 수의 변화	469
			표 9-3	종목별 국가대표 코치 및 선수 수	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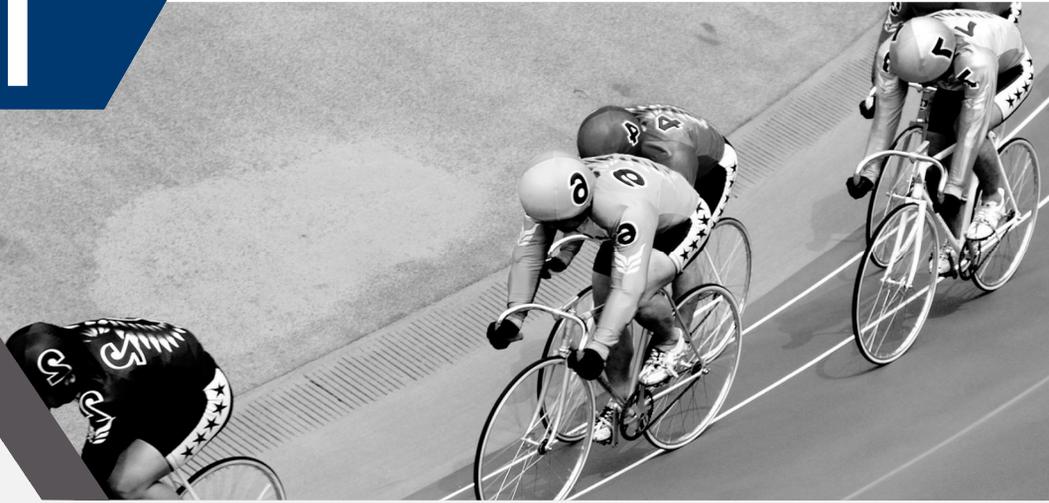
표 9-4	종목별 심판	472
표 9-5	체육계 학과 및 학생 수(전문계 고등학교)	474
표 9-6	체육계학과 학과, 학생 및 교원 수(전문대학)	475
표 9-7	대학교 체육계 학과 학생 및 교원 수	479
표 9-8	대학원 체육계학과 학생 수	484
표 9-9	경기지도자의 자격 요건	487
표 9-10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	488
표 9-11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기관 현황	490
표 9-12	경기지도자 양성 기관	490
표 9-13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종목	491
표 9-14	연도별 경기지도자 양성 현황	492
표 9-15	종목별 경기지도자 양성 현황	493
표 9-16	연도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494
표 9-17	종목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495
표 9-18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496
표 9-19	업종별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497
표 9-20	2012년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실적	498
표 9-21	2012년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실적	499
표 9-22	2012년 광장지도자 배치 실적	500
표 10-1	선수 (성)폭력 현황	504
표 10-2	2012년도 학교급별, 종목별, 성별 폭력 현황	505
표 10-3	2012년도 학교급별, 종목별, 성별 성폭력 현황	505
표 10-4	선수인권 침해 신고·상담 접수 현황	506
표 10-5	스포츠인권익센터 신고대비 징계건수	506
표 10-6	성희롱 경험 시 대처법 현황	507
표 10-7	승부조작 사례	509
표 10-8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제도	510
표 10-9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구체적 제도 방안	511
표 11-1	남북체육회담 주요일지	525
표 11-2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서울·평양 교환경기 개최 현황	527
표 11-3	1991년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참가 현황	527
표 11-4	1990년~2000년 남북체육교류 세부실적	528
표 11-5	2000년~2011년 남북체육교류 세부실적	532
표 11-6	체육 관련 북한방문 현황(2001~2012)	536
표 11-7	체육 관련 북한주민접촉 현황	537
표 11-8	체육 관련 남한방문 현황(2001~2012)	540

그림목차

List of Figures

그림 1-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기구	016	그림 7-6	스포츠서비스업 기금 융자 시행절차	418
그림 1-2	국내·외 체육기구	052	그림 7-7	전략과제(중·장기 과제) 선정절차	422
그림 1-3	대한체육회 기구표	052	그림 7-8	자유공모 과제 선정절차	423
그림 1-4	국민생활체육회 구성도	063			
그림 1-5	국민생활체육회 사무처 기구 : 2실 4부	063			
그림 1-6	위원회 및 4개 소위원회, 사무총장 및 사무국(1실 3팀)	069	그림 8-1	공공체육시설 확충 비전 체계도	439
그림 1-7	조직도(체육인재육성재단)	073			
그림 1-8	조직도(태권도진흥재단)	076	그림 9-1	체육지도자 양성절차	489
그림 2-1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여부 및 빈도	122			
그림 2-2	운동실시 장소 분포	126			
그림 2-3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	127			
그림 2-4	지도자 수혜 경험유무 및 종목	129			
그림 2-5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	129			
그림 2-6	체육활동 참여 동반자	130			
그림 2-7	체육활동 참여 이유	131			
그림 2-8	체육활동 불참 이유	131			
그림 2-9	희망 운동종목	133			
그림 2-10	관람 종목 분포	135			
그림 2-11	경기관람을 못하는 이유	137			
그림 3-1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편재와 체육수업 이수단위	176			
그림 3-2	2012 학교체육 주요업무계획	189			
그림 3-3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요	195			
그림 3-4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계획	198			
그림 4-1	꿈나무선수 선발 과정	214			
그림 5-1	동·하계올림픽대회 합산 마케팅수입	267			
그림 5-2	경기단체(협회) 국제업무 기구(음영 부분)	272			
그림 6-1	대한장애인체육회 조직도	306			
그림 7-1	국내 스포츠 산업 분류	350			
그림 7-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조직도	393			
그림 7-3	인증제사업 구성도	396			
그림 7-4	생산장려품목 및 우수체육용품 생산업체 지정 절차	402			
그림 7-5	기금 융자 시행절차	409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 // 제1절 체육정책의 변천
- // 제2절 체육행정 조직 및 단체
- // 제3절 체육진흥재원
- // 제4절 체육관련 법제

Section

01 체육의 제도적 기반

제1절 체육정책의 변천

1. 1980년대 이전의 체육정책

우리나라의 체육정책과 제도는 정부수립 후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체육정책과 제도의 틀을 확립하여 체육진흥의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제3공화국 이후이다.

제3공화국 이전에는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경기기술 향상, 올림픽대회 참가를 통한 국위 선양, 다른 나라와의 스포츠교류 등이 이루어져 사실상 민간주도로 체육행정의 전반이 이루어졌다. 정부 내에서는 중앙교육행정이 문화행정·체육행정을 포함하여 문교부에서 관장되어 왔기 때문에 담당부서(문화국 체육과)에서 주로 교육적 차원의 체육행정을 수행하였다. 당시 체육시설은 서울운동장 야구장(1959년 8월 준공)과 효창운동장(1960년 10월 준공) 및 장충체육관(1962년 12월 준공) 뿐이었다. 때문에 국민의 관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체육의 대중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웠으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도 극히 미약하였다.

제3공화국은 체육을 통해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체육정책과 제도를 확립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 아래 국민체력 향상과 국민체육진흥을 국민 통합의 원동력이자 국가발전의 기본으로 인식하여 엘리트체육 육

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국민체육진흥재단의 설립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강력한 정부정책의지를 바탕으로 한 체육정책을 펼치면서 국민체육시대로의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제3공화국이 각종 제도와 조직을 갖추고 체육진흥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1962년)했다는 점은 한국 체육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법의 내용은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의 설정, 지방체육의 진흥, 학교 및 직장체육의 진흥,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국립종합경기장의 설치, 선수의 보호 및 육성,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조항을 담고 있어 체육행정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이후 1970년 3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체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체육·학교체육·체육시설·체육기금·운동용구 및 기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체육행정기능은 교육을 담당하는 문교부에서 담당하여 체육철학, 체육기초과학, 체육지도자 육성 및 체육연구와 같은 분야의 발전은 미흡하였다. 또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여가를 선용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국력과시를 위한 엘리트체육에 중점을 두어 체육 분야별 균형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다만, 1961년부터 민간단체인 한국레크리에이션협회가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보건·체육·레크리에이션 등의 사회체육활동 보급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체육정책의 특징은 문교부에 의하여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 1990년대 중반까지의 체육정책

이처럼 제3공화국이 국민통합을 위한 체육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제5공화국에서는 체육입국을 표방하여 스포츠 강대국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제5공화국은 ‘스포츠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체육부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제5공화국의 체육부문에 대한 정책의지는 체육부 출범으로 가시화 된다. 체육부의 신설로 국민체육 진흥을 본격화하고, 체육을 생활화하며, 체육을 통한 국민화합과 복지 증진 및 국위 선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관철시켜 나가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를 통해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를 국

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1982년 3월 20일에 이루어진 체육부의 발족은 한국 체육사에 있어 커다란 분수령을 이루었다. 비록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박차를 가하고자 체육부가 신설되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 문교행정의 시각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오던 체육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려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제5공화국은 우리나라 역사상 체육행정이 가장 주목받던 시기이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게임의 개최를 위하여 막대한 행·재정적인 자원이 체육에 투입된 시기였다. 따라서 체육행정력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게임에서의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엘리트체육에 집중되었다.

행정부 내에서 체육을 담당하던 국가 수준의 조직이 전격적으로 중앙부처 수준으로 승격됨으로써, 체육행정의 위상이 제고되고 체육기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우리나라가 올림픽 4위라는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서울올림픽대회를 유치한 후 체육 외교적 측면에서 국제체육교류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공산권을 포함한 미수교국과의 적극적인 체육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체육계 유력 인사와의 유대강화, 순회홍보 실시, 제3세계 저개발국의 스포츠 지원, 그리고 각종 주요 국제경기대회 및 회의에 참가하여 국제체육계에서 우리나라 지위향상과 스포츠를 통한 국제우호 증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88서울올림픽대회에는 역대올림픽 사상 최다 국가인 160개 국가에서 13,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체육외교의 성과를 이루었다.

정부는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회 준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 등에 정책적 관심을 두어 왔으나, 양 대회 준비에 행정력을 우선적으로 투입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증진시키는 시책을 추진하는 데는 다소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 제6공화국 정부는 엘리트스포츠 육성을 모체로 하여 88서울올림픽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일명 ‘호돌이 계획’)을 세우고 생활체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탄생(1991년 2월 6일)시켜 국민생활체육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자 했다. 특히 올림픽 이후 스포츠 활동에 대한 국민의식이 크게 개선되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부응하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진흥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이전 정부에 비하여 생활체육진흥

에 대한 국가의 행정조직 및 기구의 정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호돌이 계획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추진하고자하는 모든 계획을 종합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제6공화국에서는 국민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근로청소년, 유아, 여성, 노인, 장애인 및 소외집단을 포함한 각계각층에 대하여 적합한 생활체육프로그램과 국민개개인이 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국민체력 기준치를 만들고, 건강생활체조를 개발해 전국에 보급하였다. 1988년 12월에는 처음으로 국민여가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1989년 이후 3년마다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체육진흥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그 동안의 체육정책이 엘리트스포츠에 중점을 두었던 것을 벗어나, 발전이 미흡한 생활체육을 중점 진흥하여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균형 육성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즉, 제3공화국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속 이어진 체육입국의 국가시책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던 엘리트스포츠를 점차 민간차원으로 이양하고, 국민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에 역점을 두게 된 것이다.

■ 표 1-1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의 주요사업

	시 설	프 로 그 램	지 도 자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 서울올림픽기념 생활관 건립 - 소규모 근린생활체육시설 건립 - 국공립학교(초등학교)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국민경기 종목의 개발·보급 - 계층별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 건강생활체조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제도 개선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니스장 설치 - 광역권별 수영장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 전국 스포츠교실 운영 ○ 직장체육프로그램 개발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포츠공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 전국씨름왕선발대회 개최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 학교체육시설 개방·이용 확대 - 올림픽시설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력평가대회 개최 	

이러한 문민정부의 체육정책은 한편으로는 민간체육단체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 동안 양적인 팽창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체육정책이 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문민정부의 체육정책은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년~1997년)의 수립으로 집약되었다.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국민체력증진과 여가선용도모, 세계 10위 이내의 경기력 유지, 국제체육 협력증진 및 민족화합 도모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생활체육 중점 진흥을

통해 국민체육활동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인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모든 종목의 기본인 수영·육상·체조 등 기본종목과 하계종목에 비해 취약한 동계종목의 중점 육성을 추진하였다.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당초 155개의 단위사업으로 출발했으나 학교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사업기간 동안 총 138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는 <표 1-2>와 같다. 제1차 5개년계획의 당초 계획에 의한 투자 규모는 총 1조 6,669억원 이었으나 4조 1,293억원이 투자되어 계획대비 148%의 증가를 보였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시·군 단위지역 기본체육시설인 운동장(34개소)·체육관(32개소)과 동네 체육시설(1,456개소)등이 대폭 확충되었다. 또한 운동처방을 할 수 있는 1급 생활체육지도자를 처음으로 양성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 19,314명을 양성하였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1994년 동계올림픽과 1996년 하계올림픽에서 10위 이내에 드는 등 세계 상위의 경기력을 계속 유지했으며, 체육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계획기간 중에 481명에게 경기력향상연금 114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149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국제체육 분야에서는 1993년에는 1997 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1999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1996년에는 2002월드컵축구경기대회를 일본과 공동으로 유치하여 국제체육계에서의 위상을 한층 더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남북 간 체육교류에 있어서는 국제대회 남북단일팀 참가, 체육지도자 상호교류 등 단계적인 남북 간의 체육교류를 계획하였으나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표 1-2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정 책 과 제	추 진 내 용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의식 고취 ○ 체육활동 공간 확충 및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 국민체육활동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 국민건강여가 기회의 확대
엘리트체육의 지속적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 ○ 국내경기대회 운영의 개선 ○ 우수한 경기지도 인력 양성 ○ 체육인 복지향상 및 체육단체의 자율성 제고
국제체육협력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체육계에서 한국의 입지 강화 ○ 국제체육교류 사업의 효율적 추진 ○ 체육을 통한 민족화합 도모
체육과학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과학의 연구기반 강화 ○ 체육과학의 실용화
체육행정체제의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행정체제의 정비·보강 ○ 체육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체육과학분야에서는 1995년 12월 과학적인 국민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을 위해 국민체력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체육활동의 과학화를 도모하였다.

3. 국민의 정부(1998년~2002년)

IMF 경제위기 속에서 출발한 국민의 정부는 지방화·민간화·다원화라는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체육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체육업무의 분권화·민간주도화를 추진하였다.

즉 IMF 경제위기는 정부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작은 정부론을 불러일으켰으며, 전체적인 정부조직의 축소에 따라 체육조직의 축소도 불가피하였다.

국민의 정부의 체육정책 기조는 출범 초기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엿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는 “사회건강은 생활체육에서”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둘째, 체육지도자 양성, 셋째, 다양한 여가생활을 위한 복합체육시설 확충, 넷째, 경기단체 재정자립기금 지원 및 법인화, 다섯째, 체육용 기구 품질향상 지원, 여섯째, 2002년 월드컵 등 준비 등 6개 주요사업을 선정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 체육정책 방향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복합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IMF로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전문체육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엘리트 체육의 안정적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체육용기구 등 스포츠산업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이와 함께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8년~2002년)을 수립하고 제반 정책을 추진하였다.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21세기는 체육여가생활의 만족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체력과 비만 관리 등 국민건강 증진,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기회 부여, 여가활동 기회 확대 등 건강한 체육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국민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두 축이 상호연계 발전되도록 체육발전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동 계획은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2002월드컵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 재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경기장 시설 확보, 숙박·방송보

도시설 확보, 다양한 문화행사 준비,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등의 적극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

■ 표 1-3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부문별 목표	추진 내용
생활체육 참여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중심의 체육활동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동체 주민활동의 장으로서 체육시설 확충 미참여 인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생활체육지도인력의 육성 및 활용 국민체력관리의 과학적 지원 민간 주도적 생활체육 확산
세계상위권 경기력의 유지 및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수 발굴 및 육성체계의 전문성 보강 경기단체 자율성 제고 경기운영체계의 합리화 및 전산화 강화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발전
국제교류 역량 강화 및 남북체육교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교류 대상국 확대 및 교류 내실화 체육외교역량의 강화로 국제체육기구 내 역할 강화 남북체육교류 추진으로 민족화합 분위기 조성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한 상징종목의 세계적 보급 확산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발전의 재도약 전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회준비 운영체제 구축, 경기장 등 대회시설 확보 경기운영, 개회식 등 대회운영 단계적 준비 범국민적 대회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전 정부적 지원
체육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 산업의 연구 개발 취약지구 민간체육시설 우선 용자 지원 민간체육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체육서비스소비자의 권익 및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 강구
경쟁력 있는 체육과학 발전추구 및 체육행정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체육과학연구원 기능 증대 국민체력 증진 연구 및 경기력향상 연구 역량 강화 체육부문 종합정보망 구축 및 다양한 체육정보 제공 체육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지방체육조직에 전문 인력 배치

4. 참여 정부(2003년~2007년)

참여정부의 체육정책 기조는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제시된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여정부는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에서 첫째, 생활체육참여율의 획기적 제고(50%)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둘째, 세계 10위 이내의 경기력 유지를 통한 국위 선양, 셋째,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발전 및 지역균형 발전, 넷째, 국제 체육교류의 실질화로 국가이미지 제고, 다섯째, 남북체육교류 활성화로 남북 화해 분위기 구축 등을 향후 5년 동안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하였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계획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상·연령·계층·지역의 차별 없이 국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생활 전문체육을 체계화·선진화하며, 체육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체육의 과학화·정보화를 추진하며, 국제체육협력을 강화하고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체육정책 수립 및 집행, 체육단체 등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한 “분권”을 설정하였다. 2005년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더불어 업무이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고 장애인체육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도 하였다.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생활체육, 전문체육, 스포츠산업, 국제체육, 체육과학·정보화, 체육행정·재정 등 6개 부문, 21개 과제, 146개 사업으로 구성하였다. 참여정부의 체육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1-4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부문별 목표	추진 내용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 확충 ○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 ○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과학적 국민체력관리시스템 구축 ○ 레저스포츠 발전 방안 마련 ○ 생활체육지도 인력의 양성 및 활용 ○ 생활체육 인식 제고 및 추진체제 강화
과학적 훈련지원을 통한 전문체육의 경기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선수의 발굴·육성 체계 확립 ○ 전문체육시설의 다기능화·현대화 ○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등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 전문체육단체 자율성 및 재정자립 기반 강화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 스포츠산업 진흥 관련 법적 기반 마련
국제체육교류 협력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선수권대회 등 종목별 주요 국제대회의 유치 ○ 스포츠외교 전문 인력 양성 ○ 국가 간 체육교류협력 내실화 ○ 체육을 통한 민족화합 기반 조성 ○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 ○ 스포츠 반도핑 활동의 활성화
체육과학의 진흥 및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의 학문적 연구 활동 지원 ○ 체육융합정보체계 구축
체육행정시스템의 혁신과 체육진흥재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정책 추진체제의 체계화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조성

5.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

이명박 정부의 체육정책 기조는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준비하여 제시한 “문화비전 2008~2012” ‘문화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겠습니다.’라는 정책의 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체육정책은 “문화비전 2008~2012”에서 밝히고 있듯이 ‘신나는 한국인 스포츠로 신명나는 나라’라는 주제로 15분 프로젝트, 즉, 문을 열면 15분 거리에 원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슬로건으로 대표된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체육 정상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영역별로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체육에서는 체육 친화적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 기본체육활동 기반 조성,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전국대회 운영제도 개선, 선수인권 보호체계 구축,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병행 환경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스포츠클럽 정착 및 활성화, 체육인력 활용 제고 및 국민체력 향상, 맞춤형 체육복지 구현, 전통무예 지정·육성 보급,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제고, 전문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 여건 개선, 레저스포츠시설 공간 등을 확충하였다.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는 함께 누리는 체육활동을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 장애인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과 체계적 관리, 소수자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세계 속의 스포츠한국을 위해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스포츠외교인력 양성 및 국제 활동 강화, 태권도의 세계화, 선진스포츠 도핑방지시스템을 확립하고, 엘리트스포츠 경쟁력 분야에서는 2012런던올림픽 대비 국가대표 선수양성, 우수선수 자원의 확대 및 육성시스템 강화, 비인기종목 활성화, 육상발전 계획 추진, 엘리트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여건 개선, 스포츠의과학 및 정보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다.

그 밖에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프로스포츠 자생력 확보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스포츠용품의 고부가가치화,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지원 체계 등을 구축하였다.

■ 표 1-5 이명박 정부 문화비전 2008-2012의 체육부분 주요 정책과제

부문별 목표	추진내용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스포츠클럽 정착 및 활성화 ○ 체육인력 활용 제고 및 국민체력 향상 ○ 맞춤형 체육복지 구현 ○ 전통무예 지정 및 육성 보급 강화 ○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활용 제고 ○ 레저스포츠시설·공간 확충
체육 친화적 교육환경 교육 친화적 체육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기본체육활동 기반 조성 ○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 선수 인권보호 체계 구축 ○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 병행 환경조성
함께 누리는 체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 ○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 ○ 장애인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과 체계적 관리 ○ 소수자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 활동 전개
세계 속의 스포츠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스포츠 강국 이미지 지속 ○ 스포츠 외교인력 양성 및 국제 활동 강화 ○ 태권도의 세계화 ○ 선진 스포츠도핑 방지시스템 확립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스포츠 자생력 확보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활동 강화 ○ 스포츠용품 고부가가치화 및 u-스포츠 사회 구축 ○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지원체계 구축 ○ 민간 체육시설의 이용환경 개선
엘리트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런던올림픽 대비 국가대표선수 체계적 양성 및 훈련의 과학화 ○ 우수선수 자원의 확대 및 육성시스템 강화 ○ 비인기 종목 활성화 ○ 스포츠 의·과학 및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 육상진흥 토대 마련을 위한 추진계획 이행 ○ 엘리트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여건 개선
체육행정 시스템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단체의 조직 및 기능 선진화 ○ 선진형 체육 법·제도 정비 ○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6. 박근혜 정부(2013년~현재)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하여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국정목표 제시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영역별로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체육전담교사,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및 우수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장 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지원 한다.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을 위한 추진전략의 세부과제를 보면

첫째,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문화재정 2%를 달성하면서 정부

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과 별도 세입이 있는 기금재원을 균형 있게 확충하고자 한다.

둘째,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장애인시설 파견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체육시설의 접근성 향상 지원한다.

셋째,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하여 남북 간의 스포츠교류를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체육분야 ODA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을 목표로 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급 및 통합콜센터(#7330)를 운영하고 전 국민 스포츠·체력 인증제를 도입과 함께 시·군·구에 종합형 스포츠클럽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대표 체육지도자 자격 부여 및 진로 지원 및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 체육인복지를 강화한다, 또한 태릉, 태백, 진천국가대표훈련장의 효율적 기능 분담을 도모하고 국군체육부대 확대와 해양경찰 체육단 증원, 실업팀 창단지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 밖에도 올림픽공원 내 체육인 명예의 전당·호텔·컨벤션을 갖춘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고,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스포츠산업을 고부가, 지식기반으로 육성한다.

다섯째,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MICE, 의료, 한류, 크루즈, 역사·전통문화 체험, 레저·스포츠, 생태기반관광, IT·복합 관광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레저 산업을 육성한다.

■ 표 1-6 박근혜 정부 주요 국정과제

주요과제	과제내용
학교교육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배치 확대, 중·고교스포츠 강사 확대 배치 우수스포츠클럽 지원 학교 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으로 체육활동 여건 개선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정 2% 달성 예산과 기금재원을 균형 있게 확충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 체육시설 내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청소년 체육교실 등 확대 공공문화체육시설 장애인 접근성 확대를 위한 개보수 지원 및 어울림 스포츠센터 건립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스포츠교류 정례화 추진 개도국 스포츠지도자 및 선수 초청 사업 등 문화 ODA 확대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통합콜센터(#7330) 도입 전 국민 스포츠·체력 인증제 도입 종합형 스포츠클럽 설립 추진 국가대표 체육지도자 자격 부여 및 학교스포츠강사 처우개선, 체육인 진로지원 등 체육인 복지 강화 태릉, 태백, 진천 국가대표훈련장 효율적 기능 분담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레저 육성 (MICE, 의료, 한류, 크루즈, 역사, 전통문화 체험, 레저·스포츠, 생태기반관광, IT 융·복합 관광 등)

제2절 체육행정 조직 및 단체

1. 중앙정부 체육조직

1) 체육조직의 변천

가. 1980년 이전의 체육조직

우리나라의 체육행정조직은 8.15광복과 더불어 시작된 미군정기에 마련되었다. 미군정당국은 1946년 3월 29일 문교부 교화국내에 체육과를 설치하고 체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0일 교화국을 문화국으로 개편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 후에는 문교부 문화국 체육과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인원은 4~5명이었다.

정부의 체육조직은 5.16 이후 크게 변화되었다. 종래 문화국에 속해 있던 체육과가 체육국으로 승격되고, 인원 및 예산도 20명, 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1961년 10월 2일).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못하고 1963년 12월 14일 제3공화국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문예체육국 체육과로 환원되었으며, 1968년 7월 24일 문교부의 문화예술행정이 문화공보부로 이관되면서 사회교육국으로 변경되었다.

1970년 8월 31일에는 다시 체육국을 신설하고 체육과를 국민체육과와 학교체육과로 그 기능을 분리하였다. 1973년 3월 9일에는 체육국내에 학교급식과가 추가되어 3개과가 되었다. 1979년 3월 19일에는 문교부 직제 개정으로 체육국의 업무 조정이 이루어져 종전의 학교체육과, 국민체육과, 학교급식과가 체육과, 학교보건과, 체육교류과로 변경되었다. 1981년 11월 2일에는 체육국과 사회체육국을 통합하여 체육국제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학교체육과, 국민체육과, 국제경기과, 교육협력과, 재외국민교육과로 정비되었다.

나. 1980년대의 체육조직

1981년 9월 30일 스위스 바덴바덴에서 88올림픽의 서울개최가 확정되고 그해 11월 86아시아게임 유치하게 되면서 체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1982년 3월 20일에 체육부를 신설하여 그 이전까지 문교행정의 시각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오던 체육행정을 새로운 차원

으로 끌어올려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체육부는 발족 당시 기획관리실, 체육진흥국(체육정책과, 사회체육과, 학교체육과, 체육시설과), 체육과학국(기획과, 지도훈련과, 조사연구과), 국제체육국(지원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담당관)을 두어, 1실 3국 10과 4담당관의 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체육부 전체의 정원은 총 187명이 되었다.

이후 체육부는 1987년까지 다섯 차례의 직제 개편을 통해 소폭의 변동이 있긴 하였으나 전체적인 기조는 유지되었다. 1988년 6월 18일에 체육부 내에 청소년국(청소년정책과, 청소년지도과, 청소년교류과,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심의관)을 신설하여 체육행정을 청소년행정과 관련하여 유기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청소년국의 신설로 체육부 정원은 225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990년 2월 12일 체육진흥국 내에서 사회체육과가 생활체육과로 개칭되고, 학교체육과가 폐지되고 사업관리과가 신설되었으며, 체육과학국이 체육지도국으로 개칭되었으나, 여전히 체육관련 조직은 체육진흥국(생활체육과, 사업관리과, 체육시설과), 체육지도국(조사기획과, 훈련과, 지도육성과), 국제체육국(지원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담당관) 체제를 유지하였다. 한편 학교체육업무 중 급식관련 업무는 1989년에 발표된 행정개혁위원회의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에 따라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사회체육과를 생활체육과로 개칭한 것은 사회단체 수준의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일반 국민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부정책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1990년 7월 발표한 국민생활체육진흥세부추진계획인 ‘호돌이 계획’에서도 나타난다.

1990년 9월 10일에는 청소년국이 1실 2관 6과의 청소년정책조정실(청소년기획관, 청소년협력관, 청소년기획과, 청소년육성과, 청소년지도과, 청소년교류과, 시설기금과, 홍보협력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1990년 12월 27일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개칭하였다.

다. 1990년대의 체육조직

1993년 3월 6일에 1989년에 발표된 행정개혁위원회의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에 따라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문화체육부로 통합하여 문화체육부에는 체육정책국(체육기획과, 생활체육과, 체육시설과), 체육지원국(체육과학과, 지도육성과, 훈련지원과), 국제체육국(협력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과)을 두어 3국 9과 체제를 갖추었다.

1994년 5월 4일에 해외협력과를 체육교류과로 개칭하고, 1994년 5월 16일에 학교체육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나, 전체적인 체육관련 조직은 3국 9과 체제를 유지하였다.

1994년 12월 23일에 문화체육부내에 관광업무가 이관되면서 체육지원국을 폐지하여, 체육행정조직은 체육정책국(체육기획과, 생활체육과, 지원육성과, 체육시설과), 국제체육국(협력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과)의 2국 7과, 77명으로 축소되었다.

1998년 2월 28일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개칭하고, 체육정책국과 국제체육국을 체육국으로 통합하였으며, 기존의 체육기획과와 협력총괄과를 체육정책과로 통합하였다. 또한 기존의 생활체육과는 그대로 생활체육과로 유지하고, 지원육성과와 체육시설과를 체육지원과로, 국제경기과와 체육교류과를 체육교류과로 통합하는 등 체육담당부서를 1국 4과로 축소하였다. 그 결과 총 인원은 2국 7과, 77명에서 1국 4과, 56명으로 21명이나 감소하였다.

1999년 5월 24일에는 체육정책과와 체육교류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체육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체육진흥과로 통합하여 1국 3과, 40명으로 행정조직 및 정원의 축소가 이루어졌다.

라. 2000년~2007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체육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경제부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근무시간의 단축은 국민들의 여가시간을 증대시켰고, 이러한 현상은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증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가한 국민의 여가시간을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유도하고, 국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의 다양화·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전담부서의 신설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2년 3월 9일 생활체육과가 다시 설치되었다. 이후 스포츠여가산업에 대한 수요 및 관심 증가에 따라 2004년 11월에 다시 직제개편을 실시하여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신설하는 한편, 체육진흥과는 폐지하고 체육진흥과 업무 중 학교운동부, 전국체전 등의 업무는 생활체육과로 태권도공원 조성, 프로단체 육성 등에 관한 업무는 스포츠여가산업과로 국가대표선수 육성, 대한체육회 지도 감독 등의 업무는 국제체육과로 이관하였다. 2005년 12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체육을 이관 받아 장애인체육과를 신설하고 장애인체육진흥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고, 2006년 7월 25일 기존의 ‘과’단위를 ‘팀’단위로 재편하였다.

마. 2008년~2012년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팀’단위를 다시 ‘과’단위로 개편하였으

며, 2008년 12월 31일자로 생활체육과가 체육진흥과로, 장애인체육과가 장애인문화체육과로 개편되었다. 생활체육과에서 체육진흥과로 개편되면서 새로 개편된 과에서는 기존의 생활체육업무 이외에 국가대표선수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전문체육과 관련한 업무를 이관 받아 동일 과에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장애인문화체육과 역시도 기존의 장애인체육업무 이외에 장애인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여 기능을 확대하였다.

이후 2009년 5월 4일 체육진흥과와 스포츠산업과를 체육진흥과로 통합하고, 장애인문화체육과를 장애인문화체육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2010년 7월 1일 다시 장애인문화체육팀을 장애인문화체육과로 개칭하였다.

2013년 3월 23일 장애인문화체육과에서 장애인체육과로 개칭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국은 1국 4과 51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림 1-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기구

■ 표 1-7 체육조직기구의 변천 요약

○ 1982. 3. 20	체육부 신설(1실 3국 10과 3관 4담당관 187명) - 기획관리실, 체육진흥국, 체육과학국, 국제체육국
○ 1990. 2. 12	골프장업무 인수
○ 1992. 1. 1	한국마사회 운영의 지도·감독업무 인수
○ 1993. 3. 6	문화체육부 발족, 3국 9과 98명 - 체육정책국, 체육지원국, 국제체육국
○ 1994. 12. 23	3국 9과 98명 ⇒ 2국 7과 77명, 체육지원국 폐지
○ 1998. 2. 28	문화관광부 발족, 2국 7과 77명 ⇒ 1국 4과 56명, 국제체육국 폐지
○ 1999. 5. 24	1국 4과 56명 ⇒ 1국 3과 40명
○ 2001. 1. 29	한국마사회업무 농림부 이관
○ 2002. 3. 9	생활체육과 신설 1국 4과 45명
○ 2004. 11. 7	스포츠여가산업과 신설, 체육진흥과 폐지
○ 2005. 12. 15	장애인체육과 신설 1국 5과 52명
○ 2006. 7. 25	'과'명칭이 '팀'제로 변경 1국 5팀
○ 2008. 2. 29	문화체육관광부 신설, '팀'제가 '과'제로 변경 1국 5과 50명
○ 2008. 12. 31	생활체육과 ⇒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과 ⇒ 장애인문화체육과로 명칭 변경
○ 2009. 5. 1	직제개편 (1국 3과 1팀 50명), 체육진흥과와 스포츠산업과 ⇒ 체육진흥과로 통합, 장애인문화체육과 ⇒ 장애인문화체육팀으로 명칭 변경
○ 2010. 7. 1	장애인문화체육팀을 장애인문화체육과로 개편 1국 4과 52명
○ 2013. 3. 23	장애인문화체육과를 장애인체육과로 개편 1국 4국 51명

2) 부서별 주요업무

2012년 12월 31일 현재 체육국의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국제체육과, 장애인체육과의 부서별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체육정책과는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종합계획의 수립,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육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선수 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지원, 청소년 체육활동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대표선수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수행한다.

체육진흥과는 생활체육, 레저스포츠,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에 관한 사항, 국민생활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한민족축전에 관한 사항, 국민 체력 증진에 관련된 사항, 스포츠 관련 용품·장비의 생산 장려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 통계 및 경영정보 등 조사·연구,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 지방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스포츠 행사의 산업화,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민간체육시설 및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이용 활성화 등을 수행한다.

국제체육과는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간·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협력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보급,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도핑)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태권도 공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태권도 진흥재단 및 국기원에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장애인체육과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장애인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 국가대표 장애인선수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대한장애인을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지방자치단체 체육조직

1) 지방자치단체 체육행정조직 현황

현재 광역자치단체인 각 시도에서는 대체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국 등의 국단위 수준에서 체육진흥과, 체육청소년과, 스포츠산업과의 과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하부 단위로 체육정책, 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시설, 스포츠산업 등의 하부 팀 또는 계를 유지하며 지방의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근무 인력은 평균 10명~20여명 내외이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적으로 크게 늘어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월드컵경기가 끝난 후 월드컵경기장을 보유한 서울, 대구, 광주 등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가 신설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광주에서만 민간위탁관리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기초자치체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등에서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주민자치팀, 생활환경정비팀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체육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통 10명~20여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그밖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을 두어 시설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리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 기초자치단체의 인력은 본청 인력보다 2~3배 정도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표 1-8>과 <표 1-8-1>에 나타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총 3,223명으로 이 중 행정직 1,329명, 기술직 561명, 기능직 753명, 별정직 121명, 계약직 45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1-8 광역자치단체(사도)의 체육행정조직과 인력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소 계	220	47	49	101	3	20
서울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6개팀)	26	19	2	1	2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38	14	19	100	1	14
	시설관리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	56	14	28	-	-	4
	소 계	139	50	34	46	6	3
부산	행정자치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 체육시설, 체육교류)	26	19	3	2	-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13	31	31	44	6	1
	소 계	99	31	24	42	0	2
대구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 생활체육, 국제대회, 체육시설)	21	14	5	-	-	2
	체육시설관리사무소	49	13	9	27	-	-
	대구스타디움관리소	29	4	10	15	-	-
	소 계	14	10	3	1	0	0
인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체육지원, 체육시설)	14	10	3	1	-	-
	체육시설관리공단	-	-	-	-	-	-
	소 계	22	18	4	0	0	0
광주	체육U대회지원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체육시설)	22	18	4	-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민간위탁)	-	-	-	-	-	-
	월드컵경기장 관리사업소 (민간위탁)	-	-	-	-	-	-
	소 계	145	29	36	20	0	60
대전	문화체육국 체육지원과 (체육지원, 생활체육, 스포츠마케팅)	14	13	-	1	-	-
	문화체육국 문화체육시설과 (체육시설)	4	-	4	-	-	-
	대전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본부	127	16	32	19	-	60
	소 계	128	29	31	2	0	66
울산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지원과 (체육정책, 생활체육, 대회지원)	16	11	4	1	-	-
	시설관리공단	112	18	27	1	-	66
	소 계	5	3	2	0	0	0
세종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관광과	5	3	2	-	-	-
	소 계	15	10	5	0	0	0
경기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체육행정, 생활체육, 체육시설)	15	10	5	-	-	-

구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소 계	13	9	3	0	0	1
강원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시설)	13	9	3	-	-	1
	소 계	17	11	5	1	0	0
충북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레저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국제 행사지원팀)	17	11	5	1	-	-
	소 계	14	10	2	1	0	1
충남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담당, 체육지원담당, 체육시설담당)	14	10	2	1	-	1
	소 계	15	10	4	1	0	0
전북	문화관광국 스포츠생활과 (체육진흥, 생활체육홍호회, 스포츠산업, 태권도공원)	15	10	4	1	-	-
	소 계	14	13	1	0	0	0
전남	스포츠산업과 (체육지원담당, 스포츠마케팅담당, 해양레저담당)	14	13	1	-	-	-
	소 계	14	13	0	1	0	0
경북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지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체육)	14	13	-	1	-	-
	소 계	18	15	2	0	0	1
경남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지원과 (체육행정, 생활체육,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관리)	18	15	2	-	-	1
	소 계	14	11	2	0	0	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산업과	14	11	2	-	-	1
	총 계	906	319	206	217	9	115

1. 기술직 : 전기·토목·건축·기계
2. 기능직 : 사무보조요원 등
3. 별정직 : 공무원분류 상 별정직으로 채용된 체육지도사
4. 계약직(전문직 포함) : 일용계약 등에 따라 채용된 체육전문가

■ 표 1-8-1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체육행정조직과 인력

구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소 계	164	100	3	14	42	5	
서울	종로구	교육체육과 생활체육팀	5	3	-	-	2	-
	중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7	7	-	-	-	-
	용산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5	1	-	2	2	-
	성동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4	3	-	-	1	-
	광진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5	4	-	-	1	-
	동대문구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5	3	-	1	1	-
	중랑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3	2	-	-	1	-
	성북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외 1팀	5	4	-	-	1	-
	강북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4	2	-	-	2	-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서울	도봉구	체육진흥과	12	8	-	1	3	-
	노원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5	3	-	-	2	-
	은평구	문화체육관광과 체육진흥팀 외 1팀	9	4	-	-	3	2
	서대문구	체육진흥과 3개팀	10	5	-	3	2	-
	마포구	생활체육과	15	10	1	1	3	-
	양천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5	3	-	-	2	-
	강서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5	2	-	-	2	1
	구로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4	1	-	-	3	-
	금천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3	1	-	1	1	-
	영등포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외 1팀	7	5	-	1	1	-
	동작구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외 1팀	7	5	-	-	2	-
	관악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5	3	-	-	2	-
	서초구	주민생활국 생활운동과	15	9	2	2	1	1
	강남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5	5	-	-	-	-
	송파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외 1팀	9	4	-	2	2	1
	강동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외 1팀	5	3	-	-	2	-
소 계			82	68	-	8	-	6
부산	중구	총무과 (구민협력계)	5	4	-	1	-	-
	서구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계)	4	4	-	-	-	-
	동구	문화체육과 (체육청소년담당)	4	4	-	-	-	-
	영도구	문화체육과 (체육청소년)	5	4	-	1	-	-
	부산진구	문화체육과 (체육관광)	6	5	-	-	-	1
	동래구	교육정보과 (생활체육담당)	3	3	-	-	-	-
	남구	문화체육과 (체육지원담당)	3	3	-	-	-	-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담당)	7	4	-	3	-	-
	북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4	4	-	-	-	-
		문화빙상센터 빙상팀	8	2	-	1	-	5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과 생활체육팀	4	3	-	1	-	-
	사하구	총무과 (구민협력계)	6	6	-	-	-	-
	금정구	총무과 (구민지원담당)	6	6	-	-	-	-
	강서구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2	2	-	-	-	-
	연제구	총무과 (구민체육계)	4	3	-	1	-	-
	수영구	총무과 (평생학습담당)	4	4	-	-	-	-
	사상구	자치행정과 (진흥담당)	4	4	-	-	-	-
	기장군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계)	3	3	-	-	-	-
소 계			35	28	6	1	0	0
대구	중구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담당)	4	4	-	-	-	-
	동구	평생학습과 (체육담당)	4	3	1	-	-	-
	서구	문화공보과 체육지원팀	3	3	-	-	-	-
	남구	문화홍보과 여가체육팀	2	2	-	-	-	-
		문화홍보과 체육시설팀	3	1	1	1	-	-
	북구	문화교육과 (생활체육담당)	4	3	1	-	-	-

구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대구	수성구	문화체육과 체육팀	5	5	-	-	-	-
	달서구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4	4	-	-	-	-
	달성군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3	3	-	-	-	-
		도시시설과 체육시설팀	3	-	3	-	-	-
소 계			41	31	5	4	0	1
인천	중구	홍보체육진흥실 체육진흥팀	3	3	-	-	-	-
	동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4	3	-	1	-	-
	남구	홍보체육진흥실 체육진흥팀	6	2	1	2	-	1
	연수구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4	3	-	1	-	-
	남동구	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	6	5	1	-	-	-
	부평구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5	4	1	-	-	-
	계양구	교육문화과 체육관광팀	3	3	-	-	-	-
	서구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진흥팀	5	5	-	-	-	-
	강화군	총무과 체육팀	3	2	1	-	-	-
	옹진군	관광문화과 문화체육팀	2	1	1	-	-	-
소 계			23	17	1	4	0	1
광주	동구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계)	5	4	-	-	-	1
	서구	문화체육과 체육팀	4	2	1	1	-	-
		문화체육과 국민체육센터팀	4	2	-	2	-	-
	남구	총무과 체육지원팀	3	3	-	-	-	-
	북구	총무과 생활체육팀	4	3	-	1	-	-
	광산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3	3	-	-	-	-
소 계			27	19	6	0	1	1
대전	동구	문화공보과 (체육담당)	10	4	5	-	-	1
	중구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5	5	-	-	-	-
	서구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5	3	1	-	1	-
	유성구	문화관광과 (건강체육담당)	3	3	-	-	-	-
	대덕구	홍보문화팀 (체육파트)	4	4	-	-	-	-
소 계			56	22	12	5	0	17
울산	중구	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	4	3	-	1	-	-
	남구	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	4	3	1	-	-	-
		도시관리공단	8	5	1	-	-	2
	동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3	2	1	-	-	-
	북구	문화홍보과 체육지원팀, 체육센터팀	13	6	2	3	-	2
	울주군	문화관광과 생활체육팀	5	3	2	-	-	-
	시설관리공단	19	-	5	1	-	13	
소 계			263	164	64	31	0	4
경기	수원시	체육진흥과	12	8	2	2	-	-
	성남시	체육진흥과	13	8	3	2	-	-
	의정부시	문화관광체육과	7	4	3	-	-	-
	안양시	체육청소년과	8	5	3	-	-	-
	부천시	체육진흥과	20	9	6	5	-	-

구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경기	광명시	체육진흥과	20	10	1	7	-	2
	평택시	체육진흥과	20	12	3	5	-	-
	동두천시	문화체육과	3	2	1	-	-	-
	안산시	체육진흥과	17	8	5	3	-	1
	고양시	체육진흥과	16	10	4	1	-	1
	과천시	문화체육과	3	2	1	-	-	-
	구리시	평생학습과	5	2	2	1	-	-
	남양주시	체육청소년과	4	4	-	-	-	-
	오산시	문화체육과	3	3	-	-	-	-
	시흥시	문화체육과	6	4	2	-	-	-
	군포시	청소년교육체육과	3	3	-	-	-	-
	의왕시	문화체육과	6	2	3	1	-	-
	하남시	문화체육과	6	5	1	-	-	-
	용인시	교육체육과	9	7	1	1	-	-
	파주시	체육청소년과	13	8	4	1	-	-
	이천시	체육지원센터	9	6	2	1	-	-
	안성시	문화체육과	4	1	2	1	-	-
	김포시	교육체육과	7	4	3	-	-	-
	화성시	체육관광과	9	6	3	-	-	-
	광주시	체육진흥과	12	10	2	-	-	-
	양주시	교육체육과	7	6	1	-	-	-
	여주군	교육체육과	8	4	4	-	-	-
	연천군	문화관광체육과	4	3	1	-	-	-
	포천군	자치행정과 체육행정팀	3	3	-	-	-	-
	가평군	문화관광과 (체육담당)	3	2	1	-	-	-
	양평군	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	3	3	-	-	-	-
소 계		200	84	27	45	6	38	
강원	춘천시	경제국 문화체육과 (체육)	5	2	2	1	-	-
	원주시	건강체육과	15	9	4	1	-	1
		문화체육사업소	27	7	2	13	4	1
	강릉시	체육청소년과 (체육행정,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 청소년)	14	10	1	1	-	2
	동해시	체육산업과 (체육기획, 생활체육, 체육시설)	9	6	1	2	-	-
	태백시	스포츠레저과 (스포츠기획, 스포츠레저, 스포츠박람회, 스포츠시설)	14	10	1	3	-	-
	속초시	문화체육과 (체육진흥, 행사운영)	8	4	1	2	1	-
	삼척시	문화공보실 (체육진흥, 체육시설)	5	3	1	1	-	-
	홍천군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8	2	2	-	-	4
	횡성군	문화체육과 (체육육성, 시설관리)	14	2	3	7	1	1
	영월군	전략사업과 (체육진흥, 체육시설)	24	4	2	6	-	12
	평창군	경제체육과 (체육진흥, 체육시설)	11	5	2	2	-	2
정선군	동계올림픽지원단 (스포츠지원)	4	3	1	-	-	-	

구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강원	철원군	관광문화과 (체육진흥)	6	2	2	1	-	1	
	화천군	문화체육과 (체육진흥, 체육시설관리)	11	6	-	1	-	4	
	양구군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	3	3	-	-	-	-	
	인제군	문화관광과 (체육진흥)	4	2	2	-	-	-	
	고성군	관광문화체육과 (체육진흥)	15	2	-	3	-	10	
	양양군	문화관광과 (체육진흥)	3	2	-	1	-	-	
	소 계		116	56	26	27	2	5	
충북	청주시	체육교육과, 문화예술체육회관 (체육시설과)	21	7	8	4	2	-	
	충주시	체육진흥과 (체육진흥담당, 체육산업담당, 시설개발담당, 시설관리담당)	17	10	4	3	-	-	
	제천시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시설조성팀, 시설관리팀)	15	9	3	2	-	1	
	청원군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5	4	1	-	-	-	
	보은군	문화관광과 (체육계, 전지훈련계)	5	5	-	-	-	-	
	옥천군	체육시설사업소 (운영팀, 체육팀, 시설팀)	23	7	6	6	-	4	
	영동군	문화체육과 체육팀,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팀	8	4	1	3	-	-	
	증평군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4	2	-	2	-	-	
	진천군	문화체육과 체육팀	5	2	-	3	-	-	
	괴산군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4	2	1	1	-	-	
	음성군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4	2	-	2	-	-	
	단양군	자치행정과 (체육진흥담당)	5	2	2	1	-	-	
		소 계		181	57	31	40	3	50
	충남	천안시	체육교육과 체육행정팀	6	5	1	-	-	-
		체육교육과 체육행사팀	3	3	-	-	-	-	
공주시		문화체육과 (체육지원담당, 레저시설담당)	7	4	2	-	-	1	
		공공시설관리소	8	3	-	3	-	2	
보령시		문화공보실 (체육지원계)	4	3	-	1	-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계)	18	-	5	6	-	7	
아산시		체육육성과 (스포츠마케팅팀, 생활체육팀, 종합운동장팀, 수영장팀, 전국체전준비팀)	23	11	4	7	-	1	
서산시		공보전산담당관실 체육지원팀	3	2	-	1	-	-	
논산시		문화관광과 (체육담당)	3	3	-	-	-	-	
		공공시설사업소	28	2	5	5	-	16	
계룡시		문화체육과 (체육진흥담당)	3	2	1	-	-	-	
		어울림터사업소 (어울림터유지담당)	5	1	1	1	-	2	
당진시		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 교육문화스포츠센터)	21	4	1	4	-	12	
금산군		문화공보관광과 (체육진흥담당)	3	2	-	1	-	-	
부여군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	4	1	1	2	-	-	
서천군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4	2	2	-	-	-	
청양군		문화관광과 (체육계)	3	2	-	1	-	-	
홍성군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	3	3	-	-	-	-	
		공공시설사업소 (시설관리담당)	5	-	2	-	2	1	

구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충남	예산군	문화체육과 (체육지원담당)	4	2	1	1	-	-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담당)	6	-	2	2	1	1
	태안군	평생교육과 체육지원팀	4	2	1	-	-	1
		문화체육센터 체육시설팀	13	-	2	5	-	6
소 계			155	54	32	34	13	22
전북	전주시	체육청소년과 (생활체육팀, 체육진흥팀)	8	6	-	2	-	-
		스포츠타운조성과 (스포츠타운팀, 스포츠시설관리팀)	6	2	4	-	-	-
	군산시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계)	5	3	1	-	1	-
	익산시	건강체육과 (체육진흥, 건강도시, 시설조성, 종합운동장, 체육공원)	33	8	9	9	-	7
	정읍시	교육체육과 체육진흥팀	3	3	-	-	-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운영팀, 체육시설관리팀)	7	2	4	1	-	-
	남원시	교육체육과 (체육진흥담당)	10	4	4	2	-	-
	김제시	체육청소년과 (체육, 시설관리)	19	7	2	6	2	2
	완주군	문화관광과 (체육시설)	20	2	1	4	8	5
	진안군	문화관광과 (체육지원)	3	2	-	1	-	-
		공공시설사업소 (시설운영)	1	-	1	-	-	-
	무주군	태권도공원과 (스포츠마케팅)	3	1	1	1	-	-
	장수군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체육담당)	9	2	-	3	-	4
	임실군	행정지원과 (체육진흥계)	3	2	-	-	1	-
	순창군	체육진흥사업소	15	5	1	4	1	4
	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 (체육진흥담당, 체육시설담당)	7	3	4	-	-	-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지원담당)	3	2	-	1	-	-
소 계			299	111	53	62	8	65
전남	목포시	스포츠산업과	12	9	1	2	-	-
		체육시설관리과	18	6	1	8	-	3
	여수시	체육지원과	35	13	9	7	-	6
	순천시	스포츠산업과	11	7	3	1	-	-
		체육시설관리소	11	3	3	4	1	-
	나주시	체육지원팀	4	3	-	1	-	-
		문화체육관광과 (체육지원담당) 도시개발사업소 (시설관리담당)	18	-	4	-	6	8
	광양시	체육지원과	22	9	4	9	-	-
	담양군	문화체육과 (스포츠산업담당)	6	2	1	2	-	1
	곡성군	문화과 체육팀	4	2	1	-	1	-
	구례군	시설관리과 (체육시설운영)	3	2	1	-	-	-
		시설관리공단	13	3	-	2	-	8
	고흥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3	5	4	2	-	2
	보성군	시설관리과	7	3	2	-	-	2
화순군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스포츠지원, 체육시설, 시설운영담당)	17	7	5	-	-	5	

구분	조 직		인 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전남	장흥군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담당)	13	1	-	3	-	9
	강진군	스포츠산업단	19	4	1	11	-	3
	해남군	문화체육진흥사업소	22	3	3	2	-	14
	영암군	주민생활지원과	9	3	4	2	-	-
	무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3	8	3	1	-	1
	함평군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진흥담당)	5	2	1	2	-	-
	영광군	스포츠산업과	13	8	2	2	-	1
	장성군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2	2	-	-	-	-
	완도군	문화체육과 (스포츠산업담당)	4	2	-	1	-	1
	진도군	행정과 (체육지원담당)	2	2	-	-	-	-
	신안군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자치행정과 (체육진흥담당)	3	2	-	-	-	1
소 계			277	130	53	79	1	14
경북	포항시	자치행정국 체육지원과	17	9	6	1	-	1
	경주시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23	13	2	7	1	-
	김천시	스포츠산업과	28	11	6	10	-	1
	안동시	문화복지국 체육관광과	13	7	2	4	-	-
	구미시	자치행정국 체육진흥과	24	9	7	8	-	-
	영주시	인재양성과 (체육지원담당)	5	4	-	1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6	2	-	4	-	-
	영천시	자치행정국 새마을체육과	5	4	-	1	-	-
		문화체육과 (체육지원부서)	6	4	1	1	-	-
	상주시	시민관리사업소 시민운동관리사무소	8	1	1	2	-	4
		시설관리사업소 국민체육센터	7	2	-	4	-	1
	문경시	행정복지국 새마을체육과	13	7	2	4	-	-
	경산시	자치행정국 체육진흥과	18	7	7	3	-	1
	군위군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	5	5	-	-	-	-
		국민스포츠센터 (운영담당)	7	1	3	3	-	-
	의성군	새마을문화과	5	4	1	-	-	-
		문화체육관리사업소	17	4	6	4	-	3
	청송군	새마을경제과	4	3	-	1	-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3	1	1	1	-	-
	영양군	문화관광과	4	2	-	2	-	-
	영덕군	총무과 (체육지원담당)	7	3	-	4	-	-
	청도군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3	2	-	-	-	1
		문화체육시설사업소	9	2	1	5	-	1
고령군	문화새마을체육과	3	3	-	-	-	-	
성주군	문화체육과	5	4	-	1	-	-	
칠곡군	새마을문화과	4	3	1	-	-	-	
	체육시설사업소	9	3	3	3	-	-	
예천군	문화체육사업소	4	3	-	1	-	-	
봉화군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	6	2	-	3	-	1	

구분	조직		인력					
			계	행정직	기술직 ¹	기능직 ²	별정직 ³	계약직 ⁴
경북	울진군	문화관광과 (스포츠마케팅부서)	6	2	3	1	-	-
	울릉군	문화관광체육과	3	3	-	-	-	-
	소 계		245	113	57	25	4	46
경남	창원시	체육진흥과 (체육지원, 체육시설, 생활체육, 사격대회지원)	18	11	6	1	-	-
	진주시	체육진흥과 (체육기획, 체육진흥,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관리)	18	11	6	1	-	-
	통영시	체육지원과 (체육진흥, 체육시설, 해양레저, 세계해양스포츠유치)	14	11	1	2	-	-
	사천시	체육지원과 (체육지원, 체육시설, 수영장, 도민체전운영)	36	14	4	6	-	12
	김해시	체육지원과(체육지원, 생활체육,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	16	12	3	1	-	-
	밀양시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지원, 체육시설)	23	6	5	1	-	11
	거제시	교육체육과 (체육진흥, 체육시설)	7	3	3	1	-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체육시설관리팀)	15	3	7	-	-	5
	양산시	교육체육과 (체육지원)	6	3	2	1	-	-
	의령군	의병문화교육과 (의병교육담당)	3	2	-	1	-	-
	함안군	문화관광과 (체육담당)	3	2	1	-	-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시설관리담당)	12	3	3	1	1	4
	창녕군	문화체육과 (체육청소년)	3	3	-	-	-	-
	고성군	문화관광체육과 (체육담당, 체육시설)	9	5	1	1	2	-
	남해군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15	5	4	4	-	2
	하동군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 체육시설)	10	4	4	1	-	1
	산청군	문화관광과 (체육담당)	8	3	1	-	1	3
	함양군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	5	2	1	-	-	2
	거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	10	6	3	1	-	-
	합천군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4	2	1	1	-	-
공공시설사업소		10	2	1	1	-	6	
	소 계		106	10	18	19	0	59
제주	제주시	문화관광국 스포츠지원과	51	7	8	11	-	25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스포츠지원과	55	3	10	8	-	34
	총 계		2,270	1,064	394	398	80	334

※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전국체전준비기획단 등 한시조직은 제외)

1. 기술직 : 전가토목·건축기계
2. 기능직 : 사무보조요원 등
3. 별정직 : 공무원분류 상 별정직으로 채용된 체육지도사 등
4. 계약직(전문직 포함) : 일용계약 등에 따라 채용된 체육전문가

※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전국체전준비기획단 등 한시조직은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수에 합산하였음.

2) 지방 체육단체 운영현황

현재 우리나라 지방 체육단체인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지방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 3개 체육단체 대통합 등 다양한 유형으로 통합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도의 특성에 따라 체육단체의 통합유형이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각 시·도(17개)에서 체육회, 생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를 운영 중이며,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광역시만이 유일하게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15개 시·군·구가 체육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미설치 31개), 157개 시·군·구가 생활체육회를 독립운영하고 있고(미설치 11개), 28개 시·군·구가 장애인 체육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미설치 180개). 체육단체를 통합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총 63개 시·군·구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48개 시·군·구,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통합운영하고 기초자치단체가 6개 시·군·구(서울 은평구, 경기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충남 태안군, 전북 순창군), 생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통합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1개 시·군·구(충북 청원군),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통합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8개 시·군·구(울산 중구, 경기 평택시, 용인시, 김포시, 충북 증평군, 음성군, 충남 홍성군, 전북 익산시)이다.

■ 표 1-9 지방 체육단체 운영 현황

	독립운영	미설치	통합운영				소계
			체육회 생활체육회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광역	체육회	16	0				
	생활체육회	17	0	0	1	0	0
	장애인체육회	16	0				1
기초	체육회	115	31				
	생활체육회	157	11	48	6	1	8
	장애인체육회	28	180				63
통합운영 광역자치단체명		울산광역시					

	독립운영	미설치	통합운영				소계
			체육회 생활체육회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통합운영 기초자치단체명	체육회 생활체육회 통합 (48)		부산(영도구, 기장군), 인천(강화군), 대전(중구), 울산(남구, 울주군), 경기(안양시, 동두천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안성시, 광주시, 양주시, 여주군, 연천군, 포천군), 강원(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전북(정읍시, 장수군, 부안군), 전남(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강진군, 영암군, 함평군, 완도군), 경남(사천시, 함안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통합 (6)		서울(은평구), 경기(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충남(태안군), 전북(순창군)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통합 (1)		충북(청원군)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통합 (8)		울산(중구), 경기(평택시, 용인시, 김포시), 충북(증평군, 음성군), 충남(홍성군), 전북(익산시)				

- ※ 경기도 부천시, 고양시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설치예정. 동자료에서는 1개의 독립된 장애인체육회로 분류하였음.
 ※ 대구 달성군 체육회의 경우 군에서 자체운영. 동자료에서는 1개의 독립된 체육회로 분류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수에 합산하였음.

지방 자치단체의 단체 통합유형을 살펴보면 기관이 완전히 통일된 경우도 있지만 단체장과 사무처가 통합된 경우, 사무국장 겸직을 통합으로 본 경우도 있다. 이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정관상 지부는 명칭을 통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 표 1-9-1 광역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운영실태

(단위 : 명, 백만 원)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서울특별시	체육회	1처 3부 5팀	29	○		단체장 사무처 통합
	생활체육회	1처 1본부 4팀	16	○		
	장애인체육회	1처 1실 4팀	13	○		
부산광역시	체육회	1처 4팀	69(49)	○		단체장 사무처 통합
	생활체육회	1처 2부 4팀	16(2)	○		
	장애인체육회	1처 3팀	32(20)	○		
대구광역시	체육회	1처 1부 3과	17	○		단체장 사무처 통합
	생활체육회	1처 2부	9(8)	○		
	장애인체육회	1처 3과	10(9)	○		
인천광역시	체육회	1처 1본부 2부 8팀	138		○	단체장 사무처 통합
	생활체육회	1처 3팀	11	○		
	장애인체육회	1처 1과 3팀	11(15)	○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광주광역시	시체육회	1처 2부 5팀	51(31)	○		단체장 통합
	생활체육회	1처 1부 3팀	22(10)	○		
	장애인체육회	1처 3팀	9(11)	○		단체장 통합
대전광역시	체육회	1처 3부	61(40)	○		
	생활체육회	1처 3부	144(134)	○		
	장애인체육회	1처 3팀	24(14)	○		
울산광역시	체육회	1처 2과	12		○	사무처장, 사무차장겸직
	생활체육회	1처 1부 3과	7(3)	○		
	장애인체육회	1처 1과	6(7)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1처 3팀	6	○		
	생활체육회	1처 2팀	3(6)	○		
	장애인체육회	미구성	2	-		
경기도	체육회	1처 4과 1팀	20	○		
	생활체육회	1처 4과	24(7)	○		
	장애인체육회	1처 3과	24(8)	○		
강원도	체육회	1처 3과	15	○		
	생활체육회	1처 2과	12	○		
	장애인체육회	1처 3팀	20(11)	○		
충청북도	체육회	1처 1실 2팀	45(30)	○		
	생활체육회	1처 3팀	10(2)	○		
	장애인체육회	1처 3팀	22(13)	○		
충청남도	체육회	1국 3팀	16(22)	○		
	생활체육회	1국 2팀	10(3)	○		
	장애인체육회	1국 3팀	10(18)	○		
전라북도	체육회	1처 1부 2과	64(50)	○		
	생활체육회	1처 3과 1팀	16(5)	○		
	장애인체육회	1처 3팀	23(16)	○		
전라남도	체육회	1처 2부	77(62)	○		장애인체육회와 단체장겸직
	생활체육회	1처 3과	17(3)	○		
	장애인체육회	1처	18(11)	○		체육회와 단체장겸직
경상북도	체육회	1처 3팀	15	○		
	생활체육회	1처 3팀	9(3)	○		
	장애인체육회	1처 3팀	20(12)	○		
경상남도	체육회	1처 2부 1과	13(1)	○		
	생활체육회	1처 2부	13(3)	○		
	장애인체육회	1처 1과 3팀	22(14)	○		
제주도	체육회	1처 4과	16	○		
	생활체육회	1처 3팀	15(7)	○		
	장애인체육회	1처 3과	48(40)	○		

■ 표 1-9-2 기초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운영실태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서울 (23)	종로구	체육회	위원회	-	○		
		생활체육회	1국	11(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중 구	체육회	위원회	1			체육회 : 교과체육과에서담당
		생활체육회	1국	9(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용산구	체육회	위원회	-			체육회 : 문화체육과에서 담당
		생활체육회	1국	11(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성동구	체육회	미설치	-			
		생활체육회	1국	13(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광진구	체육회	1국	1	○		
		생활체육회	1국	12(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동대문구	체육회	이사회	-			
		생활체육회	1국	11(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종랑구	체육회	미구성	-			별도운영
		생활체육회	1국 2팀	10(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성북구	체육회	위원회	1		○	
		생활체육회	1국	16(14)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강북구	체육회	위원회	1	○			
	생활체육회	1국	1(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도봉구	체육회	이사회	-	○			
	생활체육회	1국	13(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노원구	체육회	1국	1(0)	○			
	생활체육회	1국	11(11)	○			
	장애인체육회	1국	1(0)	○			
은평구	체육회	이사회	1(0)		○	장애인체육회 ('13년 설립)	
	생활체육회	1과	10(5)	○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1(0)		○		
서대문구	체육회	이사회	-	○			
	생활체육회	1국	13(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마포구	체육회	이사회	1(0)	○			
	생활체육회	1국 3팀	16(1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서울 (23)	양천구	체육회	1국	1(0)	○		
		생활체육회	1국	1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강서구	체육회	위원회	2(0)	○		
		생활체육회	1국	15(14)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구로구	체육회	이사회	1(0)	○		
		생활체육회	1국	12(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금천구	체육회	이사회	-			
		생활체육회	1국	11(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영등포구	체육회	이사회	-			
		생활체육회	1국	14(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동작구	체육회	위원회	1	○		
		생활체육회	1국	12(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관악구	체육회	위원회	-	○		
		생활체육회	1국 3팀	13(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서초구	체육회	1국	1(0)	○		
		생활체육회	1국	12(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강남구	체육회	1국	1(0)	○			
	생활체육회	1국	11(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송파구	체육회	위원회	-				
	생활체육회	1국	14(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강동구	체육회	위원회	1(0)				
	생활체육회	1국	1(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부산 (16)	중구	체육회	1국	-	○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6(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서구	체육회	1국	-	○		
		생활체육회	1국	6(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동구	체육회	1국	1(0)	○		
		생활체육회	1국	8(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부산 (16)	영도구	체육회	1국	0(4)		○	체육회, 생활체육회 통합운영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부산진구	체육회	1국	-	○		
		생활체육회	1국	8(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동래구	체육회	1국	1	○		
		생활체육회	1국	8(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남구	체육회	1국	1(0)	○		
		생활체육회	1국	9(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북구	체육회	1국	-	○		
		생활체육회	1국	8(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해운대구	체육회	1국	-	○		
생활체육회		1국 2과	10(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사하구	체육회	1과	1(0)	○			
	생활체육회	1과	8(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금정구	체육회	1국	1(0)	○			
	생활체육회	1국	7(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강서구	체육회	1과	1	○			
	생활체육회	1과	8(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연제구	체육회	1국	1(0)	○			
	생활체육회	1국	7(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수영구	체육회	1국	-	○			
	생활체육회	1국	8(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사상구	체육회	1국	1(0)	○			
	생활체육회	1국	6(5)	○			
	장애인체육회	1국	1(0)	○			
기장군	체육회	1과	1(0)		○	단체장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1과	8(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대구 (8)	중 구	체육회	미설치	-			
		생활체육회	1국	9(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대구 (8)	동 구	체육회	미설치	-		
		생활체육회	1국	11(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서 구	체육회	미설치	-		
		생활체육회	1국	10(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남 구	체육회	미설치	-		
		생활체육회	1부 2과	10(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북 구	체육회	미설치	-		
		생활체육회	1국	13(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수성구	체육회	미설치	-		
		생활체육회	1국	11(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달서구	체육회	미설치	-			
	생활체육회	1국	11(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달성군	체육회	미설치	-			
	생활체육회	1국	12(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인천 (10)	중구	체육회	-	-		
		생활체육회	1국	9(8)	○	
		장애인체육회	-	-		
	동구	체육회	-	-		
		생활체육회	1국	8(7)	○	
		장애인체육회	-	-		
	남구	체육회	-	-		
		생활체육회	1과	9(8)	○	
		장애인체육회	-	-		
	연수구	체육회	-	-		
		생활체육회	1과 2팀	10(9)	○	
		장애인체육회	-	-		
	남동구	체육회	3지역위원회	-	○	
		생활체육회	1국	9(9)	○	
		장애인체육회	-	-		
부평구	체육회	-	-	○		
	생활체육회	1국	1(10)	○		
	장애인체육회	-	-			
계양구	체육회	-	-			
	생활체육회	-	11(0)	○		
	장애인체육회	-	-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인천 (10)	서구	체육회	17개 분과	1(0)	○		
		생활체육회	1국	11(10)	○		
		장애인체육회	-	-			
	강화군	체육회	1처	10(7)		○	
		생활체육회	-	-		○	
		장애인체육회	-	-			
	옹진군	체육회	1과	1(0)	○		
		생활체육회	1과	2(1)	○		
		장애인체육회	-	-			
광주 (5)	동 구	체육회	미설치	-			
		생활체육회	미설치	0(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서 구	체육회	미설치	-			
		생활체육회	미설치	0(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남 구	체육회	미설치	-			
		생활체육회	미설치	0(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북 구	체육회	미설치	-			
		생활체육회	미설치	0(14)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광산구	체육회	미설치	-			
		생활체육회	미설치	0(13)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대전 (5)	동구	체육회	1국	1(0)	○		
		생활체육회	1국	13(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중구	체육회	1국	1(0)		○	
		생활체육회	1국	14(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서구	체육회	1국	1(0)	○		
		생활체육회	1국	12(11)	○		
		장애인체육회	1국	2(1)	○		
	유성구	체육회	1국	2(0)	○		회장1, 사무국장1
		생활체육회	1국	3(14)	○		회장1, 사무국장1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대덕구	체육회	1국	1(0)	○		
		생활체육회	1국	15(14)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울산 (5)	중 구	체육회	1국	3(0)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16(13)		○	
		장애인체육회	1국	3(0)		○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울산 (5)	남 구	체육회	1국 1과	3(12)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1과	-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동 구	체육회	미설치	-			
		생활체육회	1국	2(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북 구	체육회	미설치	-			
		생활체육회	1국	12(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울주군	체육회	1국	2(0)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2(13)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경기 (31)	수원시	체육회	1국 3과	28(0)		○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1팀	16(12)	○		
		장애인체육회	1국 1팀	4(4)		○	
	성남시	체육회	1국 2과	11(0)		○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2팀	23(11)	○		
		장애인체육회	1국 1팀	3(0)		○	
	의정부시	체육회	1국 1과	3(0)	○		
		생활체육회	1국 1과	10(8)	○		
		장애인체육회	1국 1과	2(1)	○		
	안양시	체육회	1국 1과	4(0)	○		
		생활체육회	1국 1과	10(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부천시	체육회	1국 2과	5(0)		○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1과	14(10)	○		
		장애인체육회	1국 1과	3(0)		○	
광명시	체육회	1국 1과	4(0)	○			
	생활체육회	1국 1과	18(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평택시	체육회	1국 1팀	4(0)		○	3개 단체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1팀	10(7)		○		
	장애인체육회	1국 1팀	2(2)		○		
동두천시	체육회	1국 1과	2(0)		○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1과	11(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안산시	체육회	1국 4팀	8(0)	○			
	생활체육회	1국 4팀	20(14)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고양시	체육회	1국 2팀	5(0)		○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2팀	15(10)		○		
	장애인체육회	1국 1팀	3(2)	○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경기 (31)	과천시	체육회	1국 1과	5(0)		○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1과	7(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구리시	체육회	1국 1과	2(0)		○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1과	9(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남양주시	체육회	1국 3과	18(8)	○		
		생활체육회	1국 2팀	11(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오산시	체육회	2과	3(0)		○	사무국장 통합
		생활체육회	1국 2과	9(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시흥시	체육회	1국 1과	3(0)	○		
		생활체육회	1국 1과	15(12)	○		
		장애인체육회	1국 1과	2(4)	○		
	군포시	체육회	1국 1과	2(0)	○		
		생활체육회	1국 1과	11(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의왕시	체육회	1국 2과	1(0)		○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2과	8(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하남시	체육회	1과	3(0)		○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1과	12(9)		○	
		장애인체육회	1국	1(0)	○		
	용인시	체육회	1국 4과	11(0)		○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3과	16(13)		○	
		장애인체육회	1국 1과	2(2)		○	
	파주시	체육회	1국 1팀	1(0)		○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1팀	12(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이천시	체육회	1국 1과	3(0)	○			
	생활체육회	1국 1과	10(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안성시	체육회	1국 2과	5(0)		○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2과	13(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김포시	체육회	1국 2과	10(0)		○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1과	13(10)		○		
	장애인체육회	1국 1과	2(2)		○		
화성시	체육회	1국 2팀	7(0)	○			
	생활체육회	1국 1팀	14(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경기 (31)	광주시	체육회	1국 1부	3(0)		○	
		생활체육회	1국 1과	9(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양주시	체육회	1국 1과	1(0)		○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1과	10(8)		○	
		장애인체육회	1국 1과	2(2)	○		
	여주군	체육회	1팀	-		○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1팀	12(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연천군	체육회	1과	3(0)		○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1과	8(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포천군	체육회	1국 1과	5(0)		○	
		생활체육회	1국 1과	12(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가평군	체육회	1국 1과	2(0)	○		
		생활체육회	1국 2팀	9(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양평군	체육회	1국 1과	3(0)	○			
	생활체육회	1국 1과	8(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강원 (18)	춘천시	체육회	1국 3팀	20(14)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	
		장애인 체육회			미설치	-	
	원주시	체육회	1국 1차장	6(0)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	
		장애인 체육회			미설치	-	
	강릉시	체육회	1국 3과	32(26)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	
		장애인 체육회			미설치	-	
	동해시	체육회	1국 2팀	16(9)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태백시	체육회	1국	10(8)	○		
		생활체육회	1국	12(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속초시	체육회	1국 1과	2(0)	○		
		생활체육회	1국 1과	14(12)	○		
		장애인체육회	1국 1과	5(3)	○		
삼척시	체육회	1국	3(0)	○			
	생활체육회	1국	11(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강원 (18)	홍천군	체육회	1국 2팀	18(13)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횡성군	체육회	1국	11(8)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영월군	체육회	1국	6(4)	○		
		생활체육회	1국	11(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평창군	체육회	2팀	3(6)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정선군	체육회	2팀	10(6)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철원군	체육회	1국	6(0)	○		
		생활체육회	1국	7(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화천군	체육회	1국 2과	15(5)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양구군	체육회	1처	3(0)	○			
	생활체육회	1처	1(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인제군	체육회	1팀	7(3)		○	사무국 통합 단체장 분리	
	생활체육회	1팀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고성군	체육회	1국 2팀	17(16)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양양군	체육회	1국	3(1)	○			
	생활체육회	1국	11(9)	○			
	장애인체육회	1국	3(1)	○			
충북 (12)	청주시	체육회	1국	4(0)	○		
		생활체육회	1국	3(0)	○		
		장애인체육회	1국	3(0)	○		
	충주시	체육회	1국	2(0)	○		
		생활체육회	1국	12(11)	○		
		장애인체육회	1국	2(0)	○		
	제천시	체육회	1국	-		○	
		생활체육회	1국	13(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충북 (12)	청원군	체육회	1국 2팀	14(0)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	11(11)		○	
		장애인체육회					
	보은군	체육회	1국	3(0)	○		
		생활체육회	1국	10(9)	○		
		장애인체육회	1국	2(0)	○		
	옥천군	체육회	미설치	-			
		생활체육회	1국 2과	11(11)	○		
		장애인체육회	1국	2(0)	○		
	영동군	체육회	미설치	-			
		생활체육회	1국	10(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증평군	체육회	4팀	13(12)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	-		○	
		장애인체육회	-	-		○	
	진천군	체육회	1과 1팀	15(12)		○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미설치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괴산군	체육회	미설치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1국	11(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음성군	체육회	1국 2팀	15(10)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단양군	체육회	미설치	-				
	생활체육회	1국 1과	10(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충남 (15)	천안시	체육회	1국 1과	16(13)	○		
		생활체육회	1국 1과	19(16)	○		
		장애인체육회	1국 1과	5(2)	○		
	공주시	체육회	1국	1(0)	○		사무국장 (1)
		생활체육회	1국	0(8)	○		회장(1), 사무국장(1)
		장애인체육회	1국	0(1)	○		사무국장 (1)
	보령시	체육회	1국	2(0)	○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단체장 통합
		생활체육회	1국	10(8)	○		
		장애인체육회	1국	3(1)	○		
	아산시	체육회	1국	16(15)	○		
		생활체육회	1국	14(11)	○		
		장애인체육회	1국	1(1)	○		
	서산시	체육회	1국	1(5)	○		
		생활체육회	1국	1(5)	○		
		장애인체육회	1국	2(0)	○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충남 (15)	논산시	체육회	1국	2(0)	○	단체장 통합	
		생활체육회	1국	2(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계룡시	체육회	1국	2(4)	○		
		생활체육회	1국	1(4)	○		
		장애인체육회	1국	1(1)	○		
	당진시	체육회	1국	3(0)	○		
		생활체육회	1국	11(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금산군	체육회	1국	1(0)	○		
		생활체육회	1국	7(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부여군	체육회	1국	2(0)	○		
		생활체육회	1국	7(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서천군	체육회	1국	1(1)	○			
	생활체육회	1국	1(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청양군	체육회	1국	2(0)		○		
	생활체육회	1국 1과	6(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홍성군	체육회	1국	3(0)		○	단체장 통합	
	생활체육회	1국	8(6)		○		
	장애인체육회	1국	4(2)		○		
예산군	체육회	1국	4(2)	○			
	생활체육회	1국	9(8)	○			
	장애인체육회	1국	2(2)	○			
태안군	체육회	1국	2(0)		○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1국	1(6)	○			
	장애인체육회	1국	1(1)		○		
전북 (14)	전주시	통합체육회	3개과	22(11)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군산시	시민체육회	2과	10(7)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익산시	체육회	1국 2과	19(12)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정읍시	체육회	1국 2부	14(11)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남원시	체육회	1국	9(8)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장애인체육회	1국	2(1)	○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전북 (14)	김제시	통합체육회	1국	15(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완주군	체육회	미설치	-			단체장
		생활체육회	1국	10(8)	○		
	진안군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통합체육회	1국	8(6)		○	
	무주군	체육협의회	1개소	6(4)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장수군	체육회	1국	6(5)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임실군	체육회	1국	2(0)	○		
		생활체육회	1개소	6(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순창군	체육회	사무국	9(7)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장애인체육회						
고창군	통합체육회	1국	8(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부안군	체육회	1국	10(8)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전남 (22)	목포시	체육회	1국	3(0)	○		
		생활체육회	1국	13(10)	○		
		장애인체육회	1국	2(0)	○		
	여수시	체육회	1국	2(0)	○		
		생활체육회	1국	18(16)	○		
		장애인체육회	1국	2(0)	○		
	순천시	체육회	1국	3(0)	○		단체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3(15)	○		자체
		장애인체육회	1국	3(0)	○		단체장 겸직
	나주시	체육회	1국	2(1)	○		
		생활체육회	1국	10(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광양시	체육회	1국	6(0)	○		장애인체육회와 단체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12(9)	○		체육회와 단체장 겸직
장애인체육회		1국	1(0)	○			
담양군	체육회	1국	11(9)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	-		○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곡성군	체육회	1국	12(10)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	-		○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전남 (22)	구례군	체육회	1국	14(12)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	-		○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고흥군	체육회	1국	10(5)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	-		○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보성군	체육회	1국	1(0)	○		
		생활체육회	1국	8(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화순군	체육회	1국	2(0)	○		
		생활체육회	1국	15(13)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장흥군	체육회	1국	3(0)	○		
		생활체육회	1국	9(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강진군	체육회	1국	3(0)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	7(5)		○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해남군	체육회	1국	4(0)	○		사무국장, 간사 생체통합(겸직)
		생활체육회	-	11(8)	○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영암군	체육회	1국	9(7)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	-		○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무안군	체육회	1국	2(0)	○			
	생활체육회	1국	12(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함평군	체육회	1국	13(10)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	-		○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영광군	체육회	1국	2(0)	○			
	생활체육회	1국	8(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장성군	체육회	1국	1(0)	○			
	생활체육회	1국	7(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완도군	체육회	1국	3(0)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1국	7(5)		○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진도군	체육회	1국	1(0)	○			
	생활체육회	1국	5(4)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전남 (22)	신안군	체육회	1국	2(0)	○	
		생활체육회	1국	12(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경북 (23)	포항시	체육회	1국 2팀	6(0)	○	
		생활체육회	1국	2(18)	○	단체장 통합
		장애인체육회	1국	2(0)	○	
	경주시	체육회	1국	5(0)	○	
		생활체육회	1국	12(10)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김천시	체육회	1국	3(0)	○	
		생활체육회	1국	12(10)	○	
		장애인체육회	1국	1(0)	○	
	안동시	체육회	미설치	4(0)	○	
		생활체육회	미설치	4(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구미시	체육회	1국	4(0)	○	
		생활체육회	1국	14(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2013년 설치예정
	영주시	체육회	1국	1(0)	○	사무국장 (1)
		생활체육회	1국	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영천시	체육회	1국	3(0)	○	
		생활체육회	1국	10(9)	○	단체장 통합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상주시	체육회	1국 1과	3(0)	○	단체장 및 사무국통합	
	생활체육회	1국 1과	3(11)	○	생활체육회에서 담당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문경시	체육회	1국	3(0)	○		
	생활체육회	1국	2(14)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경산시	체육회	1국	5(0)	○		
	생활체육회	1국	11(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군위군	체육회	1국	0(0)	○	사무국장 (1)	
	생활체육회	1국	0(6)	○	사무국장 (1)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의성군	체육회	1국	2(0)		○	
	생활체육회	1국	1(9)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청송군	체육회	1국	2(0)	○		
	생활체육회	1국	7(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경북 (23)	영양군	체육회	1국	1(0)	○	단체장 통합 사무국장 분리	
		생활체육회	1국	5(4)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영덕군	체육회	1국	1(0)		○	
		생활체육회	1국	9(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청도군	체육회	1국	-	○		
		생활체육회	1국	7(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고령군	체육회	미설치	-	○		
		생활체육회	미설치	5(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성주군	체육회	1국	3(0)	○		
		생활체육회	1국	2(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칠곡군	체육회	미설치	1(0)	○		
		생활체육회	미설치	5(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예천군	체육회	1국	2(0)	○		
		생활체육회	1국	1(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봉화군	체육회	미설치	-			
		생활체육회	1국	9(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울진군	체육회	1국	3(0)	○			
	생활체육회	1국	9(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울릉군	체육회	1국	2(0)	○			
	생활체육회	1국	6(5)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경남 (18)	창원시	체육회	1처 3과	9(0)	○		
		생활체육회	1국 4팀	9(3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진주시	체육회	1국	3(0)	○		
		생활체육회	1국	4(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통영시	체육회	1국	2(0)	○		
		생활체육회	1국	9(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사천시	체육회	1국 2과	13(8)		○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경남 (18)	김해시	체육회	1국	5(0)	○		
		생활체육회	1국	15(12)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밀양시	체육회	1국	2(0)	○		
		생활체육회	1국	10(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거제시	체육회	1국	2(0)	○		
		생활체육회	1국	12(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양산시	체육회	1국	3(0)	○		
		생활체육회	1국	8(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의령군	체육회	1국	1(0)	○		
		생활체육회	1국	8(7)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함안군	체육회	1국	11(8)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창녕군	체육회	1국	2(0)	○		
		생활체육회	1국	13(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고성군	체육회	1국	2(0)	○			
	생활체육회	1국	11(9)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남해군	체육회	1국	4(2)	○			
	생활체육회	1국	13(11)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하동군	체육회	1국	2(0)	○			
	생활체육회	1국	11(10)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산청군	체육회	1국	2(0)		○	단체장 및 사무국 통합	
	생활체육회	1국	7(6)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함양군	체육회	1국	3(3)		○		
	생활체육회	1국	8(8)	○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거창군	체육회	1국	10(7)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1국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합천군	체육회	1국	2(0)		○	사무국 통합 사무국장 겸직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구분	조직구조	직원수 (지도자)	사무국운영		비 고 (통합유형)
				독립	통합	
제주 (2)	제주시	체육회	1국 1팀	5(0)	○	사무국장 (1)
		생활체육회	1국 1팀	4(0)	○	사무국장 (1)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서귀포시	체육회	1국	6(2)	○	사무국장 (1)
		생활체육회	1국 2팀	4(0)	○	사무국장 (1)
		장애인체육회	미설치	-		

3. 체육단체

1) 대한체육회

가. 설립배경 및 목적

대한체육회는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7월 13일에 조선체육회라는 명칭으로 창립되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살리자는 취지로 민족지도자들에 의해 창설된 대한체육회는 1938년 7월 4일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으나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부활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체육단체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9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체육회는 매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여 우수 선수발굴과 스포츠 인구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꿈나무청소년대표·국가대표후보선수·국가대표 선수로 이어지는 우수선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여,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해 설립된 대한체육회는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진흥, 체육인의 복지 향상,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사업,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다.

나. 연 혁

1920년 7월 13일 기미년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창립된 조선체육회는 1938년 7월 4일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으나, 1945년 11월 26일 광복과 더불어 조선체육회로 다시 부활하였다.

한편 런던올림픽 참가를 위하여 1946년 7월 15일 조선체육회 내에 올림픽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조선올림픽위원회(Korean Olympic Committee/KOC) 출범의 계기가 됐다. 조선올림픽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National Olympic Committee)로서 1947년 6월 20일 제41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IOC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체육단체가 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조선체육회는 대한체육회로, 조선체육회 내부 조직이었던 조선올림픽위원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로 명칭이 개칭되었다(1948년 9월 3일).

또한 1954년 3월 16일에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로 인가를 받았으며, 1969년 9월 8일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완전 분리되어 독립기구인 사단법인체로 출범했다가 이후 심각한 체육계 내부 갈등을 겪은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8년 3월 1일에는 대한체육회에 대한올림픽위원회 및 대한학교체육회가 흡수 통합되었다.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대한체육회 내 정관상의 특별위원회로의 지위를 갖게 됐다. 1982년 12월 31일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대한체육회를 특수법인으로 지정하였다.

2009년 6월 29일 대한체육회 정관을 개정, 종전 정관상 특별위원회인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에 통합시켜 대한체육회(Korean Olympic Committee, 영문약칭 'KOC')가 IOC에 가입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사업에 관하여 IOC와 대외적 교섭을 갖는 유일한 단체로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올림픽 정신을 함양, 보급하고 아마추어 스포츠의 기초를 이루는 정신적, 신체적 자질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제친선과 세계평화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 참여 등의 목적을 추가하였다.

주요 국제스포츠행사 개최실적은 1986년에 제10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였고, 1988년에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1996년 4월에는 제6차 IOC 세계생활체육총회 개최를 비롯하여, 1997년 1월 제18회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1997년 5월 제2회 부산 동아시아경기대회, 1999년 1월 제4회 강원 동계아시아

경기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999년 6월 17일 제109차 IOC총회, 2002년 9월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03년 8월 제22회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아울러, 2006년 3월에는 제15차 국가올림픽총연합회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07년 4월 2014년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였고, 2009년에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였다. 특히 2011년 7월 6일에는 2018년 동계올림픽대회를 평창에 성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축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까지 주요 국제대회를 모두 유치하는 데 기여하였다.

역대 대한체육회(KOC) 회장과 IOC위원 현황은 <표 1-10>, <표 1-11>과 같다.

■ 표 1-10 역대 대한체육회(KOC) 회장

대한체육회장		KOC위원장		기 간 (KOC위원장)		대한체육회장		KOC위원장		기 간 (KOC위원장)	
제1대	장두현			1920. 7.13 ~ 1921. 7.22	제21대	이 효	제9대	이 효	1963. 4.29 ~ 1964. 1.19 (1962.12.19 ~ 1964. 1.19)		
제2대	고원훈			1921. 7.23 ~ 1923. 7.22			제10대	이상백	(1964. 1.10 ~ 1966. 4.14)		
제3대	최 린			1923.11.28 ~ 1924. 6.30			제11대	장기영	(1966. 6.15 ~ 1968. 2.28)		
제4대	박창하			1924. 7. 1 ~ 1924.11.12	제22대	민관식	제12대	민관식	1964. 1.27 ~ 1971. 7. 5 (1968. 3. 1 ~ 1970. 1.19)		
제5대	이동식			1924.11.13 ~ 1925. 3.29	제23대	김용우	제13대	김용우	1971. 7. 5 ~ 1971.11.20 (1971. 7. 5 ~ 1971.11.20)		
제6대	김규면			1925. 3.30 ~ 1925. 9. 1	제24대	김택수	제14대	김택수	1971.11.20 ~ 1979. 2.14 (1974. 2.13 ~ 1976. 2. 8)		
제7대	신흥우			1925. 9.11 ~ 1927. 7.14	제25대	박종규	제15대	박종규	1979. 2.15 ~ 1980. 7.13 (1979. 2.15 ~ 1980. 7.13)		
제8대	유억겸			1927. 7.18 ~ 1928. 8.17	제26대	조상호	제16대	조상호	1980. 7.14 ~ 1982. 7.11 (1980. 7.14 ~ 1982. 7.11)		
제9대	윤치호			1928. 8.18 ~ 1937. 7. 2	제27대	정주영	제17대	정주영	1982. 7.12 ~ 1984.10. 1 (1982. 7.12 ~ 1984.10. 1)		
제10대	유억겸			1937. 7. 3 ~ 1938. 7. 3	제28대	노태우	제18대	노태우	1984.10. 2 ~ 1985. 4.25 (1984.10. 2 ~ 1985. 4.25)		
제11대	여운형	제1대	여운형	1945.11.26 ~ 1947. 9. 1 (1947. 6.15 ~ 1947. 7.19)	제29대	김종하	제19대	김종하	1985. 4.26 ~ 1989. 2.17 (1985. 4.26 ~ 1989. 2.17)		
제12대	유억겸			1947. 9.18 ~ 1947. 11.8	제30대	김종렬	제20대	김종렬	1989. 2.18 ~ 1993. 2.23 (1989. 2.18 ~ 1993. 2.23)		
제13대	정환범	제2대	정환범	1948. 2. 6 ~ 1948. 9. 3 (1947. 9.18 ~ 1948. 9. 3)	제31대	김운용	제21대	김운용	1993. 2.24 ~ 1997. 2.25 (1993. 2.24 ~ 1997. 2.25)		
제14대	신익희	제3대	신익희	1948. 9. 4 ~ 1949.10.29 (1948. 9. 4 ~ 1949.10.29)	제32대	김운용	제22대	김운용	1997. 2.26 ~ 2001. 2.26 (1997. 2.26 ~ 2001. 2.26)		

대한체육회장		KOC위원장		기 간 (KOC위원장)		대한체육회장		KOC위원장		기 간 (KOC위원장)	
제15대	신홍우	제4대	신홍우	1949.10.29 ~ 1951. 6.16 (1949.10.29 ~ 1951. 6.16)		제33대	김운용	제23대	김운용	2001. 2.27 ~ 2002. 3.12 (2001. 2.27 ~ 2002. 3.12)	
제16대	조병옥	제5대	조병옥	1951. 6.17 ~ 1952. 9.27 (1951. 6.17 ~ 1952. 9.26)		제34대	이연택	제24대	이연택	2002. 5.29 ~ 2005. 2.23 (2002. 5.29 ~ 2005. 2.23)	
제17대	이기봉	제6대	이기봉	1952. 9.27 ~ 1960. 4.28 (1952. 9.27 ~ 1960. 4.28)		제35대	김정길	제25대	김정길	2005. 2. 24 ~ 2008. 4.28 (2005. 2. 24 ~ 2008. 4.28)	
제18대	이철승			1961. 1.28 ~ 1961. 5.15		제36대	이연택	제26대	이연택	2008. 5.26 ~ 2009. 2.19 (2008. 5.26 ~ 2009. 2.19)	
제19대	김동하	제7대	김동하	1961. 7.29 ~ 1962. 1. 9 (1961. 7.29 ~ 1962. 1. 8)		제37대	박용성	제27대	박용성	2009. 2.19 ~ 2013.2.22 (2009. 2.19 ~ 2009. 6.28)	
제20대	이주일	제8대	이주일	1962. 1. 9 ~ 1962.12.27 (1962. 3.16 ~ 1962.12.18)		제38대	김정행	-	-	2013. 2. 22~현재	

※ 2009. 6. 29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완전 통합됨.

■ 표 1-11 우리나라 역대 IOC위원

성 명	기 간	성 명	기 간
이기봉	1955 ~ 1960	김운용	1986 ~ 2005
이상백	1964 ~ 1966	이건희	1996 ~ 현재
장기영	1967 ~ 1977	박용성	2002 ~ 2007
김택수	1977 ~ 1983	문대성	2008 ~ 현재
박종규	1984 ~ 1985		

다. 조직 및 인력

대한체육회 정관 제5조는 “체육단체는 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가맹단체는 정가맹단체, 준가맹단체 및 인정단체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5조 제3항에서는 대한체육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 광역사도, 특별자치사도에 지부를 두고, 정관 제6조에 따라 해외에도 재외한인체육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70개의 가맹경기단체와 17개의 사도지부, 18개의 재외한인체육단체를 두고 있다. 사도체육회에는 해당 사도의 행정구역별로 조직된 217개 시·군·구 체육회와 읍·면·동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다. 사도별 체육회 및 재외한인체육단체는 <표 1-12>와 <표 1-13>과 같다.

■ 표 1-12 시도 체육회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설 립 일	예 산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특별 시 체 육 회	1953. 2.20	18,454	20,098	16,689	16,848	11,847
부산 광역 시 체 육 회	1963. 3.17	12,861	14,381	16,126	14,912	15,197
대구 광역 시 체 육 회	1981. 7.20	9,166	9,656	10,549	12,640	14,886
인천 광역 시 체 육 회	1981. 7. 1	21,318	25,056	28,782	36,290	20,315
광주 광역 시 체 육 회	1986.11. 1	8,051	11,928	6,959	6,901	7,280
대전 광역 시 체 육 회	1989. 1. 1	13,266	25,635	18,039	12,423	12,419
울산 광역 시 체 육 회	1997. 7.15	10,119	11,084	11,255	11,033	11,066
세종특별자치시 체 육 회	2012. 7.10	-	-	-	-	1,465
경기도 체 육 회	1946. 2	21,810	24,915	23,275	20,228	19,977
강원도 체 육 회	1946. 5. 1	12,706	10,714	12,862	7,396	10,600
충청북도 체 육 회	1946. 3	8,368	8,332	8,599	8,903	9,444
충청남도 체 육 회	1927. 3	17,483	17,296	16,574	14,968	14,523
전라북도 체 육 회	1947. 3.13	17,532	23,704	12,738	13,199	13,578
전라남도 체 육 회	1945. 9	16,053	7,407	9,169	8,803	9,257
경상북도 체 육 회	1949. 1	8,203	9,614	11,311	11,468	11,783
경상남도 체 육 회	1945.12.22	12,523	14,915	18,713	15,837	15,774
제주도 체 육 회	1951. 6.15	5,844	5,940	6,364	5,917	8,348

※ 자료 : 대한체육회

■ 표 1-13 대한체육회 재외한인체육단체 현황

구 분	승인일	구 분	승인일	구 분	승인일
일본	1962. 5. 25	브라질	1985. 9.25	뉴질랜드	1994. 7. 8
미국	1972. 7. 4	호주	1987. 9.28	필리핀	2001.11.15
	2013. 1. 31(재승인)				
독일	1976. 6. 3	아르헨티나	1987. 9.28	중국	2005. 4. 7
캐나다	1977. 9.19	파라과이	1989. 3.27	영국	2006. 9.27
스페인	1982. 9. 6	괌	1989. 3.27	말레이시아	2008. 4.25
홍콩	1984. 8.31	사이판	1998. 2. 5	인도네시아	2011. 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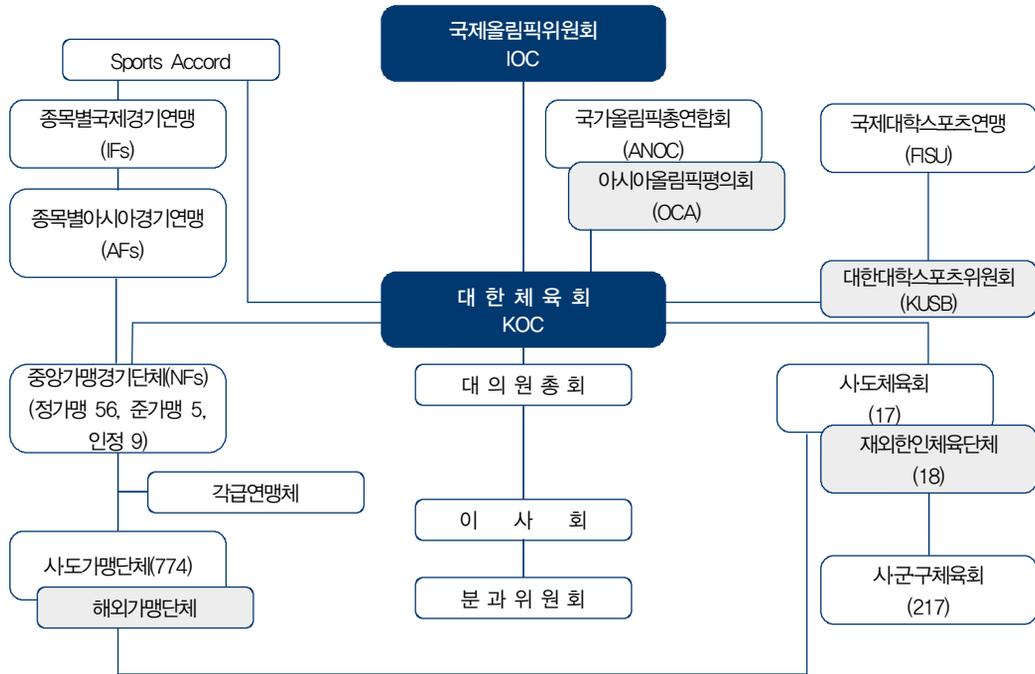


그림 1-2 국내외 체육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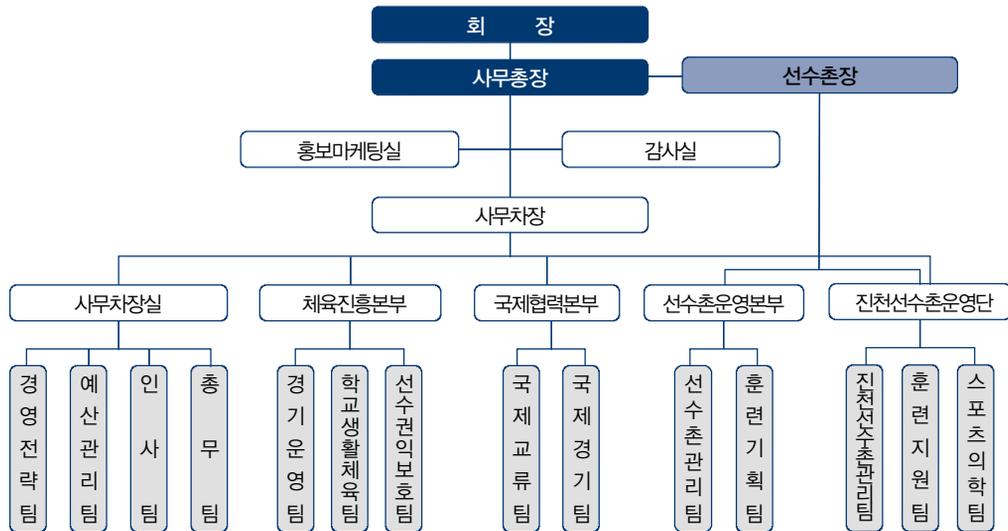


그림 1-3 대한체육회 기구표('12. 12. 31 기준)

대한체육회는 정관상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와 최고집행기관인 이사회, 각종위원회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있다. 각종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조사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국제위원회, 전국체육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 문화·환경·교육위원회, 의무위원회, 법제상별위원회, 홍보위원회가 있다. 또한 체육회의 사업추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로 마케팅·재정위원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무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대학스포츠의 발전, 스포츠를 통한 국제학생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가맹단체이다.

대한체육회는 회장 아래 사무총장, 선수총장이 있고 사무총장의 역할을 보좌하기 위해 사무차장이 있다. 또한 직제와 별도로 국제체육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제위원장을 두어 회장을 보좌하고 있다. 조직원은 임원의 경우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7명, 감사 2명이며, 사무처는 1사무총장 1선수총장 1사무차장 3본부 2실 1단 1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73명이다.

라. 가맹경기단체 현황

대한체육회에 속한 경기단체는 정가맹 경기단체와 준가맹 경기단체로 구분된다. 정가맹 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5조에 따라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약속하여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가맹을 확정 받은 경기단체를 말한다. 준가맹 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에 가맹시킬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가맹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로서 정관 제5조에 따라 제11조의 권리사항을 제한적으로 적용받는 경기단체를 말한다.

대한체육회는 정가맹 경기단체와 준가맹 경기단체 이외에 필요한 경우 당해 단체의 대표성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되 대한체육회와의 권리·의무관계가 없는 인정단체를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단체의 경우에도 명시된 승인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대한체육회에는 56개 정가맹경기단체, 5개 준가맹경기단체, 9개 인정단체 등 총 70개 가맹경기단체가 있으며 해당 종목의 보급 및 선수의 양성, 국내대회의 개최,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및 파견 등 국제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에 속한 경기단체 현황은 <표 1-14>와 같다.

■ 표 1-14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현황

연번	단체명	영문	설립일	예산(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1	대한육상경기연맹(사)	Korea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	1945. 9.23	7,310	9,012	9,890	8,804	6,136
2	대한축구협회(사)	Korea Football Association	1933. 9.19	81,088	87,199	80,602	69,001	97,971
3	대한테니스협회(사)	Korea Tennis Association	1945.11.26	5,111	5,962	5,651	6,029	7,474
4	대한정구협회(사)	Korea Soft Tennis Association	1920. 5. 1	946	866	953	888	1,087
5	대한탁구협회(사)	Korea Table Tennis Association	1945. 9.28	2,517	2,961	3,788	3,658	4,506
6	대한핸드볼협회(사)	Korea Handball Federation	1945. 7.27	4,006	5,964	11,092	9,936	10,271
7	대한역도연맹(사)	Korea Weightlifting Federation	1936. 5	2,002	2,326	1,857	2,005	1,934
8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	Korean Amateur Boxing Federation	1934. 1.20	1,546	1,693	1,466		1,628
9	대한빙상경기연맹(사)	Korea Skating Union	1945.11.24	4,819	4,381	5,358	5,173	6,696
10	대한유도회(사)	Korea Judo Association	1945.10.28	3,637	3,607	4,284	3,568	3,636
11	대한체조협회(사)	Korea Gymnastic Association	1945. 9. 1	5,571	2,924	2,873	2,954	3,555
12	대한사이클연맹(사)	Korea Cycling Federation	1945.11.30	2,442	3,532	5,305	4,013	4,160
13	대한농구협회(사)	Korea Basketball Association	1931. 4.11	2,959	3,583	3,797	3,673	4,018
14	대한배구협회(사)	Korea Volleyball Association	1945. 3. 6	4,804	4,878	3,932	3,817	4,029
15	대한씨름협회	Korea Ssireum Association	1927. 9	963	1,812	3,165	3,549	4,566
16	대한럭비협회(사)	Korea Rugby Union	1946. 3.10	1,367	1,228	1,415	1,270	1,727
17	대한레슬링협회(사)	Korea Wrestling Federation	1946. 3.14	3,327	3,323	3,571	3,469	5,336
18	대한수영연맹(사)	Korea Swimming Federation	1946. 3.15	3,049	2,932	3,634	3,527	4,039
19	대한야구협회(사)	Korea Baseball Association	1946. 3.18	2,271	2,942	2,956	4,516	6,078
20	대한스키협회(사)	Korea Ski Association	1946. 4.28	3,398	3,292	4,699	5,541	5,195
21	대한승마협회(사)	Korea Equestrian Federation	1945.10. 5	2,112	2,467	4,090	2,910	2,798
22	대한아이스하키회(사)	Korea Ice-Hockey Association	1930.11	1,794	1,374	1,331	1,607	2,453
23	대한하키회(사)	Korea Hockey Association	1947. 6. 7	2,802	1,908	2,817	2,675	3,243
24	대한검도회(사)	Korea Kumdo Association	1953.11.20	1,800	2,006	1,814	2,040	2,150
25	대한궁도협회	Korea National Archery Association	1922. 7.11	626	623	670	582	616
26	대한사격연맹(사)	Korea Shooting Federation	1955. 2. 8	3,101	4,319	4,741	6,481	6,519
27	대한펜싱협회(사)	Korea Fencing Association	1947.11.26	2,765	2,277	3,063	3,571	4,228
28	대한태권도협회(사)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961. 9.16	5,628	5,538	5,977	7,582	7,688
29	대한배드민턴협회(사)	Badminton Korea Association	1957.11.15	8,617	10,104	7,846	10,706	11,466
30	대한조정협회(사)	Korean Rowing Association	1962.10.31	1,788	1,837	2,535	4,233	4,226
31	대한롤러경기연맹(사)	Korea Roller Sports Federation	1972. 1.20	894	862	1,233	2,371	1,286
32	대한요트협회(사)	Korea Sailing Federation	1979. 3.17	2,425	2,778	2,752	2,787	3,459
33	대한볼링협회(사)	Korea Bowling Congress	1969. 8.10	1,394	1,540	1,751	1,597	2,375
34	대한양궁협회	Korea Archery Association	1983. 3. 4	3,702	3,680	3,625	3,631	5,431
35	대한카누연맹(사)	Korean Canoe Federation	1983. 3.26	1,381	1,401	1,898	1,681	2,121
36	대한골프협회(사)	Korea Golf Association	1965. 9.23	3,357	8,657	3,806	3,485	3,809
37	대한근대5종연맹(사)	Korea Modern Pentathlon Federation	1982. 9.15	2,318	2,329	2,501	3,099	3,335
38	대한수상스카워이크 보드협회(사)	Korea Waterski and Wakeboard Association	1979. 2.10	594	683	959	507	800

연번	단체명	영문	설립일	예산(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39	대한산악연맹(사)	Korean Alpine Federation	1962. 4.23	2,390	2,853	3,121	3,802	4,274
40	대한보디빌딩협회(사)	Korea Bodybuilding Federation	1987. 6.16	612	645	612	676	658
41	대한씨탁타크로협회(사)	Korea Sepaktakraw Association	1988. 8.29	653	985	981	831	966
42	대한수중핀수영협회(사)	Korea Underwater Association	1968. 3.6	1,479	1,659	1,575	1,485	1,731
43	대한우수쿵푸협회(사)	Korea Wushu Association	1989. 1.20	666	837	1,137	798	828
44	대한소프트볼협회(사)	Korea Softball Federation	1989. 1.25	799	771	699	535	837
45	대한B,S경기연맹	Korea Bobsleigh Skeleton Federation	1989. 5. 5	554	845	889	1,187	1,420
46	대한컬링경기연맹	Korean Curling Federation	1994. 1.25	551	609	615	731	1,850
47	대한트라이애슬론경기연맹(사)	Korea Triathlon Federation	1987. 8. 2	2,323	1,995	2,587	1,819	1,725
48	대한바이애슬론연맹(사)	Korea Biathlon Union	1982. 9.15	974	1,125	1,182	1,585	2,228
49	대한스쿼시연맹	Korea Squash Federation	1989. 5.24	677	657	654	640	554
50	대한당구연맹	Korea Billiard Federation	1981. 3.12	1,528	1,707	1,822	1,239	1,473
51	대한택견연맹(사)	Korea Taekkyon Association	1984. 9.20	433	519	495	462	511
52	대한공수도연맹	Korea Karatedo Federation	1962.10.23	756	778	765	886	1,111
53	대한민스스포츠경기연맹	Korea Federation of Dancesport	2001. 10.1	740	857	1,332	648	754
54	대한루지경기연맹	Korea Luge Federation	1989. 5. 5	181	271	318	434	603
55	대한바둑협회(사)	Korea Amateur Baduk Association	2005.11.24	1,869	2,809	2,602	2,262	2,460
56	대한카바디협회	Korea Kabaddi Association	2002.10. 4	-	-	-	-	526

마. 재정현황

대한체육회의 2012년도 예산은 자체수입 175억 원, 국고 412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875억 원, 공익사업적립금 78억 원 등 총 1,540억 원 규모이다.

2012년 국고 및 자체예산이 증가된 것은 2012년 런던올림픽 관련 훈련수당 증액 등 훈련여건 개선 및 선수단 격려금 수입에 따른 것이고 기금 예산이 감소된 것은 진천선수촌 1단계 사업 준공에 따른 공사비 감액 등에 기인한다.

■ 표 1-15 대한체육회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년	계(A)	재원별				자체예산비중 (B/A)×100(%)
		국고	기금	공익사업적립금	자체(B)	
2008년	136,299	64,977	58,756	-	12,566	9.2
2009년	134,931	67,835	56,023	2,575	8,498	6.3
2010년	141,078	35,604	82,801	9,256	13,417	9.5
2011년	188,661	36,105	128,912	7,613	16,031	8.5
2012년	154,020	41,211	87,489	7,781	17,539	11.39

※ 자료 :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의 2012년 총 예산은 2,063억 원 규모이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한체육회 등의 보조금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찬조금 등 자체수입 규모는 57억 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가맹경기단체의 2012년도 총 예산은 2,766억 원으로 국고와 기금 보조금과 사업수익, 찬조금 등 자체 수입으로 구성된다. 전체 예산 중 자체 수입은 2,09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5.7%를 차지하고 있다.

■ 표 1-16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및 가맹경기단체의 자체수입 비율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예산 (A)	자체 수입 (B)	B/A × 100 (%)	전체 예산 (A)	자체 수입 (B)	B/A × 100 (%)	전체 예산 (A)	자체 수입 (B)	B/A × 100 (%)	전체 예산 (A)	자체 수입 (B)	B/A × 100 (%)	전체 예산 (A)	자체 수입 (B)	B/A × 100 (%)
시도 체육회	213,757	6,116	2.9	240,675	7,693	3.2	228,004	7,832	3.4	217,766	5,880	2.7	206,294	5,673	2.7
가맹 경기단체	207,442	159,978	77.1	228,747	178,275	77.9	235,107	178,493	75.9	226,981	170,363	75.1	276,555	209,314	75.7

※ 자료 : 대한체육회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가. 설립배경 및 목적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는 국민에게는 ‘대통합의 장’이 되었으며, 민족적으로는 성취감과 자긍심을 높였고,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서울올림픽대회를 영원히 기념하고 올림픽의 숭고한 정신과 성과를 보존, 발전시키고 그 결과를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4월 20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연 혁

국민체육진흥재단을 모체로 하여 1989년 4월 20일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 경기시설이나 공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0년 7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을 설립하였다. 그 후 공단은 국제청소년교류, 청소년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국제선수단 숙소 제공을 위하여 1990년 9월 올림픽유스호스텔을 개관하였고, 1993년 12월에는 (주)한국스포츠TV를 설립하였다.

또한 1994년 10월에는 안정적인 체육진흥재원 조성을 위해 잠실경륜장을 개장하였으며, 1999년 1월에는 체육과학연구원을 통합하여 부설기관으로 설치하였다. 2000년 1월에는 경영효율화의 한 방편으로 (주)한국스포츠TV를 매각하였으며, 2001년 10월에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개시하였다. 2002년 6월에는 경정장을 개장하였고, 2003년 9월에는 올림픽홀을 개관하고, 2004년 9월에는 소마미술관을 개관하였다. 2006년 2월에는 경륜장을 광명돛경륜장으로 이전하였고, 2008년 11월에는 조직효율화의 일환으로 경륜, 경정운영본부를 경륜경정사업본부로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조직 및 인력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본부 이외에 스포츠산업본부와 경륜경정사업본부, 체육과학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출자회사로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이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체 조직은 이사장을 비롯하여 3임원 3본부(원)장 3단 38실 70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단본부는 3임원 8실 19팀으로 되어 있다. 스포츠산업본부는 1본부장 1단 3실 14팀으로 되어 있고 경륜경정사업본부는 1본부장 2단 23실 32팀으로 되어 있으며 연구원은 1원장 4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력현황은 본부 165명, 스포츠산업본부 117명, 경륜경정사업 402명, 연구원 6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은 서울올림픽 기념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올림픽공원·경정공원·경주시설·스포츠센터 등 공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스포츠·문화사업 전문회사로 성장하였으며 현재 1대표 이사 1전문위원 5실 11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1-17 국민체육진흥공단 인력 현황(2012. 12. 31.기준)

구 분	정 원 (현 원)						
	계	임 원	본부장/원장	관리직	일반직	연구직	운영직
계	761(758)	3(3)	3(3)	3(3)	472(472)	41(35)	238(239))
본 부	163(200)	3(3)	-	-	127(149)	-	33(45)
스포츠산업	125(136)	-	1(1)	1(1)	96(95)	-	27(39)
경륜·경정사업	402(348)	-	1(1)	2(2)	206(203)	-	173(143)
연구원	71(74)	-	1(1)	-	24(26)	41(35)	5(12)
(주)체육산업개발	172(180)	1(1)	-	-	133(137)	-	38(42)

라. 자산현황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이익잉여금 3,110억원 등 발족기금 3,521억원으로 시작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조성액은 2012년 12월말 현재 1조 8,477억원이다. 주요 고정자산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 표 1-18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정자산(2012. 12. 31.기준)

구 분	내 역
올 림 픽 공 원	770,908.90㎡(서울시 소유 몽촌토성 676,213.5㎡ 별도)
올 림 픽 회 관	연면적 24,303.35㎡, 지하 2층, 지상 15층
경 기 장 (6개)	연면적 114,077.67㎡(올림픽체조경기장, 핸드볼경기장, 올림픽역도경기장, 올림픽수영장, 테니스장, 벨로드롬)
올림픽유스호스텔	연면적 25,139.99㎡, 지하 1층, 지상 18층
올 림 픽 홀	연면적 16,883.71㎡, 지하 1층, 지상 2층
소마미술관	연면적 10,191.17㎡, 지하 2층, 지상 2층
컨벤션센터	연면적 10,116.41㎡, 지상 3층
광명동경륜장	연면적 75,491㎡, 지하 1층, 지상 5층
경 륜 훈 련 원	연면적 18,589.08㎡
경 정 훈 련 원	연면적 13,774.86㎡
올림픽 스포츠센터	분 당 대지 3,880.00㎡, 연면적 17,141.23㎡ (지하3층, 지상 5층) 일 산 대지 3,716.50㎡, 연면적 35,849.45㎡ (지하6층, 지상10층)
구 축 물	조각작품 및 기념조형물 219점

마. 예 산

보조금사업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과 별도로 운영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12년도 법인회계 규모는 1조 4,227억 원으로 주요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표 1-19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인회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사 업	금 액	사 업	금 액
	합 계	1,422,723	합 계	1,422,723
본 부	계	108,680	계	108,680
	일 반 관 리	6,564	일 반 관 리	25,297
	올 림 픽 공 원	31,730	올 림 픽 공 원	30,320
	스 포 츠 센 터	13,569	스 포 츠 센 터	11,866
	스 포 츠 산 업	2,034	건 설 관 리	14,491
	올 림 픽 유 스 호 스텔	19,480	스 포 츠 산 업	3,921
	경 료·경 정·투표권 전입금	35,304	투 표 권 운 영	1,861
			올 림 픽 유 스 호 스텔	18,097
			기	2,828
경 료	계	302,422	계	302,422
	경 료 수 득 금	248,906	본 장 운 영	120,805
	교 차 투 표 수 수 료	15,891	경 료 훈 련 원	3,883
	운 영 자 금 이 자 수 입	7,063	지 점 운 영	59,449
	지 점 매 점 수 입	10,472	스 포 츠 단	2,851
	경 정 지 점 공 동 활 용 등	14,000	경 료 예 비 비	586
	입 장 수 료	3,333	시 설 환 경 개 선 준 비 금	20,742
	기 타 수 입	2,757	타 기 관 배 분 금	46,297
			공 단 전 출 금	47,640
			사 감 위 분 담 금	169
경 정	계	96,900	계	96,900
	경 정 수 득 금	91,365	본 장 운 영	44,283
	운 영 자 금 이 자 수 입	1,395	경 정 훈 련 원	5,085
	본 장 매 점 수 입	520	지 점 운 영	17,950
	조 정 호 수 입	1,606	스 포 츠 단	825
	입 장 수 료	1,404	경 정 예 비 비	280
	기 타 수 입	610	시 설 환 경 개 선 준 비 금	7,614
			타 기 관 배 분 금	11,800
			공 단 전 출 금	9,025
			사 감 위 분 담 금	39
투 표 권	계	900,459	계	900,459
	투 표 권 수 입	859,650	투 표 권 위 탁 비	286,559
	지 급 보 증 금 회 수	22,331	타 기 관 배 분 금	126,080
	운 영 자 금 이 자 수 입	18,479	공 단 전 출 금	487,820
국 고	계	14,261	계	14,261

보조금사업이 포함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2012년도 운용 규모는 9,482억 원으로 경륜·경정·투표권 전입금 5,123억 원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 주요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표 1-20 2012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수입	금액	지출	금액
계	842,524	계	842,524
○ 이자수입	14,996	○ 기금관리비	10,098
○ 회원제골프장수입	45,212	○ 사업운영비	12,336
○ 투자사업수입	23,572	- 부가금운영	1,037
○ 연구원 운영수입	1,747	- 투자사업운영	2,696
○ 법인회계전입금	512,361	- 연구원운영	4,210
- 경륜	42,372	- 생활체육인프라운영	4,396
- 경정	11,462	○ 보조금(기금지원)	682,643
- 투표권	458,527	○ 용자지출	8,240
○ 복권기금전입금	41,252	○ 투자지출	21,086
○ 용자회수	11,233	○ 공자금예탁	-
○ 여유자금회수	162,020	○ 여유자금운용	213,800

3) 국민생활체육회

가. 설립배경 및 목적

1986년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 이후 일반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열기 고조, 산업발달과 자동화시대의 도래로 국민건강 및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어 생활체육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수립 및 시설건립 뿐만 아니라 클럽중심의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선진국들처럼 체육동호인의 활동을 적극 육성,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동호인 단체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이들 단체들을 대표하는 민간차원의 생활체육 중심단체를 통해 지원함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전국의 체육동호인들은 1990년 7월부터 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 결성을 시작하였으며, 이어 시도 단위의 생활체육회 구성을 추진하여 1990년 11월 30일 15개 시도생활체육협의회가 결성되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이러한 배경 아래, 민간차원에서 범국민 체육활동을 확산하고 다양한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목적으로 각 시도생활체육협의회의 참여 속에서 1991년 2월 6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명칭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관련 중심단체로서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국민건강과 체력 증진, 국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선진 체육문화 창달, 세계 한민족의 동질성과 조국애 함양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연 혁

국민생활체육회는 1991년 2월 6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명칭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이후 1991년 3월 9일 국민생활체육전국축구연합회의 가입을 시작으로 종목별연합회가 속속 결성되었다. 또한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에서 개최하던 세계한민족축전 행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체육관련단체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산하단체 경영합리화 방침에 따라 1994년 7월 31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재단법인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가 통합되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세계한민족축전의 운영 및 참가동포의 사후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해외동포를 위한 해외생활체육 실천 기능을 추가하게 되는 등 풀뿌리 생활체육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조직망을 형성하게 되었다.

아울러 2009년 6월 10일 단체명칭을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정부 생활체육 업무 전담기관으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국민생활체육회로 변경하였다.

다. 조직 및 인력

국민생활체육회는 2012년 12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생활체육회와 66개 전국종목별 연합회 및 6개 협력·등록단체가 있으며, 시도생활체육회에는 해당 시도 행정구역별 시·군·구생활체육회와 생활체육 시도별 종목별연합회로 구성되는데 전국적으로 230개 시·군·구생활체육회와 94종목 710개의 시도종목별연합회가 있고, 시·군·구생활체육회는 117종목 6,667개 시·군·구종목별연합회로 구성되어 전국적인 동호인클럽 연결망을 갖추

고 점차 선진국형 발전 형태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정관상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와 최고집행기관인 이사회 및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있다. 사무처는 2실 4부가 있으며, 전략기획실은 기획, 예산, 국회, 규정, 종목육성부는 전국종목별연합회 관리업무와 관련 사업 지원, 지역진흥부는 지역생활체육회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 경영관리부는 인사, 총무, 이사회·총회 업무, 홍보마케팅부는 홍보 및 정보화 업무, 감사실은 자체 및 대외감사, 청렴·반부패·윤리의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원은 창립초기 임원인 회장, 사무총장 포함 정원 25명으로 출범한 이래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증가하는 국민생활체육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직의 확대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던 중, 정부의 체육단체 통폐합 정책에 따라 1994년 7월 31일 세계한민족체육위원회를 통합하여 정원을 47명으로 증원하였다. 이후 21세기 무한경쟁의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고 생활체육 정보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전산 인력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어 1996년 3월 11일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정원 52명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으나, 1998년 IMF로 인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하여 정원이 38명으로 축소되었고 2009년 3월, 37명으로 재조정된 이후 2012년 감사실 신설에 따른 3명의 인력증원으로 현재 4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1-4 국민생활체육회 구성도



그림 1-5 국민생활체육회 사무처 기구 : 2실 4부

라. 회원단체 현황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는 각 시도생활체육회와 전국종목별연합회로 구성한다. 종목별연합회는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인정한 종목별 체육동호인의 중앙조직을 말하며,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로 구분된다. 시도생활체육회는 시군구생활체육회와 시도종목별연합회로 구성되며, 시군구생활체육회는 시군구종목별연합회로 구성된다.

시도(시군구)생활체육회는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여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 사업으로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 지역주민 참여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를 통한 생활체육 동호인의 지속적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종목별연합회는 해당 종목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신규 동호인클럽을 창출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목적으로 전국규모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주관, 해당종목 보급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신규 동호인클럽 창출을 위한 안내 및 동호인 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표 1-21 시도생활체육회 현황

구 분	설 립 일	예 산(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특별시	1990.11.20	7,759(15,552)	11,746(22,025)	11,536(24,816)	11,431(18,147)	12,460(19,865)
부산광역시	1991. 3.20	1,675(4,641)	2,904(6,176)	2,486(6,105)	2,370(5,947)	2,678(4,780)
대구광역시	1991. 2. 1	4,818(7,263)	3,009(6,549)	2,819(6,153)	1,893(5,538)	2,359(3,916)
인천광역시	1991. 4.25	2,998(4,898)	5,145(8,261)	2,953(5,508)	2,720(3,665)	2,318(2,981)
광주광역시	1991. 4.22	1,232(3,016)	2,838(4,846)	2,574(4,683)	2,478(4,544)	3,239(5,348)
대전광역시	1991. 7.26	1,746(4,494)	3,804(6,410)	3,465(6,229)	4,748(7,446)	7,048(9,744)
울산광역시	1997. 9. 3	1,286(3,697)	2,285(4,842)	2,134(4,995)	2,147(2,982)	1,953(3,651)
경기도	1990.11.29	6,753(29,418)	8,477(36,800)	7,097(34,781)	6,334(27,357)	6,644(30,628)
강원도	1991. 7. 1	1,293(9,451)	3,271(13,678)	1,999(13,322)	2,083(11,323)	2,332(13,796)
충청북도	1990.11. 5	1,489(5,832)	2,475(9,593)	1,530(7,638)	1,657(5,923)	1,968(6,449)
충청남도	1991. 5.25	1,297(6,836)	2,361(8,857)	2,023(9,190)	1,993(10,246)	1,907(9,662)
전라북도	1990. 9.20	1,856(8,044)	6,640(15,717)	3,642(11,744)	2,921(10,252)	3,452(10,134)
전라남도	1990. 8.22	1,545(7,678)	3,565(12,148)	2,220(11,441)	2,372(11,972)	2,736(10,627)
경상북도	1990. 9.21	1,400(5,530)	2,975(16,018)	2,699(14,161)	2,582(14,859)	4,025(14,652)
경상남도	1990.11.20	1,170(8,843)	2,813(12,293)	1,973(13,169)	2,072(13,178)	3,261(13,687)
제주특별자치도	1991. 5.13	2,837(4,093)	3,253(4,900)	1,565(2,888)	1,926(3,579)	1,944(3,670)

※ 괄호안은 시군구생활체육회 예산까지 포함한 금액임

※ 자료 : 국민생활체육회

■ 표 1-22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 현황

연번	구 분	설 립 일	예 산(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1	국민생활체육전국축구연합회	1991. 3. 9	2,003	1,527	1,467	1,515	1,542
2	국민생활체육전국육상연합회	1991. 7.13	341	312	819	323	639
3	국민생활체육전국배드민턴연합회	1991. 3.31	910	910	573	715	1,002
4	국민생활체육전국게이트볼연합회	1991. 4. 2	1,509	1,551	1,182	987	1,201
5	국민생활체육전국자전거연합회	1991. 9.26	367	411	1,027	981	1,085
6	국민생활체육전국스케이팅연합회	1991.11.20	198	202	245	233	281
7	국민생활체육전국윈드서핑연합회	1993. 2.10	203	101	425	249	224
8	국민생활체육전국탁구연합회	1993. 2.13	580	840	614	696	702
9	국민생활체육전국테니스연합회	1993. 3.12	215	169	471	437	589
10	국민생활체육전국족구연합회	1994.10.19	476	584	508	397	449
11	국민생활체육전국배구연합회	1994.11.29	386	439	715	384	404
12	국민생활체육전국사격연합회	1995. 2.17	274	334	280	233	289
13	국민생활체육전국공도연합회	1994. 8.23	333	336	411	480	557
14	국민생활체육전국스키연합회	1996. 2.23	168	187	291	291	299
15	국민생활체육전국스쿠버연합회	1997. 1.17	166	213	273	266	192
16	국민생활체육전국볼링연합회	1997. 2.18	302	390	387	460	265
17	국민생활체육전국택견연합회	1998.11.30	464	370	402	545	357
18	국민생활체육전국생활체조연합회	1999. 1.22	531	433	451	472	445
19	국민생활체육전국국술연합회	1999. 1.19	441	443	277	362	425
20	국민생활체육전국합기도연합회	1999. 7.20	407	163	145	300	255
21	국민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	1999. 1.16	188	253	204	160	262
22	국민생활체육전국정구연합회	1999. 3.18	160	186	182	180	242
23	국민생활체육전국보디빌딩연합회	1999. 9.29	130	135	152	170	171
24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1999. 1. 1	1,662	298	1,925	1,272	1,673
25	국민생활체육전국줄다리기연합회	1999.11.24	111	203	202	176	210
26	국민생활체육전국아구연합회	1999. 7.20	373	341	470	466	592
27	국민생활체육전국농구연합회	1999. 4.24	273	416	440	494	646
28	국민생활체육전국국무도연합회	1999. 6.28	199	263	46	98	130
29	국민생활체육전국골프연합회	2000. 7. 7	218	199	362	436	462
30	국민생활체육전국당구연합회	2000.12.15	246	222	447	383	542
31	국민생활체육전국검도연합회	2001. 3.10	217	171	211	237	202
32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	2001. 4.22	399	242	213	457	443
33	국민생활체육전국국학기공연합회	1999.11.27	294	314	266	290	329
34	국민생활체육전국등산연합회	2003. 3.31	131	150	294	362	375
35	국민생활체육전국씨름연합회	2004. 1.30	1,133	2,965	3,588	3,877	2,399
36	국민생활체육전국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2003. 3.31	210	200	182	338	284
37	국민생활체육전국뉴스시연합회	2001. 3.31	316	364	295	398	255
38	국민생활체육전국철인3종경기연합회	2002. 8. 9	393	537	633	598	607
39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	2003. 3.31	92	25	75	83	172
40	국민생활체육전국우슈연합회	2004. 1.30	168	139	218	230	319

연번	구 분	설 립 일	예 산(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41	국민생활체육전국스쿼시연합회	1999. 4.22	163	91	101	201	166
42	국민생활체육전국종합무술연합회	1999. 3.10	275	297	306	314	184
43	국민생활체육전국리켓볼연합회	2003. 3.31	131	137	214	149	167
44	국민생활체육전국그라운드골프연합회	2009. 4.28	-	169	167	254	169
45	국민생활체육전국파크골프연합회	2009. 4.28	-	216	224	257	287
46	국민생활체육전국줄넘기연합회	2009. 4.28	-	81	220	376	515
47	국민생활체육전국핸드볼연합회	2009. 4.28	-	20	169	235	255
48	국민생활체육전국아이스인라인하키연합회	2001. 2. 7	80	20	113	78	45
49	국민생활체육전국하키연합회	1999. 8.19	44	25	24	54	42
50	국민생활체육전국프리테니스연합회	2009. 7. 7	-	61	50	350	39
51	국민생활체육전국플라잉디스크연합회	2009.11. 4	-	36	450	128	125
52	국민생활체육전국피구연합회	2010.11.10	-	-	140	109	195
53	국민생활체육전국전통선술연합회	2010. 5.19	-	-	50	50	70
54	국민생활체육전국견기연합회	2011. 1. 8	-	-	-	150	123
55	국민생활체육전국소프트볼연합회	2009. 7. 7	-	58	12	12	18
56	국민생활체육전국우드볼연합회	2009. 7. 7	-	154	13	13	20
57	국민생활체육전국비독연합회	2009. 7. 7	-	130	86	100	40
58	국민생활체육전국럭비연합회	2009. 7. 7	-	190	50	60	30
59	국민생활체육전국요트연합회	2009.11. 4	-	75	60	50	30
60	국민생활체육전국특공무술연합회	2009.11. 4	-	70	150	150	150
61	국민생활체육전국댄스스포츠연합회	2009.11.10	-	100	100	100	100
62	국민생활체육전국민속발리연합회	2010. 3.31	-	-	20	20	20
63	국민생활체육전국이종격투기연합회	2010. 5.19	-	-	18	46	72
64	국민생활체육전국공수도연합회	2010. 9. 2	-	-	42	73	80
65	국민생활체육전국생활무용연합회	2010.12.31	-	-	55	80	50

마. 재정현황

국민생활체육회는 창립초기 9억 7천만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자체예산을 포함하여 12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출발하였으나,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와 업무량의 증대 및 세계한민족축전의 개최에 따라 그 사업규모가 크게 증대되어, 2012년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 325억 2,700만원 및 자체예산 25억 3,869만원 등 총 352억 869만원의 예산규모로 성장하였다.

■ 표 1-23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년	계(A)	재 원 별			자체수입비중 (B/A)×100(%)
		국 고	기 금	자체수입(B)	
2008년	17,801	-	16,283	1,518	8.5
2009년	22,449	-	20,387	2,062	9.2
2010년	25,802	-	23,661	2,141	8.3
2011년	27,282	-	24,986	2,296	8.4
2012년	35,209	100	32,527	2,539	7.8

※ 자료 : 국민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회원단체 예산은 임원출연금과 회원단체 회비 등의 자체 예산과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각 지자체 생활체육진흥 사업비로 구성된다.

■ 표 1-24 회원단체 예산과 자체수입 비율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예산 (A)	자체 수입 (B)	B/A× 100 (%)									
사·도 생활체육회	67,561	2,043	3.0	52,715	2,242	4.3	51,727	1,999	3.9	60,324	2,414	4.0
시·군·구 생활체육회	118,482	5,925	5.0	124,107	5,714	4.6	105,231	5,367	5.1	103,266	5,473	5.3
종목별연합회	19,475	13,550	69.0	24,262	11,282	47.0	24,529	11,467	47.0	24,554	12,375	50.0

※ 자료 : 국민생활체육회

4)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가. 설립배경 및 목적

1967년 IOC 의무분과위원회 발족으로 ① 스포츠 윤리의 방어 ② 선수의 건강보호 ③ 모든 선수에게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도핑” 정의 및 “금지약물목록”이 발표 되었고, 1999. 11. 10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설립(스위스 로잔)과 2003. 3. 5 「스포츠 도핑방지 세계대회」인 코펜하겐 선언을 통해 세계도핑방지규약(WADA Code)를 선포하여 2004년 하계올림픽부터 전면 적용하면서 WADA결의문 발표 및 각국 정부와 올림픽 기구가 서명하였으며, UNESCO반도핑국제협약을 추진하여 2005년 제33차 UNESCO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2007. 2. 1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도 스포츠 도

핑방지에 대한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국내 전문도핑방지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2006년 11월 13일 ①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수집 및 연구 ② 도핑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③ 도핑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④ 도핑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⑤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나 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의 수립과 그 시행 ⑥ 그 밖에 도핑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7. 2. 5 UNESCO반도핑국제협약을 비준, 수용하였다.

나. 연 혁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스포츠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확립과 스포츠 정신의 고양을 도모하고,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으로 2006년 11월 13일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2007년 4월 27일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에 가입 및 세계도핑방지규약(WADA Code)을 수용하였고, 같은 해 6월 22일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근거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재창립하여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제정하였다. 2009년 9월 28일 ISO 9001:2008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획득하였고, 현재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규약을 토대로 국내 및 국제대회의 도핑검사 및 도핑방지 교육과 홍보, 국제교류 및 협력 등 국내 유일의 도핑방지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다. 조직 및 인력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규정 위반행위를 한 선수 및 지도자의 제재를 위하여 도핑방지위원회 산하에 독립된 제재결정위원회와 항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치료목적을 위한 예외적 금지약물 및 방법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와 혈액검사를 통해 도핑검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ABP심사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국은 1실 3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획운영실은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예결산관리, 총무 및 인사관리, ISO인증 관리 등의 업무, 도핑검사팀은 도핑검사 계획 수립 및 집행, 도핑검사 결과 및 제재 관리, 도핑검사관 양성 및 관리 등의 업무, 교육홍보

팀은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홍보계획 수립 및 집행, 현장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의 업무, 국제협력팀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관련 업무 및 도핑방지를 위한 국제 교류 협력 업무, ADAMS(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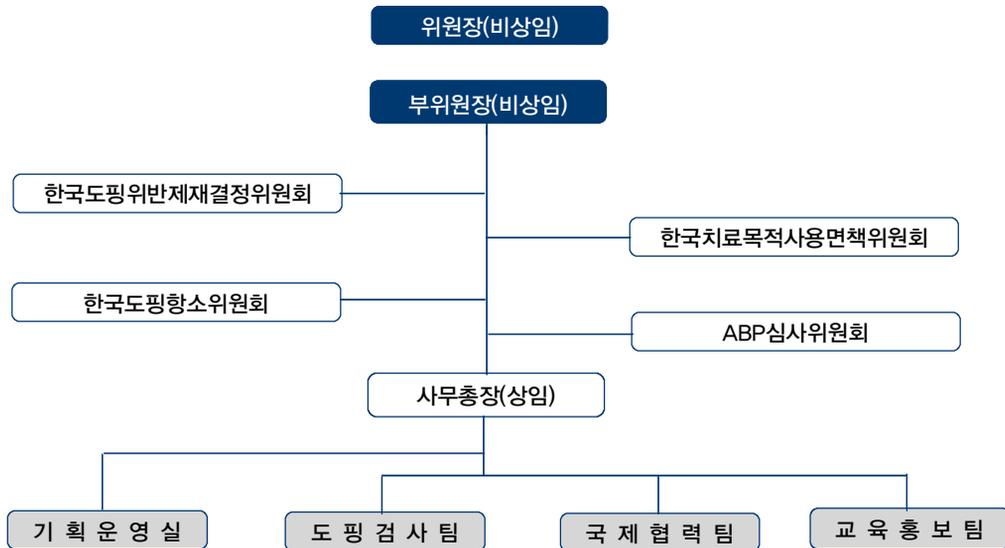


그림 1-6 위원회 및 4개 소위원회, 사무총장 및 사무국(1실 3팀)

■ 표 1-25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정원·현원표

구분	계	임원	1급~3급	4급	5급~6급
정원	15	1	4	3	7
현원	12	1	3	2	6

라. 주요사업

- 국제표준에 근거한 도핑검사
 - 국제표준에 근거한 도핑검사 및 공정한 결과 관리
 - 전문적인 도핑검사관 및 혈액 채취요원 양성

■ 표 1-26 연도별 도핑검사 현황

검사구분		비용주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자체검사	경기기간 중	KADA	630	985	1,114	1,183	1,237	1,131	
	경기기간 외	KADA	1,037	1,486	1,693	1,745	1,778	1,717	
소 계			1,667	2,471	2,807	2,928	3,015	2,848	
외부 요청검사	경기 기간 중	국제 대회	국제연맹 /조직위	176	236	316	291	410	289
		국내 대회	국내연맹	-	19	22	24	1	12
		프로 대회	프로단체	-	-	92	155	219	303
		계		176	255	430	470	630	604
	경기 기간 외	국제대회	국제연맹	-	99	74	68	107	91
		국내대회	국내연맹	-	195	12	-	452	454
		국내대회	프로단체	-	-	30	87	40	8
		계		-	294	116	155	599	553
	소 계			176	549	546	625	1,229	1,157
	총 계			1,843	3,020	3,353	3,553	4,244	4,005

○ 도핑방지를 위한 도핑방지 교육·홍보

- 중고등학교 체육교과서 도핑방지교육내용 수록
- 위원회 표준 교재 제작 및 선수, 지도자, 경기단체 관계자 대상 교육
- 청소년들을 위한 도핑방지 만화책 제작·활용을 통한 도핑방지 이해력 증진
- 도핑방지 홍보물 제작(가이드, 만화책자, 리플렛 등)
- 전국체전 등 주요 현장 아웃리치 홍보
- 홈페이지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 운영
- 국제 도핑방지 뉴스 홈페이지 게재 및 국제 도핑방지 정보 공유

■ 표 1-27 연도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선수 및 지도자	경기 단체 연수회 및 강습회	2,079	3,619	5,882	6,605	6,595	
	세미나	140	297	150	144	144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하계훈련	2,354	1,641	1,261	1,109	1,447	
	체육중·고등학교	3,519	3,097	2,858	3,727	3,880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390	300	500	565	366	
	프로	200	530	410	281	680	
합 계		8,682	9,484	11,061	12,431	13,112	

■ 표 1-28 연도별 홍보물 배포 현황

종 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도핑안내서	7,149부	13,642부	25,000부	30,000부	35,000부	40,000부	
리플렛	-	4,000부	4,000부	5,000부	12,000부	500부	
홍보만화	-	-	-	5,000부	10,000부	15,000부	
포스터	-	-	-	500장	1,000장	3,000장	
칼럼기고	-	-	-	6회	8회	3회	

○ 도핑방지를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

-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및 국제연맹(IF), 국가도핑방지기구(NADO)와의 업무교류
-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 교육 및 운영
- TUE(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관련 교육 및 관리

■ 표 1-29 WADA 및 IF와 도핑검사 위탁대행 MOU 체결 추진

체결 일자	MOU 체결 연맹(14개 기구)
2011. 2. 22	국제레슬링연맹(FILA)
2011. 4. 5	국제사격연맹(ISSF)
2011. 5. 16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2011. 6. 20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2011. 6. 21	국제연맹총연합회(SportAccord)
2011. 6. 27	세계아이언맨협회(WTC)
2011. 7. 19	국제인라인롤러연맹(FIRS)
2011. 9. 30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TU)
2011. 10. 15	국제휠체어농구연맹(WBF)
2011. 11. 2	국제틴핀볼링연맹(WTBA)
2012. 1. 31	국제빙상연맹(CCES/ISU)
2012. 4. 20	국제조정연맹(FISA)
2012. 6. 15	국제핸드볼연맹(IHF)
2012. 8. 9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 표 1-30 연도별 소재지정보 검사 현황

구 분	2009 ('09. 7 ~ '09. 12)		2010 ('10. 1 ~ '10. 12)		2011 ('11. 1 ~ '11. 12)		2012 ('12. 1 ~ '12. 12)	
	대상인원	실사인원	대상인원	실사인원	대상인원	실사인원	대상인원	실사인원
국내RTP선수 (검사대상자등록명부)	212	170	214	187	212	73	222	49
합 계	212	170	214	187	212	73	222	49

마. 재정현황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창립초기 11억 원의 국고예산으로 출발하였으나, 깨끗한 스포츠한국 이미지 정립과 약물로부터 선수보호 및 스포츠정신 함양이 대두되고 도핑방지시스템이 확고히 자리매김 함에 따라 2012년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 20억 원 및 자체예산 0.5억 원 등 총 21억 원의 예산규모로 성장하였다.

■ 표 1-31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년	계(A)	재 원 별			자체수입비중 (B/A)×100(%)
		국 고	기 금	자체수입(B)	
2008년	1,725	-	1,725	-	-
2009년	1,772	-	1,762	10	0.56
2010년	1,982	-	1,932	50	2.58
2011년	2,112	-	2,061	51	2.41
2012년	2,138	-	2,085	53	2.48

※ 자료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5) 체육인재육성재단

가. 설립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적극적인 전문체육 육성정책에 힘입어, 2008년 베이징올림픽 7위, 2010년 밴쿠버올림픽 5위를 거두는 등 스포츠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율 감소로 인한 선수자원 확보의 어려움, 기초종목의 열세, 일부 엘리트 선수에 의존한 메달획득, 소수에 의존한 스포츠외교활동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수선수, 지도자, 심판, 국제스포츠 분야의 체육인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담기관인 체육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었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체육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스포츠인재확충, 역량강화 그리고 국제 경쟁력확보를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연 혁

체육인재육성재단은 2007년 1월 30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허가 이후 2010년 1월 29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3호(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의거)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다. 조직 및 인력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정관상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를 두고 이사장 아래 사무총장과 1실1팀(12명)을 두고 있다. 사업운영팀은 체육영재 육성, 학교운동부 지도자 직무 교육,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등 1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기획팀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사, 총무,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1-7 조직도

라. 주요사업

재단은 2007년부터 ‘유소년 스포츠인재 발굴·육성’, ‘스포츠지도자 양성’,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등의 3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유소년 스포츠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기초종목인 육상, 수영, 체조 종목의 체육영재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초등학교 체육영재 육성, 지역 중고 학생 선수의 전인적 육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 및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 체육인재 육성, 체육영재의 산실인 체육중고등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 등의 체육계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내 스포츠계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지도자의 자질 함양과 전문성 배양을 위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과 해외 우수지도자 초청을 통한 국내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은퇴선수와 체육전공자 등이 자신의 경력개발을 통해 사회진출과 더불어 체육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턴십과 경력개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육분야 전문지식을 생산하여 보급하는 ‘스포츠등지’라는 체육 특성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토요일체육교실 운영학교에 스포츠스타를 파견하여 재능기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8년부터 추진한 국제스포츠인재 양성사업은 체육인재의 전문성 제고와 국내외 체육단체 진출을 조력하기 위한 수준별 외국어교육, 해외연수, 해외 인턴십, 국제자격 취득 및 해외 학위 취득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마. 재정현황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창립초기 5억 원의 예산으로 출발하여, 차세대 스포츠 인재의 과학적 발굴 및 육성, 스포츠인재 역량강화,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그 사업규모가 크게 증대되어 2012년 현재 103억 원의 예산규모로 성장하였다.

■ 표 1-32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년	계(A)	재 원 별				자체수입비중 (B/A)×100(%)
		국 고	기 금	적립금	자체수입(B)	
2008	15,651	-	-	15,651	-	0
2009	13,125	-	-	13,125	-	0
2010	14,894	-	-	14,894	-	0
2011	12,837	-	-	12,837	-	0
2012	10,308	-	-	10,308	-	0

※ 자료 : 체육인재육성재단

6) 태권도진흥재단

가. 설립배경 및 목적

태권도는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민족의 얼과 슬기를 담아 심신을 연마해 온 전

통무예이자 우리민족의 국난극복을 주도해 온 호국의 무예로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러한 태권도는 1950년대부터 해외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2013년 현재 204개국에서 7천여만 명이 수련하는 등 인종, 이념, 종교를 초월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무도로 뿌리를 내렸다.

또한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 하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 시켰으며 더불어 태권도는 우리나라만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받는 문화유산으로 정착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로 성장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태권도의 진흥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태권도의 세계적 위상에 걸 맞는 태권도원을 전북 무주에 조성키로 하고, 2005년 7월 1일 이 태권도원의 조성과 관리운영 및 태권도 진흥사업, 그리고 태권도를 테마로 한 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의 진흥 등 태권도를 전 세계에 지속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 주체로 태권도진흥재단을 설립하였다.

나. 연 혁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 조성·운영과 태권도 발전을 통한 국익 증진을 위해 2005년 7월 민법에 근거한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되어 오다가, 2007년 12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2008년 6월에 동 법 제 20조에 근거한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10년부터 기획재정부 고시(제2010-3호)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운영되어오고 있다.

다. 조직 및 인력

태권도진흥재단은 정관상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와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2본부 8부)를 두고 있으며, 정원규모 55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사무총장 직속으로 기획부를 두고 있으며, 경영본부 밑에 경영관리부, 시설부와 정보기술부를, 사업본부 밑에 사업부, 교육부, 콘텐츠부와 마케팅부를 각각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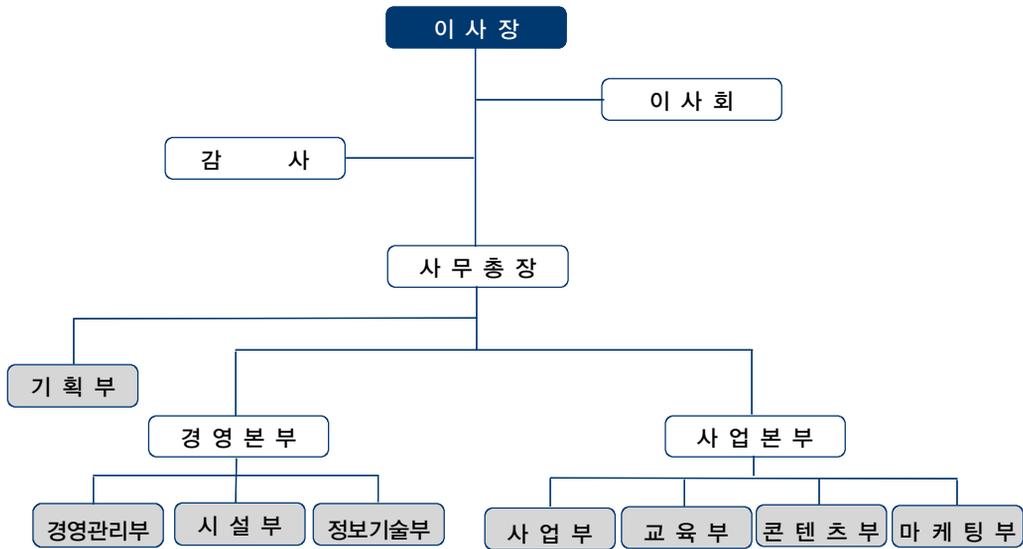


그림 1-8 조직도

라. 주요사업

- 태권도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 태권도 보존·보급·홍보에 관한 사업
- 태권도원 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 태권도 용품·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 태권도 청소년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 태권도 정신·문화 창출에 관한 사업
- 태권도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 태권도 단체와의 국제교류사업
- 태권도원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의 개발 육성 사업
-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마. 재정현황

태권도진흥재단은 창립초기 3억 원의 예산으로 출발하였으나, 태권도종주국의 중추적 역할수행 및 한국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할 태권도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규모가 크게 증대되어 2012년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 895억 원 및 자체예산 3억 원 등 총 952억 원의 예산규모로 성장하였다.

■ 표 1-33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년	계(A)	재 원 별			자체수입비중 (B/A)×100(%)
		국 고	기 금	자체수입(B)	
2008년	6,347	3,600	2,747	-	-
2009년	9,201	4,808	3,333	-	-
2010년	24,781	-	23,533	-	-
2011년	56,951	-	53,709	-	-
2012년	95,210	-	89,517	327	0.343

위 단체들 외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있다. 먼저 한국체육산업개발(주)는 1990년 서울올림픽 기념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생활체육시설 공간 제공,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올림픽공원 및 경정공원 시설관리,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 등이 있으며 조직 및 인력구성은 앞부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2005년 7월)과 더불어 장애인 체육 영역이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2005년 11월에 설립되었다. 2008년 2월에 16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의 설립 완료된 후 최근에는 시·도별로 원활한 장애인체육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군·구 지부를 일부 승인(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내용은 제7장(장애인체육)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3절 체육진흥재원

1. 개 관

체육진흥을 위한 재원은 크게 중앙정부의 국고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운용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등 민간체육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자체 재원 등으로 구성된다. <표 1-34>와 같이 범위를 한정하여 산정한 체육진흥재원의 규모는 2007년 2조 5,955억원, 2008년 3조 1,303억원, 2009년 3조 4,090억원, 2010년 3조 5,344억원, 2011년 3조 5,938억원, 2012년 3조 9,423억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시·도 교육청의 체육예산 등의 재원을 포함할 경우 실제 체육진흥재원의 규모는 이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 표 1-34 체육진흥재원의 구성

(단위 : 억원)

	국 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비	체육단체	계
2007	1,812	2,367	20,510	1,266	25,955
2008	2,343	2,578	24,808	1,574	31,303
2009	2,135	3,860	25,949	2,146	34,090
2010	1,529	5,295	26,193	2,327	35,344
2011	1,559	6,568	25,677	2,134	35,938
2012	1,516	7,344	28,198	2,365	39,423

※ 국 고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예산

※ 국민체육진흥기금 : 보조사업만 작성

※ 지방비 : 시·도 및 시·군·구 일반회계 최종예산

※ 체육단체 : 대한체육회 및 시도지부, 가맹경기단체 자체 수입 예산,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시·도,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연합회 자체수입 예산, 태권도진흥재단 등

2012년도 체육재정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비가 7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이 18.6%, 체육단체 수입이 6.0%, 국고가 3.8%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까지는 국고가 국민체육진흥기금보다 많았으나, 2003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

이 국고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즉, 국가 체육예산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중요성이 그만큼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중앙정부의 체육재정

중앙정부의 체육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표1-35>에 나타난 것처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에 대한 지원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는 체육기금으로 추진사업의 확대에 의한 국고예산의 비중이 감소된 것이며, 국제교류, 스포츠산업, 장애인체육은 다소 증가는 체육영역의 다양화, 확대에 따른 예산의 확대에 볼 수 있다. 국고예산 총계는 2008년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2011년 대비 43억원이 감소하였으나, <표1-34>에 나타난 것처럼 전반적인 체육기금의 확대에 따른 사업재원 이관으로 체육기금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체육재정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표 1-35 분야별 국고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생활체육	11,337	17,649	12,863	93,896	96,547	89,248
전문체육	142,701	193,058	177,563	42,404	43,128	40,845
국제교류	11,939	12,998	7,970	7,609	7,126	9,802
스포츠산업	6,674	6,262	8,269	3,244	3,444	3,759
장애인체육	8,514	4,110	6,610	5,550	5,401	7,747
기 타	227	263	244	226	220	213
합 계	181,392	234,340	213,519	152,929	155,866	151,614

※ 「기타」는 체육국의 기본사업비

정부예산에서 체육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0.08%, 2006년 0.10%, 2007년 0.11%, 2008년 0.13%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2009년 0.11%, 2010년 0.07%, 2011년 0.07%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2012년은 0.06%를 차지하였다<표 1-34>.

■ 표 1-36 정부예산대비 체육예산 현황

(단위 : 억원)

년 도	정부예산(A)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체 육 부 문	
		예산(B)	점유율(B/A, %)	예산(C)	점유율(C/A, %)
1993	407,641	2,377	0.58	428	0.10
1995	557,805	3,838	0.69	511	0.09
1997	705,284	5,245	0.74	1,541	0.21
1998	807,629	6,183	0.76	1,816	0.22
1999	884,850	6,943	0.78	1,572	0.18
2000	946,199	9,149	0.96	1,799	0.19
2001	1,002,246	9,706	0.96	1,639	0.16
2002	1,060,963	10,991	1.03	1,589	0.15
2003	1,114,831	11,401	1.02	1,425	0.13
2004	1,183,560	15,340	1.30	1,093	0.09
2005	1,343,704	15,676	1.17	1,137	0.08
2006	1,448,076	9,644	0.66	1,489	0.10
2007	1,641,435	12,681	0.77	1,812	0.11
2008	1,782,797	15,136	0.85	2,343	0.13
2009	2,041,000	16,579	0.81	2,135	0.11
2010	2,053,312	18,166	0.88	1,529	0.07
2011	2,099,303	19,603	0.93	1,559	0.07
2012	2,410,559	20,933	0.87	1,516	0.06

※ 2005년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문화재청, 청소년 예산이 포함되었음

※ 동 표는 예산만 해당.

3.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의 국고 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기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교부세·지원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되는 중앙정부의 예산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30%~50%인 국고 보조율에 따라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증가는 지방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체가 정착되면서 지방행정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행정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생활체육교실 등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대한 투자액이 늘어나고 있다.

2012년도의 체육예산은 일반회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예산 195조 5,273

억원 중 2조 8,197억원으로 1.44%로 나타났다. 2013년 체육예산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예산 191조 1,097억원 중 2조 4,963억원으로 1.31%로 나타났다.

■ 표 1-37 지방자치단체 체육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예산총액 (A)	2012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A)	2013년도 체육예산	
		(B)	B/A×100		(B)	B/A×100
서울특별시	30,751,963	240,146	0.78	32,378,881	224,757	0.69
부산광역시	9,658,886	136,183	1.41	9,683,987	109,562	1.13
대구광역시	6,427,196	167,073	2.60	6,570,668	124,335	1.89
인천광역시	11,066,290	115,357	1.04	10,497,651	142,669	1.36
광주광역시	4,737,291	95,789	2.02	4,560,923	102,090	2.24
대전광역시	3,188,873	76,374	2.40	3,063,883	65,440	2.14
울산광역시	4,080,498	76,221	1.87	3,875,300	76,831	1.98
세종특별자치시	3,997	3,931	98.35	5,267	5,120	97.21
경기도	35,654,497	449,876	1.26	33,214,736	387,083	1.17
강원도	10,259,035	201,930	1.97	9,560,698	196,397	2.05
충청북도	8,326,626	179,258	2.15	8,151,818	145,972	1.79
충청남도	11,516,616	150,205	1.30	10,891,132	165,571	1.52
전라북도	10,996,923	141,633	1.29	11,158,617	135,917	1.22
전라남도	14,038,995	187,850	1.34	13,425,976	165,142	1.23
경상북도	16,381,702	252,319	1.54	15,766,610	199,106	1.26
경상남도	15,005,359	272,632	1.82	14,936,952	198,300	1.33
제주도	3,432,641	72,993	2.13	3,366,685	52,024	1.55
합계	195,527,388	2,819,770	1.44	191,109,784	2,496,316	1.31

1. 2012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최종예산

2. 2013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당초예산

※ 기초자치단체 예산 포함한 금액(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예산)

또한 2012년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의 경우, 경기도가 4,498억원인 것에 반해 제주도는 729억원으로 경기도의 약 16.2%정도에 불과하였다<표 1-37>. 이러한 편차 현상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표 1-37-1, 표 1-37-2, 표 1-37-3>.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 재정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도 있으나, 체육시설과 같은 하드웨어의 건설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 표 1-37-1 광역자치단체 체육예산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12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13년도 체육예산	
		(B)	B/A×100		(B)	B/A×100
서울특별시	22,275,600	157,082	0.71	23,506,900	132,361	0.56
부산광역시	6,012,172	93,096	1.55	6,139,474	84,384	1.37
대구광역시	4,117,600	136,913	3.33	4,220,000	95,186	2.26
인천광역시	8,089,867	90,553	1.12	7,387,465	110,909	1.50
광주광역시	3,245,271	76,966	2.37	3,181,875	92,498	2.91
대전광역시	1,674,158	62,422	3.73	1,627,809	52,326	3.21
울산광역시	2,642,854	52,249	1.98	2,546,179	50,798	2.00
세종특별자치시	3,997	3,931	98.35	5,267	5,120	97.21
경기도	13,172,138	35,671	0.27	12,542,424	27,234	0.22
강원도	3,792,925	58,301	1.54	3,717,082	56,704	1.53
충청북도	3,388,532	44,692	1.32	3,338,080	36,119	1.08
충청남도	4,615,400	14,160	0.31	4,302,900	16,632	0.39
전라북도	4,424,044	52,069	1.18	4,397,717	45,628	1.04
전라남도	4,658,996	40,526	0.87	4,857,083	35,773	0.74
경상북도	5,848,612	35,016	0.60	5,528,000	37,021	0.67
경상남도	5,542,465	23,965	0.43	5,790,146	23,071	0.40
합계	93,504,631	977,612	1.05	93,088,401	901,764	0.97

- 2012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최종예산
 - 2013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당초예산
- ※ 광역자치단체 예산만 계산(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제외)

■ 표 1-37-2 기초자치단체 체육예산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12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13년도 체육예산	
		(B)	B/A×100		(B)	B/A×100
서울특별시	8,476,363	83,064	0.98	8,871,981	92,396	1.04
부산광역시	3,646,714	43,087	1.18	3,544,513	25,178	0.71
대구광역시	2,309,596	30,160	1.31	2,350,668	29,149	1.24
인천광역시	2,976,423	24,804	0.83	3,110,186	31,760	1.02
광주광역시	1,492,020	18,823	1.26	1,379,048	9,592	0.70
대전광역시	1,514,715	13,952	0.92	1,436,074	13,114	0.91
울산광역시	1,437,644	23,972	1.67	1,329,121	26,033	1.96
경기도	22,482,359	414,205	1.84	20,672,312	359,849	1.74
강원도	6,466,110	143,629	2.22	5,843,616	139,693	2.39
충청북도	4,938,094	134,566	2.73	4,813,738	109,853	2.28
충청남도	6,901,216	136,045	1.97	6,588,232	148,939	2.26
전라북도	6,572,879	89,564	1.36	6,760,900	90,289	1.34
전라남도	9,379,999	147,324	1.57	8,568,893	129,369	1.51
경상북도	10,533,090	217,303	2.06	10,238,610	162,085	1.58
경상남도	9,462,894	248,667	2.63	9,146,806	175,229	1.92
합계	98,590,116	1,769,165	1.79	94,654,698	1,542,528	1.63

- 2012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최종예산
 - 2013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당초예산
- ※ 기초자치단체 예산 총계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기초자치단체 체육예산항목 부재

■ 표 1-37-3 기초자치단체별 체육예산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12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13년도 체육예산		
		(B)	B/A×100		(B)	B/A×100	
서울 (25)	종로구	216,717	1,168	0.54	239,022	1,049	0.44
	중 구	331,189	8,296	2.50	305,576	8,722	2.85
	용산구	254,287	2,535	1.00	271,511	2,118	0.78
	성동구	280,709	7,565	2.69	301,479	8,062	2.67
	광진구	269,107	1,014	0.38	288,416	1,046	0.36
	동대문구	343,282	804	0.23	327,000	778	0.24
	중랑구	324,892	2,128	0.65	347,715	1,913	0.55
	성북구	367,137	5,677	1.55	402,527	6,191	1.54
	강북구	339,444	2,849	0.84	319,154	7,686	2.41
	도봉구	271,993	1,063	0.39	299,715	1,155	0.39
	노원구	434,473	2,377	0.55	503,306	2,073	0.41
	은평구	400,171	3,269	0.82	397,900	3,636	0.91
	서대문구	304,390	3,228	1.06	297,140	2,339	0.79
	마포구	279,281	1,744	0.62	321,734	1,711	0.53
	양천구	348,625	1,503	0.43	396,410	1,393	0.35
	강서구	489,554	6,306	1.29	459,363	6,922	1.51
	구로구	374,310	4,000	1.07	344,823	2,147	0.62
	금천구	251,067	770	0.31	288,056	632	0.22
	영등포구	332,345	4,126	1.24	370,008	4,697	1.27
	동작구	274,870	1,275	0.46	307,131	7,876	2.56
	관악구	352,125	4,339	1.23	383,090	4,370	1.14
	서초구	322,951	2,734	0.85	345,916	1,970	0.57
	강남구	562,992	6,927	1.23	543,763	6,931	1.27
	송파구	420,809	6,555	1.56	443,286	5,885	1.33
	강동구	329,643	812	0.25	367,940	1,094	0.30
소 계	8,476,363	83,064	0.98	8,871,981	92,396	1.04	
부산 (16)	중 구	119,226	901	0.76	110,588	537	0.49
	서 구	186,017	1,037	0.56	184,695	2,370	1.28
	동 구	170,411	2,867	1.68	152,771	599	0.39
	영도구	149,697	654	0.44	153,130	943	0.62
	부산진구	309,841	3,016	0.97	335,864	3,162	0.94
	동래구	170,036	3,523	2.07	185,809	564	0.30
	남 구	225,370	4,763	2.11	181,230	814	0.45
	북 구	272,586	2,298	0.84	240,748	1,940	0.81
	해운대구	291,359	592	0.20	320,009	686	0.21
	사하구	314,086	2,838	0.90	274,320	1,178	0.43
	금정구	268,412	3,745	1.40	227,898	3,447	1.51
	강서구	183,697	3,824	2.08	197,234	2,186	1.10
	연제구	217,102	4,596	2.12	199,082	759	0.38
수영구	167,803	2,254	1.34	151,326	3,546	2.34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12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13년도 체육예산		
		(B)	B/A×100		(B)	B/A×100	
부산 (16)	사상구	203,606	894	0.43	226,178	918	0.41
	기장군	397,465	5,285	1.33	403,631	1,529	0.38
	소 계	3,646,714	43,087	1.18	3,544,513	25,178	0.71
대구 (8)	중 구	134,322	1,078	0.80	139,358	696	0.49
	동 구	366,700	4,460	1.22	334,200	4,295	1.29
	서 구	191,800	1,071	0.56	198,110	751	0.38
	남 구	181,300	1,285	0.70	179,600	796	0.44
	북 구	356,000	2,289	0.64	367,000	1,241	0.34
	수성구	337,250	3,259	0.97	336,700	1,570	0.47
	달서구	401,824	1,700	0.42	408,700	1,496	0.37
	달성군	340,400	15,018	4.41	387,000	18,304	4.72
소 계	2,309,596	30,160	1.30	2,350,668	29,149	1.24	
인천 (10)	중 구	204,805	1,951	0.95	208,473	3,437	1.65
	동 구	130,023	1,151	0.89	141,651	4,921	3.47
	남 구	314,358	2,101	0.67	343,660	2,299	0.67
	연수구	293,050	758	0.26	284,487	771	0.27
	남동구	406,747	4,983	1.23	444,646	4,276	0.96
	부평구	423,195	1,611	0.38	434,908	2,644	0.61
	계양구	243,060	900	0.37	243,073	927	0.38
	서 구	353,408	2,120	0.60	388,884	2,269	0.58
	강화군	346,804	7,795	2.25	352,296	8,875	2.52
	옹진군	260,973	1,434	0.55	268,108	1,341	0.50
소 계	2,976,423	24,804	0.83	3,110,186	31,760	1.02	
광주 (5)	동 구	180,187	1,319	0.73	160,390	878	0.55
	서 구	292,140	2,446	0.84	310,727	1,323	0.42
	남 구	270,816	5,325	1.97	195,441	470	0.24
	북 구	428,671	7,965	1.86	354,468	5,565	1.56
	광산구	320,206	1,768	0.55	358,022	1,356	0.37
소 계	1,492,020	18,823	1.26	1,379,048	9,592	0.70	
대전 (5)	동 구	290,718	3,690	1.27	280,367	6,259	2.23
	중 구	284,302	2,063	0.73	277,678	2,250	0.81
	서 구	401,697	4,424	1.10	360,529	1,553	0.43
	유성구	321,645	2,609	0.81	281,530	1,744	0.62
	대덕구	216,353	1,166	0.54	235,970	1,308	0.55
소 계	1,514,715	13,952	0.92	1,436,074	13,114	0.91	
울산 (5)	중 구	246,734	1,916	0.77	196,215	1,838	0.93
	남 구	308,779	7,434	2.41	278,153	6,501	2.33
	동 구	163,990	2,958	1.80	159,336	2,846	1.78
	북 구	205,560	7,126	3.47	186,959	8,639	4.62
	울주군	512,581	4,538	0.88	508,458	6,209	1.22
소 계	1,437,644	23,972	1.66	1,329,121	26,033	1.95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12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13년도 체육예산		
		(B)	B/A×100		(B)	B/A×100	
경기 (31)	수원시	1,704,197	45,936	2.70	1,800,431	42,404	2.36
	성남시	1,335,293	33,972	2.54	1,528,091	28,979	1.90
	의정부시	670,717	4,061	0.61	689,008	4,942	0.72
	안양시	804,040	5,337	0.66	851,637	5,909	0.69
	부천시	1,187,304	32,538	2.74	1,046,435	27,742	2.65
	광명시	492,707	10,807	2.19	434,512	9,427	2.17
	평택시	969,381	22,391	2.31	901,653	18,268	2.03
	동두천시	275,456	2,080	0.76	251,003	1,457	0.58
	안산시	1,086,443	11,094	1.02	1,323,706	12,886	0.97
	고양시	1,249,974	21,370	1.71	1,026,434	15,280	1.49
	과천시	258,208	3,619	1.40	203,884	3,710	1.82
	구리시	300,537	1,140	0.38	232,142	1,217	0.52
	남양주시	791,947	41,806	5.28	742,582	40,207	5.41
	오산시	335,700	3,316	0.99	327,000	4,023	1.23
	시흥시	1,267,500	7,752	0.61	1,118,825	9,253	0.83
	군포시	359,465	3,795	1.06	329,800	2,357	0.71
	의왕시	250,100	4,155	1.66	217,911	5,128	2.35
	하남시	354,779	8,033	2.26	288,924	10,728	3.71
	용인시	1,850,370	22,232	1.20	1,256,239	12,723	1.01
	파주시	904,152	5,665	0.63	741,207	4,588	0.62
	이천시	626,646	6,169	0.98	510,465	6,061	1.19
	안성시	457,074	4,026	0.88	440,895	4,026	0.91
	김포시	715,681	8,303	1.16	623,958	7,998	1.28
	화성시	1,116,734	22,075	1.98	943,303	15,286	1.62
	광주시	639,345	11,409	1.78	550,541	13,515	2.45
	양주군	464,228	16,908	3.64	410,426	12,061	2.94
	여주군	543,863	9,914	1.82	447,134	6,191	1.38
	연천군	311,398	10,408	3.34	337,555	3,084	0.91
	포천군	493,988	7,422	1.50	380,930	8,460	2.22
	가평군	271,810	11,159	4.11	276,773	10,078	3.64
	양평군	393,322	15,313	3.88	438,908	11,861	2.70
소 계	22,482,359	414,205	1.84	20,672,312	359,849	1.74	
강원 (18)	춘천시	836,421	15,261	1.82	832,755	16,219	1.95
	원주시	855,098	28,247	3.30	780,968	26,587	3.40
	강릉시	514,088	8,667	1.69	530,734	10,040	1.89
	동해시	282,885	8,051	2.85	258,581	8,239	3.19
	태백시	245,041	4,653	1.90	247,892	5,732	2.31
	속초시	314,450	8,106	2.58	276,855	5,451	1.97
	삼척시	422,712	2,020	0.48	56	20	35.71
	홍천군	428,352	8,028	1.87	384,543	6,360	1.65
횡성군	255,438	2,940	1.15	291,938	3,896	1.33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12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13년도 체육예산		
		(B)	B/A×100		(B)	B/A×100	
강원 (18)	영월군	261,240	2,804	1.07	278,755	2,838	1.02
	평창군	291,866	10,371	3.55	269,301	8,299	3.08
	정선군	288,873	6,467	2.24	259,632	9,914	3.82
	철원군	257,731	6,170	2.39	247,599	4,225	1.71
	화천군	253,427	4,909	1.94	212,017	11,899	5.61
	양구군	213,488	2,498	1.17	230,010	3,433	1.49
	인제군	297,489	12,944	4.35	272,963	8,853	3.24
	고성군	247,867	4,113	1.66	237,160	2,415	1.02
	양양군	199,644	7,380	3.70	231,857	5,273	2.27
	소 계	6,466,110	143,629	2.22	5,843,616	139,693	2.39
충북 (12)	청주시	928,915	24,491	2.64	903,669	15,077	1.67
	충주시	779,400	31,519	4.04	793,000	26,362	3.32
	제천시	511,623	14,301	2.80	488,569	11,268	2.31
	청원군	483,510	7,228	1.49	498,439	7,326	1.47
	보은군	288,705	10,009	3.47	251,086	12,107	4.82
	옥천군	302,579	4,033	1.33	304,713	4,944	1.62
	영동군	301,309	7,622	2.53	274,994	5,840	2.12
	증평군	150,003	4,578	3.05	135,274	2,605	1.93
	진천군	229,779	4,080	1.78	312,057	4,978	1.60
	괴산군	348,500	1,356	0.39	320,000	1,421	0.44
	음성군	352,269	17,680	5.02	313,786	11,757	3.75
	단양군	261,502	7,669	2.93	218,151	6,168	2.83
	소 계	4,938,094	134,566	2.73	4,813,738	109,853	2.28
	충남 (15)	천안시	933,000	29,641	3.18	860,000	29,270
공주시		605,700	4,098	0.68	504,800	4,606	0.91
보령시		440,076	6,820	1.55	448,618	12,692	2.83
아산시		614,000	15,305	2.49	676,000	22,183	3.28
서산시		580,070	8,356	1.44	566,616	7,787	1.37
논산시		459,272	7,185	1.56	510,112	7,974	1.56
계룡시		157,248	9,154	5.82	133,650	8,403	6.29
당진시		603,493	7,685	1.27	495,653	6,917	1.40
금산군		333,131	9,595	2.88	303,283	10,882	3.59
부여군		415,100	7,206	1.74	354,400	4,390	1.24
서천군		303,866	3,856	1.27	324,085	4,057	1.25
청양군		256,678	2,745	1.07	257,713	2,811	1.09
홍성군		422,700	7,257	1.72	395,681	7,661	1.94
예산군		433,507	10,319	2.38	374,965	9,503	2.53
태안군	343,375	6,823	1.99	382,656	9,803	2.56	
소 계	6,901,216	136,045	1.97	6,588,232	148,939	2.26	
전북 (14)	전주시	978,788	14,299	1.46	952,246	20,831	2.19
	군산시	770,054	7,255	0.94	845,062	10,330	1.20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12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13년도 체육예산		
		(B)	B/A×100		(B)	B/A×100	
전북 (14)	익산시	782,751	7,179	0.92	825,047	9,965	1.21
	정읍시	554,551	3,733	0.67	494,294	3,477	0.70
	남원시	455,890	3,249	0.71	497,069	5,041	1.01
	김제시	537,099	7,914	1.47	531,105	6,660	1.25
	완주군	500,548	575	0.11	513,669	824	0.16
	진안군	257,739	4,237	1.64	275,295	2,581	0.94
	무주군	240,317	9,968	4.15	276,573	9,335	3.38
	장수군	235,220	10,241	4.35	215,148	5,562	2.59
	임실군	307,532	7,910	2.57	282,812	4,434	1.57
	순창군	253,100	2,778	1.10	265,100	2,967	1.12
	고창군	373,514	5,860	1.57	404,524	4,931	1.22
	부안군	325,776	4,366	1.34	382,956	3,351	0.88
	소 계	6,572,879	89,564	1.36	6,760,900	90,289	1.34
	전남 (22)	목포시	485,714	10,466	2.15	471,995	6,674
여수시		1,051,162	14,003	1.33	822,009	9,469	1.15
순천시		844,461	13,009	1.54	767,690	18,375	2.39
나주시		582,239	5,641	0.97	441,323	4,395	1.00
광양시		532,830	7,076	1.33	520,413	7,957	1.53
담양군		327,353	3,650	1.12	284,377	2,808	0.99
곡성군		229,570	6,747	2.94	258,686	4,863	1.88
구례군		244,736	5,393	2.20	223,900	3,146	1.41
고흥군		463,913	7,066	1.52	506,074	9,590	1.89
보성군		377,427	6,923	1.83	348,952	6,631	1.90
화순군		491,642	11,919	2.42	443,199	6,209	1.40
장흥군		261,274	4,171	1.60	284,011	8,159	2.87
강진군		282,190	4,798	1.70	289,678	4,583	1.58
해남군		489,181	7,576	1.55	399,468	5,866	1.47
영암군		407,893	8,782	2.15	320,496	10,230	3.19
무안군		321,344	2,998	0.93	305,577	5,454	1.78
함평군		286,439	3,488	1.22	253,437	1,834	0.72
영광군		313,857	9,473	3.02	326,210	3,407	1.04
장성군		345,547	4,627	1.34	306,680	4,454	1.45
완도군		327,549	1,354	0.41	351,016	1,445	0.41
진도군	324,665	6,591	2.03	251,540	1,804	0.72	
신안군	389,013	1,573	0.40	392,162	2,016	0.51	
소 계	9,379,999	147,324	1.57	8,568,893	129,369	1.51	
경북 (23)	포항시	1,052,500	36,975	3.51	1,010,200	20,895	2.07
	경주시	987,400	14,017	1.42	920,000	11,765	1.28
	김천시	558,300	20,910	3.75	582,000	19,401	3.33
	안동시	681,200	14,080	2.07	657,400	13,010	1.98
	구미시	843,125	29,737	3.53	725,800	17,885	2.46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예산총액 ¹ (A)	2012년도 체육예산		자치단체 예산총액 ² (A)	2013년도 체육예산		
		(B)	B/A×100		(B)	B/A×100	
경북 (23)	영주시	463,043	3,931	0.85	466,400	4,566	0.98
	영천시	458,311	3,128	0.68	530,877	3,079	0.58
	상주시	603,672	19,724	3.27	582,911	10,046	1.72
	문경시	423,921	11,302	2.67	438,256	11,809	2.69
	경산시	593,493	7,417	1.25	611,937	8,174	1.34
	군위군	208,187	2,739	1.32	218,053	1,837	0.84
	의성군	426,915	9,678	2.27	365,000	4,095	1.12
	청송군	252,536	2,548	1.01	222,698	2,979	1.34
	영양군	225,414	7,587	3.37	198,000	2,925	1.48
	영덕군	300,249	4,702	1.57	314,159	4,142	1.32
	청도군	337,180	1,924	0.57	303,360	1,113	0.37
	고령군	285,714	2,301	0.81	226,449	928	0.41
	성주군	250,855	4,912	1.96	298,660	3,243	1.09
	칠곡군	386,018	4,720	1.22	362,977	8,838	2.43
	예천군	281,619	3,539	1.26	319,636	3,536	1.11
	봉화군	322,800	1,961	0.61	296,000	1,602	0.54
	울진군	457,838	3,820	0.83	447,337	4,437	0.99
울릉군	132,800	5,651	4.26	140,500	1,780	1.27	
소 계	10,533,090	217,303	2.06	10,238,610	162,085	1.58	
경남 (18)	창원시	1,892,453	70,432	3.72	1,784,055	63,641	3.57
	진주시	733,194	7,258	0.99	693,916	8,258	1.19
	통영시	412,813	10,870	2.63	412,020	5,732	1.39
	사천시	442,790	28,380	6.41	431,435	14,352	3.33
	김해시	1,017,771	14,357	1.41	1,033,946	13,094	1.27
	밀양시	458,500	7,901	1.72	425,198	6,751	1.59
	거제시	487,576	15,772	3.23	441,398	4,935	1.12
	양산시	563,066	13,665	2.43	627,723	6,740	1.07
	의령군	241,084	3,898	1.62	232,795	4,959	2.13
	함안군	328,071	7,012	2.14	334,773	5,242	1.57
	창녕군	346,178	9,201	2.66	367,200	7,223	1.97
	고성군	340,989	13,028	3.82	294,660	5,745	1.95
	남해군	276,470	12,630	4.57	313,628	11,237	3.58
	하동군	323,430	7,354	2.27	324,268	3,412	1.05
	산청군	321,310	4,537	1.41	317,004	2,824	0.89
	함양군	319,543	8,447	2.64	322,151	1,911	0.59
	거창군	512,477	7,499	1.46	396,690	4,882	1.23
합천군	445,179	6,426	1.44	393,946	4,291	1.09	
소 계	9,462,894	248,667	2.63	9,146,806	175,229	1.92	

1. 2012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최종예산

2. 2013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당초예산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기초자치단체 체육예산항목 부재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의 경우, 총 2조 7,396억원 중 기타가 1조 4,591억원으로 53.3%를 차지했고, 전문체육(25.5%), 생활체육(18.6%), 장애인체육(1.9%), 국제교류(0.7%)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전문체육의 비율이 45.7%와 48.8%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1-38, 표 1-38-1, 표 1-38-2, 표 1-38-3>

■ 표 1-38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기타	계
서울특별시	66,787.5(27.8)	29,866(12.4)	4,527(1.9)	3,413(1.4)	135,552.5(56.4)	240,146
부산광역시	31,562(23.2)	48,347(35.5)	4,591(3.4)	1,440(1.1)	50,243(36.9)	136,183
대구광역시	27,204(16.3)	17,787(10.6)	1,841(1.1)	84(0.1)	120,157(71.9)	167,073
인천광역시	17,935(15.4)	53,051(45.7)	2,364(2.0)	5,661(4.9)	37,153(32.0)	116,164
광주광역시	22,089.5(23.1)	16,279.2(17.0)	2,003.1(2.1)	-	55,417.2(57.9)	95,789
대전광역시	19,000(24.9)	17,657(23.1)	2,478(3.2)	182(0.2)	37,057(48.5)	76,374
울산광역시	20,079(26.9)	16,151(21.6)	1,381(1.8)	121(0.2)	37,023(49.5)	74,755
세종특별자치시	409(10.2)	1,950(48.8)	175(4.4)	30(0.8)	1,433(35.9)	3,997
경기도	68,246(15.2)	125,828(28.0)	11,305(2.5)	293(0.1)	244,204(54.3)	449,876
강원도	39,699(19.5)	69,607(34.3)	2,979(1.5)	1,101(0.5)	89,717(44.2)	203,103
충청북도	34,652(19.3)	34,939(19.5)	2,852(1.6)	445(0.2)	106,370(59.3)	179,258
충청남도	16,827(11.8)	55,193(38.7)	4,612(3.2)	-	65,882(46.2)	142,514
전라북도	41,331(29.2)	26,919(19.0)	2,006(1.4)	1,313(0.9)	70,064(49.5)	141,633
전라남도	26,967(14.4)	47,800(25.4)	2,226(1.2)	512(0.3)	110,346(58.7)	187,851
경상북도	31,318(12.5)	77,858(31.1)	3,545(1.4)	4,482(1.8)	133,447(53.2)	250,650
경상남도	45,157(16.6)	59,566(21.9)	2,382(0.9)	311(0.1)	165,117(60.6)	272,533
제주도	3,448(5.3)	12,372(19.1)	1,735(2.7)	198(0.3)	47,132(72.6)	64,885
합계	509,263(18.6)	698,798.2(25.5)	53,002.1(1.9)	19,388(0.7)	1,459,182.7(53.3)	2,739,634

1. 2012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체육분야 최종예산

※ 기초자치단체 예산 포함한 금액(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예산)

■ 표 1-38-1 광역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기타	예산총액 ¹⁾
서울특별시	14,469	25,596	4,217	2,350	110,450	157,082
부산광역시	1,712	44,421	4,464	1,440	41,059	93,096
대구광역시	1,839	13,803	1,624	84	119,563	136,913
인천광역시	4,656	48,200	2,223	5,627	29,847	90,553
광주광역시	11,871	14,923	1,986	-	48,186	76,966
대전광역시	11,062	15,827	2,419	162	32,952	62,422
울산광역시	3,211	13,219	1,374	50	33,036	50,890
세종특별자치시	409	1,950	175	30	1,433	3,997
경기도	5,611	19,450	8,264	10	2,336	35,671
강원도	4,990	15,410	1,882	144	35,875	58,301
충청북도	9,582	8,949	2,094	187	23,880	44,692
충청남도	1,547	10,607	1,843	-	163	14,160
전라북도	6,160	16,789	1,440	-	27,680	52,069
전라남도	3,591	6,928	1,346	-	28,661	40,526
경상북도	6,046	19,406	2,136	-	7,428	35,016
경상남도	4,424	17,652	1,698	38	153	23,965
합계	91,180	293,130	39,185	10,122	542,702	976,319

1. 2012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체육분야 최종예산

※ 광역자치단체 예산만 계산(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로 운영

■ 표 1-38-2 기초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기타	예산총액 ¹⁾
서울특별시	52,318.5	4,270	310	1,063	25,102.5	83,064
부산광역시	29,850	3,926	127	-	9,184	43,087
대구광역시	25,365	3,984	217	-	594	30,160
인천광역시	13,279	4,851	141	34	7,306	25,611
광주광역시	10,218.5	1,356.2	17.1	-	7231.2	18,823
대전광역시	7,938	1,830	59	20	4,105	13,952
울산광역시	16,868	2,932	7	71	3,987	23,865
경기도	62,635	106,378	3,041	283	241,868	414,205
강원도	34,709	54,197	1,097	957	53,842	144,802
충청북도	25,070	25,990	758	258	82,490	134,566
충청남도	15,280	44,586	2,769	-	65,719	128,354
전라북도	35,171	10,130	566	1,313	42,384	89,564
전라남도	23,376	40,872	880	512	81,685	147,325
경상북도	25,272	58,452	1,409	4,482	126,019	215,634
경상남도	40,733	41,914	684	273	164,964	248,568
합계	418,083	405,668.2	12,082.1	9,266	916,480.7	1,761,580

1. 2012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체육분야 최종예산

※ 기초자치단체 예산만 포함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기초자치단체 체육예산항목 부재

■ 표 1-38-3 기초자치단체별 분야별 체육예산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기타	예산총액 ¹⁾
종로구	968	174	19	7	-	1,168
중 구	7,866	422	8	-	-	8,296
용산구	2,535	-	-	-	-	2,535
성동구	7,203	334	28	-	-	7,565
광진구	664	-	-	-	350	1,014
동대문구	804	-	-	-	-	804
중랑구	1,829	-	-	-	299	2,128
성북구	5,277	382	18	-	-	5,677
강북구	2,849	-	-	-	-	2,849
도봉구	591	371	33	-	68	1,063
노원구	1,037	268	71	1,001	-	2,377
은평구	566	381	1	-	2,321	3,269
서대문구	488	-	10	30	2,700	3,228
마포구	1,654	-	-	25	65	1,744
양천구	880	-	-	-	623	1,503
강서구	884	-	-	-	5,422	6,306
구로구	620	557	-	-	2,823	4,000
금천구	753	6	1	-	10	770
영등포구	631	-	19	-	3,476	4,126
동작구	538	598	55	-	84	1,275
관악구	4,116	221	2	-	-	4,339
서초구	524	-	5	-	2,205	2,734
강남구	2,427	-	-	-	4,500	6,927
송파구	6,064.5	434	40	-	16.5	6,555
강동구	550	122	-	-	140	812
소 계	52,318.5	4,270	310	1,063	25,102.5	83,064
중 구	817	84	-	-	-	901
서 구	827	210	-	-	-	1,037
동 구	638	-	127	-	2,102	2,867
영도구	501	153	-	-	-	654
부산진구	3,016	-	-	-	-	3,016
동래구	378	145	-	-	3,000	3,523
남 구	4,480	283	-	-	-	4,763
북 구	254	1,516	-	-	528	2,298
해운대구	544	48	-	-	-	592
사하구	799	377	-	-	1,662	2,838
금정구	3,538	207	-	-	-	3,745
강서구	3,540	284	-	-	-	3,824
연제구	4,340	-	-	-	256	4,596
수영구	542	352	-	-	1,360	2,254
사상구	384	234	-	-	276	894
기장군	5,252	33	-	-	-	5,285
소 계	29,850	3,926	127	0	9,184	43,087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기타	예산총액 ¹	
대구	중 구	689	343	-	-	46	1,078
	동 구	3,984	476	-	-	-	4,460
	서 구	742	324	-	-	5	1,071
	남 구	851	434	-	-	-	1,285
	북 구	1,826	463	-	-	-	2,289
	수성구	2,592	667	-	-	-	3,259
	달서구	1,229	462	9	-	-	1,700
	달성군	13,452	815	208	-	543	15,018
소 계	25,365	3,984	217	-	594	30,160	
인천	중 구	1,301	561	25	34	-	1,921
	동 구	462	689	-	-	-	1,151
	남 구	1,050	645	14	-	-	1,709
	연수구	758	-	-	-	-	758
	남동구	4,285	646	52	-	-	4,983
	부평구	1,278	323	10	-	-	1,611
	계양구	330	489	5	-	76	900
	서 구	1,844	390	35	-	-	2,269
	강화군	1,040	605	-	-	7,230	8,875
옹진군	931	503	-	-	-	1,434	
소 계	13,279	4,851	141	34	7,306	25,611	
광주	동 구	928	390	1	-	-	1,319
	서 구	2,445	-	1	-	-	2,446
	남 구	5,322	-	3	-	-	5,325
	북 구	1,138	582	10	-	6,235	7,965
	광산구	385.5	384.2	2.1	-	996.2	1,768
	소 계	10,218.5	1,356.2	17.1	0	7,231.2	18,823
대전	동 구	3,421	249	-	20	-	3,690
	중 구	1,851	208	4	-	-	2,063
	서 구	759	486	46	-	3,133	4,424
	유성구	1,328	579	-	-	702	2,609
	대덕구	579	308	9	-	270	1,166
	소 계	7,938	1,830	59	20	4,105	13,952
울산	중 구	1,909	-	7	-	-	1,916
	남 구	2,739	637	-	71	3,987	7,434
	동 구	1,618	1,228	-	-	-	2,846
	북 구	6,595	531	-	-	-	7,126
	울주군	4,007	536	-	-	-	4,543
	소 계	16,868	2,932	7	71	3,987	23,865
경기	수원시	2,057	23,314	142	-	20,423	45,936
	성남시	1,946	6,866	220	-	24,940	33,972
	의정부시	726	2,246	162	72	855	4,061
	안양시	743	4,487	89	-	18	5,337
	부천시	314	816	33	-	31,375	32,538
	광명시	1,022	2,681	39	10	7,055	10,807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기타	예산총액 ¹
평택시	6,493	2,463	448	-	12,987	22,391
동두천시	769	440	20	5	846	2,080
안산시	1,409	7,255	228	30	2,172	11,094
고양시	2,215	10,646	422	100	7,987	21,370
과천시	1,486	1,991	27	40	75	3,619
구리시	620	501	19	-	-	1,140
남양주시	1,791	2,578	40	-	37,397	41,806
오산시	895	2,007	81	2	331	3,316
시흥시	947	2,983	163	-	3,659	7,752
군포시	976	798	37	-	1,984	3,795
의왕시	410	537	21	-	3,187	4,155
하남시	878	806	76	-	6,273	8,033
용인시	1,780	8,334	157	-	11,961	22,232
파주시	513	1,517	25	-	3,610	5,665
이천시	872	2,899	142	-	2,256	6,169
안성시	1,663	1,197	13	-	1,153	4,026
김포시	791	2,770	154	-	4,588	8,303
화성시	959	6,839	-	-	14,277	22,075
광주시	9,750	1,507	85	24	43	11,409
양주시	581	341	82	-	15,904	16,908
여주군	615	980	17	-	8,302	9,914
연천군	2,949	718	-	-	6,741	10,408
포천군	850	3,440	85	-	3,047	7,422
가평군	1,226	1,531	-	-	8,402	11,159
양평군	14,389	890	14	-	20	15,313
소 계	62,635	106,378	3,041	283	241,868	414,205
춘천시	982	1,593	226	835	11,625	15,261
원주시	5,295	22,200	89	-	663	28,247
강릉시	824	5,016	215	54	3,931	10,040
동해시	830	1,357	36	-	5,828	8,051
태백시	880	2,997	2	28	1,825	5,732
속초시	271	785	181	-	-	1,237
삼척시	2,020	3,136	56	20	2,264	7,496
홍천군	3,855	2,571	-	-	1,602	8,028
횡성군	2,154	1,717	25	-	-	3,896
영월군	807	2,004	27	-	-	2,838
평창군	965	2,717	10	-	6,679	10,371
정선군	5,524	938	5	-	-	6,467
철원군	4,165	633	85	-	1,287	6,170
화천군	2,056	1,174	14	20	-	3,264
양구군	609	1,403	-	-	486	2,498
인제군	1,746	2,340	-	-	8,858	12,944
고성군	988	989	24	-	2,881	4,882
양양군	738	627	102	-	5,913	7,380
소 계	34,709	54,197	1,097	957	53,842	144,802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기타	예산총액 ¹
충북	청주시	2,462	10,907	369	3	10,750	24,491
	충주시	982	2,927	150	-	27,460	31,519
	제천시	751	1,353	15	-	12,182	14,301
	청원군	6,321	907	-	-	-	7,228
	보은군	540	2,258	77	-	7,134	10,009
	옥천군	600	1,141	72	-	2,220	4,033
	영동군	6,377	950	8	250	37	7,622
	증평군	3,456	1,079	30	-	13	4,578
	진천군	484	1,083	7	-	2,506	4,080
	괴산군	347	968	7	-	34	1,356
	음성군	553	1,629	16	-	15,482	17,680
	단양군	2,197	788	7	5	4,672	7,669
	소 계	25,070	25,990	758	258	82,490	134,566
충남	천안시	2,242	8,814	803	-	17,782	29,641
	공주시	1,646	1,045	86	-	1,319	4,096
	보령시	2,739	3,433	648	-	-	6,820
	아산시	853	5,357	171	-	8,924	15,305
	서산시	694	5,553	244	-	1,865	8,356
	논산시	535	1,930	104	-	4,616	7,185
	계룡시	245	547	57	-	415	1,264
	당진시	394	2,910	155	-	4,226	7,685
	금산군	930	884	19	-	7,762	9,595
	부여군	1,111	745	24	-	5,326	7,206
	서천군	255	840	35	-	2,927	4,057
	청양군	545	1,239	38	-	923	2,745
	홍성군	2,300	4,320	256	-	381	7,257
	예산군	381	630	55	-	9,253	10,319
	태안군	410	6,339	74	-	-	6,823
소 계	15,280	44,586	2,769	0	65,719	128,354	
전북	전주시	11,371	2,898	30	-	-	14,299
	군산시	311	2,107	44	10	4,783	7,255
	익산시	1,243	149	81	-	5,706	7,179
	정읍시	1,376	70	153	-	2,134	3,733
	남원시	1,337	243	104	-	1,565	3,249
	김제시	1,166	846	40	-	5,862	7,914
	완주군	460	103	12	-	-	575
	진안군	4,219	2	16	-	-	4,237
	무주군	623	434	5	1,146	7,760	9,968
	장수군	9,363	871	7	-	-	10,241
	임실군	1,441	567	27	10	5,865	7,910
	순창군	479	692	15	-	1,592	2,778
	고창군	1,228	507	12	147	3,966	5,860
	부안군	554	641	20	-	3,151	4,366
소 계	35,171	10,130	566	1,313	42,384	89,564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기타	예산총액 ¹	
전남	목포시	690	4,954	130	-	4,692	10,466
	여수시	995	4,840	140	7	8,021	14,003
	순천시	3,570	1,740	172	70	7,457	13,009
	나주시	236	825	25	5	4,550	5,641
	광양시	503	2,525	54	-	3,995	7,077
	담양군	476	1,724	15	-	1,435	3,650
	곡성군	874	421	10	-	5,442	6,747
	구례군	1,080	4,303	10	-	-	5,393
	고흥군	195	275	20	-	6,576	7,066
	보성군	591	614	35	-	5,683	6,923
	화순군	2,292	1,912	13	-	7,702	11,919
	장흥군	662	486	31	-	2,992	4,171
	강진군	449	2,711	35	430	1,173	4,798
	해남군	576	6,940	60	-	-	7,576
	영암군	615	357	15	-	7,795	8,782
	무안군	482	731	20	-	1,765	2,998
	함평군	566	471	12	-	2,439	3,488
	영광군	959	2,384	15	-	6,115	9,473
	장성군	331	957	7	-	3,332	4,627
	완도군	752	117	27	-	458	1,354
	진도군	5,660	846	22	-	63	6,591
신안군	822	739	12	-	-	1,573	
소 계	23,376	40,872	880	512	81,685	147,325	
경북	포항시	1,469	5,826	129	1,140	28,411	36,975
	경주시	458	8,191	147	1,520	3,701	14,017
	김천시	594	3,715	28	-	16,573	20,910
	안동시	1,462	4,809	325	-	7,484	14,080
	구미시	1,556	11,180	47	50	16,904	29,737
	영주시	676	3,036	10	-	209	3,931
	영천시	843	2,013	62	-	210	3,128
	상주시	567	3,966	107	-	15,084	19,724
	문경시	5,311	3,329	39	1,272	1,351	11,302
	경산시	1,583	2,197	226	-	3,411	7,417
	군위군	369	474	7	-	1,889	2,739
	의성군	451	1,133	14	-	8,080	9,678
	청송군	2,182	355	11	-	-	2,548
	영양군	500	455	12	-	6,620	7,587
	영덕군	624	1,094	10	-	2,974	4,702
	청도군	1,710	196	18	-	-	1,924
	고령군	2,005	125	5	-	166	2,301
	성주군	573	1,037	16	-	1,617	3,243
	칠곡군	263	557	22	-	3,878	4,720
	예천군	233	1,296	7	-	2,003	3,539
봉화군	580	1,269	7	-	105	1,961	

	자치단체명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기타	예산총액 ¹⁾
경북	울진군	961	2,199	160	500	-	3,820
	울릉군	302	-	-	-	5,349	5,651
	소 계	25,272	58,452	1,409	4,482	126,019	215,634
경남	창원시	3,230	12,743	123	241	54,095	70,432
	진주시	1,157	2,074	72	-	3,955	7,258
	통영시	5,936	3,370	35	-	1,529	10,870
	사천시	7,124	2,459	21	-	18,776	28,380
	김해시	7,209	6,816	185	-	147	14,357
	밀양시	6,452	957	-	-	492	7,901
	거제시	736	2,865	62	-	12,109	15,772
	양산시	581	2,994	47	12	9,932	13,566
	의령군	510	673	-	-	2,715	3,898
	함안군	442	-	3	-	6,567	7,012
	창녕군	1,408	547	11	-	7,235	9,201
	고성군	549	1,406	7	-	11,066	13,028
	남해군	590	472	35	20	11,513	12,630
	하동군	429	843	-	-	6,082	7,354
	산청군	335	140	-	-	4,062	4,537
	함양군	300	548	8	-	7,591	8,447
	거창군	2,589	823	55	-	4,032	7,499
	합천군	1,156	2,184	20	-	3,066	6,426
소 계	40,733	41,914	684	273	164,964	248,568	

1. 2012년도 자치단체 예산 총액 = 국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등), 일반회계 체육분야 최종예산

※ 기초자치단체 예산만 포함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기초자치단체 체육예산항목 부재

4. 국민체육진흥기금

1) 설치근거 및 연혁

최초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 여건 조성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법률 제12336호, 1972. 8. 14)이 제정되어 1974년 1월 1일부터 운동장에 대한 체육시설 입장료 부가금이 신설되면서 탄생하였다.

1972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설립(허가권자 : 문교부장관, 1972. 9. 23) 되었다. 1982년에는 「정부조직법」(법률 제3540호, 1982. 3.

20)의 개정으로 개정 법률에 따라 체육진흥업무가 문교부에서 체육부로 이관되었으며, 1982년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이 폐지되었다. 현재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동법 제19조에 의거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용되고 있다. 또한 1989년 4월 20일 국민체육진흥재단이 해산되고 올림픽잉여금 3,110억원 등 총 3,521억원의 발족기금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었다.

2) 기금 조성

가. 조성재원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회원제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배분되는 복권수익금, 경륜·경정사업 등에 따른 수익금,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에 따른 기금출연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시설물의 대여, 임대수입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나. 조성실적

현재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이익잉여금 3,110억원 등 발족기금 3,521억원을 기반으로 '89~'12년까지 7조 2,268억원을 조성하고, 4조 5,13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2년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1조 8,477억원이다.

■ 표 1-39 기금조성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발족기금	조성금액	기금지원액	적립기금
'89~'12	3,521	72,268	45,138	18,477

3) 기금지원 실적

가. 지원 실적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국민체육진흥사업,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를 위한 사업 등에 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 표 1-40 기금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실 적														
	소계	'8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45,138	7,655	1,031	1,243	1,726	1,526	1,747	2,291	2,367	2,578	3,860	5,295	6,568	7,251	
국민 체육 진흥	소계	44,093	6,610	1,031	1,243	1,726	1,526	1,747	2,291	2,367	2,578	3,860	5,295	6,568	7,251
	전문체육	23,272	4,720	522	603	829	420	443	556	667	896	1,585	3,204	4,234	4,593
	생활체육	18,453	1,600	430	555	747	952	1,145	1,549	1,527	1,518	2,066	1,854	2,119	2,391
	학교체육	2,368	290	79	85	150	154	159	186	173	164	209	237	215	267
청소년육성	774	774	-	-	-	-	-	-	-	-	-	-	-	-	
올림픽기념	271	271	-	-	-	-	-	-	-	-	-	-	-	-	

※ 전문체육 부문에는 월드컵경기장 건설비(2,103억원) 포함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12년 현재까지 국민체육진흥 4조 4,093억원, 청소년육성 774억원, 올림픽기념사업 271억원 등 총 4조 5,138억원이 지원되었다. 이 중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에 2조 3,272억원이, 생활체육에 1조 8,453억원, 학교체육에 2,368억원이 지원되었다.

나. 용자 실적

국민체육진흥과 한축을 이루고 있는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기금의 용자실적을 보면 체육시설업체에 1996년부터 2012년까지 496개 업체에 총 1,436억원이 용자되었고,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는 1991년부터 2012년까지 132개 업체에 221억원이 용자되었으며, 2006년부터 시작된 스포츠서비스업체에는 2012년말 현재 총 14개 업체에 36억원이 용자되었다.

■ 표 1-41 스포츠산업업자실적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실 적											
	소계		'91~'08		'09		'10		'11		'12	
	업체수	용자액	업체수	용자액	업체수	용자액	업체수	용자액	업체수	용자액	업체수	용자액
계	642	169,245	530	136,391	28	9,050	28	8,073	28	7,491	28	8,240
체육시설업체	496	143,612	417	117,688	19	7,550	17	5,490	19	5,444	24	7,440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132	22,058	103	15,928	8	1,350	10	2,283	7	1,697	4	800
스포츠서비스업	14	3,575	10	2,775	1	150	1	300	2	350	-	-

4) 지원성과

지난 세월동안 우리나라 체육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위선양과 국민 사기 진작 그리고 국민복지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체육정책에 따라 국민건강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많은 국제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견인차가 되어 왔으며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였다.

서울올림픽잉여금 등 3,521억원을 기초재원으로 출발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그 동안 내실있는 조성과 운영을 통해 2012년말 기준 1조 8,477억원을 적립하였으며, 기금조성 기간 중에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육성 등 국민체육진흥분야에 4조 4,093억원, 청소년 분야에 774억원, 올림픽기념사업에 271억원 등 총 4조 5,13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명실 공히 우리나라의 체육진흥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성과를 2012년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육복지 여건 조성이다. 생활체육 접근성 향상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학교·지자체·특수시설 등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농어촌복합체육시설, 학교기본체육시설, 레저스포츠시설 등 생활체육기반시설(1,329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의 체육인력보급, 저소득층 스포츠 복지를 위한 체육바우처 지원, 각종 생활체육단체지원, 동호인 및 스포츠클럽 육성 등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육성사업으로 체육참여율 향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899억원)를 견인하고 있다.

둘째, 전문체육, 국제대회 지원으로 국위선양 및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88서울올림픽 종합 4위라는 놀라운 성과 이후 각종 국제대회에서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온 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28개의 메달획득으로 종합순

위 5위라는 성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성적 배경에는 후보선수 육성, 전문체육시설 확충, 소년체전 지원, 연금 및 체육장학금 등 체육인 복지향상사업을 꾸준히 지원해 온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역할이 큰 몫을 차지하였다. 2012년에는 우수선수 육성(65억원), 비인기종목활성화 지원(36억원), 진천 선수촌 운영(105억원), 국가대표종합훈련장 2단계 건립(49억원), 학교체육활성화(181억원), 체육인복지사업(115억원)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국제체육교류 증진을 위해 청소년체육교류, 국제체육교류(17억)에 지원하였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대비 특별지원(69억원), F1대회(50억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1,436억원), 2015광주하계U대회(327억원),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86억원) 등을 지원하였다.

셋째, 스포츠산업을 신규 유망산업으로 육성하였다. 국민체육진흥지원사업 이외에도 국내 열악한 체육산업 육성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체(74억원) 및 우수체육용기구 생산업체(8억원) 등에 체육산업 융자를 실시하였고 K-아트홀(태권도 상설공연장),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등 기금조성 투자사업(211억원)을 지원하였다.

넷째, 장애인체육을 진흥해 나가고 있다. 2006년 1월 장애인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現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이후 장애인체육 정착 및 진흥을 위한 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까지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액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원(6억원), 시각장애인생활체육(2억원) 등 8억원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전문체육분야(10억원), 생활체육분야(39억원)에 지원을 하여 장애인체육의 진흥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체육의 일대 전환기를 가져왔으며 2009년 완공된 이천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에 302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체육 종합 거점시설로써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2012년 각종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등 장애인 생활체육과 국제대회 지원 및 후보선수 육성 등 전문체육 지원에 362억원을 지원 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인 기여가 기대되고 있다.

다섯째, 스포츠과학의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체육학회를 비롯한 분과학회의 학술활동 지원을 통해 스포츠과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을 부설 기관화하여(現 체육과학연구원) 직접 운영함으로써 스포츠과학 연구는 물론 체육정책개발 지원, 경기력향상 지원, 스포츠정보 전산화, 스포츠산업 기술 지원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2012년 72억원 지원)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4절 체육관련 법제

1. 개 관

체육관련법은 특수한 법의 새로운 영역이 아니라, 실정법에 있어서 체육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들을 말한다. 체육관련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체육법체계를 실정법체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법을 분류하는 데는 법의 형식이나 내용, 또는 효력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의 수는 약 4,000여건으로 이런 법령은 형식에 따라서 피라미드식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에서 최상의 위치에는 헌법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밑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존재한다. 이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입법으로서 대통령령이 시행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한 총리령과 부령이 시행규칙으로서 존재한다. 이외에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법규가 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공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주체가 되고,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공익의 실현을 추구하는 법을 말하며, 사법은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이 외에 공법과 사법에 걸쳐 법률관계가 규정되는 중간영역인 사회법이 있다. 이 사회법의 범주에는 보통 「사회보장법」, 「노동법」과 「경제법」 등을 들 수 있다.

체육관계법에 대한 분류는 주로 공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법률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경륜경정법」, 「스포츠산업진흥법」, 「국제경기대회지원법」, 「한국마사회법」, 「수상레저안전법」 등도 특별법의 형태로 체육관계법에 속한다. 이외에도 「정부조직법」, 「청소년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체육·스포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가진 법률들을 찾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사법에서는 직접 스포츠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법」이나 「상법」 등의 법률은 단지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즉 사고와 관련하여 그 주체가 사인이라면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된다.

법률은 그 적용순서에 있어서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법에 있어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체육관계법」에서 일반법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며,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령은 시간적인 효력에 따라서 일반법과 한시법으로 분류한다. 보통 일반적인 법령은 절차에 의하여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나, 한시법의 경우 유효기간을 부칙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처럼 명문으로 규정된 효력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우리나라의 체육관련법령은 체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부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겠지만 체육관계법은 대략 50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2. 체육관계법 현황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가.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17일 제정된 후 2007년 4월 11일 전면 개정된 법률로서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총 6장 55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체육진흥의 기본이 되는 조장적 법으로서, 체육,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 운동경기부 등의 제개념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체육활동의 권장·보호·육성의무를, 제4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기본시책 수립·시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운동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호, 레크리에이션의 보급과 프로경기의 건전 육성, 경륜·경정 등 여가체육활동의 건전 시행, 체육용구의 생산 장려 등을 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민체육진흥재단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사용, 제4장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제5장에서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단체의 육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2010년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과 구매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대상에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를 추가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대상을 미성년자에서 청소년으로 조정하였다.

2011년에는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하여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대상별·기능별로 세분화 하였다. 자격검정을 거친 후 현장 중심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프로선수 포함)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 해주도록 조정하였으며,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근거 마련,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신설 및 자격취소 요건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또한,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관련 금지행위 구체화 및 관련 벌칙을 신설하였고,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와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제한 대상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금지를 명확히 하였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유사 행위를 한 자 등의 신고·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강화와 징역, 벌금의 병과 규정을 신설하였다.

2012년에는 체육지도자 양성에서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규정을 신설하였고, 지정기관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하였다. 또한 기금의 사용항목 중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유사행위 및 운동경기의 부정행위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고 벌칙도 강화하였다.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1989년 3월 31일 제정·공포된 법률로서 2007년 4

월 11일 전면 개정되었다. 이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와 민간체육시설업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총 5장 40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은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업으로 나누며,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하며, 민간체육시설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사인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체육지도자 배치·시설기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직장의 장에게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해 동 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 스포츠산업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은 2007년 4월 6일 제정된 법으로서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에는 프로구단이 관객유치와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시설 사용·수익 기간이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프로구단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을 25년의 기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였다.

라. 전통무예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은 2008년 3월 28일 제정된 법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 육성,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마. 경륜경정법

「경륜경정법」은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법으로서 “경륜 및 경정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국민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경륜·경정의 시행, 수익금의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0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발생하는 미환급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하여 각종 체육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년에는 「개별소비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입장료 징수 범위를 경주장에서 경주장 및 장외매장으로 수정하였다.

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은 2007년 12월 14일 제정 및 공포된 법으로서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에 개최되는 제42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년에 개최되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초 제정시에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이었으나, 그 후 2010년 개정을 통하여 광주광역시 유치한 2015년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제명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변경하였다.

2011년도 주요 개정을 살펴보면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4년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변경하였고,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남북 간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2년도에는 2013년 충주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변경,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로 개최되는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지원 근거 규정 신설, 국가적 차원의 대테러대책기구를 설치·운영 근거 명시, 대회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총량 조정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하였다.

전체 6장 3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회조직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대회 관련시설,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벌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법률로서 “우리 민족의 고유 무예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예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전체 5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등 태권도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과 효율적인 태권도공원의 조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 씨름진흥법

「씨름진흥법」은 2012년 1월 17일 제정된 법률으로써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 씨름의 날 지정 및 행사진행, 씨름 및 씨름 시설의 지원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2년 1월 26일 제정된 법으로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3회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8장 9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위원회, 대회지원위원회, 대회관련시설,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운영,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벌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차.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은 2012년 11월 23일 제정된 법으로써,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6장 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 진흥, 관련 산업 발전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행사인 바, 이러한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서울올림픽대회,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개별입법 추진의 행정낭비를 개선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일반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경기단체 포함)의 장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 제출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유치 승인 시 미리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대회 개최에 따른 재정소요를 고려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대회 개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회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부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포함한 대회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가.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은 2012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학교시설설치,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건강체력교실,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등의 운영,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학교체육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타.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은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관광산업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6장 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회시설 및 수익사업, 대회지원단체 지원 및 안전대책,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벌칙 등 규정하고 있다.

2012년에는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의 설립사항,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자금의 차입,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대회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대회운영기업이 아닌 조직위원회로 변경하였다.

파.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은 “2013년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스페셜올림픽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고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체력 향상과 더불어 지적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사회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3평창동계올림픽세계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대회기금 설치 할 수 있다. 국유·공유 재단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기념주화의 판매, 기념우표 등의 발행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2) 규정과 예규

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1-26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입지기준·환경보전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업무 처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04호)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업무 처리규정」은 관세법 제36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총8조로 구성되어 있다. 사후관리대상물품은 대한체육회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아 수입하는 체육용품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후관리업무를 대한체육회에 재위탁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다. 대한민국체육상 심사위원회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126호)

「대한민국체육상 심사위원회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체육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사기준과 결정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문화체육관광부고시 2009-25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

정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의 지정대상업종 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우수업체 제품의 우선구매, 대한체육회 및 체육과학연구원의 기술지도, 우수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 지정업체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마.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1호)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규정」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설립·운영되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훈령으로 제정하였다.

바. 국제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07호)

「국제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규정」은 2007년 11월 22일 문화관광부훈령 제198호로 제정되었으며, 국제체육대회의 체계적·심층적인 타당성 검토 및 심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국제체육대회 유치를 도모하고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단체 등이 국제체육대회를 유치·개최하기 위하여 정부 승인 또는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기금 내지 기타 정부지원금을 포함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및 기타 공인된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국제 종합경기대회, 월드컵 축구대회,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연맹(IFs)에서 주최·주관하는 종목별 국제경기대회로서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선수단(선수와 임원을 포함한다)이 참가하는 대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 등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기타 공인된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국제체육 관련 회의, 기타 중앙정부의 보증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경기대회로 제한하고 있다.

사.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은 1984년 2월 16일 제정된 규칙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연수, 자격검정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은 체육지도자연수원, 연수과정 및 교과, 연수계획의 수립 및 제출, 연수시행, 수료증교부, 자격검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2012년 4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4호에 의하여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을 타법폐지하고, 법령 체계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체육진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지도자의 연수, 자격검정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하여 통합 규정하였다.

아.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168호)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규정」은 2012년 2월 6일 제정된 규칙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5조 제1장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집행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금의 집행대상은 유소년스포츠,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아마추어스포츠 활성화사업,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사업을 지원금 집행대상으로 한다.

3) 체육유관법령

가.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은 국민의 여가스포츠로서의 수상레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전형적인 여가스포츠에 관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2011년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종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근거 마련과 조종면허 결격사유, 갱신기간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범위를 10해리로 확대하고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

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설립하도록 신설하였다.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의 보완·신설내용을 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개정하였고, 등록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명확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상레저기구 대여업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서는 등록기준 완화, 수상레저사업자가 교육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신고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이용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이용한 스포츠생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2011년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도시계획’을 ‘도시·군 계획’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다.

다.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오늘날 사격은 스포츠경기의 한 종목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적 스포츠로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격은 총기를 사용하는 스포츠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관계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은 “사격과 사격장을 단속하여 공안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목적이 스포츠 활동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4월 10일 제정된 법률로서 이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주요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에서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말산업육성법

「말산업육성법」은 2011년 3월9일 제정된 법으로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이용업”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승마장 및 승마장업과 업종구분이 불명확하여 행정절차 및 시설안전기준 등이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2009년 6월9일 제정되어 “마리나 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리나 항만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 도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촉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12년 개정을 통하여 위반행위별로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3개월 이내 및 1년 이내)으로써 위반행위자의 의무이행 기간을 명확히 하였으며, 2013년 6월 시행예정이다.

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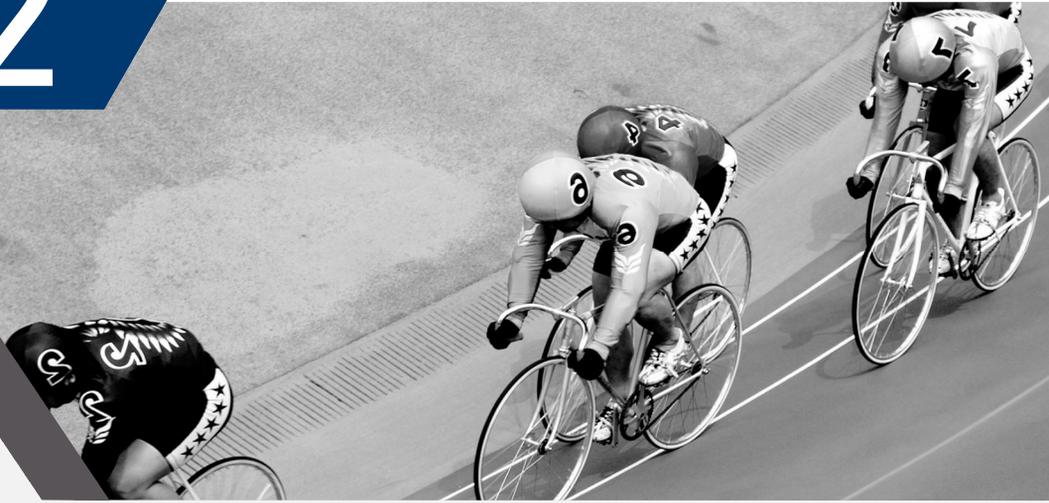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법률로서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육과 관련한 2011년 주요개정을 살펴보면 숲길의 정의를 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길로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숲길의 종류를 신설하여 이용하는 목적과 유형에 따라 등산로, 트레킹길, 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정의하였다. 또한, 등산로에 한하여 지원하던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해 등산로를 포함하여 트레킹길(주요 산의 둘레길과 트레일을 포함), 전국 또는 국제규모의 산악레포츠 대회에 필요한 산악레포츠길, 역사·문화적으로 복원할 가치가 있는 옛길과 2개 이상의 사도에 걸쳐 있는 휴양치유숲길에 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하였다.

2012년에는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을 휴양, 보건, 문화, 교육 등 복지적 측면에서 활용하려는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산림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국민의 산림복지·교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아. 기타 법률

그밖에 체육관련 조문을 두고 있는 것에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다. 또한 그 외에도 스포츠시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과 하천법」,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한 「조세법」 등 다양한 법들이 체육관련법에 해당된다.

02



생활체육

- ／ 제1절 개관
- ／ 제2절 생활체육 참여 실태 분석
- ／ 제3절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제공
- ／ 제4절 동호인클럽 육성 및 활동 지원
- ／ 제5절 직장체육활동 육성
- ／ 제6절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
- ／ 제7절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 ／ 제8절 생활체육 홍보
- ／ 제9절 세계한민족축전

Section

02 생활체육

제1절 개관

생활체육의 기본 철학인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의 이상은 1960년대 노르웨이의 트림(Trim) 캠페인에서 유래되었다. 이후 1975년 3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 각국 체육부장관 회의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유럽 헌장’이 채택되면서 생활체육은 사회운동과 국가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헌장에서는 스포츠 활동 참여가 모든 사람의 권리임을 최초로 천명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라는 범세계적 생활체육 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생활체육운동은 체육 소외 계층인 노인이나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3세계의 생활체육 환경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수행하면서 체육활동에서 불평등을 해소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눈부신 경제성장, 주5일 근무제 및 수업제 시행,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체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즉, 체육이 국위를 선양하는 활동이라는 인식 이외에 국민 누구나가 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더욱이 생활체육이 고칼로리 섭취와 운동부족으로 인한 신체적 건강 문제 해결과 도시 산업사회의 병리현상으로 인한 심리적, 생리적 스트레스 해소의 주요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국민의 체육활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국민의 체력과 건강 유지 및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 정책 사업은 여덟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급변하는 사회 및 체육환경 속에서 다양화되고 있는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행태와 요구를 분석하여,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생활체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생활체육 실태조사는 2006년까지는 3년 주기로 실시되었으며, 2006년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여부와 참여종목 등 생활체육 직접 참여 행태, 생활체육 참여의 주요 3요소인 체육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관련 요구와 체육활동 효과 및 체육정책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결과는 생활체육진흥 정책 입안 및 추진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 요구지향형 생활체육 사업 개발의 핵심 자료로 기능하고 있다.

둘째,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사업이다. 이 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는 데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주2회 이상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0년, 2008년, 2012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5.4%, 9.9%와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체육 참여가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 상황 악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 받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0년 조사결과는 IMF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2008년과 2012년 조사에도 고용불안과 경기불황 등 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불황일 때 생활체육 참여율 감소 경향이 있다는 외국의 사례들은 우리나라의 생활체육 참여율 감소에 주요한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다.

■ 표 2-1 주2회 이상 규칙적 생활체육활동 참여율 변화

(단위: %)

년 도 별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8	2010	2012
참 여 율	34.7	37.6	38.8	33.4	39.8	44.1	34.2	41.5	35.0

※ 2006년까지 3년 주기, 2006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짐.

셋째,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지원 사업이다. 생활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동호인에게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인 국민생활체

육회가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지원과 동호인행사 개최 지원 등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표 2-2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수의 변화

년 도	클럽 수(개)	동호인 수(명)	인구대비(%) ¹⁾
2002	52,020	1,776,604	3.7
2003	64,665	2,176,221	4.5
2004	73,802	2,449,948	5.1
2005	77,452	2,556,737	5.3
2006	82,781	2,701,736	5.6
2007	92,688	2,913,806	6.0
2008	95,075	2,985,253	6.2
2009	97,697	3,081,436	6.3
2010	97,815	3,085,879	6.3
2011	74,784	3,081,448	6.3
2012	81,882	3,646,013	7.3

※ 1) : 2012년 말 추계인구 기준임.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수와 동호인 수는 2010년까지 지속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 감소하였다. 2011년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2012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호인 수는 2011년 소폭 감소했다가 2012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수와 동호인 수가 감소한 이유는 클럽 등록만 해놓고 실제 활동을 하지 않는 클럽들을 재정비하고 소규모 클럽들 간 통합을 통해 실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클럽 수와 동호인 수 만을 조사결과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2년 동호인 클럽 수와 동호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활성화된 종목의 동호인행사지원 예산의 차등지원과 생활체육 홍보강화 등 종목별, 지역별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통해 동호인 확대를 도모한 결과로 판단된다.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 수는 소프트볼, 프리테니스, 우드볼, 바둑, 럭비, 요트, 플라이디스크, 특공무술, 댄스스포츠, 민속발리댄스, 전통선술, 이종격투기, 공수도, 피구, 생활무용, 걷기 등 16종목의 인정단체를 포함해 2012년 말 현재 6,667개이다.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는 2009년부터 ‘인정단체’ 제도가 도입되어 연합회 결성 현황에 인정단체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속 증가추세에 있다.

■ 표 2-3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 결성 현황

연도별	전국 종목별연합회 (종목)	시도 종목별연합회		시·군·구 연합회	
		종목	연합회	종목	연합회
2002	40	63	441	84	3,326
2003	44	65	524	109	3,847
2004	46	67	548	109	4,479
2005	46	67	565	109	4,814
2006	46	69	586	109	5,075
2007	46	68	582	109	5,089
2008	46	72	605	115	5,134
2009	59 (인정단체 9개 종목 포함)	76	628	115	5,603
2010	65 (인정단체 15개 종목 포함)	76	630	115	5,613
2011	66 (인정단체 16개 종목 포함)	78	688	115	6,327
2012	66 (인정단체 16개 종목 포함)	94	710	117	6,667

넷째, 직장체육활동 육성 사업이다. 직장체육은 구성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여 노사화합과 생산성 제고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정책의 주요 영역이 되고 있다. 직장체육은 운동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작업환경에서 근로자 개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노사 간 화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권장되어 왔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을 지정하여 직장체육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직장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장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2012년 12월 말 현재 등록된 직장체육 동호인 클럽 수는 4,009개이며 회원 수는 435,35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수치는 77,875개 클럽에 회원 수가 3,210,662명인 지역체육동호인에 비해 매우 낮아 직장체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섯째,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 사업이다. 1975년 유럽 각국 체육부장관 회의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유럽 헌장’을 채택했는데, 이 헌장에서는 스포츠 활동 참여가 모든 사람의 권리임을 선언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인종, 성, 연령, 경제적 수준, 사회적 계층, 신체적 능력 등에 의해서 체육활동 참여가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사회적인 안정과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 지원 없이도 스스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도 기

회를 가질 수 없었던 체육활동 소외계층에 초점을 둔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소외계층 지원 사업으로는 운동용구 지원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여섯째,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사업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시설, 프로그램과 함께 생활체육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생활체육 참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도·관리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본적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의 보급을 위해 1974년부터 경기지도자 1·2급을, 1986년부터 생활체육지도자 2·3급을, 1998년부터 운동처방사인 생활체육지도자 1급을 양성해 왔다. 국가 자격증인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의무고용제도와 자격 증명의 공신력에 의해 관련 분야 채용 및 개업에 활용도가 높다. 다만 유소년 및 노인·장애인에 대한 체육지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로 개편·시행 예정에 있다. 2012년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발급되는 종목은 모두 42개 종목으로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권투,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리듬체조,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이 이에 해당한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취득과정에서 연수와 필기·실기·구술 등의 검정이 이루어지며, 연수는 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학교, 체육경기단체 등에서, 자격검정은 장관이 지정한 학교, 체육경기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2년 12월말(2013년 4월말까지 자격증 수령 기준)까지 정부가 배출한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 877명, 2급 8,224명, 3급 159,602명 등 총 168,703명이다.

■ 표 2-4 등록·신고체육시설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구분	2007			2009			2011		
	시설 개수	배치 대상	배치 인원	시설 개수	배치 대상	배치 인원	시설 개수	배치 대상	배치 인원
등록	295	246	287	361	282	339	439	303	411
신고	45,505	19,913	23,594	53,490	20,151	24,433	56,368	20,906	24,385

일곱째, 생활체육 홍보 및 정보 서비스 사업이다. 생활체육에서 홍보사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체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체육 홍보 및 정보 서비스 사업에서는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생활체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생활체육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생활체육 홍보와 정보 서비스 사업은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정보전달 매체로서 대중화된 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한 홍보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 홍보 및 정보 서비스 사업의 운영 방향도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 동기 유발 위주에서 생활체육 참여를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추진되고 있다. 특히 IT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활용 사업 분야에서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여덟째,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 사업이다. 글로벌 시대에서 세계 도처에 진출해 있는 수백만 해외동포들에게 조국에 대한 긍지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계한민족축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축전에는 체육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며 해외동포들이 조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한민족을 단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제2절 생활체육 참여 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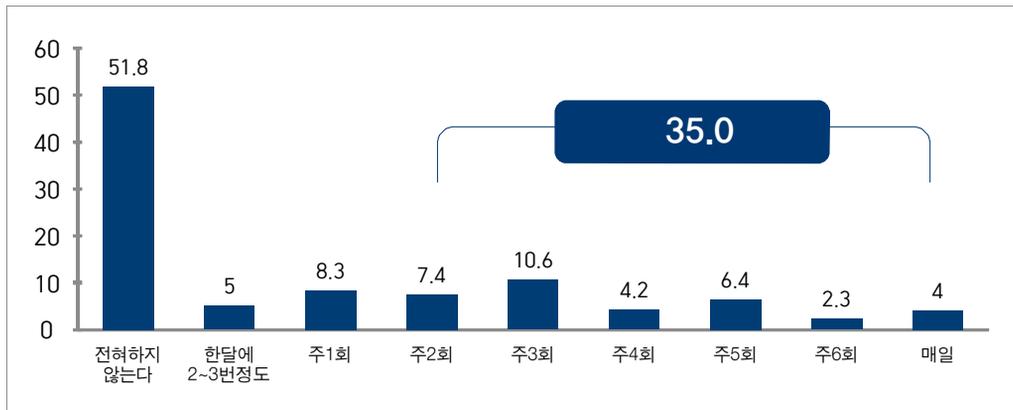
1. 생활체육 직접참여 실태

1) 생활체육 참여 현황

가. 생활체육 참여율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여부 및 빈도는 ‘전혀 하지 않는다’(51.8%), ‘주2~3회’(18.0%), ‘주4~5회’(10.6%), ‘주1회’(8.3%), ‘매일’(4.0%), ‘월2~3회’(5.0%), ‘주6회’(2.3%)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



* 주: ‘주 2회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의 경우 모수 추정 결과 35.0%로 나타남
단, 추정 후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어 표현된 개별 응답치의 합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그림 2-1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여부 및 빈도

이러한 결과는 2012년 주 2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이 35.0%에 이르고 있음을 의미하며, 2010년 41.5%에 비해 6.5%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주 2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은 2000년, 2008년, 2012년에 전년 대비 각각 5.4%, 9.9%와 6.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세계금융위기를 비롯해 2008년과 2012년의 경기 불황, 고용 불안, 실업률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생활체육 참여가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 상황 악화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표 2-5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여부 및 빈도 연도별 비교 (단위 : %)

연도별	전혀 하지 않는다	월 2~3회	주 1회	주 2~3회	주 4~5회	주 6회	매일	주 2회 이상
2000년	34.1	16.7	15.8	16.7	7.1	-	9.6	33.4
2003년	22.5	18.2	19.5	19.9	8.5	-	11.4	39.8
2006년	28.6	13.3	13.9	24.0	12.0	-	8.1	44.1
2008년	53.2	4.4	8.2	15.9	9.3	2.1	6.9	34.2
2010년	45.3	4.4	8.8	21.2	11.8	2.9	5.6	41.5
2012년	51.8	5.0	8.3	18.0	10.6	2.3	4.0	35.0

반면 2010년의 참여율 상승은 세계금융위기의 슬기로운 대처로 인한 경제적 안정,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벤쿠버동계올림픽에서의 선전으로 인한 생활체육 참여 확산, 노인인구의 생활체육 참여율 증가(08년 30.0%에서 10년 46.9%)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생활체육회 등 공공기관의 생활체육사업 확대와 ‘스포츠7330 캠페인’과 같이 전 국민적 홍보확대가 비참여층을 참여층으로 유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표 2-6 연령별 주 2~3회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연도별 비교 (단위 : %)

연도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2000년	39.9	35.6	25.9	30.8	39.1	36.8	-
2003년	32.6	24.4	35.8	46.8	54.0	53.3	-
2006년	38.0	45.2	41.7	50.9	56.7	33.0	24.3
2008년	30.5	30.2	31.8	37.8	40.6	39.6	28.5
2010년	34.8	36.4	38.0	44.4	48.5	51.1	42.8
2012년	27.5	30.4	32.0	38.5	41.3	39.8	37.1

연령대별 주 2~3회 이상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은 ‘50대’(41.3%), ‘60대’(39.8%), ‘40대’(38.5%), ‘70대 이상’(37.1%), ‘30대’(32.0%), ‘20대’(30.4%), ‘10대’(27.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0대, 20대, 30대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10대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나. 참여종목

생활체육 참여종목을 살펴보면, ‘걷기’가 31.8%로 가장 높고, ‘등산’ 14.9%, ‘보디빌딩(헬스)’ 10.2%, ‘축구’ 7.5%, ‘자전거’ 4.6%, ‘수영’ 4.0%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종목을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06년까지는 ‘등산’이 1순위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집주변에서도 가능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며 운동효과도 검증된 ‘걷기’가 1순위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보디빌딩(헬스)’이 2000년 이후 몸짱 열풍으로 순위 내에 등장한 이후 2008년 2순위, 2010년과 2012년에 3순위를 차지하며 대중적인 참여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포츠종목으로는 ‘축구’가 4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전거’와 ‘수영’도 2010년과 마찬가지로 5순위와 6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참여인구 증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고유가시대에 자전거가 교통수단의 대체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 표 2-7 참여종목 연도별 비교표

연도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2000	등산	체조/줄넘기	농구	축구	보디빌딩(헬스)	수영
2003	육상/조깅/속보	등산	보디빌딩(헬스)	체조/줄넘기	수영	축구
2006	등산	축구	육상/조깅/속보	배드민턴	보디빌딩	체조/줄넘기
2008	걷기	보디빌딩(헬스)	등산	축구	배드민턴	수영
2010	걷기	등산	보디빌딩(헬스)	축구	자전거	수영
2012	걷기	등산	보디빌딩(헬스)	축구	자전거	수영

다. 참여시간

1회 평균 체육활동 참여시간은 91분으로 나타났으며, ‘1시간~1시간30분 미만’(43.2%), ‘2시간~3시간 미만’(19.2%), ‘30분~1시간 미만’(13.9%), ‘1시간30분~2시간 미만’(12.8%), ‘3시간 이상’(10.6%), ‘30분 미만’(0.2%) 순으로 나타났다. 1회 평균 참여시간은 90분 내외로 대략 1시간30분정도이며, 60분 미만 참여자는 감소추세인 반면 1시간 이상 참여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표 2-8 1회 평균 체육활동 참여시간 연도별 비교 (단위 : %)

참여빈도 연도	사례수	30분 미만	30~60분 미만	1시간~ 1시간30분 미만	1시간30분~ 2시간 미만	2시간~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평균
2010년	9,000	0.5	15.2	42.0	12.0	19.9	10.4	89
2012년	9,000	0.2	13.9	43.2	12.8	19.2	10.6	91

라. 참여기간

평균 체육활동 참여기간은 4년 1개월로 나타났으며, ‘3년~5년 미만’(21.7%), ‘5~10년 미만’(20.0%), ‘2~3년 미만’(17.8%), ‘10년 이상’(13.6%), ‘1년~1년6개월 미만’(13.4%), ‘6개월~1년 미만’(6.0%)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참여기간은 2010년과 동일하며 2012년 체육활동 참여기간은 2010년에 비해 6개월 미만 비율은 감소한 반면 1년 6개월 이상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9 평균 체육활동 참여기간 연도별 비교 (단위 : %)

참여빈도 연도	사례수	30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1년 미만	1년~1년 6개월 미만	1년6개월 ~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2010년	9,000	2.8	4.1	5.8	15.5	2.3	16.6	20.9	19.5	12.5	4년 1개월
2012년	9,000	1.9	2.5	6.0	13.4	2.9	17.8	21.7	20.0	13.6	4년 1개월

마. 참여 시간대

평일에 참여하는 운동 시간대는 저녁(29.6%), 아침(새벽포함)(15.3%), 오후(11.1%), 일정하지 않음(9.9%), 오전(9.8%), 점심(1.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휴일에는 오전(16.1%), 일정하지 않음(13.9%), 아침(새벽포함)(10.1%), 저녁(9.3%), 오후(8.4%), 점심(1.4%) 순으로 나타났다. 휴일보다는 평일에 운동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평일은 저녁과 아침시간대에 운동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2012년에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일에는 운동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음과 오전이 높았으나 2012년 오전 시간대 운동 비율은 2010년에 비해 2.7% 증가한 반면 일정하지 않음은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보다는 휴일에 운동 참여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휴일에는 자유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표 2-10 연도별 참여 시간대 연도별 비교

(단위 : %)

요일/연도	시간대	사례수	아침 (새벽 포함)	오 전	점 심	오 후	저 녀	일정하지 않음	해당요일 운동하지 않음
평일	2010년	9,000	16.8	9.0	2.3	10.0	34.4	9.1	18.4
	2012년	9,000	15.3	9.8	1.0	11.1	29.6	9.9	23.3
휴일	2010년	9,000	9.8	13.4	1.0	13.0	12.7	21.7	28.4
	2012년	9,000	10.1	16.1	1.4	8.4	9.3	13.9	40.7

바. 참여 장소

주로 운동을 하는 1순위 장소를 살펴보면, 공공체육시설이 48.0%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상업체육시설(21.1%), 학교체육시설(20.9%), 기타(6.9%), 각종복지시설(2.0%), 민간 비영리시설(0.5%), 청소년 수련시설(0.2%), 직장체육시설(0.3%)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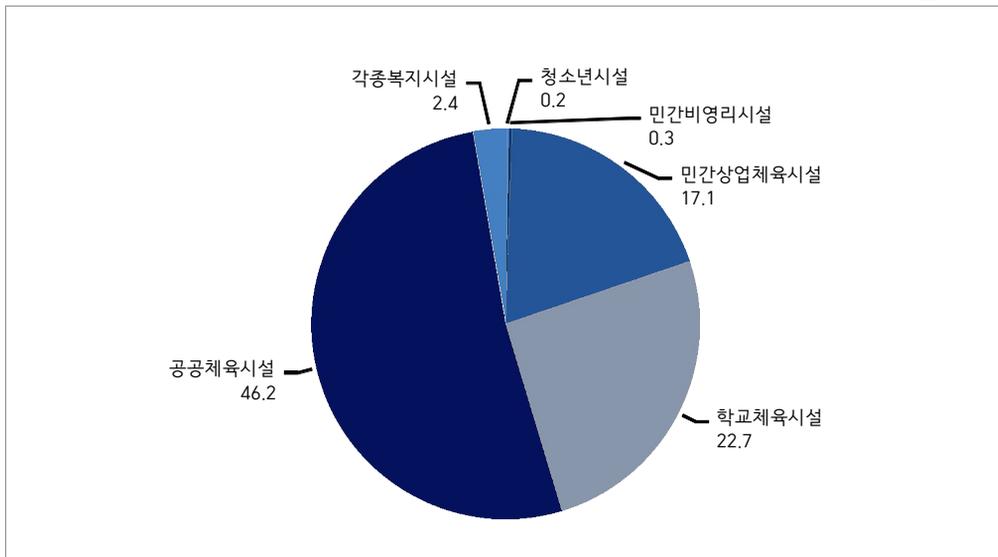


그림 2-2 운동실시 장소 분포

참여종목별 참여 장소는 등산, 자전거, 걷기, 배드민턴, 수영은 공공체육시설, 축구, 농구, 배드민턴은 학교체육시설, 골프, 보디빌딩(헬스), 요가, 수영은 민간/상업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시설인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비율이 68.9%로 매우 높게 나타나 공공형 체육시설공급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2-11 참여종목별 참여 장소

(단위 : %)

종 목	사례수	공공체육 시설	학교체육 시설	민간/ 상업시설	민간비영리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각종 복지시설	직장 체육시설	기타 시설
걷기	1,668	59.7	30.5	0.1	0.0	0.0	0.1	0.1	9.7
등산	779	73.6	0.3	0.0	0.0	0.0	0.1	0.0	26.1
보디빌딩(헬스)	535	11.6	0.2	79.4	0.7	0.4	4.7	0.7	2.2
축구	395	23.0	75.7	0.8	0.3	0.0	0.0	0.3	0.0
자전거(사이클)	243	64.2	16.9	0.0	0.0	0.0	0.8	0.0	18.1
수영	209	42.6	2.9	49.8	0.0	2.4	1.9	0.5	0.0
배드민턴	202	46.0	48.0	0.5	1.0	0.0	1.5	1.5	1.5
요가	143	17.5	0.7	51.0	1.4	0.0	18.9	1.4	9.1
골프	119	10.9	0.0	85.7	0.0	0.0	0.0	0.0	3.4
농구	104	24.0	71.2	0.0	0.0	2.9	1.0	1.0	0.0
합계	5,239	46.2	22.7	17.1	0.3	0.2	2.4	0.3	10.6

사. 체육활동 경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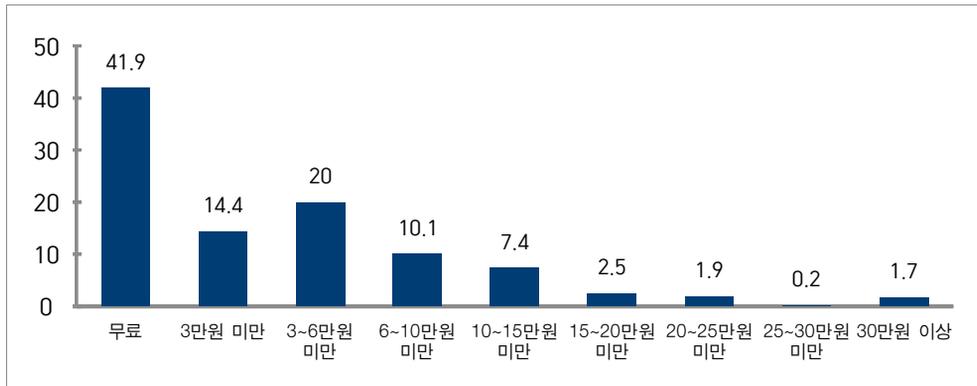


그림 2-3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

월 평균 운동경비는 무료(41.9%), 3~6만원미만(20.0%), 3만원 미만(14.4%), 6~10만원이상(10.1%), 10~15만원미만(7.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경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거나 소액 지출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특별한 운동경비가 필요하지 않은 걷기나 학교운동장 사용 등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2년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는 40,815원으로 2010년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 34,394원 보다 6,421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비 비지출자도 2010년 37.0%에서 2012년 41.9%로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는 증가했으나 경비 비지출자가 동시에 증가했다는 결과는 소득계층에 따른 체육활동 비용의 양극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수준별 체육활동 경비를 살펴보면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의 2010년 체육활동 경비 비지출율이 61.2%에서 2012년 79.7%로 크게 증가한 반면 월 평균 소득 600만원이상의 2010년 체육활동 경비 비지출율은 20.6%에서 2012년 7.7%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 표 2-12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에 대한 연도별 비교

(단위 : %)

연도별	없다	3만원 미만	3~6만원 미만	6~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평균 (원)
2003년	-	55.3	23.0	7.9	13.9	41,662
2006년	37.9	14.0	22.4	7.8	17.9	25,300
2008년	43.4	14.6	22.8	7.8	11.4	33,549
2010년	37.0	24.5	20.6	6.4	11.5	34,394
2012년	41.9	14.4	20.0	10.1	13.7	40,815

아. 지도자 수혜 경험유무 및 종목

최근 1년간(2011.08.15~2012.08.14) 체육활동 참여 시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20.7%)가 없다는(79.3%)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지도받은 경험자 중에서 86.3%는 전문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 기타 유자격지도자), 13.1%는 비전문지도자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지도자에게 지도 받은 종목은 보디빌딩(헬스)(27.3%), 수영(16.9%), 요가(12.5%)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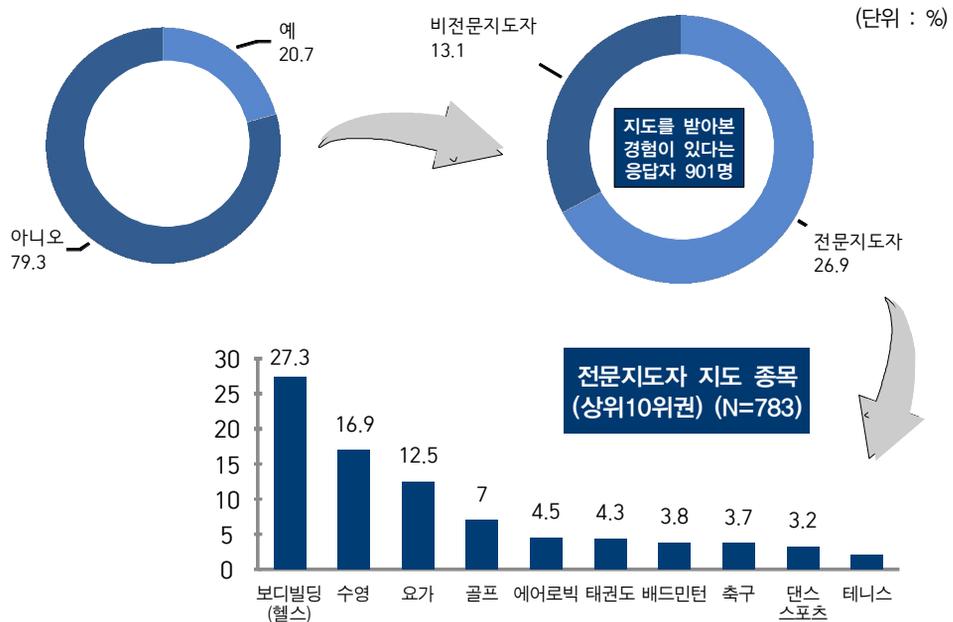


그림 2-4 지도자 수혜 경험유무 및 종목

자.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

체육활동을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체는 친구(39.0%), 스스로(27.3%), 가족/친지(24.4%), 직장/지역사회(3.5%), 체육동호인 조직(2.7%), 대중매체(1.6%), 지도자(교사 제외)(0.8%), 학교(교사)(0.4%), 기타(0.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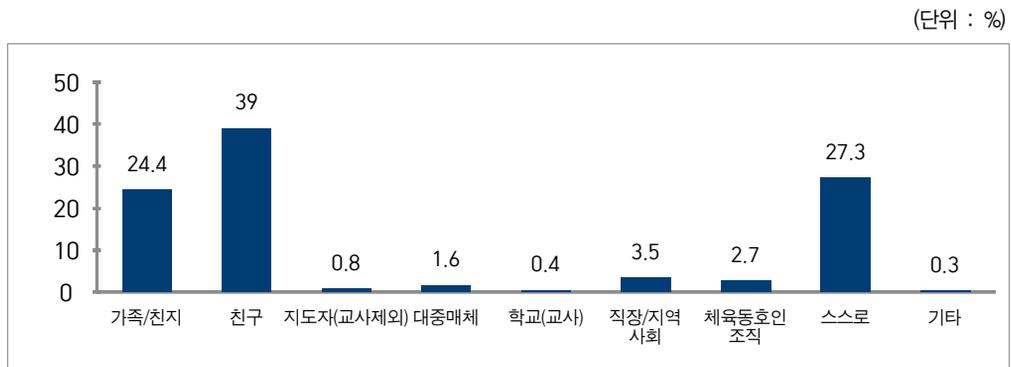


그림 2-5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

한편,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스스로, 친구, 가족/친지의 영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영향력은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가족/친지는 2010년 감소했다 2012년에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스로는 2010년 44.4%까지 증가했다가 2012년 17.1%가 감소한 27.3%로 나타났다. 한편 대중매체 등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활체육 참여 진흥을 위한 ‘스포츠7330’ 홍보이외에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표 2-13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 연도별 비교

(단위 : %)

연도별	가족/친지	친구	지도자 (교사/코치)	대중매체	직장 및 지역사회	체육동호인 조직	스스로
2000년	23.3	26.7	2.7	6.0	6.8	3.9	30.5
2003년	25.0	23.3	1.6	8.6	7.6	2.6	31.5
2006년	22.5	26.2	3.0	9.2	5.7	5.0	28.3
2008년	22.6	26.0	0.7	1.9	2.7	2.2	43.1
2010년	17.5	29.7	0.8	2.3	3.1	1.7	44.4
2012년	24.4	39.0	0.8	1.6	3.5	2.7	27.3

차. 체육활동 참여 동반자

체육활동 참여 시 주요 동반자는 혼자(38.1%), 친구(연인 포함)(33.8%), 배우자/자녀(11.0%), 동호회 회원(5.6%), 지역주민(4.7%), 그 외 가족/친지(4.2%), 직장동료(2.6%)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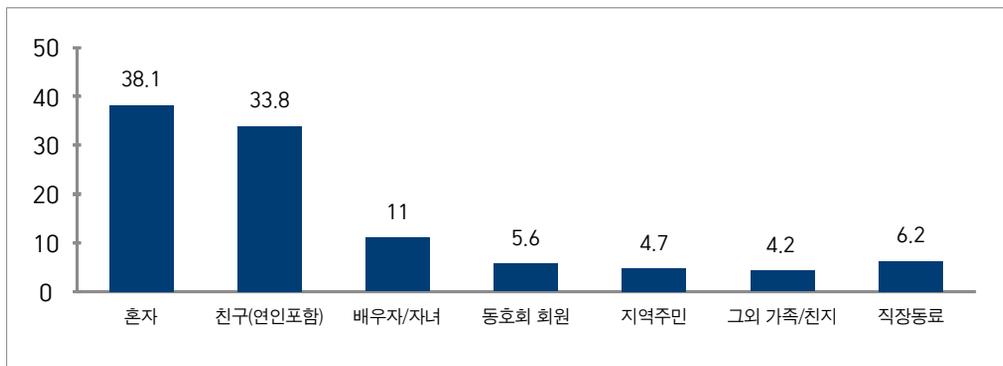


그림 2-6 체육활동 참여 동반자

2) 체육활동 참가 및 불참 이유

체육활동에 참가하는 이유는 건강유지 및 증진(52.2%),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19.0%), 스트레스 해소(7.5%), 여가선용(6.7%), 개인의 즐거움(5.1%), 대인관계 및 사고(3.8%)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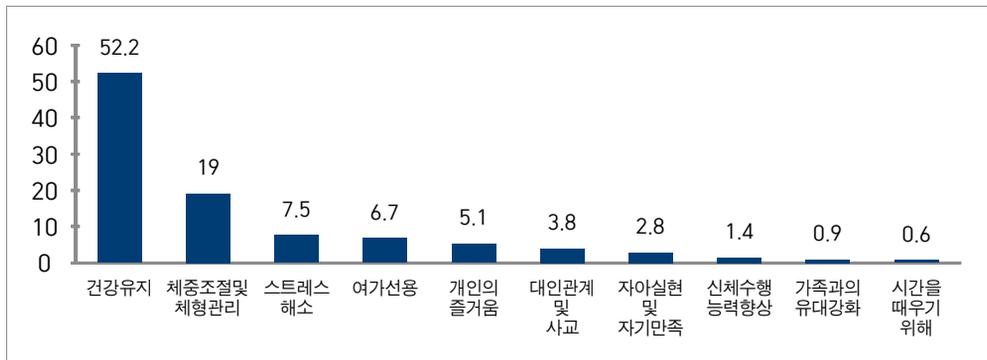


그림 2-7 체육활동 참여 이유

한편, 체육활동에 불참하는 이유는 시간 부족(50.8%), 관심이 없어서(25.3%), 건강상의 문제(7.2%), 경제적 부담(5.4%), 운동시설 부족(4.1%),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3.8%)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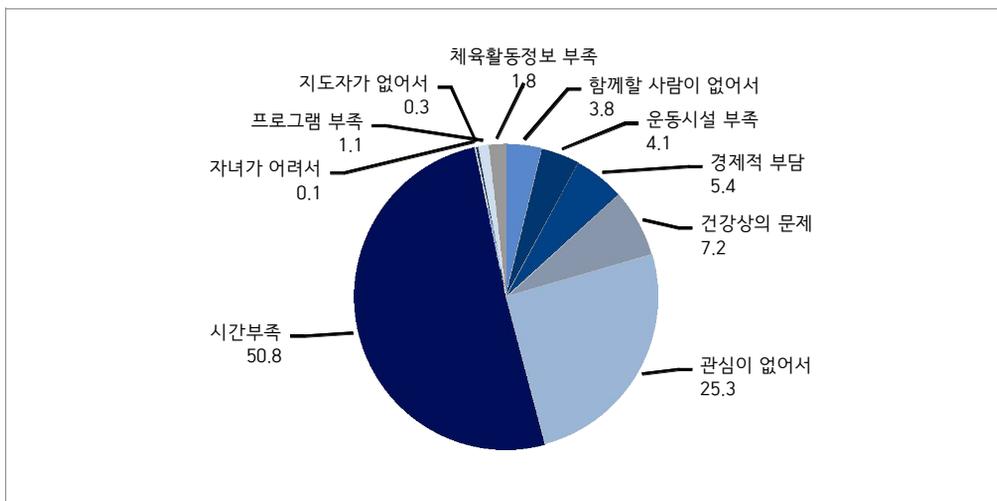


그림 2-8 체육활동 불참 이유

규칙적 체육활동 비참여의 가장 커다란 이유인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가 2006년 44.1%에서 2008년 54.2%, 2010년 55.2%, 2012년 5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과 무관하게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 중 하나로, 직장의 공식적인 근무일수는 주5일로 감소하였지만, 평일은 그동안 주6일 근무량을 5일내에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체육활동 시간을 내기 어렵고 또한 잔여업무를 주말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이유로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득은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말을 보내려면 추가비용이 필요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생활비 부족이나 넉넉한 삶의 보충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일의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가중, 주말의 추가 수익활동에 대한 부담 등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생활체육이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선택적 활동이 아닌, 심신의 건강 증진과 삶의 행복 등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필수적인 활동으로 인식되도록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 표 2-14 규칙적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의 연도별 비교

(단위 : %)

연도별	바빠서/ 시간부족	게을 러서	신체 허약	동반자 부재	시설 부족	지도자 부재	정보 부재	흥미/ 관심 결여	경제 사정
2000	39.1	20.8	5.8	7.1	1.9	0.2	0.2	1.1	1.1
2003	48.0	26.8	8.1	3.2	4.3	0.3	1.3	5.1	2.8
2006	44.6	21.5	13.8	2.2	2.8	2.4	0.2	11.7	1.3
2008	54.2	20.0	8.4	3.2	3.5	0.6	1.6	5.9	2.6
2010	55.2	16.9	9.3	3.0	3.6	0.3	1.4	7.7	2.4
2012	50.8	-	7.2	3.8	5.2	0.3	1.8	25.3	5.4

3) 희망 운동종목

향후 참가해 보고 싶은 운동종목으로는 수영(15.6%)이 가장 높고, 등산(8.2%), 요가(7.4%), 보디빌딩/헬스(6.0%), 골프(5.8%), 걷기(5.1%)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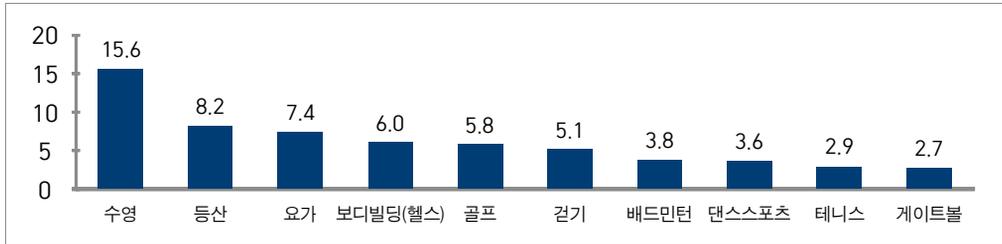


그림 2-9 희망 운동종목

희망 운동종목에 대한 연도별 비교결과, 수영에 대한 선호도는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등산, 요가, 헬스에 대한 선호도가 최근에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등산에 대한 선호도는 과밀화된 도시로부터 자연을 벗 삼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종목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요가와 헬스에 대한 선호도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선호도와 몸짱·S라인 등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표 2-15 희망 운동종목의 연도별 비교

(단위 : %)

연도별	테니스	수영	볼링	에어로빅 미용체조	골프	육상	축구	등산	스쿼시	헬스	요가
2000	8.0	22.5	2.6	-	6.1	1.7	2.8	4.8	-	-	-
2003	4.9	17.0	1.1	1.0	8.0	6.8	2.5	9.0	5.7	4.3	-
2006	5.1	15.6	-	2.3	11.6	2.5	3.3	3.9	3.6	2.3	7.2
2008	3.7	17.8	0.8	2.2	7.2	0.6	3.4	5.9	2.0	6.0	6.5
2010	2.9	17.6	1.1	1.9	6.5	0.5	3.5	8.3	1.6	6.4	7.8
2012	2.9	15.6	1.5	1.9	5.8	0.4	2.6	8.2	1.7	6.0	7.4

* 주 : 희망 운동종목은 상위 11순위까지 나열함

2. 생활체육 간접참여 실태

1)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지난 1년(2011년) 동안 공연, 전시 및 스포츠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사람은 13세 이상

인구의 58.6%로 2009년의 55.0%에 비해 3.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영화 관람이 81.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박물관, 음악, 연극, 스포츠, 미술관 관람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박물관 관람이 2009년 77.0%에 비해 2011년 26.4%로 대폭 감소하고 미술관 관람도 2009년 56.2%에서 2011년 20.6%로 상당히 감소하는 등 문화예술 관람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반면 스포츠관람은 2009년 20.5%에서 2011년 24.6%로 4.1% 증가하였다.

■ 표 2-16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단위 : %)

연도별	계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관람
2004	51.0	22.8	20.8	2.4	90.1	77.6	54.3	19.5
2007	54.3	26.6	26.0	2.5	85.0	75.4	56.8	18.4
2009	55.0	26.1	26.2	2.3	91.0	77.0	56.2	20.5
2011	58.6	25.1	24.9	2.6	81.7	26.4	20.6	24.6
남자	58.0	21.4	19.6	1.9	77.8	24.3	16.8	34.2
여자	59.2	28.7	30.2	3.3	85.5	28.8	24.4	14.9
13~19세	81.9	23.7	21.9	3.1	87.9	25.8	20.6	20.5
20~29세	81.8	24.9	31.3	2.8	89.8	19.3	21.1	27.2
30~39세	74.3	20.8	25.9	2.2	83.0	31.4	21.1	26.2
40~49세	62.6	26.7	21.7	2.7	81.6	28.4	20.2	24.3
50~59세	44.8	31.3	24.1	2.7	71.6	24.8	20.3	23.7
60세 이상	18.2	29.2	21.6	2.5	54.6	29.2	20.6	17.9
65세 이상	13.8	27.5	16.5	3.1	47.2	30.5	20.1	18.5

* 자료 : 2011 사회조사 보고서, 통계청

또한 성별로는 공연장 이용과 전시장 관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았고, 반대로 스포츠관람은 남자가 여자보다 2.3배 이상 높았다. 이것은 여전히 스포츠관람이 남성들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람스포츠업계는 여성의 스포츠 관람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여자는 남자보다 음악·연극, 무용, 미술관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관람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비율이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노인여가 활성화와 노인의 스포츠관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운동경기 관람유형

2012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경기장에 가서 운동 경기를 직접 관람한 사람은 전체의 16.3%이며, 나머지 83.7%는 경기장에 가서 직접 관람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관람 비율은 2010년 15.7%보다 0.6%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 관람이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 관람 종목

운동 경기장에 직접 가서 관람한 사람들의 관람 경기종목을 살펴보면, ‘야구’(55.5%)가 가장 많고, ‘축구’(34.8%), ‘농구’(5.5%), ‘배구’(2.3%)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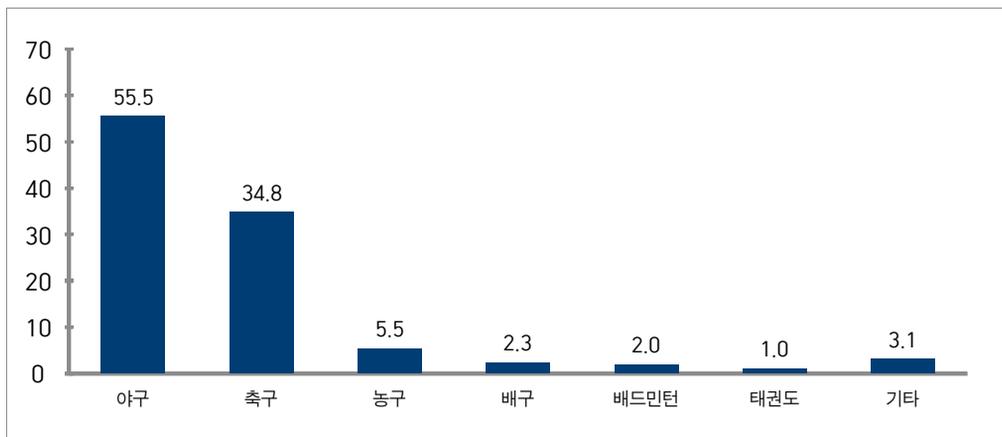


그림 2-10 관람 종목 분포

직접 관람하는 운동종목으로 야구와 축구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2012년 야구 관람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2010년보다도 2% 증가한 55.5%를 차지해 1990년대 초반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반면 축구는 2002월드컵이후 관람스포츠로서 인기를 구가했으나 2006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8년 43.6%, 2010년 38.1%, 2012년 34.8%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2년 월드컵 이후 월드컵 및 올림픽 축구성적의 부진, 유럽 등 축구선진국 수준의 경기력 기대 미충족,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 및 관람객 증가 등의 영향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표 2-17 관람 종목의 연도별 비교

(단위 : %)

연 도 별	배 구	야 구	축 구	농 구
2000	1.7	45.1	32.4	10.5
2003	1.7	37.4	41.5	10.3
2006	1.1	27.1	48.7	12.3
2008	3.7	48.7	43.6	8.1
2010	2.3	53.5	38.1	7.5
2012	2.3	55.5	34.8	5.5

나. 관람 빈도

운동경기의 평균 관람 빈도는 2012년 ‘1년에 1~2회’(61.8%), ‘6개월에 1~2회’(21.8%), ‘3~4개월에 1~2회’(5.1%), ‘1주일에 1~2회’(0.2%)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운동경기 평균 관람 빈도는 ‘1년에 1~2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6개월에 1~2회’는 22% 내외, ‘3~4개월에 1~2회’는 11%대, ‘1개월에 1~2회’도 5%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1주일에 1~2회’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88%이상의 국민이 연간 1~4회 수준에서 경기관람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기관람 확대를 위한 프로구단의 마케팅 노력과 국민의 스포츠 간접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인기 종목 중심의 스포츠 관람 문화를 다양한 종목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 직접 참여로까지 연계될 수 있는 스포츠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 표 2-18 경기관람 빈도의 연도별 비교

(단위 : %)

연 도 별	1년에 1~2회	6개월에 1~2회	3~4개월에 1~2회	1개월에 1~2회	1주일에 1~2회
2000	59.1	-	15.3	23.1	2.5
2003	70.1	-	20.5	8.7	0.7
2006	70.0	-	18.6	10.0	1.4
2008	60.2	22.4	11.2	5.6	0.6
2010	60.8	21.9	11.7	5.0	0.6
2012	61.8	21.8	11.2	5.1	0.2

다. 경기관람을 못하는 이유

경기장에 가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30.6%), ‘관심

또는 흥미가 없어서'(29.6%), 'TV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해서'(15.8%), '근처에 경기장이 없어서'(15.2%),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8.2%)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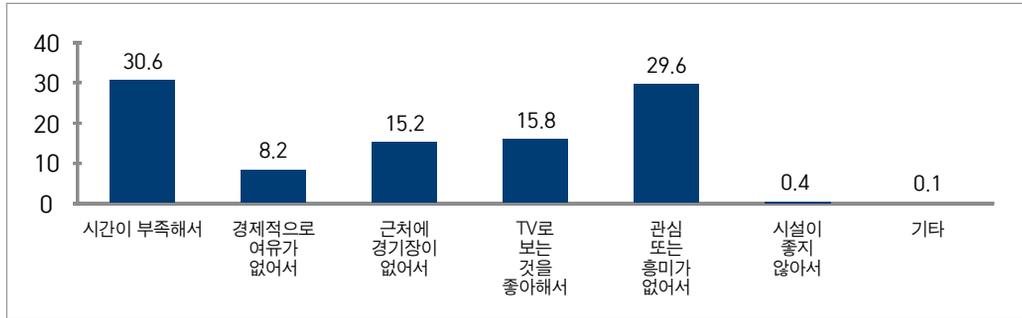


그림 2-11 경기관람을 못하는 이유

경기를 직접 관람하지 못하는 이유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관심 또는 흥미가 없어서', '근처에 경기장이 없어서', 'TV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해서'가 꾸준히 높게 나타났다.

2012년 조사결과, 시간이 부족해서는 2010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등 다른 이유들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TV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해서와 관심/흥미가 없어서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방송기술의 발달로 경기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현장감 있게 운동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속적 경기 침체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지면서 경기관람에 대한 관심과 흥미 저하되는 등 다양한 스포츠 외적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경기 관람 제고를 위한 홍보와 마케팅 노력 등에도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표 2-19 경기관람을 못하는 이유 연도별 비교

(단위 : %)

연도별	시간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근처에 경기장이 없어서	TV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해서	관심/흥미가 없어서	기타
2000	36.0	5.5	18.1	10.0	30.5	-
2003	33.0	8.4	14.7	12.9	27.4	3.5
2006	27.7	5.2	13.8	13.3	33.2	6.9
2008	37.3	9.9	12.1	12.6	24.1	0.6
2010	38.7	6.8	12.2	13.8	27.7	0.5
2012	30.6	8.2	15.2	15.8	29.6	0.1

제3절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제공

1. 시·도 생활체육교실

시·도 생활체육교실은 「스포츠교실」운영 1만 개소 확대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선호 종목을 중심으로 학교체육시설, 체육공원 등 근린생활체육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생활체육교실은 소규모 지역단위로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체육의 일상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생활체육교실은 2002년 3,208개소를 시작으로 2011년 3,901개소가 운영되었다.

시·도 생활체육교실사업 예산은 2009년까지 정부에서 30%, 지방자치단체에서 70%를 분담하며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교실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기에 2010년부터는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관되었다. 따라서 2010년부터 시·도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은 2009년까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운영 현황을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2012년 시·도 생활체육교실은 4,029개소가 운영되었으며, 충청남도도 2011년에 이어 2012년도에도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종시에서는 6개소에서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었다.

■ 표 2-20 시·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수

연도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2002	3,208	561	110	80	90	127	98	81	564	145	164	176	290	195	217	234	76	
2003	3,261	561	151	76	85	132	98	81	575	145	164	176	299	195	217	234	72	
2004	3,374	561	220	80	92	125	98	80	544	145	165	209	316	198	217	248	77	
2005	4,241	1,172	227	270	107	125	144	82	539	156	192	209	248	195	217	300	58	
2006	3,915	745	252	270	83	113	98	80	562	168	207	209	248	195	233	377	75	
2007	3,946	808	154	277	97	109	116	87	595	180	186	236	248	195	194	396	68	
2008	3,886	599	227	286	96	113	158	87	509	154	206	212	359	195	237	395	53	
2009	4,205	975	276	263	97	154	107	87	607	143	203	137	309	186	233	380	48	
2010	4,146	1,272	204	187	285	126	126	87	403	153	226	-	320	64	271	377	45	
2011	3,901	961	195	162	367	122	150	86	245	117	213	-	550	48	285	381	19	
2012	4,029	805	202	176	305	126	158	75	235	367	198	-	444	245	285	380	22	6

2. 생활체육광장

생활체육광장은 지역주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기초적인 참여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전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체육활동의 생활화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며, 지역 주민의 체력향상 및 이웃 간 이해증진을 유도하여 지역 주민의 화합과 건전한 여가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광장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생활체육광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12년 10월까지 전국 434개소에 생활체육광장 지도자가 배치되어, 매일 아침 또는 저녁시간대에 약수터, 공원 등 주민이 많이 모이는 현장에서 약 7개월(4월~10월) 동안 지속 운영되었다. 2012년 생활체육광장은 434개소에서 60,981회가 추진되었으며, 185만 명이 넘게 참여하였다. 2010년부터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2009년까지는 정부의 예산과 지방비를 통해 추진된 사업실적이 모두 포함된 반면, 2010년부터는 지방비로 추진된 사업실적은 제외하고 정부의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실적만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생활체육광장이 434개소에서 운영되어 2011년 518개소에 비해 운영개소 수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생활체육광장 사업 횟수는 2011년 56,644회에서 2012년 60,981회로 증가하였으며, 참가인원도 2011년 1,803,503명에서 2012년 1,857,131명으로 증가하였다.

생활체육광장의 기본 프로그램은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준비체조와 선택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비체조로는 택견, 스트레칭, 민속생활체조(가슴을 열자, 덩더꿍 체조, 민속 에어로빅스)를 지도하고 있으며, 선택 프로그램으로는 배드민턴, 게이트볼, 축구, 에어로빅, 족구, 테니스 등 지역실정 및 장소에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 중 참여자가 희망하는 종목을 지도하고 있다. 생활체육광장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마나 태풍 등 기후에 따라 참여 인원이 유동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생활체육 참여 확산의 중심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 표 2-21 생활체육광장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업실적	개소 수	500개소	500개소	500개소	500개소	520개소	520개소	520개소	520개	518개소	434개소
	회수	142,816회	137,074회	140,892회	142,672회	157,322회	166,180회	88,609회	86,363회	74,924회	56,644회
	참가인원	5,370,996명	4,703,464명	4,943,438명	5,029,846명	5,452,284명	5,955,670명	4,818,484명	4,750,232명	2,822,325명	1,803,503명

※ 2010년도부터는 지방비로 운영된 사업실적 제외

3. 국민체력100 사업 운영

1) 추진배경 및 경과

국민체력100 사업은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하고 체력이 인증기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공인된 인증기관이 체력을 인증(award)하는 체육복지 서비스이다. 국민체력100 사업은 ‘인증(체력상)’이라는 도전적 모티브를 체육활동 참여 유인책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증대시키고, 건강한 체력에 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해 주며 전문가가 처방해 준 개인 체력수준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에 기반하여 체육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체력 및 건강증진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국민체력100 사업은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체력수준이 저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초단기 고령사회 진입 및 국민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등 사회간접비용의 지속적 증가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과학적 체력관리 비율이 5.5%에 불과하며, 국가에서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률이 77.3%로 매우 높고 국민의 64.6%가 체력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2)는 국민의 요구에 입각해 추진되었다.

국민체력100 사업의 시초는 2005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입각해 청소년의 체력증진 등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과학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청소년체력인증제 운영 및 기준개발 연구이다. 이후 국민체력인증제라는 명칭으로 사업의 기본계획 등의 연구가 수행되다가 국민생활체육진흥의 정책 사업으로 2010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2010년 만 19세~64세 성인 대상 체력인증기준 및 운동처방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국민체력인증사업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가 수행되어 국민체력 인증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1년 국민체력인증 시범사업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2011년 12월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에 ‘국민체력사업팀’을 신설하여 국민의 국민체력인증사업 참여 기회 확대와 참여의 질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사업명칭을 ‘국민체력인증사업’에서 ‘국민체력100 사업’으로 변경하여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2) 사업 운영 현황

국민체력100 사업은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거주 지역의 거점센터 홈페이지,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한 후 거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체력측정에 임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다만, 단체 체력측정 등의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체력을 측정하는 방식도 운영되었다. 체력측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자신의 체력평가 결과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에 의한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이 처방되며, 처방된 프로그램은 인쇄물과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제공되었다.

국민체력인증 시범사업은 2011년 8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4개월간 서울종로구 구민회관, 부산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광주북구국민체육센터, 대전구즉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되었다. 시범사업 4개월 간 사업 준비 및 사업 정리 기간 1개월을 제외하고 실제 체력측정이 이루어진 3개월간 4,583명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 표 2-22 국민체력100 사업 추진경과

연도	거점센터 운영			인증기준개발
	구분	개소수	거점센터	
2011	시범사업	4	서울(종로), 부산, 광주(북구), 대전	성인기
2012	본격사업	4	경기(광명), 강원(원주), 광주(광산구), 부산(남구)	노인기

국민체력인증사업의 체력 측정항목은 신체조성, 건강체력, 운동체력 분야의 8개 항목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건강체력 요인과 운동수행에 필요한 운동체력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2011년 시범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2012년에는 본사업을 5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7개월간 광명 종합사회복지관 스포츠센터, 원주 국민체육센터, 광주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 부산 남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여 12,216명이 참여하였고, 1,250명이 체력증진교실에 참여하였다.

■ 표 2-23 국민체력인증 시범사업의 체력측정 요인, 측정항목, 측정방법

구 분	요 인	측정항목	측정방법
체 격	신체조성	신체질량지수, 체지방률	신장, 체중 측정
체 력	건강체력	근 력	상대악력
		근지구력	교차윗몸일으키기/윗몸말아올리기
		심폐지구력	왕복오래달리기
		유연성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운동체력	민첩성	왕복달리기
		순발력	제자리멀리뛰기

국민체력100 사업은 국민 체력 및 건강상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속적 체육활동 참여와 체력 및 건강 증진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에, 국민체력100 사업의 참여 유인을 위한 기재로서 체력측정 결과를 토대로 인증단계별 인증상을 수여하였으며, 참여 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인 이외에 노인(2013년)과 청소년(2014년)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뿐 아니라 참여의 질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표 2-24 국민체력100 사업의 인증단계 및 수상기준

구 분	인증단계	수상기준
체력인증수상	금 상	5개 검사기록이 모두 상위 30% 이내(신체조성 제외)
	은 상	5개 검사기록이 모두 상위 50% 이내(신체조성 제외)
	동 상	4개 검사기록이 모두 상위 70% 이내 (체지방률 또는 BMI가 건강 권장 범위일 때)
	참가증	기타 참가자 (위 수상기준 미달자)
신체조성건강 권장범위	남 자	7% < 체지방률 < 25% 또는 18 < BMI < 25
	여 자	16% < 체지방률 < 32% 또는 18 < BMI < 25

4.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1) 어린이 체능교실 및 청소년 체력교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심신의 건강과 발달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6개 시·도와 해당 지역 생활

체육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2012 어린이체능교실은 서울, 광주, 제주 지역을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367,176명이 참가하였다. 한편, 청소년체력교실은 서울, 광주, 대전, 제주 지역을 제외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세종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194,085명이 참가하였다<표 2-25>.

2) 장수체육대학 및 여성생활체육강좌

스포츠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노인과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방비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장수체육대학은 서울, 광주, 대전을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674,869명이 참가하였다. 한편, 여성생활체육강좌는 서울, 광주, 울산, 충남, 세종을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712,428명이 참가하였다<표 2-25>.

3) 레크리에이션교실

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에 놀이적 요소를 가미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건강한 신체와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수용시설 및 복지관 등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생활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보급함으로써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2년 레크리에이션교실은 부산, 인천, 강원, 경기, 전북, 전남, 경남 등 7개 지역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234,593명이 참가하였다<표 2-25>.

4)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이 사업은 클럽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육성하고 상호우의를 증진하며 협동심을 배양함과 동시에 대회참가를 통한 성취감과 사회성 발달을 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종목별연합회 주관으로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선수등록 사실이 없는 만 13세~19세의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학생 및 근로청소년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여 청소년이 선호하는 종목 중 2종목을 선정하여 클럽 간 대항전을 개최하고 있다. 2012년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지역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28,919명이 참가하였다<표 2-25>.

5)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직장의 체육담당자에게 직장체육 운영방법 등과 같은 전문지식을 교육함으로써 직장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생활체육회 주관으로 직장, 지역체육지도자, 직장체육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종목의 개발과 체험 등을 통해 체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12년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는 부산, 인천, 충남, 전남, 경남 등 5개 지역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144,292명이 참가하였다<표 2-25>.

■ 표 2-25 2012년 지역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참가 현황

(단위 : 명)

프로그램 지역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력교실	장수 체육대학	여성생활 체육강좌	레크리에이션 교실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직장체육 지도자 강습회
부 산	27,597	9,808	55,715	179,240	120	1,240	70
대 구	35,992	10,632	56,166	32,689	-	1,500	-
인 천	11,965	7,766	203,495	147,612	44,308	1,907	250
광 주	-	-	-	-	-	1,500	-
대 전	6,714	-	-	20,423	-	2,037	-
울 산	1,548	891	6,367	-	-	-	-
강 원	96,505	68,608	123,395	85,029	1,907	-	-
경 기	90,406	20,841	30,299	17,212	6,472	2,870	-
충 북	9,901	7,368	33,576	24,285	-	4,355	-
충 남	2,259	1,680	3,380	-	-	1,300	200
전 북	60	52	70	53	209	4,183	-
전 남	35,259	17,820	86,188	162,696	180,353	5,823	143,760
경 남	48,950	48,560	65,508	21,940	1,224	2,204	12
제 주	-	-	10,680	21,249	-	-	-
세 종	20	59	30	-	-	-	-
합 계	367,176	194,085	674,869	712,428	234,593	28,919	144,292

6) 기타 생활체육 프로그램

2010년부터 시·도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전액 지방비로 추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히, 서울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종목별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며, 2012년에는 걷기, 게이트볼, 농구, 수영, 태권도등의 종목과 다른 기타종목을 포함한 470개 종목에 걸쳐 총 1,355,409명이 참가하였다.

■ 표 2-26 서울시 생활체육프로그램 참가 현황

(단위: 명)

종목	참가인원	종목	참가인원	종목	참가인원
걷기	18,259	배구	25,372	전통무예	970
검도	3,664	배드민턴	43,427	족구	6,419
게이트볼	26,481	밸리댄스	4,290	차밍스쿨	502
골프	4,364	볼링	9,985	축구	72,719
국선도	9,542	생활체조	608,179	탁구	27,695
농구	7,495	수상스키	-	태권도	10,579
단전호흡	38,084	수영	34,147	테니스	8,838
단학기공	46,037	스쿼시	-	포켓볼	7,880
당구	7,493	에어로빅	100,881	풋살	33,625
레슬링	378	요가	30,065	헬스	9,179
마라톤	7,400	인라인	11,348	스키	161
발레	1,044	자전거	20,401	기타	118,506
운영 종목 수(개)	470				
참가 인원(명)	1,355,409				

대전은 2012년 어린이체능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외에도 축구, 수영, 태권도 등 22개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총 357,715명이 참가하였다.

■ 표 2-27 대전시 생활체육프로그램 참가 현황

(단위: 명)

종목	참가인원	종목	참가인원	종목	참가인원
걷기	-	배구	4,576	전통무예	-
검도	8,541	배드민턴	12,819	족구	11,901
게이트볼	8,619	밸리댄스	-	차밍스쿨	-
골프	-	볼링	23,040	축구	55,991
국선도	-	생활체조	21,055	탁구	10,376
농구	6,383	수상스키	906	태권도	33,280
단전호흡	-	수영	40,922	테니스	11,193
국학기공	8,220	스쿼시	376	포켓볼	-
당구	3,697	에어로빅	-	풋살	9,996
레슬링	-	요가	-	헬스	24,284
마라톤	-	인라인	32,019	스키	230
발레	-	자전거	29,291	-	-
운영종목 수(개)	22				
참가 인원(명)	357,715				

제4절 동호인클럽 육성 및 활동 지원

1.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동호인클럽은 생활체육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를 효율화하며 합리적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핵심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동호인클럽 육성을 위해 전국종목별연합회를 지원 및 육성하고 있다. 전국종목별연합회는 생활체육동호인클럽의 연합체로서 지역 간 및 클럽 간 체육교류활동을 가능케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종목별연합회 발전은 동호인클럽 육성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인구를 확대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사업은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활동의 구심체인 전국연합회를 육성·지원하여 「국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구심단체로서의 역할을 증대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사업의 운영 방침은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인클럽 활동의 구심체를 확대하고, 신규종목별연합회 결성을 유도하며, 동호인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전국규모대회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한 동호인클럽의 체계적 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전국연합회가 재정 자립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 50개 단체(축구, 배드민턴, 육상, 게이트볼, 자전거, 스케이팅, 윈드서핑, 탁구, 테니스, 족구, 배구, 사격, 궁도, 스키, 스킨스쿠버, 볼링, 택견, 생활체조, 풋살, 당구, 합기도, 패러글라이딩, 정구, 보디빌딩, 승마, 줄다리기, 야구, 농구, 국무도, 골프, 검도, 태권도, 단학기공, 등산, 씨름, 인라인스케이팅, 트라이애슬론, 낚시, 우슈, 수영, 스쿼시, 종합무술, 라켓볼,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하키, 익스트림게임즈, 인라인하키, 줄넘기, 핸드볼)이며, 주요 지원 사업은 종목별연합회의 사무처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이며, 신규 전국종목별연합회 결성 확대 및 활성화 지원 등이다.

주요 지원 사업은 종목별연합회의 전국규모대회, 종목별 초보자 및 지도자 강습회 등이다. 또한 전국종목별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지도사업으로 전국연합회 결성 종목의 사

도연합회 확대 결성 유도, 전국연합회 사무처직원 실무교육 실시, 전국연합회에 대한 업무지도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신규 동호인클럽 결성 확대를 위해 국민 참여도가 높은 종목, 향후 동호인 확산이 충분히 예상되는 종목, 자연친화 및 극기 종목, 레저 스포츠를 확대 지원하여 육성해 나가고 있다.

이 사업의 지속적 운영으로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의 중심체인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행정재정적인 측면에서 크게 발전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동호인클럽이나 종목별연합회는 선진국의 스포츠클럽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자생력이 미흡하고 그 역할과 기능도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2. 생활체육대회 개최

1)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

체육활동 참여자에게 자신의 기량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통해 만족스러운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유인책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은 생활체육의 지속적 참여를 격려하는 강력한 동기부여 사업이 되고 있다.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 사업은 전국 종목별 동호인 행사를 지원하여 체육의 생활화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종목별 동호인 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동호인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전국 대회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 사업은 전국연합회별 동호인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지방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지역 분산 개최를 권장하며, 종목별 지역동호인클럽의 신규 육성 및 친선 교류 기회가 확대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은 전국 일원에서 종목별로 연중 개최되며 전국종목별연합회가 주관하여 대회를 운영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대회운영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종목별 장관기 대회는 시도 지역예선을 거쳐 시도 대항전 경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종목 특성상 시도 대항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클럽대항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은 46개 종목 130개 대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가규모는 127,022명 이었다.

■ 표 2-28 종목별 동호인 행사 지원 사업추진 실적

구분 \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대회 종목 수	21종목	40종목	42종목	43종목	43종목	45종목	46종목	46종목	50종목	48종목	46종목
대회 수	21회	121회	124회	123회	128회	129회	124회	133회	122회	127회	130회
참가규모	21,067명	82,236명	87,031명	99,547명	118,789명	125,113명	132,754명	110,635명	124,520명	122,613명	127,022명

2)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16개 사도가 함께 하는 축제로서 2001년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당축전’이란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1년에 한번 전국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로서 동호인 개개인의 명예와 성취감 고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및 계층 간 우정과 화합을 통한 국민통합 기회를 마련하며 체육활동의 생활화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생활체육,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종합축전으로 개최되며, 언론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국제 생활체육 교류행사와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추진되고 있다. 매년 각 시도별로 순회 개최되며 체육경기 외에 다양한 지역문화행사와 연계한 지역문화행사와 지역문화축제, 내 고향 특산물 전시회, 뉴스포츠 체험, 온가족 함께 걷기대회, 지역 명소 탐방, 이동건강검진센터 등 각종 부대행사가 열린다. 이외에도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생활체육 세미나가 개최된다.

■ 표 2-29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현황

장소	기간	참가인원	실시종목
대전광역시	5.11 ~5.13	60,000여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27,055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종목(46개) : 축구, 육상, 배드민턴, 게이트볼, 정구, 탁구, 테니스, 볼링, 족구, 배구, 검도, 생활체조, 자전거, 야구, 농구, 당구, 합기도, 풋살,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보디빌딩, 태권도, 등산, 인라인스케이팅, 국학기공, 낚시, 씨름, 택견, 줄다리기, 궁도, 철인3종, 골프, 사격, 승마, 윈드서핑, 라켓볼, 스쿼시, 국무도, 그라운드골프, 우슈, 파크골프, 스케이팅, 수영, 종합무술 - 장애우종목(8개) : 탁구, 배드민턴, 볼링, 테니스, 게이트볼, 당구, 파크골프, 론볼 - 시범종목(2개) : 소프트볼, 중경식야구(야구병행)

3) 전국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전국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대회로서 2007년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대한노인회 노인건강축제와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 16개 시도에서 참가한 종목별 동호인 경기와 통합하여 게이트볼 등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참가인원이 12,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회의 목적은 노인의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견인함으로써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 대회는 생활체육,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종합대회로 추진되며, 시도 대항전으로 진행되는 종목별 경기를 비롯해 문화·부대행사와 연계된 예술단체 공연, 지역문화 축제(풍물놀이, 예술제 등), 내고향 특산물 전시회 및 먹거리 장터, 실버용품 전시회, 지역 명소탐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표 2-30 전국 어르신생활체육대회 현황

년도	기간/장소	참가인원	실시 종목
2007	9.18~20 (경북 경주시)	10,000여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5,207명 포함)	-10종목 • 게이트볼,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볼링, 생활체조, 자전거, 국학기공, 정구
2008	9.8~10 (경기도 수원)	10,000여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7,243명 포함)	-13종목 • 게이트볼 I, II,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볼링, 생활체조, 자전거, 국학기공, 정구, 장기, 바둑
2009	9.9~11 (인천광역시)	10,000여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8,023명 포함)	-15종목 • 게이트볼 I, II,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볼링, 생활체조, 자전거, 국학기공, 정구, 당구, 등산, 장기, 바둑
2010	9.29~10.1 (전라북도 익산)	10,000여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8,000명 포함)	-17종목 • 게이트볼 I, II,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볼링, 생활체조, 자전거, 국학기공, 정구, 당구, 등산, 장기, 바둑, 낚시, 그라운드골프
2011	9.21~23 (대전광역시)	10,000여명 (16시도 선수 및 임원 8,000명 포함)	-17종목 • 게이트볼 I, II,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볼링, 생활체조, 자전거, 국학기공, 정구, 당구, 등산, 장기, 바둑, 낚시, 그라운드골프
2012	9.12~14 (경상남도 창원)	12,000여명 (16시도 선수 및 임원 8,000명 포함)	-14종목 • 게이트볼,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볼링, 생활체조, 자전거, 국학기공, 정구, 당구, 등산, 낚시, 그라운드골프

3. 동호인 리그

1) 동호인스포츠클럽 육성

이 사업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다세대·다계층이 참여하는 동호인스포츠클럽을 조직·운영함으로써 국내 스포츠시스템 선진화 및 평생체육 기틀을 마련하고, 학교스포츠클럽과 기존 동호인 클럽 간 연계를 통한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및 선진화된 종합형 스포츠클럽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1년 신규로 시작된 이 사업은 동호인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동호인클럽 선정 및 운영, 스포츠클럽 인력풀 구성 및 운영, 각종 대회 및 리그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동호인스포츠클럽은 100개소에서 55,278회 운영했으며 140여만 명이 참가하여 2011년보다 운영개소와 운영횟수 및 참가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31 동호인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실적

년도	운영개소	운영횟수	참가인원	지도자수	동호인 등록 현황
2011	80개소	43,616회	1,083,504명	509명	74,784개 클럽 (3,081,448명)
2012	100개소	55,278회	1,396,276명	490명	81,882개 클럽 (3,646,013명)

동호인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시도 종목별대회 지원과 동호인클럽 등록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호인클럽 등록 업무는 지역에 배치된 동호인클럽 전담지도자가 시·군·구 생활체육회 및 시·군·구 종목별연합회에 등록된 클럽현황을 취합하여 매월 중앙협의회 주전산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12년 시도 종목별대회는 431회가 개최되었으며 178,104명이 참가하여 2011년보다 대회 개최 수와 참가인원이 증가하였다. 2012년 인구 대비 동호인클럽 회원 수는 7.3%이며, 축구가 564,1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체조 243,321명, 배드민턴 208,203명, 게이트볼 135,731명, 테니스 136,351명, 육상 122,995명 순으로 많았다.

■ 표 2-32 시도 종목별대회 지원 실적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대 회 수(회)	409	385	376	441	592	730	319	486	413	431
참가인원(명)	175,861	179,433	180,767	208,834	303,862	321,873	187,695	179,224	168,814	178,104

■ 표 2-33 인구 대비 동호인클럽 현황

(단위 : 명, 개)

지역	구분	인구수	계		지역		직장	
			클럽 수	회원 수(%)	클럽 수	회원 수	클럽 수	회원 수
계		50,004,441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7.3)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서울		9,975,881	8,236	500,226(5.0)	7,825	432,625	411	67,601
부산		3,444,827	3,588	170,751(5.0)	3,302	116,040	286	54,711
대구		2,475,119	4,129	143,516(5.8)	3,837	127,412	292	16,104
인천		2,793,288	3,962	192,533(6.9)	3,919	182,673	43	9,860
광주		1,513,516	5,232	342,542(22.6)	5,094	322,499	138	20,043
대전		1,539,956	1,969	248,088(16.1)	1,919	174,563	50	73,525
울산		1,116,138	3,538	123,708(11.1)	3,441	111,955	97	11,753
경기		11,936,855	11,901	399,835(3.3)	11,416	353,291	485	46,544
강원		1,502,880	5,212	167,626(11.2)	4,897	139,506	315	28,120
충북		1,550,851	5,400	161,408(10.4)	5,180	152,207	220	9,201
충남		2,131,740	4,005	196,820(9.2)	3,694	177,288	311	19,532
전북		1,804,627	3,392	225,545(12.5)	3,130	206,769	262	18,776
전남		1,768,274	5,460	140,418(7.9)	4,972	119,681	488	20,737
경북		2,644,525	5,434	274,056(10.4)	5,195	249,837	239	24,219
경남		3,247,262	7,914	279,814(8.6)	7,624	270,399	290	9,415
제주		558,702	2,510	79,127(14.2)	2,428	73,917	82	5,210

※ 인구수는 2012년 말 기준 추계인구수이며, 괄호 안은 인구대비 회원 수 비율임.

■ 표 2-34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 현황

종목	클럽 수(개)	회원 수(명)	종목	클럽 수(개)	회원 수(명)
계	81,882	3,646,013	단전호흡	113	5,786
축구	9,982	564,139	특공무술	113	7,030
생활체조	5,634	243,321	윈드서핑	107	2,222
게이트볼	4,825	135,731	X-게임	93	4,308
배드민턴	3,926	208,203	태극권	90	4,492
볼링	3,705	82,488	무에타이	83	4,352
탁구	3,638	116,612	요트	72	1,508
테니스	3,589	136,351	수상스키	72	4,112
족구	3,342	84,421	클라이밍	63	1,743
야구	3,236	95,044	국선도	60	3,611
배구	2,804	73,351	경호무술	58	1,960
태권도	2,538	93,634	씨바이벌	57	2,877
육상	2,141	122,995	킥복싱	54	1,111
농구	1,871	45,571	필드하키	51	2,174
풋살	1,808	71,325	레포츠	47	3,506
국학기공	1,716	91,737	우드볼	44	1,795
검도	1,669	73,158	캠프	43	3,524

종목	클럽 수(개)	회원 수(명)	종목	클럽 수(개)	회원 수(명)
합기도	1,642	98,979	플라잉디스크	42	2,003
댄스스포츠	1,536	56,826	인라인하키	36	1,824
수영	1,345	74,258	핸드볼	35	1,178
등산	1,336	73,142	론볼링	34	1,683
자전거	1,214	50,974	궁수도	33	3,027
요가	1,201	51,917	양궁	31	516
당구	955	35,347	해동검도	29	1,669
인라인스케이팅	859	28,482	법률대법	28	899
보디빌딩	838	44,373	펜싱	27	1,372
골프	760	23,660	경당	27	577
줄넘기	730	30,385	행글라이딩	25	1,309
궁도	676	24,495	역도	25	515
그라운드골프	665	23,545	미식축구	24	441
택견	628	25,003	럭비	24	987
정구	554	16,959	세팍타크로	24	121
견기	458	55,015	항공스포츠	24	1,670
스쿼시	445	21,378	생활무술기공	21	580
씨름	438	21,839	아이스하키	18	490
패러글라이딩	435	11,981	롤러스케이팅	17	284
낚시	424	16,362	모터스포츠	16	406
전통무용	327	11,378	스포츠글라이딩	15	125
우슈/쿵후	317	10,196	전통선술	9	208
종합무술	315	12,053	레슬링	8	467
파크골프	308	9,199	부메랑던지기	8	222
복싱	294	9,661	오리엔티어링	7	334
유도	269	9,864	기천문	7	271
스킨스쿠버	262	7,470	활기도	6	267
스키	260	12,832	레저복싱	6	251
바둑	237	10,295	싱크로빅스	6	169
승마	233	7,621	스포츠마사지	5	88
줄다리기	221	7,959	석궁	5	147
레크리에이션	206	22,919	경비행기	4	112
사격	205	5,028	보치아	3	79
피구	190	6,633	이종격투기	2	102
철인3종	175	6,348	격투기	124	5,194
국무도	172	6,154	소프트볼	124	6,503
밸리댄스	168	9,201	스케이팅/빙상	121	5,682
민속경기	162	12,681	카누	115	5,309
프리테니스	149	3,789	기공	114	3,329
라켓볼	143	5,153	기타	1,257	330,057

2) 스포츠클럽리그제(구,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

스포츠클럽리그제는 생활체육의 지속적 참여를 유인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자발적 생활체육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종목 간 연계와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데 기여한

다. 스포츠클럽리그제 사업의 목적은 종목별 동호인 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및 직장 간 교류 활동의 정례화와 종목별 동호인클럽의 지속적인 교류 촉진을 통한 동호인 참여 확산에 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운영종목의 확대를 유도하고 전국 종목별 동호인이 참가하는 동호인 축제로 운영되고 있다.

스포츠클럽리그제에는 10종목(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테니스, 풋살, 정구, 야구, 농구, 당구)이 포함되어 있다. 리그운영은 각 종목별 시도(시·군·구) 리그 후 결승전을 치루는 방식으로 2012년에는 40,757개 클럽, 429,522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2011년에 비해 클럽 수와 참가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2011년에는 운영되지 않았던 종목별 시·군·구 리그가 2012년 이후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 표 2-35 스포츠클럽리그제 지원 실적

년도	운영종목	클럽 수	참가인원
2011	10종목	14,539개	316,669명
2012	10종목	40,757개	429,522명

스포츠클럽리그제는 해당 종목 동호인의 저변확대, 클럽활동 활성화, 지역 클럽간의 교류 정례화 등으로 생활체육 붐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생활체육 종목별 클럽리그가 전문체육의 정규리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기단체의 관심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전문체육의 종목별 정규리그와의 연계 운영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정규리그를 1부, 2부, 3부 리그 등으로 구분하여 동호인클럽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직장리그와 동호인 한마음리그는 2006년부터 스포츠클럽리그제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동호인클럽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각 단위사업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체육의 구심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업들이다. 국민체육진흥정책은 국민 모두가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체육진흥을 도모해 나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민체육진흥정책 방향에 비추어볼 때, 생활체육동호인클럽은 국민들에게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를 통해 자율적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구심점이 되고 있으며, 생활체육동호인은 생활체육진흥의 핵심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5절 직장체육활동 육성

1.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사업은 전국의 직장·단체 등을 지도자가 직접 순회 방문하여 생활체육을 보급함으로써 직장체육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직장·단체를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도·보급함으로써 생활체육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생활체육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 참여방법을 알려주고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해주며, 개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권장·지도하여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의 지도내용은 생활체조(가슴을 열자, 덩더꿍 체조, 민속어로빅스, 택견, 스트레칭), 레크리에이션 체조(차차차, 포크댄스, 자이브 등), 직장 및 가정 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 및 체조, 배드민턴, 탁구, 배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직장과 단체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과 여성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이 보급되고 있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 1명을 시도별로 고정 배치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 순회 지도를 전담토록 하고 있으며, 각 시·도의 직장과 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직장·단체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직장·단체를 찾아다니며 적극적인 체육활동 서비스를 전개함으로써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직장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직장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의사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체육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홍보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사업은 2003년까지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 제도가 없어지고, 이 사업이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에 통합 및 운영되고 있다. 2012년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사업은 5,491개소에서 운영되었으며, 11,735,840명이 참여하였다.

■ 표 2-36 2012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실적(2012년 12월말 기준)

시·도	운영개소	참여인원(명)	지도횟수(회)
합 계	5,491개소	11,735,840	572,543
서울	강남구민체육관 등 746개소	1,501,324	54,233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263개소	715,922	33,485
대구	서구국민체육센터 등 227개소	445,591	27,423
인천	동인천주민센터 등 231개소	364,643	22,249
광주	동신대복지관 등 215개소	405,130	20,134
대전	중구국민체육센터 등 379개소	583,426	38,851
울산	오도밸리복지센터 등 125개소	551,473	17,996
경기	주교동주민센터 등 869개소	1,518,483	68,225
강원	한림성심대학교 등 363개소	909,663	45,158
충북	충북대학교 등 173개소	578,418	24,156
충남	천안노인복지관 등 392개소	541,401	31,270
전북	오성노인대학 등 212개소	421,089	23,782
전남	올림픽기념관 등 378개소	978,367	49,412
경북	흥해실내체육관 등 261개소	929,123	51,850
경남	우리누리체육관 등 540개소	1,101,958	56,285
제주	제주YWCA 등 117개소	189,829	8,034

2. 직장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

직장체육진흥의 핵심 과제는 직장 동호인클럽을 육성 및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 직장 내 동호인클럽 육성은 연중 지속되는 직장 동호인클럽 전국리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 종목별 클럽리그제는 2005년까지 ‘직장 동호인클럽 전국리그’ 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06년부터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스포츠클럽리그제’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장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 사업의 목적은 직장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유도하고 동호인 클럽간의 지속적인 교류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직장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은 직장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사군구 리그 → 사도 리그(풀 리그전) → 결승전으로 운영을 유도하며, 전국 또는 지역 스폰서십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6절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생활체육 나눔 운동)

1.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 사업은 소외계층의 건전한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지도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2005년까지 ‘소외계층 운동용품 보내기’와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06년부터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 사업으로 통합 및 운영되고 있다. 2009년도에는 불우청소년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불우청소년생활체육 체험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불후청소년 대상 ‘행복나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1) 소외계층 운동용품 보내기

정부는 전국의 아동, 노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에게 운동용구를 지원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여가선용 여건을 조성해 주고, 명랑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 운동용품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 단체는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근거로 선정하고 있다. 운동용품 지원 품목은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거나, 대상별 희망 용품 등을 고려하여 선정 및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운동용품 지원 대상 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지원 용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순회 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 표 2-37 소외계층 용구지원 추진 실적

연 도	지원 대상	지 원 내 용
2012	지역아동센터	400개소 5종 6,800점
	노인시설	10,000개소 6종 12,956점
	사회복지시설	200개소 2종 200점
	합 계	10,600개소 13종 19,956점

2012년 소외계층 용품지원은 총 10,600개소에 13종 19,956점의 운동용구(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배드민턴세트, 티볼세트, 헬스자전거, 당구세트, 게이트볼세트, 그라운드골프세트, 탁구세트, 한궁세트, 플라이디스크세트, 윗놀이세트)가 지원되었으며, 그 동안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참여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

2)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생활체육 활동 대상에서 소외되기 쉬운 불우청소년과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생활체육 소외계층에게 폭넓은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및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

이 사업은 시·도 생활체육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되 지역실정에 맞는 종목과 쉽게 배울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참여자가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각 시·군·구생활체육회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스키(캠프), 축구, 스케이팅, 탁구, 야구, 농구, 인라인스케이팅, 핸드볼, 인라인하키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종목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 일정은 시·도 및 시·군·구 실정에 따라 정해지며, 동계 방학기간에 집중 운영되고 기간은 2박 3일 일정으로 4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2.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지원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지원 사업은 우리사회 구성원 중 하나인 다문화 가정의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다민족 및 다문화 사회의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과 일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인 융화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2006년에 시작되어 2008년까지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 체육행사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이 지속

확대되고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2009년부터는 다문화가정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2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이 100개소에서 7,624회 운영되었고, 어울림축제가 16회 개최되어 9,460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활체육 패밀리데이가 100개소에서 900회 운영되었으며, 어울림캠프가 100회 개최되어 4,783명이 참가하였다.

■ 표 2-38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지원 실적

연도	사업추진실적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운영 : 16개소 299회 7,228명 생활체육캠프 개최 : 16회 1,106명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운영 : 100개소 4,790회 78,426명 어울림축제 개최 : 15회 7,590명 다문화지도자교육 : '10.6.30~7.1, 189명(천안상록리조트)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운영 : 130개소 5,841회 108,630명 어울림축제 개최 : 16회 9,460명 다문화교실 지도자교육 : 260명('11.05.26~27, 덕산스파캐슬) 어울림캠프 개최 : 130회 6,320명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운영 : 100개소 7,624회 116,113명 어울림축제 개최 : 16회 9,460명 패밀리데이 : 100개소, 900회 23,635명 어울림캠프 개최 : 100회 4,783명

제7절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1. 체육지도자공동운영제

체육지도자공동운영제란 일종의 체육지도자 뱅크(bank)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각급 연수원을 통하여 정부에서 배출한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와 지역 내 체육지도 가능 인력들의 정보를 수집 보관하여, 체육지도자가 필요한 단체 등에 적절한 지도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의 수요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다. 체육지도자공동운영제 사업은 체육지도 인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수급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체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방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기관과 지도자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등록된 지도자의 현장 배치를 주선하며 생활체육지도자 개별등록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셋째, 언론매체(소식지, 인터넷)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생활체육 지도자 구직 구인란)를 지도자 관리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연중 지속 운영되며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고 있다.

체육지도자공동운영제 등록대상은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 현장지도자, 경기지도자, 체육 관련학과 학생 등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의 전국적 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체육지도가 가능한 인력을 파악하여 부족한 지도 인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양질의 지도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및 배치의 효율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12월말까지 체육지도자 자격 검증 시험에 합격하여 2013년 4월말까지 자격증을 수령한 체육지도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표 2-39>와 같다.

■ 표 2-39 체육지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1급	2급	3급
생활체육지도자	168,703	877	8,224	159,602
경기지도자	28,542	998	27,544	

※ 자료 : 체육과학연구원(2012), 경기·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2.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각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육성할 유자격 지도자를 행정 구역별로 배치 운영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국민의 생활체육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며 청년층 체육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관련 업무는 시도 생활체육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공정한 채용계획과 절차를 통해 우수한 지도자원을 확보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근무지는 시·군·구 생활체육회가 관리·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도자 관리 및 활동 예산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정식 유급 직원으로 연중 배치되어 있으며,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생활체육 현장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1년 단위로 고용 계약을 하는 지도자 외에도 시간제(Part-Time) 생활체육지도자 등을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다(지역별 배치 현황은 제 9장 참조). 이 사업은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젊은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 표 2-40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일반	1,850	1,450	1,400	1,400
어르신	700	500	550	812

3.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노인들이 생활체육 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활력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2006년부터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 소지자 중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보수교육을 수료한 지도자를 전국에 배치하고 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원은 2006년 250명, 2007년 300명, 2008년 346명, 2009년 474명, 2010년 500명, 2011년 550명, 2012년 812명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이는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체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배치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들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며 시도별 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노인의 지속적 생활체육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채용 관련 업무는 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시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은 <표 2-41>과 같다.

■ 표 2-41 시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

사도	기 간	장 소	참가규모 (명)	행 사 운 영		
				일반경기	번외경기	부대행사
서울	6.12	잠실실내체육관	1,500	3종목	-	-
부산	5.8	아시아드보조경기장	1,500	8종목	-	-
대구	10.30	시민체육관외 9개소	1,800	10종목	-	-
인천	10.26	도원실내체육관	2,750	7종목	-	세족식
광주	7.5	염주종합체육관	5,000	-	4경기(단체줄넘기 등)	마사지, 건강검진
대전	6.20	한밭체육관	1,000	8종목	-	-
울산	6.2	종하체육관외	1,062	8종목	-	-
경기	6.21	부천시 일원	2,943	10종목	-	-
강원	5.3~4	영월종합운동장	2,300	14종목	비석치기, 투호, 제기차기, 고무신멀리차기	생활체조경연, 영월전통무용
충북	10.19	제천체육관외	1,500	11종목	웃놀이	댄스스포츠
충남	6.22	태안군민체육관	2,000	6종목	-	건강검진
전북	6.20	무주군일원	1,600	8종목	-	-
전남	7.12	무안군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1,700	8종목	레크리에이션 3종목	건강검진, 스포츠마사지
경북	5.24~25	영주시 국민체육센터	2,700	8종목	-	-
경남	4.19~20	창녕군공설운동장	3,600	11종목	투호, 웃놀이	부채춤공연
제주	6.21	한라체육관 외	4,000	15종목	웃놀이, 제기차기	-

한편,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별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도·보급하고 있으며, 지역 체육동호인 조직 가입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도는 지도자가 방문 시설의 운동여건 및 대상자의 운동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종목을 선택하여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실시종목은 생활체조, 요가, 스트레칭, 에어로빅, 게이트볼, 댄스스포츠, 수영, 재활운동, 필라테스, 근력운동, 탁구 등이다.

■ 표 2-42 2012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실적(2012년 12월말 기준)

시·도	운영개소	참여인원(명)	지도횟수(회)
합 계	4,071개소	6,681,879	317,735
서울	능인종합사회복지관 등 559개소	948,533	40,122
부산	중구노인복지회관 등 166개소	282,199	13,572
대구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등 116개소	257,486	14,909
인천	중구게이트볼장 등 171개소	219,257	13,532
광주	상록경로당 등 145개소	204,393	9,394
대전	한밭수영장 등 120개소	161,608	12,306
울산	일신경로당 등 71개소	105,015	5,194
경기	청솔노인복지회관 등 770개소	1,037,434	45,127
강원	효자종합사회복지관 등 267개소	371,232	20,724
충북	세경경로당 등 186개소	464,555	15,079
충남	천안노인종합복지관 등 267개소	363,638	17,264
전북	신선경로당 등 154개소	315,695	14,629
전남	올림픽기념관 등 380개소	663,348	32,665
경북	종합운동장 등 261개소	587,688	28,921
경남	화성게이트볼장 등 350개소	568,249	30,330
제주	제주도노인복지관 등 88개소	131,549	3,967

제8절 생활체육 홍보

생활체육 홍보는 규칙적 참여자의 지속적 참여를 유인하고 비참여자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참여 촉진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핵심 홍보 사업은 스포츠 7330으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자’는 취지아래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우리사회의 구조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계획적 홍보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 스포츠 7330 캠페인 전개

1) 스포츠 7330 정책 태동 배경

가. 생산적인 여가문화로의 전환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여가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가형태는 TV 시청, 낮잠 등 단순휴식과 외식, 쇼핑 등 소비형 여가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많다. 이에 국민이 여가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적인 여가문화로 전환할 정책적 대안이 필요했다.

나. 운동방법에 대한 가이드 제시

스포츠 활동이 가장 생산적인 여가문화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보다는 ‘보는 스포츠’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보는 스포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유인하고 스포츠 활동 직접 참여자의 운동 상해 예방과 참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운동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다. 생활체육 향유계층의 양극화 해소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으나 일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 인구는 27.5%(문화체육관광부, 2012)에 불과하다. 또한 생활체육 참여계층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편중되는 경향이 짙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생활체육 참여를 적극 유인하기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했다.

라. 국민의 체력지수 향상

과학 기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으로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 대비 건강수명이 10년 이상 낮아 노인의료비 부담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통한 의료비 절감과 미래 국가의 주역인 청소년의 체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참여 유인 홍보 정책이 필요했다.

2) 스포츠 7330의 과학적 의미

스포츠 7330은 스포츠 참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 검증에 기반 해 채택된 캠페인이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자’가 갖는 과학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운동을 해야 하는가?

스포츠생리학적으로 우리 인체는 신체 활동 등 외부자극에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영향이 지속되는 시간은 약 2일(48시간)정도이다. 따라서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운동을 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일주일에 5일 이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 했을 때 추가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3~4일의 운동이 투자한 시간에 비해 최대의 건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주일에 최소한 3일 이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야 운동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나. 왜 30분 이상 운동을 계속해야 하는가?

선행 연구결과 5~10분 동안 지구성 운동만 하더라도 심폐지구력이 증가하지만 운동 효과 측면에서는 30분 이상이 유효하다고 한다. 여기서 유효하다는 말은 투자 시간에 비해 가장 많은 이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운동에너지 소모와 관련이 있다. 운동할 때 사용되는 주 에너지원은 탄수화물과 지방이다. 이 중 탄수화물은 낮은 중강도 운동 때 주요기질로 작용한다. 그러나 장시간(30분 이상) 운동 시에는 탄수화물 대사로부터 점차 지방으로 기질대사의 의존율이 증가한다.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동 후 30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지방이 분해·소모되는 것이다. 따라서 30분 이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운동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 운동은 어느 정도의 강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운동의 강도 결정의 주요 표준은 최대운동능력을 100으로 했을 때 약 몇 %의 강도로 할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 최대운동 심박 수의 약 60%~70% 내외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의 경우, 특히 중장년층은 60% 이내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60% 정도의 운동 강도는 통상 목표 심박수 130 정도이며, 목표 심박수는 $\{(220 - \text{본인나이}) \times 0.6\}$ 이다. 독일의 생활체육 슬로건인 'Trimming 130'은 바로 심박수를 130이상으로 올리는 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이 정도의 운동을 하고 나면 대체로 숨이 약간 차고 땀이 축축하게 난다.

3) 스포츠 7330 정책 경과

정부는 스포츠 7330 캠페인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참여 계몽을 위한 로고 개발과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7330 정책 추진 경과는 <표 2-43>과 같다.

■ 표 2-43 스포츠 7330 정책 추진 경과

정책개발 및 적용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들의 운동참여방법에 관한 스포츠 과학적 가이드 마련 • 운동 참여 계몽을 위한 로고 개발 • 스포츠 7330 선포식 및 범국민 가두캠페인 전개
다양한 캠페인 전개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브랜드로 선정하고 비전 및 미션 설정 • 언론과 연계하여 기획보도·각종 광고, 직접홍보 등 캠페인의 다원화 • 동영상 프로그램 보급,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직접홍보 강화
맞춤형 캠페인 전개 (2007년 이후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Tool의 다변화(온-오프라인 병행, 틈새광고 시행) • 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스포츠 7330 캠페인' 전개 • 인지도 조사를 토대로 향후 보다 효율적인 캠페인 정책방향을 설정 • 공모전을 통하여 스포츠 7330 캠페인에 대한 국민관심 유도

4) 스포츠 7330의 단계별 로드맵

스포츠 7330은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에 목표를 두고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율 40% 목표 달성을 위해 스포츠 7330 선포식과 로드맵을 설정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율 40~50% 목표 달성을 위해 홍보기법을 다양화하고 스포츠 7330 아젠다를 형성하였고, 3단계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율 50% 목표 달성을 위해 스포츠 7330 생활화와 브랜드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 표 2-44 스포츠 7330 단계별 목표와 내용

구 분	1단계(시범사업-도입)	2단계(정착사업-확산)	3단계(강화)
목표	생활체육 참여율 40%	생활체육 참여율 40~50%	생활체육 참여율 50% 이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7330 선포식 - 로드맵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기법의 다양화 - 스포츠 7330 아젠다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7330 생활화 - 브랜드의 국제화

■ 표 2-45 스포츠 7330 대중언론매체 캠페인실적

1단계 (2005~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명칭 확정, 브랜드 알리기 위한 전략수립 - 스포츠 7330 선포식 및 퍼레이드 전개
2단계 (2007~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기관과 연계(세미나, 학술대회, 교과과정에 편성) - 관공서 및 사회단체 집회 시 스포츠 7330의 이슈화 - 종목별 동영상 프로그램 보급 확산 - 지역문화 축제 및 각종 행사시 스포츠 7330 캠페인과 연계 - 생명보험사 및 기업체와 연계 공동 프로젝트 추진 - 체계적인 스포츠 인프라 구축, 스포츠클럽 활성화 - 브랜드 상품개발(캐릭터개발, 브랜드의 상품화 등) - 브랜드의 해외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국제교류, 세계한민족축전 참가자들을 통한 홍보 • 각종 국제대회 시 한국선수단을 통한 노출 • 재외공관, 한인회, 한국관광공사, 문화원 등을 통한 홍보
3단계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Tool의 다변화(온-오프라인 병행, 틈새광고 시행) - 대국민 참여를 통한 캠페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 수기공모전 및 사진 공모전 실시 • SNS 및 블로그 개설 운영 • 명예기자단 선발 운영 - Sub 슬로건 '운동은 밥이다!' 상표 등록 및 홍보

2. 범국민생활체육캠페인 전개

정부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자 범국민생활체육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범국민생활체육캠페인은 TV·라디오, 주요 일간지 및 기타 간행물, 지하철, 전광판, 인터넷, 극장 등에 생활체육에 관한 이미지 광고를 게재하고, 생활체육정책, 생활체육프로그램, 참여방법 및 효과, 외국의 사례, 뉴스포츠, 동호인 활동사항 등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해 2001년 8월부터 국민생활체육지를 발간해 왔으며, 2012년 2월부터 「스포츠7330」로 잡지명을 변경해 제작하여 지역별,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활동 소식과 생활체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표 2-46 범국민생활체육캠페인 추진실적

구분	보도실적	신문광고	TV광고	라디오광고
2003	232회	37회	47회	71회
2004	268회	23회	24회	56회
2005	874회	14회	-	182회
2006	958회	38회	25회	182회
2007	1,190회	31회	26회	180회
2008	1,190회	28회	37회	186회
2009	1,380회	41회	594회	217회
2010	1,490회	45회	30회	248회
2011	1,680회	32회	31회	181회
2012	1,884회	27회	20회	183회

■ 표 2-47 스포츠7330(구. 국민생활체육지) 발간 연도별 추진실적

항 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발행부수	72,000	48,000	96,000	96,000	96,000	96,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발행회수	6회	6회	12회	12회	12회	12회	12회	12회	12회	12회
간 별	격월간	격월간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면 수	52면	52면	56면	56면	60면	60면	60면	60면	60면	60면

3.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 사업은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전달 및 유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21세기가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각종 통신기기와 정보통신망이 새롭게 등장하고 인터넷이 정보사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생활체육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하는 e비즈니스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정보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제9절 세계한민족축전

1. 개최배경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개최는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축적된 우리나라의 힘을 밖으로 표출시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수백만 해외동포들에게 조국에 대한 긍지를 드높이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는 해외동포들이 조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중국과 구소련 거주 동포들에게 당시 이념의 장벽에 가려져 있던 조국 땅을 밟고 싶은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서울올림픽 개최를 두 달 앞둔 1988년 7월 마련된 「세계한민족체육대회 추진 기본계획」은 바로 이러한 재외동포들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일환으로 착안되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에 중국과 소련을 비롯한 30여개 미수교국의 참가가 확실히 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체육행사를 통해 세계 도처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단결시키고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중점을 둔 동 계획에 따라 1988년 10월말부터 당시 체육부 관계자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미주 및 유럽지역에 파견하였다. 조사단은 현지 대사관과 교민단체와 교섭을 갖고 세계한민족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동포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동대회의 개최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대회 개최 계획이 확정된 이후, 체육부는 1989년 4월 「세계한민족체육대회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988 서울올림픽대회 개최 1주년 기념행사로 1989년 9월, 50개국에서 1,326명의 재외동포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수원시에서 개최된 제70회 전국체전과 함께 개막식을 갖게 되었다.

2. 변천과정 및 축전 특징

1989년 제1회 대회가 시작된 이래 문화·예술행사와 청소년축제가 함께 포함되었으며, 1995년부터 「세계한민족축전」으로 공식대회 명칭이 변경되었다. 처음에는 2년 주기로

행사가 열렸으나,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동 축전은 체육행사 등 다양한 문화 축전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으며 국민생활체육회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 표 2-48 세계한민족축전 개최 특징

회 차	축전 개최 특징
11회 (2002년)	• 생활체육 및 문화체험 행사
12회 (2003년)	• 생활체육 및 문화체험 행사 - 해외 입양아 8개국 61명 참가
13회 (2004년)	• 생활체육 및 문화체험 행사 - 해외 입양아 6개국 56명 참가
14회 (2005년)	• 생활체육 및 문화체험 행사 - 해외 입양아 24명 참가
15회 (2006년)	• 생활체육 및 학술, 문화, 전통체험 행사 - 해외 입양아 5개국 17명 참가
16회 (2007년)	• 생활체육 및 학술, 문화, 전통체험 행사 - 해외 입양아 3개국 11명 참가
17회 (2008년)	• 생활체육 및 학술, 문화, 전통체험 행사 - 해외 입양아 4개국 25명 참가
18회 (2009년)	• 생활체육 및 학술, 문화, 전통체험 행사 - 해외 입양아 2개국 4명 참가
19회 (2010년)	• 생활체육 및 학술, 문화, 전통체험 행사 - 해외 입양아 7개국 17명 참가
20회 (2011년)	• 생활체육 및 학술, 문화, 전통체험 행사 - 해외 입양아 5명 참가
21회 (2012년)	• 생활체육 및 학술, 문화, 전통체험 행사 - 해외 입양아 4명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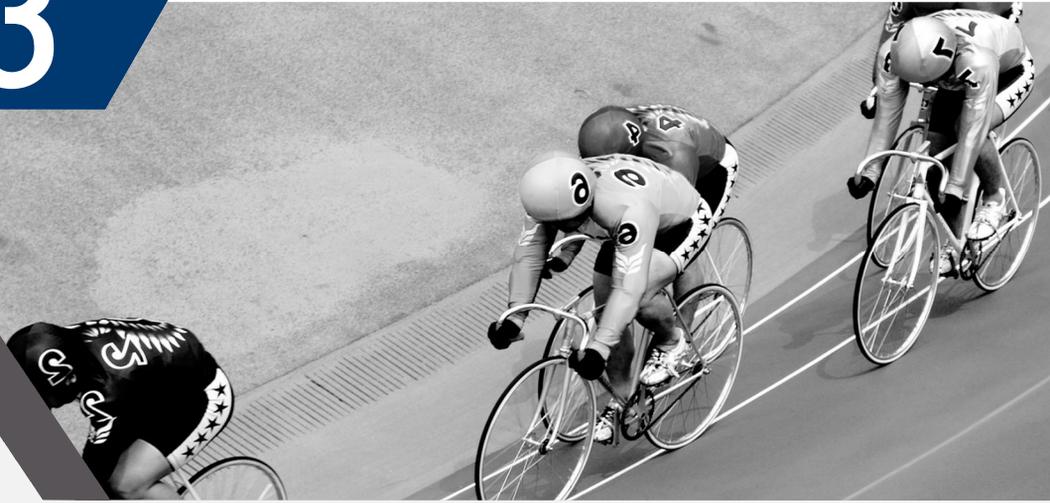
3. 개최현황

초창기에 행사가 대규모로 개최되었지만 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참가국과 참가인원을 대폭 축소하였다. 개최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다양한 행사와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의미 있는 한민족 생활체육축전으로 발전하고 있다.

■ 표 2-49 세계한민족축전 개최 현황

구 분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참 가 인 원
2002	2002세계한민족축전	2002. 9. 13~19(7일)	서울, 경기, 충청 일원	32개국 668명
2003	2003세계한민족축전	2003. 8. 29~9. 4(7일)	서울, 경기, 제주 일원	42개국 601명
2004	2004세계한민족축전	2004. 9. 17~9. 23(7일)	서울, 경기, 제주 일원	41개국 623명
2005	2005세계한민족축전	2005. 9. 9~9. 15(7일)	서울, 경기, 충청, 제주 일원	45개국 501명
2006	2006세계한민족축전	2006. 9. 2~9. 27(7일)	서울, 제주 일원	35개국 483명
2007	2007세계한민족축전	2007. 10. 10~16(7일)	서울, 제주 일원	47개국 473명
2008	2008세계한민족축전	2008. 9. 18~24(7일)	서울, 경기 및 경주 일원	44개국 430명
2009	2009세계한민족축전	2009. 9. 23~29(7일)	서울 및 경주 일원	38개국 421명
2010	2010세계한민족축전	2010. 10. 6~11(6일)	서울 및 경주 일원	42개국 383명
2011	2011세계한민족축전	2011.10. 26~11. 1(7일)	인천, 서울, 경주 일원	42개국 399명
2012	2012세계한민족축전	2012.9. 13~9. 20(7일)	인천, 서울, 전북 일원	40개국 400명

03



학교체육

- // 제1절 개관
- // 제2절 현황
- // 제3절 일반학생 지원사업
- // 제4절 학생선수 지원사업
- // 제5절 학교체육 시설 인프라 확충

Section

03 학교체육

제1절 개관

한국사회에서 체육은 19세기 말에 근대식 학교의 도입과 함께 학교 교육제도 내에서 교과목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는 당시에 학교체육이 학생들의 균형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고가 사회전반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체육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지칭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는 ‘체조’, 제 2차 세계대전기에는 한동안 ‘체련’이라고도 했다. 이후 해방을 맞아 ‘체육(體育, Physical Education)’이라는 교과명으로 정착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같은 교과명의 변천은 당대의 체육의 목적에 대한 시대적 인식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일제시대의 ‘체조’와 ‘체련’이라는 용어는 체육을 통해 건강한 황국신민을 육성하고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적 목적을 강조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더불어 국가발전의 토대가 마련되면서 체육은 신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자덕·체를 겸비한 ‘전인의 육성’이라는 교육적 목적 아래, 학교교육에서 교육적 가치와 의미가 인정되는 교과목으로서 변화, 발전해 왔다.

정부조직에서 학교체육 업무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를 겪었는데, 이는 크게 교육부처 존치기, 체육부처 이양기, 양부처 협력기로 구분된다. 해방이후부터 4공화국까지의

시기에 교육부처가 학교체육업무를 전담한 반면, 체육부와 체육청소년부가 있던 1982년부터 1994년 초기까지 체육부, 체육청소년부 등의 체육부서가 담당 업무를 관장했다. 이후 1994년부터 지금까지 체육부처와 교육부처의 협조체계 하에 업무를 공유하는 체계가 지속되고 있다.

■ 표 3-1 정부 내 학교체육 담당 부서의 변천

구분	교육부처 존치기	체육부처 이양기	양부처 협력기	
	시기	해방이후 → 4공화국 (1946. 7. 10~1982. 3. 20)	5공화국 → 6공화국 → 문민정부초기 (1982. 3. 20~1994. 5. 16)	문민정부 → 현재 (1994. 5. 16~현재)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6 문교부 교화국 체육과 ▶ 1948 문교부 문화국 체육과 ▶ 1961 문교부 체육국 학교체육과 ▶ 1981 문교부 체육국제국 학교체육과 ▶ 1982. 3. 20 학교체육업무 체육부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2 체육부 체육진흥국 학교 체육과 ▶ 1990. 9. 10~1993. 3. 5 (체육청소년부) ▶ 1993. 3. 6~1994. 5. 15 (문화체육부 초기)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 5. 16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학교보건체육과 ▶ 1999. 1. 29 교육부 학교시설환경과 ▶ 2001. 2. 1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과 ▶ 2005. 3. 1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체육보급금식과 ▶ 2008. 3. 1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 2012. 8. 8 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 5. 16 문화체육부 생활체육과 ▶ 1999. 5. 24 문화관광부 체육진흥과 ▶ 2004. 11.18 문화관광부 체육진흥과 ▶ 2009. 5. 4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제2절 현황

1. 체육교육과정

체육교육과정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적 요구를 수렴하고 시대에 맞는 교육을 모색하기 위해, 해방 이후 7차에 걸친 전면 개정과 수차례의 수시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2년 현재 현장에 적용되는 체육교육과정은 2009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한 체육교육과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체육교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필수교과로 고등학교는 선택교과로 지정되어 있다. 2012년 체육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은 '즐거운 생활'에 예체능교과 통합교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3학년부터 '체육'이라는 독립교과로 연간 204시간(주당 3시간) 배정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중학교의 경우 총 272시간 외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136시간이 추가로 배정되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학교는 최소 10단위, 기타 특목계, 특성화, 창의 경영 학교 등은 5단위만 배정 할 수 있다.

■ 표 3-2 초·중·고등학교 체육과목 및 시간의 변천

구분	제1차 (1954)	제2차 (1963)	제3차 (1973)	제4차 (1981)	제5차 (1987)	제6차 (1992)	제7차 (1997)
초등학교	보건 (3)	체육 (3)	체육 (2-3)	즐거운 생활 1학년(6), 2학년(7)	즐거운 생활 1학년(6), 2학년(7)	즐거운 생활 1학년(6), 2학년(7)	즐거운 생활 1학년(6), 2학년(6)
				3-6학년 체육(3)	3-6학년 체육(3)	3-6학년 체육(3)	3-6학년 체육(3)
중학교	체육 (2)	체육 (2-4)	체육 (3)	체육(3)	체육(3)	체육(3)	1,2학년 체육(3) 3학년 체육(2)
고등학교	체육 (24단위)	체육 (24단위)	체육 (14-18 단위)	체육: 필수 (6-8단위) 체육: 선택 (8-10단위)	체육: 필수 (6-8단위) 체육: 선택 (8-10단위)	체육: 필수 (6-8단위) 체육: 선택 (8-10단위)	1학년 필수: 체육(4단위) 2-3학년 선택: 체육과건강(4단위) 체육이론(4단위) 체육실기(4단위 이상)

※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체육교과는 1~6차 교육과정을 통해 필수교과로 인정받으며 주당 약 3시간씩 배정되었는데, 7차 체육교육과정의 적용을 통해 시수가 감소했으며,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외형적으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에 개정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 중학교 체육활동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기존의 체육수업에 스포츠클럽 활동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하게 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내 체육활동 시간은 2~3시간에서 4시간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의 연간 272시간에서 150% 증가한 408시간이 확보 되었다. 다만, 체육수업시수의 확대가 정과수업시수의 증가가 아니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시수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향후 정과수업시수의 3시간으로 확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자율화 등 정책방향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표 3-3 2012년 중학교 체육수업 운영 변화

(단위 : 명)

학년	구분	현행				개정			
		1	2	3	계	1	2	3	계
	체육수업	3	3	2	8	3	3	2	8
	학교스포츠클럽	·	·	·	·	1	1	2	4
	계	3	3	2	8	4	4	4	12

한편 고등학교는 2012년 현재 체육수업의 절대시수가 줄어든 상태이며, 2009년 개정 체육교육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편성이 ‘학교 자율화’됨에 따라 입시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학년에 체육과목이 집중되는 파행성이 우려되고 있다.

교과영역		필수이수단위	학교자율과정	
교과(권)	기초	국어	15(10)	45 (30)
		수학	15(10)	
		영어	15(10)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15(10)	35 (20)
		과학	15(10)	
	체육·예술	체육	10(5)	20 (10)
		예술(음악/미술)	10(5)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 한문/교양	16(12)	16 (12)
	소계		116(72)	64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24	
총 이수 단위		204		

그림 3-1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편재와 체육수업 이수단위

2. 초·중등체육 담당교원

2012년 현재 중·고등학교 체육교원은 성별로 살펴보면 총 13,922명 중 남교사(11,680명)가 여교사(2,242명)의 5.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여교

사는 750명으로 전체 중고등학교 체육교사의 5%에 불과하며 성별로 볼 때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6.8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해 여교사의 확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 표 3-4 2012년 중고등학교 체육교원 현황 1(성별)

(단위 : 명)

구분	남			여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계	6,544	5,136	11,680	1,492	750	2,242	8,036	5,886	13,922

또한 2012년 현재 중고등학교 체육교원을 설립별로 살펴보면, 총 13,922명중 공립학교 교사(9,878명)가 사립학교 교사(3,977명)의 2.4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는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중학교 체육교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사립학교의 경우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표 3-5 2012년 중고등학교 체육교원 현황 2(설립별)

(단위 : 명)

국립			공립			사립			총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30	37	67	6,543	3,335	9,878	1,463	2,514	3,977	13,922

한편 2012년 현재 초등학교의 체육전담교사는 4,225명으로 2011년의 4,196명보다 2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교사가 많은 초등학교에서 체육전담교사는 초등학교생의 체육수업 및 방과 후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다만, 체육전담교사는 일반교사 중에서 체육만을 전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체육교과 전문성, 운동부 육성 등에서 역량의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표 3-6 2012년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현황('12.4월 현재)

(단위 : 명)

구분	국립	공립	사립	총계
계	11	4,136	49	4,225

3. 학교체육시설 현황

체육시설은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활동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또한 학교만의 시설이 아닌 사회전반의 체육수준을 견인하는 시설기반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체육시설이 미비한 상황에서 체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까지 학교체육시설은 학생의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에 부족한 면이 많았으나, 근래에 들어 다양한 사업이 전개됨으로써 학교체육시설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학교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대표적 사업으로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중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야간 조명등 설치 사업’ 등이 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업’은 학교운동장을 현대화된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운동장의 바닥을 침단소재로 바꾸는 사업으로서 학교운동장을 잔디(천연 및 인조)운동장, 우레탄 시설(다목적구장, 트랙 등), 흙 운동장(황토, 마사토 등) 등으로 조성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1,0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총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실제로 현장에 그린체육공간 조성, 체육활동의 질적 개선 등 많은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2012년의 경우 잔디(천연 및 인조 포함)운동장의 경우, 전체 초·중·고 11,519개교 중 2,382개교(20.7%)가 조성되었는데 이는 2011년 11,492개교 중 1,932개교(16.8%)보다 450개교가 늘어난 수치이다<표 3-7>.

■ 표 3-7 2012년 학교체육시설 현황

종류	연도	2011. 8월					2012. 11월				
		초	중	고	특수	계	초	중	고	특수	계
전체 학교 수		5,905	3,149	2,283	155	11,492	5,897	3,163	2,303	156	11,519
잔디 운동장	인조	635	376	332	17	1,360	733	481	429	14	1,657
		10.8%	11.9%	14.5%	11.0%	11.8%	12.4%	15.2%	18.6%	9.0%	14.4%
	천연	243	112	178	39	572	327	154	198	46	725
		4.1%	3.6%	7.8%	25.2%	5.0%	5.5%	4.9%	8.6%	29.5%	6.3%
계	878	488	510	56	1,932	1,060	635	627	60	2,382	
		14.9%	15.5%	22.3%	36.1%	16.8%	18.0%	20.1%	27.2%	38.5%	20.7%
탄성 (우레탄) 시설	구장	406	386	364	24	1,180	517	469	470	30	1,486
		6.9%	12.3%	15.9%	15.5%	10.3%	8.8%	14.8%	20.4%	19.2%	12.9%
	트랙	803	480	436	29	1,748	1,030	605	550	29	2,214
		13.6%	15.2%	19.1%	18.7%	15.2%	17.5%	19.1%	23.9%	18.6%	19.2%
계	1,209	866	800	53	2,928	1,547	1,074	1,020	59	3,700	
		20.5%	27.5%	35.0%	34.2%	25.5%	26.2%	34.0%	44.3%	37.8%	32.1%
체육관	전용(정규) 체육관	303	259	335	9	906	476	343	427	6	1,252
		5.1%	8.2%	14.7%	5.8%	7.9%	8.1%	10.8%	18.5%	3.8%	10.9%
	강당겸용 체육관	2,974	1,531	1,387	89	5,981	3,077	1,624	1,405	98	6,204
		50.4%	48.6%	60.8%	57.4%	52.0%	52.2%	51.3%	61.0%	62.8%	53.9%
	간이 체육실	759	562	265	25	1,611	938	675	299	37	1,949
		12.9%	17.8%	11.6%	16.1%	14.0%	15.9%	21.3%	13.0%	23.7%	16.9%
계	4,036	2,352	1,987	123	8,498	4,491	2,642	2,131	141	9,405	
		68.4%	74.7%	87.0%	79.4%	73.9%	76.2%	83.5%	92.5%	90.4%	81.6%
전용 강당		421	191	262	14	888	357	211	272	15	855
		7.1%	6.1%	11.5%	9.0%	7.7%	6.1%	6.7%	11.8%	9.6%	7.4%
수영장		94	34	44	4	176	80	32	37	10	159
		1.6%	1.1%	1.9%	2.6%	1.5%	1.4%	1.0%	1.6%	6.4%	1.4%
스프링클러		754	445	360	33	1,592	878	527	397	29	1,831
		12.8%	14.1%	15.8%	21.3%	13.9%	14.9%	16.7%	17.2%	18.6%	15.9%
탈의실		1,359	1,704	929	42	4,034	1,758	2,609	1,351	69	5,787
		23.0%	54.1%	40.7%	27.1%	35.1%	29.8%	82.5%	58.7%	44.2%	50.2%
골프연습장		265	280	390	10	945	304	303	390	8	1,005
		4.5%	8.9%	17.1%	6.5%	8.2%	5.2%	9.6%	16.9%	5.1%	8.7%
헬스시설		268	677	860	41	1,846	325	827	982	60	2,194
		4.5%	21.5%	37.7%	26.5%	16.1%	5.5%	26.1%	42.6%	38.5%	19.0%
인공암장		71	45	60	10	186	71	45	45	11	172
		1.2%	1.4%	2.6%	6.5%	1.6%	1.2%	1.4%	2.0%	7.1%	1.5%
야간조명등		1,629	890	1,078	24	3,621	1,877	1,101	1,077	32	4,087
		27.6%	28.3%	47.2%	15.5%	31.5%	31.8%	34.8%	46.8%	20.5%	35.5%

한편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은 학생의 다양한 실내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단위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2009~2012년까지 매년 25개교씩 총 100개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요 재원은 문체부 30%, 교육청, 지자체가 협의에 의해 70%를 분담하고 있다<표 3-8>.

■ 표 3-8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의 연도별 목표 및 소요예산

(교, 백만원)

구 분	'09	'10	'11	'12	계		
건립 목표	25	25	25	25	100		
소요 예산	계	40,000	40,000	40,000	40,000	160,000	100%
	문체부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25%
	교육청	20,000	20,000	20,000	20,000	80,000	50%
	지자체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25%

4. 학생체력현황

2008년까지 초·중·고등학생의 기초체력을 검사하는 학생신체능력검사가 실시되었으나, 2009년도 이후 이를 대체한 학생건강체력평가(PAPS)가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0년도에 중학교까지 실시되었고 2011년도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었다. 새로운 체력척도의 적용에 따라 학생체력에 대한 누적된 통계가 부족하여 최근의 추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실시된 자료에 따르면 학생의 전반적 체력저하현상이 심화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2008년도 학생신체능력검사의 종목별 점수는 <표 3-9>와 같다. 각 종목별로 최근 8년간의 결과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모든 종목에서 체력수준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00년에 대비하여 ‘오래달리기-걷기’의 경우 +37초, ‘제자리멀리뛰기’ -6.59cm, ‘팔굽혀매달리기(여)’ -2.75초 등 6개 종목 모두 감소했으며, 전년도인 2007년에 대비하면 ‘50m달리기’는 -0.02초, ‘팔굽혀펴기’ +0.5회, ‘팔굽혀매달리기’ +0.11초, ‘제자리멀리뛰기’ +1.21cm, ‘오래달리기-걷기’ -0.03초 등 총 5개 종목에서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유연성 검사인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만 기록이 -0.11cm감소했다.

■ 표 3-9 연도별 학생신체능력검사 결과

종 목	년 도	2007		2006		2000	
		기록	2008년 대비편차	기록	2008년 대비편차	기록	2008년 대비편차
50m달리기(초)	2008	9.39	-0.02	9.39	0	9.22	0.17
팔굽혀펴기(남)/(회)	2008	30.00	0.5	30.67	-0.67	31.27	-1.27
팔굽혀매달리기(여)/(초)	2008	5.88	0.11	5.62	0.26	8.63	-2.75
윗몸일으키기(회/분당)	2008	34.00	0.25	33.88	0.12	35.44	-1.44
제자리멀리뛰기(cm)	2008	174.06	1.21	173.37	0.69	180.65	-6.59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2008	12.72	-0.11	13.28	-0.56	13.84	-1.12
오래달리기-걷기(분·초)	2008	8.09	-0.03	8.02	0.07	7.32	0.37

1) 초등학교 체력검사 현황

2012년도 현재, 학생건강체력검사 대상학생 1,102,395명 중 1등급 38,595명(3.5%), 2등급 422,991명(38.4%), 3등급 559,531명(50.8%), 4등급 77,304명(7.0%), 5등급 3,974명(0.4%)이다. 이는 2011년도 결과와 비교하여 1, 2등급은 '11년 비해 4.8% 증가, 4, 5등급은 3.2% 감소된 추세로 전체적으로 체력상태가 우수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 표 3-10 2012년도 초등학교 건강체력평가 결과

(%, 명)

구 분		1등급 (80~100)		2등급 (60~79)		3등급 (40~59)		4등급 (20~39)		5등급 (0~19)		검사 인원수	
학년	성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초	5	남	9,063	3.4	98,734	36.7	139,072	51.7	21,026	7.8	1,060	0.4	268,955
		여	8,134	3.3	101,786	41.2	122,649	49.6	13,839	5.6	710	0.3	247,118
	6	남	12,662	4.1	116,326	37.9	153,175	49.9	23,486	7.7	1,261	0.4	306,910
		여	8,736	3.1	106,145	38.0	144,635	51.8	18,953	6.8	943	0.3	279,412
전체	남	21,725	3.8	215,060	37.3	292,247	50.7	44,512	7.7	2,321	0.4	575,865	
	여	16,870	3.2	207,931	39.5	267,284	50.8	32,792	6.2	1,653	0.3	526,530	
	합계	38,595	3.5	422,991	38.4	559,531	50.8	77,304	7.0	3,974	0.4	1,102,395	

■ 표 3-11 초등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의 연도별 비교(2009~2012) (%) 명

학년	성별	1등급 (80~100)		2등급 (60~79)		3등급 (40~59)		4등급 (20~39)		5등급 (0~19)		검 사 인원수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09	남	16,170	2.7	195,523	32.2	301,640	49.6	88,714	14.6	5,723	0.9	607,770
	여	9,298	1.7	182,180	32.6	295,470	52.9	67,370	12.1	3,970	0.7	558,288
	평균	25,468	2.2	377,703	32.4	597,110	51.2	156,084	13.4	9,693	0.8	1,166,058
'10	남	11,629	1.9	189,550	30.2	329,456	52.5	91,504	14.6	5,835	0.9	627,974
	여	7,831	1.4	178,257	31.1	312,938	54.6	70,361	12.3	4,116	0.7	573,503
	평균	19,460	1.6	367,807	30.6	642,394	53.5	161,865	13.5	9,951	0.8	1,201,477
'11	남	17,079	2.7	210,951	33.7	324,915	51.9	68,186	10.9	4,372	0.7	625,503
	여	12,869	2.3	203,117	35.6	300,509	52.7	51,084	9.0	3,172	0.6	570,751
	평균	29,948	2.5	414,068	34.6	625,424	52.3	119,270	10.0	7,544	0.6	1,196,254
'12	남	21,725	3.8	215,060	37.3	292,247	50.7	44,512	7.7	2,321	0.4	575,865
	여	16,870	3.2	207,931	39.5	267,284	50.8	32,792	6.2	1,653	0.3	526,530
	합계	38,595	3.5	422,991	38.4	559,531	50.8	77,304	7.0	3,974	0.4	1,102,395

2) 중학생 체력검사 현황

2012년도 현재 검사학생 1,792,764명 중 1등급 78,571명(4.4%), 2등급 666,015명(37.2%), 3등급 843,451명(47.0%), 4등급 190,884명(10.6%), 5등급 13,843명(0.8%)이다. 이는 1, 2등급의 경우 2011년에 비해 6.3% 증가, 4, 5등급의 경우 3.6% 감소된 수치로서 전체적으로 체력수준이 우수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3-12 2012년 중학생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 명

구분	학년	성별	1등급 (80~100)		2등급 (60~79)		3등급 (40~59)		4등급 (20~39)		5등급 (0~19)		검 사 인원수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중	1	남	10,974	3.7	98,358	32.7	148,037	49.2	40,151	13.4	3,137	1.0	300,657
		여	10,171	3.7	105,426	38.0	134,287	48.5	25,725	9.3	1,528	0.6	277,137
	2	남	16,641	5.4	112,205	36.2	140,904	45.5	37,097	12.0	3,029	1.0	309,876
		여	10,687	3.8	109,322	38.4	136,300	47.9	26,504	9.3	1,591	0.6	284,404
	3	남	17,956	5.6	123,021	38.3	143,024	44.5	34,465	10.7	2,813	0.9	321,279
		여	12,142	4.1	117,683	39.3	140,899	47.1	26,942	9.0	1,745	0.6	299,411
전체	남	45,571	4.9	333,584	35.8	431,965	46.4	111,713	12.0	8,979	1.0	931,812	
	여	33,000	3.8	332,431	38.6	411,486	47.8	79,171	9.2	4,864	0.6	860,952	
	합계	78,571	4.4	666,015	37.2	843,451	47.0	190,884	10.6	13,843	0.8	1,792,764	

■ 표 3-13 중학생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의 연도별 비교(2010~2012)

학년	성별	1등급 (80~100)		2등급 (60~79)		3등급 (40~59)		4등급 (20~39)		5등급 (0~19)		검 사 인원수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10	남	28,725	2.8	299,069	29.4	492,327	48.4	181,763	17.9	15,531	1.5	1,017,415
	여	17,900	1.9	275,725	29.9	484,996	52.6	134,588	14.6	9,148	1.0	922,357
	합계	46,625	2.4	574,794	29.6	977,323	50.4	316,351	16.3	24,679	1.3	1,939,772
'11	남	33,585	3.4	314,575	32.0	471,904	48.0	149,357	15.2	12,906	1.3	982,327
	여	21,599	2.4	295,439	32.9	462,026	51.4	111,579	12.4	8,223	0.9	898,866
	합계	55,184	2.9	610,014	32.4	933,930	49.6	260,936	13.9	21,129	1.1	1,881,193
'12	남	45,571	4.9	333,584	35.8	431,965	46.4	111,713	12.0	8,979	1.0	931,812
	여	33,000	3.8	332,431	38.6	411,486	47.8	79,171	9.2	4,864	0.6	860,952
	합계	78,571	4.4	666,015	37.2	843,451	47.0	190,884	10.6	13,843	0.8	1,792,764

3) 고등학생 체력검사 현황

2012년 검사학생 1,854,368명 중 1등급 66,739명(3.6%), 2등급 631,668명(34.1%), 3등급 876,454명(47.3%), 4등급 255,042명(13.8%), 5등급 24,465명(1.3%)이다. 이는 1, 2등급의 경우 2011년에 비해 1.6% 증가, 4, 5등급의 경우 1.5% 감소된 수치로서 전체 적으로 체력수준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3-14 2012년 고등학생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명, %)

구 분		1등급 (80~100)		2등급 (60~79)		3등급 (40~59)		4등급 (20~39)		5등급 (0~19)		검 사 인원수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1	남	15,554	4.8	125,619	38.8	142,795	44.1	36,398	11.2	3,249	1.0	323,615
	여	12,484	4.2	108,893	37.0	137,900	46.9	32,493	11.0	2,293	0.8	294,063
2	남	10,418	3.2	110,295	33.7	153,928	47.0	47,615	14.5	5,128	1.6	327,384
	여	10,824	3.7	98,349	33.4	143,255	48.6	39,451	13.4	3,007	1.0	294,886
3	남	7,976	2.4	96,700	29.7	157,076	48.2	56,725	17.4	7,093	2.2	325,570
	여	9,483	3.3	91,812	31.8	141,500	49.0	42,360	14.7	3,695	1.3	288,850
전체	남	33,948	3.5	332,614	34.1	453,799	46.5	140,738	14.4	15,470	1.6	976,569
	여	32,791	3.7	299,054	34.1	422,655	48.1	114,304	13.0	8,995	1.0	877,799
	계	66,739	3.6	631,668	34.1	876,454	47.3	255,042	13.8	24,465	1.3	1,854,368

■ 표 3-15 고등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의 연도별 비교(2011~2012)

학년	성별	1등급 (80~100)		2등급 (60~79)		3등급 (40~59)		4등급 (20~39)		5등급 (0~19)		검 사 인원수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11	남	32,235	3.2	333,070	33.4	460,932	46.2	153,270	15.4	18,356	1.8	997,863
	여	32,239	3.6	282,452	31.9	430,374	48.7	128,278	14.5	11,230	1.3	884,573
	합계	64,474	3.4	615,522	32.7	891,306	47.3	281,548	15.0	29,586	1.6	1,882,436
'12	남	33,948	3.5	332,614	34.1	453,799	46.5	140,738	14.4	15,470	1.6	976,569
	여	32,791	3.7	299,054	34.1	422,655	48.1	114,304	13.0	8,995	1.0	877,799
	합계	66,739	3.6	631,668	34.1	876,454	47.3	255,042	13.8	24,465	1.3	1,854,368

4) 건강체력 우려학생 현황

2012년도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중 저체력 학생은 7.3%, 비만 학생은 10.2%, 두 가지(저체력+비만)를 모두 지닌 학생은 2.4%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에 비해 각각 저체력은 3.3%, 비만은 0.2%, 저체력+비만은 0.9% 감소된 수치로 지속적으로 건강체력 우려 학생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중학생은 저체력 11.4%, 비만 13.1%, 두 가지(저체력+비만)를 모두 지닌 학생이 4.5%로 전년대비 각각 3.6%, 0.3%,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저체력 15.0%, 비만 15.8%, 두 가지(저체력+비만)를 모두 지닌 학생이 8.3%로 전년대비 저체력 1.3%, 비만 0.1% 감소했고, 저체력+비만은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비만 학생의 비율이 저체력 학생 비율보다 높았다.

■ 표 3-16 2012년 건강체력 우려학생 현황

(%, 명)

학년	저체력				비만				저체력 + 비만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초	5	22,012	14,490	36,502	3.3	28,065	23,619	51,684	4.7	7,722	3,952	11,674	1.1
	6	24,672	19,816	44,488	4.0	34,438	26,349	60,787	5.5	9,426	5,525	14,951	1.4
	계	46,684	34,306	80,990	7.3	62,503	49,968	112,471	10.2	17,148	9,477	26,625	2.4
중	1	43,191	27,169	70,360	3.9	40,196	24,822	65,018	3.6	17,163	7,237	24,400	1.4
	2	40,032	27,982	68,014	3.8	50,511	28,821	79,332	4.4	19,167	8,407	27,574	1.5
	3	37,183	28,598	65,781	3.7	56,792	33,013	89,805	5.0	19,449	9,393	28,842	1.6
	계	120,406	83,749	204,155	11.4	147,499	86,656	234,155	13.1	55,779	25,037	80,816	4.5
고	1	39,422	34,638	74,060	4.0	57,549	32,432	89,981	4.9	20,123	10,488	30,611	1.7
	2	52,579	42,342	94,921	5.1	61,078	35,150	96,228	5.2	26,188	12,875	39,063	2.1
	3	63,775	46,034	109,809	5.9	68,170	38,006	106,176	5.7	31,355	14,332	45,687	2.5
	계	155,776	123,014	278,790	15.0	186,797	105,588	292,385	15.8	77,666	37,695	115,361	8.3

※ 저체력 : 건강체력 4~5등급, 비만 : 체지방(BMI)이 4~5등급, 저체력 + 비만 : 건강체력과 BMI가 모두 4~5등급

5. 학교운동부 현황

2012년도 현재 전국의 학교운동부 육성학교는 5,281개교로서 전체 학교의 46.5%이며, 이것은 2011년 학교운동부 육성학교 비율인 49.7%에 비해 3.2%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2012년도 전체 학생선수 수는 71,518명으로 2011년 전체 학생선수수인 75,466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교운동부 육성이 어려워지고 저출산 또는 운동기피 등으로 학생선수 수급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학교운동부 팀수는 2012년이 8,859팀으로 2011년 8,777팀보다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종목별 학교운동부팀 창단 및 운영은 2012년 이전보다 선호되거나 학교운동부팀 당 학생선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창단·운영하고 있어 대회출전 시 교체선수 부족, 운동부 훈련 효율성 저하 등 학교운동부 운영에 애로가 많다고 볼 수 있다.

■ 표 3-17 연도별 학교운동부 현황 비교(2011~2012)

(교, 팀, 명, %)

연도	급별	학교수	학교운동부 육성학교수	전체 학생수 (초3~고3)	학생 선수수 (초3~고3)	학교운동부 팀수 (남+여)
2011	초	5,869	2,217	2,346,610	26,740	3,392
	중	3,138	2,277	1,890,270	26,422	3,189
	고	2,262	1,574	1,852,939	22,304	2,196
	계	11,269	5,603 (49.7%)	6,089,819	75,466 (1.2%)	8,777
2012	초	5,898	2,071	2,198,974	23,907	3,377
	중	3,163	1,901	1,800,843	26,059	3,312
	고	2,290	1,309	2,270,470	21,552	2,170
	계	11,351	5,281 (46.5%)	6,270,287	71,518 (1.1%)	8,859

한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시도교육청이 임용한 전임코치와 단위학교에서 자체 임용한 일반코치로 구분되는데, 2012년에 시도교육청 전임코치수는 4,404명, 일반코치는 1,605명으로 총 6,009명이다. 이는 2011년 대비 시도교육청 전임코치의 수는 299명 증가한 반면 일반코치는 2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12년 학교운동부지도자는 2011년에 비해 27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도교육청 전임코치수가 증가한 것은 정부의 학교운동부지도자 재정지원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표 3-18 연도별 학교운동부 지도자 현황 비교(2011~2012)

연도	학교운동부지도자수(명)											
	전임코치				일반코치				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계
2011	1,375	1,597	1,133	4,105 (71.6%)	501	564	560	1,625 (28.4%)	1,876	2,161	1,693	5,730 (100%)
2012	1,453	1,687	1,264	4,404 (73.3%)	460	571	574	1,605 (26.7%)	1,913	2,258	1,838	6,009 (100%)

6.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현황

체육계열 중고등학교는 2011년 신설된 경기체육중학교를 포함 체육중학교 8개교 및 체육 고등학교 14개교와 더불어 1개 반을 특기 반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는 특수목적고인 제주 남녕고를 포함하여 총 23개가 있다. 2012년 현재 체육계열 중고등학교의 재학생 수는 체육중학교 923명, 고등학교 3,715명을 포함하여 총 4,638명이며, 소속코치는 총 323명의 규모이다.

■ 표 3-19 2012년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현황

(단위 : 명, 개)

학교명	설립년월	학생수	코치수	육성종목수	졸업생수	비고
합계	23개교	4,638	323		40,208	
중학교	소계	8개교	923		6,680	중고 병설 운영
	서울체육중	2004.3	159		1,307	
	광주체육중	1983.11	198		1,738	
	대전체육중	1993.3	125		996	
	경기체육중	2011.3	56		0	
	강원체육중	2005.3	90		143	
	전북체육중	2007.3	70		111	
	전남체육중	2000.3	119		438	
	경북체육중	1973.6	106		1,947	
고등학교	소계	15개교	3,715	323	33,528	
서울체육고	1971.1	419	44	22	4,140	
부산체육고	1972.11	302	21	21	2,743	
대구체육고	2003.3	183	17	10	372	
인천체육고	1975.11	287	24	13	6,947	
광주체육고	1972.12	290	20	18	3,290	

고등학교	대전체육고	1973.3	272	28	16	2,860	
	경기체육고	1995.3	288	24	13	1,242	
	강원체육고	1991.3	215	17	16	1,204	
	충북체육고	1991.3	255	16	13	1,477	
	충남체육고	1992.1	219	16	12	1,272	
	전북체육고	1975.11	242	19	16	2,534	
	전남체육고	1997.12	165	24	17	373	
	경북체육고	1972.11	225	25	16	2,532	
	경남체육고	1984.12	251	22	14	2,104	
	제주남녕고	1997.3	102	6	9	438	

한편 체육계열 중·고등학교는 전문체육 선수양성의 산실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2012년 현재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소속 선수 중 국가대표는 32명, 후보선수는 319명으로 총 351명의 대표급 우수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11년 대비 전체적으로 56명 증가한 수치로 체육계열 중·고등학교가 국가대표 양성과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3-20 연도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대표선수 보유 현황 비교

연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10	국가대표	9	1	4	0	2	2	4	2	1	0	1	0	1	1	1	29
	후보선수	43	25	18	19	11	18	0	0	0	8	24	12	23	15	7	223
	계	52	26	22	19	13	20	4	2	1	8	25	12	24	16	8	252
	비율(%)	21	10	9	8	5	8	2	1	0	3	10	5	10	6	3	100
2011	국가대표	5	2	3	0	16	1	2	3	0	0	23	1	3	0	1	60
	후보선수	42	17	27	15	0	16	25	15	12	13	0	16	19	16	2	235
	계	47	19	30	15	16	17	27	18	12	13	23	17	22	16	3	295
	비율(%)	16	6	10	5	5	6	9	6	4	4	8	6	7	5	1	100
2012	국가대표	6	2	3	1	1	1	6	1	1	1	3	1	2	2	1	32
	후보선수	56	19	23	25	20	16	40	23	12	15	20	16	18	14	2	319
	계	62	21	26	26	21	17	46	24	13	16	23	17	20	16	3	351
	비율(%)	18	6	7	7	6	5	13	7	4	5	7	5	6	5	1	100

제3절 일반학생 지원사업

청소년기의 체육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체력강화 뿐만 아니라, 스포츠맨십, 공동체의식 등 인성 함양과 인지적 발달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미국, 호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체육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체육활동여건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미비한 상태로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1. 초·중등학교 체육활성화 방안

앞서의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2010년 9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즐거운 학교 및 학생 체력증진을 위한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초·중등 학교체육활성화 방안은 학교체육의 양 주무부처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개별 사업을 연동시켜 시너지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철저한 예산 확보를 통한 계획적 사업 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관련 정책에 비해 획기적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은 ‘재미있는 체육수업,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스포츠’를 모토로 2015년까지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등록률을 50%, 신체활동 7560+실천율을 30%로 증진시키는 것을 추진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2012년도 계획을 보면 정과 체육영역에서 ‘교과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과외자율체육활동영역에서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학생 체육활동 참여동기 부여’, ‘법·제도 마련 및 인프라 구축’ 등의 6개 중심과제와 그 하위에 16대 실행과제를 두고 있다(그림 3-2).

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2011년에서 2015년까지 5개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분담하여 총 5,127억 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향후 양 주무부처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에 따른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목표

재미있는 체육수업,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스포츠
- 운동하는 일반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

*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등록률 : 45%('11) → 50%('12)

* 신체활동 7560+(주5일 60분 이상 운동하기) 실천율 : 15.3%('11) → 18%('12)



6대 중점과제

1. 교과 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3. 학생건강체력평가제 (PAPS) 내실 운영

4.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5. 학교운동부 선진화(엘리트체육)

6. 법제도 마련 및 인프라 구축

16대 실행과제

1-1. 체육수업시수 확대 및 체육수업 질 제고
1-2. 체육(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및 연구대회 활성화
1-3. 스포츠강사 지원 확대

2-1.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2-2.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연계 강화

3-1.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확대 시행
3-2. 신체활동 7560+ 운동 전개
3-3. 1인 1운동 즐기기, 1교 1기 실천 강화

4-1. 교육기부의 일환으로 체육재능기부 확대
4-2.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
4-3. 체육활동 우수교, 우수학생교직원 등 포상

5-1.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5-2.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 강화
5-3.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6-1.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6-2.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등 지원 강화
6-3. 학생 체육활동 시설환경 개선

그림 3-2 2012 학교체육 주요업무계획

2.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은 초등(특수)학교에 일정자격 이상의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체육 정규수업의 보조와 함께 방과 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2008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12년에 전국적으로 2,852명의 스포츠강사를 일선 초등(특수)학교에 배치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는 2011년 대비 1,336명 증원된 수치이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기금)와 지역 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이 예산을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총 503억 6천 6백여만원의 재원이 투입되었다.

■ 표 3-21 2012년 시도 교육청별 스포츠강사 배치인원 및 인건비 소요예산

사도	초등특수학교 수 (교)	'12년 배치 (명)	소요예산(천원)			'11년 배치 (명)	증원
			문화부	교육청	계		
서울	623	392	1,395,140	5,527,580	6,922,720	169	223
부산	312	101	715,230	1,068,430	1,783,660	81	20
대구	225	58	512,140	512,140	1,024,280	58	0
인천	243	79	538,630	856,510	1,395,140	61	18
광주	152	67	556,290	626,930	1,183,220	63	4
대전	148	110	441,500	1,501,100	1,942,600	50	60
울산	122	88	282,560	1,271,520	1,554,080	32	56
경기	1,205	144	1,271,520	1,271,520	2,543,040	144	0
강원	359	242	988,960	3,284,760	4,273,720	112	130
충북	267	184	724,060	2,525,380	3,249,440	82	102
충남	436	206	1,041,940	2,596,020	3,637,960	118	88
전북	424	309	1,015,450	4,441,490	5,456,940	115	194
전남	434	193	1,094,920	2,313,460	3,408,380	124	69
경북	491	319	1,200,880	4,432,660	5,633,540	136	183
경남	499	280	1,200,880	3,743,920	4,944,800	136	144
제주	113	80	264,900	1,147,900	1,412,800	35	45
계	6,053	2,852	13,245,000	37,121,320	50,366,320	1,516	1,336

3. 토요일스포츠강사 지원 사업

토요일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은 매주 토요일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토요일스포츠 강습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2011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12년에는 토요일스포츠강사 운영을

통한 학교체육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3월 8일과 9일 양일간 토요스포츠 강사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에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2012년은 전국적으로 4,789명의 스포츠강사를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운영하였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기금)와 교육부(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지역 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이 예산을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총 153억 5천 6백여만원의 재원이 투입되었다.

■ 표 3-22 2012년 시도 교육청별 토요스포츠강사 배치인원 및 인건비 소요예산

시도	초·중고 및 특수학교 수	'12년 배치 (명)	소요예산(천원)			
			문화부	교육부	시도 교육청	계
계	11,519	4,789	6,898,560	4,899,840	3,557,760	15,356,160
서울	1,319	606	758,400	568,320	355,200	1,681,920
부산	625	403	385,920	268,800	220,800	875,520
대구	441	242	293,760	197,760	184,320	675,840
인천	495	185	311,040	209,280	190,080	710,400
광주	305	171	226,560	144,000	155,520	526,080
대전	297	147	228,480	145,920	151,680	526,080
울산	235	113	182,400	107,520	144,000	433,920
경기	2,232	577	1,138,560	871,680	266,880	2,277,120
강원	639	238	374,400	257,280	224,640	856,320
충북	479	251	311,040	209,280	193,920	714,240
충남	749	283	422,400	299,520	245,760	967,680
전북	764	331	453,120	322,560	249,600	1,025,280
전남	837	303	518,400	378,240	266,880	1,163,520
경북	962	394	579,840	426,240	291,840	1,297,920
경남	954	416	562,560	410,880	286,080	1,259,520
제주	186	129	151,680	82,560	130,560	364,800

※ 세종시는 충남에 포함되어 있음

4.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사업

학교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은 최근 일반학생의 체력 저하가 심화됨에 따라 정기적인 체육활동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율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체력 증진과 활기찬 학교분위기를 형성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실시되었다. 이는 학교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이

루어져왔던 체육동아리 활동을 학교스포츠클럽으로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기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되는 세부사업은 학교스포츠클럽을 교육청에 등록·관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학교스포츠클럽 등록관리사업’과 정기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사업’으로 구분된다.

1)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현황

2012년도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청 등록률은 84.2%로서 등록학생수도 530만 4천116명으로 2007년도 460,591명에 대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계획초기 목표였던 5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스포츠클럽 등록 학생수, 등록률, 종목 현황은 <표 3-23, 24>와 같다.

■ 표 3-23 2012년 급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현황('12.12.20. 기준)

(명, 팀)

급별	학생 등록률			클럽수
	전체 학생수 (초2~고3)	등록 학생수 (초2~고3)	등록률(%)	
초	2,530,317	2,801,187	110	90,620
중	1,849,094	1,606,653	86	51,951
고	1,920,087	895,951	46	29,388
계	6,299,498	5,303,791	84.2	171,959

■ 표 3-24 2012년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현황('12.12.31. 기준)

순	종 목	전체		초		중		고	
		클럽수	학생수	클럽수	학생수	클럽수	학생수	클럽수	학생수
	전 체	172,892	5,354,525	91,182	2,827,852	52,166	1,620,763	29,500	905,599
1	줄넘기	42,691	1,464,514	35,578	1,144,896	4,676	201,782	2,436	117,826
2	축구	24,176	682,277	8,088	224,103	10,646	307,661	5,441	150,511
3	파구	14,260	448,027	7,292	228,572	5,172	159,994	1,796	59,461
4	배드민턴	13,601	427,652	5,109	151,744	4,820	152,717	3,665	123,155
5	견기	10,586	413,467	7,669	287,725	1,532	61,670	1,383	64,050
6	농구	10,418	250,303	1,859	46,777	5,034	127,321	3,521	76,186
7	탁구	5,835	138,850	1,504	30,905	2,732	68,311	1,592	39,569
8	육상	5,532	165,317	4,577	140,577	581	14,892	372	9,820
9	기타(其他)	4,898	146,102	2,933	84,449	1,433	47,097	531	14,556
10	티볼	3,132	103,588	1,870	57,970	1,074	37,655	188	7,963
11	Extreme games	2,538	86,995	1,452	44,100	848	35,265	238	7,630
12	댄스스포츠	2,470	66,952	1,030	25,811	1,097	31,113	343	10,028
13	맨손체조	2,312	88,195	1,926	70,555	245	10,300	137	7,292
14	풋살	2,133	50,598	847	18,488	788	19,533	498	12,577
15	배구	1,903	60,295	594	15,573	750	28,258	557	16,448

순	종 목	전체		초		중		고	
		클럽수	학생수	클럽수	학생수	클럽수	학생수	클럽수	학생수
16	발야구	1,886	56,931	811	23,953	782	24,329	293	8,649
17	야구	1,606	44,321	408	9,989	761	22,504	437	11,828
18	등산	1,518	43,882	200	6,890	716	19,507	602	17,485
19	요가	1,484	41,231	461	10,667	715	19,713	308	10,851
20	족구	1,337	31,417	84	1,959	554	13,644	699	15,814
21	태권도	1,202	60,339	559	29,918	460	21,221	180	9,187
22	골프	909	19,625	297	6,157	305	6,247	307	7,221
23	제기차기	897	27,611	676	20,279	174	6,183	47	1,149
24	수영	885	20,439	578	14,097	170	2,964	137	3,378
25	플라잉디스크	853	27,126	369	11,162	382	13,545	102	2,419
26	테니스	842	16,842	132	2,069	362	7,570	348	7,203
27	마라톤	755	32,799	490	19,746	119	6,764	146	6,289
28	합합	740	19,191	111	2,597	356	9,486	273	7,108
29	플로어볼	696	18,120	312	8,134	324	8,265	60	1,721
30	창작무용	694	21,257	277	7,032	323	11,018	92	3,199
31	볼링	658	17,384	21	552	391	10,416	245	6,412
32	씨름	582	11,051	280	5,953	185	3,261	117	1,837
33	바둑	574	14,301	296	7,674	174	4,269	104	2,358
34	당구	506	11,901	6	124	192	4,474	307	7,303
35	핸드볼	487	12,713	172	4,268	212	6,256	103	2,189
36	자전거	484	13,483	204	5,560	119	3,338	160	4,577
37	보디빌딩	478	10,994	34	792	181	4,125	263	6,077
38	라인댄스	371	11,480	138	3,199	200	7,392	33	889
39	넷볼	362	10,949	41	1,324	264	7,821	57	1,804
40	인라인롤러	356	9,277	246	6,444	64	1,739	43	1,079
41	검도	352	14,261	80	1,500	139	5,623	133	7,138
42	소프트볼	326	8,972	38	999	199	5,615	89	2,358
43	줄다리기	286	13,907	84	3,718	137	7,005	65	3,184
44	현대무용	282	7,260	168	4,226	78	2,178	36	856
45	치어리딩	275	7,557	72	1,630	122	3,946	81	1,981
46	장기	220	5,448	98	2,523	85	2,224	37	701
47	발레	196	3,802	140	1,986	38	1,322	18	494
48	유도	189	7,056	36	597	97	3,369	56	3,090
49	복싱	174	4,374	7	114	112	3,268	55	992
50	리듬체조	174	6,262	145	5,549	15	334	14	379
51	스케이트	155	5,428	56	2,973	79	1,964	20	491
52	한국무용	143	3,428	47	950	74	2,069	22	409
53	킨볼	143	4,109	29	968	86	2,333	28	808
54	산악	136	3,693	24	542	52	1,415	60	1,736
55	체스	135	3,501	67	1,686	53	1,435	15	380
56	츄크볼	122	3,159	9	246	80	2,179	33	734
57	호신술	115	2,735	12	373	75	1,773	28	589
58	택견	100	7,286	38	1,634	43	4,197	19	1,455
59	프리테니스	94	2,423	67	1,536	19	663	8	224
60	사격	93	2,428	4	73	61	1,574	28	781
61	승마	90	2,202	52	1,411	16	355	22	436
62	스포츠스타킹	84	3,411	28	798	52	1,832	4	781

순	종 목	전체		초		중		고	
		클럽수	학생수	클럽수	학생수	클럽수	학생수	클럽수	학생수
63	궁도	83	1,529	9	78	37	846	37	605
64	사이클	83	2,063	11	435	29	524	43	1,104
65	력비	81	2,717	13	278	55	1,992	13	447
66	필라테스	80	2,356	6	176	32	760	42	1,420
67	기계체조	76	1,388	36	574	22	499	18	315
68	정구	76	1,375	39	778	19	309	18	288
69	게이트볼	74	1,588	35	692	31	713	8	183
70	합기도	65	2,328	17	1,043	28	809	20	476
71	스쿼시	56	1,536	1	16	27	634	28	886
72	양궁	52	724	21	226	20	275	11	223
73	레슬링	42	1,623	2	23	32	1,487	8	113
74	스키	42	1,653	23	999	10	350	9	304
75	빙상	41	826	12	75	22	593	7	158
76	역도	38	429	9	134	17	195	10	83
77	낚시	38	753	2	14	12	239	24	500
78	하키	30	938	24	780	2	68	4	90
79	라켓볼	29	838	1	10	25	752	3	76
80	국선도	27	533	5	70	10	205	12	258
81	캠핑	27	994	2	54	9	563	16	377
82	국학기공	25	849	9	271	11	520	5	58
83	오리엔티어링	25	683	11	376	7	202	7	105
84	요트	23	474	6	99	6	54	11	321
85	우슈	22	1,117	6	872	2	44	14	201
86	종합무술	20	413	2	41	5	102	13	270
87	드레곤보트	20	634	4	128	7	243	9	263
88	근대5종	18	291	10	199	5	72	3	20
89	카누	18	254	2	12	8	122	8	120
90	세팍타크로	17	294	0	0	10	75	7	219
91	스네이크보드	17	535	8	130	4	188	5	217
92	수중	15	662	3	56	4	454	8	152
93	특공무술	14	242	0	0	7	153	7	89
94	컬링	13	118	1	10	6	51	6	57
95	조정	10	106	0	0	1	0	9	106
96	철인3종경기	9	129	1	0	4	59	4	70
97	피겨	9	181	5	79	1	23	3	79
98	태극권	9	165	3	73	2	31	4	61
99	공수도	8	169	0	0	4	106	4	63
100	아이스하키	7	110	6	110	0	0	1	0
101	스랙라인	7	137	2	52	3	60	2	25
102	윈드서핑	4	38	0	0	1	12	3	26
103	패러글라이딩	3	71	0	0	1	21	2	50
104	봅슬레이스켈레톤	2	3	0	0	1	1	1	2
105	우드볼	2	49	2	49	0	0	0	0
106	인라인하키	1	16	0	0	1	16	0	0
107	수상스키	1	48	0	0	1	48	0	0
108	트라이애슬론	1	24	0	0	0	0	1	24
109	크리켓	1	24	1	24	0	0	0	0

2) 학교스포츠클럽의 등록·관리

단위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동일 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담당 지도교사(초등학교는 스포츠강사도 가능) 1명을 지정하여 종목별로 등록되고 있다. 동일 학교의 학생만으로 편성하고 방과후 학교, 계발활동 등에 참가한 학생을 관할 교육청에 등록케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초중학생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생은 지역교육청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다.

3)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지원 사업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수업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방과 후 및 주말·방학을 이용하여 진행되며, 종목별로 교내 대회, 교육지원청 대회, 시·도교육청 대회, 전국대회의 순으로 개최된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3-3)과 같다.

대회 종류	운영방식	출전 팀수	시 상	예 산	일 정
전국대회	리그+토너먼트방식 (왕중왕전)	시·도 1위 (17팀)	교육부/ 문체부장관상 체육단체장상	교육부 문체부 체육단체 등	2학기 (11월)
시·도대회	토너먼트방식 (시·도 대표팀 선발)	시·군·구 1위	교육감상/ 광역자치단체장상 사도체육단체장상	교육부(교육청) 광역자치단체 체육단체 등	2학기 (9~10월)
시·군·구대회	종목별/조별 리그 방식 (시·군·구 대표팀 선발)	학교 1위	교육장상/ 기초자치단체장상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체육단체 등	1~2학기
교내 대회	조별 리그 방식 (학교 대표팀 선발)		학교장상	해당 학교 (자체예산)	1~2학기

그림 3-3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요

2012년에 학교스포츠클럽을 위한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참가한 팀수는 총 1,174개이며, 참가인원은 총 14,586명이다.

■ 표 3-25 2012년 종목별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현황

(팀, 명)

종목별	초		중		고		계	
	팀수	참가인원	팀수	참가인원	팀수	참가인원	팀수	참가인원
검도	10	76	9	65	15	112	34	253
게이트볼	4	30	5	44	-	-	9	74
궁도	3	17	6	51	7	85	16	153
넛볼	4	53	10	134	6	80	20	267
농구	27	373	26	350	23	330	76	1,053
댄스스포츠	4	74	7	132	1	8	12	214
롤러	12	40	8	25	1	1	21	66
배구	13	207	23	349	18	286	54	842
배드민턴	32	238	33	256	31	240	96	734
소프트볼	7	120	12	227	5	100	24	447
수영	17	119	8	67	5	17	30	203
스포츠줄다리기	5	60	15	180	-	-	20	240
씨름	-	-	11	116	-	-	11	116
야구	6	96	12	205	10	165	28	466
육상	18	105	15	120	5	27	38	252
족구	8	62	15	120	14	109	37	291
줄넘기	16	185	25	303	9	111	50	599
창작댄스	12	126	13	133	9	112	34	371
체조	4	52	5	73	-	-	9	125
축구	27	488	28	529	21	408	76	1,425
탁구	32	280	30	260	26	230	88	770
택견	4	26	4	26	-	-	8	52
테니스	5	31	5	26	3	16	13	73
프리테니스	19	266	17	238	-	-	36	504
티볼	16	240	24	360	7	105	47	705
풋살	14	160	13	151	8	93	35	404
플라잉디스크	21	179	27	298	15	124	63	601
플로어볼	17	242	19	279	8	111	44	632
피구	37	739	24	446	21	434	82	1,619
핸드볼	28	460	18	297	17	278	63	1,035
계	422	5,144	467	5,860	285	3,582	1,174	14,586

제4절 학생선수 지원사업

학교운동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문체육의 산실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제도 및 재정지원으로 통해 발전해 왔다. 정부는 그 동안 학생선수들이 대학특례입학제도 등을 통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에 전념하여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상위 입상 하는 등 국위를 선양하도록 조처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학생선수의 학력저하 및 인권침해 등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교육·체육계를 넘어 사회적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인권신장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경기력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1.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계획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신장 등 정부 차원의 새로운 노력에 대한 가시적 성과는 2010년 1월에 발표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 상위 입상에 학교운동부가 기여하고 있으나, 학생선수의 학력저하,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합동으로 내놓은 종합적 학생선수 지원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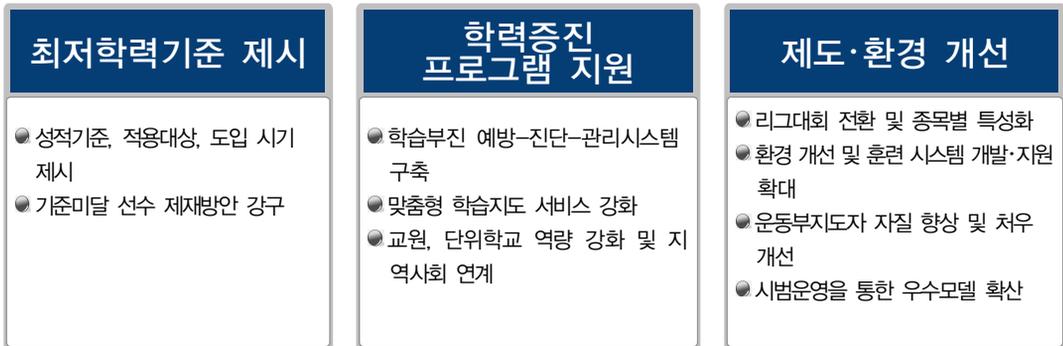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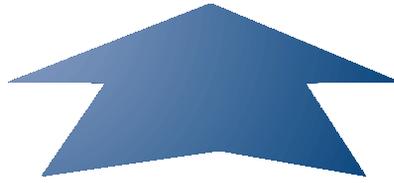
상기계획은 선진형 학생선수 학력향상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및 전인적 체육인재 육성을 추진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저학력 기준제시,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제도 및 환경개선을 3대 하위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 9개의 실천과제를 두고 있다(그림 3-4).

추진 목표

선진형 학생선수 학력향상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및 전인적 체육인재 육성

* 학생선수 정규수업 이수율(%) : 69.9%('07) → 80%('12)

* 학생선수 학부모의 학교운동부활동 만족도 '12년까지 80%이상 도달



학교체육진흥위원회(중앙, 지방) 구성 및 단위학교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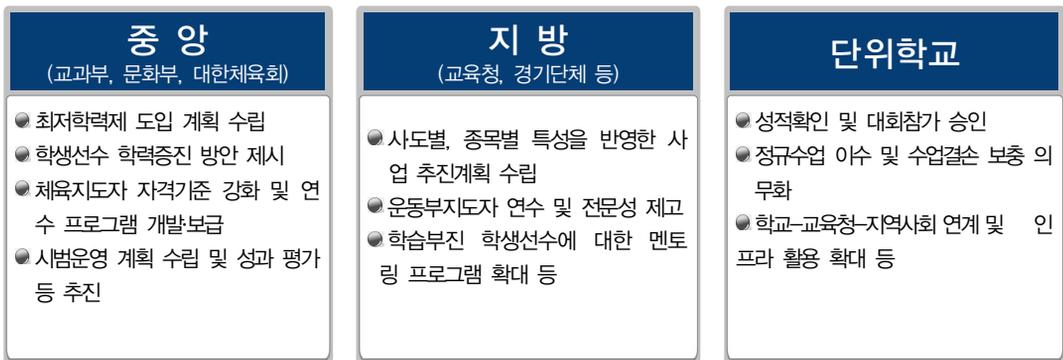


그림 3-4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계획

2.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학생선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제도화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기 위해 실시하며,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여 학생선수가 이에 미달한 경우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0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2011년도에 초등학교 4~6학년까지 시행하며, 2017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단계별로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표 3-26>.

■ 표 3-26 최저학력기준의 단계별 적용 계획

학교급	적용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초	시범	초4~6							
중	시범			중1	중2	중3			
고	시범						고1	고2	고3

이 사업을 통해 학생선수는 단위학교에서 시행하는 1,2 학기말 고사에서 지정된 일부 과목에 대하여, 그 성적이 전교생 평균성과 비교하여 초등학교는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30%에 미치지 못한 경우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1·2 학기말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차기 중간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거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 이상이면 도달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 표 3-27 연도별 최저학력기준미달률 조사 결과

연도	금별	초(4-6)	중(1)	계
'10년	조사인원	617	215	832
	기준미달자 (%)	8 (1.3)	35 (16.3)	43 (5.2)
'11년	조사인원	907	262	1,169
	기준미달자 (%)	7 (0.8)	15 (5.7)	22 (1.9)
'12년	조사인원	2,680	896	3,576
	기준미달자 (%)	23 (0.8)	16 (1.8)	39 (1.1)

학생선수 최저학력 기준 미달률 조사에 의하면 2011년에 조사인원 대비 1.9%에서 2012년에는 1.1%로 0.8%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학교운동부가 있는 일선학교의 정규수업 참여 증가, 학교운동부의 최저학력제에 대한 인식 증가, 학교급별 학업증진프로그램 확대 등 제도적 변화와 학생선수·지도자의 인식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각종 대회의 리그대회 전환사업

각종 리그대회 추진은 그동안 학기 중에 전국단위로 진행되었던 토너먼트대회를 축소하고 주말리그 대회방식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리그대회 전환사업은 2009년 초·중고 축구리그제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축구리그 참여 팀 수가 2008년 대비 140팀(초등학교 113팀, 중학교 11팀, 고등학교 16팀) 증가하여, 총 663개 팀이 3~10월에 권역리그제, 10~11월에 왕중왕전의 일정을 마치면서 성공적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축구리그제는 실제로 2010년 11월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선수 84.2%, 학부모 78.2%, 지도자 79.3%가 만족하고 있어 현장에서 호응을 받으면서 정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결과 학교운동부 현장에서 정규수업 후 훈련하고 대회는 주말·공휴일·방과 후에 개최되는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다.

■ 표 3-28 연도별 초·중고 축구리그 참여팀 수 현황

연도	초			중			고			전체		
	축구부	클럽	소계	축구부	클럽	소계	축구부	클럽	소계	축구부	클럽	계
'08 (리그시작전)	221	0	221	173	0	173	129	0	129	523	0	523
'09	210	56	266	169	6	175	135	0	135	514	62	576
'10	205	78	283	173	19	192	134	0	134	512	97	609
'11	202	102	304	172	14	186	137	0	137	511	116	627
'12	193	141	334	161	23	184	139	6	145	493	170	663
증감 (12-08)	△28	141	113	△12	23	11	10	6	16	△30	170	140

2010년에는 새롭게 고교아이스하키에 리그제가 도입되었다. 총 8개 고교가 참가하고 있는 고교아이스하키리그는 연간 3차 리그와 왕중왕전을 실시하여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는 동시에 학업병행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2011년에는 고등학교 야구도 주말리그로 전환되었고, 2012년에는 8개 권역 53개 팀으로 구성하여 전후기로 분리하여 3월에서 8월까지 총 372계임을 소화했다. 전기리그는 3월에서 6월 사이에 치러지며 동일권역별리그와 35개 팀으로 왕중왕전이 토너먼트로 열렸다. 후기리그는 6월~8월간에 행해지며, 권역별 인터리그와 후반기 왕중왕전이 열렸다.

■ 표 3-29 2012년도 고등학교 야구 주말리그 참여팀의 리그별 구성

구분	1	2	3	4	5	6	7
서울 A	경동고	신일고	성남고	선린인터넷고	경기고	덕수고	배명고
서울 B	서울고	청원고	중앙고	장충고	휘문고	충암고	배재고
경상 A	제주고	경남고	개성고	울산공고	부산공고	부산고	부경고
경상 B	용마고	대구고	김해고	상원고	포철공고	마산고	경북고
전라권	군산상고	동성고	효천고	광주일고	진흥고	전주고	화순고
중부권	북일고	세광고	청주고	공주고	충주성심학교	대전고	
경기권	부천고	안산공고	유신고	인창고	야탑고	충훈고	
강인권	설악고	동산고	인천고	원주고	제물포고	강릉고	

※ 경상권 A : 부산, 울산, 제주 / 경상권 B : 대구, 경남, 경북 / 전라권 : 광주, 전남, 전북 / 중부권 : 대전, 충남, 충북 / 강인권 : 인천, 강원

4.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학력증진 방안 사업

학생선수의 학습권보호 및 학력증진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는 모든 학생선수가 정규수업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내 시설이 없어 정규수업 후 운동이 불가능한 빙상, 조정, 골프 등 종목의 경우, 현장체험학습 계획 등으로 학교장 결재 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2,3학년)의 경우 예·체능계열 별도 반을 편성·운영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위 학교별 학생선수 학업성적 관리 대책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초학력부진아반’에 성적저하 학생선수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수업결손에 대한 수업보충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별 학생선수 학습도우미, 대학생 멘

토링제 등을 통해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에 대한 학생 학습도우미(동료, 또래)에 대한 봉사활동시간 인정하고 있으며, 운동부 지도교사가 봉사활동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대학생 멘토링제 등 순회 학습도우미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 표 3-30 2012년도 시도별 학생선수 기초학력 프로그램 실시현황(12. 8월)

시도	학교 조치	교육청 조치
서울	- 학교단위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학교 참여, 동행프로젝트 활용 숙제 도와주기, 공부방 학습지원 등 실시	- 대학생 동행(동행행복 도우미) 프로젝트(2,600백만원) 운영 - 전반기 학교운동부 컨설팅 실시
부산	- 담임 보충지도 및 학생 학습도우미, 대학생 멘토링 등 학교자체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 학교체육비본방향에 관련 규정 명시, 체육부장 연수를 통한 규정 안내, 단위학교별 방과후학교 운영, 운동선수 학력증진 멘토링사업, 학교방문 컨설팅 실시, 정상수업 이수 의무화 지속추진
대구	- 시험으로 인한 학습 결손 시 보충학습 실시 - 담임교사 주도 책임지도제 실시	- 학교 추진상황 점검
인천	- 운동부 방과 후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대교, 웅진씽크유, 능률교육) - 자기주도 학습 및 복습지도	- 학생선수 학력향상을 위한 인터넷 화상수업 지원(297백만원) - 방과 후 미도달 과목 지도권장 및 점검 실시
광주	- 단위학교 별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초 22교, 중 26교)	-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계획 안내
대전	- 공부하는 운동선수 방과 후 학교 수업지도(총 28교, 주 4일 8시간) - 단위학교 별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 학생선수 방과 후 멘토링제를 위한 강사지원(1,198백만원) - 교육지원청 단위 학기별 현장점검 실시
울산	- 학습지/EBS 활용 가정학습 - 대학생멘토링을 통한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 학생선수 학력증진을 위한 학습 길라잡이 제작·배부 - 특별학급 운영경비 지원(1회 2만원) - 2학기 중간고사 후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결과 보고 조치
경기	- 담임교사 책임 방과 후 보충 학습지도, 학습도우미 운영, 기초학력 증진반 운영, 하계·동계 방학을 이용한 과제물 제출(수업결손 조치사항)	- 단위학교 제출 시행계획 점검 및 자기주도적 보충 학습 실시 권장
강원	- 또래학습도우미의 과외시간 보장, 학력증진을 위한 기초반 운영, 학기 및 방학 중 담임교사 보충지도	-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권장
충북	- 담임교사 보충지도 및 학습지 활용, 학생 학습도우미 운영 등	- 대학출전으로 인해 수업결손 시 익일 담임교사 임장지도(아침시간 활용) - 방학 중 대학생 멘토링 실시
충남	- 학력미도달 학생선수 대상 특별 보충과정 운영	-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해 특별보충과정 운영비 지원(44백만원)
전북	- 학력미도달 학생선수 대상 방과 후 학력증진 프로그램 60시간 운영	-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계획 안내

전남	- 교과별 필수 항목 추출지도 및 기초 기본학급 편성 지도, 학생학습 도우미, 결손수업 보충학습 실시	- 학력증진 프로그램 안내
경북	- 수준별 방과 후 교과수업, 방학과제물 부여, 보충수업 실시, 대학생 멘토링, 사이버 수업 등	- 단위학교 조치사항 지도 점검
경남	- 미도달 교과 보충지도, 방과 후 담임교사와 보충학습, 인턴교사 활용지도	- 담임교사 지도 철저 안내 및 학력증진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제주	- 과목별 특별 보충학습 실시, 방학중 대학생 멘토링 실시, 사이버 학습, 학생 학습도우미 운영 등	-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5. 학교운동부 지원사업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은 우수선수 발굴·육성의 근간인 학교운동부를 지원·육성하여 우수선수 저변확대 및 엘리트 체육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16개 시도교육청별로 동·하계 올림픽대회 종목인 33개 종목의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지원되었으나, 선수 개인에 대한 실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1년부터 대상자를 선수개인으로 전환하였다. 2012년에는 다시 팀 단위의 운동부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도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은 17개 시도교육청(세종특별자치교육청 포함)의 협조로 총 353개 학교운동부에 용품을 지원하였다. 규모에 따라 2~5명 소속운동부에 2백만원, 6~14명 소속 운동부에 4백만원, 15명이상 소속 운동부에 6백만원이 각각 지원되었다.

6.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육성지원 사업

체육계학교 육성지원사업은 전문선수 양성의 산실인 체육계학교의 훈련여건 개선 지원을 통하여 우수선수의 체계적 육성과 경기력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19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12년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지원 예산은 <표 4-31>과 같다. 2012년 현재 총 16억 1,678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연구학교운영비 1천만 원, 대회개최비 8천만원, 훈련비 9억 1,884만원 등 으로 구분된다.

■ 표 3-31 2012년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지원내역

(단위 : 천원 명, 개)

학 교 명	학생수 (중·고 합계)	'12년 지원 소요예산					비고 (11)
		합 계	연구 학교 운영	대회 개최비	훈련비 (훈련경비, 훈련 용품 등)	훈련시설 · 장비비	
계	4,638	1,616,786	10,000	80,000	918,841	607,945	1,643,240
서울체중·고	578	152,692			99,972	52,720	187,538
부산체육고	302	111,995			70,314	41,681	101,294
대구체육고	183	80,419	10,000		36,452	33,967	66,863
인천체육고	287	97,522			57,167	40,355	94,638
광주체육중·고	488	148,996			97,205	51,791	148,510
대전체육중·고	397	124,553			79,078	45,475	129,952
경기체육중·고	344	116,013			68,521	47,492	117,205
강원체육중·고	305	101,850			60,753	41,097	98,969
충북체육고	255	86,819			50,793	36,026	86,871
충남체육고	219	77,983			43,623	34,360	79,944
전북체육중·고	312	103,492			62,147	41,345	105,836
전남체육중·고	284	95,104			56,570	38,534	179,552
경북체육중·고	331	107,898			65,932	41,966	108,798
경남체육고	251	166,323		80,000	49,997	36,326	89,827
제주남녕고	102	45,127			20,317	24,810	47,443

7. 대학스포츠 정상화 및 활성화 도모

현재 대학스포츠는 일부 인기 구기 종목을 중심으로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 지나친 경기 및 훈련일정 소화 그리고 여전한 학습권 보장 미흡 등의 문제로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창립, 축구·농구·배구 리그제 도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운동부 보유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로서 2010년 7월에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를 모델로 하여 학생선수의 권익과 복지, 학생선수의 학사 운영 관리, 대학스포츠의 경기력 향상 및 대학스포츠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운동부 보유대학 102개중 51%인 52개 대학이 가입되어 있으며, 15개 대학 총장을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학생선수 경기력 향상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 축구, 농구, 배구 종목에 대해 리그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2009년부터 리그제를 실시하고 있는 축구의 경우 2012년에 72개 팀이 참가하여 권역별리그 576경기, 챔피언십 47경기를 포함하여 총 623경기를 실시했으며, 농구는 12개 팀이 참가하여 정규리그 132경기(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각 대학이 22경기를 실시함), 챔피언 결정전 10경기를 포함하여 총 142경기를 실시했다. 한편 배구는 8개팀이 참가하여 전후반기로 분류하여 정규리그 56경기과 챔피언 결정전 12경기를 실시했다.

특히,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발족 3년차인 현재 대학스포츠리그제의 실상과 발전모형 개발, 대학경기지도자 정례 워크숍, 대학농구·배구 기록 시스템 구축,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전국 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 요강책자 발간, 학생선수와 스포츠전공자를 위한 스포츠 취업백서 발간, 대학스포츠 인터넷 TV 운영 및 대학스포츠 블로그 운영 등을 통하여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다만 대학스포츠정상화 측면에서 대학선수의 학습권 보장 확대, 최저학력제 도입을 통한 학력제고 유인 강화 등이 추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5절 학교체육 시설 인프라 확충

학교체육 시설은 학생체육활동의 물적 토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서도 기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중요한 체육인프라로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대표적인 학교체육 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 다목적 체육관 건립, 야간조명등 설치 등이 있다.

1.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다양한 학교 운동장 사업은 학교운동장을 현대화된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사업추진계획을 근거하고 있으며, 2009~2012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5,000억원을 투자하여 총 1,000개교에 조성할 계획이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2009~2012년까지 총 818개를 조성하여 목표대비 81.8%를 달성하였다<표 3-32>. 특히 '12년 교과부는 특별교부금 지원이 종료되어, 시도교육청 자체계획(교육청 70%, 지자체 30% 재정 투여)하에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조성개소수가 감소하였다.

■ 표 3-32 2009~2012년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성과 (개소수)

사업기관 \ 연도	'09	'10	'11	'12	계
교과부	100	88	91	36	315
문화부(공단)	147	103	132	121	503
계 (누계)	247	191 (438)	223 (661)	157 (818)	818

구체적으로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선진화된 운동장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성하고자 하는 운동장의 재질은 잔디(천연인조)

운동장, 우레탄 시설(다목적구장, 트랙 등), 흡운동장(황토, 마사토 등) 등으로 구분된다. 2012년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인조잔디운동장 159개소, 천연잔디운동장 29개소, 흡운동장 27개소를 추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학교수는 2,298개교에 이르렀다<표 3-33>.

■ 표 3-33 2003~2012년도 부문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의 성과(2012. 8월 기준)

시도	인조잔디운동장 조성학교수					천연잔디운동장 조성학교수					흡운동장 조성학교수			
	초	중	고	특수	계	초	중	고	특수	계	김립석	마사토	기타	계
서울	86	74	58	0	218	5	6	9	0	20	0	18	0	18
부산	35	29	36	0	100	1	1	11	4	17	0	3	2	5
대구	39	18	19	0	76	2	1	7	2	12	0	0	2	2
인천	20	7	8	0	35	0	0	1	0	1	0	3	0	3
광주	15	11	19	1	46	0	0	0	0	0	0	0	0	0
대전	18	18	13	1	50	7	2	11	3	23	0	3	0	3
울산	24	20	16	1	61	0	1	5	2	8	0	0	0	0
세종	5	1	1	0	7	0	0	1	0	1	0	0	0	0
경기	138	89	78	4	309	17	9	10	6	42	0	1	0	1
강원	46	22	31	1	100	15	1	8	1	25	0	4	0	4
충북	38	16	17	0	71	6	4	2	2	14	0	2	0	2
충남	41	24	17	0	82	18	5	6	1	30	0	10	0	10
전북	27	11	26	0	64	72	21	19	4	116	0	4	0	4
전남	70	26	22	2	120	34	20	18	2	74	0	10	0	10
경북	62	27	27	1	117	4	3	9	2	18	0	5	0	5
경남	66	32	33	2	133	34	12	20	2	68	0	17	0	17
제주	26	15	8	0	49	70	19	15	3	107	0	0	0	0
합계	756	440	429	13	1,638	285	105	152	34	576	0	80	4	84

2. 다목적 체육관 건립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은 다양한 실내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내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학생·지역주민 공동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09~2012년까지 매년 25개교씩 총 100개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청, 지자체가 1 : 2 : 1 비율로 분담하여 총 1,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표 3-34>.

■ 표 3-34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의 예산소요

(교,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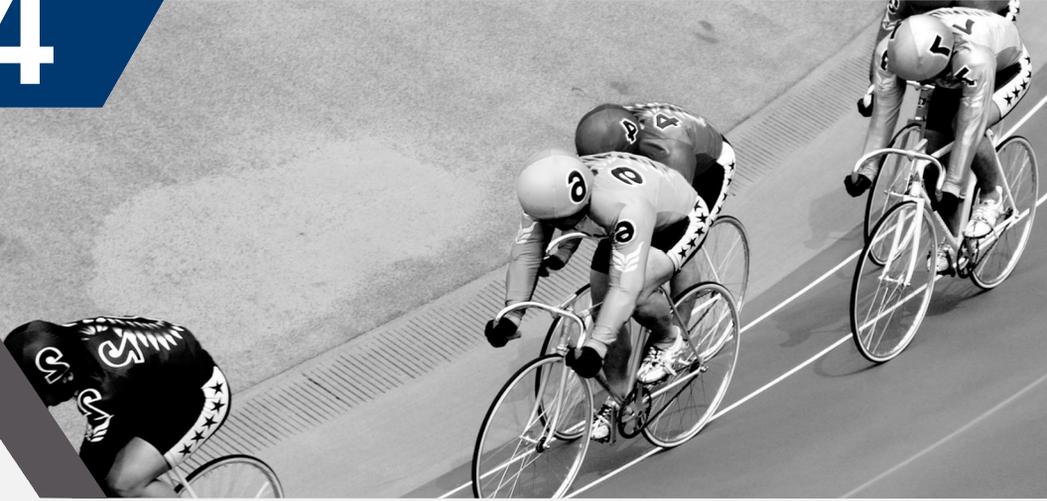
구 분	'09	'10	'11	'12	계	
건립 목표	25	25	25	25	100	
소요예산	계	40,000	40,000	40,000	40,000	160,000(100%)
	문화부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25%)
	교육청	20,000	20,000	20,000	20,000	80,000(50%)
	지자체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25%)

■ 표 3-35 연도별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 현황

(교)

구 분	'09	'10	'11	'12	계
서울		1		1	2
부산		1	1	2	4
대구					
인천		1			1
광주			1	1	2
대전		1	1	1	3
울산					
경기	2	3	3	4	12
강원	2	2	3	2	9
충북	2	1	1	1	5
충남	2	2	3	2	9
전북	3	2	3	2	10
전남	7	6	3	1	17
경북	7	3	3	3	16
경남		3	3	2	8
제주		1			1
합계	25	27	25	22	99

04



전문체육

- ／ 제1절 개관
- ／ 제2절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 ／ 제3절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내대회
운영 및 훈련시설 확충

Section

04 전문체육

제1절 개관

2012년 정부는 체육정책의 목표와 비전으로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라고 발표하였다. 2012년 런던올림픽 5위, 2008년 베이징올림픽 7위, 2010년 밴쿠버동계 올림픽 5위, 광저우아시안게임 2위 및 FIFA U-17 여자월드컵 우승, 2011년 에르주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2위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3위 그리고 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 3위 등 국제무대에서 우수한 성과를 발휘하였다.

또한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들의 훈련여건 개선을 지원, 국제대회 참가지원, 스포츠과학 지원, 우수 지도인력 투입,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동계종목 집중지원 등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의 변화를 꾀하였다.

전문체육은 개인의 경기력 향상 및 기록 달성 등 개인적 성취에서부터 국가를 대표하여 자국의 위상제고, 국민통합 및 자긍심 고취, 생활체육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 도모, 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로 인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하에 꾸준히 발전·성장하고 있다.

2012년 정부의 전문체육을 위한 육성정책과 지원현황은 첫째,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체계(꿈나무선수, 청소년대표선수, 후보선수, 국가대표선수), 둘째,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내대회(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운영 및 훈련시설 현황, 셋째, 스포츠과학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제2절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체육특기자제도, 병역특례제도, 국군체육부대, 태릉·진천·태백선수촌, 주말리그제, 학생선수 학업능력 향상 지원사업 등 정부는 엘리트스포츠지원 정책 중에서도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체육영재와 꿈나무 육성을 통한 우수선수의 조기발굴, 후보선수, 청소년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 육성은 스포츠경쟁력의 근간으로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1. 체육영재 및 지역체육인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육영재는 스포츠과학을 도입하여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기초종목 분야의 선수 수급구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육영재의 선발 및 육성은 전국적으로 지정된 체육영재센터를 통해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 표 4-1 체육영재 육성현황

(단위 : 명)

권역	센터명	육상	수영	체조	계
서울	서울대('09~)	30	10	10	50
	이화여대('10~)	22	11	17	50
	한국체대('09~)	26	12	12	50
경인	인하대('09~)	22	13	15	50
	경희대('11~) * '09~'10 성대	30	10	10	50
	용인대('09~)	29	11	10	50
강원, 충청 강원, 충청	강원대('09~)	10	10	10	30
	충남대('09~)	29	10	11	50
	충북대('11~)	20	10	10	40
전라, 제주	전북대('09~)	17	11	12	40
	조선대('09~)	28	12	10	50
	제주대('10~)	10	10	10	30

권역	센터명	육상	수영	체조	계
경상	경북대('09~)	26	12	12	50
	경남대('11~)	22	10	8	40
	부산대('09~)	25	12	13	50
	안동대('11~)	10	10	10	30
	울산대('12~)	18	16	8	42
총계	17개소	356	174	180	710

※ 출처 : 체육인재육성재단(2012), 내부자료

2009년 11개소 530명, 2010년 13개소 600명, 2011년 16개소 710명, 2012년 현재 17개소 체육영재센터에서 초등학교 2~6학년을 대상으로 KOSTASS(체육영재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육상(374명), 수영(190명), 체조(188명) 등 3개 종목에서 752명을 선발하여 육성하고 있다.

지역체육 인재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시작한 ‘학생선수 통합지원 센터’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전인적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스포츠과학 서비스(진단, 측정, 처방)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생선수의 진로, 학업 및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 3개소 900명, 2012년 현재 5개소 학생선수 통합지원센터에서 997명을 지원하고 있다.

■ 표 4-2 학생선수 통합지원센터 현황

순번	지역	주관사업자	공동사업자	종목	인원
1	대전	대전체육회	충남대	육상,체조,수영,펜싱,테니스,하키(총 6개)	210명
2	전북	전북체육회	전북대	육상,수영,배드민턴,유도,펜싱(총 5개)	250명
3	부산	부산체육회	동아대	육상,체조,수영,레슬링,요트(총 5개)	200명
4	충남	충남체육회	단국대	육상,수영,볼링,배구,농구(총 5개)	187명
5	광주	광주체육회	조선대	육상,체조,태권도,레슬링(총 4개)	200명

※ 출처 : 체육인재육성재단(2012), 내부자료

2. 꿈나무선수

꿈나무선수는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우수선수 저변 확대, 차세대 대표선수 충원 기반확충,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관리 등을 통해 엘리트체육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012년에는 8종목(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핸드볼, 탁구, 유도)을 대상으로 총 370명의 꿈나무선수들을 선발하여 육성하였다.

1) 신인선수 발굴사업

꿈나무선수 발굴사업은 1993년 신인선수 발굴사업으로 시작되어 후보선수 발굴사업과 통합되는 1995년까지 3년 동안 총 9개 종목 1,204명을 선발·육성하였다.

■ 표 4-3 신인선수(꿈나무) 육성사업 추진 현황

연도	종목수	종목현황	인원
1993	3	육상, 수영, 체조	200
1994	8	육상, 수영, 체조, 양궁, 사격, 탁구, 빙상, 스키	485
1995	9	육상, 수영, 체조, 양궁, 사격, 탁구, 빙상, 스키, 배드민턴	519

2) 기본종목 꿈나무선수 육성

가. 개요

꿈나무선수 사업은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풍부한 어린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 과학적 훈련과 관리를 통해 차세대 국가대표선수로 육성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존 사업이었던 신인선수 선발·육성사업의 실효성이 크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부터 ‘꿈나무선수 제도’로 개편되었다. 이에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고 여타 종목 선수확보에 과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받는 육상, 수영, 체조 3개 종목을 대상으로 “기본종목 꿈나무 발굴사업”을 실시하였다. 2003년부터 동계올림픽경기대회를 대비하여 빙상, 스키종목을 추가하였고, 2008년부터 핸드볼, 탁구, 유도를 포함하여 총 8개 종목으로 확대하였다.

나. 꿈나무선수 선발·훈련

① 선발과정

꿈나무선수선발은 종목별로 시도에서 추천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체격(30~50%), 체력(30~40%), 경기력(20~30%) 3개 요인을 종합 측정하고, 점수화한 평가결과와 특성 불안과 집중력 등 심리검사결과를 합산하여 종목별 선발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이상의 절차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4-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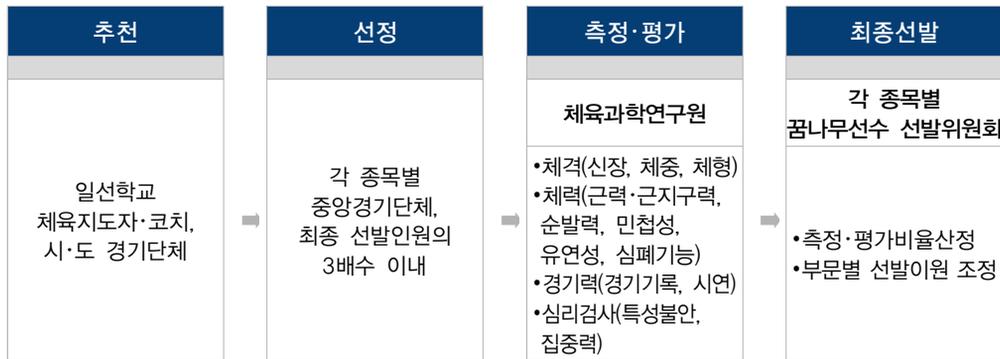


그림 4-1 꿈나무선수 선발 과정

꿈나무선수 선발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1단계는 ‘꿈나무선수 후보자 추천’ 과정으로서 일선학교 체육지도자·체육단체 코치, 스포츠클럽지도자 등이 꿈나무선수 후보자를 해당종목 시도 협회에 추천하고, 시도 협회의 자체평가를 거쳐 중앙경기단체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2단계는 각 종목별 중앙단체가 선발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대상자를 선정하고, 3단계는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선발대상자의 측정·평가가 실시된다. 체육과학연구원은 기초검사, 정밀검사, 심리검사를 통해 선수의 경기력 및 체형(체력)등을 측정하고 종목별, 연령별, 평가 항목별 표준점수 및 가중점수 등을 계산,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이외 해당 종목단체, 대한체육회, 전문가 등과 협의에 의해 단계들이 추진된다. 4단계는 각 종목별 꿈나무선수선발위원회가 해당종목의 꿈나무선수를 최종 확정하는 단계이다. 체육과학연구원의 측정·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각 종목별 꿈나무선발위원회에서 위원 협의를 거쳐 꿈나무선수를 최종 확정한다.

2012년도에는 기존 8개 종목 725명을 측정·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4>와 같다.

■ 표 4-4 2012년 종목별·세부종목별 꿈나무선수 선발 현황(2012 대한체육회 내부자료)

종목	세부 종목	최종 선발인원		측정·평가 참가인원	측정·평가 일정	장소
		기존	신규			
육상	단거리	-	33	211	5.30 - 6.1	대전한밭운동장
	중·장거리	-	30			
	도약	-	29			
	투척	-	28			
	소계	-	120			
수영	경영	11	14	71	5.8 - 5.9	체육과학연구원
	다이빙	3	8			
	싱크로	3	1			
	소계	17	23			
체조	기계(남)	8	5	55	5.15 - 13	체육과학연구원
	기계(여)	8	7			
	리듬	7	5			
	소계	23	17			
빙상	스피드	5	13	97	5.24 - 25	체육과학연구원
	쇼트트랙	10	8			
	피겨	4	10			
	소계	19	31			
스키	크로스컨트리	-	12	76	6.22	체육과학연구원
	스키점프	-	5			
	프리스타일	-	5			
	알파인	-	12			
	스노보드	-	6			
소계	-	40				
핸드볼	남자	-	15	115	5.8 - 6.8	체육과학연구원
	여자	-	15			
	소계	-	30			
탁구	남자	-	15	49	6.7 - 6.8	체육과학연구원
	여자	-	15			
	소계	-	30			
유도	남자	-	12	51	5.10 - 11	체육과학연구원
	여자	-	8			
	소계	-	20			
총계			370	725		

② 훈련 및 관리

2012년도 선발된 꿈나무선수의 훈련관리 프로그램은 동·하계 합숙훈련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다만, 훈련 중 부상과 중도 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충원은 재선발 과정을 거치는데 측정과 평가를 거쳐서 종목별 선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차 순위 선수가 선발된다.

선발된 꿈나무선수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운영의 주요내용은 첫째, 연간 30일 이내의 동하계 합숙 훈련을 지원한다. 둘째, 꿈나무전담지도자 정책연구비로 종목당 1명을 기준으로 9개월 동안 월 500,000원을 지급하여 선수지도에 대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꿈나무선수 합숙 훈련시 상해보험을 가입한다. 넷째, 꿈나무선수 지방순회 지도제도로서 연중 종목별 꿈나무선수 육성 담당지도자가 전국(꿈나무선수 소재지)을 순회하며 선수 개인별 훈련현황 파악 및 지도,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등을 실시한다. 다섯째, 꿈나무선수의 경기력, 체형 등의 개인별 분석 자료를 정리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매년 자료를 축적하여 꿈나무선수 관련 자료의 지속적 보존관리에 기여하는 것이다.

③ 합숙훈련 현황

2012년 한해동안 동하계 방학을 통해 이루어지는 합숙훈련은 해당 종목별로 실시되었으며, 해당 종목별 꿈나무선수 합숙 훈련의 내용은 <표 4-5>와 같다.

■ 표 4-5 2012년 세부종목별 꿈나무선수 합숙훈련 현황(2012 대한체육회 내부자료)

종목	훈련명	기간	장소	참가인원			비고
				선수	지도자	계	
육상	하계합숙훈련	8.3-8.13	충북 보은 종합운동장	120	22	142	-
	동계합숙훈련	12.18-12.27	경북 예천 종합운동장	120	22	142	-
수영	하계합숙훈련	7.21-8.1	경북 김천 실내수영장	40	10	50	-
	동계합숙훈련	12.15-24	경북 김천 실내수영장	40	10	50	-
체조	하계합숙훈련	7.25-8.5	서울 창천초등학교	40	10	50	남
		7.24-8.4	부산 사직체조장				여
		7.23-8.3	용인 이동초등학교				리듬
	동계합숙훈련	12.19-12.30	서울 창천초등학교	40	10	50	남
		12.21-12.30	부산 부산체고				여
		12.21-12.30	용인 이동초등학교				리듬
빙상	하계합숙훈련	7.30 - 8.10	강원 양구	50	10	60	스피드
		7.23 - 8.3	충남 아산				쇼트트랙
		7.16 - 7.27	서울 태릉				피겨
	동계합숙훈련	1.16 - 1.25	서울 태릉	50	10	60	스피드
		12.22 - 12. 31	대전 실내빙상장				쇼트트랙
		12.3 - 12.11	서울 태릉				피겨

종목	훈련명	기간	장소	참가인원			비고
				선수	지도자	계	
스키	하계합숙훈련	9.10 - 9.21	강원 성우리조트	40	10	50	알파인
		7.30 - 8.10	강원 알펜시아				크로스
		7.30 - 8.10	강원 알펜시아				스키점프
		9.10 - 9.21	강원 성우리조트				스노보드
		8.2 - 8.13	경기 지산리조트				프리스타일
	동계합숙훈련	12.18 - 2.27	강원도 횡성	40	10	50	알파인
		12.22 - 12.31	강원도 평창				크로스
		12.8 - 12.17	강원도 평창				스키점프
		12.18 - 12.27	하이원 리조트				스노보드
		12.14 - 12.23	경기도 이천				프리스타일
핸드볼	하계합숙훈련	7.23 - 8.3	경북 구미 선산체육관	30	6	36	-
	동계합숙훈련	12.10 - 12.19	제주도 서귀포	30	6	36	-
탁구	하계합숙훈련	7.27 - 8.7	전남 진도 진도체육관	30	6	36	-
	동계합숙훈련	12.10 - 12.19	전남 진도군	30	6	36	-
유도	하계합숙훈련	8.5 - 8.16	경북 김천	20	6	26	-
	동계합숙훈련	1.2 - 1.11	경남 사천	20	6	26	-
계				700	148	848	-

3. 청소년대표선수

1) 개요

청소년대표선수는 기존 ‘꿈나무선수 - 후보선수 - 국가대표’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선수공급체계를 4단계(‘꿈나무선수 - 청소년대표 - 후보선수 - 국가대표’)로 좀 더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초기만 해도 비인기종목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나 2010년부터 꿈나무선수와 후보선수 간 간극을 채우고, 중간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대표선수 사업이 시작되었다. 대상 종목은 우선 프로종목이 없고, 국내 훈련 및 경기 여건이 열악하며, 올림픽경기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있거나 획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올림픽경기대회나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23개 종목(배드민턴, 복싱, 카누, 사이클, 펜싱, 체조, 핸드볼, 하키, 유도, 근대5종, 조정, 요트, 사격, 수영, 탁구, 테니스, 역도, 레슬링,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이 속한다.

2) 청소년대표선수 선발훈련

가. 현황 및 선발기준

2012 청소년대표 육성사업은 2011년 23개 종목에서 태권도, 양궁, 소프트볼 등 3개 종목을 확대하여 운영하였고, 청소년대표선수 선발육성과 선발기준은 <표 4-6>과 같다.

청소년대표 선발기준은 각 종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령은 14세부터 19세 선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협회가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회나 국제 대회의 입상성적 그리고 각종 전국대회의 입상성적과 기록 및 성장가능성 등을 참고하여 평가·선발하였다.

■ 표 4-6 2012년 청소년대표선수 선발육성 및 선발기준 현황

종목	종목			대상 연령	선수선발		훈련 기간	물리 치료사	
	선수	지도자	계		기준	기간			
배드민턴	40	7	47	14-1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국내·외 대회성적, 신체조건 및 경기력이 우수한 자 중 주니어대표 감독이 추천 • 잠재력, 경기력등을 통합분석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선발 (후보선수 차순위 선발) 	종 목 별	8.12-31		
복싱	22	4	26	15-16세(유소년) 17-18세(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입상성적 • 경기기록, 잠재력분석 및 시도추천 		7.30-8.18		
카누	26	5	31	14-1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전기록순위 또는 소년체전상위 입상자 선발 예정 		7.26-8.14	1	
사이클	34	5	39	15-1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사이클연맹 선발규정에 따름 • 최근3개대회성적순 선발 • 선수선발위원회회의 반영 		7.30-8.18	1	
펜싱	44	7	51	14-17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대회, 국제대회입상 성적 • 신체조건 및 자질 등 성장가능성 • 경기기록 및 잠재력분석기록 		12.6-25	1	
체조	44	8	52	14-1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대회 입상성적 		1월	12.10-30중 (20일)	1
핸드볼	42	6	48	1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대회 입상성적 • 성장가능성이 있는 선수, 포지션 및 신체 조건 이 우수한 선수 		3월	7.25-8.13	
하키	48	7	55	14-17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대회성적, 잠재력 및 장래성이 있는 우수선수 			10.28-11.16	
유도	32	5	37	16-17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경기성적 및 전임지도자점수합산 선발 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11.11-12.1	
근대5종	15	2	17	14-1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대회(회장배, 문체부, 선수권, 체전) 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공인대회 평균기록 - 국내대회 성적 			7.9-28	1
조정	30	6	36	13-1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체전 성적기준우선선발 • 일반대회 성적감안고등학생위주선발 	종	7.20-8.8		

종목	종목			대상 연령	선수선발		훈련 기간	물리 치료사	
	선수	지도자	계		기준	기간			
요트	29	6	35	12-18세	• 국내대회 랭킹 순 선발		7.23-8.11	1	
사격	44	6	50	14-15세	• 4개 공인대회중 상위2개 본선합산 기록순 (문광부장관기, 중고연맹회장기, 봉황기, 경찰청장기)			1	
수영	경영	9	59	14-18세	• 개인종목 기록을 기준으로 선발 (경영, 다이빙, 싱크로나이즈)		7.15-8.3		
	수구				• 포지션별 평가를 기준으로 선발(수구)				
탁구	30	5	35	만 15세 이하	• 주니어상비군 선발 성적순		6.26-7.15		
테니스	12	5	17	14-16세	• 국내랭킹+국제랭킹 순으로 선발 • 가능성고려 주니어위원회 추천		8.3-22	1	
역도	30	5	35	14-18세	• 전국대회기록 및 잠재력이 있는 선수 선발 (후보선수 차순위 선발)		7.22-8.10	1	
레슬링	42	7	49	15세-16세	• 2011회장기대회 및 2010경기실적을 평가하여 선발		10.29-11.17		
빙상	스피드	40	6	46	14-18세	• 전국대회성적 및 해당대회 랭킹순 (후보선수와 중복되지 않는 선수)	7.23-8.11	1월	
	쇼트트랙								7.23-8.11
	파겨								8.14-18, 8.20-9.3
스키	알파인	43	9	52	14-17세	• 선수강화 위원회 회의	5.7-26	3월	
	크로스 컨트리								7.7-26
	쇼트트랙								5.7-26
	스노보드								5.10-29
	프리 스타일								5.7-26
아이스하키	23	4	27	14-16세	• 경기력(게임운영능력, 각 포지션별 대처능력, 스피드 및 파워) 우수선수		7.23-8.11	1	
바이애슬론	18	4	22	14-18세	• 국제 및 국내대회 성적합산(해당년도시즌) • 현재경기기록 및 잠재력 분석기록 등 (후보선수와 중복되지 않도록 연령예정)		7.23-8.11	1	
컬링	10	3	13	만21세 이하	• 한국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 선발전		10.4-13, 12.22-31		
태권도	48	5	53	14-16세	• 최근 1년간 전국대회 입상성적 기준으로 우수선수		7.6-25		
양궁	24	4	28	14-16세	• 전국대회 상위자 및 향후 발전가능성 있는 우수선수		10.2-9, 10.18-26		
소프트볼	17	3	20	14-18	• 경기력 향상위원회 회의		7.26-8.14		
계	837	143	980					12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2)

나. 청소년대표선수 훈련

청소년대표선수를 위한 훈련은 동·하계 합숙훈련으로 구분된다. 동·하계 합숙훈련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우수 선수층의 저변확대 및 엘리트체육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대표선수 결원 시 충원이 가능한 경기력을 상시 보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청소년 대표선수들의 훈련기간은 26개 종목별 방학을 이용하여 약 20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단체에 따라 동계 또는 하계로 정하여 한 번 실시하고 있어 일회성 단기 훈련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합숙훈련기간 동안 지원되는 훈련비는 <표 4-7>과 같다.

한편 청소년대표선수 사업은 스포츠선진국 선수들과의 실전경험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과 자신감 배양, 국제대회 참가와 합동훈련, 기술개발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국제 경기력과 각국의 전력탐색 등 외국의 스포츠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외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표 4-7 2012년 청소년대표선수 동·하계 합숙훈련 지원내용

구분	항목	내용
훈련비	숙박비	1인 1박 22,000원
	식비, 간식비	1인 1일 23,000원
	지도자 수당	1인 1일 100,000원
	훈련복 구입	1인당 200,000원 내외
	훈련용구비	1인당 100,000원
	시설 사용료	1인/1일 5,000원
	약품 구입비	1인당 5,000원
	지도자 활동비	1인당 30,000원
	목욕비	1인당 20,000원
	현수막	1세부종목당 200,000원
	스포츠상해보험	1인당 20,000원
	교통비	1인당 40,000원
	강습비	1세부종목당 200,000원

2012년 현재 20개 경기단체에서는 청소년 대표선수들을 대상으로 각 종목별로 20명 내외로 국외전지훈련 선수를 배정하도록 하여 10~15일 이내로 국제경쟁력이 입증된 메달 획득 가능 종목에 우선지원(유도, 역도, 레슬링 등)하였다.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정부에서는 동계종목 활성화를 위해 전년 보다 많은 동계종목(바이애슬론, 빙상(스피드), 컬링, 아이스하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수정예 유망주에 대한 집중 육성으로 특성화 훈련지원(사이클), 단체종목은 전년(순환배정)과 달리 하키, 핸드볼 등을 지원

하고 있고, 올림픽 경기대회 많은 메달을 획득한 종목으로 향후 장기전략 육성종목의 경우 우선지원(조정, 카누, 요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4-8>과 같다.

■ 표 4-8 2012년 청소년대표선수 국외전지훈련 현황(대한체육회 내부자료)

종목	인원(임원, 선수)	기간	장소	비고
사이클	6(1/5)	10.24~12.22	스위스 애글르	
핸드볼	15(3/12)	6.25~7.9	스페인/스웨덴	
요트	10(3/7)	7.11~7.21	아일랜드 더블린	
아이스하키	28(5/23)	8.17~8.31	일본 아오모리	
유도	19(2/10)	10.19~11.1	중국 북경	
스키	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11(4/7)	7.12~8.3	프랑스 틴느
			10.30~11.13	러시아 마가단
			7.12~8.3	프랑스 틴느
			7.12~8.3	프랑스 틴느
근대5종	8(2/6)	9.14~9.24	헝가리 부다페스트	
역도	14(4/10)	11.4~11.14	미얀마 양곤	
빙상(쇼트트랙)	17(2/15)	8.19~9.1	중국 장춘	
배드민턴	15(3/12)	10.1~10.15	중국 쑤저우/광둥	
탁구	15(2/13)	9.7~9.17	대만 타이페이	
수영	15(2/13)	11.6~11.20	괌	
카누	13(2/11)	11.26~12.10	호주 애들레이드	
펜싱	27(3/24)	11.17~11.28	홍콩	
테니스	14(3/11)	12.3~12.16	태국	
컬링	6(1/5)	11.17~12.16	캐나다 밴쿠버	
하키	24(4/20)	11.21~12.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레슬링	19(3/16)	12.11~12.25	기르기스탄(비스켓)	
체조	15(3/12)	12.31~1.9	헝가리 부다페스트	
바이애슬론	17(3/14)	11.23~12.12	일본 삿포로	

4. 후보 선수

1) 후보 선수 관리운영 개요

후보 선수 육성사업의 목적은 첫째, 잠재력 있는 우수인재를 조기에 육성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수선수 공급을 원활히 하고 둘째, 국가대표선수와의 상

호경쟁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며 셋째, 국가대표선수 결원시 우수한 기량을 갖춘 후보 선수를 즉시 대표선수로 충원하는 등 국가대표선수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후보 선수 육성사업은 1982년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잠재력이 우수한 선수 4,359명을 선발하는 것이 시초가 되었고, 1983년부터 각 경기단체가 매년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에 이어 변동 없이 2012년에도 28종목에 1,300명의 후보 선수를 육성하였다.

■ 표 4-9 후보 선수 발굴 및 최종선발 인원 수

연도별	발굴	탈락	(육성인원) 최종선발	대표선수배출	비율(%)
2005	1,300	-	1,300	104	8
2006	1,300	-	1,300	62	4.8
2007	1,300	-	1,300	108	8
2008	1,300	-	1,300	115	8.8
2009	1,300	-	1,300	64	4.9
2010	1,300	-	1,300	82	6.3
2011	1,300	-	1,300	67	5.1
2012	1,300	-	1,300	118	9.1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2)

<표 4-9>에서 대표선수 배출비율은 당해 연도에 대표선수 결원이 발생하거나 일정요건을 충족한 후보 선수가 대표선수로 발탁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아래 <표 4-10>은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대표선수 중 후보선수 출신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후보 선수는 1,300명이며, 국가대표선수는 796명, 후보선수출신 국가대표는 726명으로 91.2%에 해당되었다.

■ 표 4-10 국가대표선수 중 후보 선수 출신비율(2012년 기준)

종목	후보선수 수	대표선수 수	후보선수출신 대표	비 후보선수출신 대표
육상	135	17	13(76.47%)	4
수영	118	47	45(95.74%)	2
체조	60	36	34(94.40%)	2
복싱	30	23	21(93.00%)	2
레슬링	50	34	34(100%)	0
역도	30	22	18(81.80%)	4
유도	48	40	36(90.00%)	4

종목	후보선수 수	대표선수 수	후보선수출신 대표	비 후보선수출신 대표
태권도	48	25	24(96.00%)	1
양궁	40	16	14(87.50%)	2
사격	84	64	58(90.62%)	6
배구	36	28	24(85.71%)	4
핸드볼	48	36	32(88.88%)	4
하키	48	40	39(97.50%)	1
탁구	30	32	28(87.50%)	4
근대5종	15	14	12(85.71%)	2
펜싱	48	44	37(84.09%)	7
테니스	24	12	11(91.67%)	1
사이클	40	21	20(95.24%)	1
조정	30	20	19(95.00%)	1
요트	29	18	17(94.44%)	1
카누	26	13	11(84.62%)	2
배드민턴	60	48	42(87.50%)	6
축구	36	22	20(90.91%)	2
소프트볼	17	16	13(81.25%)	3
아이스하키	25	22	21(95.45%)	1
바이애슬론	18	15	12(100%)	0
빙상	78	41	38(92.68%)	3
스키	49	30	30(100%)	0
합계	1,251	766	726(91.20%)	70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2)

2) 후보선수

후보선수를 육성하는 종목은 하계 24종목, 동계 4종목으로 총 28종목이다. 후보선수의 훈련육성과 관련된 세부사업은 첫째, 후보선수가 소속된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에 훈련용품 구입비·대회참가비 등의 지원 둘째, 동·하계 합숙훈련지원 사업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집중적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평시 훈련 및 경기력 향상 정도 등을 평가 셋째, 국외전지훈련 지원사업으로 아시아경기대회 및 올림픽경기대회에 대비하여 후보선수 중 우수선수를 경기단체별로 선발하여 전임 및 전문지도자에 의한 기술훈련과 해외훈련을 통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 표 4-11 2012년 후보선수 훈련종목과 정원(대한체육회 내부자료)

(단위 : 명)

종 목	선 수			지도자	계	비 고
	남	여	계			
육 상	단·허들	19	14	33	5	38
	중장거리	25	13	38	5	43
	도약·혼성	19	16	35	5	40
	투 척	16	13	29	4	33
수 영	경 영	33	33	66	6	72
	다이빙	14	13	27	3	30
	수 구	15	-	15	2	17
	싱크로	-	10	10	2	12
체 조	기 계	27	21	48	6	54
	리 듬	-	12	12	2	14
레슬링	자유형	21	8	29	3	32
	그레코	21	-	21	2	23
복 싱	30	-	30	4	34	
역 도	18	12	30	4	34	
유 도	24	24	48	4	52	
양 궁	20	20	40	4	44	
사 격	49	35	84	10	94	
배 구	18	18	36	4	40	
핸 드 볼	24	24	48	4	52	
하 키	24	24	48	4	52	
탁 구	15	15	30	4	34	
펜 싱	24	24	48	5	53	
테 니 스	12	12	24	4	28	
사 이 클	25	15	40	6	46	
조 정	17	13	30	5	35	
요 트	25	4	29	4	33	
카 누	18	8	26	4	30	
소프트볼	-	17	17	2	19	
배드민턴	30	30	60	6	66	
태 권 도	24	24	48	4	52	
근 대 5 종	10	5	15	2	17	
축 구	-	36	36	3	39	
아이스하키	25	-	25	3	28	
빙 상	스피드	15	15	30	4	34
	피겨	3	9	12	2	14
	쇼트랙	24	12	36	4	40

종 목	선 수			지도자	계	비 고
	남	여	계			
바이애슬론	12	6	18	2	20	
스 키	알파인	13	5	18	2	20
	크로스	11	8	19	2	21
	스키점프	4	-	4	1	5
	스노우보드	2	2	4	1	5
	프리스타일	3	1	4	-	4
총 계	729	571	1,300	153	1,453	

■ 표 4-12 2012년 후보선수의 훈련육성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지원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기금보조 사업	동하계 합숙훈련	3,668,079(훈련관리 포함)
	국외전지훈련	478,054
	전임지도자 운영	1,801,743
계		5,947,876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

3) 전임지도자 제도 운영

1983년부터 시작된 전임지도자 제도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한체육회에 13종목 20명의 지도자를 배치하여 종목별로 월 20일 이상 전국단위 순회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 제도는 1985년 대한체육회 회장이 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임기 1년인 전임지도자를 임명하면서 사업이 본격화 되었으며, 2005년부터 이들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처우를 보장해주는 각종 조치가 이루어졌다. 2009년부터는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였고, 임금도 대폭 인상되었다.

전임지도자의 주요업무는 첫째, 후보선수의 발굴·추천 및 선발관리 둘째, 후보선수 동하계 합숙훈련과 국외훈련 계획 수립 및 추진·평가 관리 셋째, 후보선수 소재 지방순회 지도 넷째, 후보선수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경기력 향상도 평가 및 자료관리 다섯째, 대표선수 훈련지원 여섯째, 연간 및 월별 업무활동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일곱째, 각종 강습회 및 세미나 참석 여덟째, 기타 우수선수의 양성 및 경기력 향상에 있다. 2012년 12월 말 기준 26종목에 34명의 전임지도자가 임명되었으며 임용되지 못한 종목은 싱크로,

사이클, 테니스, 탁구, 배구, 빙상 등 6종목이다.

이들 후보선수 전임지도자들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유망 엘리트 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가대표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종목에서 공금유용 등 회계문란을 야기한 사례가 있고, 전임지도자의 지도능력이 검증되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전임지도자의 지도 및 관리업적 등을 연 1회, 5등급(S등급: 15% A등급: 15%, B등급: 25%, C등급: 15%, D등급: 8%)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했다. 이는 후보선수 전임지도자의 지도 및 관리업적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 시 평가결과를 반영(최하위 등급인 D 등급을 4년 임기 중 3회 이상 기록했을 시 재임용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임지도자의 자기개발을 유도하고자 하고 전임지도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표 4-13 2012년 전임지도자 종목과 정원

(단위 : 명)

종 목		정 원	현 원	종 목	정 원	현 원
육 상	단거리	1	1	하 키	1	1
	중장거리	1	1	조 정	1	1
	도 약	1	1	사 이 클	1	-
	투 척	1	1	테 니 스	1	-
수 영	경 영	1	1	탁 구	1	-
	다이빙	1	1	배 구	1	-
	싱크로	1	-	배드민턴	1	1
체 조	남 자	1	1	펜 싱	1	1
	여 자	1	1	요 트	1	1
레슬링	자유형	1	1	카 누	1	1
	그레코	1	1	근대5종	1	1
복 싱	1	1	여자축구	1	1	
유 도	1	1	빙 상	1	-	
역 도	1	1	스 키	1	1	
양 궁	1	1	아이스하키	1	1	
사 격	공기총	1	1	바이애슬론	1	1
	화약총	1	1	계 (26종목)	34	32
핸드볼	1	1				

5. 국가대표선수

1) 국가대표선수 훈련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사업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위선양과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는 중점지원종목의 경우 엔트리의 1.5~2배수로 선발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의 경우에는 엔트리 범위 내에서 적정인원을 책정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국가대표 코치는 훈련에 필요한 적정인원으로 하며 세부종목 수 및 종목 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하였다. 국가대표선수 훈련규모는 <표 4-14>, <표 4-15>, <표 4-16>과 같다.

■ 표 4-14 2012년 국가대표선수 훈련규모(대한체육회 내부자료)

(단위 : 명)

구분	종목 수	인원				계
		코치	선수			
			남	여	소계	
하계종목	37	203	568	456	1,024	1,227
동계종목	7	39	104	79	183	222
계	44	242	672	535	1,207	1,449

■ 표 4-15 연도별 국가대표선수 훈련규모(대한체육회 내부자료)

(단위 : 명)

연도	종목 수		인원			계	총계
			코치	남자선수	여자선수		
2005	하계	39	143	521	378	1,042	1,203
	동계	6	20	83	58	161	
2006	하계	38	157	532	356	1,045	1,175
	동계	6	19	53	58	130	
2007	하계	38	156	510	354	1,020	1,171
	동계	6	21	74	56	151	
2008	하계	39	157	542	327	1,026	1,187
	동계	6	23	77	61	161	
2009	하계	39	173	611	410	1,194	1,365
	동계	7	27	85	59	171	
2010	하계	39	152	463	354	969	1,137
	동계	7	25	85	58	168	
2011	하계	35	171	565	431	1,167	1,338
	동계	7	24	86	61	171	
2012	하계	37	203	568	456	1,227	1,449
	동계	7	39	104	79	222	

■ 표 4-16 국가대표선수 훈련인원(대한체육회 내부자료)

(단위 : 명)

구분	종 목	훈 련 인 원							합계
		선수			코치	트레이너			
		남	여	소계		체력, 심리	물리치료	소계	
하계 종목 (37)	양 궁	8	8	16	5		1	1	22
	육 상	42	35	77	10			0	87
	배드민턴	24	24	48	7		2	2	57
	야 구	24		24	3			0	27
	농 구	12	12	24	4			0	28
	볼 링	8	8	16	4			0	20
	복 싱	20	3	23	4		1	1	28
	카 누	13	4	17	3			0	20
	사 이 클	14	12	26	6	1		1	33
	승 마	12		12	3			0	15
	펜 싱	22	22	44	6		1	1	51
	축 구	20	18	38	4			0	42
	골 프	6	6	12	2			0	14
	체 조	14	22	36	10		2	2	48
	핸 드 볼	24	24	48	6		2	2	56
	하 키	22	22	44	6		2	2	52
	유 도	20	20	40	6		2	2	48
	카 바 디	10	10	20	2			0	22
	공 수 도	7	6	13	3			0	16
	근대 5종	7	7	14	5			0	19
	조 정	10	10	20	3			0	23
	력 비	18	12	30	4			0	34
	요 트	13	5	18	6			0	24
	세팍타크로	12	12	24	4			0	28
	사 격	35	29	64	12		2	2	78
	스 퀴 시	5	5	10	2			0	12
	수 영	37	22	59	10		2	2	71
	탁 구	10	10	20	4		1	1	25
	태 권 도	16	16	32	4		1	1	37
	테 니 스	6	6	12	2			0	14
	트라이애슬론	4	4	8	2			0	10
	배 구	14	14	28	4	2		2	34
	역 도	16	14	30	6		2	2	38
	레 슬 링	28	6	34	8		2	2	44
	우 슈	9	6	15	3			0	18
	정 구	6	6	12	2			0	14
	소프트볼		16	16	2			0	18
소계	37종목	568	456	1,024	177	3	23	26	1,227
동계 종목	빙 상	21	25	46	7		2	2	55
	스 키	33	11	44	13			0	57

구분	종 목	훈 련 인 원							합계
		선수			코치	트레이너			
		남	여	소계		체력, 심리	물리치료	소계	
동계 종목 (7)	아이스하키	22	21	43	4		1	1	48
	바이애슬론	8	8	16	4			0	20
	컬 링	6	6	12	3			0	15
	루 지	4	4	8	2			0	10
	봅슬레이/스켈레톤	10	4	14	2	1		1	17
소계	7종목	104	79	183	35	1	3	4	222
합계	44종목	672	535	1387	212	4	26	30	1,449

국가대표선수 훈련기간은 연간 210일 이내로 1월에서 6월까지의 런던올림픽대회 대비 전문체력 육성 및 기술연마를 하고, 후반기에는 동계종목은 소치올림픽을 대비하고 하계 종목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전문체력 훈련을 기초로 종목별 훈련을 실시하였다. 대표선수 훈련은 태릉선수촌, 진천선수촌 및 태백선수촌에서 실시되는 촌내훈련과 종목별 전용훈련장에서 행해지는 촌외훈련으로 구분되는데, 촌내훈련은 촌내 및 인근지역 훈련시설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촌외훈련은 훈련여건상 불가피한 종목이나 자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국내전지훈련은 태백선수촌에서 하며 특별훈련으로 파트너 훈련, 크로스컨트리 훈련,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 등이 수행되었다. 파트너 훈련은 메달유망종목 및 상대성 훈련이 필요한 종목을 중심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크로스컨트리훈련은 선수촌 입촌 종목을 대상으로 주 1회 실시하며,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은 종목별 특성에 맞는 훈련프로그램 위주이다. 세부 훈련종목은 <표 4-17>과 같다.

■ 표 4-17 국가대표선수 세부 훈련종목(2012년 기준)

구분	종목	종목	
하 계 종 목	올림픽경기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26	양궁, 육상, 배드민턴, 농구, 복싱, 카누, 사이클, 승마, 펜싱, 축구, 체조, 핸드볼, 하키, 유도, 근대5종, 조정, 요트, 사격, 수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배구, 역도, 레슬링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11	야구, 볼링, 골프, 카바디, 공수도, 럭비, 세팍타크로, 스쿼시, 우슈, 정구, 소프트볼
	소 계	37	
동계종목	7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총 계	44	-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2)

2) 경기력향상 지원사업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은 훈련을 통한 실전경험 축적, 외국인 코치 초청을 통한 선진 경기기술 습득, 스포츠선진국에 지도자 파견을 통한 국외 정보수집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가. 국외전지훈련

국외전지훈련은 실전경험을 통한 선진기술의 습득과 상대의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실시되며, 훈련 참가 종목의 임원 및 선수의 엔트리 범위 내에서 참가하게 된다. 국외전지훈련 기간은 메달 획득 유망종목의 경우 연중 2~3회, 1회당 30일 이내이며 기타 종목은 1회 20일 이내이다. 2012년에는 34종목 1,308명(임원 329명, 선수 979명)이 참가하였다.

■ 표 4-18 연도별 국가대표 국외전지훈련 및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종목수 (세부종목)	인원			지원금액		
		계	임원	선수	계	국고	기금
2005	14(29)	376	67	309	964,025	964,025	-
2006	26(57)	909	181	728	2,357,304	2,357,304	-
2007	27(56)	1,375	252	1,233	929,398	3,929,398	-
2008	33(94)	1,344	260	1,084	4,321,300	2,016,084	2,305,246
2009	29(74)	1,063	212	851	3,212,547	359,136	2,853,411
2010	34(55)	1,052	207	845	2,905,821	456,263	2,449,558
2011	31(91)	1,216	263	953	3,856,329	624,026	3,232,303
2012	34(97)	1,308	329	979	4,328,338	778,180	3,550,158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2012)

나. 외국인코치 초청사업

외국인코치 초청사업은 스포츠선진국의 경기기술 습득 및 취약한 전술전략 습득을 목적으로 1982년부터 도입되었다. 대상종목은 메달획득 유망종목 및 경기력 취약종목, 경기력 향상과 지도자 자질향상에 효과가 큰 종목,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이다. 초청대상 외국인 코치는 세계 정상급 선수경력보유자, 세계 정상급 선수지도 유경험자 및 지도자인데 2012년도에는 6종목에서 9명이 초청되었다.

■ 표 4-19 외국인코치 초청 현황(대한체육회 내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종목수 (세부종목)	인원수	국가수	지원 금액		
				계	국고	기금
2005	1(1)	1	1	29,944	29,944	-
2006	5(8)	8	7	244,892	244,892	-
2007	6(7)	8	6	203,012	36,321	166,691
2008	4(6)	9	4	192,370	60,786	131,584
2009	4(4)	5	4	203,445	66,007	137,438
2010	4(4)	4	4	237,051	61,522	175,529
2011	5(9)	9	6	212,285	84,877	127,408
2012	6(8)	9	6	305,286	68,968	236,318

다. 지도자 해외연수(국외정보수집) 사업

지도자 해외연수(국외정보수집) 사업은 각종 세미나 및 강습회 참가를 통해 지도자 자질 향상, 주요 국제대회과전 상대국 전력 탐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종목은 메달 획득 유망종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대상지는 종목별 국가대표코치와 훈련필수 지원요원(행정, 지도위원 등)이다. 정보수집 대상은 세계 정상급 국가가 참가하는 국제대회, 각종 국제스포츠세미나 및 강습회 개최지, 체육선진국의 스포츠과학, 훈련지원체계, 훈련시설 등이며 기간은 종목별 10일 이내이다. 2012년에는 24종목 70명이 파견되었다.

■ 표 4-20 연도별 지도자 해외연수사업(국외정보수집) 현황(대한체육회)

(단위 : 천원)

연도별	종목수 (회)	인원수	국가수	지원금액		
				계	국고	기금
2005	19(24)	40	14	92,574	92,574	-
2006	18(21)	35	12	70,446	70,446	-
2007	15(17)	27	13	70,738	70,738	-
2008	18(24)	33	17	87,065	87,065	-
2009	17(23)	42	15	131,948	63,768	68,180
2010	17(24)	44	16	163,340	38,211	125,129
2011	23(51)	60	25	191,177	61,187	129,990
2012	24(46)	70	26	227,733	43,024	184,309

3) 국가대표선수 훈련의 과학적 지원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과학적 훈련지원은 체육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확대·강화되고

있다. 2012년 체육과학연구원은 국가대표선수 지원을 스포츠과학 지원체계 구축(체력단련실 과학적 시스템 도입 등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종목별 훈련장 영상분석 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의무실 강화(선수 개인별 의무·체력 측정카드제 도입, 운동처방실 강화를 통한 운동능력 평가, 재활훈련 기능강화 등), 체육과학연구원과의 연계훈련강화(훈련과 학습의화·스포츠과학 세미나, 스포츠과학교실 등), 국가대표 선발 시 의·과학화 기초자료 작성(연2회 국가대표선수 “체력측정의 날” 운영, 종목별 담당연구원과 체력측정 주기적 실시, 건강검진 의무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2 런던 하계올림픽경기대회에서 메달획득이 유망한 종목 11개를 중점·전략 종목으로 선정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훈련, 체력훈련, 심리훈련을 지원하였다. 기술 지원 훈련은 실시간 기술 분석 프로그램 개발, 기술동작의 즉각적 분석시스템 운영지원 등을 통해 선수 및 팀의 기술 향상을 도모했으며, 종목별 체력측정 및 훈련처방제공, 주기별 체력평가에 의한 향상도 평가지원 등을 통해 체력훈련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기장에서 선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적 요인 진단 연구, 심리 기술 훈련을 실시하였다.

둘째, 스포츠과학 교실운영, 스포츠과학세미나 개최, 연구발표회 등 훈련과학화를 위한 정보제공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도자와 연구원간 공동으로 경기력을 분석하여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선진화된 종목별 특성화 훈련방법을 개발하여 적용시켰다. 종목별 체력진단 평가설명회, 대표팀 전체 스포츠과학교실 운영을 통해 대표팀 코치 및 선수 개인의 스포츠과학에 대한 인식제고, 자율훈련에 대한 동기부여 및 지도자 선수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셋째, 정보분석·제공을 위해 선수의 실전 적응력을 제공하고, 종합적이고 입체적 기술 분석을 통해 선수 및 코치의 기술, 전략 이해도를 증대하였으며 정보분석·관리시스템 강화, 대표팀 동행현지조사 활동 실시, 연구원 해외파견 정보수집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국가대표선수의 과학적 관리를 위해 선수촌 내 의무실 및 물리치료실의 적극적 활용과 강화훈련 참가 전, 건강진단과 영양관리(교육, 상담, 지도)를 지원하였다. 또한 약물복용 검사와 교육을 실시하고, 종목별 팀닥터와 물리치료사를 두어 부상방지와 재활을 돕고 있으며, 종목별 체력강화 훈련과 체력측정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과학적 훈련을 도모하였다.

4) 국가대표선수 복지 개선

가. 편안한 선수촌 환경 조성

대한체육회는 태릉선수촌 입촌선수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훈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수촌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선수들의 심신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챔피언 하우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사회저명인사 및 체육계 인사 또는 오리엔테이션 강사 및 연예인 등을 초청하여 월1회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국가관, 사명감, 자신감을 고취하고, 기본교양을 함양하며 정서순화 및 긴장감 해소를 도모하였다. 셋째, 종교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집회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나. 학생선수 학업증대

학생선수들의 학업손실을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내 거주 학생의 오전 수업 참가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수업결손의 가능성이 높은 지방 중·고교 소속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기 위하여 훈련장 인근 학교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다. 국가대표선수를 위한 지원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선수단의 사기를 고양하기 위하여 대표선수와 코치에 대해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도 선수수당은 1인 1일 40,000원이며 지도자수당은 1인 1월 3,300,000원(무직장 지도자: 4,300,000원, 트레이너: 2,250,000원)이다.

■ 표 4-21 국가대표선수·코치 훈련여건 개선 현황(대한체육회 내부자료)

(단위 : 원)

연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급식(1일)	21,000	24,000	24,000	24,000	26,000	26,000	26,000	26,000	35,000
숙박(1일)	11,000	18,000	18,000	18,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선수수당 (1일)	20,000	25,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40,000
코치수당 (1월)	2,021천 원→ 2,800천 원	3,000천 원	3,300천 원	3,300천 원	3,300천 원	3,300천원 (유직장) 3,800천원(무직장)	3,300천원 (유직장) 3,800천원 (무직장)	3,300천원 (유직장) 3,800천원 (무직장)	3,300천원 (유직장) 4,300천원 (무직장)

제3절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내대회 운영 및 훈련시설 확충

국내체육대회 개최는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며 일반 국민의 체육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동·하계 전국체육대회가 192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개최되어 우수선수 선발과 지방체육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이외에도 국내대회로는 종목별 전국대회, 종목별 시·도대회, 시도별 종합대회, 협회장기, 시·도지사기 대회 등이 있다.

1. 전국체육대회

1) 역사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는 1920년 11월 개최된 전조선야구대회가 시초이고, 1934년 전조선종합경기대회가 전국체육대회의 효시라 할 수 있다. 1948년 조선종합경기대회가 전국체육대회로 개칭되면서 시도 대항제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1950년 제31회 전국체전은 중단되었으나 다음해 제32회 대회는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개최되었다. 1952년 제33회 대회부터 5회에 걸쳐 서울에서 대회가 개최되다가 1957년도 제38회 대회부터 지방순회 개최원칙을 도입하여 지방의 체육시설 확충, 시도민의 체육에 대한 인식보급 향상 등 전국적으로 체육이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갔다. 1966년 제47회 대회부터 매년 대회표어를 채택하다가 제51회 대회에서 채택한 ‘굳센 체력, 알찬 단결, 빛나는 전진’이 이후 계속 사용되었다. 1967년 제48회 대회부터 체전사상 처음으로 카드섹션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1972년 제53회 전국체전부터 초등부와 중학부가 분리되어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별도로 개최되었고, 해외동포선수단이 전국체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재미동포가 최초로 해외동포선수단으로 참가하였

고, 이후 국내외 동포의 성대한 체육제전으로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여 해마다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오랜 시간동안 성장·발전하면서 한국 엘리트스포츠의 주축인 꿈나무들을 선발하는 중추적인 기능과 시·군·구팀이 존속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순위경쟁에 따른 지방도시들의 위화감 조성, 종목간 불균형 육성, 철새 운동선수 증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침해, 심판판정시비, 국민의 무관심 등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2) 제93회 전국체육대회(2012년)

제93회 전국체육대회는 2012년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꿈을 안고 경기로! 손을 잡고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992년 개최 후 20년 만에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된 대회였다. 정식종목 42개와 시범종목 3개 그리고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총 24,159명(선수 18,252명, 임원 5,907명)이 참가하였으며 해외동포선수단은 15개국 993명(선수 487명, 임원 506명)이 참가하였다.

종합시상 1위는 대통령배, 2위는 국무총리배, 3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상을 수여하는데 종합 1위는 경기도(65,955점), 2위는 대구광역시(54,577점), 3위는 서울특별시(54,288점)가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롤러, 역도, 수영 등에서 한국신기록(19개)이 작성되었고, 한국J신기록(10개), 대회신기록(111개), 대회타이(8개)등 총 148개의 신기록이 수립되었다.

특히 제93회 전국체육대회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한 국가대표 선수의 대부분이 참가하여 모처럼 국민들의 관심이 전국체육대회에 집중되었고 메달리스트가 참가하는 경기장에는 관중들의 통제를 해야 하는 등 런던올림픽의 효과가 그대로 이어졌다.

아울러 개최지는 전국체육대회를 계기로 개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대통합을 위해 월드스타 사이의 공연을 개최식에 휘날레로 추진하여 국내 최대의 경기장인 대구스타디움이 거의 만석이 되는 등 대회시작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대회임과 동시에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결합된 대회였다.

■ 표 4-22 연도별 전국체육대회 개최 현황

회수	개최연도	개최지	참가종목	참가인원	순위		
					1위	2위	3위
88회	2007.10. 8-14	광주	41	23,637	경기	서울	광주
89회	2008.10.10-16	전남	42	24,954	경기	서울	전남
90회	2009.10.20-26	대전	44	24,541	경기	서울	대전
91회	2010.10. 6-12	경남	44	23,876	경기	경남	서울
92회	2011.10. 6-12	경기	45	23,871	경기	서울	경남
93회	2012.10.11-17	대구	45	24,159	경기	대구	서울

2. 전국동계체육대회

1) 역사

전국동계체육대회는 1923년 1월 대동강에서 개최된 빙상대회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2년 뒤 조선체육회 주최로 제1회 전조선 빙상경기대회가 개최되었고, 그 밖에 조선학생 빙상경기연맹을 비롯하여 조선빙상경기연맹 등 경기단체에 의해 크고 작은 빙상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한편 스키대회의 효시는 1930년 2월 원산시 신평리 스키장에서 원산체육협회가 주최하였고, 조선체육협회 등의 후원으로 제1회 조선스키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일본인 단체가 중심이 되었다. 광복 이후 1946년 1월 한강특설링크에서 빙상대회는 오늘날의 빙상경기대회로 이어졌다.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링크인 동대문실내링크가 개장되어 1967년 동계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스키를 제외한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 3개 종목 경기를 한자리에서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이후 1986년 제67회 대회부터 빙상대회와 스키대회를 동계대회로 통합하고, 종합체점제를 실시하여 동계 종합대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최근 동계올림픽경기대회에서 보여준 한국성적은 하계올림픽경기대회보다도 그 발전속도가 두드러진다. 90년대부터 시작된 10위권 진입은 1994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경기대회에서 6위, 1998 나가노 동계올림픽경기대회에서 9위,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경기대회에서 7위 그리고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경기대회에서 5위를 차지하면서 하계올림픽경기대회에 이어 동계올림픽경기대회에서의 한국의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동계스포츠의 효자종목인 쇼트트랙에서 배출된 우수선수들과 지도자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한국식 쇼트트랙’을 전파하고 있다.

전국동계체육대회는 태릉선수촌 내 국제스케이트장을 포함한 실내 스케이트장 개장, 10여개에 이르는 스키장 개장, 스키인구의 점진적인 증가 등 시설확충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2018 동계올림픽경기대회 평창유치에 대한 정부와 전 국민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

2) 제93회 전국동계체육대회(2012년)

제93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012년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서울, 강원, 전북에서 총 3,538명(선수 2,383명, 임원 1,155명)이 참가하였는데 전년도보다 25명이 감소하였다. 경기종목은 빙상(스피드,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스키(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컬링 5종목이며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대학부, 일반부로 구분된다.

종합 1위는 경기도(1,316점), 2위는 서울특별시(993.5점), 3위는 강원도(975.5점)가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빙상종목인 쇼트트랙(1개), 스피드스케이팅(38개) 총 39개의 대회신기록이 수립되어 질적 경기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빙상종목에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목별 1위를 보면 빙상종목(서울, 경기), 설상종목(강원), 바이애슬론(전북)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역별 특화종목으로 선수 육성이 잘 이루어졌지만, 수도권과 강원권에만 집중적으로 위치한 동계인프라로 인해 동계종목 선수저변확대 및 일반인들의 참여에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를 앞두고 있는 개최국으로 선수저변확대 및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해 우수선수의 육성 및 동계시설 인프라 확충 등 장기플랜이 요구된다.

■ 표 4-23 연도별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 현황

회수	개최년월일	개최지	참가 종목	참가인원	순위		
					1위	2위	3위
88회	2007. 2.21-24	서울, 경기, 강원, 경북	5	3,293	경기	강원	서울
89회	2008. 2.19-22	서울, 경기, 강원	5	3,381	경기	강원	서울
90회	2009. 2.10-13	서울, 경기, 강원	5	3,434	경기	강원	서울
91회	2010. 2. 2- 5	서울, 강원, 경남, 전북	5	3,572	경기	서울	강원
92회	2011. 2.15-18	서울, 강원, 전북	5	3,563	경기	강원	서울
93회	2012. 2.14-17	서울, 강원, 전북	5	3,538	경기	서울	강원

3. 전국소년체육대회

1) 약사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전국체육대회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개최된 전국 규모의 주니어종합대회이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표어 아래 자·덕·체를 연마하는 전인교육의 무대로 대한체육회가 주관하여 해마다 봄에 거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소년·소녀 체육대회이다. 성장기에 있는 소년·소녀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정신을 고취하며 학교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을 통한 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972년 전국체육대회와 분리되면서 제1회 전국스포츠소년대회로 칭해지다가 1975년 제4회 부산대회 때부터 전국소년체육대회로 개칭되었다. 제1회 서울대회에서는 육상·수영·축구 등 19개 종목이 실시, 제2회 대전대회에서는 중학교부에 사격종목이, 제3회 서울대회에서는 중학교부에 사이클과 궁도종목이 추가되었다. 제12회 대회에서는 경기력 향상과 경기인구의 저변확대라는 취지 아래 각 경기의 세부종목을 대폭 개선하여 초등 학교부 10개 경기를 포함하여 23개 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실시되었다.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사·도간 과열경쟁, 선수혹사, 수업결손, 진로문제 등 대회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종합채점제 폐지(1980~1981), 메달집계 시상(1982), 종합채점제 부활(1983~1988) 등 구조적 개선방안을 단행하였으나 끝내 1989년부터 소년체전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국가체육의 미래와 꿈나무선수 육성을 위한 대회의 개최 여부가 시급하다는 여론에 따라 1992년 다시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4년부터 소년체전은 전국체전을 개최한 사·도에서 이듬해 5월 마지막 주 토요일부터 4일간 개최하고, 개인시상만 실시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2010년 제39회 소년체전에서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5~6월에 열리던 대회를 “방학 중에 개최한다는 지침”에 따라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렸으나, 무더위 속에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 2011년 제40회 소년체전부터는 이전 방식대로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하였다.

그 동안 소년체전은 지방순회개최를 통해 지방의 학교운동부 육성 확대, 우수선수의 조기발굴에 기여한 바 있으나 사·도간 과열경쟁이 심화되고, 정부의 ‘공부하는 운동선수상 정립’과 역행하고 있는 사례들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어 정부와 대한체육회 그리고 소년체전을 둘러싼 관계 기관들은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2012년)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012년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경기도에서 개최되었다. 대한체육회의 주최와 경기도체육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의 주관으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대회 구호아래 16,416명(선수 11,699명, 임원 4,717명)이 참가하였다. 종목 수는 33개 종목으로 진행되었음.

대회신기록은 총 31개로 육상(2), 수영(17), 역도(10), 양궁(2)에서 성과를 얻었다. 특히 체조 여중부에 참가한 윤나래 선수(대구, 원화중 3학년)는 여초부 4학년부터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였고 총20개의 메달(금메달 14, 은메달 4, 동메달 2)을 획득하는 등 우수 꿈나무로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면 우수한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표 4-24 연도별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현황

회수	대회기간	장소	참가인원	순위			종목수 (정식/시범)	비고
				1위	2위	3위		
34	2005. 5.29 - 6. 1	충북	16,524	개인시상			30	-
35	2006. 6.17 - 6.20	울산	16,670	개인시상			30	-
36	2007. 5.26 - 5.29	경북	16,581	개인시상			31	시범종목(1) : 소프트볼
37	2008. 5.31 - 6. 3	광주	16,816	개인시상			30/2	시범종목(2) : 소프트볼, 요트
38	2009. 5.30 - 6. 2	전남	16,988	개인시상			30/3	시범종목(3) : 소프트볼, 요트, 트라이애슬론
39	2010. 8.11 - 8.14	대전	16,998	개인시상			33/3	시범종목(3) : 소프트볼, 요트, 트라이애슬론
40	2011. 5.28 - 5.31	경남	16,879	개인시상			33	시범종목 명칭 삭제
41	2012. 5.26 - 5.29	경기	16,416	개인시상			33	시범종목 명칭 삭제

4. 국가대표 훈련시설

1) 선수촌 현황

국가대표선수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태릉선수촌, 태백선수촌, 진천선수촌, 무주합숙소, 알펜시아리조트가 마련되어 있다.

가. 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은 총 310,696㎡의 부지 위에 연건평 94,195㎡의 각종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 양궁, 역도, 탁구, 필드하키, 농구, 유도, 레슬링, 육상, 수영, 펜싱, 체조, 복싱, 배드민턴, 핸드볼, 태권도, 리듬체조 등 하계올림픽경기대회 종목을 비롯하여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등 동계올림픽경기대회 종목의 선수를 수용하고 있다. 입촌 대상자는 올림픽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종합대회와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예정선수이다.

① 숙소

1996년에 건립된 남성전용 숙소 동은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이루어져 총 301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여성전용 숙소 동은 기존의 올림픽의 집과 외국인 숙소를 철거한 후 2003년에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신축하여 14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여자숙소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기존 태권도장을 철거하고 여자 전용숙소(감래관)를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축하여 27명을 추가 수용하고 있다.

② 체육관

선수촌 내의 체육관은 모두 11개가 있다. 체력단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상 1층의 월계관은 1978년 건립, 2004년 전면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다. 개선관은 기존의 개선관과 연수관을 철거 후 2003년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축한 종합체육관으로 탁구, 역도, 체조, 펜싱, 태권도 등 5종목을 훈련할 수 있다. 탁구, 유도 종목의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승리관은 1973년에 지상 3층으로 건립하였으며, 농구 훈련장으로 이용되는 다목적 체육관은 1983년에 건립,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이다. 경영, 수구, 싱크로나이즈 등의 훈련장인 실내수영장은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1985년에 건립하였다. 특히 육상, 핸드볼, 배드민턴의 훈련을 위해 2000년에 건립한 오륜관은 지상 1층으로 10,102㎡의 규모이다.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등의 훈련을 위해 2005년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실내빙상장을 신축하였다.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1978년에 건립된 필승주체육관은 1층에 리듬체조, 3층에 여자 레슬링 종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필승관은 유도, 레슬링, 복싱, 볼링 훈련을 하고 있으며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규모로 2005년 리모

텔링하여 사용 중이다.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팅의 훈련을 위해 2000년 태릉국제스케이팅장이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건립되었다. 이는 세계 8번째 400m 실내링크이며 국내 유일한 국제규모의 시설로서 동하계 스포츠의 균형적인 발전과 전문선수의 지속적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력증진을 위해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운영하며, 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 학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빙상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③ 옥외시설

태릉선수촌의 옥외시설에는 양궁장, 크로스컨트리코스, 인조잔디구장이 있다. 110 × 50m 규격의 양궁장은 2005년에 새로 단장되어 양궁국가대표선수를 위한 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1986년에 만들어진 크로스컨트리 코스는 입촌선수의 기초체력훈련 용도로도 사용되는데 부상방지를 위해 1.6km × 3m의 규격으로 톱밥이 포설되어 있다. 그리고 육상, 하키의 훈련장소로 사용되는 인조잔디구장은 400m 우레탄 트랙 6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하키 전용훈련장인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다.

④ 부대시설

태릉선수촌의 부대시설로는 선수회관(챔피언 하우스), 행정동, 수위실, 양궁장 부속시설(창고, 사선대)이 있다. 이 가운데 선수회관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규모로 1986년에 건립되었으며 대강당, 음악감상실, 당구장, 노래방 등 위락시설과 소회의실, 임원실, 복카페가 설치되어 있다. 행정업무 공간과 기계실이 있는 행정동은 지상 2층, 지하 2층의 규모이다.

나. 진천선수촌

2011년 10월에 개촌한 진천선수촌(1단계)은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1,041,180㎡의 부지 위에 연면적 56,124㎡의 각종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 사격, 카누, 조정, 테니스, 농구, 배구, 수영, 육상, 야구, 소프트볼, 정구, 핸드볼 등 12개 종목에 걸쳐 350명의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① 숙소

선수숙소인 화랑관은 지상 10층으로 1인실 229실, 2인실 64실로 356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A동은 여자 숙소, B동과 C동은 남자 숙소로 이용되고 있다. 숙소 1층에는 26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있으며, 대형목욕실 및 사우나가 설치되어 있다.

② 실내훈련시설

진천선수촌에는 수영센터, 실내테니스장, 조정/카누장, 실내사격장, 다목적체육관 등 총 5동의 실내훈련시설이 있다. 수영센터는 지하 1층/지상2층 규모로 2m 수심의 50m 경영풀 10레인, 3m 수심의 싱크로나이즈풀(수구), 5m 수심의 다이빙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첨단 시설의 전광판, 음향시설, 영상분석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실내테니스장은 케미컬 코트 4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정/카누장은 에르고메터 등 장비를 갖추고 조정/카누 선수들의 지상훈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실내사격장은 지상2층 규모로 50m, 25m, 10m 사격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표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동계훈련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프레임 설치하여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목적체육관은 체육관 2면으로 구성되어, 배구, 농구, 배드민턴, 핸드볼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③ 실외훈련시설

진천선수촌의 실외훈련시설에는 육상장, 야구/소프트볼장, 테니스/정구장, 클레이사격장, 크로스컨트리코스 등이 있다. 육상장은 400m 6레인, 100m 10레인 규모의 트랙이 있으며, 내부에는 축구, 럭비 등이 가능하도록 천연잔디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별도의 투척필드를 조성하여 창, 투포환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야구 및 소프트볼장은 110m×110m 규모로 전광판과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야간 훈련이 가능하다. 테니스/정구장은 케미컬 6면, 클레이 4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레이사격장은 3사대가 조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크로스컨트리코스는 무이산과 연결된 2.9km 길이의 코스와 내부순환코스인 1.5km 길이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 새벽 운동 및 야간 운동 코스로 활용되고 있다.

④ 지원시설

진천선수촌의 지원시설로는 선수회관, 방문자센터, 파트너하우스, 행정동/체력훈련장

이 있다. 이 가운데 선수회관은 지상 3층 규모로, 2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도서실, 어학실습실, 영화감상실, 노래방, 당구장, 회의실 등이 있다. 방문자센터는 안내센터, 우편취급실, 홍보관 등이 있으며, 방문객은 반드시 안내센터에서 신분증과 방문증을 교환한 후 선수촌으로 들어올 수 있다. 파트너하우스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파트너 훈련을 하는 파트너 선수들이 사용하는 숙소로서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2인실 40실, 4인실 18실, 20인실 2실 등 총 19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행정동/체력훈련장은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사무실, 직원식당, 종합상황실이 있는 행정동과 체력단련장, 스포츠의학실, 스포츠과학실이 있는 체력훈련장으로 구분되며, 종합상황실은 진천선수촌 전기 및 기계 자동제어 시설, CCTV, 출입통제설비 등 모든 시설을 한 곳에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체력단련장은 최신의 체력단련기구 등을 갖추고 있으며, 스포츠의학실은 전문의와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들이 최신의 의학설비를 갖추고 선수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스포츠과학실은 체력 측정, 운동처방 등 선수들의 경기력을 과학적으로 분석, 점검하고 있다.

다. 태백선수촌 및 무주합숙소

① 태백선수촌

태백시 함백산 고지대에 위치한 태백선수촌은 국가대표선수들의 고지대 훈련을 통한 심폐기능 강화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1996년 6월에 개촌되었으며, 6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와 사우나실, 휴게실, 관리동 등의 부속시설을 갖추고 있다. 태백선수촌 훈련시설은 총 면적 32,267m²으로 120평의 간이실내체육관, 400m 우레탄트랙(4레인) 및 운동장이 있으며 육상, 수영, 레슬링, 빙상 등 21개 종목 훈련이 가능하다.

■ 표 4-25 국가대표 선수촌 시설 현황

(태릉선수촌 : 306,153m², 태백분촌 : 61,486m²)

지역	구분	건물명	용도 및 수용	규모	건립연도	
태릉 (20)	숙소 (3)	올림픽의 집	238실	지상4, 지하2(13,906m ²)	1996	
		영광의 집	98실	지상4, 지하1(5,639m ²)	2003	
		감래관	22실	지상3, 지하1(1,877.18m ²)	2008	
	훈련 시설 (13)	월계관	체력단련장		지상1(1,697m ²)	1978
		개선관	체조, 펜싱, 역도, 태권도		지상2, 지하1(7,792m ²)	2003
		승리관	탁구, 유도		지상3(2,075m ²)	1973
		다목적체육관	농구		지상2, 지하1(1,593m ²)	1983
		실내수영장	경영, 수구, 싱크로		지상1, 지하1(2,644m ²)	1985
		오류관	육상, 핸드볼, 배드민턴		지상1(10,102m ²)	2000
		태릉국제스케이팅장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지상3, 지하1(27,067m ²)	2000
		필승주체육관	리듬체조, 레슬링		지상3, 지하1(4,402m ²)	1978
		필승관	유도, 레슬링, 복싱, 볼링		지상2, 지하1(5,056m ²)	2005
		실내빙상장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지상4, 지하1(5,477m ²)	2005
		양궁장	양궁		110×50m	2005
		크로스컨트리	기초체력훈련		1.6km×3m 톱밥포설	1986
		인조잔디구장	육상, 하키, 축구		400m트랙6레인, 인조잔디	1984
	부대 시설 (4)	챔피언하우스	편의시설(영화관, 북카페, 당구장)		지상2, 지하1(2,523m ²)	1986
		행정동	행정업무, 기계실		지상2, 지하2(1,917m ²)	1987
		수위실	선수촌 정문		지상1(31,36m ²)	2003
		양궁장부속시설(사선대)	사대		지상2(408m ²)	2005
태백	시설	숙소, 체육관	68명(17실~4명)	지상2(2,538m ² , 행정동 포함)	1997	
		행정동	-	지상2, 지하1		
무주	숙소	무주합숙소	60명 38평 : 3실×8명 28평 : 4실×6명 19평 : 3실×4명	무주리조트	1997.8 ~ 2022.7	
평창	숙소	동계종목 전용숙소	22평 : 4객실, 33평 : 16객실	알펜시아리조트	2012.5~	

② 무주합숙소

무주합숙소는 국가대표선수의 동계훈련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숙박이 가능한 19평 4인용 3실, 28평형 6인용 4실, 38평형 8인용 3실을 1997년부터 2022년까지 분양받아 스키, 바이애슬론 종목의 훈련에 활용되고 있다.

③ 알펜시아리조트

알펜시아리조트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개최와 선수 저변확대 및 국가대표 선수 등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가대표 전용숙소로 22평 4객실, 33평 16객실을 2012년에 확보하여 동계종목 국가대표선수들의 훈련에 활용되고 있다.

2) 선수촌 훈련시설 확충 지원

태릉선수촌은 시설의 노후화로 훈련시설을 현대화·첨단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 노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월계관 증축 및 보수, 대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스탠드 조성, 선수회관 내부 보수 등 기존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선수들의 훈련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제스케이트장, 오륜관, 개선관, 실내빙상장, 필승관 등의 신규시설을 확충하였다.

가. 기존시설의 개보수(2012년)

기존시설의 개보수는 노후시설물에 대한 경제적 유지를 도모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선수와 코치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노후시설물을 우선적으로 부분 개·보수하였는데 연도별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4-26 국가대표 선수촌 훈련시설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계	9,914	10,539	7,894	11,945	9,755	2,092	1,700	4,937	1,022	1,100	1,400	10,650
	국고	9,914	10,539	7,894	11,945	9,755	2,092	1,700	2,500	1,022	1,100	1,400	0
	기금	0	0	0	0	0	0	0	2,437	0	0	0	1,200
1.기존시설 개보수	국고	1,305	834	1,293	3,445	694	2,092	1,700	1,500	658	1,100	1,400	0
	기금	0	0	0	0	0	0	0	0	0	0	0	1,200
2.신규시설 확충	소계	8,609	9,705	6,601	8,500	9,061	0	0	3,437	364	0	0	9,450
	국고	8,609	9,705	6,601	8,500	9,061	0	0	1,000	364	0	0	0
	기금	0	0	0	0	0	0	0	2,437	0	0	0	9,450

나. 신규시설의 확충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촌 내 노후시설 철거 후 현대식 훈련시설을 도입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에 대한 연도별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4-27 국가대표 선수촌 연도별 시설 확충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내용	금액
2003	• 종합체육관 건립	3,070
	• 실내빙상경기장 신축	2,439
	• 필승보조체육관 리모델링	1,000
소계	-	6,509
2004	• 실내빙상경기장 신축	5,000
	• 필승보조체육관 리모델링	3,500
소계	-	8,500
2005	• 실내빙상경기장 신축	4,561
	• 필승보조체육관 리모델링	4,500
소계	-	9,061
2006	• 선수회관 리모델링	750
2007	• 선수회관 외장공사	345
	• 올림픽의 집 화장실 리모델링	135
	• 필승기숙사(A,B,C)동 철거 후 부지정리	452
소계	-	932
2008	• 감래관 보수 및 증축공사	2,437
	• 태백선수촌 다목적 체육관 건립	1,000
소계	-	3,437
2009	• 올림픽의 집 환경개선	364
2010	• 국제스케이트장 냉동설비보강 및 전기승압공사	267
2011	• 국제스케이트장 링크복도 및 환경개선	300
2012	• 국제스케이트장 재정비(리모델링공사)	9,450

다. 진천선수촌 2단계 조성

대한체육회는 현 태릉선수촌의 노후화와 국가대표 선수 수용한계를 극복하고, 훈련시설의 현대화 및 과학화로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산 35-2번지 일원에 진천선수촌을 조성하고 있다.

2011년 10월 27일 준공식을 갖은 진천선수촌 1단계 사업의 완료에 이어 2012년부터 제2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까지 진행될 2단계 사업은 총 594,711㎡의 부지 위에 연면적 109,700㎡ 규모로 총 25개 종목에 걸쳐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2단계 공사가 완공되는 2017년 이후에는 총 37개 종목의 훈련장이 조성되어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최첨단 종합훈련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진천선수촌의 시설현황과 단계별 추진실적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 표 4-28 진천선수촌 시설현황

- 1단계 사업 주요시설 : 지원시설, 실내훈련시설, 실외훈련시설 등 12개 종목

구분	건립시설명
지원시설	행정동, 선수교육회관, 체력훈련장, 방문자센터, 스포츠의/과학실, 선수숙소(350명), 게스트하우스
실내 훈련시설	수영센터,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정구장, 사격장, 조정/카누 연습장
실외 훈련시설	종합훈련장, 투척필드, 다목적필드(소프트볼, 럭비, 야구), 테니스/정구장, 클레이사격장, 크로스컨트리코스

- 2단계 사업 주요시설 : 옥외 훈련시설, 실내훈련시설, 지원시설 등 25개 종목

구분	건립시설명
옥외 훈련시설(4)	하키, 양궁, 럭비, 골프
실내훈련시설(21)	체조, 태권도, 유도, 탁구, 사이클벨로드롬 등 21개 종목
지원시설(5)	선수숙소(숙소 800명, 식당 500명 이상), 체력훈련장, 스포츠의학실, 스포츠과학센터

■ 표 4-29 진천선수촌 조성 연도별 추진 현황

연도	사업내용	비고
2001.06	• 문화재복원정비 관련 선수촌 이전요구(3회)	문화재청
2003.03	• 선수촌 장기이전 계획안 수립	대한체육회
2003.06	• 국민체육진흥5개년 계획 반영	문화관광부
2003.08	• 2003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출	문화관광부
2003.11	• 2003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획예산처
2004.03	•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	한국개발연구원
2004.09	•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	한국개발연구원
2004.12	•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결과 통보(사업승인) - 조사결과 : 단계별 사업추진 • 1단계 : 현 태릉선수촌에 없는 시설물 건립 제2선수촌 형태로 부분이전(2005~2010) • 2단계 : 향후 태릉선수촌 사용불가능여부, 체육정책, 엘리트스포츠 육성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여 추진(2011~2015)	기획예산처
2004.12	• 제2선수촌 이전 대상지 선정 - 13개 후보지 중 2개 우수후보지 선정(음성, 진천) - 2개 우수후보지 평가를 위한 용역 의뢰 - 선수촌이전 추진자문위원회(6차회의/진천군 선정)	대한체육회
2005.11	• 선수촌이전 사업 마스터플랜 현상공모 당선작선정	대한체육회
2006.03	• 선수촌이전 마스터플랜 각계 의견수렴 및 최종확정	대한체육회
2006.05~	•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진천군, 대한체육회
2007.01~2008.10	• 기본·실시 설계	대한체육회
2008.11.28	• 공사계약(턴키 방식)	대한체육회
2009.02.05	• 진입도로공사 착공	대한체육회
2009.05.18	• 본공사 착공	대한체육회
2011.08.18	• 1단계 공사완공	대한체육회
2010.12~2011.9	•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조사결과 : B/C 1.49, AHP 0.666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결론	기획예산처
2012~2017	• 2단계 사업 추진	대한체육회

05



국제체육

- // 제1절 국제체육계 동향
- // 제2절 우리나라의 국제스포츠역량
- // 제3절 국제교류 현황

Section

05 국제체육

우리나라의 스포츠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영역 중의 하나인 국제체육활동은 문화·정치·경제 및 외교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국제체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 사회 및 국제스포츠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UN의 주도하에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청소년 교육, 국가 개발 및 평화 추구 등 함께 지속가능하며 건강한 사회 발전을 이루는데 스포츠가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스포츠계 또한 국제사회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에 발맞추어 인본주의와 환경보전의 추세로 국제사회와 함께 나아가고 있으며 글로벌 체제에 부합되는 상업화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제1절 국제체육계 동향

국제체육계는 세계 여러 문화의 변화 속에 발맞추어 여성, 청소년, 저개발국가 국민 등 모두를 아우르는 스포츠(Sport for All), 스포츠 윤리와 페어플레이, 환경 보전에 중점을 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UN에서도 전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스포츠의 강력한 힘을 인지하여 UNESCO를 통해 사회발전과 평화를 목적으로 한 스포츠와 도핑방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2000년대 UN사무총장 직속의 UN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ited Nations Offi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의 신설은 UN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신뢰의 정도를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국제체육의 중요성과 시대적 조류 변화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제스포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으로 국가간·NOC간 체육교류협정 체결, 국제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체육기구 임직원으로서의 진출 등의 도모를 통해 국제체육계의 주도적 리더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국제체육기구 현황

국제체육기구는 전 세계 국가가 참가하는 종합대회를 관장하는 기구와 대륙별 종합대회를 관장하는 기구, 그리고 종목별·대륙별·연령별 세계대회 등을 관장하는 기구로 구분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등은 범위의 구분은 있으나 종합대회를 관장하는 국제체육기구이며, 종목별 국제경기연맹(IF)과 아시아경기연맹(AF)은 해당 종목에 대한 세계대회와 아시아대회를 관장하고 있는 기구이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나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Sport Accord)와 같이 동일한 범위 안에 속하는 체육기구들의 연합회 형태의 기구도 있다.

■ 표 5-1 주요 국제체육기구 및 단체 현황

구 분	기구 및 단체명	주요 역할
국제체육 기구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동·하계(청소년)올림픽 관장/ NOC, IF 및 각종 체육단체 총괄
	ANOC(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	IOC 가맹국 NOC(올림픽위원회) 총괄
	Sport Accord(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종목별 ISF(국제경기연맹) 총괄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동·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관장/ 가맹국 대학스포츠연맹 총괄
	IPC(국제패럴림픽위원회)	동·하계 패럴림픽 관장
경기연맹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동·하계 아시아경기대회 총괄, 종목별 아시아경기연맹(ASF) 총괄
	IF(국제경기연맹)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관장
	AF(아시아경기연맹)	종목별 아시아선수권대회 관장

국제체육기구 가운데 가장 대표적 기관인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IOC)는 각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와 올림픽 종목의 국제경기연맹(IF)을 회원으로 하는 최고 권위의 국제체육단체<표 5-2, 표 5-3>이다. 현재 가맹국은 205개 국가로 100명의 IOC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외에 33명의 명예위원과 1명의 영예위원이 있다. 한국은 이진희(1996), 문대성(2008) 2명의 IOC위원이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 표 5-2 IOC 위원 국가별 배출 인원수 현황

인원수(국가수)	국 가	주요 대륙
5명(1개국)	스위스	유럽(1)
4명(1개국)	영국	유럽(1)
3명(5개국)	중국,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미국	유럽(3), 아메리카(1), 아시아(1)
2명(11개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쿠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한국,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유럽(6), 아시아(1), 아메리카(2), 오세아니아(2)
1명(54개국)	아르헨티나, 아루바, 오스트리아, 바베이도스, 브룬디, 카메룬 등	유럽(11), 아시아(20), 아메리카(11), 아프리카(11), 오세아니아(1)
0명(129개국)	자메이카,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외	제3세계 국가

※ 자료 : IOC홈페이지(www.olympic.org)

※ 명예위원(33명) 및 영예위원(1명) 제외

■ 표 5-3 IOC 위원 대륙별 배출 인원수 현황

(2012. 12. 기준)

대륙	인원	구성비율 (%)
아시아	25	25
오세아니아	5	64
유럽	41	
아메리카	18	
아프리카	11	11
합계	100	100.0

※ 자료 : IOC홈페이지(www.olympic.org)

올림픽 정식 종목이면서 종목별 권위 있는 세계대회를 주관하는 국제경기연맹회장의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스위스와 이탈리아가 5개 종목, 스페인이 3개 종목,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이 각각 2개 종목을 회장국을 맡고 있다<표 5-4, 표 5-5>. 전체 35개 종목을 국제경기연맹 회장중 유럽출신이 25명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는 4명, 중남미 3명, 아프리카 2명, 북미 1명으로 유럽의 비율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5-4 올림픽 정식 종목 국제경기연맹의 회장국적

(2012. 12. 기준)

구분	종목	회장명	회장국적	국제경기연맹/홈페이지
하계 (28종목)	육상	Lamine Diack	세네갈 (SEN)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 www.iaaf.org
	조정	Denis Oswald	스위스 (SUI)	International Rowing Federation www.worldrowing.com
	배드민턴	Kang Young Joong	대한민국 (KOR)	Badminton World Federation www.bwfbadminton.org
	농구	Yvan Mainini	프랑스 (FRS)	International Basketball Federation www.fiba.com
	복싱	Ching Kuo Wu	대만 (TPE)	International Boxing Association www.aiba.org
	카누	Jose Perurena Lopez	스페인 (ESP)	International Canoe Federation www.canoeicf.com
	사이클	Patrick McQuaid	아일랜드 (IRL)	International Cycling Union www.uci.ch
	펜싱	Usmanov Alisher	러시아 (RUS)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grime www.fie.ch
	승마	HRH Princess Haya Bint Al Hussein	요르단 (JOR)	Federation Equestre Internationale www.fei.org
	축구	Joseph S. Blatter	스위스 (SUI)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www.fifa.com
	체조	Bruno Grandi	이탈리아 (ITA)	International Gymnastics Federation www.fig-gymnastics.com

하계 (28종목)	역도	Tamas Ajan	헝가리 (HUN)	International Weightlifting Federation www.iwf.net
	핸드볼	Hassan Moustafa	이집트 (EGY)	International Handball Federation www.ihf.info
	하키	Leandro Negre	스페인 (ESP)	International Hockey Federation www.fih.ch
	유도	Marius L. VIZER	오스트리아 (AUT)	International Judo Federation www.ijf.org
	근대5종	Klaus Schormann	독일 (GER)	Union Internationale de Pentathlon Moderne www.pentathlon.org
	레슬링	Nenad Lalovic	세르비아 (SRB)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ssociated Wrestling Styles www.fila-official.com
	수영	Julio C. Maglione	우루과이 (ULU)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Natation www.fina.org
	태권도	Choue Chung Won	대한민국 (KOR)	World Taekwondo Federation www.wtf.org
	테니스	Francesco Ricci Bitti	이탈리아 (ITA)	International Tennis Federation www.itftennis.com
	탁구	Adham Sharara	캐나다 (CAN)	International Table Tennis Federation www.ittf.com
	사격	Olegario Vazquez Rana	멕시코 (MEX)	International Shooting Sport Federation www.issf-sports.org
	양궁	Ugur Erdener	스위스 (SUI)	International Archery Federation www.worldarchery.org
	트라이애슬론	Marisol Casado	스페인 (ESP)	International Triathlon Union www.triathlon.org
	요트	Carlo Crace	이탈리아 (ITA)	International Sailing Federation www.sailing.org
	배구	Ary Da Silva Graca Filho	브라질 (BRA)	International Volleyball Federation www.fivb.org
	골프	Peter Dawson	영국 (GBR)	International Golf Federation www.igfgolf.org
	럭비	Bernard Lapasset	프랑스 (FRS)	International Rugby Football Board www.irb.com
	동계 (7종목)	바이애슬론	Anders Besseberg	노르웨이 (NOR)
봅슬레이		Ivo Ferriani	이탈리아 (ITA)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Bobsleigh Et De Tobogganing www.fibt.com
컬링		Kate Caithness	영국 (GBR)	World Curling Federation www.worldcurling.org
아이스하키		Rene Fasel	스위스 (SUI)	International Ice Hockey Federation www.iihf.com
루지		Josef Fendt	독일 (GER)	International Luge Federation www.fil-luge.org
빙상		Ottavio Cinquanta	이탈리아 (ITA)	International Skating Union www.isu.org
스키		Gian Franco Kasper	스위스 (SUI)	International Ski Federation www.fis-ski.com

■ 표 5-5 올림픽 정식종목 국제경기연맹 회장의 대륙별국가별 분포

(2012. 12. 기준)

대륙	국가	국가별 회장 수	대륙별 회장 수	대륙별 구성비율(%)
아시아	한국	2	4	11.4
	대만	1		
	요르단	1		
아프리카	세네갈	1	2	5.7
	이집트	1		
유럽	스위스	5	25	71.4
	이탈리아	5		
	스페인	3		
	독일	2		
	프랑스	2		
	영국	2		
	아일랜드	1		
	헝가리	1		
	노르웨이	1		
	러시아	1		
	오스트리아	1		
	세르비아	1		
	북미	캐나다		
중남미	멕시코	1	3	8.6
	우루과이	1		
	브라질	1		
합계		35	35	100.0

※ 자료 : www.olympic.org

이들 국제경기연맹의 본부 소재지는 태권도(한국), 트라이애슬론(캐나다), 배드민턴(말레이시아)을 제외한 32개 올림픽 정식 종목의 본부가 유럽에 위치해 있다<표 5-6>.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골프(스위스)와 럭비(아일랜드) 역시 유럽에 본부를 두었으며, 한국은 태권도와 배드민턴 국제연맹의 회장국이나 배드민턴은 말레이시아에 그 본부를 두고 있다. 21개 종목의 본부가 IOC가 위치한 스위스에 소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제스포츠계의 중심은 근대 스포츠의 근원지인 유럽에 있으며, 국제경기연맹의 본부 소재지는 회장국에 본부를 두는 일부 종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부 소재지 이동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유럽 중심의 국제스포츠 역학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 표 5-6 올림픽 정식 종목 국제경기연맹 본부 소재지 (2012. 12. 기준)

국 가	본부 수	종 목
스위스	21	조정, 농구, 복싱, 카누, 사이클, 펜싱, 승마, 축구, 체조, 배구, 핸드볼, 하키, 레슬링, 수영, 탁구, 양궁, 아이스하키, 빙상, 스키, 봅슬레이, 골프
영국	3	테니스, 요트, 컬링
헝가리	2	역도, 유도
모나코	2	육상, 근대5종
독일	2	루지, 사격
아일랜드	1	력비
오스트리아	1	바이애슬론
캐나다	1	트라이애슬론
대한민국	1	태권도
말레이시아	1	배드민턴
합계 (10개국)	35	35종목

※ 자료 : 각 종목 국제경기연맹 홈페이지

또한 국제체육기구 및 경기연맹, 아시아체육기구 및 경기연맹의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위원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5-7>과 같다.

■ 표 5-7 각종 국제기구 위원회 활동 한국인 연도별 위원 수

국 제 기 구 명	연 도 별 위 원 수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 제 체 육 기 구	IOC(국제올림픽위원회)	10	10	9	9	6	5	7	5	6	6
	ANOC(국제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	-	-	-	1	1	1	1	1	-	-
	GAISF(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1	1	1	-	-	-	-	-	-	-
	AIPS(국제체육기자연맹)	1	1	1	1	1	1	1	1	1	1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4	5	5	5	6	7	6	6	6	8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6	6	7	6	6	4	6	6	6	8
	EAGA(동아시아대회협의회)	2	2	3	4	3	3	4	4	4	4
	GAASF(아시아경기연맹총연합회)	1	1	-	-	-	-	-	-	-	-
	ASPU(아시아체육기자연맹)	1	1	1	3	3	3	3	3	3	2
	IANOS(국제생활체육단체총연합회)	1	1	1	1	1	1	1	1	※	※
경 기 연 맹	APOSA(아시아-오세아니아연합회)	-	-	-	1	1	1	1	1	※	※
	TAFISA(세계사회체육연맹)	-	-	-	1	1	1	4	4	4	6
	ASFAA(아시아오세아니아체육연맹)	2	2	2	2	2	2	2	2	2	4
소 계	29	30	29	31	31	36	38	36	32	35	
계	국 제(ISF)	63	69	79	79	86	90	69	97	114	105
	아시아(ASF)	122	119	140	142	146	151	189	170	190	205
	소 계	185	187	219	221	232	241	258	267	304	290
계	214	218	249	253	263	272	296	303	336	325	

※ IANOS와 IANOS의 아시아-오세아니아 지부인 APOSA는 2010년 TAFISA 및 TAFISA의 아시아-오세아니아 지부인 ASFAA에 흡수 통합됨

2. 스포츠에서의 도핑방지 강화

스포츠 분야에서 “도핑”은 선수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스포츠 페어플레이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한 약물의 습관성 및 마약 사용으로의 진전, 청소년에 대한 악영향 등 사회적으로 해가 된다는 관점에서 스포츠에서의 도핑방지 활동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즉 금지약물 사용은 스포츠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의 거의 모든 부분을 파괴한다고 할 수 있다.

유럽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도핑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왔다. 유럽은 1990년에 이미 국내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도핑방지협정(Anti-Doping Convention: ADC)을 가동시켜왔으며, 국제도핑방지협정(International Anti-Doping Arrangement: IADA) 등 도핑방지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유럽 지역의 이러한 활동들에 기초하여 경기 기간 외 검사(Out Of Competition Test: OOCT)나 적혈구생성촉진인자(erythropoietin : EPO)검사, 유전자 조작 등을 포함하여 점점 복잡해지는 도핑방지활동에 세계 각국 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인지함으로써 1999년 IOC와 세계 각국 정부가 함께하는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를 주도하여 결성하였다. WADA는 국제스포츠 기구에 적용되는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 WADC)을 제정하여, 2004 아테네 올림픽까지 세계 각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대부분의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Sport Federation)의 서명을 통한 이행 의무를 약속받았다.

UNESCO에서는 스포츠반도핑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을 추진하여 2005년 제33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2006년 12월 31일까지 총 41개국이 비준하여 2007년 2월 1일 공식 발효하게 되었고, 2008년 5월 11일 이를 재확인하였다.

1)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ADA는 로잔 선언문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이며 비정부적인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캐나다에 그 본부를 두고 있다. 선수들이 경쟁하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도핑으로부터 자유로운 스포츠 환경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스포츠 관련 기구와 각

국 정부의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선수들에게 도핑의 해악을 교육하고 제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Play True’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2011-2016 계획의 주요 활동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도핑으로부터 자유로운 스포츠 환경 조성
- 도핑방지기구 및 국제경기연맹의 세계도핑방지규약 이행 달성
- 개별 국가의 도핑 정보 수집과 공유를 위한 국내법 마련 유도
- 도핑방지교육프로그램의 국제적 체계 수립
- 도핑의 윤리적, 의료적, 법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국제적 자각 촉진
- 국제적 연구 프로그램 실행 및 연구 환경, 전문가 네트워크 조성
- 도핑방지관련 공인연구기관에 대한 국제 수준의 통일된 연구 수행을 위한 방향 제시

WADA는 이사회(Foundation Board)와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그리고 몇 개의 실무위원회(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다.

■ 표 5-8 WADA Foundation Board 구성

구분	인원	합계	비고
회장단	의장	1	2 John FAHEY (시드니올림픽 준비위원회 위원장 역임, 호주)
	부의장	1	
올림픽 운동대표 Olympic Movement Representation	IOC 대표	4	18 13명이 IOC 위원
	ANOC 대표	4	
	ASOIF 대표	3	
	SPORTACCORD 대표	1	
	AIOWF 대표	1	
	IOC 선수분과위 대표	4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IPC) 대표	1	
정부대표 Government Representation	유럽연합	3	18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벨기에 이탈리아(유럽회의 사무총장 자격), 러시아 이집트, 세이셸, 보스와나 파나마, 캐나다, 미국, 우루과이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유럽회의	2	
	아프리카	3	
	미주	4	
	아시아	4	
	오세아니아	2	
총계		38	

※ WADA(2012). www.wada-ama.org

3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WADA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이사회는 올림픽 운동(Olympic Movement) 측과 세계 각국 정부 측 대표가 동수로 구성하며, 12인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2005년까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와 함께 아시아 지역의 이사국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18개 이사국이 각각을 대표하고 있다.

WADA의 실무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하며 WADA의 주요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2012년 현재 활동 중인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선수위원회(Athlete Committee)
-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ttee)
- 윤리위원회(Ethical Issues Expert Group)
- 재정 및 행정위원회(Finance & Administration Committee)
- 건강, 의료 및 연구위원회(Health, Medical & Research Committee)

WADA는 IOC로부터 처음 2년간의 운영 자금(US\$ 18,300,000)을 지원받았으나,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도핑방지 국제정부간협의체그룹 회의에서 각국은 WADA 예산의 반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2002년부터 WADA의 운영 자금은 세계 각국 정부가 납부하는 분담금에 더하여 동일한 액수를 IOC가 중심이 된 올림픽운동 관련기관 측이 매칭 펀드 방식으로 제공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국의 분담금은 지역과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아시아 대륙에서 20.46%를 부담하도록 책정되어 있다. 42개 아시아 국가의 분담금은 1인당국 민소득(GNI per capita)과 스포츠지수(하계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선수 규모)를 각각 85%, 15%로 고려한다.

2012년 각국 정부에게 청구된 총 분담금은 \$13,210,049이었으며, 아시아 대륙이 \$2,702,776을 납부하였다. 일본(\$1,502,800), 중국(\$240,510)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납부하는 우리나라는 \$115,150의 분담금이 청구되어 이를 납부하였으며, 이는 아시아 분담금의 4.26%, 세계 분담금의 0.87%, WADA 전체 예산의 0.43%에 달하는 금액이다.

2) 세계도핑방지규약(WADC)

WADA는 도핑 관련하여 모든 스포츠기구를 동일한 질서 아래 규율하기 위해 세계도핑방지규약을 제정하였다. 2003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세계반도핑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에서 WADA 이사회가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 WADC)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고, 이후 승인 및 서명이 추진되어 2012년 현재 205개 NOC와 모든 국제경기연맹이 이에 서명을 완료하였다.

세계도핑방지규약에 근거한 프로그램은 세 가지 수준(levels)으로 이루어져 있다. WADC 본문,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 그리고 최상의 실행 모델(Models of Best Practices and Guidelines)이며 이 중 WADC 본문과 국제표준은 의무적인 규정들이나 최상의 실행 모델은 권장하는 수준이 된다. 다섯 가지 국제표준은 각각 검사 국제표준, 실험실 국제표준, 금지목록 국제표준, 치료목적 예외적 허용(TUE: Therapeutic Use Exemption) 국제표준, 그리고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이다.

■ 표 5-9 WADA 금지약물 목록

분 류	성 분 · 물 질
S1. 동화작용제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nabolic androgenic steroids)로서 외생성, 내인성 및 기타 동화작용제 포함
S2. 펩티드 호르몬, 성장인자 및 관련약물	적혈구형성자극제, 옴모성 고키나도트로핀 및 황체형성호르몬, 인슐린, 부신피질자극 호르몬, 성장호르몬 등
S3. 베타-2 작용제	흡입 salbutamol 및 salmeterol을 제외한 모든 베타-2 촉진제류
S4. 호르몬 및 변조제	aromatase 억제제류, 에스트로겐 수용체 변조물질류 중 일부, 항 에스트로겐 물질들, myostatin 기능조절 제제
S5. 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	이뇨제류, 데스모프레신, 프로베네시드, 혈장확장제
S6. 흥분제	국소성 imidazole 유도체 및 2011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된 물질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흥분제
S7. 마약류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fentanyl 등
S8. 카나비노이드	천연 또는 합성 Δ9-tetrahydrocannabinol (THC) 및 THC와 마리화나 유사성분
S9. 부신피질호르몬	경구복용, 정맥주사, 근육주사, 좌약 등을 통하여 투여하는 모든 부신피질호르몬제

※ 자료 : WADA(2012). <http://www.wada-ama.org/en/Science-Medicine/Prohibited-List/>

3) UNESCO 스포츠반도핑국제협약

WADA는 스위스 지방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국제 민간기구로 각국 정부를 직접 규율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1990년대부터 유럽지역 내에서 도핑방지의 국제협정(ADC)을 맺어 법적 구속을 받아온 유럽 국가들은 WADC의 국제협약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UNESCO의 세계체육/스포츠담당장관 및 고위공직자회의인 MINEPS와 CIGEPS를 이용해 세계 각국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3년 3월 세계 100여 국이 모인 파리 UNESCO 체육/스포츠담당장관 원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WADC의 국제협약화에 대한 UNESCO의 지원을 주장해 이 안건을 UNESCO총회에 상정 하였다.

2003년 10월 UNESCO총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고, 참가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며 스포츠 도핑에 관해 국내외적 법적 구속력을 갖는 UNESCO반도핑국제협약의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2004년에는 UNESCO반도핑국제협약의 초안 작성 회의들이 진행되었고,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2004년 12월 아테네에서 열린 MINEPS 4차 회의에서 정치적 타결을 보아 정리되었다. 2005년 1월 협약최종안이 완성되어 각국이 회람과정에 들어갔으며 2005년 10월 제33차 UNES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005년 11월 UNESCO반도핑국제협약은 각국 정부의 비준과정에 들어갔으며 30번째 비준 완료국의 서류가 UNESCO 사무국에 기탁된 후 30일이 지난 다음달 1일인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2012년 12월 현재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173개국에 달한다. 유네스코 협약 가운데 비준국이 두 번째로 많은 협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핑방지에 대한 각국의 노력과 기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UNESCO의 도핑방지 활동은 협약 이행, 회원국 역량강화, 도핑방지에 대한 인식 제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협약 당사국 총회는 사용금지 약물의 목록을 정하고 국가별로 협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협약 당사국의 도핑에 관해서는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을 수립하고 국내법 또한 이 협약에 반하지 않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도핑방지 관련 회원국 역량강화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2012년에는 스포츠 분야 도핑퇴치기금승인위원회를 통해 35만 달러 규모의 도핑예방교육 프로그램, 도핑방지 법령 제정, 최저개발국 및 저소득국가의 도핑방지 역량 구축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유럽평의회, WADA, 프랑스 정부와 공동으로 ‘제약산업과 반도핑: 깨끗한 스포츠를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를 주제로 2012년 11월 12일 파리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런던올림픽 관련 스웨덴 영화사의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어린이들의 관심을 유도

하기 위한 만화 ‘설록 홈즈’ 개정판 제작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핑방지의 국제적 관심과 자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국내 도핑방지 활동

2004년 1월 1일부터 도핑시험실 국제 공인의 권한이 IOC MC(의무위원회)에서 WADA로 이관되었다. 우리나라의 WADA 공인 도핑시험실(WADA Accredited Lab)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로 2004년 4월 WADA로부터 스테로이드 검사에 대해 6개월간 효력 정지의 제재를 받았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기기보강을 통해 기자재 및 검사 건수가 증가하였고, KIST의 자체인력보강을 통해 2004년 11월 다시 전체 공인(full-accreditation)을 획득하였다. 지금까지 도핑컨트롤센터의 연도별 검사건수와 양성건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10, 표 5-11>.

■ 표 5-10 도핑컨트롤센터 연도별 시료 현황

(2012. 12월 기준)

분기(소변시료)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4분기	63	83	113	104	148	241	160	562	717	489	858	1,096
2/4분기	264	257	70	510	671	700	355	625	893	520	941	1,766
3/4분기	102	442	734	376	723	1,181	1,541	1,518	1,090	1,330	2,204	1,217
4/4분기	170	1,006	617	698	985	1,457	777	823	1,265	1,800	1,210	567
소변시료 계	599	1,788	1,534	1,688	2,527	3,579	2,833	3,528	3,965	4,139	5,213	4,646
혈액시료 계											195	189

※ 자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2012)

■ 표 5-11 도핑방지컨트롤센터 연도별 양성건수(2012. 12월 기준)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수	10	47	23	29	15	26	43	36	23
경기 / 비경기	5/5	43/4	20/3	26/3	8/7	21/5	39/4	22/14	13/10
종목	보디빌딩(4) 복싱(3) 사이클(1) 빙상(1) 육상(1)	보디빌딩(33) 육상(2) 사이클(2) 역도(2) 펜싱(1) 태권도(1) 레슬링(1) 모터보트(1) 양궁(1) 야구(1) 근대5종(1) 핀수영(1)	보디빌딩(11) 레슬링(4) 육상(2) 역도(각2) 빙상(1) 모터보트(1) 사이클(1) 태권도(1)	보디빌딩(13) 역도(4) 사이클(3) 야구(2) 빙상(1) 스키(1) 수영(1) 레슬링(1) 육상(1) 유도(1) 배구(1)	보디빌딩(8) 사이클(3) 스키(1) 모터보트(1) 역도(1) 장애인역도(1)	보디빌딩(10) 사이클(3) 궁도(2) 레슬링(2) 야구(2) 근대5종(1) 스쿼시(1) 양궁(1) 웨이크보드(1) 축구(1) 유도(1) 장애인축구(1)	보디빌딩(18) 농구(3) 복싱(2) 론볼(2) 파워리프팅(2) 핀수영(2) 장애인농구(2) 양궁(1) 사격(1) 근대5종(1) 아이스하키(1) 야구(1) 역도(1) 장애인역도(1) 장애인탁구(1) 장애인양궁(1) 장애인배구(1)	보디빌딩(15) 육상(5) 사이클(3) 양궁(3) 골프(2) 레슬링(2) 야구(1) 컬링(1) 요트(1) 사격(1) 테니스(1) 역도(1)	보디빌딩(10) 레슬링(2) 축구(2) 역도(2) 바이애슬론(1) 아이스하키(1) 롤러스포츠(1) 야구(1) 보울스(1) 승마(1) 육상(1)
약물	스테로이드제(4) 베타2작용제(2) 이노제(2) 호르몬길항제(1) 흥분제(1)	스테로이드제(36) 베타2작용제(10) 이노제(7) 호르몬길항제(5) 흥분제(4) 부신피질호르몬(1) 베타차단제(1)	스테로이드제(17) 베타2작용제(3) 이노제(2) 호르몬길항제(5) 흥분제(4)	스테로이드제(31) 베타2작용제(2) 이노제(2) 흥분제(4) 부신피질호르몬(2)	스테로이드제(7) 이노제(6) 흥분제(2)	스테로이드제(11) 이노제(8) 호르몬조절제(2) 흥분제(2) 부신피질호르몬(2) 카나비노이드(1)	스테로이드제(11) 베타2작용제(2) 이노제(17) 흥분제(10) 부신피질호르몬(1) 베타차단제(2)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17) 기타호르몬(2) 이노제(8) 흥분제(7) 베타차단제(4)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9) 이노제/은페제(5) 흥분제(4) 미약류(1) 베타2작용제(1) 부신피질호르몬(2) 호르몬조절제(1)

※ 참고 : 단일 양성건에서 다수의 약물이 검출되기도 하므로 약물건수의 합이 양성건수보다 클 수 있음

※ 자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2012)

2006년 11월 13일에는 국내 최초의 국가도핑방지기구인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이후 2007년 4월 27일 WADA에 가입하여 세계도핑방지규약을 수용하였고, 같은 해 6월 22일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근거한 법정법인으로 재탄생하였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에 물질 분석을 의뢰해 도핑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이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한다. 도핑규정 위반 행위를 한 선수 및 지도자의 제재를 위하여 산하에 독립된 항소위원회 및 제재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와 혈액검사를 통한 도핑검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ABP심사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핑방지 교육과 홍보<표 5-12, 5-13>를 적극 전개하여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핑방지노력을 통해 양성 반응률은 2010년 1.22%, 2011년 0.63%, 2012년 0.30%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 표 5-12 도핑방지교육 연도별 교육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경기 단체 연수회 및 강습회	4,046	2,079	3,619	5,882	6,605	6,595
세미나		140	297	150	144	144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하게 훈련		2,354	1,641	1,261	1,109	1,447
체육 중·고등학교		3,519	3,097	2,858	3,727	3,880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390	300	500	565	366
프로		200	530	410	281	680
합계		4,046	8,682	9,484	11,061	12,431

※ 자료 : 한국도핑방지위원회(2012)

■ 표 5-13 연도별 홍보물 배포 현황

종 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도핑안내서	7,149부	13,642부	25,000부	30,000부	35,000부	40,000부
리플렛	-	4,000부	4,000부	5,000부	12,000부	500부
홍보만화	-	-	-	5,000부	10,000부	15,000부
포스터	-	-	-	500장	1,000장	3,000장
칼럼기고	-	-	-	6회	8회	3회

※ 자료 : 한국도핑방지위원회(2012)

또한 금지약물검색 사이트 및 도핑검사의 ISO 9001:2008(국제품질인증) 획득과 함께 WADA 국제심포지움 등 각종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를 통하여 세계도핑방지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맹과 국내 도핑검사 대행 및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국제레슬링, 사격, 육상, 인라인롤러, 트라이애슬론, 휠체어농구, 테니스, 볼링, 조정, 핸드볼연맹, 국제연맹총연합회(Sport Accord), 세계아이언맨협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국내 대회에 대한 도핑검사를 대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 프로연맹과 도핑검사대행 및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스포츠 윤리와 페어플레이정신을 달성하고 있다.

3. UN의 스포츠를 통한 개발과 평화

2002년 코피 아난(Kofi Annan) 사무총장은 UN 체제 하에서 세계 발전과 평화를 위한 스포츠의 체계적 활용을 목적으로 UN 특별실무그룹을 조직하여 '개발과 평화를 위한 스포츠(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그리고 빈곤, 기아, 아동사망률과 질병 감소 및 근절, 보편적 기초교육, 모성건강, 양성평등, 환경 지속성의 보장과 국제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강력한 방법으로 스포츠를 제시하였다. 2003년 UN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여 2005년을 스포츠와 체육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 IYSPE 2005)로 공식 선언하게 되었다. 이 후 2008년 UN특별실무그룹은 UN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ited Nations Offi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UNOSDP)로 조직을 정비하여 스포츠를 통한 전 세계의 동반자적 발전과 평화 달성을 목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임명한 윌프레드 렘케(Wilfried Lemke) 특별보좌관이 2008년부터 UNOSDP를 총괄하고 있다. UNOSDP는 UN사무총장, 특별보좌관, 대륙 대표와 후원국(캐나다, 노르웨이, 영국)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주제별 실무그룹으로 구성된다.

- 스포츠와 평화(Sport and Peace)
- 스포츠와 성(Sport and Gender)

- 스포츠와 장애인(Sport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 스포츠와 건강(Sport and Health)
- 스포츠와 청소년(Sport and Youth)

UNOSDP는 사회의 개발과 발전, 평화 달성을 목적으로 한 스포츠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 이외에도 미디어, 체육기구, NGO, 각 정부간 발생할 수 있는 대립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데, 여성의 국제경기대회 참가가 법률로 금지되어 있던 쿠웨이트와 이에 대한 제재로 쿠웨이트팀 전체의 올림픽 출전을 거부한 IOC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마리아 샤라포바, 지네딘 지단 등 세계적 스포츠 스타들을 친선대사로 임명하여 홍보 및 캠페인 활동에 적극 참여케 하고 있으며, 글로벌기업 등 많은 기관의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UNOSDP 청소년리더십캠프를 연4회 개최하여 15개 국가에서 극한 환경에 처한 30명의 청소년을 NGO를 통해 선발해 14일간 스포츠를 통한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국으로 돌아간 캠프 참가 청소년들이 리더가 되어 사회를 계몽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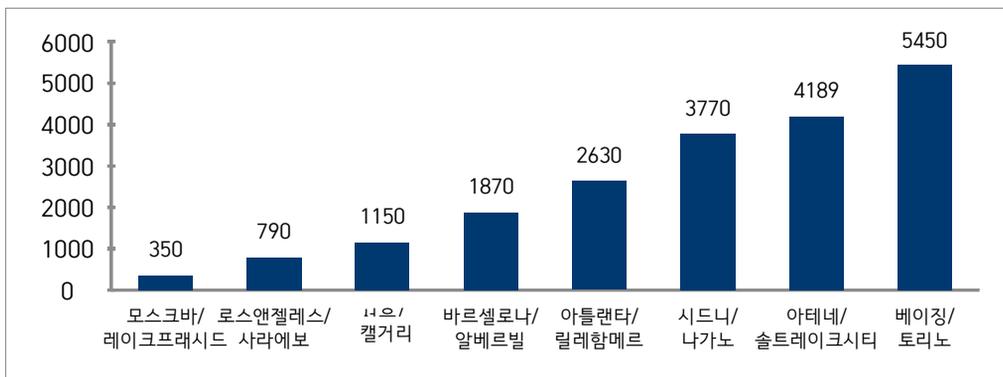
UNOSDP의 이러한 노력들은 코트디부아르에서의 축구대회 개최를 통한 반군과 정부군의 내전 후 조정과 통합, 2006년 2주간의 스포츠이벤트로 콩고지역 전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그 성과를 보이고 있다.

IOC는 1947년 UNESCO와의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현재 27개 UN사무국 및 산하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UN은 개발 협력과 인본주의적 지원 도구로써 스포츠를 활용하고, IOC는 이를 통해 스포츠가 가지는 최대한의 긍정적 측면을 입증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는 계속 유지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4. 스포츠의 상업화

스포츠이벤트가 다국적 기업의 마케팅 수단이 되면서 스포츠경기의 상업화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전개되어가고 있다. 특히 TV중계권료 상승과 기업으로부터의 스폰서십 증가는 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스포츠 상업화의 대표적 사례인 올림픽의 경우 TV중계권료, 후원금, 라이센스 등의 마케팅 수입이 1980년 동하계올림픽 당시 3.5억 US\$에서 20년 후인 1998년과 2000년 동하계올림픽에서는 37.7억 US\$로 10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고, 8년 후인 2006년과 2008년 동하계올림픽에서는 54.5억 US\$로 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5-1). 마케팅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TV중계권료는 올림픽의 상업적 가치가 크게 부각된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 비하여 2012년 런던올림픽은 9배 이상 증가하였다<표 5-14>.



※ 자료 : IOC 홈페이지(www.olympic.org)

그림 5-1 동·하계올림픽대회 합산 마케팅수입

■ 표 5-14 하계올림픽 방송권 및 방송한 국가의 수

(단위 : USD million)

구 분	1984 로스앤젤레스	1988 서울	1992 바르셀로나	1996 아틀랜타	2000 시드니	2004 아테네	2008 베이징	2012 런던
방송권 수입금	286.9	402.6	636.1	898.3	1,331.6	1,494	1,739	2,634.5
방송 국가수	156	160	193	214	220	220	220	

※ 자료 : IOC 홈페이지(www.olympic.org)

또한 IOC가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 후원하는 기업의 후원금도 제5기(2001~2004)에는 제1기보다 6.8배가 증가하여 기업 스폰서십을 통한 스포츠의 상업화가 크게 전개되고 있다<표 5-15>.

■ 표 5-15 올림픽 공식후원업체의 기별 올림픽 후원금액

구 분	1985-1988	1989-1992	1993-1996	1997-2000	2001-2004	2005-2008	2009-2012
올림픽 게임	1988캘거리 1988서울	1992알베르빌 1992바르셀로 나	1994릴레함메 르 1996아틀란타	1998나가노 2000시드니	2002솔트레이크 크 2004아테네	2006토리노 2008베이징	2010밴쿠버 2012런던
참가국 수	159	169	197	199	202	205	205
업체수	9	12	10	11	11	12	11
후원금 (US백만\$)	96	172	279	579	663	866	957

※ 자료 : IOC홈페이지(www.olympic.org)

■ 표 5-16 올림픽조직위원회 후원업체의 기별 후원금액

구 분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올림픽 개최지	아틀란타	나가노	시드니	솔트레이크	아테네	토리노	베이징	밴쿠버
업체수	111	26	93	53	38	57	51	57
후원금 (US백만\$)	426	163	492	494	302	348	1,218	688

※ 자료 : IOC홈페이지(www.olympic.org)

제2절 우리나라의 국제스포츠역량

1. 국제스포츠 정책과 조직

1) 국제스포츠 정책

우리나라의 국제스포츠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1997, 1998~2002)과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2003~2007)’에 이어 문화비전(2008~2012)으로 추진되었다. 국제스포츠역량강화를 목표로 국제스포츠인재양성, 국제체육기구 임직원 진출 및 인적교류 강화, 국제경기대회 주최 및 파견을 추진하였으며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통한 중주국으로서의 역량 강화, 선진도핑검사 및 관리시스템 확립, 개도국 체육활동 지원 등을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다<표 5-17>.

■ 표 5-17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2003~2007)의 국제스포츠정책

주요 정책	내 용	세 부 내 용
체육외교 역량강화 및 협력 내실화	체육외교 기반 강화	체육외교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국제체육기구 임원진출 및 인적교류 확대
	국가·지역간 체육협력 강화	주요 국제회의 유치 및 능동적 참여
		국가간 체육교류·협력 내실화
생활체육 국제교류 증대	제3세계국가 체육발전 지원	
태권도를 통한 국가 이미지 선양	태권도를 통한 국가 이미지 선양	동북아시아 체육협력 강화
		생활체육 국제회의 참가 및 민간교류 협력 증대
		태권도공원 조성
국제경기대회의 효율적 추진	주요 국제경기대회 적극 유치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한 지도자 파견
		세계선수권대회 유치 및 각종 국제대회의 합리적 유치
	국제대회 파견 활성화	국제 스포츠·관광행사 활성화
스포츠도핑방지 활동 활성화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국제대회 파견 활성화
		세계도핑방지기구 등과의 교류 활성화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3).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 표 5-18 문화비전(2008~2012)의 국제스포츠정책

주요 정책	중점 과제	세 부 내 용
세계 속의 스포츠 한국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스포츠 강국 이미지 지속	2011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국제스포츠인력 양성 및 국제활동 강화	대륙별 맞춤형 스포츠교류 프로그램 실시
	태권도 세계화	태권도공원 조성 대한민국 태권도시범단 창단 태권도 용품지원, 시범파견 등 태권도 한류 확산
	선진 스포츠도핑 방지시스템 확립	선진도핑검사 및 관리시스템 확립 도핑방지 교육 및 홍보확대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8). 문화비전

2) 조직과 인력

우리나라의 국제스포츠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내의 국제체육과가 주무부서로서 국제체육교류 즉, 각종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참가에 관한 사항과 국제체육기구와의 협력 그리고 스포츠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국가 간 체육교류사업의 추진 및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태권도진흥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2012년 12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의 주요 업무는 <표 5-19>와 같다.

■ 표 5-19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주요 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정책개발 및 정보화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제스포츠 지원 전문 인력의 양성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 방지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지원
국제스포츠인재양성 및 국제교류	국제체육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보급
	국제스포츠인재 양성에 관한 업무
	국가 간 체육협정 체결 및 후속 조치
	개도국 체육활동 지원 -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드림프로그램, 스포츠 ODA
국제경기대회	스포츠 외교력 강화 및 올림픽인 국제 스포츠 활동 지원
	국제회의의 참가 및 개최 지원
개최 및 참가 지원	국제경기대회 유치 심사 및 지원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 2013 충주 조정 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구 분	주 요 업 무
개최 및 참가 지원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 2013 충주 조정 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지원 -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지원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지원 - F1 대회 개최 지원 -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국제경기대회 참가 지원 - 2012 런던올림픽 참가 지원 - 국제종합경기대회 및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 국제 친선경기대회 지원
	국제경기대회 개최 후속 지원 사업 - 대구육상진흥센터 건립 및 운영 - 국제대회 DB구축 연구 및 인프라구축
태권도 진흥 및 세계화	태권도 진흥 및 활성화 관련 업무
	태권도원 조성·운영 지원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 및 태권도 세계화 사업 추진 -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 태권도 평화봉사단 파견, 시범단, 사범 파견 등
	태권도진흥재단 지원 및 감독
남북체육교류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지원 및 관리
남북체육교류	남북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2) 내부자료

민간부문에서는 체육단체(KOC, 대한체육회, 각 경기단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임시조직으로서 주요 국제대회 조직위원회가 있다. KOC의 주요 업무는 대한체육회 국제교류팀과 국제경기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표 5-20>.

■ 표 5-20 대한체육회 국제교류팀과 국제경기팀의 주요업무

국 제 교 류 팀	국 제 경 기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경기운영요원 양성 업무 • 스포츠외교 관련 업무 •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업무 • 국제대회 및 국제회의의 유치관련 업무 • NOC, 국제체육기구와 교류 및 협력(협정 체결 등) 업무 • 국제종합대회 코리아하우스 운영업무 • 남북체육교류 및 협력업무 • KOC 영문홈페이지 관련업무 • 국제심판 및 임원육성(현황 파악) 업무 • 올림픽 운동에 관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달리기대회 - 올림픽솔리다리티 • 국제체육유공자 포상업무 • 국제위원회, 문화·환경·교육위원회 운영 • IOA 및 KOA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종합대회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하계올림픽대회 - 동하계아시아경기대회 - 동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 동하계청소년올림픽대회 - 동아시아대회 -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 아시아비치경기대회 - 아시아청소년대회 - 뉴질랜드동계대회 - 월드컵 - 기타 국제스포츠기구 종합대회 관련 업무 • FISU,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USB) 업무

각 경기단체에서는 이사회에서 국제체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사무국 내에서 외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와 국제이사의 책임 하에 사무국에서 행정 지원을 수행하는 형태가 있다(그림 5-2). 특히 후자의 경우 원활하고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국제스포츠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조직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지역진흥부에서 생활체육 국제교류 및 TAFISA, ASFAA 등 국제기구 관련 업무, 개발도상국 스포츠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경우 국제협력본부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많은 국제경기 업무와 다양한 국제체육기구 관련 업무 등 국제스포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대회조직위원회는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4 인천아시아 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제부가,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의 경우에는 기획부 FISU협력팀과 의전등록팀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국제국의 IOC부와 국제지원부에서 국제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 경기단체의 경우 국제 업무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2008년부터 정책적으로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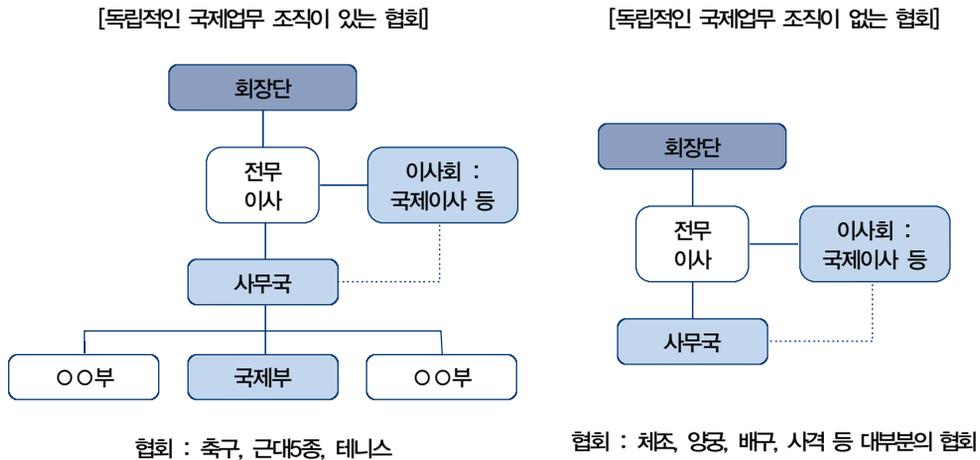


그림 5-2 경기단체(협회) 국제업무 기구(음영 부분)

2. 체육교류협정 체결

국가간 또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간의 체육교류협정 체결은 국가간 스포츠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토대가 된다. 1979년 이후 2012년 12월까지 29개 국가와 정부간, 그리고 52개국과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체육교류협정이 체결되어 국가 간의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표 5-21>. 특히 1988서울올림픽 이후 26개국 정부와 34개국 국가올림픽위원회와 협정체결을 이루어 올림픽 개최 이후 높아진 우리나라의 스포츠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부 간 체육교류협정을 맺은 29개국 및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맺은 52개국 가운데 각각 28개국, 43개국이 서유럽과 북미를 제외한 소위 ‘AAA’ (Asia, Africa, Central & South America)국가와 동구권 국가로서, 외교의 다변화 전략과 함께 추진되어 외교적 관계가 소원한 국가와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였다.

■ 표 5-21 체육교류협정 체결 현황(2012. 12월 기준)

구분	정 부 간	국가올림픽위원회간
1979		대만(12.20/ '99.8.11 재체결)
1980		바레인(10.15)
1983	도미니카(3.28)	미국(1.15), 쿠웨이트(9.22), 서독(10.6), 영국(11.3), 스웨덴(11.10/ '07.1.16재체결)
1984		이탈리아(7.26/ '94.12.1재체결/' 06.9.7재체결), 일본(9.13), 캐나다(11.8), 튀니지(12.10)
1985		코스타리카(5.17), 프랑스(9.27)
1986		탄자니아(4.26)
1987		페루(8.8)
1988	이란(9.20/ '07.8.23재체결), 스페인(11.16)	베냉(9.30)
1989	폴란드(5.4)	
1990	말리(3.9), 유고(5.21), 불가리아(5.23), 루마니아(5.25), 모로코(5.28)	멕시코(5.21/ '04.2.25재체결/' 06.11.6재체결)
1991	체코(5.29)	베트남(10.23/ '99.5.13재체결), 라오스(10.25)
1992	헝가리(2.12), CIS(6.2)	몽골(4.16)
1993	태국(1.25)	카자흐스탄(7.22), 중국(9.9), 러시아(11.24)
1996	모리셔스(5.6), 나이지리아(10.22)	리비아(10.5)
1997	슬로바키아(1.21), 싱가포르(6.20)	스와질랜드(9.2), 아이보리코스트(10.13)
1999	몽골(5.28), 에티오피아(8.11)	시리아(3.4), 이집트(6.21)
2001	알제리(11.23)	
2002	멕시코(11.22)	

2004	수단(5.18)	
2005	이집트(8. 1)	
2006		우크라이나(2.10), 과테말라(11.5)
2007		알제리(1.27), 싱가포르(3.30)
2008	쿠웨이트 (7.30)	루마니아(8.7), 방글라데시(10.27)
2011	우루과이(1.5), 벨로루시(10.1)	뉴질랜드(9.26)
2012	온두라스(8.9)	부탄(1.6), 피지(3.6)
계	29개국 체결	52개 NOC

※ 정기간 NOC간 중복체결국(7) : 중국, 베트남, 슬로바키아, 몽골, 멕시코, 이집트, 쿠웨이트

3. 국제스포츠전문인력 양성

1)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의 전문 인력 양성 방안

국제스포츠전문인력 양성은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에서 입안되어 추진되었다.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체육지도자, 선수, 국제심판, 공무원, 경기단체 및 KOC와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한 자 등을 대상으로 KOC가 주관하여 근무시간 후 6개월 또는 어학연수기관의 교육이수를 통해 매년 10~100명을 양성한다는 것이었다<표 5-22>. 그러나 근무시간 후 교육에 따른 교육시간의 부족, 집중교육의 어려움 그리고 외국어 연수교육의 한계, 예산 부족 등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단기 어학교육과 소양교육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외교실무, 정치외교관계론, 체육학 관련 분야(스포츠외교론, 스포츠마케팅, 체육행정 등)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참여정부 5개년계획에서 국제스포츠에 관한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는 권위 있고 교육양성분야의 경험이 있는 기관이 주관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전문요원 양성을 위해 1~5년간의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표 5-22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방안

구 분	추천 대상자	인 원	주관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
제1차 5개년계획 (1993~1997)	체육지도자, 선수, 국제심판, KOC 직원, 경기단체 및 KOC 추천자	년 10명	KOC	6개월	외국어교육 소양교육
제2차 5개년계획 (1998~2002)	체육지도자, 선수, 국제심판, KOC위원, 공무원, 대학생	년 100명	KOC	어학 연수원 교육기간	외국어교육 소양교육
참여정부 5개년 계획 (2003~2007)	우수 체육인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년 10명	KOC	1~5년	외국어교육 국제스포츠 관련 분야 교육
	KOC직원, 메달리스트, 경기단체 임직원 등	년 10명	KOC	6개월~1년	국제기구 파견 인재풀 구축

2) 국제스포츠인력 강화 방안

국제스포츠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참여정부에서는 「스포츠의 교력강화방안」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국제스포츠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스포츠인력의 전문성과 활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장·단기별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표 5-23 국제스포츠인력 강화 방안

구 분	사 업 명	대 상
단기정책	인력풀 구성	국제체육기구 임원, 전현직 외교관, 대학교수, 기업체 임원 등
	외국어능력 향상 지원	심판, 코치, 국가대표급 선수
중장기정책	어학연수 프로그램 개설	체육단체 임직원, 메달리스트, 국제심판 등
	인력 고급화를 위한 학위과정 지원	메달리스트 및 국가대표 선수
	외교 전문성 배양 프로그램(국제스포츠기구 파견)	체육단체 임직원
	외국어능력 향상 지원	심판, 코치, 국가대표급 선수

이에 따라 2003년과 2004년에는 국외 어학연수와 국제기구 파견 등 ‘전문성배양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올림픽메달리스트인 전이경 외 2명을 선발하여 미국 세인트마이클대학 및 미국올림픽위원회, 아테네올림픽조직위원회에 파견하였으며, 2005년에는 과거에 추진하다 중단되었던 국내 어학연수 사업을 재개하여 사설 어학과정 수강 지원, 전화영

어 수강 지원 외국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어학연수 과정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스포츠 외교 인력의 관련분야 적재적소 배치, 국제행사유치단 구성, 국제회의 참석 등 국제스포츠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첫 단계로서 초기데이터를 입력하였다. 2007년에는 스포츠외교전문가과정은 처음으로 경기대학교에 개설된 이후 2008년 제 2기는 경기대학교, 2009년 제 3기는 경희대학교, 2010년 제 4기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였다.

2008년부터는 기존에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여온 사업에 더하여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도 차세대 국제스포츠인재양성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규모가 확대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기존에 추진되어 온 국내 및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어학연수와 학위과정 지원, 국제스포츠기구 파견 이외에 경기지도자 및 국제심판 등 국제자격 취득 지원,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스포츠전문인력 지원 사업이 2008년부터 새로이 실시되고 있다.

2012년 사업 실적을 보면,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진행한 초급과정에 40명,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한 국내 어학연수 중급과정에 40명, 미국 테네시대학교에서 실시된 국외 어학연수과정에 20명이 각각 참가하여 과정을 수료하였고, 해외 학위과정과 국제기구 인턴사원 파견 사업으로 각각 1명과 5명이 선정되어 사업에 참가하였다.

■ 표 5-24 국제스포츠인력 양성사업 운영실적

(단위 : 명, 2012. 12월 기준)

사업명	연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내 어학과정	전화영어	-	-	135	100	134	46	38	-	-	-	453
	사설어학과정	-	-	-	21	158	-	-	-	-	-	179
	초급과정	-	-	-	-	-	-	-	37(37)	38(38)	40(40)	115(115)
	중급과정(대학위탁)	-	-	13	7	-	3	40(40)	48(48)	44(44)	40(40)	195(172)
스포츠외교전문가과정					24	17	21	23	폐지		85	
국외어학연수	1	1	6	4	4	20(16)	18(14)	19(19)	16(16)	20(20)	109(85)	
해외학위과정	-	-	-	2	1	16(15)	10(9)	2(2)	-	1(1)	32(27)	
국제자격취득	-	-	-	-	-	-	46(46)	77(77)	53(53)	30(30)	206(206)	
국제기구파견	2	2	4	2	2	4(2)	14(11)	14(14)	7(7)	8(5)	59(39)	
국제전문인력지원	-	-	-	-	-	13(13)	35(35)	40(40)	32	36	156(88)	
연도별 계	3	3	158	136	323	119	222	260	190	175	1,589(732)	

※ 정책수혜자 수는 대한체육회 및 체육인재육성재단 사업 대상자 합계이며, 체육인재육성재단 사업 대상자는 괄호속 인원으로 표시함

※ 다년간 수혜자의 경우 선정연도에만 인원을 표시하였음

4. 국제체육기구 임원 진출

국제체육기구의 주요직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스포츠 영향력 확대는 물론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국가 경쟁력이 되기도 한다. 특히 IOC 산하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되는 것은 IOC에서 한 국가의 스포츠 위상은 물론 정치적·경제적 위상을 반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의 회장단과 집행위원 또는 이사로 진출하는 것은 해당 종목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기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현재 2명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비롯하여 국제스포츠기구와 국제경기연맹, 아시아경기연맹에 다수의 임원이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위원, 분과위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 인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표 5-25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활동 현황

(2012. 12. 기준)

직 위	성 명	피선년도	임기	국내직위	비 고
위 원	이건희	1996. 7	80세	대한체육회 이사	
선수위원	문대성	2008. 8. 21	8년	대한체육회 이사	

IOC 산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진출은 국제 스포츠의 국가간 관계로서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시도이다. 2012년 12월 현재 25여 개 분과위원회 가운데 3개의 분과에 4명이 분과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표 5-26>.

■ 표 5-26 IOC 산하 분과위원회(commissions) 위원 진출 현황

(2012. 12. 기준)

직 위	성 명	피선년도	임기	국내직위	비 고
국제관계분과위원	박용성	10. 3.31	4년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생활체육분과위원	최종준	10. 3.31	4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문대성	09. 6.19	4년	대한체육회 이사	
선수분과위원	문대성	08. 8.21	8년		

※ IOC. www.olympic.org

한편 국제경기연맹에 진출한 회장단과 사무총장, 또는 집행위원은 2012년 12월 현재 3개 종목의 회장, 9개 종목의 부회장, 3개 종목의 사무총장, 24개 종목의 집행위원, 24개 종목의 분과위원 등 총 45개 종목(올림픽 종목 29개, 그 외 종목 16개)에 총 105명이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표 5-27>.

■ 표 5-27 국제경기연맹 임원 진출 현황(2012. 12. 기준)

직 위	올림픽 종목	인원(명)	그 외 종목	인원(명)
회장	태권도, 배드민턴	2	정구	1
부회장	사이클, 바이애슬론, 태권도(2), 근대5종, 루지, 봅슬레이	7	검도, 바둑	2
사무총장	복싱	1	정구, 카바디	2
집행위원	육상, 탁구, 체조, 레슬링(2), 스키, 사격, 펜싱, 태권도(7), 카누, 근대5종, 컬링, 트라이애슬론	19	정구(2), 야구, 검도, 인라인롤러, 산악, 보디빌딩, 세팍타크로, 수중, 댄스스포츠, 오리엔티어링, 골프, 당구	13
분과위원	육상(2), 축구(2), 탁구(2), 핸드볼, 역도, 복싱(3), 빙상(2), 유도, 체조, 농구, 스키(6), 사격(2), 바이애슬론, 펜싱(2), 조정(2), 요트(4), 양궁(4),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39	정구(3), 야구(2), 수상·웨이크보드, 산악(3), 소프트볼	10
기타	육상(4), 축구, 탁구, 빙상, 배구, 양궁	9		-
소계		77		28
합계				105

※ 출처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

아시아경기연맹에서의 집행부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현재 24개 종목 회장, 19개 종목 부회장, 18개 종목의 사무총장, 15개 종목의 집행위원, 26개 종목의 분과위원 등 총 41개 종목(아시안게임 종목 44개, 그 외 종목 3개)에 총 205명이 선임되어 아시아권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표 5-28>.

■ 표 5-28 아시아경기연맹 임원 진출 현황(2012. 12. 기준)

직 위	아시안게임 종목	인원(명)	그 외 종목	인원(명)
회 장	사이클, 농구, 레슬링, 야구, 승마, 태권도, 조정, 양궁, 골프,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바둑,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요트, 댄스스포츠, 컬링, 축구, 핸드볼, 유도, 볼링, 스쿼시, 당구	24	산악(2)	2
부회장	정구, 탁구, 역도, 유도(2), 레슬링, 수영, 하키(2), 펜싱, 태권도(3), 배드민턴, 보디빌딩, 세팍타크로, 인라인롤러, 볼링, 소프트볼, 핸드볼, 농구, 스쿼시(2), 공수도	24	수상·웨이크보드	1
사무총장	역도, 사이클, 레슬링, 야구, 승마, 태권도(2), 조정, 양궁(2), 근대5종, 바둑,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당구, 축구, 농구, 볼링, 스쿼시	20	산악, 수중	2
집행위원	육상, 정구(2), 탁구, 체조, 배구, 럭비, 태권도(4), 근대5종, 보디빌딩, 우수, 빙상, 바이애슬론, 하키, 공수도, 농구	19		
분과위원	육상(2), 축구(18), 탁구(3), 핸드볼(9), 역도, 유도(3), 배구(4), 수영(7), 야구, 하키(10), 사격(2), 펜싱(3), 조정, 배드민턴(2), 인라인롤러(2), 양궁(4), 우수, 트라이애슬론(5), 댄스스포츠, 스쿼시, 빙상(2), 체조(6), 요트, 공수도(2), 카누(2), 테니스	94	수상·웨이크보드(5)	5
기타	육상(3), 핸드볼(3), 역도(2), 유도(2), 카바디, 승마, 카누, 당구	14		
소계		195		10
합계				205

※ 보디빌딩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는 포함되지 않음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

한편, 우리나라의 IOC 이외의 국제체육기구 임원 진출현황은 <표 5-29>와 같다.

■ 표 5-29 국제체육기구 임원 진출 현황(IOC 제외)

(2012. 12. 기준)

기구	직 위	성 명	피선년도	임기	국내직위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	OCA 부회장	박용성	2011. 7 선임	4년	KOC 위원장
	스포츠위원	최종준	2011. 7 선임	4년	KOC 사무총장
	스포츠와환경분과 위원장(집행위원)	유경선	2011. 7 재선임	4년	KOC 문화환경교육위원장
	의무위원	박원하	2011. 7 선임	4년	의무위원장
	교육위원	김동환	2011. 7 선임	4년	문화환경교육위원
	국제관계분과위원	문희중	2011. 7 선임	4년	국제위원, KOC 부속실장
	선수위원회	전이경	2011. 7 선임	4년	선수위원
	여성과 스포츠 위원회	김소희	2011. 7 선임	4년	국제위원
	고문위원	문대성	2011. 7 선임	4년	IOC위원
동아시아대회 협의회 (EAGA)	협의회위원	최종준	2010. 9	4년	KOC 사무총장
	협의회위원	김지영		4년	KOC 국제위원장
	규정기술분과위원	백성일	2009. 8	4년	KOC 국제협력본부장
	의무분과위원	박원하	2010. 9	4년	
국제대학스포츠연맹 (FISU)	FISU집행위원	김종량	2011. 8 재선임	4년	前 KUSB 위원장 한양대학교총장
	FISU명예위원	장철희	2011. 11 선임	4년	KUSB 상임위원
	CTI(기술위원회)	박남환	2011. 11 선임	4년	대학빙상경기연맹 부회장
	CIC(조정위원회)	유병진	2011. 11 재선임	4년	KUSB 위원장
	CM(의무위원회)	윤택림	2011. 11 선임	4년	전남대 의대 교수
	CESU (대학스포츠연구위원회)	홍양자	2011. 11 재선임	4년	KUSB 상임위원
	CEC(성평등위원회)	원영신	2011. 11 선임	4년	KUSB 상임위원
SC(학생위원회)	추 영	2011. 11 선임	4년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아시아대학스포츠연맹 (AUSF)	상임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장호성	2010. 9	4년	KUSB 부위원장
	감사	하용용	2010. 9	4년	KUSB 상임위원
세계체육기자연맹 (AIPS)	집행위원	박갑철	2010. 5	4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아시아체육기자연맹 (ASPU)	명예회장	박갑철	2012. 12 선임	중신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부회장	김경호	2012. 12 선임	4년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

※ 자료 : 대한체육회 내부자료

제3절 국제교류 현황

1.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우리나라가 2012년도에 참가한 국제종합경기대회는 제30회 런던하계올림픽대회, 제1회 인스부르크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제3회 하이양아시아비치경기대회, 제20회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이다. 이 4개의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장소 및 일시, 그리고 참가한 한국대표팀의 선수단 구성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 표 5-30 2012년도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현황

대회명	개최일	개최지	경기종목	참가국 인원	한국 참가 현황		
					인원 (선수/임원)	메달획득	순위
제1회 인스부르크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1.13~22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7종목	70개국 1,700명	49 (28/21)	금 6 은 3 동 2	4
제3회 하이양아시아비치경기대회	6.16~22	중국, 하이양	13종목	45개국 1,600명	63 (44/19)	금 6 은 7 동 10	3
제30회 런던하계올림픽대회	7.27~8.12	영국, 런던	26종목	204개국 10,500명	377 (248/129)	금 13 은 8 동 7	5
제20회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	8.23~29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11종목	4개국 958명	239 (230/9)	-	순위 집계 없음

1) 제1회 인스부르크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동계청소년올림픽은 2007년 7월 5일 과테말라에서 개최된 119차 IOC총회에서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의 강력한 지지로 IOC위원들의 만장일치 및 각국 NOC의 지지를 받으며 동하계올림픽에 이은 IOC의 공식 국제종합경기대회로 자리 잡았다.

청소년올림픽은 스포츠 행사와 함께 문화교육프로그램 (Culture and Education Program)을 병행하여 기존의 올림픽과의 차별성을 두었으며, 경기방식 역시 NOC 혼합팀, 남녀

혼성팀 등 이벤트성 세부종목을 추가하였다. 댄스, 요리, 등산 등 활동적 문화교육프로그램은 어린 선수들에게 유쾌하고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올림픽즘과 올림픽 가치를 소개하고 건강한 삶이 주는 이익, 반도핑, 각 대표들의 지역사회에서 스포츠대사로서의 역할과 같은 주요한 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가. 국가별 메달획득 현황

이번 대회에서 독일은 금 8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주최국 오스트리아가 3위, 4위 한국, 5위 러시아, 6위 네덜란드, 7위 스위스로 순위가 결정되고, 미국과 캐나다가 각각 10위와 15위의 기록을 달성하여 일반 하계올림픽대회와 달리 올림픽 TOP10 국가들의 기록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상위 입상국과 메달획득 현황 및 순위는 다음과 같다.

■ 표 5-31 국가별 메달획득 및 종합성적 현황

순위	국 가 명	금	은	동	계
1	독 일	8	7	2	17
2	중 국	7	4	4	15
3	오스트리아	6	4	3	13
4	한 국	6	3	2	11
5	러시아	5	4	7	16
6	네덜란드	3	1	2	6
7	스위스	3	-	5	8
8	일 본	2	5	8	15
9	노르웨이	2	5	2	9
10	미 국	2	3	4	9
11	프랑스	2	2	5	9
12	이탈리아	2	2	1	5
13	스웨덴	2	2	-	4
13	핀란드	2	2	-	4
15	캐나다	2	1	5	8
16	슬로베니아	1	4	2	7
17	체 코	1	1	-	2
18	말레이시아	1	-	-	1
18	슬로바키아	1	-	-	1
20	에스토니아	-	2	-	2
21	카자흐스탄	-	1	2	3
22	라트비아	-	1	1	2

순위	국 가 명	금	은	동	계
23	벨로루시	-	1	-	1
23	우크라이나	-	1	-	1
23	영 국	-	1	-	1
23	벨기에	-	1	-	1
27	안도라	-	-	1	1
27	몽 골	-	-	1	1
27	호 주	-	-	1	1

나.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성적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7개 종목에 참가하여 2종목(빙상 스피드, 빙상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빙상 종목에서만 획득하여 종목 간 평균화된 기량을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 종목인 쇼트트랙에서 4명이 출전하여 3명이 4개의 금메달을 획득하고 스피드 종목에서 2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획득하여 밴쿠버 동계올림픽 이후에 한국 스피드종목이 세계정상의 경기력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메달획득 현황은 <표 5-32>와 같다.

■ 표 5-32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성적

종류	세부 종목	선 수 명	기 록
금	스피드 500M(여)	장 미	81.68
	스피드 1,500M(여)	장 미	2:08.17
	쇼트트랙 1,000M(남)	임효준	1:29.284
	쇼트트랙 1,000M(여)	심석희	1:31.661
	쇼트트랙 500M(남)	윤수민	42.417
	쇼트트랙 500M(여)	심석희	44.122
	쇼트트랙 NOC 혼합릴레이	박정현 + 2개국	4:42.656
은	쇼트트랙 1,000M(남)	윤수민(남)	1:29.428
	쇼트트랙 500M(남)	임효준(남)	42.482
	스피드 MASS(여)	장수지(여)	6:01.06
	컬링 NOC 혼합더블	김은비 + 1개국	토너먼트
동	스피드 3,000M(남)	노혁준	4:14.41
	스피드 3,000M(여)	장수지	4:42.71
	쇼트트랙 NOC 혼합릴레이	심석희 + 3개국	4:42.668
	피겨 NOC 혼합 이벤트	박소연 + 2개국	14점

2) 제3회 하이양아시아비치경기대회

제3회 하이양아시아비치경기대회는 2012년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중국 하이양에서 개최되었다. 2008년 제1회 발리아시아비치경기대회를 시작으로 해양스포츠 및 비올림픽종목의 발전을 위해 2년 주기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의 참가종목은 아시아 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 : OCA) 주최 국제대회 비참가종목을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타 종목에 비해 국제대회 참가기회가 적은 종목들에 국제대회 참가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가. 대회 개요

이번 아시아비치경기대회는 45개 국가 팀의 1,600여명이 총 13개 종목의 경기에 참가하였다. 한국 팀은 6개 종목에 선수 44명이 참가하여 금 6, 은 7, 동 10개로 종합 순위 3위를 달성하여 OCA 주최 아시아비치경기대회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 표 5-33 역대 아시아비치경기대회 참가현황 및 경기성적

회	개최기간	개최지	참가규모	한국참가현황		순위
				선수단	메달획득	
1	2008. 10. 18 ~ 26	인도네시아 (발리)	45개국 (1,665명)	8종목 114명 (선수85/임원29)	금4, 은7, 동10	4
2	2010. 12. 8 ~ 16	오만 (무스카트)	43개국 (1,146명)	4종목 40명 (선수26/임원14)	금2, 은3	8
3	2012. 6. 16 ~ 22	중국 (하이양)	45개국 (1,338명)	6종목 63명 (선수44/임원19)	금6, 은7, 동10	3

나. 각 국가별 메달 집계

주최국 중국이 1위, 2위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 순 6위인 인도부터는 메달 획득 수가 상위권과 큰 편차를 보였으며 메달 획득 현황과 순위는 <표 5-34>와 같다.

■ 표 5-34 아시아버치경기대회의 각국 메달 획득

순 위	국가명	금	은	동	합계
1	중 국	14	10	11	35
2	태 국	13	9	7	29
3	대한민국	6	7	10	23
4	인도네시아	6	6	4	16
5	대 만	3	6	6	15
6	인 도	2	-	1	3
7	이 란	2	-	-	2
8	일 본	1	3	2	6
9	아프가니스탄	1	-	-	1
9	카타르	1	-	-	1
11	필리핀	-	2	2	4
12	베트남	-	2	1	3
13	카자흐스탄	-	1	1	2
13	파키스탄	-	1	1	2
15	바레인	-	1	-	1
15	투르크메니스탄	-	1	-	1
17	스리랑카	-	-	2	2
18	방글라데시	-	-	1	1
18	브루나이	-	-	1	1
18	라오스	-	-	1	1
18	몽 고	-	-	1	1
18	팔레스타인	-	-	1	1
18	싱가포르	-	-	1	1
계		49	49	54	152

다.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현황

이번 대회에서 한국 팀은 금 6, 은 7, 동 10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3위를 차지하였으며 각 선수별 메달획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5-35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성적

종류	종 목	세부 종목	선 수 명	기 록
금	롤러스케이팅	남 500m Sprint	이명규	40.040
		여 500m Sprint	신소영	42.944
		남 20000m Elimination	손근성	32:44.255
	스포츠클라이밍	여 Boulder	김자인	4t4 4b4
		여 Lead	김자인	Top
		남 Lead	민현빈	44+

종류	종 목	세부 종목	선 수 명	기 록
은	롤러스케이팅	남 200m Time-Trial	엄한준	17.088
		남 10000m Points	손근성	14점(14:49.959)
		여 200m Time-Trial	안이슬	19.008
		여 10000m Points	우효숙	15점(16:03.851)
		여 20000m Elimination	이 슬	41:37.351
	스포츠클라이밍	여 Lead	한스란	50
	수상스키	남 Wakeboard	지 훈	73.80점
동	롤러스케이팅	남 200m Time-Trial	이명규	17.253
		남 10000m Points	송승현	11점(15:05.053)
		여 200m Time-Trial	신소영	19.080
	스포츠클라이밍	남 Speed Relay	조승운, 박지환, 김자비	한국:베트남 46.61:64.89
		여 Speed Relay	사 슬, 김윤아, 한스란	
		여 Boulder	사 슬	1t1 4b6
		남 Boulder	민현빈	2t5 3b3
		남 Lead	박지환	32+
	수상스키	남 Waterski Tricks	정지민	3180점
		남 Wakeboard	정인상	70.02점

3) 제30회 런던하계올림픽대회

해방 후 처음으로 참가한 제14회 런던올림픽의 최빈국이던 한국이 64년이 흐른 2012년 'From London to London'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다시 찾은 런던은 우리의 향상된 스포츠 위상과 국격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스포츠외교와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가. 대회 개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30회 런던하계올림픽대회는 2012년 7월 27일부터 8월 12일 까지 17일간 204개국에서 10,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26개 종목에서 302개의 금메달을 놓고 서로의 기량을 겨루는 70억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스포츠 축제의 장이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22개 종목에 377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13개와 종합 5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 표 5-36 하계올림픽대회 개최 및 한국의 참가 현황

회수	개최년.월.일	개최지	경기 종목	참가국(인원)	한 국 참 가 현 황		순위
					인원(임원/선수)	매 달 획 득	
1회	1896. 4. 6 ~ 4.15	그리스 아테네	9	14개국 241명	불참		
2회	1900. 5.14 ~10.28	프랑스 파리	14	24개국 997명	불참		
3회	1904. 7. 1 ~11.23	미국 세인트루이스	12	12국 651명	불참		
4회	1908. 4.27 ~10.31	영국 런던	20	22개국 2,008명	불참		
5회	1912. 5. 5 ~ 7.27	스웨덴 스톡홀름	14	28국 2,407명	불참		
6회	1916년	독일 베를린	-	-	제1차 세계대전으로 무산		
7회	1920. 4.20 ~ 9.12	벨기에 안트워프	19	29국 2,626명	불참		
8회	1924. 5. 4 ~ 7.27	프랑스 파리	19	44국 3,089명	불참		
9회	1928. 5.17 ~ 8.1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6	46국 2,883명	불참		
10회	1932. 7.30 ~ 8.14	미국 로스앤젤레스	16	37국 1,332명	일본선수단으로 참가 김은배, 권태해(마라톤), 황을수(복싱)		
11회	1936. 8. 1 ~ 8.16	독일 베를린	21	49국 3,963명	일본선수단으로 참가 손기정, 남승룡(마라톤), 이성구, 장이진, 염은현(농구), 김용식(축구), 이규환(복싱)		
12회	1940년	-	-	제2차 세계대전으로 유산			
13회	1944년	-	-				
14회	1948. 7.29 ~ 8.14	영국 런던	18	59국 4,104명	67(17/50)	동2	32
15회	1952. 7.19 ~ 8. 3	핀란드 헬싱키	18	69국 4,955명	41(20/21)	동2	37
16회	1956.11.22 ~12. 8	호주 멜버른	18	72국 3,314명	57(22/35)	은1, 동1	29
	1956. 6.10 ~ 6.17	스웨덴 스톡홀름:송마	18	72국 3,314명	57(22/35)	은1, 동1	29
17회	1960. 8.25 ~ 9.11	이탈리아 로마	17	83국 5,338명	67(31/36)		
18회	1964.10.10~10.24	일본 동경	19	93국 5,151명	224(59/165)	은2, 동1	27
19회	1968.10.12~10.27	멕시코 멕시코시티	20	112국 5,516명	76(21/55)	은1, 동1	36
20회	1972. 8.26~ 9.11	서독 뮌헨	22	121국 7,134명	68(22/46)	은1	33
21회	1976. 7.17~ 8. 1	캐나다 몬트리올	21	92국 6,084명	72(22/50)	금1, 은1, 동4	19
22회	1980. 7.19~ 8. 3	소련 모스크바	21	80국 5,179명	불참		
23회	1984. 7.28~ 8.12	미국 로스앤젤레스	21	140국 6,829명	288(78/210)	금6, 은6, 동7	10
24회	1988. 9.17~10. 2	한국 서울	23	159국 8,391명	602(125/477)	금12, 은10, 동11	4
25회	1992. 7.25~ 8. 9	스페인 바르셀로나	25	169국 9,356명	344(97/247)	금12, 은5, 동12	7
26회	1996. 7.19~ 8. 4	미국 아틀란타	26	197국 10,318명	428(116/312)	금7, 은15, 동5	10
27회	2000. 9.15~10. 1	호주 시드니	28	199국 10,651명	398(114/284)	금8, 은10, 동10	12
28회	2004. 8.13~ 8.29	그리스 아테네	28	201국 10,625명	376(109/267)	금9, 은12, 동9	9
29회	2008. 8. 8~ 8.24	중국 베이징	28	204국 10,942명	389(122/267)	금13, 은10, 동8	7
30회	2012. 7.27~8.12	영국 런던	26	205국 10,500여명	377(129/248)	금13, 은8, 동7	5

가. 각 국가별 메달 집계

한국은 1948년 런던올림픽을 시작으로 제30회 런던하계올림픽대회까지 16회 연속으로 하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였다. 1984년 제23회 로스앤젤레스하계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6개를 획득하면서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1988년 제24회 서울하계올림픽대회에서 1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종합순위 4위에 입상하여 지금까지 개최된 올림픽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다. 이후 바르셀로나, 아틀란타, 시드니, 아테네, 베이징 그리고 런던까지 2000년 시드니하계올림픽을 제외하고는 하계올림픽에서 Top10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표 5-37>은 제30회 런던하계올림픽대회 종합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 표 5-37 제30회 런던하계올림픽대회 참가 국가별 메달획득 현황

순위	국 가 명	금	은	동	계
1	미 국	46	29	29	104
2	중 국	38	27	23	88
3	영 국	29	17	19	65
4	러시아	24	26	32	82
5	대한민국	13	8	7	28
6	독 일	11	19	14	44
7	프랑스	11	11	12	34
8	이탈리아	8	9	11	28
9	헝가리	8	4	5	17
10	호 주	7	16	12	35
11	일 본	7	14	17	38
12	카자흐스탄	7	1	5	13
13	네덜란드	6	6	8	20
14	우크라이나	6	5	9	20
15	뉴질랜드	6	2	5	13

개최국인 영국은 총 29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여 미국(46개), 중국(38개)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해 스포츠 강국으로의 급부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베이징올림픽에서 개최국 중국에 이어 2위로 뒤졌으나 이번 대회 46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다시 한번 1위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금메달 7개를 획득하여 종합 11위를 차지했다. 이중 금메달 4개(남자1개, 여자3개)를 레슬링에서 차지하였으며 은메달과 동메달을 합하여 38개의 메달을 13개 종목에서 획득하여 경쟁국가로서 다시 한 번 예의주시해야 할 상대임을 상기시켰다. 북한은 금메달 4개 중 3개를 역도에서 획득하여 종합 20위를 차지했다.

나.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현황

이번 대회에서 한국 팀은 금 13, 은 8, 동 7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5위를 차지하였다. 종목별로는 올림픽 기대종목인 양궁에서 남·여 개인 및 여자 단체에서 금 3개를,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 준 유도에서 금 2, 동 1개를, 사격에서 무려 금 3, 은 2개를 가져올 수 있었다. 런던올림픽 최고의 성적과 기량을 발휘한 펜싱은 베이징올림픽 이후 협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국제적 경기력을 갖춰 금 2, 은 1, 동 3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또한 체조 사상 첫 금메달과 레슬링의 부활(금 1), 축구의 동메달 획득은 앞으로 종목별 균형 발전 및 메달 다변화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자종목이던 태권도는 해외 선수들의 기량 상승과 경기방식 변경 등에 의해 금 1개와 은 1개를 추가하는데 그쳤고, 기대를 모았던 수영과 배드민턴, 탁구에서 각각 은 2, 동 1, 은 1개씩만을 가져왔다. 각 개인별 메달획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5-38 한국 선수단의 메달획득 성적

종류	종 목	세부 종목	선 수 명
금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66kg급	김현우
	사격	남자 10m 공기 권총	진종오
		남자 50m 권총	진종오
		여자 25m 권총	김장미
	양궁	남자 개인	오진혁
		여자 개인	기보배
		여자 단체	기보배, 이성진, 최현주
	유도	남자 81kg 이하급	김재범
		남자 90kg 이하급	송대남
	체조	남자 도마	양학선
	태권도	여자 67kg 이하급	황경선
	펜싱	남자 단체 사브르	구본길, 김정환, 오은석, 원우영
		여자 개인 사브르	김지연
은	사격	남자 50m 소총 3자세	김종현
		남자 50m 권총	최영래
	수영	남자 400m 자유형	박태환
		남자 200m 자유형	박태환
	탁구	남자 단체	오상은, 유승민, 주세혁
	태권도	남자 58kg 이하급	이대훈
	펜싱	여자 단체 에페	신아람, 정효정, 최은숙, 최인정
	복싱	남자 라이트급	한순철

종류	종 목	세부 종목	선 수 명
동	배드민턴	남자 복식	이용대, 정재성
	양궁	남자 단체	김법민, 오진혁, 임동현
	유도	남자 66kg 이하급	조준호
	축구	남자 단체	박주영 등 18명
	펜싱	남자 개인 에페	정진선
		남자 개인 플뢰레	최병철
여자 단체 플뢰레		남현희, 오하나, 전희숙, 정길옥	

4) 제20회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

한일 양국 청소년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 양국의 문화 및 역사 공유의 기회를 가지고 이를 통한 유대강화 및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1968년 창설된 이 대회는 ‘한일 고교 교환경기대회’란 명칭으로 출발하였다가 1981년에 이르러 ‘주니어종합경기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2년부터는 한중 수교에 발맞추어 중국이 동참하게 되었고, 마침내 1993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제1회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가 시작되었다.

2012년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제20회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는 한국 대표 239명, 광주 대표 219명, 중국 대표 247명, 일본 대표 253명 총 958명의 만 18세 이하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중일 각국 체육회가 추천한 주니어선수들이 참가하여 육상, 축구, 테니스, 정구, 탁구, 핸드볼, 역구, 농구, 배구, 럭비, 배드민턴의 11개 종목에서 겨루었다. 각 종목에서의 경기내용이 기록경신보다는 경기력 향상과 친선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참가국의 종합성적도 발표를 하지 않는 대회이다.

2.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파견

국가 간 체육교류증진을 위해 실시된 2012년도 종목별 국제경기대회(대한체육회 가맹 및 등록단체 종목 대회) 개최 및 파견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대회개최 지원

2012년도 대한체육회 가맹 및 등록단체의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대회는 총 35건으로,

이는 세계선수권대회 및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종목간 국가 교류를 통한 선진기술 습득 및 기술 향상을 도모하며, 국제대회를 국내에 개최함으로써 해당 종목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업에 지원된 집행액은 총 17억 2천3백만 원이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5-39, 40, 41>과 같다.

■ 표 5-39 2012년도 올림픽제패기념 지원 사업

연번	대 회 명	대회기간	장소	참가 규모
1	2012 국제그랑프리펜싱선수권대회	5.18~5.20	서울	25개국 215명
2	2012 코리아오픈배드민턴슈퍼시리즈	1. 3~1. 8	서울	30개국 289명

■ 표 5-40 2012년도 국내에서 개최된 종목별 국제대회 지원 사업(33건)

연번	대 회 명	대회기간	장소	참가 규모
1	2012 극동컵알파인스키대회	1.15~20	강원	3개국109명
2	제7회 아시아바이애슬론선수권대회	1.26~31	강원	5개국34명
3	2012 아시아태평양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	1.27~2.2	전주	5개국50명
4	달마오픈스노보드FIS컵	2.11	강원	2개국 183명
5	2012 아시아시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	2.16~19	구미	19개국270여명
6	아시아산악스키선수권대회	2.18~19	강원	3개국121여명
7	FIS 프리스타일 국제대회	3.2~3	강원	2개국 23명
8	2012 세계여자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3.10~16	태릉	6개국117명
9	KRA컵 CSI&CSIJ 서울 2012	4.18~23	과천	15개국80여명
10	2012 남원코리아오픈	4.21~29	남원	17개국 650여명
11	2012 아시아남.여역도선수권대회	4.22~30	평택	44개국239명
12	아시아게임제패기념 세팍타크로대회	4.24~30	서울	4개국55명
13	IDSF Interantional Open Standard&Latin	5.6	서울	23개국860여명
14	2012 코리아오픈국제탁구대회	5.16~20	인천	11개국149여명
15	2012 HSBC 아시아5개국대회 아랍에미리트전	5.24~27	한국	5개국110명
16	2012 그랑프리세계여자배구대회	6.8~10	부산	4개국52명
17	2012 동아시아컵여자소프트볼대회	6.14~18	대구	4개국64명
18	제8회 코리아오픈국제공수도선수권대회	6.27~7.2	부산	24개국350여명
19	2012 아시아주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7.9~15	김천	21개국224명
20	2012 아시아14세주니어테니스대회	8.25~9.7	문경	3개국115여명
21	2012 AAO(아시아)지역선수권대회	8.23~29	춘천	20개국106여명
22	제25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8.30~9.8	서울	12개국240명
23	아시아국제정구대회	9.3~9	문경	5개국50여명
24	아시아리그아이스하키 2012	9.15~12.31	서울	3개국177명
25	2012 수원세계3쿠션당구월드컵	9.18~23	수원	18개국128여명
26	2012 통영ITU트라이애슬론월드컵대회	9.19~23	통영	28개국1000여명
27	크라운해태국제BMX레이싱대회	10.6	서울	20개국45명

연번	대회명	대회기간	장소	참가 규모
28	제7회 국무총리배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	10.25~30	광주	66개국66명
29	제7회 Korea Open 국제태권도대회	10.25~30	경주	43개국1298명
30	아시아오세아니아주니어테니스대회	11.4~11	제주	13개국160여명
31	2012 세계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	11.6~11	광주	19개국 196명
32	코리아그랑프리골드배드민턴선수권대회	12.4~9	화순	26개국212명
33	2012 KRA코리아월드컵국제유도대회	12.6~7	제주	16개국161명

2)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및 국제대회 파견

2012년도에는 종목별 세계선수권 및 국제대회 참가 확대를 통한 경기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와 선진 기술 습득, 국가 간 우의증진을 목적으로 총 51건의 종목별 세계선수권 및 국제대회에 대표팀을 파견하였다.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에 따른 구체적인 종목별 파견내용은 <표 5-41>과 같다.

■ 표 5-41 2012년도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및 국제대회 파견

번호	종목	구분	대회명	기간	개최지
1	볼링	아시아	아시아청소년볼링선수권대회	1.31~2.11	이집트
2	테니스	기타	세계여자선수권대회	2.1~4	중국
3	사이클	아시아	제32회 아시아사이클선수권대회	2.8~18	말레이시아
4	바이애슬론	세계	2012 세계바이애슬론선수권대회	2.29~3.11	독일
5	체조	아시아	제12회 주니어아시아체조선수권대회	3.8~15	태국
6	하키	세계	런던올림픽 남자하키선수권대회	3.10~18	아일랜드
7	스키	세계	세계주니어스키선수권대회(프리스타일)	3.17~27	이태리
8	빙상	세계	세계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	3.22~25	네덜란드
9	탁구	세계	세계탁구선수권대회(단체전)	3.25~4.1	독일
10	펜싱	세계	세계청소년러시아펜싱선수권대회	3.28~4.4	러시아
11	트라이애슬론	아시아	아시아트라이애슬론선수권대회	4.5~9	일본
12	아이스하키	세계	세계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4.15~22	폴란드
13	유도	아시아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4.24~30	우즈벡
14	근대5종	세계	2012 근대5종세계선수권대회	5.3~15	이탈리아
15	역도	세계	2012 남녀주니어세계역도선수권대회	5.6~21	과테말라
16	바둑	세계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	5.11~18	중국
17	배드민턴	세계	세계남여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	5.20~27	중국
18	검도	세계	제15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5.24~27	이태리
19	카누	기타	ICF 카누스프린트 2차3차 월드컵	5.25~6.3	독일/ 러시아
20	축구	아시아	AFC 풋살챔피언십	5.25~6.1	아랍에미리트
21	농구	세계	FIBA U17세계남자농구선수권대회	6.26~7.10	리투아니아

번호	종목	구분	대회명	기간	개최지
22	핸드볼	세계	18회 세계여자주니어핸드볼선수권대회	7.1~14	체코
23	세팍타크로	세계	2012 세계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	7.2~8	태국
24	육상	세계	세계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	7.10~15	스페인
25	요트	세계	세계요트선수권대회	7.15~26	도미니카공화국
26	수중	세계	세계청소년핀수영선수권대회	7.16~23	오스트리아
27	력비	아시아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7.28~8.6	홍콩
28	조정	세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8.9~21	불가리아
29	우슈	아시아	아시아 우슈선수권대회	8.19~26	베트남
30	승마	세계	제10회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8.20~27	독일
31	댄스	기타	아시아퍼시픽댄스챔피언십	9.1~2	뉴질랜드
32	레슬링	세계	세계주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	9.1~11	태국
33	당구	세계	2012 세계3쿠션선수권대회	9.3~11	포르투갈
34	롤러	세계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대회	9.6~15	이탈리아
35	산악	세계	세계스포츠클라이밍선수권대회	9.9~18	프랑스 파리
36	배구	아시아	제16회 아시아청소년남자배구선수권대회	9.23~10.7	이란
37	골프	세계	세계아마추어팀골프선수권대회	9.27~10.7	터키
38	력비	기타	7인제력비월드컵아시아지역예선전	10.3~9	인도
39	유도	세계	2012 유도세계선수권대회	10.24~11.1	브라질
40	B.S	기타	2012 아메리카스컵대회	10.26~12.14	미국, 캐나다
41	보디빌딩	세계	66회 세계남자보디빌딩선수권대회	11.6~13	에콰도르
42	아이스하키	기타	2014 소치동계올림픽남자예선전	11.7~12	일본
43	스쿼시	세계	세계여자스쿼시선수권대회	11.12~17	프랑스
44	정구	아시아	제7회 아시아정구선수권대회	11.12~21	대만
45	수영	아시아	아시아수영선수권대회	11.12~20	UAE
46	루지	기타	2012 루지월드컵대회	11.16~25	오스트리아
47	컬링	기타	아시아태평양컬링선수권대회	11.18~25	뉴질랜드
48	공수도	세계	2012 세계공수도선수권대회	11.19~27	프랑스
49	야구	아시아	2012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11.28~12.3	대만
50	태권도	세계	제7회 WTF세계품새선수권대회	12.6~9	콜롬비아
51	핸드볼	아시아	아시아핸드볼선수권대회	12.7~16	인도네시아

6. 국제체육교류 지원

2012년도의 국제체육교류 지원 사업은 국제친선 및 교류 사업으로서 친선경기대회 개최 및 파견(32건),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9건), 체육교류 후속지원사업(11건) 등 52건

이 추진되었고, 국제기구 및 연맹 교류 사업으로서 국제스포츠기구 파견사업(8건), 국제기구 파견·초청 및 올림픽운동증진사업(22건), 국제연맹총회 참가지원사업(58건), 국제스포츠인재 회의 파견사업(2건), KOC 올림픽 아카데미 정규과정(1건) 등으로 91건의 사업이 수행되었다.

1) 국제친선 및 교류사업

가. 친선경기대회 초청 및 파견사업

2012년에 친선경기대회 초청 및 파견 사업으로 추진된 대회는 <표 5-42>와 같이 총 32개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1억 5천6백만 원이 집행되었다.

■ 표 5-42 2012년도 친선경기대회 초청 및 파견사업(32건)

번호	종목	구분	대회명	기간	개최지
1	산악	파견	2012 한중일 친선구조경기대회	1.13~20	일본
2	바둑	파견	Go Goodwill 토너먼트	1.29~2.2	태국
3	정구	파견	2012 다카마스아제리아컵 고교정구대회	2.9~14	일본
4	스키	파견	2012 한일 프리스타일대회	2.13~19	일본
5	럭비	파견	2012 한홍 국가대표테스트매치	5.3~6	홍콩
6	승마	파견	47회 한일 승마대회	5.10~13	일본 동경
7	소프트볼	파견	2012 한중 소프트볼친선교류전	5.26~6.4	중국
8	하키	초청	한뉴질랜드 여자하키대회	6.2~8	한국
9	핸드볼	파견	2012 한일 남녀핸드볼정기교류전	6.7~11	일본
10	역도	초청	2012 한중일 국제친선역도경기대회	6.16~20	한국 강원도
11	탁구	파견	2012 제16회 세계베테랑탁구대회	6.25~30	스웨덴
12	스쿼시	파견	한홍 정기교류전	7.2~6	홍콩
13	우슈	파견	한중일 태극권교류전	7.7~10	중국
14	골프	초청	제12회 네이버스컵3개국국가대표친선경기	7.18~20	제주도
15	아이스하키	초청	제17회 한일친선여자아이스하키대회	8.6~10	한국 고양
16	야구	파견	2012 칼립겐 월드시리즈	8.8~21	미국
17	조정	초청	제16회 한중친선교환경정경기대회	8.9~16	한국 구미
18	카누	파견	2012 한일친선카누경기대회	8.10~17	일본
19	보디빌딩	파견	제11회 한일친선보디빌딩대회	8.11~14	일본 센다이
20	배드민턴	파견	한일 배드민턴교류경기	8.17~21	일본 동경
21	세팍타크로	파견	2012한중 세팍타크로친선경기대회	8.13~20	중국
22	요트	파견	한중일 친선킬보트대회	9.1~6	중국 리자호

번호	종목	구분	대회명	기간	개최지
23	유도	파견	2012 몽골 월드컵친선유도경기대회	9.8~9	몽골
24	수상스키	초청	한중일 친선교환경기대회	9.21~23	한국 미사리
25	펜싱	파견	한중 펜싱교류전	10.23~30	중국 난징
26	당구	파견	2012 APBU 친선당구대회	10.29~11.4	대만
27	정구	파견	말레이시아컵 국제정구친선경기대회	11.1~6	말레이시아
28	사이클	파견	한일 국가대항사이클대회	11.2~8	일본
29	롤러	초청	2012 한대만친선교류전	11.16~21	한국
30	태권도	파견	WTF 세계태권도협회월드태권도대회	11.23~25	아루바산타크루즈
31	빙상	초청	한일 친선교환중.고스피드스케이팅 대회	11.30~12.4	한국 서울
32	공수도	초청	2012 국제친선공수도대회	12.8	부산

나.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사업

2012년에 수행된 국제체육교류 사업 중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사업은 총 9건이 수행되었으며 1억 7천만 원이 집행되었다. 이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표 5-43>과 같다.

■ 표 5-43 2012년도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사업

연번	사업명	종목	구분	기간	지원국
1	태권도 지도자파견	태권도	지도자	1.1~11.3	나이지리아
2	태권도 지도자파견	태권도	지도자	1.1~5.7	요르단
3	태권도 지도자파견	태권도	지도자	1.1~9.7	이집트
4	사격 용품지원	사격	용품지원	9월 중	방글라데시
5	축구 합동훈련 및 용품지원	축구	합동훈련/용품	4.18~7.27	미얀마
6	야구 지도자파견	야구	지도자	3.3~4.2	파키스탄
7	정구 스포츠용품지원	정구	용품지원	5.30~8.30	카자흐스탄,태국
8	사이클 지도자파견	사이클	지도자	9.1~12.31	스리랑카
9	농구 지도자파견 및 용품지원	농구	지도자/용품	10.1~12.31	부탄

다. 체육교류 후속지원 사업

이와 함께 2012년에 수행된 국가간 체육교류 후속지원 사업으로 총 11건이 수행되었다. 이들 사업은 1억 9천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표 5-44>와 같다.

■ 표 5-44 2012년도 국가간 체육교류 후속지원사업

연번	사업명	종목명	구분	기간	지원국
1	부탄 농구지도자파견	농구	지도자파견	1.1~6.30	부탄
2	폼새겨루기지도자파견	태권도	지도자파견	1.1~11.30	호주
3	캄보디아 축구지도자파견	축구	지도자파견	4.1~6.30	캄보디아
4	루마니아빙상선수단 합동훈련	빙상	합동훈련	5.15~6.5	루마니아
5	아시아 U-20아이스하키 합동훈련	아이스하키	합동훈련	5.27~6.1	중국,일본
6	피지 양궁선수초청훈련	양궁	초청훈련	6.15~7.14	피지
7	베트남몽골 체조 합동훈련 및 교류	체조	합동훈련/용품	6.20~11.5	베트남,몽골
8	한일바이애슬론 합동훈련	바이애슬론	합동훈련	6.24~7.6	일본
9	배드민턴 용품지원	배드민턴	용품지원	10.23~11.4	러시아, 베트남
10	태권도 용품지원	태권도	용품지원	12.20~31	파키스탄
11	태권도 용품지원	태권도	용품지원	12.20~30	몽골

2) 국제스포츠기구 교류사업

가. 국제스포츠기구 및 회의 파견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강화, 선진체육행정 체험 및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2012년도 시행한 사업은 국제스포츠기구 파견<표 5-45> 8건, 국제스포츠인재 회의 파견<표 5-46> 2건으로 총 3억 1천5백만 원이 집행되었다.

■ 표 5-45 2012년도 국제스포츠기구 파견사업(8건)

연번	기구명	기간	장소	파견자
1	미국올림픽위원회(USOC)	2011.10.4~2012.10.3(1년)	미국, 콜로라도스프링스	김두일 대한체육회 대리
2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LOCOG)	2011.9.7~2012.9.6(1년)	영국, 런던	김세화 대한체육회 대리
3	국제양궁연맹(FITA)	2012. 3~10월(8개월)	스위스, 로잔 및 미국	김수녕 메달리스트
4	싱가폴유도협회(SJF)	2012.3.8~2013.3.7(1년)	싱가폴	전기영 메달리스트
5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ITU)*	2012.4~9월(6개월)	캐나다, 밴쿠버 및 스위스, 로잔	이경언 체육인재육성재단 인턴
6	국제사이클연맹(UCI)*	2012.3.28~8.27(5개월)	스위스, 에글르	윤희태 대한사이클연맹 차장
7	국제스키연맹(FIS)	2013.3.21~9.20(6개월)	스위스, 오버호른	김클라라
8	아시아테니스연맹(ATF)	2013.1.29~2014.1.28(1년)	카자흐스탄, 알마티	박영미 대한테니스협회 과장

■ 표 5-46 2012년도 국제스포츠인재 회의 파견사업(2건)

연번	회의명	기간	장소	파견자
1	제52차 IOA 정기연수회	6.16~30	그리스, 올림피아	임상아
2	제8차 IOC 세계스포츠교육문화포럼	11.24~28	네덜란드, 암스텔담	최경환(대한양궁협회 국제전문인력)

나. 국제체육교류 지원 및 국제회의파견 사업

국제 스포츠계 흐름과 정보 파악 및 국제 스포츠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 기구파견초청 및 올림픽운동 증진사업<표 5-47>이 22건, 국제연맹총회 초청 및 파견 사업<표 5-48> 58건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2억 9천6백만 원이 집행되었다.

■ 표 5-47 2012년도 국제기구 파견·초청 및 올림픽운동 증진사업(22건)

연번	회의명	기간	장소
1	2012 IOC 불법베팅세미나	1.31~2.4	스위스, 로잔
2	IOC 여성과 스포츠 월드컨퍼런스	2.16~18	미국, LA
3	WCF(국제컬링연맹회장) 방한	2.22	서울
4	말레이시아 올림픽아카데미과정 파견	2.27~3.4	말레이시아, 칼라룸푸르
5	FIBT(국제봅슬레이연맹) 회장 방한	3.5~9	서울
6	IIHF(국제아이스하키연맹)회장 및 사무총장 방한	3.16~24	서울
7	일본올림픽위원회(JOC) 방한	4.2~3	서울 및 진천
8	ANOC총회 파견	4.11~19	러시아, 모스크바
9	IOC OVEP(올림픽기차교육프로그램) Continental Seminar	4.26~30	말레이시아, 칼라룸푸르
10	Sportaccord총회 파견	5.18~25	캐나다, 퀘벡
11	국제올림픽아카데미(IOA) 임원연수회	5.24~31	그리스, 올림피아
12	2012 올림픽의 날(Olympic Day Run) 행사	6. 2	서울, 올림픽공원
13	2012 AUSF집행위원회	6.6~13	중국, 하이양
14	국제올림픽아카데미(IOA) 정기연수회	6.16~30	그리스, 올림피아
15	2012 IOC생활체육분과위원회 파견	6.20~24	스위스, 로잔
16	2012 FISU임시총회	9.19~24	러시아, 카잔
17	IOC 불법스포츠도박세미나	9.25~28	스위스, 로잔
18	중국올림픽위원회(COC)대표단 방한	10.10	인천
19	제24기 KOC올림픽아카데미 정규과정	11.1~4	진천국가대표 선수촌
20	제6차 IOC 선수경력관리프로그램포럼 파견	11.8~12	미국,레이크플래시드
21	제8차 IOC 스포츠세계문화교육포럼 파견	11.24~28	네덜란드, 암스텔담
22	OCA 국제관계분과위원회 파견	12.8~10	인도네시아, 발리

■ 표 5-48 국제연맹총회 초청 및 파견 사업(58건)

연번	종 목	사업명	기 간	장 소
1	핸드볼	아시아핸드볼연맹총회	1.24~27	사우디아라비아
2	사이클	아시아사이클연맹총회	2.11~14	말레이시아
3	탁구	국제탁구연맹총회	3.27	독일
4	컬링	세계컬링연맹총회	3.31~4.8	스위스
5	복싱	아시아복싱연맹총회	4.9~12	카자흐스탄
6	사격	국제사격연맹총회	4.13~19	영국
7	수중	제35회 세계수중연맹총회	4.19~21	이탈리아
8	스쿼시	제32회 아시아스쿼시연맹총회	5.3~7	쿠웨이트
9	역도	국제역도연맹총회	5.10~12	과테말라
10	아이스하키	국제아이스하키연맹총회	5.14~21	핀란드
11	검도	국제검도연맹총회	5.23~27	이탈리아
12	축구	국제축구연맹총회	5.24~25	헝가리
13	배드민턴	세계 배드민턴연맹총회	5.26	중국
14	럭비	아시아 럭비연맹 중간회의	6.2~5	말레이시아
15	BS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총회	6.8~11	러시아
16	빙상	제54회 국제빙상연맹총회	6.11~15	말레이시아
17	루지	제60차 국제 루지연맹총회	6.13~18	라트비아
18	댄스	세계댄스스포츠연맹총회	6.14~17	독일
19	세팍타크로	세계세팍타크로연맹총회	7.3~5	태국, 치앙마이
20	테니스	국제테니스연맹총회	7.11~13	덴마크
21	우슈	아시아 우슈 연합회의	8.2	베트남
22	레슬링	국제레슬링연맹총회	8.2~13	영국
23	조정	국제 조정연맹총회	8.17	불가리아
24	수상스키	AAO지역 아시아수상스키연맹총회	8.26	한국,춘천
25	바이애슬론	IBU 바이애슬론 연맹총회	8.29~9.4	이탈리아
26	볼링	아시아볼링연맹총회	8.31~9.5	홍콩
27	롤러	국제 스피드 위원회 정기총회	9.7	이태리
28	조정	아시아조정연맹총회	9.13~17	중국
29	댄스	아시아댄스연맹총회	9.15~18	마카오
30	배구	제33차 국제배구연맹총회	9.19~21	미국
31	사이클	국제사이클연맹총회	9.20~24	네덜란드
32	테니스	아시아테니스연맹총회	9.21~22	필리핀
33	체조	아시아체조연맹총회	9.24~25	우즈베키스탄
34	아이스하키	아시아아이스하키연맹총회	9.24~30	일본
35	골프	국제 골프연맹총회	9.26	터키
36	펜싱	아시아펜싱연맹총회	10.2	인도네시아
37	스키	스키국제연맹 가을회의	10.2~7	스위스, 취리히

연번	종 목	사업명	기 간	장 소
38	카누	제34회 국제카누연맹총회	10.5~7	러시아
39	카누	아시아카누연맹총회	10.5~7	태국
40	컬링	세계컬링연맹총회	10.15~20	네덜란드
41	근대5종	국제 근대5종연맹총회	10.16~23	아르헨티나
42	트라이애슬론	국제 트라이애슬론 연맹 총회	10.17~22	뉴질랜드, 오클랜드
43	산악	아시아산악연맹총회	10.19~20	목포
44	체조	제79차 체조연맹 총회(국제)	10.25~28	멕시코, 칸쿤
45	바둑	아시아바둑연맹총회	10.25~10.30	한국,광주
46	요트	국제요트연맹총회	11.1~11	아일랜드
47	하키	국제하키연맹 총회	11.1~5	말레이시아
48	역도	아시아역도연맹총회	11.4~14	미얀마
49	승마	국제승마협회정기총회	11.5~9	터키
50	보디빌딩	제66차보디빌딩국제연맹총회	11.6~13	에콰도르, 과야킬
51	정구	제7차 아시아 정구연맹총회	11.14~21	중국
52	수영	아시아수영연맹총회	11.18	UAE
53	공수도	세계공수도연맹총회	11.19~27	프랑스, 파리
54	수중	세계수중연맹임시총회	11.21~26	이탈리아
55	배구	월드리그배구연맹총회	12.1	스위스
56	펜싱	국제펜싱연맹총회	12.6	러시아,모스크바
57	소프트볼	아시아소프트볼연맹총회	12.8~10	말레이시아
58	당구	UMB 세계당구연맹총회	12.21~23	스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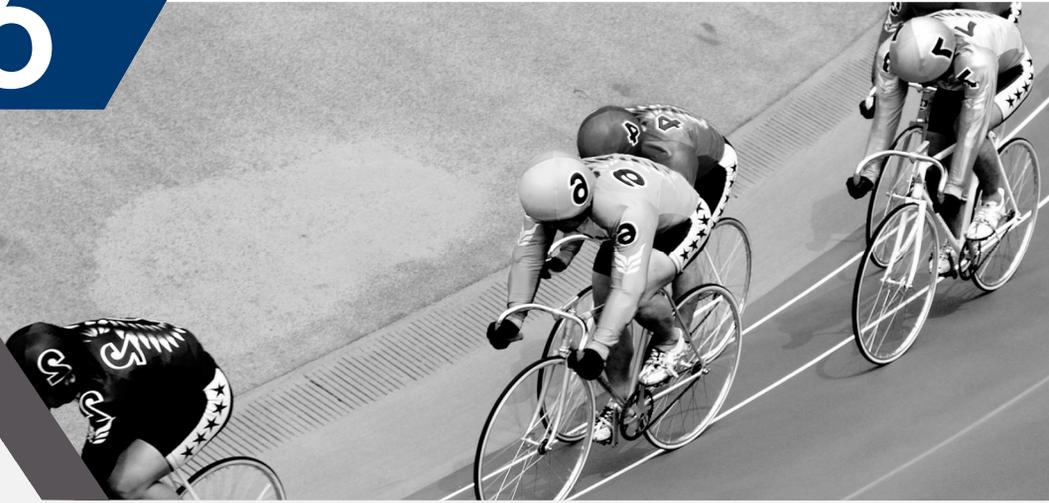
다. 바둑 종주국화 사업

국내 바둑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주 및 유럽지역 내 지도자를 파견하고 바둑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5-49 바둑의 종주국화 사업

사 업 명	세부 실적
온라인 바둑강좌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용 영문서버 구축 • 모바일 플랫폼 확대(안드로이드) • 해외바둑대회 프로모션
국제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40개 지역 바둑용품 지원 • 국제바둑지도자 파견 확대

06



장애인체육

- // 제1절 개관
- // 제2절 장애인체육 조직 및 재정
- // 제3절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

Section

06 장애인체육

제1절 개관

장애인체육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상처로 인해 발생한 전상자들이 재활과정에서 체육활동을 접하게 되면서 발전된 장애인스포츠 활동과 교육의 수단으로서 교과목에 특수교육이 반영되기 시작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체육은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와 1989년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라는 장애인체육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결성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장애인체육은 일반체육과 비교하였을 때 전문적인 체육 행정 시스템이 아닌 장애인복지차원에서의 행정 시스템이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국민체육’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였다. 이에 국민체육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논의가 학계와 장애선수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2005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한 법·제도적 기반구축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된 제 1차 장애인체육 진흥 중장기계획은 장애인체육을 ‘국민체육’이라는 범주로 인식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과정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2005년 7월)과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년 4월)과 동법 시행령의 시행(2008년 4월) 등 법적

뒷받침과 문화체육관광부 내 장애인체육과 설치(2005년 12월)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2005년 11월)과 같은 조직 기반이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체육의 본질인 건강 유지와 삶의 질 제고라는 가치가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구조는 일반체육과 동일하게 생활체육, 전문체육(국제체육 포함), 학교체육의 구분을 가지지만, 이에 더하여 재활체육(보건복지부)의 범주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 관련 지원 정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사업 중복성이나 지원 제한 등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졌다. 또한 일반체육에서는 연령별·성별 스포츠 경험(스포츠로의 사회화)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인체육에서는 연령과 성별 외 장애유형별 스포츠 경험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종목별 지원을 통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표 6-1>. 지속적인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의 증가, 관련정책 및 사업지원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나, 향후 조직 개편 및 관련 사업의 조정 등을 통해 발전된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즉, 스포츠로의 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타자(준거 집단)인 가족, 친구(동료), 학교, 지역사회, 대중매체와 더불어 복지서비스 기관을 포괄하는 수요자 중심형 정책이 필요하다.

■ 표 6-1 체육구조별 정부 및 민간조직

체육구조	장애인체육	일반체육
생활체육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국민생활체육회
전문체육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학교체육		
재활체육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없음

2012년 우리부는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시도지부, 가맹경기단체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접근성 강화 및 참여유도, 장애인 전문체육 선수 체계적 육성으로 경기력 강화, 장애인 국제스포츠교류 및 대회참가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 이천 훈련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훈련환경 제공을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청소년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교실지

원, 생활체육클럽지원,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어울림대회, 동호인대회, 종목별생활체육축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한 결과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10.6%를 달성하였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국내대회 지원을 통해 가맹단체별 국내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판강습회, 등급분류강습회 등의 국제전문체육교류 지원을 통해 장애인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동·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여 전문체육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을 대비하여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특별훈련, 후보선수 훈련지원,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 사업을 실시하였고, 장애인올림픽에 미참가 하는 종목의 상시훈련을 지원하여 전반적인 장애인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선수단은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에 참가하여 종합 12위의 성적을 달성(금 9, 은9, 동9)하였다.

이천훈련원 2단계 건립공사는 훈련여건 개선과 경기력 향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고, 장애인스포츠실업팀 창단지원사업과 장애인체육 경기력향상 종합계획 수립은 장애인 선수의 체계화된 훈련환경 지원, 제2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장애인체육 선진국 도약은 향후 우리나라가 장애인체육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

제2절 장애인체육 조직 및 재정

1. 국내 장애인체육 조직 변천과정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의 역사는 1950년 한국전쟁, 1960년대 월남전에 참전한 상이 용사들에게 재활수단으로서의 체육활동이 시초가 되었고, 특수학교에서 교과목 시행 및 운동부 창설, 대회 개최 및 참가 등과 함께 시작되었다.

재활수단으로 시작한 장애인체육은 치료나 재활측면에서의 접근으로 장애인체육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부족, 정부 지원의 취약 등으로 장애인체육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체육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 담당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전체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을 확산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현재 재활체육 영역을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가 담당하는 비합리적 구조를 정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정부는 장애인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장애인체육업무를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하여 2005년 7월 29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내에 장애인체육과를 신설하여 장애인체육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체육진흥과 관련한 장애인체육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자치단체는 장애인체육전담 부서 및 공무원이 없거나 사회·복지 또는 일반체육 분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민간조직 분야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2005년 11월) 이후로 장애인생활체육과 전문부서를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6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의 설립 완료(2008년 2월) 후 최근에는 시도별로 원활한 장애인체육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군·구 지부를 설립하고 있다.

■ 표 6-2 국내 장애인체육 발전과정

구 분	주 요 내 용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 이전 (1960~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스포츠회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원호청 창설(1961) • 국제적수장애인경기대회 참가(1965~) • 제1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개최(1967) - 특수학교 체육활동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학생 야구 및 유도, 탁구대회(1960~70년대) • 서울농학교 배구부 창단 (1962) - 국내 장애인체육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건립(1975) • 전국지체부자유 대학생연합체육대회 개최(1978)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1981~) • 국제뇌성마비경기대회(육상) 참가(1982)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 이후 (1988~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8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 - 장애인체육 조직 창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개편(1999) =>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개편(2008) - 학문적 토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특수체육학회 창립(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특수체육학회지 창간(1993)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순회 개최 시작(2000년 인천) •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 시작(2003)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이관 이후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05. 7) • 대한장애인체육회(2005.11) 및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2006. 5)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시도지부 설립 완료(2008. 2) •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체육과(현 장애인문화체육과) 신설(2005.12) •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및 발표(2007. 7)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명문화, 동법 시행령 제정(2008. 4) •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부활(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2008. 10) • 인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개원(2009. 10) • 2018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평창 유치확정(2011. 7) •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2013. 1)

2. 대한장애인체육회

1) 설립배경 및 목적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 분야의 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설립(2005년 11월 25일)된 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임무가 있다<표 6-3>.

■ 표 6-3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주요 임무(기능)

구분	내용
주요 임무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 • 국내·외 장애인체육경기대회의 개최·참가와 국제스포츠포교류 • 장애인 선수 양성,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 장애인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장애인 선수·체육지도자·유공자의 복지향상 • 장애인 체육시설·경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조직 및 인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회장 1인, 부회장 5인, 사무총장 1인, 이사 17인, 감사 2인 등 총 2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이사 3인 결원 제외), 사무처는 감사실을 포함한 1원 1실 8부(이천 훈련원 포함)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그림 6-1).

3) 시·도지부 운영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정관 제54조에 근거하여 전국의 균형 있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 또는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 되는 16개 시·도지부 설립을 완료<표 7-4>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 지역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 각 가맹단체와 각급 장애인체육회의 육성 및 지도 감독
-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장애인체육 생활화 사업 전개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훈련 및 참가
-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 장애인체육의 육성 및 보급
-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육성
- 특수학교 및 장애학생체육의 육성
- 장애인체육 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등

그러나 각 시도 장애인체육회는 사무처를 구성하면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팀과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팀으로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통일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 향후 운영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건에 따라 승인(2012년 12월 현재 42개 지부, <표 6-4>) 및 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향후 시·군·구 장애인체육지회의 설립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해 연계성의 원칙, 자율성 확보의 원칙, 지방조직의 육성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설립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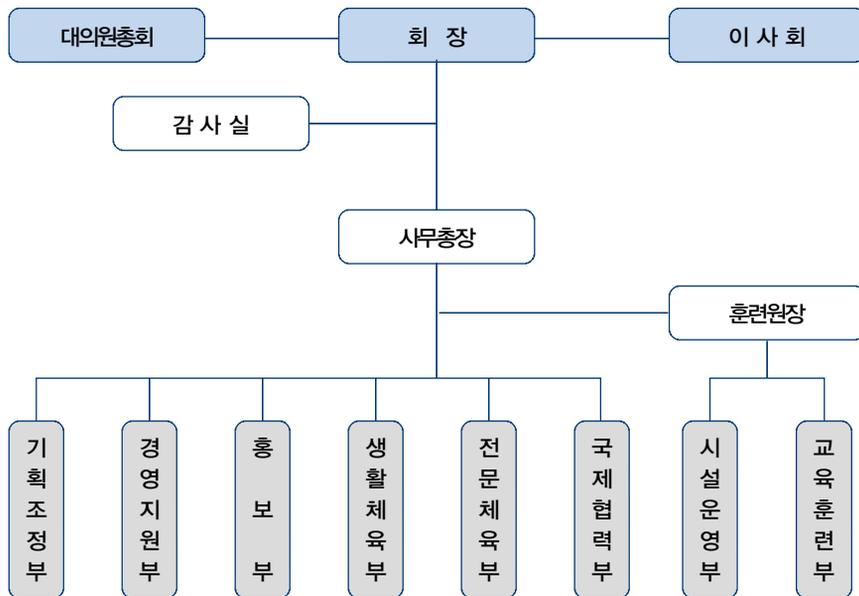


그림 6-1 대한장애인체육회 조직도('12. 12월 기준)

■ 표 6-4 사·도 장애인체육회 현황('12. 12월 기준)

연번	지부승인	단 체 명	소 재 지	설립일	시군구 지부(42개소)
1	07.04.05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07.03.30	노원구, 은평구
2	07.05.22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06.12.07	사상구
3	06.09.27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06.07.27	-
4	07.06.07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인천광역시 남구	07.04.11	-
5	07.08.27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광주광역시 서구	07.07.18	-
6	07.05.22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전광역시 중구	07.05.04	서구
7	08.02.01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울산광역시 중구	08.01.17	중구
8	06.12.29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 수원시	06.11.20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의정부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이천시, 구리시, 양주시, 하남시
9	07.08.27	강원도장애인체육회	강원도 춘천시	07.05.30	속초시, 양양군
10	06.12.29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충청북도 청주시	06.12.18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옥천군, 보은군, 진천군
11	07.04.05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충청남도 예산군	07.01.17	서산시, 공주시, 천안시, 보령시, 계룡시, 홍성군, 예산군
12	06.12.29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전라북도 전주시	06.12.26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순창군
13	07.12.28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전라남도 무안군	07.11.02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14	07.05.03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경상북도 경산시	07.04.10	포항시
15	06.12.29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경상남도 창원시	06.07.18	-
16	07.04.05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7.02.14	-

※ 2013년 하반기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설립예정

3. 가맹경기단체 및 등록선수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는 종목별 경기단체 27개, 유형별 체육단체 4개로 총 31개이며, 인정단체 10개를 포함할 경우 총 41개이다. 각 가맹경기단체는 사·도지부(총 357개 지부)를 두어 활동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6-5>에서 보는 바와 같다.

■ 표 6-5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현황('12. 12월 기준)

구 분	가 맹 경 기 단 체 명	창립일	가맹일	사도지부	비 고
1	대한장애인골볼협회	2006.02.03	2006.04.27	13	종목별 경기단체
2	대한장애인농구협회	1997.04.25	2006.04.27	12	
3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2002.07.28	2006.04.27	12	
4	대한장애인력비협회	2004.12.19	2006.04.27	12	
5	대한장애인론볼연맹	1992.05.16	2006.04.27	16	
6	대한장애인배구협회	2006.02.26	2006.04.27	13	
7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2000.02.15	2006.04.27	16	
8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2006.03.18	2006.04.27	13	
9	대한장애인볼링협회	2002.12.12	2006.04.27	16	
10	대한장애인사격연맹	1997.04.15	2006.04.27	12	
11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1993.07.10	2006.04.27	11	
12	대한장애인수영연맹	2003.03.22	2006.04.27	10	
13	대한장애인스키협회	2001.10.20	2006.04.27	3	
14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2003.02.21	2006.04.27	4	
15	대한장애인양궁협회	2004.04.04	2006.04.27	10	
16	대한장애인역도연맹	1996.02.28	2006.04.27	13	
17	대한장애인요트연맹	2006.12.15	2007.10.16	8	
18	대한장애인유도협회	1988.03.26	2009.09.18	8	
19	대한장애인육상연맹	2002.02.25	2006.04.27	13	
20	대한장애인조정연맹	2006.07.08	2006.07.31	10	
21	대한장애인축구협회	2007.07.16	2008.03.14	11	
22	대한장애인컬링협회	2007.03.27	2007.10.16	8	
23	대한장애인탁구협회	1993.08.20	2006.07.31	16	
24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2006.04.02	2009.09.18	16	
25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1993.09.20	2006.04.27	13	
26	대한장애인펜싱협회	2004.11.28	2006.04.27	12	
27	대한장애인승마협회	2011.04.28	2012.03.15	16	
28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1978. 05. 01	2006. 04. 27	4	유형별 체육단체
29	대한농아인체육연맹	1982. 12. 30	2006. 07. 31	16	
30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2006. 01.18	2006. 04. 27	16	
31	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	2005. 08. 20	2006. 04. 27	4	
32	대한장애인검도협회	2005. 10. 23	2009. 05. 27	인정단체	
33	대한장애인골프협회	2004. 09. 19	2007. 10. 16		
34	대한장애인바둑협회	1999. 07. 25	2007. 10. 16		
35	대한장애인다트연맹	2007. 04. 13	2007. 10. 16		
36	대한장애인소프트볼협회	2007. 06. 15	2007. 10. 16		
37	대한장애인 e-스포츠연맹	2008. 09. 24	2009. 05. 27		
38	대한장애인당구연맹	2009. 01. 31	2009. 05. 27		
39	대한장애인게이트볼연맹	2008. 11. 11	2010. 02. 19		
40	대한장애인수상스키협회	2010. 10. 03	2011. 12. 17		
41	대한장애인궁도협회	2010. 11. 28	2011. 12. 27		

※ 인정단체의 경우 시도지부 현황 제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08년 2월부터 선수등록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각 경기단체 별 선수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시도별 가맹경기단체 등록선수는 <표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2개 단체에 13,057명(남 10,027명, 여 3,030명)이 등록되어 있다. 이는 전년도 12,318명에 비해 약 5.7%(739명)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11년도에 비하여 가맹경기단체 수 증가 및 해당 선수 수 증가, 일부 인정단체 등록 선수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종목별 등록 선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론볼(총 1,363명: 남 913명, 여 450명)이며, 그 다음으로는 축구(총 1,308명: 남 1,254명, 여 54명), 탁구(총 1,203명: 남 909명, 여 294명), 육상(1,201명: 남 846명, 여 355명), 게이트볼(1,039명: 남 756명, 여 283명)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지체장애인과 지적 장애인 참가 위주 종목의 선수 수가 많았다(축구의 경우 청각장애인 영향). 또한, 등록 선수를 남녀별로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남자선수들에 비해 여자선수들의 비율(약 23.9%)이 여전히 낮지만 전년도 대비 약 9.7%(28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도별로는 경기도(총 1,848명: 남 1,401명, 여 447명)와 서울특별시(총 1,528명: 남 1,194명, 여 334명)의 등록 선수가 가장 많아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편중 현상이 심하였으며, 경남(총 998명: 남 780명, 여 218명), 대전(총 773명: 남 578명, 여 195명)과 인천(총 771명: 남 595명, 여 176명)으로서 시도별 평균 약 816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위 4개 사도를 제외한 12개 시도 모두 평균 이하인 500-700명 내외의 선수가 등록되어 있어 지역별 편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된 결과가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선수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표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단/기타장애(총 4,954명: 남 3,710명, 여 1,244명)와 지적장애(총 3,198: 남 2,515, 여 683)가 가장 많고, 청각장애(총 1,459명: 남 1,056, 여 403)와 척수장애(총 1,322명: 남 1,112, 여 210), 뇌성마비(총 1,069명: 남 855, 여 214), 시각장애(총 1,055명: 남 779, 여 276)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장애선수가 총 487명(남 286, 여 201) 등록되어 있고, 종목별로 남녀혼성인 종목은 사이클 38명(남 27, 여 11), 론볼 157명(남 60, 여 97), 댄스스포츠 132명(남 57, 여 75)이고, 축구 31명과 농구 61명은 종목 특성에 따라 남성만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선수등록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7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가맹된

경기단체나 인정단체의 경우 선수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가맹경기단체의 적극적인 선수 등록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 표 6-6 시도별 가맹경기단체 등록 선수 현황

(단위 : 명)

시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양궁	6	4	10	8	0	8	6	1	7	0	2	2	8	4	12	6	0	6
육상	111	33	144	66	17	83	41	27	68	39	7	46	22	10	32	51	20	71
배드민턴	30	13	43	27	14	41	25	8	33	27	12	39	42	21	63	25	18	43
보치아	68	23	91	20	5	25	5	3	8	15	4	19	22	11	33	9	7	16
사이클	20	2	22	7	2	9	16	3	19	0	0	0	5	0	5	5	3	8
휠체어펜싱	4	0	4	0	0	0	1	0	1	0	0	0	3	0	3	0	0	0
골볼	8	7	15	6	0	6	14	10	24	4	0	4	0	0	0	7	0	7
유도	10	4	14	11	0	11	6	1	7	2	6	8	0	0	0	18	2	20
론볼	119	32	151	74	28	102	81	19	100	58	33	91	33	14	47	35	27	62
역도	36	13	49	33	10	43	31	17	48	22	13	35	19	3	22	31	11	42
사격	18	4	22	7	3	10	12	3	15	17	5	22	8	0	8	8	1	9
축구	117	0	117	72	3	75	90	2	92	84	0	84	72	2	74	70	3	73
수영	78	26	104	48	17	65	22	7	29	20	7	27	29	11	40	30	14	44
탁구	90	23	113	28	9	37	56	17	73	66	24	90	54	14	68	49	24	73
배구	23	10	33	0	0	0	18	10	28	10	0	10	21	9	30	0	0	0
농구	64	7	71	27	0	27	27	0	27	50	0	50	11	0	11	46	0	46
휠체어테니스	11	3	14	2	0	2	13	2	15	10	0	10	5	3	8	5	0	5
볼링	50	16	66	34	21	55	28	16	44	36	14	50	34	14	48	50	25	75
휠체어럭비	21	1	22	13	3	16	10	1	11	0	0	0	5	1	6	21	2	23
파크골프	48	20	68	37	15	52	13	6	19	24	10	34	27	9	36	18	3	21
조정	21	10	31	11	8	19	7	3	10	18	9	27	7	7	14	15	12	27
댄스스포츠	5	5	10	0	3	3	4	2	6	7	3	10	1	6	7	2	1	3
요트	2	0	2	7	2	9	1	3	4	0	0	0	0	0	0	0	0	0
스키	19	10	29	4	2	6	13	8	21	6	3	9	4	0	4	3	0	3
아이스하키	13	0	13	0	0	0	6	0	6	0	0	0	0	0	0	0	0	0
휠체어컬링	7	3	10	5	1	6	8	2	10	6	2	8	4	1	5	4	1	5
당구	24	3	27	14	1	15	8	0	8	6	0	6	13	0	13	29	1	30
태권도	8	5	13	1	0	1	0	0	0	0	0	0	2	2	4	17	7	24
e스포츠	4	0	4	6	0	6	10	0	10	21	2	23	0	0	0	3	0	3
게이트볼	147	56	203	0	0	0	13	5	18	22	10	32	31	12	43	21	13	34
플로어볼	8	0	8	0	0	0	10	0	10	0	0	0	0	0	0	0	0	0
디스크골프	4	1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1,194	334	1,528	568	164	732	595	176	771	570	166	736	482	154	636	578	195	773

■ 표 6-6 시도별 가맹경기단체 등록 선수 현황(계속)

(단위 : 명)

시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양궁	2	3	5	7	2	9	0	0	0	3	0	3	2	0	2	4	0	4
육상	35	24	59	103	33	136	40	20	60	58	36	94	31	11	42	70	34	104
배드민턴	9	3	12	51	15	66	25	6	31	28	6	34	21	8	29	13	8	21
보치아	12	7	19	33	12	45	33	6	39	27	7	34	16	4	20	26	6	32
사이클	7	2	9	17	1	18	18	7	25	10	3	13	3	0	3	3	0	3
휠체어펜싱	0	1	1	5	4	9	6	1	7	7	4	11	6	2	8	2	0	2
골볼	6	0	6	6	0	6	0	0	0	16	5	21	10	9	19	50	0	50
유도	5	0	5	12	10	22	5	0	5	4	3	7	3	2	5	0	0	0
론볼	46	17	63	80	42	122	36	6	42	80	26	106	45	28	73	42	30	72
역도	33	31	64	44	8	52	25	10	35	51	23	74	22	10	32	16	5	21
사격	3	0	3	30	5	35	9	4	13	7	1	8	6	4	10	19	6	25
축구	64	1	65	128	19	147	88	2	90	77	0	77	44	0	44	55	0	55
수영	11	9	20	102	32	134	6	3	9	28	5	33	7	1	8	16	7	23
탁구	23	6	29	147	59	206	51	16	67	23	3	26	89	38	127	21	4	25
배구	8	0	8	19	0	19	20	0	20	9	0	9	11	0	11	27	0	27
농구	44	2	46	47	16	63	51	1	52	36	0	36	31	0	31	16	0	16
휠체어테니스	5	0	5	19	3	22	4	0	4	7	3	10	7	0	7	7	0	7
볼링	18	15	33	107	48	155	14	6	20	33	8	41	21	8	29	16	10	26
휠체어러키	0	0	0	14	3	17	7	1	8	10	0	10	6	3	9	0	0	0
파크골프	9	3	12	136	42	178	16	4	20	14	8	22	23	6	29	6	3	9
조정	5	6	11	35	16	51	1	0	1	19	12	31	18	7	25	3	0	3
댄스스포츠	6	8	14	14	8	22	9	3	12	0	0	0	2	1	3	5	0	5
요트	3	0	3	6	0	6	0	0	0	0	0	0	3	1	4	0	0	0
스키	3	2	5	10	6	16	14	4	18	6	7	13	4	0	4	4	1	5
아이스하키	0	0	0	12	0	12	11	0	11	0	0	0	0	0	0	9	0	9
휠체어컬링	0	0	0	11	3	14	5	2	7	4	2	6	5	2	7	4	1	5
당구	13	8	21	44	9	53	8	0	8	16	2	18	25	2	27	11	0	11
태권도	1	0	1	6	0	6	0	0	0	0	1	1	2	2	4	4	0	4
e스포츠	4	1	5	27	4	31	8	0	8	6	4	10	6	0	6	5	2	7
게이트볼	2	2	4	119	47	166	11	5	16	100	29	129	14	4	18	9	12	21
플로어볼	0	0	0	6	0	6	0	0	0	0	0	0	0	0	0	9	0	9
디스크골프	0	0	0	4	0	4	0	0	0	0	0	0	0	0	0	2	2	4
소계	377	151	528	1,401	447	1,848	521	107	628	679	198	877	483	153	636	474	131	605

■ 표 6-6 시도별 가맹경기단체 등록 선수 현황(계속)

(단위 : 명)

시도 종목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양궁	6	1	7	4	1	5	4	0	4	0	0	0	66	18	84
육상	29	18	47	46	28	74	66	21	87	20	15	35	828	354	1,182
배드민턴	21	2	23	35	15	50	20	2	22	10	4	14	409	155	564
보치아	23	3	26	13	4	17	27	3	30	8	3	11	357	108	465
사이클	0	0	0	3	0	3	7	2	9	6	3	9	127	28	155
휠체어펜싱	6	0	6	0	0	0	0	0	0	3	0	3	43	12	55
골볼	5	0	5	4	0	4	6	9	15	0	0	0	142	40	182
유도	8	0	8	12	3	15	4	0	4	0	0	0	100	31	131
론볼	49	23	72	32	7	39	21	4	25	22	17	39	853	353	1,206
역도	17	9	26	28	25	53	10	11	21	5	1	6	423	200	623
사격	5	2	7	4	1	5	22	5	27	4	0	4	179	44	223
축구	52	0	52	76	2	78	97	17	114	37	3	40	1,223	54	1,277
수영	17	5	22	18	5	23	49	14	63	25	10	35	506	173	679
탁구	44	5	49	66	24	90	87	23	110	15	5	20	909	294	1,203
배구	21	0	21	0	0	0	7	9	16	10	7	17	204	45	249
농구	0	0	0	21	0	21	6	0	6	21	0	21	498	26	524
휠체어테니스	7	0	7	0	0	0	4	2	6	3	0	3	109	16	125
볼링	15	8	23	34	18	52	32	14	46	22	11	33	544	252	796
휠체어러كب	0	0	0	12	3	15	15	1	16	0	0	0	134	19	153
파크골프	15	5	20	66	29	95	23	8	31	24	11	35	499	182	681
조정	19	15	34	5	4	9	11	4	15	4	4	8	199	117	316
댄스스포츠	3	3	6	4	8	12	7	0	7	1	2	3	70	53	123
요트	0	0	0	0	0	0	7	1	8	6	1	7	35	8	43
스키	4	2	6	6	2	8	2	1	3	0	0	0	102	48	150
아이스하키	0	0	0	0	0	0	0	0	0	0	0	0	51	0	51
휠체어컬링	4	1	5	6	4	10	4	2	6	3	2	5	80	29	109
당구	47	9	56	17	3	20	18	5	23	20	2	22	313	45	358
태권도	2	0	2	3	0	3	2	0	2	17	10	27	65	27	92
e스포츠	16	2	18	5	0	5	21	0	21	12	1	13	154	16	170
게이트볼	6	2	8	41	8	49	187	60	247	25	15	40	748	280	1,028
플로어볼	0	0	0	0	0	0	7	0	7	0	0	0	40	0	40
디스크골프	0	0	0	0	0	0	7	0	7	0	0	0	17	3	20
소계	441	115	556	561	194	755	780	218	998	323	127	450	10,027	3,030	13,057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선수등록시스템(2012년 12월 기준)

■ 표 6-7 장애유형별 가맹경기단체 등록 선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절단/기타		시각		척수		뇌성		지적		청각		비장애	
	남	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양궁	66	18	84	40	17	0	0	26	1	0	0	0	0	0	0	0	0
육상	846	355	1,201	48	5	92	36	44	12	139	57	384	173	121	71	18	1
배드민턴	409	155	564	229	71	0	0	33	8	4	0	104	45	39	31	0	0
보치아	357	108	465	2	1	0	0	7	0	348	107	0	0	0	0	0	0
사이클	154	39	193	32	4	31	16	4	0	9	0	31	8	20	0	27	11
휠체어펜싱	43	12	55	31	8	0	0	12	4	0	0	0	0	0	0	0	0
골볼	142	40	182	0	0	142	40	0	0	0	0	0	0	0	0	0	0
유도	100	31	131	0	0	52	2	0	0	0	0	0	0	48	29	0	0
론볼	913	450	1,363	563	288	0	2	263	47	25	14	2	1	0	1	60	97
역도	423	200	623	100	32	48	9	7	0	2	0	206	132	60	27	0	0
사격	179	44	223	89	25	0	0	83	16	3	0	0	0	4	3	0	0
축구	1,254	54	1,308	0	0	117	0	0	0	195	0	589	28	322	26	31	0
수영	506	173	679	148	65	19	10	8	4	8	5	302	69	21	20	0	0
탁구	909	294	1,203	407	114	53	36	270	56	22	1	106	45	51	42	0	0
배구	204	45	249	168	45	0	0	0	0	0	0	0	0	36	0	0	0
농구	559	26	585	144	24	0	0	32	0	0	0	322	2	0	0	61	0
휠체어테니스	109	16	125	38	9	0	0	71	7	0	0	0	0	0	0	0	0
볼링	544	252	796	116	46	123	64	37	6	46	10	75	34	147	92	0	0
휠체어럭비	134	19	153	26	2	0	0	106	17	1	0	1	0	0	0	0	0
파크골프	506	192	698	458	157	1	2	11	4	1	3	28	15	0	1	7	10
조정	199	117	316	23	9	46	29	8	3	0	0	122	76	0	0	0	0
댄스스포츠	127	128	255	19	10	15	16	19	6	6	1	5	7	6	13	57	75
요트	39	9	48	24	5	0	0	10	3	1	0	0	0	0	0	4	1
스키	115	51	166	14	3	20	8	2	0	0	0	37	20	29	17	13	3
아이스슬레지 하키	51	0	51	46	0	0	0	5	0	0	0	0	0	0	0	0	0
휠체어컬링	80	29	109	59	20	0	0	21	9	0	0	0	0	0	0	0	0
당구	313	45	358	240	34	5	1	29	7	8	1	2	0	29	2	0	0
태권도	65	27	92	5	0	1	0	0	0	1	0	27	15	31	12	0	0
e스포츠	154	16	170	21	5	0	0	0	0	3	1	113	8	17	2	0	0
게이트볼	756	283	1,039	620	245	14	5	4	0	33	14	2	2	75	14	8	3
플로어볼	40	0	40	0	0	0	0	0	0	0	0	40	0	0	0	0	0
디스크골프	17	3	20	0	0	0	0	0	0	0	0	17	3	0	0	0	0
계	10,313	3,231	13,544	3,710	1,244	779	276	1,112	210	855	214	2,515	683	1,056	403	286	201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선수등록시스템(2012년 12월 기준)

※ 27개 가맹경기단체 중 승마 제외 / 10개 인정단체 중 당구, 태권도, e스포츠, 게이트볼, 플로어볼, 디스크골프 선수등록만 포함

※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선수들은 종목별 가맹경기단체 선수등록 자료에 포함

4.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는 국제장애인올림픽헌장 제3장 제1항에 의거하여 설립된 (2006년 5월) 한국의 국가장애인올림픽위원회(National Paralympic Committee)로서 외국에 대하여는 Korean Paralympic Committee(KPC)라 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6-8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구분	내용
설립 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올림픽사업에 관하여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 대외적 교섭을 갖는 유일한 단체로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올림픽정신의 함양보급, 스포츠의 기초를 이루는 정신적신체적 자질의 발전 도모, 국제친선, 세계평화 및 장애인의 지위와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 2. 스포츠윤리의 증진, 반도핑 및 장애인올림픽운동(Paralympic Movement)을 전개하는 사업을 수행 3. 목적수행을 위해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 협력할 수 있으나, 장애인올림픽헌장에 부합하여야 하며 독립을 유지
사업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에 대해 한국을 대표 2. 장애인올림픽대회, 장애인아시아게임 등 IPC의 후원을 받는 세계선수권대회, 지역대회, 대륙대회, 대륙 간대회 등에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단을 파견관리 3. 국내에 있어서 장애인스포츠의 진흥 및 장애인올림픽운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올림픽표장 등을 관리 4. 대회 이외의 학술연구지원사업 등 IPC, APC 및 장애인아시아게임 사업에 대표자 선정파견 및 주관 5. 장애인스포츠의학의 진흥과 IPC 및 국제장애인경기연맹이 금지한 약물의 사용 금지 활동 6. 장애인올림픽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7. 각국 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의 스포츠 교류 8. 제 2 호에 해당하는 대회의 국내 개최 시 개최도시 지명권 및 장애인올림픽헌장에 근거한 대회조직의 책임 9. 국제심판, 기술임원, 국제등급분류위원, 스포츠행정가 연수 및 국제장애인체육 관련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10. 기타 본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재 정

장애인체육 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구성되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표 6-9>, 2010년에는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완공에 따른 예산 축소 등으

로 감소를 보였다가 2011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편, 2012년과 2013년 장애인체육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6-10>과 같다.

■ 표 6-9 장애인체육 예산의 연도별 증가추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10,936	19,634	26,018	36,387	30,560	34,393	46,889	55,886	
.장애인 체육예산	소계	9,731	18,308	23,729	34,579	27,769	32,293	43,961	52,666
	국고	3,898	8,513	4,110	6,610	5,500	5,401	7,747	12,407
	기금	5,833	9,795	19,619	27,969	20,269	26,892	36,214	40,259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1,205	1,326	2,289	1,808	2,791	2,100	2,928	3,220	
전년비 증가액		8,698	6,384	10,369	△5,827	3,833	12,496	8,997	
전년비 증가율		79.5%	32.5%	39.9%	△16.0%	12.5%	36.3%	19.2%	

■ 표 6-10 2012년 및 2013년도 장애인체육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2012	2013	
국 고	• 장애인체육육성지원	6,647	6,307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지원	1,100	6,100
	소 계	7,747	12,407
기 금	• 대한장애인체육회운영	4,754	4,858
	• 장애인생활체육	7,762	8,275
	• 장애인전문체육	6,015	6,145
	• 장애인종합체육시설운영 및 건립지원	11,483	11,483
	• 시도장애인체육지원	1,900	1,900
	• 2013스페셜동계올림픽 개최지원	3,500	6,798
	• 장애인실업팀 육성	800	800
소 계	36,214	40,259	
계	43,961	52,666	

※ 체육인복지사업 관련 예산 미포함(표 6-19 및 6-20 참조)

제3절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

1. 생활체육부문

1)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장애인에게 있어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는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운동 경험이 없는) 장애인들을 생활체육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꾸준히 참여시키는 것이다. 특히, 89%에 이르는 대다수의 장애인이 후천적 장애인이며, 중증장애인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저변확대의 방법적 접근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실제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 부지사회의 및 시도체육정책평가회의 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적정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다(적정설치율 2010년 54.6%, 2012년 48.9%).

장애인생활체육 관련 사업은 생활체육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청소년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교실지원, 생활체육클럽지원, 찾아가는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교실 및 전통종목 육성, 생활체육서비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어울림대회, 동호인대회, 종목별생활체육축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이 있으며, 그에 따른 2012년도 세부사업 현황 및 실적은 다음의 <표 6-12>와 같다. 장애인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지표라 할 수 있는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은 매년 증가추세이며, 2012년은 10.6%로 2011년의 9.6%보다 1% 증가하였다.

■ 표 6-11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의 연도별 증가추세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생활체육 참여율	6.3	7.0	8.3	9.6	10.6
전년비 증가율		0.7	1.3	1.3	1.0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12).

2) 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

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우리나라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2000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개칭)에서 1993년부터 지도자양성을 시작하여 2005년까지 총 569명의 지도자가 배출되었고, 2012년 현재는 16개 시도에 190명의 전일제장애인체육지도자의 배치가 이루어졌으며, 생활체육 지도 대상인원만 656,856명에 달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교육사업이 매우 활성화 되었다. 또한,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자격제도에 대한 부분도 국가공인 자격제도화가 확정되어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16개 시도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종목(볼링, 파크골프)의 지도자 강습회를 통해 보급하였고, 생활체육프로그램 동영상 자료집 개발사업을 통하여 Lead up 프로그램을 개발 및 배부하였다.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지도자 강습회의 교과목은 장애인 체육의 현장에서 필요한 기초이론 및 실기종목으로 편성하였으며, 실기 종목은 국내 미 보급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개하여 현장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1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향후에는 지도자의 배치 활용 및 사후관리(보수교육)에 대한 대비가 우선 필요하다.

■ 표 6-12 장애인생활체육 사업영역 및 사업실적 현황('12. 12월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영역	사업실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 인구 30~50만 미만 43개 지방자치단체의 549개 공공체육시설 편의시설 적정화 실태조사 결과 적정설치율 48.9% • 2010년 공공체육시설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54.6%
	청각장애인 건강체력 인증을 위한 기반연구 및 측정기준 개발	- 청각장애인 체력검사 항목과 측정방법 개발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종목 지도자 강습회	- 생활체육프로그램개발 종목 이론 및 실기 지도자 강습(볼링, 파크골프) • 16개 시도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203명 참가

사업영역	사업실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종목 강습회	- 16개시·도, 총 32회 운영
장애 청소년 체육 활동 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 동영상 자료집 개발	- Lead up 프로그램 개발(킨볼, 스쿠터 활동 등 12개 활동 제작) • 시도, 시군구지부, 생활체육시설 등에 500부 배부
장애 청소년 체육 활동 지원	장애청소년체육활동	- 장애청소년체육교실 (208개소) - 장애어울림캠프(3개소)
생활체육 교실 및 전통 종목 육성	시도지부 생활체육교실 지원	- 초보자교실 73개소 - 계절스포츠교실 17개소 - 여성장애인교실 23개소 - 직장인교실 20개소 - 종목별교실 119개소 - 장애유형별 교실 71개소 - 시군구교실 11개소 - 전통종목교실 32개소 - 장애인스포츠허브 교실 2개소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	시도지부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클럽매니저 교육 7회	- 시도지부 생활체육동호인 138개소 지원 - 클럽매니저 교육 16회(각 시도별 1회)
생활체육 기초 조사 연구	생활체육참여율 실태조사 재외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 기 간 : 2012. 7~12 - 조사대상 : 전국장애인 1,500명 - 조사내용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실태, 장애인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등 - 조사결과 : 참여율 10.6% - 기간 : 2012.7~12 - 조사대상 : 재외동포 장애인 거주 10개국의 재외동포 장애인 - 조사내용 :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실태, 장애인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장애인생활체육 우수사례 등 - 조사결과 : 참여율 9.0%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 운영	- 운영 담당자 배치(총 19명) • 대한장애인체육회 3명, 시·도 장애인체육회 16명 - 상담 및 신규생활체육참여인구 발굴 • 상담 2,614건 (전화 843건, 인터넷 88건, 방문 1,683건) • 신규생활체육참여인구 2,058명 발굴 - 차량지원: 특장버스 1대, 승합차량 7대 • 휠체어 5대, 모노스키 2대, 레이스러너 3대, 핸드사이클 1대, 텐덤사이클 3대, 시각탁구테이블 3대, 게이트볼 16set 등 - 장애인생활체육 홍보활동 • 리플렛 12,000부, 손거울 10,000개 배포 - 운영 담당자 간담회 2회 실시(4월/12월)
어울림 생활체육 대회	전국 / 지역 어울림생활체육대회지원	- 전국 4개, 지역 48개
전국국민 생활체육 대축전	전국 국민 생활 체육 대축전 참가 지원	- 기간 : 5/11(금)~13(일), 3일간 - 장소 : 대전광역시 - 참가종목 : 8종목 - 참가인원 : 886명 • 선수 591명, 임원·보호자 295명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지원	전국/지역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지원	- 전국 8개, 지역 75개
전국장애 학생체육 대회개최	제6회 전국장애학생체육 대회 개최	- 기간 : '12. 5.1(화)~4(금), 4일간 - 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원 - 참가종목 : 15종목(정식 11, 시범 2, 전시 2) - 참가인원 : 16개 시·도 2,710명 • 선수 1,615명, 임원 및 보호자 1,095명

사업영역	사업실적	
종목별 생활체육 축제지원	각종 생활체육축제 대회 지원	- 지역 생활체육축제 15개, 유형별 생활체육대회 5개, 대한장애인체육회 장배 5개, 기타종합생활체육대회 7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대회 1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교육	전일제장애인체육 지도자 배치 및 교육 운영	- 전일제장애인체육지도자 16개 시도에 190명 배치 - 지도자 지도인원(656,856명) - 지도횟수(66,376회) - 지도자 교육 5회(2월/3월/11월)

나. 경기지도자 양성(국가대표 전임지도자 포함)

장애인 체육분야에 있어서 비장애인 경기지도자에 상응하는 전문체육지도자 자격제도는 2011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2015년부터 양성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대표 전임 지도자의 경우에는 기존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임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국가공인으로 양성되는 자에 한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애인 전문체육의 경우에도 비장애인 전문체육의 경우와 같이 쿼터 시스템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질적으로 잘 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 특수체육 관련학과 현황

198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유도대학(현 용인대학교)에 특수체육학과가 설치되었고, 1990년 비로소 특수체육교사 자격증의 발급이 인정되었으며, 2011년 기준 12개 대학에서 중등 특수체육교사 및 특수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특수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용인대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 등 10개 대학이며, 기타 체육 부전공 중등 특수교원 자격증 소지자, 일반체육자격증 소지자의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특수교육 전공 졸업자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 표 6-13 특수체육 관련학과 현황 - ()은 교사자격증 발급 인원('12. 12월 기준)

구분	학 교 명	학 과 명	양성 정원(명)	설치년도
1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30(30)	1988
2	한신대학교	특수체육학과	40(4)	1994
3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30(30)	1998
4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30(30)	2002
5	중부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20(20)	2003

구분	학 교 명	학 과 명	양성 정원(명)	설치년도
6	백석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40(40)	2004
7	한국국제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20(20)	2005
8	가야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20(20)	2005
9	경주대학교	특수체육교육학과	20(20)	2005
10	신라대학교	체육학부(특수체육전공)	30(3)	2006
11	나사렛대학교	특수체육학과	30	2008
계			310(217)	-

라. 생활체육지도자 배차활용

생활체육지도자는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에 의거하여 각 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서 지정된 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실제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현장의 지도 수준을 일정 수준 확보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장애인체육(스포츠)지도자의 경우에는 자격증 자체가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배치와 활용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러므로 실제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의 활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유사 자격증의 증가와 같은 문제 발생 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장애인체육(스포츠)지도자 자격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자격증 제도의 국가공인 취득과 더불어 일선 장애인생활체육현장에 공인자격증 취득자의 채용을 의무화하여 현장 지도의 질을 높여 날로 높아 가는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2007년부터 장애인체육분야의 생활체육지도자 수요 충족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 20명의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사도 11명, 경기단체 4명, 총 15명) 및 보조생활체육지도자(사도 5명)를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시도장애인체육회 지원으로 총 39명(대한장애인체육회 15명, 사도 24명), 2009년 사도와의 매칭 펀드 방식에 의해 총 101명을 배치 활용하였다(대한장애인체육회 54, 사도 47). 2010년에는 16개 사도에 총 138명(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 68명, 사도지원 70명)이, 2011년에는 총 172명(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 86명, 사도지원 86명)이 배치되었고, 2012년에는 총 190

명(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 95명, 시·도지원 95명)이 배치되었다.

한편, 재가 및 중증 장애인에게 체육활동 상담, 생활체육 프로그램 정보제공 및 현장 방문 생활체육 지도 등을 통한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즉 체육 경험 단계에서 재활에 효과적인 운동처방을 통한 장애인들의 건강유지 및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운동 참여 경험을 누린 장애인들이 생활체육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어울림체육 단계로 변화를 주기 위하여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2012년 현재 16개 시도별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팀」을 설치·운영하고, 대표전화(1577-7976)를 통하여 실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행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 ‘수화’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도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체육활동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1년 12월 국가공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양성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2015년부터 시행), 장애인체육시설에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확대배치, 장애인 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체육(스포츠)지도자 의무 채용에 관한 법률적 강제 등 세부 배치기준을 동시에 마련하여 공인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표 6-14 2012년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12. 12. 31 기준)

(단위 : 명)

연 번	구분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	시도 지원	총 계	비 고
1	서울	18	18	36	
2	부산	6	6	12	
3	인천	8	8	16	
4	대구	3	3	6	
5	광주	4	4	8	
6	대전	4	4	8	
7	울산	3	3	6	
8	경기	8	8	16	
9	강원	5	5	10	
10	충북	5	5	10	
11	충남	6	6	12	
12	경북	5	5	10	
13	경남	6	6	12	
14	전북	6	6	12	
15	전남	5	5	10	
16	제주	3	3	6	
	계	95	95	190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12). 내부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지방자치단체 매칭 방식

2. 전문체육

1) 국내대회 개최

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체육인의 경기력 향상 및 지방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육 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환경 조성과 장애에 대한 국민적 이해증진을 위하여 매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981년 유엔(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제5회 대회부터 1987년 제7회 대회까지는 1988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였다. 제8회 대회는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로 인하여 열리지 않았으며, 제9회 대회부터는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현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최로 매년 개최되었다. 2000년 제20회 인천대회부터는 전국체육대회 개최 장소에서 다음해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여는 방식으로 규정을 변경하였으며(2002년은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로 미개최), 2005년 제25회 대회부터 종합점수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회를 주최하고 있으며, 2007년 대회는 광역 시도에서 벗어나 김천시에서 대회를 주관하여 경상북도 일원 7개 지역 경기장에서 대회를 치렀다. 2008년 광주광역시 대회는 16개 시도지부가 모두 설립되어 치러진 첫 대회로서 전년대비 25%의 참가 증가율을 보였고, 전산화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대진추첨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대회였다. 2009년 전라남도 여수대회에서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9개 종목 참가자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중복참가를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향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011년부터 일반대회와 동반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2014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사도의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미개최와 더불어 2015년부터 동반 개최될 예정이다<표 6-15>.

■ 표 6-15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예정 현황

구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전국체육대회	경남진주 (제91회)	경기도양 (제92회)	대구 (제93회)	인천 (제94회)	제주 (제95회)	강원 (제9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전 (제30회)	경남진주 (제31회)	경기도양 (제32회)	대구 (제33회)	(미정) (제34회)	강원 (제35회)

* 2014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시도는 2015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2015년부터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동일시도에서 동일년도에 개최될 예정임

* 2014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경우 개최여부는 인천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 1988년 서울올림픽 및 서울장애인올림픽으로 제8회 대회 미개최

-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 부산 아시안게임 및 아태 장애인경기대회로 제22회 대회 미개최

■ 표 6-16 연도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2000년 순회개최 이후)

회수	개최기간	개최지	개최종목	참가선수단(명)			순 위		
				계	선수	임원	1위	2위	3위
20회	2000. 6.13~6. 15	인천	17	1,867	1,375	492	경기	서울	충북
21회	2001. 5. 9~5. 11	부산	17	2,020	1,500	520	경기	서울	부산
22회	제22회 대회는 FIFA한일 월드컵, 부산 아시안게임 및 아태 장애인경기대회 등으로 개최하지 않음								
23회	2003. 5. 14~5. 16	충남	17	2,020	1,500	520	경기	서울	충남
24회	2004. 5. 11~5. 14	전북	17	2,291	1,656	635	경기	서울	충남
25회	2005. 5. 10~5. 13	충북	18	2,586	1,885	701	서울	경기	충남
26회	2006. 9. 12~9. 15	울산	19(시범1)	3,272	2,462	810	경기	서울	부산
27회	2007. 9. 10~9. 14	경북 (김천)	22 (시범1, 전시1)	4,031	2,991	1,040	경기	서울	경북
28회	2008. 10. 5~10. 9	광주	23(전시2)	5,459	3,987	1,472	경기	서울	광주
29회	2009. 9. 21~9. 25	전남(여수)	24	6,350	4,692	1,653	경기	서울	충북
30회	2010. 9. 6~9.10	대전	24(전시1)	6,746	4,825	1,013	경기	서울	-
31회	2011. 10. 17~10.21	경남(진주)	27 (시범1, 전시2)	7,905	4,964	2,131	경기	서울	경남
32회	2012. 10. 8~10.12	경기(고양)	27 (전시2)	6,995	4,839	2,156	경기	서울	인천
33회	2013. 9. 30~10.4	대구	27 (전시1)	예정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12),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보고서

나.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장애인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국대회를 통한 우수선수 발굴 및 신인선수 발굴 육성, 장애인 동계스포츠에 대한 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2004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대회 개최 현황은 다음의 <표6-17>과 같다.

■ 표 6-17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최 현황

회 수	개최기간	개최장소	참가종목	참가선수단(명)			참 가 대 상	주 최
				계	선수	임원		
1회	2004. 2.24(화) ~2.25(수)	용평스키장 춘천의암 빙상장	알파인스키 컬링 아이스슬레지하키 빙상	150	100	50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정신지체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주관 : 각 경기연맹
2회	2005. 2.17(목) ~2.18(금)	용평스키장 춘천의암 빙상장	알파인스키 컬링 아이스슬레지하키	150	80	70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정신지체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주관 : 각 경기연맹
3회	2006. 2.22(수) ~2.24(금)	보광휘닉스파크 춘천의암 빙상장	알파인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시범종목)	209	102	107	척수장애, 절단 및 기타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 청각장애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한국장애인스키협회 대한장애인아이스슬레지 하키협회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4회	2007. 2.21(수) ~2.24(토)	강원랜드 춘천의암 빙상장	알파인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크로스컨트리(시범)	224	117	107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정신지체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종목별 경기단체
5회	2008. 2.19(화) ~2.22(금)	하이원 스키장 춘천의암 빙상장 울산과학기술대학 빙상장	알파인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크로스컨트리	446	215	231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지적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한국장애인스키협회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대한장애인컬링협회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6회	2009. 2.10(화) ~2.13(금)	하이원스키장 춘천의암 빙상장 의성컬링경기장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429	304	125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지적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종목별 경기단체
7회	2010. 1.26(화) ~1.29(금)	하이원스키장 이천장애인체육 종합훈련원 동천빙상장 춘천의암 빙상장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660	330	330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지적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종목별 경기단체
8회	2011. 2.15(화) ~18(금)	하이원스키장 동천빙상장 창원서부 스포츠센터 춘천의암 빙상장	스키 빙상 휠체어컬링 아이스슬레지하키	685	338	347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지적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종목별 경기단체
9회	2012. 2.28(화) ~3.2(금)	전라북도 전주시, 무주리조트	알파인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크로스컨트리	731	365	366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지적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전라북도,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회
10회	2013 2.25(월) ~2.28(목)	강원도 일원, 알펜시아 리조트	알파인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크로스컨트리	738	372	366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지적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종목별 경기단체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12), 제1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결과보고서

2) 경기력 향상 지원

2012년은 경기력 향상 및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를 대비하여 국가대표 26개 세부종목의 상시훈련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종합 12위(금9, 은9, 동9)의 성적을 달성하였으며, 종목별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선수 훈련지원 관련 세부 내역은 다음의 <표 6-18>과 같다.

■ 표 6-18 2012년도 장애인선수 훈련지원

구 분		종목/인원	훈련일수	비 고
국가대표 상시훈련		23개 종목 400명(선수 267, 임원 133)	2,844일	종목당 평균 105일 (런던PG강화훈련 포함)
국가대표 동계종목 훈련		3개 종목 40명(선수 26, 임원 14)	180일	종목당 평균 63일
후보선수 지원	후보선수 상시훈련	17개 종목 173명(선수 122, 임원 51)	340일	종목당 20일 균등지원

※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2012). 내부자료

또한, 경기력 향상과 관련하여 선수 훈련지원과 더불어 경기단체별 추천 지도자를 국가대표 전임지도자로 배치, 지도자 수당을 지원하였다. 총 12개 종목별 1인을 지원하였고, 종목별 배치현황은 다음의 <표 6-19>와 같다.

■ 표 6-19 2012년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 현황

종목	인원	종목	인원
골볼	1	양궁	1
농구	1	육상	1
보치아	1	조정	1
사격	1	(시각)축구	1
사이클	1	탁구	1
수영	1	테니스	1

※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2012). 내부자료

3) 체육인복지사업

체육인복지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와 육성)와 제22조(기금의 사용 등)에 의거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들과 국가대표선

수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기력향상연금 등 총 8개 분야에 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체육 선수의 경우 2005년까지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정관 제22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우수선수연금 지원 사업이 실시되었고, 2006년부터는 일반체육선수 경기력향상연금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연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일반선수 연금지급액의 60%(2005년) 수준에서 80% (2007년)로 지급 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100% 동일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장애인선수연금의 경우 월정액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 경기력향상연구연금으로 전환되어 비장애인선수와 마찬가지로 일시불 지원금 수령이 가능해졌다(2008년 일시금 수령자 1명). 지급대상 대회는 장애인올림픽대회와 세계농아인올림픽대회이며, 연금지급액은 선수 월정금의 경우 평가점수 30점까지는 10점당 15만원씩, 평가점수 30점 초과부터 100점까지는 초과점수 10점당 7만5천원씩, 평가점수 100점 초과부터 110점까지는 초과점수 10점당 2만5천원씩 부가하여 산출 지급하되, 장애인올림픽 금메달에 한해서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점수 10점당 150만원의 일시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초과점수가 장애인올림픽대회 금메달인 경우에는 10점당 500만원의 일시장려금을 지급한다. 2011년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관련 지급인원 및 지급액(연차별 규모 포함)은 다음의 <표 6-20>과 같다. 또한,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에는 올림픽 금·은·동메달의 격차를 현행 100:45:30에서 100:75:52.5로 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이전 올림픽메달리스트까지 소급 적용하고 있다.

■ 표 6-20 경기력향상연구연금(2005년 이전 명칭 '장애인선수연금') 지급 현황 (지급액 단위: 백만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비고(지급대상)
지급인원	152명	160명	168명	168명	165명	180명	199명	204명	210명	222명	220명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농아인올림픽대회 메달획득자
지급액	923	1,062	1,004	1,205	1,196	1,829	1,808	1,515	1,540	2,347	2,270	

※ 자료 : 보건복지부(2003년~2004년) 및 국민체육진흥공단(2005년~2012년), 2012년은 5월 현재 지급 기준임

또한, 2007년부터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외에 선수지도자보호 지원금(상해보험), 복지후생금(생활보조비), 체육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경기지도자연구비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6-21>과 같다.

■ 표 6-21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외 체육인복지사업 지급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선수·지도자 보호 지원금 (상해보험)	250명 24,586천원	236명 14,300천원	289명 12,281천원	385명 11,372천원	462명 30,000원	450명 30,000원	-
복지후생금 (생활보조비)	16명 32,000천원 (연인원 192명)	16명→11명 69,500천원 (연인원 139명)	11명 60,500천원 (연인원 121명)	20명 46,000천원 (연인원92명)	20명 74,000천원 (연인원148명)	17명 102,000천원 (연인원204)	14명 84,000천원 (연인원168)
체육장학금	50명 65,000천원	11명 12,000천원	40명 52,000천원	36명 50,000천원	36명 50,000천원	56명 80,000천원	-
대학원진학 장학금	-	-	-	5명 15,000천원	4명 15,165천원	2명 4,338천원	3명 8,804천원 (상반기)
경기지도자 연구비	-	21명 362,100천원	14명 505,400천원	18명 525,600천원	-	22명 364,600천원	-

※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2007년~2013년)

4) 실업팀 지원

장애인체육 실업팀은 장애인체육에 참여하는 선수와 지도자의 직업적 안정 도모와 선수생활을 그만 둔 이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 배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장애인선수의 훈련 여건 보장의 일환으로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실업팀 육성 지원은 2012년 12월 현재 12개 시도, 18개 종목 38개 팀, 161명의 선수<표 6-22>가 활동하고 있으며(일부 창단 예정 포함), 향후 장애인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기량을 발휘하고 평소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기업 등의 후원을 통한 적극적인 실업팀 육성책이 필요하다. 2012년도부터 장애인스포츠실업팀 육성 지원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 8억(2013년도 동일 8억)이 배정되어 신규창단 및 기존 팀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실업팀에 대한 창단 및 운영지원 육성 정책이 더욱 확산될 예정이다.

5)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운영

장애인 전문체육시설(국가대표선수 선수촌) 확보와 장애인 생활체육진흥 기반시설 확보의 목적으로 추진 중인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장애인체육계의 숙원사업으로서, 2006년 장애인체육업

무의 문화관광부 이관을 계기로 정식 정부정책사업차원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09년 10월 15일 개원한 훈련원은 향후 전문체육 상시훈련장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표준화, 지도자 양성 및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2009년 개원 첫해에 밴쿠버 동계 장애인올림픽을 대비해 수영장을 활용한 아이스링크에서 컬링 종목의 집중 훈련 결과 동계종목 최초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의 건립내역<표 6-23>과 활용계획<표 6-24>은 다음과 같다. 2011년 2단계공사로 생활관은 2인실과 4인실 규모의 28실을 증설을 완료하였고, 2012년에도 이천장애인체육종합체육시설 건립 및 2단계 계획으로 양궁장, 다기능 체육관, 교육동 등의 건축시설, 보조구장 등 옥외체육시설과 주차장 등을 추가 증설 중에 있다.

■ 표 6-22 장애인체육 실업팀 현황('13. 6월 기준)

구분	시도	팀수	소속	종목	인원					창단년도
					계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	
1	서울	3	서울시청	W 농구	12	1		1	10	2010. 3. 4
			서울시청	탁 구	5	1			4	2012. 7. 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육 상	5	1		1	3	2013 (예정)
2	부산	3	부산동구청	역 도	6	1		1	4	2011. 1. 1
			부산지방공단 SPO1	사이클(텐덤)	1				1	2010. 3
			장애인체육회	수 영	8		1		7	2013 (예정)
3	인천	2	장애인체육회	배드민턴	5		1		4	2010. 4.29
			장애인체육회	역 도	5		1		4	2010. 4.29
4	대구	3	달성군청	W 테니스	4		1		3	2007. 1. 1
			대구시청	탁 구	6		1		5	2012. 2.10
			대구시청	W 농구	11	1	1		9	1996. 1
5	대전	4	장애인체육회	양 궁	5	1			4	2010. 1
			장애인체육회	탁 구	7	1	1		5	2011.12.27
			장애인체육회	수 영	7	1			6	2012. 9
			장애인체육회	육 상	7	1			6	2013 (예정)
6	광주	2	광주광역시청	탁 구	6	1	1		4	2011. 3. 9
			광주광역시청	양 궁	5	1			4	2013. 5. 22
7	울산	2	울산광역시청	육 상	5	1			4	2007. 1
			울산중구청	배드민턴	5	1			4	2013. 2. 15
8	경기	8	스포츠토토	W 테니스	6	1	1		4	2011.11.15
			양평군청	유도(시각)	1				1	2012. 4
			(주)힐라인	W 펜싱	5	1			4	2012. 9
			광주시청	육 상	2	1			1	2010. 1
			장애인체육회	볼 링	4	1			3	2013 (예정)
			장애인체육회	역 도	4	1			3	2013 (예정)
			장애인체육회	배드민턴	4	1			3	2013 (예정)
수원시체육회	탁 구	1				1	2013. 1			

구분	시도	팀수	소속	종목	인원					창단년도
					계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	
9	강원	3	강원도청	아이스하키	14	1	1		12	2006
			강릉시청	사격	3				3	2008
			하이원리조트	스키	3		1		2	2008
10	충북	3	청주시청	사격	8		1	1	6	2004
			장애인체육회	수영	7	1			6	2012. 2. 8
			장애인체육회	역도	5	1			4	2013. 5. 7
11	충남	3	천안시청	좌식배구	8	1			7	2011. 4. 19
			한국수자원공사	조정	3		1		2	2011. 11. 9
			충남도청	보치아	6	1			5	2013 (예정)
12	제주	2	제주도청	육상	1				1	2011. 3
			제주도청	수영	2				2	2011. 3
계	12	36	-	18종목	199	24	13	4	158	-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12). 내부자료

※ 운영형태 : 지자체및지자체에서시도장애인체육회에위탁운영 / W펜싱은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직접운영

■ 표 6-23 이천장애인체육종합체육시설 건립 및 2단계 계획

구분	시설 주요내역 및 규격(규모)	비고	
건축면적	24,127㎡(7,229평 / 지하1층, 지상4층)		
종합체육관	제1체육(종합플로어)	농구코트 3면 크기	14,708㎡ (4,449평)
	제2체육관(실내수영장)	50m × 8레인	
	제3체육관(테니스장)	테니스코트 2면 크기	
	제4체육관(개별종목실)	역도·펜싱·탁구·유도·골볼장 체력단련실	
생활관(숙소, 식당, 사무실)	2인 84실 168명, 4인 16실 64명(총 100실 232명 이용) 식당, 주방, 관리사무실	8,940㎡ (2,704평)	
운동장(육상장, 축구장)	육상장 : 트랙, 투척·도약장 축구장 : 훈련용 잔디	23,800㎡ (7,200평)	
기타시설	조경, 정문	479㎡ (145평)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12)

■ 표 6-24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의 종목별 공간사용계획(14개 종목 활용)

시설명	사용종목	비고
제1체육관	휠체어농구,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휠체어력비	5개 종목
제2체육관	수영 / 타종목 기초 체력훈련	1개 종목
제3체육관	테니스 / 타종목 공동사용	1개 종목
제4체육관	역도, 펜싱, 탁구, 유도, 골볼 / 체력단련실(공동사용)	5개 종목
운동장	육상, 축구 / 타종목 기초 체력훈련	2개 종목

※ 사격, 양궁, 론볼, 사이클 종목은 지자체 시설을 활용한 총외시설로 운영

※ 2010년 밴쿠버 동계 장애인올림픽 대비 컬링 종목의 경우 훈련시설의 섭외 어려움으로 수영장시설에 아이스링크를 설치하여 훈련

3.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건강증진,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전국 순회 개최되고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누구나 시도별 참가접수를 통해 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특히 순회개최를 통한 개최지역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체육축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1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장애청소년체육대회’라는 명칭으로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의 공동 주최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진행되었다. 물론 기존에도 전국장애청소년체육대회가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정책과에서 담당하여 개최되어 왔지만, 2005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이후부터는 장애학생의 체육참여증진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와 장애청소년체육대회의 개최 여건 문제로 2007년 제 1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국 4개 시·도의 해당 장애인체육회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지역별 분담 개최되었다.

■ 표 6-25 2007 제 1회 장애청소년체육대회 개최 현황

시·도	대회명	개최일	주최	인원
경기	경기도 장애청소년체육대회	10/6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교육청	300
부산	부산시 장애청소년체육대회	11/1	부산시장래인체육회, 부산시교육청	700
대구	대구시 장애청소년체육대회	11/6	대구시장래인체육회, 대구시교육청	600
서울	서울시 장애청소년체육대회	12/1	서울시장래인체육회, 서울시교육청	500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07) 내부자료.

제2회 전국장애청소년체육대회는 제1회 대회와는 다르게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제적으로 공동 주최하여 광주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제3회 대회부터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정관(제4조) 개정을 통하여 단독으로 주최하게 되었고, 대회명칭도 기존 전국장애청소년체육대회에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운영 주최를 맡게 된 제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부터 장애학생 체육활동 참여 유도를 통한 건강증진 및 평생체육의 기틀 마련,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극복 의지와 사회적응능력 신장 도모, 지역사회 문화체험과 비장애학생과의 교류증진을

통한 조기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대회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대회 방향성으로 인하여 대회 참가인원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장애학생 인구 85,012명(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2) 대비 3.3% 정도의 참여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은 앞으로의 대회 운영 효율성과 참여 학생 증가를 제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표 6-26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현황

회수	개최기간	개최장소	참가종목	참가현황								참가장애	주최
				계	선수	단장	총감독	감독	코치	임원	보호자		
2회	2008. 10. 28~10. 31	광주	골볼, 보치아, 수영, 씨름, 육상, 축구, 탁구, e스포츠(시범), 실내조정(전시)	1,479	912	15	15	131	89	206	111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3회	2009. 5. 12~5. 15	전남	골볼, 농구, 배구, 보치아, 수영, 씨름, 육상, 축구, 탁구, e스포츠, 실내조정(전시)	2,006	1,315	16	14	163	135	198	165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대한장애인체육회
4회	2010. 5. 17~5. 20	대전	골볼, 농구, 배구, 보치아, 수영, 실내조정, 씨름, 육상, 역도, 축구, 탁구, e스포츠, 배구(시범), 테니스(전시)	2,437	1,570	16	16	183	176	249	227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대한장애인체육회
5회	2011. 5. 24~5. 27	경남	육상, 보치아, 골볼, 역도, 축구, 수영, 탁구, 농구, 배구, 조정, e스포츠, 볼링(시범), 배드민턴(시범)	2,731	1,701	15	16	183	272	252	292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발달장애	대한장애인체육회
6회	2012. 5. 1.~5.4	경기	육상, 보치아, 골볼, 역도, 축구, 수영, 탁구, 농구, 배구, 조정, e스포츠, 볼링(시범), 배드민턴(시범), 디스크골프(전시), 플로어볼(전시)	2,710	1,615	16	16	209	289	313	252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발달장애	대한장애인체육회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12). <http://youth.kosad.or.kr>

4. 국제교류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이전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등 각종 국제장애인체육기구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가입하여 장애인체육 관련 교류 활동을 하였으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보교류가 부족하여 변화하는 국제장애인체육계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 요구에 따라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 2006년 5월 12일)가 설립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KPC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등 국제스포츠기구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며, 국제교류 및 국제대회·회의 참가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 표 6-27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가입 현황

-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가입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 • 국제뇌성마비인경기연맹(CP-ISRA)
- 기타 단체 가입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농아인체육연맹 •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한국지적장애인스포츠연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농아인스포츠경기연맹(ICSD) • 국제시각장애인경기연맹(BSA) • 국제휠체어및절단장애인스포츠협회(IWAS) • 국제지적장애인스포츠연맹(INAS-FID)

※ ISMWSF와 ISOD는 2004년 IWAS(국제휠체어절단장애인스포츠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통합

※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연맹(FESPIC)은 2006년 APC로 통합출범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12). 내부자료

1) 장애인올림픽대회(Paralympics)

장애인올림픽의 기본 이념은 스포츠를 통한 국가 간의 우정과 이해의 증진을 바탕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올림픽 이념과 장애인 복지의 개념을 조화시킨 것이다. 즉, 올림픽이 인종, 국가, 정치, 문화 및 이념을 초월한 인간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를 통한 인류의 화합, 나아가 인간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범세계적인 축제로서 세계 젊은이들의 힘과 기록의 제전이라면, 장애인올림픽대회는 인간의 평등을 확인하는 대회이며, 인간능력의 한계를 뛰어 넘는 감격의 대축제이다.

가. 하계장애인올림픽대회

1960년 로마 올림픽대회 때부터 시작된 장애인올림픽(Paralympics)은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일반 올림픽 개최 도시의 동반 개최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동반 개최는 이후 국제관례로 이어져 오다가 모든 장애인스포츠를 조직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한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인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가 설립(1997년)된 이후, 2000년 시드니 장애인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IOC와 IPC간의 대회 개최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올림픽을 유치한 국가는 반드시 장애인올림픽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협약 내용에 따라 장애인올림픽대회를 동반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8년 텔아비브(이스라엘) 장애인올림픽대회에 처음 참가한 이후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을 통해 지난 2008년 베이징(중국) 장애인올림픽대회에는 다양한 종목에 걸쳐 메달을 획득하였고,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의 개원과 더불어 과학적인 훈련시스템의 도입 및 경기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여 2012년 런던(영국)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종합성적 12위(금9, 은9, 동9)를 달성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나.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는 1976년 스웨덴 외른설드스비크(Sweden-Ornskoldsvik)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하계 장애인올림픽이 올림픽 개최국가에서 관례적으로 개최되는데 비해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는 환경적 요인으로 주로 유럽지역에서 개최되어 왔다. 그러나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Tignes-Albertville)에서 열린 제5회 장애인올림픽대회를 계기로 동계올림픽 개최 국가에서 동반 개최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Lillehammer), 1998년 일본 나가노(Nagano)장애인올림픽대회는 동계 올림픽대회 개최지에서 개최되었다.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와 2006년 이태리 토리노에서 개최된 제8회와 제9회 동계 장애인올림픽대회는 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통하여 동일 조직 안에서 조직, 인력, 물자, 시설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동반 개최하는 것이 의무화됨으로써 동계 장애인올림픽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게 되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장애인올림픽에서는 컬링 종목에서 최초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는 향후 지속적인 해외 전지훈련을 통한 연중 기술 강화 훈련, 선수 저변 확대

및 최신 장비 보급 등의 필요성을 입증한 대회라 할 수 있다. 차기 2014년 소치 대회 이후 2018년 평창 동계장애인올림픽은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표 6-28 하계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현황 및 한국 참가성적

회수	연도	개최장소	참가 장애	규 모	한국 선수단 입상 현황			비 고
					종목	임원/선수	결과	
1	1960	로마 (이탈리아)	척수장애	23개국 (550명)	-	-	-	
2	1964	동경 (일본)	척수장애	22개국 (515명)	-	-	-	
3	1968	텔아비브 (이스라엘)	척수장애	29개국 (1,100명)	2	10 (4/6)	-	처음 참가
4	1972	하이델베르크 (독일)	척수장애	44개국 (1,400명)	2	16 (6/10)	금4/은2/동1	첫 메달 획득
5	1976	토론토 (캐나다)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시각장애	42개국 (2,660명)	2	11 (4/7)	금1/은2/동1	종합27위
6	1980	안헴 (네덜란드)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시각장애 뇌성마비	42개국 (3,406명)	2	15 (5/10)	금2/은2/동1	종합26위
7	1984	뉴욕 (미국)	뇌성마비/시각장애 절단 및 기타장애	45개국 (2,500명)	6	25 (11/14)	동1	동반개최 종합37위
		에일즈버리 (영국)	척수장애	45개국 (1,422명)	2	24 (12/12)	은2/동1	
8	1988	서울 (대한민국)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	61개국 (4,103명)	16	366 (130/236)	금40/은35/동1 9	종합 7위
9	1992	바르셀로나 (스페인)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	82개국 (4,242명)	10	92 (27/65)	금11/은15/동1 8	종합 12위
10	1996	애틀랜타 (미국)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지적장애	103개국 (4,750명)	13	92 (28/64)	금13/은2/동15	종합 12위
11	2000	시드니 (호주)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지적장애	123개국 (6,032명)	13	119 (30/89)	금18/은7/동7	종합 9위
12	2004	그리스 (아테네)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	136개국 (6,274명)	13	123 (41/82)	금11/은11/동6	종합 16위
13	2008	베이징 (중국)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	147개국 (7,000여명)	13	131 (54/77)	금10/은8/동13	종합 13위
14	2012	런던 (영국)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지적장애	164개국 (7,036여명)	13	149 (61/88)	금9/은9/동9	종합 12위

※ 자료 : 제14회 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보고서, 대한장애인체육회(2012), 내부자료

■ 표 6-29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현황 및 한국 참가성적

회수	연도	개최지	참가장애	참가국가	대회규모 (선수)	한국선수단		비고	
						선수(여자)	성적		
1	1976	외른실드스비크(스웨덴)	시각 기타장애	14	250	-	-		
2	1980	게일로(노르웨이)	전 장애인	18	350	-	-		
3	1984	인스부르크(오스트리아)	전 장애인	22	457	-	-		
4	1988	인스부르크(오스트리아)	전 장애인	22	397	-	-		
5	1992	티뉴-알베르빌(프랑스)	전 장애인	25	475	2	-	첫 참가	
6	1994	릴리함메르(노르웨이)	전 장애인	31	492	2	-		
7	1998	나가노(일본)	전 장애인	32	571	4(1)	-		
8	2002	솔트레이크시티(미국)	전 장애인	36	416	6(1)	은1	알파인스키 개인 첫 메달	
9	2006	토리노(이탈리아)	전 장애인	39	486	3	-		
10	2010	밴쿠버(캐나다)	전 장애인	44	505	25 (2)	은1	컬링 단체전 첫 메달	
11	2014	소치(러시아)	개최 예정						

※ 자료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공식홈페이지(2012). <http://www.paralympic.org>

2)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극동 및 아시아남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FESPIC Games ; The Far East and South Pacific Games for the Disabled)는 아시아 지역과 남태평양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4년마다 개최하는 스포츠 행사였다. 1970년 인도네시아 YPOC단체는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을 회원으로 하여 장애인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한 스포츠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가칭 ASSOD(아시아장애인스포츠기구) 설립을 관계국에 건의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일본 오이타의 유다카 나카무라 박사는 설립될 장애인스포츠 기구의 회원을 아세안 5개국뿐만 아니라 극동 및 남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하여 이에 대한 최종합의를 하고 1974년 10월 8일 일본 오이타에 본부를 둔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연맹(FESPIC Federation)을 정식 발족하였다. 그러나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추구하는 지역위원회 설립에 따라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로 병합(2006)되면서 2010년 12월 개최된 광저우(중국) 대회부터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 새롭게 명칭을 바꾸었다. 동 대회에서는 총 3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금메달 27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33개로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 표 6-30 역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현황

회수	개최년도	개최지	대회규모 (국가/선수)	한국선수단 참가 현황		
				인원(선수/임원)	메달획득(금/은/동)	종합순위
1	1975	오이타(일본)	18/973	-	-	
2	1977	파라마타(호주)	16/430	6	6-/1	
3	1982	홍콩(홍콩)	23/744	11	8/4/3	
4	1986	수라카르타(인도네시아)	19/861	76 (62/14)	40/19/9	
5	1989	고베(일본)	41/1,648	114 (78/36)	73/29/29	4위
6	1994	베이징(중국)	42/2,081	131 (93/38)	46/28/17	3위
7	1999	방콕(태국)	42/1,700	137 (104/33)	31/26/27	4위
8	2002	부산(대한민국)	43/2,268	425 (303/122)	63/67/60	2위
9	2006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	45/3,000	256 (166/90)	58/42/43	3위
10	2010	광저우(중국)	41/5,000	300 (198/102)	27/43/33	3위
11	2014	인천(대한민국)	개최 예정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12) 내부자료, 2006년까지 아태장애인경기대회 / 2010년부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 개편

3) 종목별세계선수권대회

종목별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는 장애인올림픽대회 다음으로 가장 큰 국제대회이다. 기록적 측면에서도 장애인올림픽을 능가하고 있다. 종목별세계선수권대회는 대부분 장애인올림픽 중간년도에 개최된다.

2012년 국제대회 국내개최는 2012 휠체어컬링 세계선수권대회 등 총 8개 대회였으며, 국제대회 참가는 2012 IPC 역도오픈선수권대회 등 총 15개 대회에 참가하여 장애인올림픽 출전권 획득 및 경기력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표 6-31 2012년도 국제대회 국내개최 및 국제대회 참가 현황

구분	대회명	대회기간	대회장소	대회규모 총인원(선수/임원) (결과)	
개최	1	2012 휠체어컬링 세계선수권대회	2. 18~2. 25	강원도 춘천	7명(5/2)
	2	제21회 서울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4. 26~4. 29	서울	10명(10/0)
	3	2012 수원 국제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	4. 28~5. 4	경기도 수원	60명(40/20)
	4	2012 IWF 휠체어테니스 세계선수권대회	5. 21~5. 27	서울	11명(8/3)
	5	제7회 아태농아인종합경기대회	5. 26~6. 2	서울	188명(135/53)
	6	2012 IWTF 휠체어테니스시리즈대회	5. 29~6. 15	서울, 대구, 부산	224명(198/26)
	7	2012 아시아 시각장애인볼링대회	8. 19~8. 26	서울	16명(12/4)
	8	2012 아시아 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10. 29~11. 4	여주	20명(16/4)

구분	대 회 명	대회기간	대회장소	대회규모 총인원(선수/임원) (결과)
참가	2012 IPC 역도오픈선수권대회	2. 3~2. 1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0명(7/3)
	UCI 장애인도로/트랙사이클선수권대회	2. 2~2. 8 / 2. 8~2. 1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미국 LA	16명(12/4) / 6명(3/3)
	IPC 아이스슬레지하키 세계선수권대회	3. 21~4. 2	노르웨이 하마르	22명(17/5)
	IPC 육상선수권대회	3. 27~4. 1	호주 브리즈번	14명(11/3)
	중국장애인탁구오픈대회/ 슬로베니아장애인탁구오픈대회	4. 19~4. 25 / 5. 8~5. 13	중국 베이징 / 슬로베니아 라스코	12명(9/3) / 20명(13/7)
	런던국제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5. 2~5. 8	영국 런던	10명(5/5)
	스페인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5. 8~5. 15	스페인 팔마	10명(8/2)
	독일조정월드컵대회	6. 14~6. 17	독일 뮌헨	5명(2/3)
	IPC 영국국제사격대회	7. 1~7. 7	영국 에일즈버리	19명(12/7)
	2012 세계농아인축구선수권대회	7. 16~7. 28	터키 앙카라	20명(16/4)
	2012 IPC 호주알파인스키선수권대회	8. 5 ~ 8. 10	호주 스레드보	6명(3/3)
	IPC 러시아대륙간컵댄스스포츠대회	9. 7 ~ 9. 9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10명(8/2)
	IPC 알파인스키 유럽컵 선수권대회	11. 29 ~ 12. 9	오스트리아 오버구르글, 피쯔탈	5명(2/3)
	미국국제컬링선수권대회	12. 5 ~ 12. 9	미국 뉴욕	9명(5/4)
	IPC 노르딕스키선수권대회	12. 9 ~ 12. 14	핀란드 부오키티	5명(2/3)

4) 농아인올림픽대회(데플림픽 대회)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기구는 여러 국가에서 1차 대전 이전에 조직되었지만(독일의 경우 1888년 베를린에서 최초의 청각장애인스포츠기구가 발족됨) 1924년 이전까지는 그다지 큰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 국제청각장애인경기대회(International Games for the Deaf / International Silent Games)로 시작된 농아인올림픽대회(Deaflympics)는 1969년 제11회 유고 베오그라드(Belgrade) 대회부터 청각장애인월드게임(World Games for the Deaf)으로 개최되던 것이 2001년 제19회 이탈리아 로마 대회부터 지금의 Deaflympics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1949년 시작된 동계 대회는 1949년 4회 스위스 몬타나(Montana) 대회부터 하계 대회 개최년도 중간년도에 개최되고 있다. 동하계 농아인올림픽대회는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청각장애인들이 참가하는 올림픽으로서 스포츠를 통한 심신 단련과 친목 도모 및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제15회 대회에 처음으로 선수단을

파견하였고, 제16회 대회에서는 29명(선수 21, 임원 8)의 선수단 참가, 제17회 대회에는 육상, 축구, 사이클, 탁구 4개 종목 36명(선수 25, 임원 11)의 선수단을 파견하였으나 입상을 하지 못하였다.

이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8회 대회에는 육상, 축구, 탁구, 볼링,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 4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대회 참가 처음으로 육상 남자 100m 채경완 선수와 배드민턴 여자단식의 박혜연 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회원국은 2012년 현재 105개국이며, 한국은 1984년 6월 1일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집행위원회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경기종목으로는 육상, 배드민턴, 농구, 비치발리볼, 볼링, 사이클, 축구, 핸드볼, 유도, 가라데, 산악자전거, 오리엔티어링, 사격, 수영, 탁구, 태권도, 테니스, 배구, 레슬링 자유형,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등 20개 종목(동계 -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컬링, 아이스하키, 스노보드 등 5개 종목)이 있고, 참가 자격은 국제 연맹의 규정에 따른 아마추어로서 잘 들리는 쪽의 귀의 청력상실 정도가 55데시벨(dB) 이상인 청각장애인만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 제한은 없다.

우리나라는 2009년 제21회 타이베이 하계대회에 총 94명(선수 63, 임원 31)이 참가하여 금 14, 은 13, 동 7의 메달을 획득, 종합 3위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한편, 2011년 동계대회는 체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개최되지 않았고, 2013년 제22회 하계대회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표 6-32 역대 농아인올림픽대회(하계) 개최 및 참가 현황

회수	개최년도	개최지	대회규모 (국가/선수)	한국선수단 참가현황		
				인원(임원/선수)	메달획득(금/은/동)	종합순위
1회	1924	파리(프랑스)	9/145	-	-	-
2회	1928	암스테르담(네덜란드)	10/210	-	-	-
3회	1931	뉴렌베르그(독일)	14/316	-	-	-
4회	1935	런던(영국)	12/293	-	-	-
5회	1939	스톡홀름(스웨덴)	13/264	-	-	-
6회	1949	코펜하겐(덴마크)	14/405	-	-	-
7회	1953	브뤼셀(벨기에)	16/524	-	-	-
8회	1957	밀라노(이탈리아)	25/625	-	-	-
9회	1961	헬싱키(핀란드)	24/595	-	-	-
10회	1965	워싱턴(미국)	27/697	-	-	-

회수	개최년도	개최지	대회규모 (국가/선수)	한국선수단 참가현황		
				인원(임원/선수)	메달획득(금/은/동)	종합순위
11회	1969	베오그라드(유고슬라비아)	33/1183	-	-	-
12회	1973	말뫼(스웨덴)	32/1061	-	-	-
13회	1977	부쿠레슈티(루마니아)	32/1118	-	-	-
14회	1981	켈른(독일)	32/1213	-	-	-
15회	1985	로스앤젤레스(미국)	29/1053	19(9/10)	-	-
16회	1989	크라이스트처치(뉴질랜드)	30/959	30(8/22)	-	-
17회	1993	소피아(불가리아)	51/1705	36(11/25)	-	-
18회	1997	코펜하겐(덴마크)	62/2068	40(11/29)	·/·/2	38위
19회	2001	로마(이탈리아)	71/2405	44(16/28)	4/ 4/ 4	11위
20회	2005	멜버른(호주)	80/4000	50(15/35)	6/ 5/ 5	10위
21회	2009	타이페이(대만)	77/2493	94(31/63)	14/13/7	3위
22회	2013	소피아(불가리아)	개최예정	참가예정		

※ 자료 : Deaflympics (<http://www.deaflympics.com>) / 대한장애인체육회(2012)

5) 스페셜올림픽대회

1963년 Eunice Kennedy Shriver가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5주간 여름 캠프를 시작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스페셜올림픽대회는 1968년 7월 20일 Joseph P. Kennedy, Jr. 재단과 시카고 공원지구 공동 후원으로 제1회 하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미국 26개 주와 캐나다 선수 1,000명이 육상과 수영 경기대회에 참가하였고, 이듬해 비영리 기구인 스페셜올림픽 법인이 설립되어 미국의 모든 주와 캐나다, 프랑스에서 스페셜올림픽 현장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스페셜올림픽대회는 다른 스포츠 관련 대회와 다르게 참가선수들을 연령과 성별로 구분하여 편성한 후 디비전 경기를 통하여 수준별 결선 경기 조를 편성한다. 기록경기를 중심으로 디비전 경기의 기록과 수준별 결선 경기 기록을 비교하여 10%이상 초과한 경우 실격 처리한다. 모든 선수들 중 결선 경기의 1-3위를 한 선수들에게는 메달을 수여하며, 4-8위의 선수들에게는 리본을 수여한다. 등외나 실격 처리 당한 선수들에게도 참가 리본을 제공한다. 현재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도 스페셜올림픽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미국 내에서는 각 주별로 스페셜올림픽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전 세계적으로 170여개국 3만명 이상의 선수와 코치, 자원봉사자들이 스페셜올림픽대회에 참가하며, 하계와 동계에 걸쳐 4년에 한 번씩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9년 제5회 뉴욕(미국) 하계대회에 처음 참가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참가를 하고 있다. 2011년 아테

네(그리스)에서 개최된 제13회 스페셜올림픽 하계대회에는 육상, 수영, 보체 등 11개 종목에 총 111명(선수 8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고, 차기 동계대회인 2013 스페셜올림픽 동계대회는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하여 105개국 3,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 표 6-33 스페셜올림픽 하계대회 개최 및 참가 현황

회수	개최 년도	개 최 지	대회 구분	대회규모 (국가/선수)	한국선수단 참가현황
					인 원 (임원/선수)
1회	1968	시카고(미국)	하계	2/1,000	-
2회	1970	시카고(미국)	하계	4/2,000	-
3회	1972	로스앤젤레스(미국)	하계	-/2,500	-
4회	1975	미시건(미국)	하계	-/3,200	-
5회	1979	뉴욕(미국)	하계	20/3,500	-
6회	1983	루이지애나(미국)	하계	-/4,000	-
7회	1987	인디애나(미국)	하계	70/4,700	-
8회	1991	미네아폴리스(미국)	하계	100/6,000	-
9회	1995	코네티컷(미국)	하계	143/7,000	-
10회	1999	노스캐롤라이나(미국)	하계	150/7,000	30(8/22)
11회	2003	더블린(아일랜드)	하계	150/6,500	40(11/29)
12회	2007	상하이(중국)	하계	164/7,500	50(15/35)
13회	2011	아테네(그리스)	하계	170/7,000	111(31/80)
14회	2015	로스앤젤레스(미국)	하계		예정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12), Special Olympics(<http://www.specialolympics.org>)

※ 일부 대회의 경우 참가국 및 참가선수단 규모 미확인

■ 표 6-34 스페셜올림픽 동계대회 개최 및 참가 현황(2013. 3 기준)

회수	개최 년도	개 최 지	대회 구분	대회규모 (국가/선수)	한국선수단 참가현황
					인 원 (임원/선수)
1회	1977	콜로라도(미국)	동계	-/500	-
2회	1981	버몬트(미국)	동계	-/600	-
3회	1985	유타(미국)	동계	14/-	-
4회	1989	네바다(미국)	동계	18/1,000	-
5회	1993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	동계	50/1,600	-
6회	1997	토론토(캐나다)	동계	73/2,000	19(9/10)
7회	2001	앵커리지(미국)	동계	70/1,800	36(11/25)
8회	2005	나가노(일본)	동계	84/2,600	44(16/28)
9회	2009	아이다호(미국)	동계	100/2,750	94(31/63)
10회	2013	평창(대한민국)	동계	106/3,000	247(68/179)

※ 자료 : 대한장애인체육회(2013), Special Olympics(<http://www.specialolympics.org>)

※ 일부 대회의 경우 참가국 및 참가선수단 규모 미확인

5.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2012 장애인체육 우수지도자 아카데미는 가맹경기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추천, MOU 대학의 추천을 받은자를 대상으로 경기력향상, 선수관리, 국제대회 참가운영, 소양교육 등의 이론 및 실기교육을 통해 장애인체육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총 80시간에 걸쳐 이론 및 실기수업을 실시하여 신청인원 60명 중 총 4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 표 6-35 2013 장애인체육 우수지도자 아카데미

구분	일반과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경기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추천자 MOU 대학(기관)을 통한 신청자
교육기간	2013. 2. 7~2. 22(80시간)
교육장소	한국체육대학교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력향상: 트레이닝, 스포츠심리학개론, 영상분석 이해와 활용, 운동역학의 현장적용 선수관리: 운동상해 예방 및 처치, 매뉴얼 데라피, 영양관리, 테이핑 국제대회 참가운영: 등급분류, 도핑방지교육,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소양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장애의 이해, 장애인스포츠체험 및 장애인스포츠행정
수료인원	49명(60명)

※ 2011년까지 실시되었던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사업은 2015년 국가공인 자격제도 시행에 따라 중지됨

2012년 국제심판 및 등급분류사 양성사업은 휠체어농구, 사격, 스키, 육상, 컬링, 탁구, 펜싱 등 18개 종목 관련 127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등급분류사 81명, 심판 46명), 향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양성 및 지원 로드맵을 계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표 6-36 2012년도 국제심판등급분류사 양성사업 현황

종목	등급분류사	국제심판	계
휠체어농구	2	5	7
사격	3	12	15
스키	1	1	2
육상	3	-	3
컬링	7	-	7
탁구	49	10	59
펜싱	-	1	1

종목	등급분류사	국제심판	계
보치아	1	2	3
볼링	2	-	2
배드민턴	1	-	1
축구	-	1	1
테니스	-	3	3
조정	2	1	3
럭비	3	1	4
요트	1	-	1
골볼	6	7	13
역도	-	2	2
수영	-	-	0
계	81	46	127

한편, 체육지도자 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2015년부터 시행되는 국가공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양성을 위한 제도를 준비 중에 있으며, 그동안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시도장애인체육회와 지역대학의 협력으로 양성(2007-2011)하였던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연수교육은 폐지되었다.



스포츠산업

- // 제1절 개관
- // 제2절 스포츠소비 현황
- // 제3절 스포츠산업 현황
- // 제4절 프로스포츠산업 현황
- // 제5절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

Section

07 스포츠산업

제1절 개관

1. 스포츠산업 현황

1) 스포츠 산업이란?

국내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산업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의해 법률적 근거로 규정되고 있다. 스포츠 산업 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스포츠 활동에서 요구되는 용품과 장비, 스포츠 시설과 서비스, 스포츠 경기, 이벤트, 스포츠 강습 등과 같이 유·무형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유통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스포츠와 관련된 경제 활동을 총칭하여 이를 스포츠 산업이라 한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체육(운동경기, 야외활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과의 관련성이 스포츠산업에 속한 재화 및 서비스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수 용구 생산 장려조항은 스포츠용품제조업 육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외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와 시설운영에 관계된 스포츠시설운영업의 법적 근거이다. 반면에 스포츠를 오락과 여흥의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낼 수 있는 스포츠 이벤트업이나 각종 스포츠 정보를 생산 가공 유통시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

는 스포츠 정보업, 스포츠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려는 스포츠마케팅업의 법적 근거는 없거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과거 국가주도의 수출 지향적 성장전략이 지배하던 1970년대에는 산업적인 의미에서의 스포츠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제조업 중심의 스포츠 관련 산업은 1980년대 초 프로스포츠가 소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스포츠 자체가 스포츠산업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스포츠를 핵심 상품으로 스포츠와 관련된 용품시장을 형성하고, 해당시설의 건설 및 운영하는 시장을 만들어내고 또 이와 관련된 스폰서십 시장과 마케팅 시장이라는 파생상품을 생성하게 되었다.

결국, 오늘날 세계 스포츠 시장의 공통된 경향은 스포츠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전체 산업구조 속에서 스포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A.T.Kearney의 스포츠 팀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스포츠 산업은 4800~620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Lagardère Unlimited에서는 세계 스포츠 산업은 국가별 GDP성장률보다 높으며 향후 지속적인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스포츠 시장 성장률은 '05~'09년까지 6% 성장했지만 향후 '15년까지 4%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스포츠 산업의 영역은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의 특징 및 대상과 사업단위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의 특성으로 분류하며, 관람스포츠산업과 참여스포츠산업에 관련된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2012.12.27. 한국표준산업분류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개정).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한국표준산업분류 특수분류(스포츠산업)를 근거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국내 스포츠산업의 규모는 연간매출규모와 소비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때 36조 5,130억 원으로서 국내총생산(GDP)의 2.9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10년의 34조 4,820억 원보다 약 5.56% 증가한 규모이다. 미국의 스포츠산업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1,893억 달러(약 220조 원), 영국 19,985백만파운드(약 37조원), 일본 3조 3,476억엔(약 43조원), 독일 3조 5,120억 유로(약 52조 7천억원)의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경제활동이 하나로 융합되어 그 정점에는 스포츠

활동이 자리한다. 관람과 참여 스포츠 기회를 제공하며, 스포츠 활동 자체를 생산하는 업체 역시 스포츠산업의 핵심부문이다. 이러한 핵심부문에 속한 업체(단체)가 스포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원 및 보조부문이 필요하다.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스포츠 활동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면 스포츠용품이 필요하고 체육시설도 요구되며, 선수 등 경기 인력의 양성 및 공급, 스포츠스폰서십 수주 등의 자원조달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활동과 경제활동 주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스포츠산업의 대상 영역은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거나 스포츠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확장시키려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것이다.

2) 스포츠산업진흥법 및 스포츠산업 분류 적용 변화

스포츠산업 내에 다양한 분야의 진흥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대안 및 지원조직 제도화를 위한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마침내 2007년 4월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지원정책의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의 체육용구의 생산 장려 조항에 의거 체육용구제조업, 체육시설업의 육성 등에 한정하고 있을 뿐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과 육성은 불가능하였으나,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으로 인해 국내 스포츠산업 발전을 지속적, 실질적으로 견인하고 지역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흥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특성화 및 지방분권화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되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산업 사업자단체 설립, 스포츠 지원센터 지정, 프로 스포츠 육성 등의 사업을 통해 스포츠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은 2010년 5월 5일부터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 관련사항 삭제, 공유재산의 목적 및 용도 확보 수단 마련 등 이다.

2012년 체육백서에서는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문화체육관광부, 2011)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를 적용하였다.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321호) 지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 적용하였고 2010년 기준조사는 4개의 대분류, 15개의 중분류, 46개의 하위분류인 「산업특수분류」를 근거로 실시하되

스포츠산업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분류에 항목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항목은 스포츠미디어분야로서 특수분류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스포츠산업 진흥 기반에 필요한 분야이며 2차자료를 활용한 정확한 통계산출이 가능하기에 스포츠방송업, 스포츠신문업 등이 포함되었다. 2012년 12월 27일 한국표준산업분류 특수분류(스포츠산업) 개정안을 통계청이 발표하였고, 2012년 이후 실시되는 스포츠산업 기준조사는 스포츠산업 특수분류(v3.0) 체계를 적용하여 3개의 대분류(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 8개의 중분류, 20개의 소분류, 64개의 세분류로 구분하였다.

스포츠산업 특수분류(v2.0)	개정 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v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중분류4, 소분류17) •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중분류7, 소분류22) •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중분류3, 소분류5) •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중분류1, 소분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시설업(중분류2, 소분류6, 세세분류18) • 스포츠 용품업(중분류2, 소분류6, 세세분류26) • 스포츠 서비스업(중분류4, 소분류8, 세세분류20)

※ 통계청(2013), 스포츠 산업 특수분류 V3.0(2012.12.27. 개정)

이러한 신 분류체계에 따르면 스포츠산업은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으로 대분류된다. 스포츠 시설업은 크게 스포츠시설 운영업, 스포츠시설 건설업으로 분류된다. 스포츠 용품업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과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으로 분류된다. 스포츠 서비스업은 스포츠 경기 서비스업,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각각의 세세분류는 다음 (그림7-1)과 같다.

■ 표 7-1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항목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명	소분류	세분류	KSIC	산업분류명	품목명
1. 스포츠 시설업	101	스포츠시설 운영업	경기장운영업	1010101	91111	실내경기장 운영업	
				1010102	91112	실외경기장 운영업	
				1010103	91113	경주장 운영업	
			참여스포츠시설 운영업	1010201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1010202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1010203	91133	수영장 운영업	
				1010204	91134	볼링장 운영업	
				1010205	91135	담구장 운영업	
				1010206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1010207	91291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1010208	91292	체육공원 운영업	
				1010209	91293	기원 운영업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1010301	91121	골프장 운영업	
	1010302	91122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010401	91231	낚시장 운영업			
		1010499	91239	기타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102	스포츠시설 건설업	스포츠시설 건설업	1019900	91139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020001	41226	스포츠시설 조경 건설업	
					1020002	41229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2. 스포츠 용품업	201	운동 및 경기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010101	33309 33409*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2010102	33301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2010103	31991	자전거 제조업	
				2010104	33303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2010105	33302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2010106	33999	스포츠 응원용품업	
				2010199	31120* 25200*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2010201	14191	스포츠 의류 제조업	
				2010202	13224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2010203	13229	스포츠 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2010204	14199	스포츠 관련 의류부분품 제조업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10301	15129	스포츠 가방 제조업	
				2010302	15219	스포츠 신발 제조업	
				2010303	15220	스포츠 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명	소분류	세분류	KSIC	산업분류명	품목명
2. 스포츠 용품업	202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2020101	46464 46463*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2020102	46465	자전거 도매업	
				2020103	46413	스포츠 의류 도매업	
				2020104	46491	스포츠 가방 도매업	
				2020105	46420	스포츠 신발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2020201	47631 47640*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2020202	47632	자전거 소매업	
				2020203	47416	스포츠 의류 소매업	
				2020204	47430	스포츠 가방 소매업	
				2020205	47420	스포츠 신발 소매업	
		2020206	47911* 47919* 47993* 47999*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2020300	69210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3. 스포츠 서비스업	301	스포츠 경기 서비스업	스포츠 경기업	3010100	91191
스포츠 베팅업	3010201				91241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3010299				91249	기타 스포츠 베팅업	
	3010301				73901	스포츠 에이전트업	
스포츠 마케팅업	3010302				73903	회원권 대행 판매업	
	3010303				71531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3010399				91199	기타 스포츠 마케팅업	
302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스포츠 미디어업	3020101	58121	스포츠 신문 발행업	
				3020102	58122	스포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3020103	60100	스포츠 관련 라디오 방송업	
				3020104	60210	스포츠 관련 지상파 방송업	
				3020105	60221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3020106	60222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3020107	60229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3029900	63991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1303	스포츠 교육기관	스포츠 교육기관	3030001	85611	스포츠 교육기관		
			3030099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39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3990101	58211	온라인·모바일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3990199	58219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스포츠 여행업	3990200	75211* 75212* 75290*	스포츠 여행업		

※ 주 : 스포츠미디어(방송,신문)는 특수분류에 미포함부분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에 따라 포함시킴

※ 출처 : 통계청(2013), 스포츠 산업 특수분류 v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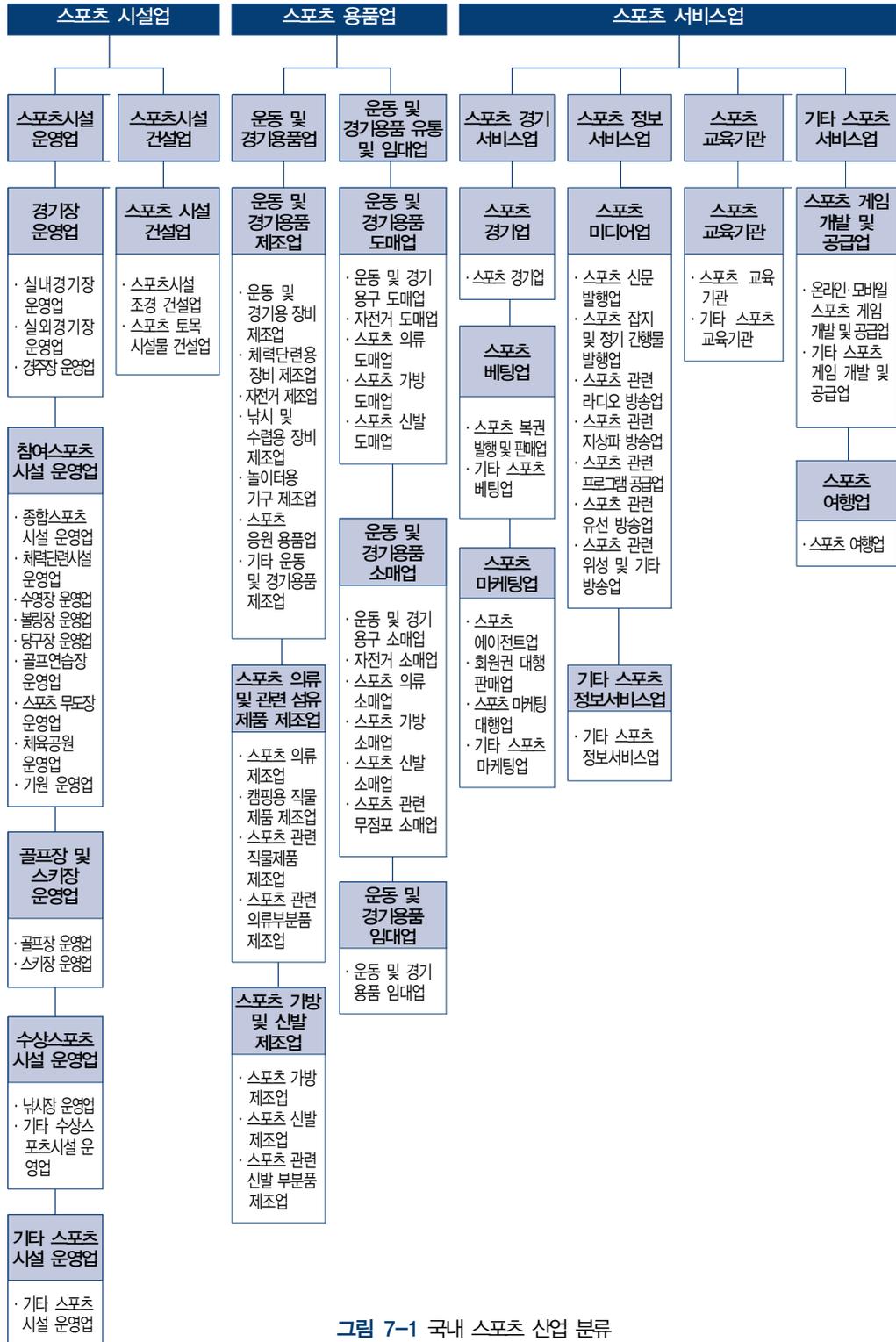


그림 7-1 국내 스포츠 산업 분류

3) 스포츠산업의 특성

스포츠산업은 구성하고 있는 각 분야마다 서로 다른 산업분류에 속하는 업종의 집합체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스포츠산업은 복합적인 산업분류 구조를 가진 산업이다. C.G.클라크가 ‘경제진보의 조건’에서 사용한 산업구조의 분류를 살펴보면 스포츠 용품업에서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은 2차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에서의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은 3차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관점에서 보면 스포츠산업은 각기 다른 산업분류를 복합적으로 통합한 형태를 갖는데, 예를 들어 운동 및 경기용품업에서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은 스포츠산업이기보다는 각각 상품에 해당하는 제조업에 해당되기도 하고 운동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은 다른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각기 다른 산업분류가 통합된 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이러한 특성으로 종래의 산업분류에서 그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산업분류 구조를 가진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공간·입지 중시형 산업이다. 스포츠 참여활동에는 적절한 장소와 입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스포츠 산업분야의 서비스는 입지조건이나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예를 들어, 월드컵 주 경기장, 스키장 그리고 골프장은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어느 정도의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가 소비자들에게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해양스포츠나 스키 등은 제한된 장소에서만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의 입지조건에 크게 의존한다.

셋째, 시간 소비형 산업이다. 스포츠산업은 산업의 발달에 따른 노동시간의 감소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여가활동의 증대로(예: 주 40시간 근무제) 발전한 산업이다. 관람스포츠와 참여스포츠가 활성화되는 것은 체육 및 스포츠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넷째, 오락성이 중심 개념인 산업이다. 스포츠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필요’보다는 ‘재미’와 관련이 있는 ‘오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중들은 의식주와 관련된 것보다는 여유 있는 삶, 혹은 삶 속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스포츠활동을 한다. 행하는 것도 재미있고, 관전하는 것도 재미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한다.

다섯째, 감동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산업이다. 영화나 연극같이 각본에 의한 감동과는 달리 스포츠는 각본 없는 감동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로 전달된다. 또한 다른 산업에서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도 건강과 감동을 함께 가져다주는 산업은 스포츠산업뿐이다. 스포츠산업이 21세기 유망산업으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정신적 만족과 함께 육체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스포츠산업의 전망

우리나라는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정치·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거버넌스 부재에 따른 각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개발도상국 원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초고령화와 같은 인구변화와 실업자, 비정규직등과 같은 저소득층의 사회적 박탈감 증대에 따른 사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체육·스포츠 분야에서도 역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스포츠 분야에서는 스포츠를 활용한 각국의 공적개발원조가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고, 다문화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포츠를 활용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지식정보사회의 진전과 함께 그 동안 체육·스포츠 발전의 중심원리로 작용하여 오던 전인교육, 국위선양, 국민건강 및 복지증진의 전통적 스포츠 패러다임에서 미디어가치 개발, 고부가가치 창출, 생산적 국민복지 등과 같은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를 강조하는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다.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는 스포츠를 소비지향적 문화·오락활동으로 간주하는 일상적이고 편협된 시각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지향적 산업활동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체조의 손연재, 배상문, 박인비 등 골프스타와 류현진, 추신수, 기성용, 손흥민 등 야구, 축구스타는 민간 외교사절로서 뿐만 아니라 연간 수십·수백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제인으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선린 우호 및 세계 평화와 축제의 한마당으로만 인식되어 오던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제스포츠이벤트의 경우 이벤트 자체의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나 관광경제적 가치가 크게 고려되고 있다. 이와 같이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스포츠산업은

전 세계적인 유망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제조업, 서비스, 유통업 등 기존 산업과 연계된 융·복합산업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산업이다. 특히 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기술과 규칙을 공유하고 있는 전지구적인 공통문화로서 광범위한 시장기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IT 분야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중요한 비즈니스 콘텐츠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스포츠 관련 직·간접적인 소비 증대로 문화·관광 등 스포츠 연관 산업과 스포츠 서비스산업의 빠른 발전이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아마추어 및 프로스포츠 팀, 선수 등이 생산해 낸 스포츠 산업의 규모만 1,893억 달러(약 220조 원)로 자동차 산업의 약 2배 이상, 영상산업의 거의 7배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0년 ‘스포츠입국전략-스포츠커뮤니티 일본’이 책정되어 새로운 스포츠문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은 타산업과 연관되어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부주도형 스포츠 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통해 스포츠에이전트, 스포츠 이벤트 기획 등 신규직종에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복지 부문에 있어서도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으로 감성적 여가 및 오락지향 사회를 건전하게 선도함으로써 건강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를 매개로 한 재화와 스포츠 서비스의 생산·유통·분배의 촉진을 가져와 국내 스포츠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대하는데 기여 할 것이고 민간 기업의 마인드를 스포츠 부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스포츠산업은 우수한 경기력 및 국제 체육계에서의 높은 위상 등 유리한 세계시장 진출 여건과 발전가능성에 비해 이를 상품화하거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기술, 인력, 정보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여타 산업 영역에 비하여 낙후된 상태이며, 개성공단 폐쇄 및 미사일 발사 등의 한반도 긴장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스포츠산업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축적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스포츠산업 환경

1) 대외 환경변화

가.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실시

주 40시간 근무제는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법정근로시간을 기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여 2004년 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보험 및 1,0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2005년 7월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2006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2007년 7월부터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2008년 7월부터는 2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2011년 7월부터는 2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그 범위가 추가적으로 확대되었고, 2012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제는 중소기업까지 확대되어 정착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 40시간 근무제 확산으로 인해 주 2일간의 휴일이 발생하면 여가 활동이 종전에 비해 다양화되며 각 문화활동이 대중화·보편화되어 자기개발 및 취미활동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취미, 교육, 게임 등과 관련된 시장이 확대될 것이며, 기업 노동 대체사업, 자기 개발과 사회성 개발, 가사 노동 대체 사업, 그리고 체험형 여가산업, 관광산업 등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각종 서비스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의 발전도 가져오게 된다. 참여스포츠 시장은 더욱 세분화될 것이며, 프로스포츠는 야구 7,533,408명, 축구 2,419,143명, 농구 1,484,539명, 배구 427,222명으로 관중 수의 증대로 인해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체육활동의 증가에 따라 스포츠용품의 수요증가, 스포츠용품의 다양화 및 첨단화도 전개될 것이다. 또한 여타 서비스 산업과 연계된 스포츠산업(예 : 가족형·체험형 참여스포츠 등)의 등장도 예상된다.

나. 산업의 IT화를 통한 뉴 미디어 시대 도래

우리나라의 IT관련 산업 기업투자는 1998년 이래 40%이상 높은 투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IT산업이 실질 GDP에 대한 성장 기여율 또한 매년 증가하여 2001년 이후

40%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IT산업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는 인터넷에 대한 급속한 수요확대로 인해 관련 장비 및 서비스산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4년 인터넷 이용자수는 약 13만 8,000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2,000만 명을 넘어서, 2004년에는 3,000만 명 선을 넘어 섰고, 현재 2012년에는 3,812만 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7-2 국내 인터넷 사용자 추이

(단위 : 만명)

년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용자수	943	1,904	2,438	2,627	2,922	3,158	3,301	3,412	3,482	3,536	3,658	3,701	3,718	3,812

※ 출처 : www.nic.or.kr

IT산업의 발전, 여타 산업의 IT화 가속, 그리고 인터넷의 확산 등으로 인해 스포츠산업의 e-business화가 전개되고 있다. 스포츠산업의 e-business화 기존 산업의 e-business화와 신규 사업(산업)의 e-business화로 구분될 수 있다.

기존 산업의 e-business화의 경우 스포츠용품 산업, 참여스포츠 관련업체 그리고 프로스포츠 구단들의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활용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신규 산업에서의 e-business화는 스포츠로 특화된 인터넷 콘텐츠를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한 모바일 형태로 제공하거나 가공하는 업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스포츠산업의 발전은 방송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의 디지털화는 스포츠산업의 IT화 및 e-business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스마트폰, SNS, 공동구매방식의 소셜커머스,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PC와 같이 IT 기술을 융합한 e-business를 통한 스포츠산업의 수익 모델 또한 새롭게 개발될 것이며, 이는 다양한 새로운 매체 수의 증가 및 기존 산업의 구조변화를 촉진하는 등의 스포츠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스포츠의 세계화와 경쟁의 심화

스포츠의 세계화란 스포츠영역에서 일어난 세계화이다. 세계화란 일종의 동질화이자 세계의 각 사회간에 상호의존성의 증대과정이기도 하다. 스포츠의 세계화란 스포츠의 세계에서 각국이 보여준 동질화가 심화되는 것이자 각국의 스포츠 간에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스포츠의 세계화는 올림픽과 월드컵의 권위

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것에서 발견된다. 이는 올림픽 참가국 수의 증가 및 월드컵 시청인구에서 관찰되는데, 1960년 100개국으로 넘어서면서 주춤하던 참가국수가 2000년이 되면서 200개로 2배로 증가하였고, 월드컵 시청인구 역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시청인구 400억 명 이상으로 추산됨으로써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스포츠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수치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결국 스포츠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스포츠의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특정 유명대회나 스타선수의 미디어가치가 커질 것이다. 스포츠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지원 외에도 높아진 관심 때문에 개인 소비자가 지출하게 될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스포츠세계화에 따라서 세계 스포츠산업 시장에서의 각 국가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은 다른 나라의 스포츠산업과 경쟁을 해야 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2) 대내 환경변화

가. 참여·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대

참여·레저스포츠는 소득수준 및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소비자의 차별적인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다. 1997년 IMF관리체제에 들어선 이후 많은 레저스포츠 시설들이 부도나거나 신규개발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1995~2000년 기간 동안 레저산업 연평균 성장률은 약 13.7%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르렀고, 주 40시간 근무제, 가족 중심의 문화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레저스포츠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참여·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아스포츠, 실버스포츠 등이 새롭게 늘어날 것이며, 신세대를 위한 익스트림스포츠, 장년층을 위한 시니어게임, 암벽 등반 등 모험 스포츠 및 자연 친화적 스포츠 그리고 이러한 분야들이 상호 결합된 스포츠 등에 대한 소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의 소비지출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나. 스포츠용품업의 경쟁 심화

초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 주 40시간 근무제 등은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여가시간의 증대를 가져와 관련 스포츠용품의 소비를 증대시키게 된다. 국내 스포츠용품 시장은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극심한 경쟁에 처해 있다. 기존 스포츠용품은 대부분이 노동집약적인 방식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90년대 이후 국내 노동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스포츠용품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가동 중단, 연쇄도산,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국내 스포츠용품업체들의 시장(내수, 수출) 경쟁력은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표 7-3> 운동용구의 수출입 현황 및 무역수지 증가의 둔화 추세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 표 7-3 운동용구 수출입 현황

(단위 : 천달러)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2012	125,448	596,572	△471,125
2011	113,978	594,700	△480,722
2010	114,886	592,137	△477,251
2009	91,785	501,618	△409,833
2008	90,559	580,402	△489,843
2007	114,227	587,015	△472,788
2006	120,141	503,542	△383,401
2005	105,096	436,217	△331,121
2004	105,762	442,660	△336,899
2003	90,676	438,523	△347,846
2002	83,074	359,389	△276,315
2001	90,226	272,442	△180,216

※ 출처 : 관세청(2011). 무역통계-품목별(HS4단위 9506)수출입실적

스포츠용품의 부가가치는 생산공정에서 보다는 디자인 및 마케팅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특히 세계적 스포츠용품 회사들은 스포츠 스폰서십과 같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디다스사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에서 공식 스폰서로 참여했으며, 경쟁사인 나이키는 각종 대표팀 유니폼 스폰서로 참여했다. 이 밖에 FILA, 푸마, 아식스 등도 각종 국제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 마케팅에 힘을 기울이고 있

다. 세계적 스포츠용품사의 이러한 활동은 자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기 위함이다. 즉 국내시장에서도 우리기업은 선진 외국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스포츠용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용품업체들은 극심한 경쟁과 영세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공정 부문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 경쟁력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에서는 선진국의 기술·디자인 경쟁력에 크게 뒤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스포츠용품업계는 ‘소재의 첨단화’ 및 ‘새로운 디자인 개발’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

스포츠분야에서의 패러다임이 과거 엘리트체육 중심의 스포츠에서 생활체육 확대와 스포츠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베이징 올림픽 7위, 런던 올림픽 5위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세계 10위권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한 것에 비하여 스포츠 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스포츠는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참여율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2010년도 우리나라 생활체육 참여율이 41.5%로 2008년 대비 7.3% 증가하였다. 이렇게 스포츠 참여인구의 증가 및 다양화와 건강 및 여가 문화로서의 스포츠 활동이 확산되어가면서 새로운 스포츠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스포츠의 역할도 국가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통합을 위한 생활체육의 육성을 거쳐 현재는 스포츠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인식하고 육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주요 국가는 스포츠산업을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산업으로 신산업 창출을 위해 관심과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다.

제2절 스포츠소비 현황

1. 스포츠소비 정의

소비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재화를 소모하는 것이며 스포츠소비는 스포츠와 관련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를 소모하는 것이다. 스포츠소비는 상업적 시장에서 조달되는 스포츠재화와 서비스의 구입비용을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비상업적 스포츠활동(예: 동호인회 회비, 스포츠교실 참가비 등)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부문에 의해서 제공되는 스포츠참여 기회도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 혹은 참여자 개인의 부담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소비라 할 수 있다.

스포츠소비의 규모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체육정책의 기초 자료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스포츠소비는 국민이 스포츠활동의 재원을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특정 사회의 스포츠시장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스포츠소비규모는 운동참여율 지표와 더불어 체육진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스포츠소비의 특징을 종목별, 소비자의 특성별로 파악하는 것은 스포츠산업을 진단하고 성장을 전망하는 데 기초적 자료로서 의의가 크다. 일본의 경우 자유시간디자인센터에서 스포츠소비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해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여가개발센터 조사는 스포츠활동에 쓰는 연간 총 비용은 물론 종목별, 참가형태별로 소요된 비용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년 주기로 조사 발표되는 국민생활참여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월평균 운동경비를 조사하는 항목이 있으나 이 비용이 어떤 종목에 쓰였는지 혹은 용품구입에 쓰였는지 서비스이용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밝힐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자료에 기초한 스포츠소비 현황 추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2. 스포츠소비의 특성

스포츠소비는 운동용품 소비, 스포츠시설서비스지출, 그리고 운동경기관람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스포츠시설서비스 이용료와 운동경기관람료는 서비스 구입에 해당되며 운동용품은 재화의 구입에 소요된 비용이다.

국내 스포츠에 대한 소비통계는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한 가계조사연보의 가구당 소비 현황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가계조사연보의 도시기구 스포츠용품 및 서비스 품목별 소비는 2008년부터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07년까지의 도시 가구당 스포츠용품 및 서비스 소비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2007년의 국내 스포츠소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운동화와 운동복으로 각각 가구당 전체 스포츠소비의 23.8%를 차지하였고 태권도 학원비가 22.9%로 그 다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경기를 직접 관람하기 위해서 지출된 관람료는 가구당 연평균 1,000원으로 0.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가계조사연보」의 도시기구 스포츠 소비지출 자료에 의하면 스포츠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가구당 연간 111,000원, 스포츠용품에 대한 지출이 149,000원으로 나타나 스포츠용품 지출이 스포츠서비스 지출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소비의 내부 구성은 스포츠용품과 시설서비스 교습은 직접 스포츠참가로 파생된 소비인데 반해서 관람료는 간접적 스포츠참여에 대응되는 소비이다. 스포츠소비의 내부 비율이 우리사회의 스포츠활동 여건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서비스소비 즉 운동시설 이용료와 교습비 등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도시기계연보 자료에 근거할 때 관람스포츠를 보기 위해서 지출하는 소비는 매우 적다. 전체 소비의 0.004%에 불과하므로 우리나라의 관람스포츠의 시장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스포츠소비 지출

여가보다 일을 우선 시하는 전통적인 사회 인식이 변화되어 여가생활의 중요성이 넓게 확산되었다. 여가를 중시하는 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여가생활의 여건도 여가활성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97년 말의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불황을 거친 이후 2000년부터 국내 경제성장이 안정화되고 있고 향후 경제 성장도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불황과 위축된 가계소비로 인해서 여가관련 지출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2010년 이후 서서히 회복되어가고 있다. 여가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여가시간의 증가에도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조기 정착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직장이 늘어나고 있고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직장인수가 점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가활동의 활성화는 스포츠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연간 스포츠소비의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민간 소비의 주체인 가계나 기관(기업 등) 단위의 스포츠소비 즉 스포츠활동과 관련해서 파생된 경비를 합산해야한다. 그러나 기업의 스포츠관련 지출 자료는 공식 통계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고 관련 조사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스포츠소비는 가계단위 소비의 총량으로 대신하였다.

스포츠관련 소비통계로 활용 가능한 자료는 매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가계조사연보」를 들 수 있다. 동 자료 중에서 교양·오락비 항목 지출이 여가부문 가계 소비규모의 지표로 사용 가능하다. 우리나라 가구의 연간 스포츠소비는 가계조사연보의 전 가구지출 통계치 중 스포츠용품 구입과 스포츠시설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든 비용과, 그리고 운동경기 관람료를 합산하여 이를 연간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 표 7-4 도시가구 스포츠용품 및 서비스 품목별 소비

(단위 : 천원)

구분	품 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스포츠 용품	이온음료	3.6	3.6	3.6	-1)	-	-		-
	운동화	32.4	32.4	37.2	-1)	-	51.6	51.6	53.0
	자전거	4.8	4.8	6.0	4.8	8.4	8.4	6.0	6.0
	등산낚시용품	7.2	8.4	9.6	9.6	15.6	15.6	16.8	15.0
	운동기구	8.4	7.2	7.2	32.4	26.4	25.2	26.4	22.0
	운동용품	12.0	10.8	13.2					
	운동복	32.4	33.6	42.0	46.8	51.6	56.4	57.6	53.0
	소 계	100.8	100.8	118.8	93.6	102.0	157.2	157.2	149.0
스포츠 서비스	운동경기 관람료	-	1.2	2.4	1.2	1.2	1.2	1.2	1.0
	수영장이용료	6.0	4.8	6.0	-1)				
	볼링장이용료	4.8	3.6	6.0	52.8	61.2	63.6	64.8	28.0
	운동오락시설기구이용료	68.4	70.8	70.8	-1)				
	운동강습료	36.0	39.6	38.4	40.8	44.4	43.2	34.8	32.0
	교양오락강습료	13.2	14.4	12.0	-1)	-	-	-	-
	태권도학원	38.4	46.8	50.4	-1)	-	52.8	55.2	51.0
	기타 체육학원	19.2	20.4	20.4	-1)	-	-	-	-
소 계	186.0	201.6	206.4	94.8	106.8	160.8	156.0	111.0	
합 계	286.8	302.4	325.2	188.4	208.8	318.0	313.3	223.0	

※ 출처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99~2002」, 「가계조사연보 2003~2007」, 체육과학연구원 「한국의 체육지표 1999~2007」
 ※ 주 : 1) 이온음료가 타음료 및 주류에, 교양오락강습료가 기타강습료, 기타체육비가 여체능계 학원비에 포함되어 지표항목에서 제외
 2) 2008년부터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품목별 스포츠소비를 연간으로 합산하면 2007년 연간 가구당 평균 223,000원으로 2006년 가구당 연간 스포츠소비인 313,300원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스포츠 소비지출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가구의 스포츠소비를 스포츠용품소비와 서비스소비로 구분해 보면 스포츠용품 소비는 149,000원으로 전체의 66.8%를 차지했으며 스포츠서비스 소비는 111,000원으로 전체 스포츠소비의 33.2%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스포츠소비는 2000년에는 연간 286,800원으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302,400원, 2002년에는 325,200원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에는 188,400원, 2004년 208,800원으로 감소하였다. 2005년 318,000원, 2006년 313,300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가 2007년 223,000원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 표 7-5 교양오락비와 스포츠소비

년 도	가구교양오락비(A) (연)(원)	교양오락비 비율(%)	가구스포츠소비(B) (연)(원)	스포츠소비/교양오락비 비율 (B/A)(%)
2000	1,023,600	5.2	286,800	28.0
2001	1,028,400	4.9	302,400	29.4
2002	1,059,600	4.8	325,200	30.7
2003	1,072,800	4.8	188,400	17.6
2004	1,126,800	4.8	208,800	19.0
2005	1,179,600	4.8	318,000	27.0
2006	1,303,200	4.9	313,300	24.0
2007	1,293,600	4.7	223,000	17.2
2008	1,265,268	3.8	-	-

※ 출처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해당 연도

A : 각년도 도시가계연보 중 교양오락비 지출 × 12

B : 각년도 도시가계연보 중 스포츠소비 품목 합산 총액 × 12

※ 주 : 2008년부터 품목별 스포츠소비는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스포츠소비가 가구 교양오락비 지출 총액 대비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28%로 시기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25%에서 30% 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3년 17.6%, 2004년 19.0%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2005년 27.0%, 2006년 24.0%로 증가하였다가 2007년 다시 17.2%로 감소하여 그 변동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첫째, 통계항목의 변화에서 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둘째, 스포츠소비가 경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지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스포츠산업 현황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2)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스포츠산업 현황으로 스포츠산업 사업체수는 6만 9,027개로 추정되고,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36조 513십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매출액 중 내수가 35조 234십억 원, 수출이 1조 279십억 원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전체 스포츠산업 매출액 36조 513십억 원 중 영업비용 33조 555십억 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2조 958십억으로 8.1%로 2010년 기준 11.7%의 이익률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을 기준으로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전년대비 288개 감소한 6만 9,027개로 추정되었다. 스포츠산업 종사자수는 23만 6천명으로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스포츠 교육서비스업의 종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7-6 2011년 기준 스포츠산업 전체 현황

구 분	업체수 (개)	종사자 (천명)	매출액 (십억원)	내수 (십억원)	수출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2011년 기준	69,027	236	36,513	35,234	1,279	2,958
2010년 기준	69,315	233	33,934	32,079	1,855	3,93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1. 스포츠 사업체 현황

1) 스포츠 사업체 수

2011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기준으로 총 73,659개 사업체 중에서 스포츠산업 관련 재화, 용역, 생산 등과 관련이 없는 사업체와 유고 및 업종 변경 등의 사업체들을 제외하였을 때, <표 7-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69,027개(추정)의 스포츠 산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를 보면,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인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갠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업체가 전체의 48.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은 28.8%, 유통임대업이 15.8%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기타스포츠 시설운영업(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시설 등)이 전체 스포츠산업 사업체 중 45.4%를 차지하고 있다.

■ 표 7-7 스포츠산업 내 사업체수 현황

(단위 : 개, %)

대분류	중분류	사업체수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3	0.0
	섬유제품 및 의복제조업	2,898	4.2
	가방 및 신발 제조업	956	1.4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839	1.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경기장 운영업	193	0.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441	0.6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53	0.5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31,350	45.4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1,169	1.7
	갠블링 및 베팅업	52	0.1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8	0.0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1,260	1.9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8,688	12.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품 임대업	916	1.3
스포츠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9,891	28.8
합계		69,027	10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2) 종사자수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1~4인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 중 89.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이 높으며, 다음으로 5~9인 사업체가 6.3%로 10인 미만 사업체가 89.6%를 차지하고 있다. 20인 이상 사업체는 2.1%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스포츠산업체가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 표 7-8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

(단위 : 개, %)

구 분	대분류	사업체수	비중
1~4명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2,450	3.6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9,912	43.3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10,040	14.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9,441	28.2
5~9명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1,306	1.9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940	2.8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618	0.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68	0.5
10~19명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535	0.8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771	1.1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150	0.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77	0.1
20~49명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320	0.5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623	0.9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34	0.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4	0.0
50명이상	운동·경기용품제조업	84	0.1
	경기·오락스포츠업	331	0.5
	운동·경기용품유통업	22	0.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	0.0
합 계		69,027	10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2. 스포츠산업 종사자 및 고용 현황

1) 부문별 종사자 현황

■ 표 7-9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종사자 수

(단위 : 백명, %)

대분류	중분류	종사자수	비율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84(100.0)	16.3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9(2.3)	0.4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232(60.4)	9.8
	가방 및 신발 제조업	72(18.8)	3.1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71(18.5)	3.0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326(100.0)	56.1
	경기장 운영업	71(5.4)	3.0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42(3.2)	1.8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236(17.8)	10.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81(66.3)	37.3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34(2.6)	1.4
	캠핑 및 베팅업	61(4.6)	2.6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0.1)	0.0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280(100.0)	11.9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76(21.1)	3.2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177(63.3)	7.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27(9.6)	1.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70(100.0)	15.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70(100.0)	15.7
총합계		2,360	100.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전체 스포츠산업 종사자수는 23만 6천 명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문화산업 종사자 44만6천 명(2009년 기준) 에 약 절반에 미치는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종류별 종사자수는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이 13만 2천 명, 5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사업에 종사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의 비율이 60.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은 구명자켓, 구명벨트, 스포츠의류 제조 및 부분품으로 의류 제조 및 부분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경우 기타 스포츠시설 운

영업의 종사자 비율이 과반수가 넘는 66.3%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으로 가장 보편적인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의 경우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의 종사자 비율이 63.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2) 부문별 고용 현황

스포츠산업 부문별 고용 현황은 상용종사자를 기준으로 2011년도에 1만 2,200여 명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도는 4.6% 증가한 1만 2,800여 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별로 소폭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전반에 걸쳐 경기상황이 나아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 표 7-10 부문별 고용 현황

(단위 : 백명, %)

구분		인력총원*	
		2011년	2012년
합 계		122	128
사업종류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39	3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63	68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12	1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	11

※ 인력총원 : 해당년도에 신규 또는 보충된 상용종사자의 수(퇴직자 결원 보충 포함)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3. 스포츠 산업 규모

1) 국내 스포츠산업의 전체 규모

2011년도 국내 스포츠산업은 36조 513십억 원 규모로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2.9% 수준이다. 이러한 스포츠산업 규모는 총 연간출하(매출) 규모, 소비시장 규모로 산정하였다. 국가 GDP 대비 스포츠산업 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 2.24%에서 2011년 2.9%로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부터 201년까지 스포츠산업 연평균 성장률은 14.3%로 높게 나타났으나 2009년 기준조사에서 모집단과 분류체계 적용 변화

등의 이유로 다소 높은 증가율이 나타난다. 그러나 2009년 기준 대비 2010년 기준 스포츠산업규모 성장률이 1.4%로 나타났다.

■ 표 7-11 GDP대비 스포츠산업규모 비율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스포츠산업 규모(원)	19조 651십억	22조 364십억	23조 270십억	26조 361십억	33조 456십억	34조 482십억	36조513십억
GDP(원)	847조9천억	915조9천억	901조2천억	1,023조9천억	1,050조	1,172조	1,237조
GDP대비 스포츠산업 비율	2.24%	2.44%	2.58%	2.57%	3.18%	2.94%	2.95%
증가율(%)		13.8%	4.1%	13.3%	26.9%	2.4%	6.5%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2) 스포츠산업 부문별 규모

2010년 기준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5.5%로 34조4,820억 원에서 36조5130억 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0년 기준 대비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은 2011년도에 9.6%증가하였으며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9.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0.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경우 3.2%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7-12 연도별 스포츠산업 규모

(단위 : 십억원, %)

분류	2010		2011		증감률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6,018	17.4	6,661	18.2	10.7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1,211	61.5	21,927	60.1	3.4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6,328	18.4	6,998	19.2	10.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5	2.7	927	2.5	0
합계	34,482	100	36,513	100	6.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3)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근거로 산출하였다.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00년 이후 차츰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2009년도는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산업 역시 같은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분류별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20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단, 스포츠산업(0.791) 전반적으로 전체산업(0.687)에 비해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기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0.643으로 2008년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은 0.904 로서 2008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스포츠산업 전체가 국내 전체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유발이 높고 분류별 비교 역시 스포츠산업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비해 부가가치 유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7-13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유발계수 추이

대분류	중분류	2000	2005	2007	2008	2009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0.718	0.700	0.652	0.603	0.643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0.839	0.755	0.738	0.690	-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0.688	0.746	0.734	0.701	0.749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621	0.641	0.584	0.529	0.652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0.724	0.659	0.551	0.493	0.514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0.906	0.922	0.918	0.891	0.904
	경기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0.883	0.908	0.905	0.874	-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0.916	0.921	0.914	0.886	0.89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캠블링 및 베팅업	0.918	0.937	0.934	0.913	0.915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0.91	0.907	0.899	0.876	0.893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0.889	0.893	0.887	0.864	0.865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0.931	0.920	0.911	0.888	0.89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	-	-	-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0.862	0.893	0.877	0.845	0.85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0.862	0.893	0.877	0.845	0.851
	스포츠산업(평균)	0.827	0.827	0.803	0.768	0.791
	전체산업(평균)	0.754	0.741	0.722	0.666	0.687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4. 스포츠산업 부문별 매출 및 실적 현황

1) 부문별 매출 현황

사업종류별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및 오락서비스의 매출이 전체 60.1%를 차지하고 있어 스포츠산업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이 19.2%,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이 18.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이 2.5%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 및 오락서비스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동 업종에 경륜, 경쟁, 경마 및 스포츠 복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의 규모를 추정된 결과 전체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기준조사 보다 약 0.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표 7-14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매출액

(단위 : 억원, %)

대분류	중분류	매출액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66,608(100.0)	(18.2)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2,552(3.9)	0.7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40,050(60.1)	11.0
	가방 및 신발 제조업	9,603(14.4)	2.6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14,403(21.6)	3.9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19,274(100.0)	(60.1)
	경기장 운영업	38,043(17.3)	10.4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14,193(6.8)	4.1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5,667(16.3)	9.8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33,309(15.3)	9.1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751(0.3)	0.2
	캠블링 및 베팅업	96,300(43.9)	26.4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91(0.1)	0.1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69,979(100.0)	(19.2)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42,591(60.8)	11.7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26,781(38.3)	7.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607(0.9)	0.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66(100.0)	(2.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66(100)	2.5
총 합 계		365,127	100.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매출액 비중의 변화는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이 2010년 기준조사에 비해 15.9% 증가하였으며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16.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0.1%,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경우 1.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스포츠산업 전체 실적

■ 표 7-15 스포츠산업 전체실적

(단위 : 십억원, %)

대분류	중분류	내수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5,616	15.9	6,127	18.4	534	18.1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253	0.7	236	0.7	20	0.7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3,698	10.5	3,635	11.0	370	12.5
	가방 및 신발 제조업	746	2.1	907	2.7	53	1.8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919	2.6	1,349	4.0	91	3.1
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1,922	62.3	20,170	60.8	1,397	47.2
	경기장 운영업	3,804	10.8	3,672	11.1	133	4.5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1,486	4.2	1,107	3.3	23	0.8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567	10.2	3,413	10.3	154	5.2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3,331	9.5	2,923	8.8	408	13.7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75	0.2	61	0.2	14	0.5
	캠핑 및 베틱업	9,630	27.3	8,967	27.0	663	22.4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9	0.1	27	0.1	2	0.1	
3.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6,769	19.2	6,246	18.8	752	25.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4,030	11.4	3,821	11.5	438	14.8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2,678	7.6	2,376	7.2	302	10.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임대업	61	0.2	49	0.1	12	0.4
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7	2.6	652	2.0	275	9.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7	2.6	652	2.0	275	9.3
총합계		35,234	100.0	33,195	100.0	2,958	100.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36조 513십억 원으로 영업비용 33조 195십억 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3조 318십억 원으로 9.1%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스포츠산업 전체 매출액 중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96.5%로 내수시장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수출 비중이 3.5%에 불과하여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 지원, 투자 등과 동시에 프로스포츠 및 생활 스포츠 등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체 스포츠산업의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스포츠 산업 사업실적은 2010년 대비 매출액 규모는 7.1% 증가하였다. 다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전년대비 32.8% 감소하여 기업들의 고용확대와 투자 등이 위축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사업종류별 내수·수출실적

전체 스포츠산업 매출액 중 내수비율은 96.5%에 이르며 특히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과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업의 경우 2010년과 동일하게 10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의 경우 15.7%의 수출비중은 국내 전체 제조업 수출비중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며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스포츠용품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지원과 관심을 통해 지속적 증가율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표 7-16 사업종류별 내수·수출실적

(단위 : 십억원, %)

구 분	매출액		내수		수출	
	(A)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6,018	6,661	4,780	5,616	1,238	1,045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1,211	21,927	21,209	21,922	2	5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6,328	6,998	5,713	6,769	615	22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5	927	925	927	-	-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4) 운동 및 경기 용품제조업의 내수 및 수입 현황

운동 및 경기 용품제조업의 내수판매 매출은 5조616십억 원으로 비중이 84.3%를 차지하여 여전히 내수판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스포츠의류의 내수(매출) 비중이 60.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기준조사에서도 스포츠의류 내수(매출) 비중이 57.8%를 차지하여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 내수비중이 26.6%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입의 경우 25.6%에 이르고 있다. 이는 스키, 골프, 낚시, 캠핑용 장비, 자전거 등의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7-17 운동·경기용품제조업 상품별 구성비

(단위 : 십억원, %)

구분	금액	비중					
		스포츠 음료	스포츠 의류	스포츠 신발	공류	라켓류	기타
운동·경기	내수 5,616	3.8	60.9	8.2	0.5	0.0	26.6
용품제조업	수입 114	-	73.5	0.0	0.9	-	25.6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5. 스포츠시설업 현황

1) 등록체육시설

등록체육시설의 경우 2008년 332개소, 2009년 361개소, 2010년 407개소, 2011년 439개소, 2012년 461개로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2011년에 비해 업소수 5.0% 증가, 면적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의 경우 전체 업소수는 2011년 416개소에서 2012년 440개소로 5.8% 증가하였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1.8% 증가하였으나, 정규 대중골프장의 경우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중 골프장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7-18 등록체육시설업 현황

(단위 : 개소, 천㎡)

업종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업소수	면적								
합계	합계	332	325,829	361	351,006	407	386,879	439	413,774	461	440,193
	소계	311	299,658	339	324,601	386	360,269	416	385,364	440	413,586
	회원제	183	223,927	193	237,063	215	258,246	225	269,470	229	274,049
	정규대중	42	48,671	146	87,538	171	102,023	191	115,893	211	139,537
골프장	일반대중	74	25,315	-	-	-	-	-	-	-	-
	간이	12	1,744	-	-	-	-	-	-	-	-
스키장		19	25,758	20	25,886	19	26,092	20	26,193	19	26,088
자동차 경주장	소계	2	411	2	518	-	-	3	2,216	2	518,337
	2륜차	-	-	-	-	-	-	-	-	-	-
	4륜차	2	411	2	518	2	518	3	2,216	2	518,337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전국 등록·신고체육시설업 현황

2) 신고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의 경우 2008년 50,280개소, 2009년 53,490개소, 2010년 55,241개소, 2011년 56,368개소, 2012년 55,961로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2011년에 비해 업소수 0.7% 감소, 면적 1.4%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한 추세에 있으나, 수영장의 경우 2008년 606개소에서 2012년 579개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골프연습장의 경우 2008년 6,356개소에서 2011년 9,575개소로 50.6%로 증가하였다.

■ 표 7-19 신고체육시설업 현황

(단위 : 개소, 천㎡)

업종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업소수	면적									
합계		50,280	24,545	53,490	26,409	55,241	26,830	56,368	28,254	55,976	28,656	
요트장		4	41	13	74	15	120	19	187	21	232	
조정장		-	-	-	-	-	-	-	-	-	-	
카누장		-	-	-	-	-	-	-	-	1	1	
빙상장		38	251	43	345	41	339	40	334	38	327	
승마장		70	2,425	73	3,223	82	2,544	116	3,760	138	3,171	
종합 체육시설	소계	203	891	201	792	212	890	230	1,099	236	937	
	회원제	87	286	-	-	-	-	66	282	100	449	
	대중	116	604	-	-	-	-	164	816	136	492	
수영장	소계	606	1,324	581	1,334	574	1,257	567	1,272	579	1,272	
	실내	424	727	415	706	399	683	399	687	413	757	
	실외	182	597	166	628	175	574	168	585	166	515	
체육도장	소계	13,026	1,903	13,112	2,045	13,263	2,527	13,485	2,889	13,660	2,674	
	권투	347	71	389	81	477	95	589	121	758	153	
	레슬링	3	1	3	1	7	1	8	1	4	1	
	유도	410	64	404	61	391	58	407	69	416	74	
	검도	931	187	892	179	877	185	871	181	849	168	
	태권도	11,176	1,553	11,272	1,697	11,364	2,162	11,446	2,489	11,502	2,257	
	우슈	159	26	152	23	147	23	164	25	131	20	
골프 연습장	소계	6,356	10,811	7,446	11,307	8,186	11,729	9,033	12,148	9,575	12,702	
	실내	소계	5,136	1,864	-	-	6,897	2,606	7,738	3,272	8,305	3,622
		일반	-	-	4,118	1,597	-	-	-	-	-	-
		스크린	-	-	2,393	824	-	-	-	-	-	-
실외	1,220	8,947	1,235	8,885	1,289	9,122	1,295	8,875	1,270	9,080		
체력단련장	6,064	1,837	6,128	1,959	6,240	2,051	6,449	2,150	6,608	2,300		
에어로빅장	-	-	-	-	-	-	-	-	-	-		
당구장	22,519	3,774	24,568	4,220	25,317	4,281	25,159	3,419	23,855	4,318		

업종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업소수	면적	업소수	면적	업소수	면적	업소수	면적	업소수	면적
썰매장		135	1,110	124	931	126	930	122	815,460	129	888
무도장		53	18	64	24	66	27	72	32,955	70	30
무도학원		1,206	154	1,137	148	1,119	143	1,076	143,371	1,051	143

※ 주 : 시설규모 항목의 수치는 요트장의 경우 요트척수, 빙상장은 빙판면적, 승마장은 마장면적, 수영장은 수영조 면적, 체육도장은 면적, 골프연습장은 타석수, 체력단련장은 바닥면적, 당구장은 당구대수, 썰매장은 슬로프 길이,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바닥면적을 각각 말함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전국 등록·신고체육시설업 현황

국내 골프장 수는 지난 2000년의 150개소에서 2011년에는 416개소로 177% 늘어났으며, 골프장 이용객수는 같은 기간에 1,200만 명에서 2,690만 명으로 124% 증가하였다. 미국은 14천명, 일본은 52천 명당 18홀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260천 명당 18홀을 갖고 있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골프장의 홀당 이용객수를 보면, 회원제 골프장이 3,354명인데 반해 대중 골프장은 3,959명으로 회원제 골프장보다 대중 골프장 홀당 이용객수가 더 많았다. 그러나 2010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회원제 골프장 이용인원은 2.2% 감소하였으나 대중 골프장 이용인원은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의 경우 2010년에 비해 회원제 골프장 이용인원은 1.2% 증가하였고, 대중 골프장 이용인원은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의 경우 2011년에 비해 회원제 골프장 이용인원은 1.7% 증가하였고, 대중 골프장 이용인원은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7-20 연도별 전국 골프장 이용객 현황

구분	합 계		회 원 제		대 중	
	개소수	이용인원	개소수	이용인원	개소수	이용인원
2000	150	12,005,610	107	9,642,953	43	2,362,657
2001	154	12,902,526	110	10,046,055	44	2,856,471
2002	161	14,117,369	113	10,745,795	48	3,371,574
2003	175	15,115,577	122	11,454,576	53	3,661,001
2004	194	16,179,740	136	12,205,437	58	3,974,303
2005	224	17,766,976	147	12,741,012	77	5,025,964
2006	250	19,653,359	157	13,507,219	93	6,146,140
2007	277	22,343,079	175	14,923,213	102	7,419,866
2008	311	23,982,666	183	15,654,098	128	8,328,568
2009	339	25,908,986	193	16,940,101	146	8,968,885
2010	386	25,725,404	213	16,572,739	169	9,152,665
2011	416	26,904,953	225	16,784,857	191	10,120,096
2012	437	29,305,167	227	17,777,672	210	11,527,495

※ 출처 :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내부자료

또한 레저스포츠시설인 스키장업은 외국인 관광수입을 유발할 스포츠관광의 대표 상품이 되고 있다. 2011년 시즌(2010년 11월~2011년 4월)에 국내 스키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5만명으로 전년 26만 8천명에 비해 23.4%가량 증가하였다.

6. 경기 및 오락스포츠서비스업

1) 규모, 연간 영업개월 및 이용인원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은 2011년도 기준으로 그 규모가 21조9,274억 원으로 전체 스포츠산업의 40%를 차지하며,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나 스포츠경기업의 경마, 경륜, 경정의 gambling 및 베팅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3.9%로 스포츠서비스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이 부분을 제외한 여타 스포츠서비스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지만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은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큰 업종이다.

경기 및 오락스포츠서비스업의 평균 영업 개월 수는 년 간 11개월로 나타났으며, 연간 이용 인원수는 5억4,983만 명으로 조사 되었다. 종합스포츠시설, 수영장, 당구장 등 기타스포츠시설 이용 인원이 전년 대비 1.6.% 감소한 4억3,513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gambling 및 베팅업을 이용한 인원도 2천463만 명으로 나타난다.

■ 표 7-21 경기 및 오락스포츠 서비스업 연간 운영기간 및 이용인원

구 분	평균 운영기간(월)		연간이용인원수(천명)		증감률
	2010	2011	2010	2011	
합 계	10	11	554,688	549,833	△0.8
경기장 운영업	12	12	41,699	32,997	△20.9
골프장 운영업	11	11	29,775	40,182	34.9
스키장 운영업	4	6	8,775	9,943	13.3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11	11	442,520	435,133	△1.7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7	8	4,794	6,941	44.8
gambling 및 베팅업	12	12	27,125	24,637	△9.2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은 프로스포츠를 비롯한 관람스포츠분야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산업의 핵심 부문이다.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성장은 스포츠산업 전체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는 스포츠산업의 선도 분야라고도 일컬을 수 있다.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규모가 미흡한 실정이지만 향후 스포츠산업의 산업적 성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경주스포츠업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주요 경주스포츠업 이용자수는 2002년 2천225만 명, 2003년 2천361만 명, 2004년 2천256만 명, 2005년 2천306만 명, 2006년 2천406만 명, 2007년 3천318만 명, 2008년 3천349만 명, 2009년 3천461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다 2010년에는 경정장 입장객과 경륜장 입장객의 감소로 인하여 전체 이용자수가 3천451만 명으로 3%감소하였다. 그 이후 2011년 3천217만 명, 2012년 2천687만 명으로 전년대비 19.7% 감소하였다.

■ 표 7-22 2002~2010년도 스포츠서비스업 주요업종 이용자 수 (단위 : 만 명)

종 목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경마장 입장객 (서울+제주+김해 경마장)	1,628	1,674	1,541	1,618	1,645	2,045	2,080	2,168	2181	1952	1613	
경륜장 입장객 (잠실+창원+금정경륜장)	552	565	572	545	564	905	914	943	941	926 (광,창,부)	785 (잠,창,부)	
경정장 입장객	45	122	143	191	197	298	343	350	329	339	289	
합 계	2,225	2,361	2,256	2,306	2,406	3,318	3,349	3,461	3,451	3,217	2,687	

※ 출처 : 체육과학연구원(2012). 2012 한국의 체육지표.

3)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마케팅업은 스포츠마케팅대행업, 스포츠에이전트업, 선수양성업 등으로 시장규모는 2,723억 원이며 스포츠서비스업 가운데 2.1%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은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관람스포츠인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해외진출선수가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마케팅대행 및 컨설팅업, 스포츠에이전트업 등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시장을 겨냥한 해외 선진스포츠마케팅업체들의 국내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스포츠서비스업분야에서 IMG, ISL, 옥타곤 등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에이전트업에 있어서 관람스포츠의 핵심요소인 우수선수들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 표 7-23 체육계학과 학생 및 스포츠산업 관련학과 현황

(단위 : 명)

연 도	대학생 총 수	체육학과 학 생 수	체육계 학 과	스포츠산업관련학과		비 고
				대학	대학원	
2000	1,665,398	34,891	216	7	7	
2001	1,699,293	38,563	236	8	12	
2002	1,771,738	42,957	245	7	17	
2003	1,808,539	46,653	267	7	17	
2004	1,836,649	44,387	234	7	17	
2005	1,859,639	47,613	257	7	17	
2006	1,888,436	50,042	295	7	18	
2007	1,943,437	52,280	305	6	7	
2008	1,984,043	53,863	322	6	7	
2009	1,984,043	55,649	332	6	7	
2010	2,028,841	57,912	348	6	7	
2011	2,065,451	58,811	358	6	7	
2012	2,103,958	59,703	386			

※ 출처 : 교육부(1995~2010). 교육통계연보

스포츠마케팅업은 전문가의 부재로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경영 및 마케팅 전문가를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220여개 대학에서 학부 및 대학원과정으로 스포츠산업, 경영, 마케팅전공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전문대학을 포함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386개 체육관련 학과가 개설되었으나, 스포츠산업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은 6개, 대학원은 7개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산업스포츠학과, 스포츠경영전공 등의 대학원과정이 개설되었지만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 표 7-24 연도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수입 현황

(단위 : 억원)

년 도	회장찬조금	기타찬조금	자체수입	기 타	합 계
2000	144	20	190	16	370
2001	100	13	382	142	637
2002	113	122	276	260	771
2003	133	17	367	429	946
2004	148	18	357	256	780
2005	144	19	456	324	943
2006	179	16	938	160	1,293
2007	161	19	948	264	1,392
2008	171	18	1,143	267	1,599
2009	155	15	941	406	1,517
2010	178	17	938	234	1510*
2011	230	13	1,204	267	1,714
2012	251	23	1,341	476	2,091

※ 주 : 정부 보조금 제외, 2010년 합계는 이월금액 및 적립금 과실금이 미포함.

※ 출처 : 대한체육회(1988~2012), 대한체육회 예산 및 결산서

국내 아마추어 체육단체는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국고보조나 회장협찬금으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기준 가맹경기단체 수입은 전년대비 22% 증가하였고 찬조금, 자체수입 등에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스포츠미디어업(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스포츠미디어업(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은 2009년도 기준으로 매출액 규모가 1조 2,926억 원으로 스포츠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이며,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에서는 5.6%로 규모면에서 지속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스포츠미디어업은 스포츠신문, 출판과 방송업, 스포츠여행업, 스포츠의학, 스포츠게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스포츠정보업은 위성채널, 인터넷방송 등 매체의 다양성에 따른 스포츠서비스업의 발전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특화된 스포츠 전문 방송채널을 통해 격투기, 유럽축구, 자동차경주 등의 새로운 인기콘텐츠가 등장하고 지상파 3사에 국한된 시장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다양한 채널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스포츠신문 3사의 전체매출은 매년 감소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표 7-25 스포츠신문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신문사명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2006		356	298	427
2007		377	382	413
2008		280	355	433
2009		283	178	384
2010		282	183	409
2011		-	272	416

※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전자공시(스포츠지에서 <스포츠 서울> 바이오 부문과의 연결재무제표로 작성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7.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은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을 포함한다. 2011년도 기준 내수판매 매출은 6조 769십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85.9%의 비중을 차지하여 운동경기용품제조업과 같이 내수판매 위주의 산업으로 판단된다. 스포츠의류의 비중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품목(스키, 골프, 낚시, 캠핑용 장비, 자전거 등)의 비중 역시 33.5%로 신발, 공류, 라켓류 등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기타 품목(스키, 골프, 낚시, 캠핑용 장비, 자전거 등)의 비중이 확연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스포츠의류의 수입비중이 높은 것은 스포츠의류 시장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 스포츠의류(등산, 골프의류 등)를 남녀노소가 구분하지 않고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표 7-26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상품별 구성비

(단위 : 십억원, %)

구분	총액	상품별 비중						
		스포츠음료	스포츠의류	스포츠신발	공류	라켓류	기타	
운동·경기 용품유통업	내수	6,769	0.2	38.1	19.7	5.2	3.3	33.5
	수입	1,103	-	27.2	26.4	3.6	2.4	40.4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8. 스포츠산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산업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8~13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업의 매출이 전체의 54.4%를 차지하였다. 태권도, 수영 등 유아체육의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 그 외 연령대 매출은 1.4~1.6% 사이로 조사되었다. 이는 스포츠산업 교육서비스업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콘텐츠 등이 부족하여 8~13세 연령대에 매출이 집중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교육서비스 콘텐츠를 개발 제공하므로 각 연령대별 잠재수요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 표 7-27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

고객유형	7세 이하	8~13세	14~9세	20~39세	40~59세	60세 이상
100.0%	12.0%	54.4%	17.6%	7.5%	7.1%	1.4%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제4절 프로스포츠산업 현황

1. 개요

초기의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복싱과 레슬링을 시작으로 1982년 6개 팀으로 구성된 프로야구가 탄생하면서부터 정식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5년 프로축구, 1996년 프로농구, 2004년 프로배구가 설립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4개 리그를 중심으로 프로스포츠 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에서의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선전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야구의 선전으로 축구, 야구를 비롯한 국내 프로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더욱 증가하였다.

국내 대부분 프로스포츠는 지역연고제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연고제는 일반적으로 홈구장이 위치한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연고제를 의미하며 각 프로리그들은 2천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을 최대의 마케팅 시장으로 판단하고 소속팀의 연고지로 적극 활용하였다. 특히 주5일 근무 및 수업, 국민들의 스포츠작간접 참여의식 성장, 미디어 발달 등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프로스포츠의 기능을 더욱 확대시켜 스포츠대중화와 스포츠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다. 프로스포츠는 직접적으로 지역경제 및 스포츠산업과의 연계로 이어진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적 효과, 국민들의 여가선용 기회와 지역화합 도모, 아마추어 선수들의 진로 개척에 중추적 역할로서 프로스포츠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2. 프로스포츠 관람객 현황

프로스포츠 관람객은 야구, 축구, 농구, 배구의 관람객을 합하여 2006년 약 713만 명, 2007년 약 886만 명, 2008년 약 1,018만 명, 2009년 약 1,082만 명, 2010년 약 1,048만 명, 2011년 1,187만 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2년 1,186만 명으로 1만 4천 명 정도 소폭

감소하였다. 야구 약 38만 명, 농구(남) 약 17만 8천여명, 배구 약 5만 4천여명으로 전체 약 61만 명의 관중이 증가하였으나, 축구가 실 관중 수 집계제도를 시행하면서 관중 수가 61만 명 정도 적게 측정되었고, 농구(여)에서 약 1만 5천 명 정도 감소해서 총 약 62만 명의 관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4개 프로종목 총 관람인원은 1,000만 명을 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산업의 발전은 프로스포츠가 주도하기 때문에 팬 및 선수층이 두터운 종목은 프로화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경기장입장료, 구장부대수입, 방송중계권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프로구단을 비롯하여 아마추어 스포츠단체의 매출확대가 예상된다. 이러한 스포츠경기기업의 성장은 스폰서십, 라이선싱, 선수관리 및 계약, 스포츠이벤트, 스포츠마케팅기획 등의 활동을 통해 크게 성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표 7-28 주요 프로스포츠 관중 추이 (단위 : 명)

구 분	야 구	축 구	농 구(남)	농 구(여)	배 구	합 계
2006년	3,240,992	2,448,128	1,104,503	106,999	227,954	7,128,576
2007년	4,410,340	2,746,749	1,160,113	311,934	234,308	8,863,444
2008년	5,636,191	2,945,400	1,191,242	129,835	278,106	10,180,774
2009년	6,347,538	2,811,648	1,228,992	156,780	278,019	10,822,977
2010년	6,236,626	2,703,323	1,133,841	91,584	317,943	10,483,319
2011년	7,154,378	3,030,586	1,154,948	166,227	372,592	11,878,731
2012년	7,533,408	2,419,143	1,333,787	150,752	427,222	11,864,312

※ 프로배구/농구 : 2012년은 2011년~2012년 시즌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프로스포츠 경기단체 자료)

■ 표 7-29 주요 프로스포츠 경기 수 및 경기당 평균 관중 수 (단위 : 회, 명)

구 분	야 구		축 구		농 구(남)		농 구(여)		배 구	
	경기수	평균관중	경기수	평균관중	경기수	평균관중	경기수	평균관중	경기수	평균관중
2006년	518	6,257	278	8,806	288	3,835	123	869	163	1,398
2007년	517	8,531	254	10,814	291	3,987	267	1,164	187	1,253
2008년	518	10,881	253	11,642	292	4,080	118	1,100	189	1,472
2009년	549	11,562	256	10,983	296	4,152	130	1,206	189	1,471
2010년	547	11,402	210	12,873	293	3,870	130	705	216	1,479
2011년	548	13,055	283	10,709	292	3,955	115	1,445	210	1,774
2012년	548	13,747	338	7,157	294	4,537	131	1,150	245	1,744

※ 경기수=정규리그+포스트시즌+올스타전(축구는 컵대회 포함)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프로스포츠 경기단체 자료)

■ 표 7-30 주요 프로스포츠 수용규모 및 좌석점유율

(단위 : 명, %)

구 분	야 구		축 구		농 구(남)		농 구(여)		배 구	
	수 용 규 모	좌 석 점 유 율	수 용 규 모	좌 석 점 유 율	수 용 규 모	좌 석 점 유 율	수 용 규 모	좌 석 점 유 율	수 용 규 모	좌 석 점 유 율
2006년	20,429	30.6	40,255	21.9	5,899	65.0	3,230	25.6	5,129	16.3
2007년	20,429	41.8	40,574	26.7	6,347	62.8	2,756	38.0	5,129	27.3
2008년	20,429	53.3	40,574	28.7	6,354	64.2	2,756	39.1	5,089	24.6
2009년	20,429	56.6	37,865	29.0	6,354	65.2	2,756	43.8	4,843	30.4
2010년	19,675	58.0	36,592	29.4	6,354	60.9	2,066	34.1	5,093	28.9
2011년	19,450	65.7	33,314	34.9	6,653	59.5	2,732	52.9	4,598	38.6
2012년	19,850	68.6	33,120	21.6	6,653	68.2	2,980	38.6	4,645	37.5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프로스포츠 경기단체 자료)

3. 프로스포츠 단체 및 운영 현황

프로스포츠는 1982년 프로야구리그가 출범한 이후 국내 스포츠산업을 이끄는 기폭제가 되었다. 2012년 12월 기준 축구, 야구, 농구(남·여), 배구(남·여), 골프(남·여), 권투, 바둑 등 7개 종목에 (사)한국프로축구연맹, (사)한국야구위원회, (사)한국농구연맹, (사)한국여자농구연맹, (사)한국배구연맹, (사)한국프로골프협회,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재)한국권투협회, (사)한국권투위원회, (재)한국기원 등 10개 프로단체가 조직되어 있다. 종목별로는 축구 22개구단, 야구 9개구단, 배구 12개 구단(남 6, 여 6), 남자농구 10개 구단, 여자농구 6개 구단 등 총 59개 구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 표 7-31 프로단체 현황

(13. 5월 기준)

종목 구분	축 구		야 구	농 구		배 구	
단체명	(사)한국프로축구연맹		(사)한국 야구위원회	(사)한국 농구연맹	(사)한국 여자농구연맹	(사)한국배구연맹	
대표	권오갑 총재		구본능 총재	한선교 총재	최경환 총재	구자준 총재	
구단수	14	8	9	10	6	6	6

구분	종목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구단명	K-LEAGUE CLASSIC	K-LEAGUE CHALLE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유나이티드 울산현대호랑이 수원삼성 블루윙즈 성남일화천마 부산아이파크 FC서울 전북현대모터스 전남드래곤즈 포항스틸러스 대전시티즌 대구FC 인천유나이티드 경남FC 강원FC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 FC 상주 상무 피닉스 경찰 축구단 고양 Hi FC 부천 FC 1995 수원 FC FC 안양 충주 험멜 축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두산 베어스 서울 LG 트윈스 광주 기아 타이거즈 대구 삼성 라이온즈 부산 롯데 자이언츠 대전 한화 이글스 서울 넥센 히어로즈 인천SK 와이번스 창원 NC 다이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삼성 썬더스 서울 SK 나이츠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부산 KT 소닉붐 울산 모비스피버스 원주 동부 프로미 안양 KGC 인삼공사 전주 KCC 이지스 고양 오리온스 창원 LG 세이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천 하나은행 안산 신한은행 에스버드 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 청주 KB 스타즈 춘천 우리은행 한새 구리 KDB 생명 위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대한항공 점보스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 구미 LG손해보험 그레이터스 아산 러시안캐시 드림시스 천안 현대캐피탈 스카이 워커스 수원 한국전력공사 KEPCO VIXTO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미 GS칼텍스 대전 KGC 인삼공사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수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성남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제니스 화성 IBK 기업은행 알토스

구분	종목		골프		권투		바둑
단체명	(사)한국프로골프협회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사)한국권투인협회	(사)한국권투위원회	(재)한국기원		
대표	황성하 회장	구자용 회장	염동균 회장	홍수환 회장	허동수 이사장		

1) 한국프로축구연맹

(사)한국프로축구연맹(Korea League)은 1983년 2월 대한축구협회 내에서 슈퍼리그위원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 1983년 5월 슈퍼리그위원회는 슈퍼리그라는 명칭으로 프로화 모색방안을 찾던 한국축구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프로 2팀(할렐루야, 유공), 실업 팀 3팀(포항제철, 대우, 국민은행)으로 출범하였다.

출범이후에 프로활성화를 위한 프로축구위원회 출범(1987), 심판전임제도 실시(1987), 2군 리그 시행(1990, 한해만 실시), 한국프로축구연맹 출범(1994), 완전지역연고지제도 실시(1996), 프로축구 총 관중 수 200만 돌파 및 K-리그 프로축구 명칭 확정(1998) 하는 등이 시행되었고,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중흥기를 맞이하였다. 2013년도에는 스플릿 시스템 도입과 승강제 도입 등으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한국야구위원회

1981년 12월, (사)한국야구위원회(Korea Baseball Organization)가 창립된 이후 1년 후 3월에는 (사)한국야구위원회로 법인허가를 받았다. 1982년 3월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에게 밝고 건강한 여가선용을’ 이란 가치 아래 프로야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지역연고제 도입, 홈 앤드 어웨이제 실시, 일 년 시즌의 장기 레이스 등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6개 팀(삼성, 롯데, MBC, OB, 해태, 삼미)으로 시작한 프로야구는 1986년 충청권을 연고로 빙그레(현재의 한화구단)가 제7구단을 창단했고, 1991년 쌍방울 창단, 2000년 SK 와이번스 창단, 2011년 NC 다이노스 창단 이후 2013년 1월 현재 9개 구단(두산 베어스, LG트윈스,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롯데 자이언츠, 한화 이글스, 넥센 히어로즈, SK 와이번스, NC 다이노스)이 있다.

3) 한국농구연맹

1995년 10월 한국농구연맹설립준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1996년 10월 한국농구연맹을 창립하였고, 11월 문화체육부로부터 (사)한국농구연맹으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다음 해인 1997년 2월 프로농구 첫 리그를 시작하였다. 외국선수 선발제도, 귀화혼혈선수 드래프트제도 등의 다양한 선수선발 방식, 지속적인 제도변화를 통해 화려하고 재미를 유도하는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프로농구 출범 15년 만에 역대 한 시즌 최다 관중 130만 명을 돌파하였다.

4) 한국배구연맹

2004년 4월, 프로배구를 출범하기 위해 한국배구연맹창립추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그 해 10월 한국배구연맹이 창립총회를 갖으면서 다음 달인 11월,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었다. 2005년 2월, 한국배구연맹이 출범되었고, 동월, 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 실시와 KT&G V-리그가 개막되면서 배구 또한 프로화의 모습을 갖추어나가기 시작했다. 2012년도 시즌 관중 수 427,222명을 기록하며 프로배구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중 수 증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5) 한국프로골프협회

1958년 한국프로골프선수권대회,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가 개최된 후 1963년 프로골프회가 창설 이후 1968년 11월 12일, 문교부의 정식 설립 인가를 받은 한국프로골프협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레슨프로제도 도입(1983), 골프코치스쿨 및 세미프로 선발전 실시(1988), 2부 투어대회 출범(1999) 등 골프지도와 우수골퍼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들을 조성하였다.

6)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1978년 한국프로골프협회 내 여자프로부가 창설되었다. 동년 프로테스트를 통해 한국 여자프로골퍼 8명이 탄생되었으며 국내에서 여자프로골프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1988년 2월 2일,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분리되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로 공식 창립되면서 1991년 문화체육부에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로 등록되었다. 경기분과위원회 창설(1991), 경기기록 전산화 도입(1992), 협회내규 제정(1993), 준회원 선발제 신설(1998), 프로입문 나이제한 철폐(1999) 등 제도적 기반들을 조성하였다.

7) 한국기원

재단법인 한국기원은 1954년 1월 8일, 바둑문화의 창달과 보급, 전문기사의 기예 향상을 목적으로 사단법인체로 공식 출범하였다. 1967년 8월, 월간 『기계』(월간 『바둑』의 전신)를 창간, 출판사업을 통해 바둑문화 창달을 모색하였고, 1968년 8월, 종로 관철동에 한국기원 회관을 건립하였다. 1969년 3월, 이후락 총재 취임 후 1970년 4월, 재단법인체(서울지법 제34호)로 변경하였다. 1994년 홍익동으로 회관을 이전하여 한국바둑 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건전한 생활문화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4. 프로스포츠 정책 지원

프로경기에 참여하는 프로구단은 대부분 대기업을 구단주로 하는 영리단체로, 정부의 직접적 지도감독에는 한계가 있으나 각 프로연맹 및 프로구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프로스포츠의 활성화와 프로경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2011년에는 경기장 장기임대를 구현하고(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문체부), 경기장 수익시설 설치기준을 완화(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국토부)시키며 노후 된 경기장을 개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문체부)하였다. 특히 프로스포츠 경기장 관련법령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과 수익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였고, 지자체 소유의 프로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수익계약으로 25년 이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12년 정부의 프로스포츠 정책지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프로스포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2011년부터 프로축구를 시작으로 2012년 프로야구·배구에서 승부조작이 적발되어,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각 프로연맹 및 구단과 함께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각 프로단체의 상벌규정 신설 및 보완, 승부조작 관련자 무관용의 원칙, 공정(클린)센터 운영 및 현장관리기능(경기감독관)확대, 암행감찰단 제도 운영, 부정방지 교육 및 자정결의대회, 신고 포상제도 및 자진신고 처벌감면제, 최저연봉 인상 및 연금제도 도입 등 전방위적 세부사항들을 심의·결정 하였다.

둘째, 프로배구 김연경 선수의 해외이적 분쟁을 계기로 자유계약선수제도(FA) 개선에 착수하였다. 국내 프로스포츠 발전과 선수 개개인의 역량발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균형점 모색을 위해 정부는 각 프로단체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키로 합의하였다. 각 프로단체별 주요 개정 일정과 내용을 보면 여자농구의 경우 '13년 2월까지 보상요건 완화, 배구는 '13.3월까지 FA기간 단축(6년→5년), 임대선수 FA기간 적용, 보상요건 및 해외진출요건 완화, 농구는 보상요건 없애거나 완화, 야구는 '13.4월중까지 FA기간 단축 등의 초안 마련 등이다. '12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선수들을 위한 FA제도가 개선 될 것이다.

셋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프로스포츠 발전 도모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수익금의 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수익금의 배분비율 등)를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10%를 주최단체에 배분하고, 주최단체지원금 집행지침 제8조(지원금의 배분 및 집행단체)를 통해 주최단체는 배분받은 지원금을 유소년스포츠활성화에 60% 이상 및 해당 아마추어단체에 15% 이상 배분하도록 하였다. 2012년 주최단체 지원금 배분액은 총 542억 원으로 축구 315억 원, 야구 101억 원, 농구 74억 원, 여자농구 42억 원, 배구 8억 원, 여자골프 0.9억 원, 골프 1억 원이며, 유소년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배분비율은 60%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제5절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

1. 스포츠산업 정책의 제도적 기반

국내 스포츠산업은 1980년대에서 1990년 초반까지 체육산업이라는 용어로 불려졌다. 체육시설업체와 용품제조업체 그리고 체육관련 각종 서비스업체가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로 운영되었으며 정부로부터의 정책적 지원은 미미하였다. 정부가 스포츠산업을 정책대상으로 파악하고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후반부터라 할 수 있다. 특히, 한·일 월드컵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통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과 박지성, 김연아, 최경주, 박세리, 김미현, 박찬호 등 한국선수들의 국제적인 활약이 어우러지면서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정부도 스포츠산업을 보다 과학적으로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하고 인력·기술·정보 및 제도적 기반마련 등의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비교적 소외되어왔던 스포츠산업 부문을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정책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을 펴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제개편을 통하여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체육국내 신설하고 스포츠산업의 진흥의 정책적 기반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1) 스포츠산업 정책의 변천

스포츠가 하나의 상품으로 경제 활력과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적절한 투자를 통한 이윤창출과 함께 첨단산업,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국가 산업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가. 1990년 이전의 육성 정책

1965년 6월 14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법률 제1698호)으로 ‘체육용구의 생산 장려와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보조 및 면세 규정’, 동법 제14조의2의 ‘국가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각종 운동용구의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시행령(1966. 2. 7. 대통령령 제2404호)의 ‘운동용구 생산 업자에 대한 융자의 알선과 외국의 운동용구 생산기술의 도입과 보급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용품업의 육성과 외국 기술 도입을 통한 기술 발전을 추진하였다.

1982년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체육용구와 기자재’로 생산 장려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용구 생산우수업체를 지정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 설치 자금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991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6개 체육용구생산 업체에 9억 7,900만원이 지원되었다. 1989년 3월 31일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민간 체육시설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육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나.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1997)

체육용구의 품질수준향상과 체육활동에 필요한 용구의 적정한 공급을 목표로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전시회 개최 지원, 국산 체육용 기구 구매·사용을 적극 장려하였다. 이 외에도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표준화 기술 지도를 통한 공인 제품의 확대, 우수체육용구업체 지정 대상과 융자규모를 확대하여 스포츠용품업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민간스포츠시설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골프장, 스키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체육시설 설치·운영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8~2002)

‘스포츠산업’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됨으로써 스포츠를 산업적 시각에서 다루었다.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민간체육시설을 적극 지원하여 민간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 스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용품업체에 대한 지원, 우수생활 체육용구 생산 업체에 대한 산업적 지원, 경륜·경정 등 여가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소비자의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라. 스포츠산업육성대책(2001)

정부는 스포츠산업을 21세기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2001년 8월 「스포츠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육성의 기본방향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스포츠자원의 상품가치 개발, 스포츠서비스업 중점 지원,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지식정보 기반 구축,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장·단기 과제를 추진하였다.

마. 스포츠산업 비전 2010(2005)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국의 직제개편을 통하여 ‘스포츠여가산업과’를 2004년 11월 신설하고 스포츠산업을 21세기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스포츠산업 비전 2010」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스포츠산업을 지원하여 국가 전략 산업의 하나로 성장시키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과제 선정, 고부가가치 스포츠용품 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 레저스포츠산업 기반 확대, 프로스포츠산업의 성장기반 구축 등 향후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을 핵심으로 하였다.

바. 2009~2013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2008)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강국에 걸맞는 스포츠산업 선진국 도약’을 비전으로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표적 융·복합 산업으로서 신성장 동력화’, ‘선순환구조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3대 목표 아래 5대 추진전략 및 15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선진국형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추진과제로는 스포츠용

품 대표 브랜드 육성, 스포츠 융합 신서비스 창출, 프로스포츠 경쟁력 제고, 지역 스포츠 산업 수요창출 및 인프라 구축, 스포츠산업 진흥기반 구축이 있다.

2) 스포츠산업 관련조직의 변천

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관련 조직

① 설치 배경

정부는 스포츠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임을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정책적 대상에서 소외되어왔던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자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내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2006년 초 스포츠여가산업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의 팀제로 전환하는 개편을 맞이하여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스포츠산업팀으로 개칭하고 담당업무를 스포츠산업에 한정하여 업무의 집중도를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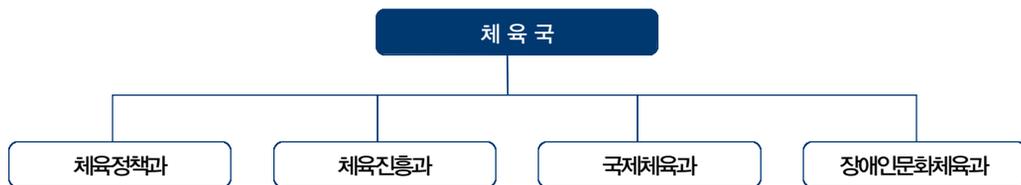


그림 7-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조직도

스포츠산업팀은 스포츠산업의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국민의 스포츠관련 소비 증대에 대비함과 더불어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스포츠산업을 국내 경제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성장기반을 조성을 실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② 주요업무

2005년도부터 국가기술자격제도로 ‘스포츠경영관리사’ 시행, 스포츠마케터 등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산업 정책 추진기반인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스포츠산업의 정책 및 지원 대상을 기존의 전통적 스포츠산업 뿐만 아니

라 그 동안 정책적 대상에서 비교적 소외되어 왔던 신종 여가스포츠산업도 포함시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내 중소레저스포츠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와 같이 신종여가스포츠분야와 신종여가스포츠분야 산업에 걸린 각종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여가체육의 개념정립 등 관련법규 정비, 레프팅장·활공장 등 신종 레저스포츠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관련부처와 협조, 레저스포츠 소비자와 관련업체 보호를 위한 보험 상품 개발 등 레저스포츠 관련사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관련 조직

①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과학·산업연구실

정부는 스포츠산업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스포츠산업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및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2001년 9월 30일 기존의 체육과학연구원 정책개발연구실과 시스템개발팀에서 담당하던 스포츠산업 관련 업무를 별도의 전문성을 지닌 스포츠산업연구실로 확대 개편하여 스포츠산업 진흥업무 및 연구개발을 전담하도록 했다. 2011년부터는 스포츠산업연구실이 스포츠과학·산업연구실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 표 7-32 체육과학연구원의 스포츠산업 연구 조직구조 변화

연 도	1999	2000	2001~2002	2003~2010	2011~2012
연구조직 (팀/실)	정책개발팀 생활체육팀 전문체육팀 시스템개발팀 정보전산팀 국민체력센터 (5개팀 1센터)	정책연구팀 전문체육팀 시스템개발팀 정보전산팀 (4개팀)	정책개발연구실 전문체육연구실 정보전산연구실 스포츠산업연구실 (4개연구실)	정책개발연구실 스포츠과학연구실 스포츠산업연구실 (3개연구실)	스포츠 과학/산업 연구실 정책개발 연구실 (2개 연구실)

② 스포츠산업본부 신설

스포츠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국민체육진흥공단내 스포츠산업부를 2005년 2월 신설하였다. 스포츠산업부의 주요업무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스포츠산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먼저 스포츠산업 육성 및 지

원 관련제도 개발, 우수 체육용구 및 기자재 생산 장려와 용자지원, 체육시설업·스포츠서비스업 용자지원 등과 스포츠박람회 개최 및 참가업체 지원, 우수 스포츠산업체 마케팅 지원, 스포츠산업대상 및 스포츠서비스업사업공모전을 통한 업체 격려 등의 지원이 있다. 더불어 신규 사업을 창출하기 위하여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 및 운영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업무를 통하여 스포츠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스포츠용품업 지원정책

1)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가. 인증제의 개념 및 필요성

정부는 국내 스포츠용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용품 인증제도는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운동용품에 대하여 품질과 운동기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제품을 공인하는 제도이다.

최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의한 무역자유화 추세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산업, 무역, 금융관련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 산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국에서는 WTO의 무역기술장벽(TBT) 규제원칙을 준수하면서 표준·인증제도를 자국산업의 기술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른바 표준, 기술, 무역의 연계를 강화하는 산업정책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표준·인증제도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유인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다.

나.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사업의 구성

스포츠용품 인증사업은 우수 품질의 스포츠용품에 인증을 부여하여 품질 및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제(KISS 마크) 시행, 스포츠용품을 구성하는 재료 또는 완제품의 역학 시험 수행을 위한 스포츠용품시험소 운영, 스포츠산업체에 국내외 인

중 지원 및 자문, 기술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지원 및 자문 사업, 해외인증획득지원을 통한 해외경쟁력 제고 및 국산 스포츠용품의 해외 브랜드 육성 사업 등이다. 스포츠용품 인증 사업의 구성도는 (그림 7-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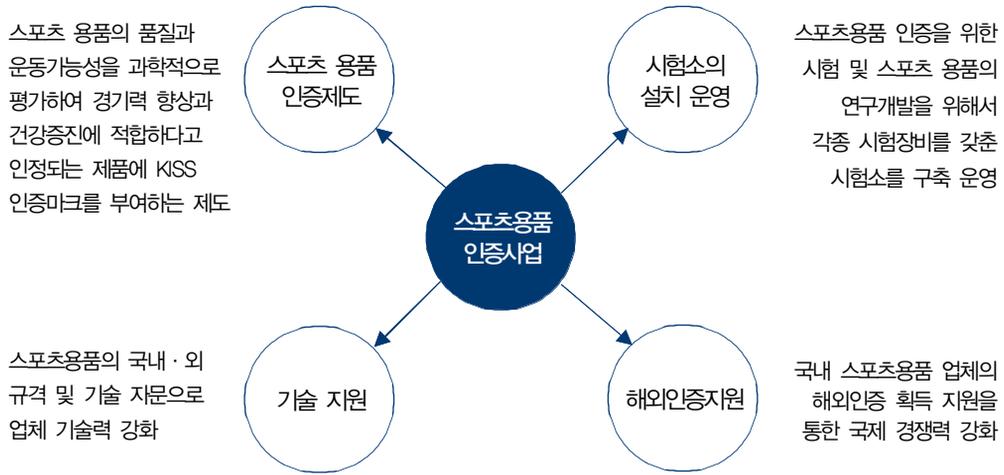


그림 7-3 인증제사업 구성도

다. 인증제사업 추진현황

정부는 국내 스포츠용품업체의 기술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5.9억원을 투자하여 스포츠용품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2말 현재까지 학교체육시설 등 83종의 인증규격을 개발하였으며, 인증 전산시스템 개발과 인증마크(KISS)를 제정하여 스포츠용품인증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험·검사를 위한 장비(만능재료시험기, 삼차원측정기, 로크웰경도기 등 136종, 2012년말 현재) 도입을 통해 스포츠용품 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

■ 표 7-33 스포츠용품 인증제도를 위한 투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3까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금 액	105.9	25	10	8.5	7.2	7.5	5	9	9	9	15.7

※ 출처 : 스포츠산업본부(2012). 내부자료

2001년부터 인증제 운영 전반의 컨설팅, 인증서류, 인증패, 홍보물 제작 등 인증제 도입 기반 마련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을 통한 인증사업의 기반 조성, 국내 공인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을 시행하였다.

2005년에는 그간 추진해온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기반 구축사업을 바탕으로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마크인 KISS 마크를 복싱관련 3개 업체의 3개 품목에 부여하는 것으로 2012년말까지 자전거 프레임, 인조잔디, 축구공, 야구공, 인라인스케이트 등 175개 모델에 대하여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였다.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 받은 업체는 3년간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하게 된다.

국내 스포츠산업체의 수출판로 개척과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2009년부터 스포츠용품 해외인증획득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4년간 57개 업체에게 CE, ETL, TUV 등 87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2012년 12월 시험소 통합·이전(용인시 신갈동)을 통하여 스포츠용품 업체들의 접근성 향상 및 시험 여건을 개선하였다.

■ 표 7-34 인증 시험·검사장비 도입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주요 품목		
200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피충격시험기 · 비접촉식변위측정기 · 복싱용품 충격시험기 · 진자형마찰시험기 · 자전거에르고미터내구성시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라인스케이트내구성시험기 · 스윙분석기 · 인체두부모형 · 머리모형충격흡수시험기 · 속도측정장치 제어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찰시험기 · 인라인스케이트측정기 · 충격시험기온도조절챔버 · 전자저울 · 정밀측정및가공기기
2007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클럽 내구성시험기 · 골프클럽 성능측정시스템 · 자전거부품 시험모듈 · 퍼팅 시뮬레이터 · 흡수하중측정장치 · 축구공구름길이측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압용 콤프레서 · 스포츠바닥재 시험기 · 체중분포분석기 · 기상관측기 · 이동형 인조잔디 충격시험기 · 인조잔디회전저항측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향식 반발높이 계측장치 · 표면형상 측정기 · 경사형 축구공 발사시험기 · 하중편차측정기 · 소프트토크측정기 · 골프스윙분석기
200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형 다기능 측정기 · 인조잔디감속모듈 · 육상트랙 성능측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구동저항측정기 · 골프공 역학측정시스템 · 자전거부품 충격시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프레임배열측정기 · 스포츠 다기능 측정기 · 축구공속도측정기
2006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클운동량측정기 · 헤드관성측정기 · 로프트·라이벵딩기구 · 클럽헤드각측정기 · 진동수측정기 · 런치모니터(골프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시험모듈 · 클럽관성측정기 · 벨트센더 · 헤드-소프트분리기 · 충격전달용 고강성 스프링 · 스포츠화 피로시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lf Projectile Dynamic · 무게중심측정기 · 스윙웨이트측정기 · 그림조립기구 · 자전거측정장비

구분	계	주요 품목		
2009	8	· 공랭식 스크루 공기압축기	· 자전거제동주행시험기	
2010	8	· 환경측정기	· 3d 구조해석용 컴퓨터	· 가속도측정기
		· MEMS 시그널컨디셔너 · 축구공 수분흡수율 측정기	· 파워측정기	· 궁도시험기쇼어경도측정기
2011	4	· 사이클링 시뮬레이터	· 사이클 피팅시스템 시험기	· 골프 퍼팅동작 분석기
		· 바닥재 내구성 시험기		
2012	4	· 동작분석시스템	· 도막두께측정기	· 체육관미끄럼시험기
		· 야구장안전펜스충격시험기		

※ 출처 : 스포츠산업본부(2012). 내부자료

2) 스포츠산업 박람회 개최

가. 개최 목적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인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스포츠용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1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스포츠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나. 2012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개최

2001년 5월1일부터 5월6일까지 올림픽공원 한얼광장에서 국내·외 28개국 139개 스포츠용품업체가 참가하여 제1회 서울국제올림픽(스포츠산업) 박람회(International Olympic Fair Seoul 2001)를 개최하였다. 이 박람회는 국제스포츠용품 전시회, 국제올림픽기념품 전시회,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로 구성되었다.

국제스포츠용품 전시회에는 11개국 139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28개국 1,272명의 바이어가 참가하였다. 박람회를 통해서 진행된 스포츠산업 관련 상담건수는 850건에 이르고 그 중 2002년까지 25건(12개 업체) 1,736만 달러(220억원)의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박람회 기간 중에는 IOC 문화교육 및 수집가분과위원회의, WFSGI(세계스포츠용품산업연맹) 이사회 및 3개 분과위원회의, WFSGI 이사회 아시아 지역 특별회의를 비롯한 각종 학술세미나가 동시에 개최됨으로서 이론과 실재를 병용한 종합 박람회로 개최되었다.

2003년 박람회에는 11개국 182개 업체가 참가하여 내수부문에 1,479건과 수출부문에 190건의 상담실적과 내수 25,030백만원과 수출 86,612천 달러의 계약실적을 기록하였다.

2004년에 들어서는 박람회 명칭을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eoul International Sports & Leisure Industry Show)으로 개칭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형식으로 진행 주체의 변화를 시도했으며 그 내용도 내실화를 꾀했다. 2004년 박람회에는 16개국, 190개 업체가 참가하여 내수 3,566건과 수출 418건의 상담과 내수 15,667백만원, 수출 191,923천 달러의 계약을 성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5년 박람회는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업체는 국내 134개 업체와 해외 69개 업체를 포함하여 총 203개 사가 참여하였으며 부스도 국내업체가 609부스, 해외업체가 170개 부스를 사용하여 2004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2006년 박람회에는 2월 23일부터 일정을 앞당겨 2월 26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어 212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내수 부문에 4,325건과 수출부문에 450건의 상담실적과 내수 28,303백만원과 수출 93,350천달러의 계약실적을 기록하였다.

2007년 박람회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업체는 국내 143개 업체와 해외 73개 업체를 포함해 총 216개 사가 참가하였으며 부스도 국내업체가 608부스, 해외업체가 142부스를 사용하였다.

2008년 박람회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고, 참가업체는 국내 148개 업체와 해외 76개 업체를 포함해 총 224개 사가 참가하였으며 부스도 국내업체가 616부스, 해외업체가 140부스를 사용하였다.

2009년 박람회는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고, 국내 193개 업체와 해외 71개 업체 총 264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부스도 국내업체가 682부스, 해외업체가 138부스를 사용하였다.

2010년 박람회는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었고, 국내 237개 업체와 해외 72개 업체 총 309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부스도 국내업체가 765부스, 해외업체가 140부스를 사용하였다.

2011년 박람회는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업체는 국내 230개 업체와 해외 개 81업체 총 311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부스도 국내업체가 810부스, 해외업체가 142부스를 사용하였다.

2012년 박람회는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었으며, 국내 235개 업체와 해외 77개 업체 총 312개 업체가 참가하였고, 부스 역시 국내업체가 974부스, 해외업

체가 143부스를 사용 역대 최대로 진행하였다. 박람회 규모, 참가국, 바이어 내한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 표 7-35 2012 서울국제스포츠박람회 전시규모 현황

구 분	국 내		해 외		계
	업 체	부 스	업 체	부 스	
2012년	312개사	974부스	77개사	143부스	312개사 / 1,117부스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2012). 2012 서울국제스포츠 레저산업전 결과보고서

■ 표 7-36 지역별 해외 바이어 참가비율(34개국)

구 분	아시아	유럽	북미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오세아니아	기타
100%	50.9%	12.2%	14.7%	6.0%	4.3%	3.8%	4.5%	3.6%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2012). 2012 서울국제스포츠 레저산업전 결과보고서

■ 표 7-37 품목별 참가비율

계	피트니스/헬스	아웃도어/캠핑	수중/수상 스포츠	운동장 생활 체육시설	바이크/익스트림	팀/인도어 스포츠	기관 및 단체	기타 스포츠 레저용품
100%	16.0%	29.2%	26.9%	5.8%	9.3%	2.2%	1.6%	9.0%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2012). 2012 서울국제스포츠 레저산업전 결과보고서

■ 표 7-38 상담 및 계약실적

구분 (년도/증감)	내 수		수 출		비 고
	금액(백만원)	건수(건)	금액(천달러)	건수(건)	
2005	32,287	4,567	92,252(106,090백만원)	433	
증 감	106.1%	28.1%	△ 51.9%	△ 3.6%	
2006	28,303	4,325	93,350	450	
증 감	△ 12.3%	△ 5.3%	1.2%	3.9%	
2007	26,940	4,129	94,710	472	
증 감	△ 4.8%	△ 19.7%	1.4%	4.8%	
2008	25,890	4,216	95,840	480	
증 감	△ 4.0%	2.1%	1.2%	1.7%	
2009	25,553	4,325	86,448	468	
증 감	△ 1.31%	2.1%	△ 9.79%	△ 2.5%	
2010	26,549	4,501	96,995	486	
증 감	3.9%	4.1%	12.2%	△ 3.8%	
2011	28,919	4,725	125,300	526	
증 감	8.9%	5.0%	29.1%	8.2%	
2012	29,864	4,876	127,420	539	
증 감	3.3%	3.2%	1.7%	2.5%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2012). 2012 서울국제스포츠 레저산업전 결과보고서

다. 스포츠산업박람회 종합 평가

2012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은 21개국 312개사 1,117개 부스가 설치되어 2011년 311개사 952개 부스에 비해 참가 업체수는 0.3%, 부스규모는 17.3% 각각 증가하였다. 현재 국내시장의 유행 변화를 나타내듯 아웃도어 및 캠핑용품 제조 업체의 뚜렷한 참가 증가세가 눈에 띈다. 우수해외박람회와 견주어 국내업체만의 독자적인 차별화 전략을 통해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헬스 및 피트니스 부문은 매년 제품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참가업체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박람회의 특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박람회는 예년에 비해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다수 참가하였고 신규 출품 제품도 다양화되었다. 특히, 자전거, 아웃도어업체들의 참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해외 바이어 부문에 있어서는 일본, 중국, 홍콩 등 세계 34개국에서 보다 구매력 있는 바이어가 내방하여 상담이 주어졌다. 특히, 참가업체가 직접 추천 바이어를 적극 유치, 초청하여 실질적인 구매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2년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은 국내 최대 스포츠레저산업 전문 전시회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전시규모 성장에 따른 중소 스포츠용품기업 유통망 확장에 기여하였다. 더불어 아웃도어 전문전시회인 'Preview Outdoor Show' 흡수 통합으로 전시회의 지속적 확대개최 및 전시콘텐츠 다양화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동종 군소 전문전시회 통합 및 최신 트렌드 품목 유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SPOEX 박람회는 스포츠용품분야 UFI(국제전시연맹) 인증을 획득으로 국제전시회로써 인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05년~'12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식경제부 '유망전시회' 선정(총 6회)될 정도로 많은 성장을 하였으며, 참가업체 지원 및 전시회의 국제화를 위해 해외 바이어·마케팅을 지원하고 다양한 학술행사, 사업설명회, 패션쇼 등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3)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기금용자 확대

가. 사업 개요

국내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생산장려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

법 제17조에 따라 생산장려 품목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우수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생산장려 체육용품 및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생산을 장려하는 체육용구·기자재는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경기종목, 학교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 및 기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용구 등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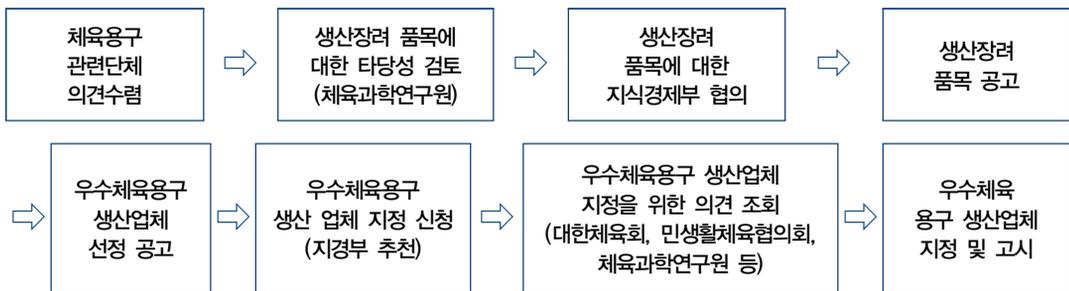


그림 7-4 생산장려품목 및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절차

정부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장려 체육용구를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업체를 지정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원자재 구입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수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생산장려품목 및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절차는 (그림 7-4)와 같다.

2012년 12월 현재 생산장려품목으로 지정된 체육용구는 모두 586개 품목이며, 2013년 1월 24일 현재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는 103개 업체이다. 생산장려품목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현황은 <표 7-39>, <표 7-40>과 같다.

■ 표 7-39 생산장려 체육용품 지정 현황

종목(분야)	품 목
검도(5)	죽도, 목검, 호구, 도복, 전통도검
게이트볼(1)	게이트용품
골볼(2)	공, 골대
골프(17)	골프가방, 골프공, 골프장갑, 골프채, 골프하드커버, 골프카트, 퍼팅연습기, 골프연습용구, 그린볼과 티, 만능클럽, 볼하우스, 골프그립, 골프화, 그린경사측정기, 스윙파워측정기, 거리측정기, 골프샤프트
공수도(12)	경기용글러브, 샷보대, 마우스피스, 도복, 보호대(가슴, 팔, 정강이, 발, 안면, 몸통), 심판깃발, 심판화
국무도(12)	코브라장갑, 치마, 보호대(몸통, 발목, 발등, 머리, 낭심, 정강이), 암미트(타켓), 막대미트(타켓), 만능미트(타켓), 스폰지 검
궁도(6)	화살(카보화살, 전통화살), 활(카보활, 전통활), 화살통, 각지
그라운드골프(3)	홀 포스트, 클럽, 공
근력단련기구(5)	기계식 체력 단련기구, 근력단련보조용구, 체력단련시스템, 야외용 체력 단련기구, 고관절운동기구
낚시(11)	안전모, 안전화, 구명복, 낚시복, 선글라스, 텐트, 낚시대, 릴, 낚시가방 및 보조가방, 쿨러, 낚시바늘
농구(5)	농구넷, 농구대, 농구공, 농구링, 경기용 휠체어
당구(9)	당구대(포켓, 캐롬), 당구큐, 쿠션고무, 당구나사지, 규장[스코어보드검], 스코어보드, 공, 쇼크
댄스스포츠(2)	댄스스포츠화, 경기용 휠체어
동력스포츠(2)	헬멧, 원동기(스쿠터)
등산(16)	등산복, 등산화, 배낭, 아이스엑스, 안전벨트, 프렌드, 카라비너, 텐트, 안전모, 슬링/테이프, 빙벽용 아이젠, 가스버너, 코펠, 경기등반(인공패널, 인공홀드), 암벽화
라켓볼(4)	라켓, 안경(보호안경), 공, 장갑
력비(11)	력비공, 헤드기어, 골대, 력비골대보호대, 스크랩머신, 태클머신, 마우스가드, 숄더패드, 콘택머더, 태클백, 킥팅티
레슬링(4)	레슬링경기화, 레슬링인형, 레슬링 로프, 매트
미식축구(3)	미식축구공, 의류, 보호장비
바둑(4)	바둑판, 바둑통, 바둑알, 계시기
바운드볼(2)	배트, 공
바이애슬론(2)	롤로스키(스케이팅), 폴(스케이팅)
배구(11)	배구넷, 배구공(O185LSTF), 비치발리볼(M185A), 배구공(VB205), 칼라배구공(VB205-34), 지주, 지주금구, 배구심판대, 배구용전광판, 배구지주보호대, 공(시각장애인용)
배드민턴(8)	배드민턴넷, 배드민턴라켓, 셔틀콕, 지주, 스트링거, 심판대, 배드민턴 전용화, 경기용 휠체어
보치아(4)	볼, 작전판, 홈통, 레이저 빔
복싱(7)	복싱글러브, 컴퓨터특점기, 헤드기어, 복싱링, 샌드백, 샌드백설치대, 펀치볼
볼링(10)	레인, 볼링공, 볼링핀, 볼회수기, 손목보호대, 컴퓨터특점기, 핀세터, 볼링공지공기, 볼링화, 볼링가방
사격(3)	사격표적지, 전자표적장치, 사격휠체어 거치대
사이클(9)	경기용사이클, 산악자전거, 레저용자전거, 헬멧, 자전거부품, 경기복, 롤러, 스텝보드 자전거, 사이클화

종목(분야)	품 목
생활체조(7)	줄넘기, 생활체조복(민속체조, 에어로빅), 다리펴기, 에어로빅매트, 훌라우프, 밴드
세탁타크로(1)	포스트
소프트볼(8)	글러브, 배트, 볼, 안전모, 포수장비, 소프트볼경기화, 선수보호망(펜스,백네트)
수영(21)	논슬립매트, 다이빙보드, 배수그레이트, 수구골대, 수영복, 수위조절판, 수중창, 심판대, 스타트대, 코스라인, 코스로프, 핸드레일, 안전감시대, 수영장자동청소기, 핀수영용구(모노핀, 일반핀, 스노쿨, 버선, 공기통, 공기통연결구, 호흡기)
빙상(8)	스케이트(쇼트트랙, 스피드, 크랩, 피겨), 헬멧, 장갑, 방한모, 쇼트트랙블레이드
스쿼시(3)	스쿼시화, 라켓, 공
스키(12)	고글, 스노우보드, 스키장갑, 스키플레이트, 폴, 스노우보드 바인딩, 스노우보드 부츠, 스노우보드 장갑, 알파인 모노스키, 알파인 바이스키, 모노스키용 아웃리거, 절단장애인용 아웃리거
스크린골프(2)	스크린골프시스템, 스윙분석시스템
스포츠찬(3)	검, 방패, 호면
스포츠 IT(1)	운동 관리·처방·운영지도 관련 프로그램
스킨스쿠버(10)	물안경, 부력조절기, 잠수복, 호흡공급기압축기, 핀(오리발), 호흡기, 마스크, 잠수복, 다이빙 칼, 다이빙용 킷 튜브
승마(5)	바지, 부츠, 장갑, 헬멧, 장구(안전조끼)
수상스키(4)	투스키, 점프스키, 트릭스키, 웨이크보드
수상레저스포츠(2)	구멍조끼, 구명환
씨름(3)	살바, 팬티, 씨름경기장
아이스링크(1)	아이스링크패널(조립식 포함)
아이스하키(4)	프레임, 슬레지(썰매), 블레이드, 퍽
야구(6)	야구공, 야구글러브, 야구배트, 보호장구(케처보호구), 모자, 헬멧
양궁(9)	화살, 활, 화살통, 핸들, 날개, 표적지, 조준기, 쿠션, 스타비라이저
역도(5)	역도바벨원판, 경기대, 연습대, 하체대, 역도바벨
요트(8)	딩기(Dinghy)요트, 크루징요트, 모터요트(보트), 구조정, 돛, 리깅, 스파, 피팅
우슈(15)	투로용구(카펫, 신발, 유니폼, 도, 검, 창, 곤), 산타용구(산타경기장, 글러브, 헤드기어, 가슴보호대, 낭심보호대, 정강이보호대, 마우스피스, 유니폼)
유도(2)	유도복, 매트
유산소 운동기구(7)	자전거에르고미터, 계단오르기운동기구, 전동식러닝머신, 엘립티컬(타원궤도 보행체력 단련기), 허리틀리기, 윗몸일으키기, 상·하지연동운동기
육상(27)	사진판정기, 스타팅블록, 원반, 투창, 풍향풍속계, 포환, 해머, 허들, 디지털 줄자, 무인카, 높이뛰기 지주, 장대높이뛰기 지주, 해머 원반 그물망, 장대높이뛰기매트, 높이뛰기용매트, 마라톤 전자계측 시계(차량부착용), 3000SC 이동장애물, 주회표시기(디지털식 및 수동식), 스타트용 확장장치, 멀리뛰기 구름판(세트), 높이뛰기 고도계, 높이뛰기 바, 장대높이뛰기 고도계, 장대높이뛰기 바, 장대높이뛰기 상자, 포환 이동레일, 레이싱용 휠체어
인라인롤러(14)	경기복, 인라인스케이트, 바퀴(휠), 신발, 지지대, 무릎보호대, 장갑, 헬멧, 팔꿈치 보호대, 베어링, 프레임, 고글, 콘(고깔), 퍽
윈드서핑(7)	보드, 세일, 붐, 마스트, 라이프 자켓, 헬멧, 하니스
재활운동기구(6)	보행연습기, 평행봉연습기, 휠체어, 암에르고미터, 재활 로잉머신, 플라이 에르고미터
정구(6)	고구공, 정구라켓, 정구네트, 정구라인테이프, 지주, 정구라인청소기

종목(분야)	품 목
족구(6)	족구지주네트(지주, 네트, 라인), 점수판, 경기용 족구공, 전용족구화
조정(3)	경기정, 노, 자세지지의자(장애용)
종합무술(8)	복, 보호대(머리, 몸통, 팔, 다리, 낭심), 장갑, 위장 운동기계
주행식 운동기구(4)	스케이트보드, 킥보드(핸들브레이크, 바퀴, 핸들)
줄다리기(6)	로프, 매트, 경기화, 보호대(앵커선수용 보호조끼), 안전모(앵커선수용 안전모), 보호대(선수용 요대)
체력측정장비(9)	체성분분석기, 악력측정시스템,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시스템, 제자리멀리뛰기 측정시스템, 50m 달리기 측정시스템, 왕복달리기 측정시스템, 윗몸일으키기 측정시스템, 심박측정기, 복합체력측정기
체육계측장비(2)	레이저스톱워치, RFID계측장비(수신기)
체육시설(9)	바닥재(고무블록), 인조잔디, 전광스코어판(휴대용 포함), 매트(공수도, 단학기공, 배드민턴, 체조), 의자(운동장 및 체육관), 컬팅(경기장)
체조(15)	뿔뿔, 철봉, 체조복, 평행봉, 트램플린(체조경기 일종), 안마,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링, 체조착지매트, 에어매트, 구름판, 프로텍터, 마루매트
축구(11)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구(발목보호대), 축구골네트, 골대, 임원선수벤치, 경기복, 골키퍼장갑, 동계축구니트장갑, 공(시각장애인용), 보호대(시각장애인용)
츄크볼(1)	네트
카누(2)	경기정, 패들(노)
컬링(5)	발판, 브러쉬, 슈즈, 컬링스톤, 스틱
탁구(8)	탁구공, 탁구네트, 탁구대, 탁구라바, 라지볼, 라지볼용네트, 라지볼용지주, 라지볼용러버
태권도(10)	도복, 보호대(다리, 머리, 몸통, 팔, 손등, 발등), 살보대, 전자호구, 매트
택견(8)	택견수련복(철릭, 대자, 행전, 버선), 택견경기복, 경기용 매트, 심판복(노랑), 택견수련화
테니스(6)	테니스공, 테니스네트, 테니스라켓, 지주, 스트링거, 경기용 휠체어
티볼(4)	배트, 공, 배팅티, 베이스
파크골프(7)	클럽, 공, 신발, 홀컵, 티박스(티잉그라운드), 볼 스탠드, 추첨기(출발추첨기)
패러글라이딩(15)	기체(리스폰스, 밀레니엄, 컨피던스, 콘트롤, 프라임, 프로미스), 보조낙하산, 비행복, 산줄, 웨빙, 하네스(선수용, 아크로, 연습자용, 코로나), 헬멧
펜싱(7)	심판기, 펜싱검, 전기심판기, 메탈피스트, 릴, 릴선, 휠체어펜싱 프레임
풋살(3)	풋살볼, 풋살화, 풋살골대
프리테니스(4)	공, 라켓, 지주, 네트
플라잉디스크(7)	디스크처, 원반, 번호판타켓, 우산트레블러, 미니디스크/마커, 링트레블러, 원형트레블러
하키(3)	필드하키네트, 골대, 임원·선수벤치
핸드볼(6)	핸드볼공, 핸드볼네트, 골대, 왁스, 골망, 바닥재
핸들러(1)	라켓
휠체어력비(1)	휠체어
기타(18)	건강시계(심박측정기능 포함), 운동보조영상장치, 라인마커, 기능성신발, 운동화, 진동운동기, 어린이 놀이기구(조합놀이대, Fun Climber), 오십견예방운동기, 고령자용 운동기구(체력단련용, 재활치료용, 정신훈련겸용, 스트레칭용), 맞춤형갈창, 낙상위험도측정시스템, 균형감각훈련시스템, 신체보호대, 스포츠화 살균기

■ 표 7-40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현황(2013. 01. 24)

업 체 명	품 목 명
(주)나소	축구공, 테니스공
동구산업개발	농구대
(주)삼익스포츠	양궁활
(주)나소골프	골프공
수풍산업(주)	윗몸일으키기, 허리돌리기,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용운체육산업(주)	허들, 스타팅블록, 뽀름, 체조매트
원앤원(주)	양궁활
주식회사 참피온	탁구대
파트너스교역상사	복싱글러브, 복싱헤드기어, 복싱링
풍국레포츠	허들, 포환, 해머, 축구골대, 축구임원선수벤치, 조합놀이대, 농구대, 철봉
한아스포츠	허들, 스타팅블록, 포환, 해머, 원반, 높이뛰기 지주, 해머그물망, 3000SC이동장애통, 멀리뛰기 구름판, 높이뛰기 고도계, 장대높이뛰기 고도계
한국체육산업	역도바벨
현대체육산업(주)	매트(제조, 유도, 레슬링용), 코스로프, 농구대, 투로용구, 야외용 체력 단련기구
개선스포츠	기계식 체력단련기구
김해산업사	야구글러브
신아스포츠산업	농구대, 철봉
(주)에스피레저	수영코스로프 및 권치기, 스타트대, 배수그레이트, 안전감시대, 수위조절판, 수영장 자동청소기
오성체육산업주식회사	농구대
주식회사 키카	축구화, 축구공
(주)허리우드	포켓당구대, 캐롬당구대
태하메카트로닉스(주)	전동식러닝머신, 자전거에르고미터, 엘립티컬
(주)범우티앤씨	눈슬림매트, 배수그레이팅, 수구골대, 수위조절판, 수중창, 심판대, 출발대, 코스로프, 핸드레일
(주)알티뷰텍	전광스코어판
삼성포리머(주)	바닥재
(주)평화산업	탁구공, 탁구라바
제맥스코리아	탁구대
클라임코리아(주)	경기등반(인공패널, 인공홀드)
한일스포렉스	포환, 원반, 스타팅블록, 높이뛰기지주
(주)디자인파크개발	야외용 체력 단련기구
(주)다이아포스	기계식 체력 단련기구
대우스포츠산업(주)	농구대, 허들, 스타팅블록, 장대높이뛰기지주, 배구지주, 배구심판대, 축구 골대,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 시스템, 제자리멀리뛰기 측정시스템, 왕복달리기 측정시스템, 윗몸 일으키기 측정시스템
(주)한국오리온	기계식 체력 단련 기구
(주)동방데이터 테크놀러지	전광스코어판
(주)홍진HJC	동력스포츠헬멧

업 체 명	품 목 명
탑드림	댄스스포츠화
(주)모투스	전동식러닝머신, 엘립티컬
삼익전자공업(주)	스코어보드전광판
(주)오투런	체력진단시스템
(주)시즈글로벌	스키장갑
디스커버리씨에스(주)	인공패널, 인공홀드
(주)이심기술	스쿠터
(주)바이오스페이스	체성분석석기
(주)두성기술	심박측정기기
(주)골프앤코	골프채
승경체육산업(주)	기계식 체력 단련기구, 축구 골대, 농구대, 배구지주, 배구지주금구, 배구심판대, 배구 지주보호대, 높이뛰기지구, 장대높이뛰기지구, 해머원반그물망, 장대높이뛰기매트, 높이뛰기용매트, 멀리뛰기용구름판, 포환이동레일
(주)이다에스엔티	배수그레이팅, 수위조절판, 코스로프, 농구대
(주)케이엘에스	야외용 체력 단련기구
(주)티에스코리아	전동운동기
블랙야크	등산복, 배낭
마하무역(주)	스포츠화살균기
(주)푸토피아	보호장구(발목보호대)
파이온시스템	전자표적장치
금호조침	낚시 바늘
(주)대한전광	전광스코어판
이랜드체육산업(주)	조립식아이스링크패널
에이뉴배트	야구배트(알루미늄)
(주)에스엠골프기기산업	골프연습용구
(주)트렉스타	등산화
(주)휴즈	야구배트(나무)
라인포인트	라인마커
(주)코비스스포츠	골프티
(주)티모	구명조끼
(주)재영엠엔씨	의자(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하나산업사	골프채
(주)승리체육산업	장대높이뛰기 매트, 높이뛰기용 매트
(주)컬처메이커	도복(태권도), 보호대(태권도)
트로이	롤러-키(프레임/휠리(바이애슬론))
(주)대원포티스	헬스용, 승마용 운동기구(유산소 운동기구)
태영산업	런닝머신(유산소운동기구)
(주)아이엔에스일공이	경기복, 스포츠의류
(주)자이로	바퀴(인라인롤러스케이팅)

업 체 명	품 목 명
시원교구사	라인 마커
(주)중앙카스포	농구대, 배구지주, 배구심판대, 배구지주금구, 배구지주보호대, 배드민턴지주, 복싱링, 에어로빅매트,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허들, 높이뛰기지주, 장대높이뛰기지주, 높이뛰기용매트, 정구지주, 족구지주, 족구점수판, 매트, 뒀름, 철봉, 평행봉, 이단평행봉, 평균대, 구름판, 프로텍터, 축구골대, 선수벤치, 테니스지주, 풋살골대, 필드하키골대, 필드하키네트, 핸드볼골대
가야스포츠	개량활
송무궁	활(개량활)
(주)제일체육공사	야외용 체력 단련기구, 농구대, 축구골대, 족구지주네트
경일산업(주)	야외용 체력 단련기구
G,K SAIL	요트세일
동화체육(주)	농구대, 배구지주, 배구심판대, 복싱링, 축구골대, 스타팅블럭, 허들, 높이(장대)뛰기지주 원반해머그물망, 높이(장대)뛰기, 매트,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측정시스템, 착지매트
파이빅스 스포츠	양궁표적지
(주)자원메디칼	체성분분석기
(주)디엠비에이치	스크린골프시스템
한별체육산업	농구대, 근력단련기구
이글아이드	기능성골프화
(주)사루스	유산소진동운동기
신광바둑	바둑알
광신스포츠	농구대, 야외용 체력 단련기구
(주)와룡산업	줄넘기, 훌라후프
(주)하림	뉘시대
(주)한발	당구큐
PSV	인라인스케이트
(주)카이로스	기계식 체력 단련기구
(주)슬로비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연무산업	활(개량활)
(주)트랑고	안전벨트, FRIEND, 카라비너, 슬링/테이프, 빙벽용아이젠, 아이스엑스, 안전모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골프채
(주)프리원	디스캐처, 우산트레블러, 링트레블러, 원형트레블러, 원반, 미니디스크, 번호판타겟
(주)휠라인	휠체어(재활운동기구), 휠체어펜싱, 프레임, 휠체어(휠체어력비)
(주)볼빅	골프공
대성체육산업	농구대, 배구지주, 축구골대, 테니스지주, 배드민턴지주
(주)드림엔트리	바둑알, 바둑판, 바둑통
(주)베노	인조잔디
(주)케이피엔피	태권도전자호구시스템

다. 체육용구 생산업체 기금 융자 사업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기금 융자 사업은 1991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2012년까지 총 220억 5,800만원을 융자하였다. 융자 대상 업체는 2012년 12월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103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이며, 생산업체의 신청을 받아 융자심의회를 개최하여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원자재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설비자금은 5억원, 연구개발자금은 3억원, 원자재구입 자금은 1억원을 한도로 융자하고 있으며, 융자이율은 2001년 6%에서 2002년과 2004년 5%와 4%로 인하하였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 대상 및 조건은 <표 7-41>과 같다.

■ 표 7-41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기금융자 사업개요

용 자 대 상	융자분야	융자한도액	용 자 기 간	융자이율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설비투자	5억원	10년 (거치기간4년)	4%
	연구개발	3억원	5년 (거치기간2년)	
	원자재구입	1억원	3년 (거치기간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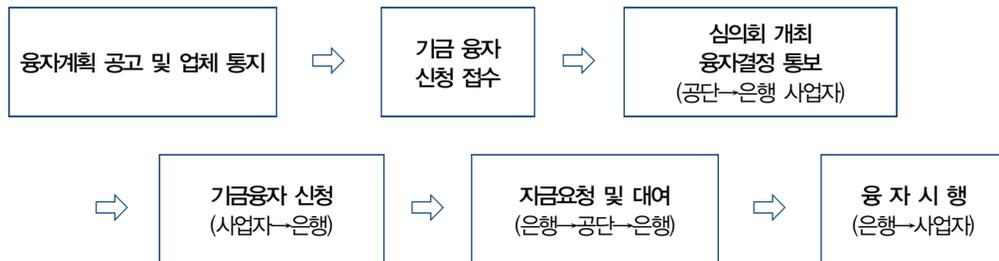


그림 7-5 기금 융자 시행절차

1991년 6개 업체에 설비투자 6억원, 연구개발 3억7,900만원 등 총 9억7,900만원을 처음으로 융자한 이후 2012년까지 132개 업체에 설비투자 74.5억원, 연구개발 115.6억원, 원자재구입 30.5억원 총 220억 5,800만원을 융자하였다.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연도별 기금융자현황은 <표 7-42>와 같다.

■ 표 7-42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기금용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용자분야	신 청		결 정		시 행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합 계	총 계	228	47,794	203	39,265	132	22,058
	설비투자	75	22,635	66	17,750	33	7,451
	연구개발	100	20,129	88	17,050	64	11,561
	원자재구입	53	5,030	49	4,465	35	3,046
'04	계	10	1,960	10	1,960	8	1,107
	설비투자	2	560	2	560	1	60
	연구개발	4	1,000	4	1,000	3	700
	원자재구입	4	400	4	400	4	347
'05	계	7	1,842	7	1,842	-	-
	설비투자	4	1,339	4	1,339	-	-
	연구개발	2	403	2	403	-	-
	원자재구입	1	100	1	100	-	-
'06	계	7	2,100	7	2,100	4	1,050
	설비투자	2	1,000	2	1,000	1	500
	연구개발	3	900	3	900	2	450
	원자재구입	2	200	2	200	1	100
'07	계	12	2,038	10	1,638	5	857
	설비투자	2	494	2	494	1	63
	연구개발	5	1,050	4	750	2	600
	원자재구입	5	494	4	394	2	194
'08	계	30	5,841	25	2,599	17	1,488
	설비투자	10	3,162	9	1,219	6	752
	연구개발	12	2,080	10	1,146	6	541
	원자재구입	8	599	6	234	5	195
'09	계	21	4,330	15	3,180	8	1,350
	설비투자	3	1,180	2	880	-	-
	연구개발	12	2,550	8	1,800	5	1,100
	원자재구입	6	600	5	500	3	250
'10	계	11	2,973	11	2,973	10	2,283
	설비투자	2	980	2	980	1	480
	연구개발	7	1,793	7	1,793	7	1,603
	원자재구입	2	200	2	200	2	200
'11	계	9	2,900	9	2,790	7	1,697
	설비투자	4	2,000	4	1,890	3	1,097
	연구개발	3	700	3	700	2	400
	원자재구입	2	200	2	200	2	200
'12	계	7	1,500	7	1,500	4	800
	설비투자	1	300	1	300	-	-
	연구개발	3	900	3	900	2	600
	원자재구입	3	300	3	300	2	200

※ 주 : 합계는 1991년부터 2012년까지의 합계임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

3. 체육시설업 및 스포츠서비스업 지원정책

1)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기금용자

가. 목 적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체육시설업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1996년부터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용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 용자 대상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용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등록 체육시설(단, 회원제체육시설은 제외), 신고 체육시설 중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설치자금과 개·보수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체육시설업체 용자제도는 연간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부가금 대상 시설이었던 수영장(시설설치 및 개·보수), 볼링장, 골프연습장(시설 개·보수)으로 제한하였으나 1997년 종합체육시설, 1998년 골프장, 스키장에 대한 개·보수 용자를 확대하였으며, 2004년 체력단련장까지 추가하였다. 용자이율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용자와 같이 2004년도에 4%로 인하하였다.

■ 표 7-43 체육시설업체 기금용자 기준

용 자 대 상		용자분야	용자한도액	용자기간	용자이율
체육 시설 업체	①등록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업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단, 회원제체육시설은 제외)	시설설치 자 금	30억원	10년 (거치기간4년)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①을 제외한 종목(골프연습장,수영장,볼링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 등)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5억원		
	①등록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개·보수 자 금	5억원	5년 (거치기간2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①을 제외한 종목(골프연습장,수영장,볼링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		3억원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

시설설치자금은 등록체육시설의 경우 30억원(유자기간 10년), 수영장·볼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은 5억원(유자기간 10년)이며, 개·보수자금은 등록체육시설 5억원(유자기간 3년), 수영장·볼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은 3억원(유자기간 3년)을 한도로 융자하고 있다.

다. 융자 현황

1996년 이후 2012년 까지 총 1,109개 업체에서 5,065억 4,0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이 가운데 496개 업체에 1,436억 1,200만원이 융자되었다. 융자를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골프연습장으로 209개 업체에 461억 3,000만원이 융자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종합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63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그 중 25개 업체에 248억 8,800만원이 융자되었다. 이밖에도 2005년부터는 체력단련장업체에 대한 융자를 개시하여 시설설치에 28개 업체가 103억 9,300만원을 신청하였고 개보수에 30개 업체가 64억 3,5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시설설치 8개 업체에 18억 9,900만원, 개보수 11개 업체에 20억 8,800만원을 실제로 시행하였다.

향후 융자산업은 스포츠시설업체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어온 제한을 벗어나 그 대상을 스포츠서비스업체로 확대하여 스포츠산업의 고른 분야에 융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표 7-44 체육시설업체 자금융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괄호는 업체수

연도	업종	계	볼링장	골프 연습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스키/빙상/승마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기타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계	신청	506,540 (1,109)	46,740 (276)	127,244 (410)	18,803 (37)	12,507 (64)	129,906 (63)	9,317 (43)	63,000 (24)	7,898 (30)	49,870 (42)	4,040 (10)	360 (2)	10,393 (28)	6,435 (30)	18,117 (40)	1,910 (10)
	결정	260,940 (918)	24,818 (250)	76,818 (334)	10,966 (31)	8,326 (55)	53,387 (47)	6,752 (34)	26,620 (19)	6,392 (27)	21,347 (29)	3,230 (10)	360 (2)	6,378 (21)	3,935 (21)	10,681 (30)	1,330 (8)
	시행	143,612 (496)	11,004 (112)	46,130 (209)	4,584 (14)	3,242 (22)	24,888 (25)	3,461 (17)	19,640 (17)	4,053 (16)	13,933 (16)	2,020 (6)	-	1,899 (8)	2,088 (11)	5,640 (13)	1,030 (7)
'05	신청	29,110 (47)	400 (2)	9,260 (23)	500 (1)	510 (2)	6,000 (2)	200 (1)	6,000 (2)	1,000 (2)	2,200 (1)	650 (2)	-	1,820 (5)	570 (4)	-	-
	결정	13,950 (35)	195 (1)	5,295 (21)	300 (1)	350 (2)	1,900 (1)	150 (1)	2,922 (1)	-	1,400 (1)	400 (2)	-	887 (3)	151 (1)	-	-
	시행	8,972 (20)	-	3,950 (14)	-	100 (1)	-	-	2,922 (1)	-	1,400 (1)	400 (2)	-	200 (1)	-	-	-
'06	신청	39,480 (56)	850 (3)	10,170 (27)	1,670 (4)	-	4,000 (2)	-	18,000 (6)	-	900 (2)	500 (1)	-	2,760 (7)	630 (4)	-	-

연도	업종	계	볼링장	골프 연습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스키/빙상/승마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기타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결정	15,334 (44)	190 (1)	2,955 (20)	1,430 (4)	-	2,880 (2)	-	4,494 (6)	-	570 (2)	500 (1)	-	2,040 (6)	275 (2)	-	-
	시행	5,671 (20)	30 (1)	1,226 (11)	-	-	-	-	3,745 (5)	-	-	500 (1)	-	85 (1)	85 (1)	-	-
'07	신청	40,591 (56)	300 (1)	10,497 (27)	500 (1)	469 (2)	3,200 (2)	800 (2)	15,000 (5)	-	6,200 (4)	770 (2)	-	1,100 (3)	1,115 (5)	640 (2)	-
	결정	12,137 (45)	162 (1)	1,956 (19)	271 (1)	92 (1)	1,200 (2)	433 (2)	2,044 (4)	-	3,357 (4)	541 (2)	-	862 (3)	579 (4)	640 (2)	-
	시행	8,830 (32)	162 (1)	1,542 (15)	271 (1)	92 (1)	200 (1)	271 (1)	2,033 (4)	-	3,195 (3)	270 (1)	-	135 (1)	162 (1)	497 (2)	-
'08	신청	32,571 (65)	100 (1)	10,680 (27)	500 (1)	-	800 (1)	380 (2)	-	-	10,100 (8)	770 (2)	-	2,114 (5)	1,260 (5)	5,567 (12)	300 (1)
	결정	17,116 (46)	70 (1)	6,596 (20)	350 (1)	-	800 (1)	140 (1)	-	-	3,640 (4)	539 (2)	-	990 (3)	570 (3)	3,121 (9)	300 (1)
	시행	9,394 (25)	70 (1)	4,338 (13)	-	-	-	-	-	-	1,900 (1)	-	-	500 (1)	570 (4)	1,576 (4)	300 (1)
'09	신청	22,953 (52)	600 (2)	9,400 (22)	353 (1)	900 (3)	-	1,300 (3)	-	-	4,730 (4)	350 (1)	270 (1)	620 (2)	200 (2)	3,930 (11)	300 (1)
	결정	15,123 (39)	600 (2)	6,300 (17)	353 (1)	600 (2)	-	1,300 (3)	-	-	2,500 (3)	350 (1)	270 (1)	620 (2)	200 (2)	2,030 (5)	-
	시행	7,550 (19)	300 (1)	3,200 (9)	-	300 (1)	-	500 (1)	-	-	1,500 (2)	350 (1)	-	-	100 (1)	1,300 (3)	-
'10	신청	13,774 (29)	200 (1)	7,850 (15)	300 (1)	300 (1)	-	354 (2)	-	-	2,800 (2)	500 (1)	-	-	500 (2)	650 (2)	320 (2)
	결정	12,549 (28)	200 (1)	6,625 (14)	300 (1)	300 (1)	-	354 (2)	-	-	2,800 (2)	500 (1)	-	-	500 (2)	650 (2)	320 (2)
	시행	5,490 (17)	100 (1)	2,160 (9)	-	300 (1)	-	260 (1)	-	-	1,700 (1)	500 (1)	-	-	-	150 (1)	320 (2)
'11	신청	22,525 (41)	800 (2)	5,725 (13)	-	-	-	90	-	500 (1)	10,900 (9)	-	-	1,210 (4)	860 (3)	2,110 (6)	330 (2)
	결정	9,590 (30)	800 (2)	3,010 (10)	-	-	-	1	-	370 (1)	2,000 (4)	-	-	710 (3)	860 (3)	1,510 (5)	330 (2)
	시행	5,444 (19)	300 (1)	1,416 (5)	-	-	-	-	-	370 (1)	1,000 (2)	-	-	710 (3)	811 (3)	807 (3)	30 (1)
'12	신청	26,503 (51)	280 (1)	7,254 (19)	570 (3)	300 (1)	3,000 (1)	450 (1)	-	-	6,200 (6)	500 (1)	-	769 (2)	1,300 (5)	5,220 (7)	660 (4)
	결정	13,370 (41)	280 (1)	4,301 (14)	570 (3)	300 (1)	700 (1)	400 (1)	-	-	2,240 (4)	400 (1)	-	269 (1)	800 (4)	2,730 (7)	380 (3)
	시행	7,440 (24)	-	2,067 (8)	450 (2)	-	364 (1)	400 (1)	-	-	1,840 (3)	-	-	269 (1)	360 (2)	1,310 (3)	380 (3)

※ 주 : 합계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의 합계임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

2) 체육시설 관련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체육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고 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규제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는 민간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만으로는 부족한 국민의 체육 시설 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민간 체육시설업 관련 규제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골프장내 금지 시설물이었던 숙박시설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2000년에는 준조세 폐지 정책에 따라 운동장·체육관·수영장·대중골프장 등 체육 시설의 입장료에 부과하던 부가금을 폐지하는 한편, 급증하고 있는 골프 수요를 충족하고 대중 골프장의 확충을 위해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하여 대중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시군구별 회원제골프장 총량제한을 폐지하고 골프장 면적산정 시 쓰레기매립지, 폐염전부지, 간척지의 면적은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2005년도에는 골프장 부지면적 및 클럽하우스 면적 제한 규정 등을 폐지하였고, 2006년에는 대중골프장과 스키장에 대하여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였다. 2007년과 2008년에는 골프장 입지기준 및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관계 법령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8년에는 해외여행 등과 연관된 서비스 수지 적자를 완화하고 지방 골프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등 세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했다.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시설 성격상 위탁관리가 어려운 시설인 전문체육시설 등은 시설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제8장 체육시설 참조).

또한 대규모 자본이 투자된 2002년 월드컵경기장 및 아시아경기대회시설이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00년 8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스포츠센터, 유스호스텔, 공연장 등 문화시설, 대형할인점, 복합영상관, 게임제공 업소 등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경기장 시설의 민간위탁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사용기간을 3~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료 지불도 보증금과 월납입 방식 등으로 완화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였다.

2009년에는 골프장 외 체육시설 업소 숙박시설 및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규정을 폐

지 및 완화하였으며, 골프장 입지에 관한 규제도 완화하였다.

2010년에는 종합체육시설업, 승마장업 등 신고전환 업종에 대한 총투자범위 내 회원 모집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골프장 입지에 대한 입지 허용 및 오염총량제 실시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실시하였다.

2011년에는 승마·골프연습장 시설기준을 완화하였고, 신고체육시설업 시설 면적기준을 폐지하였고, 골프장 농약 사용 검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다.

2012년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과 관련하여 등록체육시설관련 보고사항을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서 실질적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스키장 회원증 발급·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스키장업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 표 7-45 연도별 스포츠시설업 관련 규제 개선 현황

연 도	규 제 명	개 선 내 용
1999	신고체육시설업종 일부 자유업종화	탁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자유업종화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금지 → 제한적 허용
	스키장 이용자에 대한 특소세 부과	특소세 면제
2000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	6년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완화
	체육시설에 대한 부가금제도	운동장·체육관·수영장·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제도 폐지 → 회원제골프장은 부과
	체육시설의 수익시설 설치	월드컵·부산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시설에 수익시설 설치 가능성 기록 개정
	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특소세 부과	대중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2001 ~2003	골프장의 지역별 총량제한	시군구별 회원제골프장 총량제한(임야면적의 3% 규제) → 폐지
2005	골프장 부지면적 제한	골프장 규모에 따라 제한 → 폐지
	골프장 클럽하우스 면적제한	골프장 규모에 따라 제한 → 폐지
2006	골프장시설 규제	골프코스길이 제한 → 폐지 회원제골프장 출구도 제한 → 폐지
	골프장 및 스키장 세제	대중골프장, 스키장 세제 인하 → 별도 합산 0.8%
2007	골프장시설 규제	골프장내 숙박시설의 총 규모 제한(5층) 폐지 자연보전권역일지라도 수질오염 총량제도시행지역은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 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골프장 숙박시설 설치기준 및 대상 완화

연 도	규 제 명	개 선 내 용
2008	골프장시설 규제	수질기준 1a 등급 하천 상류방향 유효거리 20km이내 지역 골프장 부지내 숙박시설 설치 금지 규정 폐지 시·도기준 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5% 초과금지 폐지 골프장 부지 내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 폐지
	사업계획 변경	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
	골프장 세제	지방회원제 골프장 세제 경감 - 개별보유세→면제, 체육진흥기금→면제 - 보유세 및 취득세 →경감
2009	시설규제	- 골프장 외 체육시설 업소 숙박시설 제한 폐지 -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규정 완화 - 체력단련장업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완화
	골프장 입지	- 10mm이상 조정지 설치·운영시 취수지점 상류방향 유효거리 7km밖 대중 골프장 입지 허용 - 특별대책지역 II 권역(팔당호 상수원 제외) 중 오염총량 관리제 실시지역 대중골프장 입지허용
2010	회원모집규제	종합체육시설업, 승마장업 등 신고전환업종에 대하여 총투자범위 내 회원모집 제한 규정 폐지
	골프장입지	- 취수지점 상류방향 유효거리 7km 밖 입지 허용 - 특별대책지역 II 권역(팔당호 포함) 중 오염총량제 실시지역 허용
2011	승마장·골프연습장 시설기준	- 마장 실외 3,000㎡, 실내 1,500㎡, 말 10두 이상 → 실외 또는 실내 500㎡, 말 3두 이상 - 퍼팅·파칭 연습용 코스의 경우 타석 설치 의무규정 완화
	신고체육시설업 시설	면적기준 폐지
	골프장의 농약 사용 검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중복하여 부과하고 있는 골프장의 농약 사용 검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
2012	등록체육시설관련 보고사항 완화	시·도지사가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및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의 현황' 을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또는 분기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연 1회 보고하도록 완화
	스키장 회원증 발급확인 절차 폐지	스키장업 회원증 확인자 지정→스키장 회원권의 확인·발급 절차 폐지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3)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기금용자

가. 목 적

그간 스포츠산업내의 다양한 하위분야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이 되어온 반면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은 미비했다. 정부는 스포츠서비스업체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용자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친 균형적 육성을 도모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을 두고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용자제도를 새롭게 마련하여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나. 추진배경

지금까지 체육산업 융자사업은 체육용구생산업체 및 체육시설업체에 대하여 융자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군인 관람스포츠 및 기타 스포츠에 대응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는 산업 활동인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하여 융자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스포츠가 중요한 비즈니스 콘텐츠로 부각됨에 따라 스포츠관련 직·간접적인 소비증대로 문화·관광 등 스포츠 연관 산업과 스포츠 서비스 사업의 빠른 발전이 예상되므로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지원으로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친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실시하게 되었다.

다. 융자대상

스포츠서비스업체 융자사업의 융자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스포츠서비스업 관련 회사를 설립 후 만 1년 경과하였으며 설립 이래 스포츠서비스업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 공고일 현재 스포츠 단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 획득한 업체, 공고일 현재 대회조직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기업, 공고일 현재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 획득한 업체, 기타 스포츠 단체 및 대회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규모는 연 40억 원이며 10억 이내의 융자한도 내에서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융자이율은 연 4%이다.

■ 표 7-46 스포츠서비스업 기금융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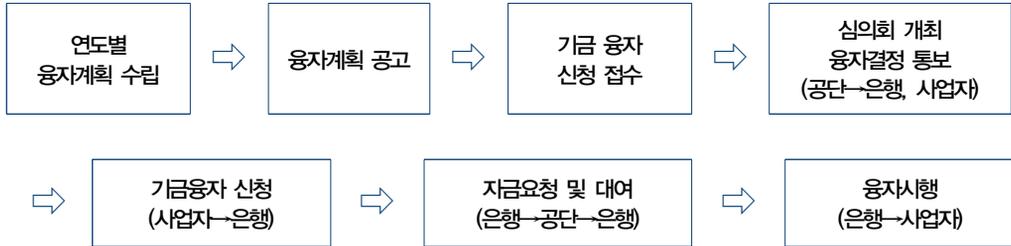
융 자 대 상		융자분야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융자이율
스포츠 서비스 업체	공고일 현재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스포츠단체, 대회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설비자금	10억	10년 (거치기간 4년)	4%
		연구개발 자금	3억	5년 (거치기간 2년)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

라. 융자현황

2011년 스포츠서비스업체 융자사업에는 총 2개 업체에서 3.5억여원을 신청하였으며, 2개 업체에 총3.5억여원이 융자되었다. 2개 업체 모두 연구개발자금에 총3.5억여원을 신

청하였고 심사를 거쳐 신청한 2개 업체에 용자를 시행하였다. 2012년도에는 스포츠서비스업 기금용자를 신청한 업체가 없었다.



※ 용자취급기관 : 국민은행 외 15개 시중은행

그림 7-6 스포츠서비스업 기금 용자 시행절차

■ 표 7-47 스포츠서비스업 기금용자 현황

(단위 : 백만 원, 개)

구 분	용자분야	신 청		결 정		시 행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합 계	총 계	21	6,264	19	5,464	14	3,575
	설비투자	6	2,939	5	2,239	3	1,250
	연구개발	15	3,325	14	3,225	11	2,325
'06	계	6	1,280	6	1,280	2	490
	설비투자	2	590	2	590	1	100
	연구개발	4	690	4	690	3	390
'07	계	5	1,285	5	1,285	4	985
	설비투자	-	-	-	-	-	-
	연구개발	5	1,285	5	1,285	4	985
'08	계	2	1,300	2	1,300	2	1,300
	설비투자	1	1,000	1	1,000	1	1,000
	연구개발	1	300	1	300	1	300
'09	계	5	1,749	3	949	1	150
	설비투자	3	1,349	2	649	1	150
	연구개발	2	400	1	300	0	0
'10	계	1	300	1	300	1	300
	설비투자	0	0	0	0	0	0
	연구개발	1	300	1	300	1	300
'11	계	2	350	2	350	2	350
	설비투자	0	0	0	0	0	0
	연구개발	2	350	2	350	2	350

※ 주 : 2012년에 스포츠서비스업은 신청업체가 없음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

4)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가. 목적

스포츠활동의 가치 재조명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가운데 스포츠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스포츠과학 기반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적 수준의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분야 전략기술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며 스포츠용품 대표브랜드를 육성하여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 지원대상과제

지원대상과제는 자유공모과제, 지정공모과제, 정책과제로 나누는데 자유공모과제는 과제 수행기간이 1~2년 이내의 단기과제로 연구·개발을 희망하는 기관, 업체가 스스로 제안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고, 지정공모과제는 수행기간이 1~2년 이내의 단기과제로 정부가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수립된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의 제안서를 제시하여 이를 수행할 기관, 업체를 선정·지원하고, 정책과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적정한 기관, 업체에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과제는 스포츠과학에 기반을 둔 기술로서 고부가가치의 상품성과 실용화가 가능한 연구·개발 과제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8년도에는 2009년도부터 3년 이상의 장기 수행과제를 패키지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여기에서 선정된 스포츠과학기반 인체모델 구축 및 인체영향 평가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고회전율의 퍼스널 트레이닝 시스템개발, 가상현실 기반 실감형 스포츠 시스템개발, 스포츠과학기반 고기능성 경기용 자전거 개발 과제를 선정하였다.

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국공립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

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스포츠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 부설연구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 관련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라. 지원현황

2007년 정책과제 2건, 지정과제 4건, 자유과제 6건 총 12건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정부지원금 1,737,400천 원을 지원하였다. 2008년에는 계속사업 2건과 신규사업 22건에 정부지원금 2,811,600천 원, 2009년에는 계속사업 12건과 신규사업 12건에 정부지원금 5,752,950천 원, 2010년에는 계속사업 8건과 신규사업 8건에 정부지원금 6,747,498천 원, 2011년에는 계속사업 8건과 신규사업 8건에 정부지원금 6,541,500천 원, 2012년도에는 계속과제 4건과 신규사업 12건에 정부지원금 6,949,500천 원을 지원하였다.

■ 표 7-48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협약체결과제		정부보조금	합계
2007년	신규	12건(정책 2건, 지정 4건, 자유 6건)	1,737,400	1,737,400
	계속	2건(정책 2건)	400,000	
2008년	신규	22건(정책 1건, 지정 3건, 자유 18건)	2,411,600	2,811,600
	계속	12건(정책 3건, 지정 3건, 자유 5건)	1,726,000	
2009년	신규	12건(정책 1건, 지정 4건, 자유 7건)	4,026,950	5,752,950
	계속	8건(정책 1건, 지정 4건, 자유 3건)	4,617,498	
2010년	신규	8건(정책 1건, 지정 1건, 자유 6건)	2,130,000	6,747,498
	계속	8건(정책 1건, 지정 4건, 자유 2건)	4,292,000	
2011년	신규	8건(정책 1건, 지정 1건, 자유 6건)	2,249,000	6,541,500
	계속	4건(정책 1건, 지정 1건, 자유 1건)	5,399,500	
2012년	신규	12건(정책 2건, 지정 4건, 자유 6건)	1,550,000	6,949,500
	계속			

■ 표 7-49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 과제 현황

연도	과제명	기관명
2007년	첨단체력측정 및 평가 기반기술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령자용 스포츠용품 기반기술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보급형 장애인 스포츠 보조기구 핵심기술 개발	재활공학연구소
	고령자 음파진동 레그프레스 시스템 개발	티에스메디텍
	고령자용 신종 운동기구 핵심기술개발	에스앤에스케어

연도	과제명	기관명
2007년	스포츠인조잔디용 소재 신뢰성 평가기술개발	대중체육건설
	등속성 근력운동기능을 갖는 지능형 전자식 헬스 운동기기 개발	휴모닉
	감성골프시스템 구현을 위한 3차원 센서기술 개발	디엠비에이치
	이중 충격드라이버 개발	리임코리아
	인조잔디구장 충격성능 자동 평가 시스템 개발	택트
	스포츠헬스케어에 위한 암밴드형 생체신호 측정 및 분석 시스템	연세대산학협력단
	아마추어용 경정 모터보트 개발	에이원마린테크
	한국형 경기용 휠체어 개발연구	대한장애인체육회
	아동용 야외운동시설(헬스기구)기반기술 개발	(주)디자인파크개발
	척추 운동 및 근력측정시스템 개발	재활공학연구소
	등속성 메커니즘을 활용한 근력 트레이닝 시스템개발	(주)두비원
	원호궤적을 가지는 새로운 운동기구의 개발	(주)모투스
	연속수평 메커니즘의 가변속 트레이닝장치	(주)제너럴로터
	호환성을 갖춘 Isolateral 3차원 운동기구	CYS-SYSTEM
2008년	시각장애인의 독립적 체육활동을 위한 다중센서 기반 시각대체 정보인식 시스템의 개발	동국대 산학협력단
	스마트 카드 기반의 유비쿼터스 동적 운동 처방 시스템 개발	(주)엑스포웰
	디지털기술 기반의 고령친화 세대용 스포츠 기구 및 콘텐츠 개발	동신대 산학협력단부설 디지털콘텐츠협동연구센터
	스마트 모션센서를 이용한 디지털 휘트니스 퍼스널 트레이닝 기술개발	위즈정보기술
	신체와 정신의 균형적인 발달을 위한 지능형 바이오피드백게임 휘트니스시스템 개발	(주)더힘스
	1:1 맞춤형 헬스 트레이닝 시스템 기술 개발	(주)프림포
	퍼터그립시스템(양손잡이그립)개발	(주)리임코리아
	최적 골프 퍼팅을 위한 사용자 친화형 스마트 퍼터시스템 개발	건국대 산학협력단
	노약자용 나비골프클럽 개발	(주)나비월드
	RF 무선망 상에 위치추적기술을 이용한 LBS 골프장 경기위치 관제시스템 개발	(주)리지시스
	골프클럽 다용도 복합기 개발	(주)엠에프에스코리아
	고탄성 inner-tire system을 이용한 레이싱용 인라인 스케이트 wheel 개발	(주)자이로
	영상추적기술을 이용한 수영 분석 시스템	(주)비주얼스포츠
	유도 경기력향상을 위한 다기능 유도 인형시스템개발	용인대 산학협력단
스포츠 무릎손상 예방 및 무통치료용 고탄성 섬유강화 복합재료 무릎보조기의 개발	(주)트리플씨메디칼	
2009년	3차원 골프볼 탄도 및 골프클럽 피팅프로그램 개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세계공인 전자호구 훈련용 디지털 태권도 트레이너 개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상하지 융복합 지능형 전신 운동기기 개발	(주)휴모닉
	유비쿼터스 환경의 이동형 퍼스널 트레이닝 로봇개발	(주)로보코
	축구경기의 전략 분석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평가시스템 및 이를 지원하는 초광대역망내 선수위치추적 시스템 개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스포츠수행향상과 부상방지를 위한 원터치식 레이스 시스템개발 및 스노우보드 부츠 적용	(주)엘림코퍼레이션
	관절충격 방지 및 진동/소음 저감 런닝머신 개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고효율 반도핑 약물검사를 위한 다성분 기술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포츠과학 기반 인체모델 구축 및 인체영향 평가기술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가상현실 기반 실감형 스포츠 시스템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9년	스포츠과학과 첨단 IT 및 양방향 미디어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퍼스널 트레이닝 시스템	(주)오투런

연도	과제명	기관명
2010년	스포츠과학기반 고기능성 경기용 자전거 개발	건국대학교 충주산학협력단
	스포츠활동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에너지 변환 시스템 개발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친환경 노인 야외 스포츠시설 및 운동기구 개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MEMS 기반의 디지털 퍼팅 칼리메이터 기술개발	(주)로보메이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인라인스케이팅 개발 및 정량적 측정방법 개발	PSV
	균형(Balance)능력 향상을 위한 인공파도타기 장치 개발	(주)라이더텍
	Extreme performance를 발현하는 테니스용 String 국산화 기술 개발	(주)해성엔터프라이즈
	자기력기술을 활용한 USN 기반의 차세대 C머신 개발	(주)개선스포츠
2011년	스포츠재활치료용 이중제어 음파 진동 시스템 개발	(주)소닉월드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대비한 국산 경기용 컴파운드 보우 개발	(주)원엔원
	골프 비거리 증가를 위한 착용형 보조기어의 개발	건국대학교 충주산학협력단
	생체신호 및 동작분석 기반 바이오 피드백 심리 훈련시스템 개발	(주)스포닉스
	IT 융합 야외 아동용 스포테인먼트 운동기기 개발	(주)디자인파크개발
	스포츠과학기반 다기능 소형 포터블 보트 및 IT 융합 라이프 자켓 개발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사이클 개발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재활 훈련을 위한 4점접 리프트 제어용 체중 부하감소 트레드밀 개발	싸이버메딕
2012년	스포츠 과학적 검증을 통한 스포츠용 소아 전동 운동기 개발	에스엔에스케어
	반도핑 약물검사를 위한 동화성 남성 호르몬 스테로이드들의 검출 기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평생 개인 스포츠 이력 관리 기술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스키 및 보드의 스포츠과학적 하이브리드 구조재 적용 기술	(주)버즈런
	스포츠과학기반 다중영상 추적/분석 및 콘텐츠 연동 기술	티브이로직(주)
	비거리 향상을 위한 골프 샤프트 개발	(주)엠에프에스코리아
	물리모델 기반 실감형 동계 스포츠 훈련/체감 시스템 융합 기술	(주)다림비전
	NESTFIT 기술 기반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마라톤화 개발	(주)트렉스타
	인터랙티브 태권도 3D 콘텐츠를 활용하는 학습시스템 개발	이슬정보통신(주)
	운동 부하조절이 가능한 스포츠용 하이브리드 사이클 장치 개발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전자동 로봇 농구대 개발	승경체육산업(주)	
공압 하중분산 모션플랫폼을 이용한 실감형 루지 시뮬레이터 개발	(주)트윈테크	
청소년의 감성 기제를 활용한 스마트 학교 피트니스 센터 모델 개발	한국교육정책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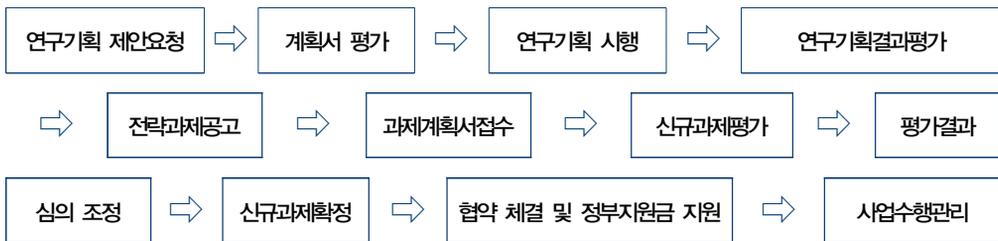


그림 7-7 전략과제(중·장기 과제)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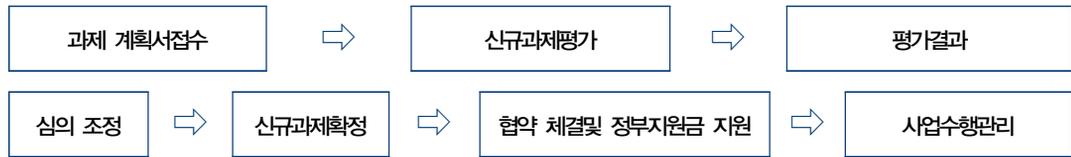


그림 7-8 자유공모 과제 선정절차

4. 스포츠산업전문인력 양성

1)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현재 우리사회는 각 분야가 빠르게 전문화되고 있다. 전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의 활용성에 있다. 특히 지역적 이동성이 현저히 증가되는 직업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통해 각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체육분야가 공공체육시설 등 다양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스포츠산업체에서의 경영활동까지 확대되면서 체육활동 전반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할 전문가 양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또한 기존 스포츠산업체 및 체육단체 사무인력들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무능력 구비를 위한 재교육 및 새로운 창업기회 확대에 따른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희망자에 대한 지원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 및 교육과정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02년부터 체육과학연구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스포츠마케터, 스포츠시설업경영관리자과정 등을 운영 2012년까지 4,672명을 양성하였다. 2002년부터 시작되어 스포츠시설업과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

들의 관심 증가로 스포츠마케터 등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교육수요가 초기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 및 대학원에서 스포츠경영학과 등 신설로 안정적인 교육체계 운영 및 스포츠경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 도입(2005년 348명, 2006년 285명, 2007년 96명, 2008년 111명, 2009년 267명, 2010년 116명, 2011년 141명, 2012년 358명 합격), 스포츠아카데미 운영,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으로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스포츠산업아카데미 과정의 중단으로 양성인원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9년부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운영으로 지역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2010년에는 산업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스포츠마케터과정을 장기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등 다수의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육의 전문성은 강화되었으나 양성인원은 다소 감소되었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은 산업계의 수요와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창의적이고 수준높은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산업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표 7-50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스포츠마케터	39	129	171	199	198	188	185	209	40	79	146	1,583
스포츠시설 경영관리자	30	82	107	106	126	92	54	62	61	70	-	790
공공체육시설관리자	37	63	46	53	48	39	51	45	47	44	-	473
스포츠산업 해외연수	-	-	-	16	25	33	20	20	20	20	15	169
특 별 과 정	-	-	24	79	-	-	-	-	-	-	-	103
스포츠산업아카데미	-	-	-	-	240	373	-	-	-	-	-	613
스포츠경영관리사 인턴십	-	-	-	-	19	23	22	21	25	25	20	155
프로스포츠 마케팅 현장체험학습	-	-	-	-	-	-	119	88	-	-	-	207
체육행정 공무원	31	52	47	36	46	53	46	36	50	38	28	463
스포츠 경영관리사 역량교육	-	-	-	-	-	-	-	-	25	18	-	43
체육단체임직원 스포츠비즈니스 교육	-	-	-	-	-	-	-	22	24	27	-	73
합 계	137	326	395	489	702	801	497	503	292	321	209	4,672

※ 출처 : 체육과학연구원

2005년도부터는 전문스포츠마케터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과정을 개설하여 미국과 일본의 선진체육시설 및 운영시스템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에는 그 인원과 지역을 확대하여 유럽 지역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2005년부터 시작된 국가기술자격인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증 취득자들의 전문교육을 위한 과정 등도 도입하여 자격증 취득자들이 하여금 스포츠산업체에 인턴사원으로서 현장의 실무를 익힐 수 있는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스포츠마케팅 등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스포츠산업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으며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2008년부터는 스포츠산업해외연수 프로그램과 프로스포츠 마케팅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으로 스포츠 전문인력의 현장경험을 쌓아 실무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2009년부터 체육단체 임직원 스포츠비즈니스 교육, 2010년부터 스포츠경영관리사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총 209명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교육과정별로는 스포츠마케터 146명, 스포츠산업 해외연수 15명, 스포츠경영관리사 인턴십 20명, 체육행정 공무원 28명이 양성되었다.

3) 스포츠산업 해외연수 실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02년 이후 스포츠마케터과정과 스포츠시설업 경영관리사과정에 한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면서 스포츠산업 현장의 산업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2005년도에서부터 이들 인력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 스포츠마케팅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전문스포츠마케터 해외연수 과정을 신설 운영하여 2012년까지 169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교육대상자는 체육관계 공무원, 공공체육시설 종사자, 민간체육시설 및 스포츠마케팅 업체 직원들로 선발하였으며 이들은 미국과 일본의 선진 체육시설 및 스포츠마케팅 현장을 방문하여 9박 10일간 선진 스포츠 현장을 체험하고 돌아왔다. 이러한 교육의 실시는 국제경쟁력 있는 스포츠마케터를 양성하기 위한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궁극적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며 향후 개설될 전문 스포츠마케터의 전과정의 일부로 실시되었다. 이 교육을 통하여 교육대상자들은 선진 스포츠마케팅 기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은 물론 향후 전문 스포츠마케터과정의 전면적인 실시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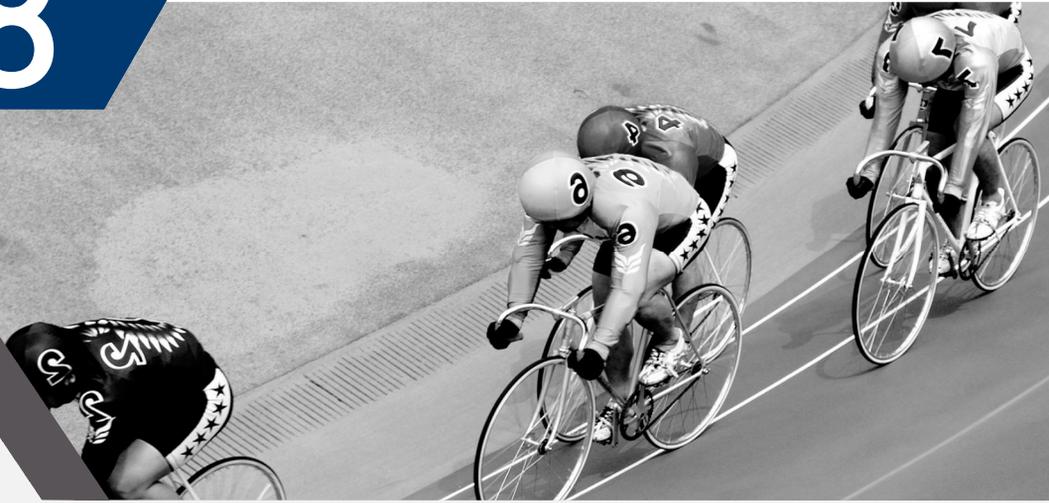
4) 전문인력 양성사업 방향

국내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교육을 담당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교수 인력 선정과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관련 교재연구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제도를 국가자격제도로 연계·정착시켜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의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5. 스포츠산업 정보망 및 연구활성화

정부는 체육과학연구원을 통해 스포츠마케팅 기법·첨단기술·특허 등 산업정보 DB 구축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국내외 첨단정보의 체계적 수집, 가공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포털사이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간 스포츠 정보 제공업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경기기록 조사·가공업, 선수기량 등 평가업, 스포츠판 성향조사업 등을 활성화하며 스포츠 에이전트 활동을 양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별산업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대행,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과학연구원의 스포츠산업연구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스포츠마케팅 등 스포츠산업관련 핵심과제의 중점 연구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체육과학연구원 내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도별 스포츠산업관련 중점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체육시설

- // 제1절 개관
- // 제2절 체육시설 조성정책
- // 제3절 공공체육시설 지원 현황
- // 제4절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및
관리·운영 효율화

Section

08 체육시설

제1절 개관

1. 체육시설의 개념

체육시설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중요한 조건이다. 현대생활에서 체육시설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삶의 행복을 실현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한다. 체육시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강력한 유인동기를 부여하며,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관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데 필수요건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시켜 사회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도 한다. 이렇듯 체육시설은 사회적·경제적 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해 내며,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사회 간접자본(SOC)이자 직접 생산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에는 매우 다양한 정의가 있다. 체육시설은 좁은 개념으로 보면 ‘운동학습을 위한 각종의 장소’로 규정되지만, 넓은 개념으로 체육시설은 ‘운동에 필요한 물적인 여러 조건을 인공적으로 정비한 시설과 용기구 및 용품을 포함한 조형물’로 정의함으로써 단순히 운동장소라는 공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용기구와 용품을 포함한 조

형물까지로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은 ‘효과적이며, 보다 쾌활하고, 적합하며, 안전한 운동 활동을 위해 설치·관리되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가지는 물적 환경’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보편타당하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제2조 제1호에서 체육시설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체육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개념으로 체육시설은 ‘건전한 신체·정신함양과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운동경기·야외운동 등의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법적으로 운동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체시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운동종목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법적 보호와 규제가 필요한 운동종목과 체육시설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다.

2. 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은 체시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을 통해 운동종목 및 시설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운동종목으로는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등 45개의 시설과 그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개최되는 운동종목의 시설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설형태별로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운동종목과 시설형태별 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표 8-1>과 같다.

■ 표 8-1 운동종목별·시설형태별 체육시설의 종류

구 분	체 육 시 설 의 종 류
운동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팅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출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체육시설은 설치주체와 운영주체에 따라 분류하여 크게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이라는 용어는 1994년 체시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개정된 체시법은 공공체육시설을 세분화해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와 시설 목적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등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체육시설은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참가선수훈련 등을 위해 마련된 운동장·체육관 등의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체육시설이며, 이와 같은 전문체육시설은 체시법 제5조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체시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는 국내의 전국단위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과 국제경기대회를 개최·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군에는 각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활체육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는 생활반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에 체시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행정구역별로 시·군·구에는 해당 지역주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읍·면·동에는 해당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 표 8-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구 분	설치 기준
특별자치도·시·군·구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 중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읍·면·동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팅장, 체력단련장 등의 실외체육시설 중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출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직장체육시설은 직장인의 건강 및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직장의 장이 설치하는 체육시설로, 체시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해 근로자 500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직장에는 체시법시행령 별표 1의 체육시설의 종류 중 2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체육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체시법 제8조

를 통해 공공체육시설 중 직장체육시설을 제외한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경기 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하고, 더불어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해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성격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하였다. 전국에 위치한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표 8-3>과 같다.

■ 표 8-3 전국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수)

시도 종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계	17,157	2,751	889	471	773	388	353	253	37	2,949	1,367	718	853	940	1,270	1,397	1,449
육상경기장	226	3	3	19	2	2	3	5		37	29	15	13	15	24	30	29
축구경기장	718	62	31	1	17	12	11	27	2	140	47	27	15	66	67	42	115
하키장	13	1	1	5	1					2	1	1	1		2	1	1
야구장	126	12	8	1	5	2	1	1		28	15	7	3	7	8	12	9
사이클경기장	12	1	1	16	1		1			1	2	1		1	1		1
테니스장	598	59	20	1	15	16	8	5	3	119	64	28	27	52	50	42	66
씨름장	40		1	1			1	1		9	4	1	1	6	4	7	3
간이운동장 (동네체육시설)	12,855	2,354	751	382	685	313	277	181	14	2,184	945	484	543	586	844	1,135	972
체육관	738	112	24	15	16	16	17	11	5	151	60	32	35	50	54	45	72
전천후 게이트볼장	938	4	6	3	4	5	7	5	9	128	121	75	185	113	142	28	89
수영장	320	86	15	4	11	9	16	9	2	63	13	9	4	14	16	17	20
롤러스케이트장	132	14	14	8	7	2	2	2	1	21	10	8	4	6	8	10	18
사격장	21		1	1	1			1		1	4	3	1	1	1	4	2
국궁장	244	8	1	14	6	3	5	3	1	43	31	14	19	14	38	14	36
양궁장	19	1	1	3	1	1	1	1		3	2	3		1	1	1	
승마장	17	1	2	1		1	1			1	3		1	2		3	
골프연습장	68	29	6	3	1	4				6	5	1		2	4	4	5
조정카누장	11		1	2						2	1	4			2		1
요트장	17		1	2						1	2	1	1	1	2	1	7
빙상장	21	3	1	1		1	1			7	2	1		1		1	2
설상경기장	3										3						
기타시설	20	1				1	1	1		2	3	3		2	2		1

※ 2012. 12월말 기준

체육시설 중 민간체육시설은 체육단체·민간단체·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 또는 개인이 영리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체육활동 또는 그 기관의 고유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모든 비영리 체육시설과 개인·영리단체 또는 기업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모든 상업용 체육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다. 체시법 제2조에서는 ‘체육시설업’이라는 별도의 용어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영리가 목적인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종을 말한다.

과거 체육시설업은 9개의 등록체육시설업과 11개의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총 20종류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위해 2005년 7월 29일 법률을 개정하여 당초 특별시·광역시·도의 업무였던 등록체육시설업 중 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 등 6개 시설을 시·군·구 업무인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체육시설업의 육성·발전과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2006년 3월 24일 개정법률(법률 제7913호)을 통해서 상기 등록체육시설업에서 신고체육시설로 전환된 6개 업종을 포함한 17개 신고체육시설업종 중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이러한 체육시설업은 체시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회원모집·시설규모·운영형태 등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회원제 체육시설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대중 체육시설업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체육시설업 현황은 <표 8-4>와 같다.

■ 표 8-4 전국 시도별 체육시설업 현황

(단위 : 개소)

종 목 \ 시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총 계	56,437	11,456	3,231	2,490	3,191	1,651	1,602	1,455	128
등록시설계		-	8	2	7	3	3	4	2
골프장	440		8	2	7	3	3	4	2
스키장	19								
자동차경주장	2								
신고시설계		11,456	3,223	2,488	3,184	1,648	1,599	1,451	126
요트장	21	1							
카누장									
빙상장	38	10	2	2	1	1	1		
승마장	138		1		2				1
종합체육시설	237	85	17	9	5	6	7	4	
수영장	579	85	28	24	15	13	23	14	
체육도장	13,660	2,336	885	777	847	421	405	339	29
골프연습장	9,589	2,157	524	471	404	200	263	364	12
체력단련장	6,608	1,672	502	355	332	223	230	142	14
당구장	23,855	4,947	1,205	729	1,534	730	616	557	65
썰매장	129	5	1	3	4	1	2	1	
무도장	70	14		3	4				
무도학원	1,051	144	58	115	36	53	52	30	5

종 목 \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계	13,857	1,952	1,697	2,051	2,183	2,187	2,966	3,502	838
등록시설계	144	84	41	19	21	34	40	29	40
골프장	137	53	40	19	20	34	40	28	40
스키장	6	10	1		1			1	
자동차경주장	1	1							
신고시설계	13,713	1,868	1,656	2,032	2,162	2,153	2,926	3,473	798
요트장				1		2	1	13	3
카누장								1	
빙상장	5	3	1	2	1	2	3	1	3
승마장	42	4	3	10	9	12	13	9	
종합체육시설	62	6	6	5	4	1	14	5	32
수영장	161	47	9	26	18	28	36	32	20
체육도장	3,576	372	332	502	548	415	761	956	159
골프연습장	2,432	344	291	299	284	300	495	595	154
체력단련장	1,421	172	173	196	195	202	332	365	82
당구장	5,751	875	818	947	1,048	1,135	1,191	1,424	282
썰매장	33	33	7	9	8	7	9	6	
무도장	29	1	2	2	2	3	5	1	4
무도학원	201	31	14	33	44	46	66	65	58

※ 2012. 12월말 기준

제2절 체육시설 조성정책

1. 체육시설 조성정책의 전개과정

우리나라는 19세기 후반 국내로 입국한 외국의 외교관들이나 계몽주의적인 서구교육관을 기초로 세운 민간학교를 중심으로 축구, 사이클, 정구, 체조, 육상 등의 스포츠가 대중에게 소개되었고, 이로 인해 스포츠가 점차 대중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체육시설이 점차 확대 되었다. 그 결과 각 급 학교의 운동장이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체육시설은 현재와 같이 잘 정비되지 않아 자연 상태에 가까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로 알려진 일은 1897년 2월 영어 학교에 근무했던 영국인 교사 허치슨(Hutchison)이 탁지부(현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학생들의 식비 예산 1,000원 중 일부를 운동장 확장과 정비, 운동기구 구입에 사용한 것을 적극적 체육시설 조성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또한 1916년 5월 YMCA가 회관 옆에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체육관을 세우면서 그간 야외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던 체육활동이 실내 스포츠 활동으로 확장되었고, 1923년 7월 전조선 육상경기대회 준비를 위하여 휘문 의숙의 설립자인 민영휘(閔泳徽)가 계동궁의 절반을 매입하고 넓이와 길이를 측정하여 100m의 직선주로와 333m의 트랙을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정규 육상경기시설이 설치되었다.

이처럼 체육시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민간에 의해서도 점차 체육시설이 설치되던 즈음인 1926년에 경성부(일제강점기의 서울시청)가 오늘날의 체육시설과 같은 근대적인 형태를 갖춘 최초의 체육시설인 경성운동장(옛 동대문운동장)을 건립하였다. 체육시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자 1957년부터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서울과 지방의 균등한 체육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지방 순회개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국 각지에 각종 근대적인 경기장 시설이 건립되었다. 이 시기에 효창운동장(1959년)과 장충체육관(1960년)등이 건립되었다.

우리나라 체육시설 조성 정책은 도입초기부터 1950년대까지는 민간부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1960년대부터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어 국내 체육시설의 상당 부분이 정부정책으로 주도되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법률 제1146호로 제정, 발효되었으며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민간으로부터 도입된 체육은 학교와 교육의 영역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한정적인 범위에서 전 국민의 생활영역으로 확대·발전시키고자 하였고, 이는 체육진흥을 국가와 지방의 중요한 정책요소로 명문화한 계기가 되었다. 1966년에는 국위선양을 할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태릉선수촌을 건립하였고,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전국 주요도시마다 운동장과 체육관 등의 대형 체육시설 건립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81년에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경기대회 개최가 확정되면서 이듬해인 1982년 체육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되었고, 착실한 준비를 통해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었다. 정부는 짧은 기간에 대형 종합경기대회를 두 차례 준비하는 동안 체육시설이 획기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예상했고, 그 영향이 대회가 열리는 도시인 서울에 편중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건립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1986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 체육시설사업을 국고보조대상사업에 포함시켰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이듬해인 1989년 3월 31일 정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권하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체시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체육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그 당시 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골프장과 스키장, 보사부(현 보건복지부)가 수영장, 문교부(현 교육부)가 체육도장을 관리하던 분산된 체육시설의 관리업무를 체육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체육지도자 배치와 피해보상제를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개최한 이후 기존 엘리트체육 육성정책에서 전환하여 생활체육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체육시설에 대한 환경과 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생활체육 보급률을 높일 수 있었고, 전국 15개 시·도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 건립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지역사회 체육시설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1990년 수립된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 계획)’과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은 체육시설의 확충과 개선의 정책적 토대가 되었다. 2006년에는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육시설의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국민 1인당 체육시설면적이 2010년에 3.12㎡, 2011년에 3.29㎡, 2012년에는 3.31㎡로 증가되었다.

2.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 계획)

정부는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공으로 인해 고조된 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생활체육으로 이어가고자 하였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함께 1990년 3월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 계획)을 수립하였고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년간 추진하였다.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 계획)은 국민생활체육진흥을 통해 복지사회를 실현하고 국민의 축적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을 가속화하고, 여가생활의 건전화를 통해 바람직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 계획)의 기본적인 진행방향은 평생체육의 실현과 국민의 체력·정신력 강화를 통해 국력을 키우고,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 계획)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신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기존시설의 활용도 향상을 통해 생활체육의 참여건을 단계적으로 확충·조성하고자 하였다. 먼저 신규 확충 대상은 운동장, 체육관 등 기본 체육시설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동계체육시설, 체육인 올림픽동산, 직장체육시설 등으로 하였고, 민간투자 촉진, 체육시설 설치지역의 확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저렴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시설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생활체육 시설화, 올림픽시설 활용, 직장체육시설 개방, 학교체육시설의 주민 생활체육 시설화 등의 실천 방안을 수립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된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을 통해 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열기가 뜨거워졌으며, 참여뿐 아니라 영역 또한 넓어졌다. 정부는 체육이 사회·경제학 분야에서 개인과 사회의 건전성을 높이고 활력을 더해주는 점에 주목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육 분야에 대한 정책제시의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수립된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은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1993년-1997년),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1998년-2002년), 제3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2003년-2007년)으로 총3차례에 걸쳐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1993년-1997년)은 모든 국민의 체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체육시설의 공급을 목표로 지방체육시설의 확충과 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부족한 동계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가장 먼저 지역의 기본체육시설로 운동장과 체육관, 수영장을 설치하였고, 국민의 생활반경에 맞춘 생활권 체육시설인 동네체육시설, 종합체육회관, 구민문화체육회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자연 친화적인 체육공원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공립학교 운동장, 관공서의 체육관을 개방하고 공공기관 테니스장 혹은 배드민턴장을 설치·개방하여 부족한 체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려 노력하였다. 더불어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해 동계체육시설을 정비하였고 실내빙상장, 실외빙상장, 스키점프대, 크로스컨트리 코스 등의 설치를 지원하였다.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1998년-2002년)은 꾸준히 증가하는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특별시·광역시·도와 같은 광역단위가 아닌 시·군·구와 같은 지역의 부족한 기본체육시설과 근린체육공간 조성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체육시설이 단순히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성과 함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었고, 운동장, 체육관, 실내빙상장, 지방스포츠센터(국민체육센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마을체육시설 등의 체육시설을 지

원하였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의 확충 뿐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체육활동기회 확대, 시설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등 관리운영의 다양성 확대 정책도 병행하여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전문체육단체의 육성과 자생력 강화를 통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잡힌 발전으로 생활체육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닦고 체육시설과 관련된 스포츠산업의 지원을 확대해 지역과 사회발전에 대한 체육의 기능을 향상시키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2003년-2007년)은 참여, 분권, 자율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으로 2003년 수립되었다.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은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에 비해 체육시설 공급이 부족하다는 구체적인 지표를 토대로 수립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체육활동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 주민의 생활권 안에서 언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체육시설을 정부의 선택으로 설치하지 않고 설치지역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다목적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단위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잔디·우레탄 체육시설, 게이트볼 경기장,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기존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함께 개인 건강기능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하였다. 전문체육시설 부분에서는 기본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더불어 체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던 기존 시설의 활용도 향상을 목적으로 시·군 기본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지원, 관리·운영실적 우수 공공체육시설 인센티브 부여, 종목별 전문체육시설과 전국체전시설 등의 확보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추진하였다. 더불어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주5일 근무제 시행, 지방분권의 확대 등의 정책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지역별 환경의 차이로 인한 지역 주민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춰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은 성·연령·계층·지역의 차별 없이 국민 누구나 체육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4.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10월에 증가하고 있는 건강유지와 체력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충족시키고, 모든 국민이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은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설정하고, 2015년까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강 환경의 조성과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향상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또 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여 건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체육시설 보급률 확대를 통해 쾌적하고 여유로운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며,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여 10분내 접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2025년까지 정기적 참여율 60%, 체육시설 보급률 100%, 체육시설 평균 접근거리 700m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추진전략은 지역특성별 확충전략의 차별화, 생활권 위계별 기본체육시설 설정, 유관시설과의 기능·형태적 복합화, 재원의 다원화 및 다양성 확대, 주체 간 역할체계 정비 등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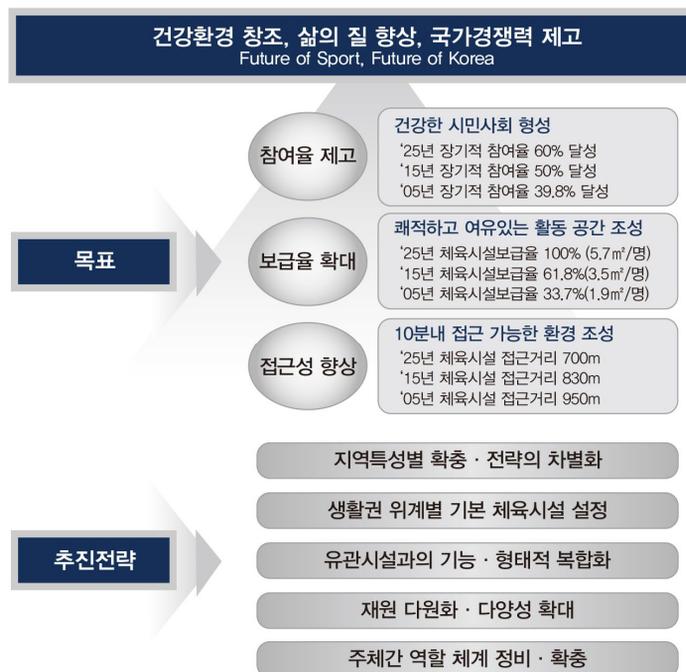


그림 8-1 공공체육시설 확충 비전 체계도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은 우리 국민이 쾌적한 체육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적정 체육시설 면적을 1인당 5.7㎡로 규정하고, 체육시설 보급률 61.8%(3.5㎡/인), 참여율 50%, 접근거리 830m 등을 중기목표로 설정, 2015년까지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5.7㎡/인은 월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자 비율이 75%인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되었으며, 2015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1인당 체육시설 면적 3.5㎡(보급율 61.8%)는 독일의 예를 참조하여 클럽 활동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산정되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시·군·구를 인구와 면적, 공간구조, 산업구조, 인구구조, 재정상태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역특성별로 차별화된 확충 방향을 제시하였다. 생활권별로는 실내와 옥외시설을 구분하여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근린형복합체육시설, 운동장생활체육시설 등을 기본체육시설로 설정하여 학교나 청소년시설 등 유관시설과의 형태적·기능적 복합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공체육시설 배치방식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생활권역 및 인구 수,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화, 시설의 복합화, 재원의 다양화 지향 등을 통해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였다.

제3절 공공체육시설 지원 현황

우리나라 체육시설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경기대회와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경기대회,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개최를 통한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투자로 양과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대형 종합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 조성은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다양해진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 생활체육 활동, 선수훈련, 국내·외 경기 개최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체육시설의 확충을 지원해 오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대상 및 기준은 다음 <표 8-5>와 같다.

■ 표 8-5 공공체육시설 지원 대상 및 기준

재원명	시설명	목표	지원금액 지원기준	주요시설
일반회계	전국체전시설	전국체전 개최 시·도의 경기장 확보	•국고 30%, 지방비 70%	미보유 및 규격 미달 경기장 등
광특회계	시군기본 체육시설	운동장	•국고 30%, 지방비 70%	필드(축구장), 육상트랙 등
		체육관	•국고 30%, 지방비 70%	구기 가능 시설
광특회계	동계체육시설 (실내빙상장)	지자체의 사업요청시 검토 지원	•국고 30%, 지방비 70%	피겨,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가능 시설
광특회계	종목별체육시설	지자체의 사업요청시 검토 지원	•국고 30%, 지방비 70%	수영장, 테니스장, 사이클장, 승마장, 야구장, 하키장, 씨름장, 양궁장 등
광특회계	체육시설리모델링	지자체의 사업요청시 검토 지원	•국고 30%, 지방비 70%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 개보수
광특회계	생활체육공원	지자체의 사업요청시 검토 지원	•국고 30%, 지방비 70%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산책로, 휴게실, 녹지공간 등
광특회계	노인건강 체육시설	지자체의 사업요청시 검토 지원	•국고 30%, 지방비 70%	노인계층 선호 체육 활동레저시 설, 게이트볼장, 파크(그라운드) 골프장 등
체육기금	국민체육센터	시·군·구 단위에 1개소 확충 목표	•개소당 30억원 내외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체력측정 실, 체력단련장 등 민간 스포츠센 터 수준의 종합체육시설

재원명	시설명	목표	지원금액 지원기준	주요시설
체육기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2009~2012년 500개 초·중·고 학교 조성 목표	• 개소당 3.5억원	토사 또는 잔디(천연, 인조) 운동장, 탄성포장, 다목적구장, 야간 조명시설 등
체육기금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읍·면 지역 대상 (국민체육센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등 미지원 지역)	• 개소당 6억원	다목적구장, 실내형 복합시설(커뮤니티센터, 운동센터)
체육기금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2009~2012년 100개 초·중·고 학교 조성 목표	• 개소당 4.8~9억원(인구 30만 이상 최대 9억원, 인구 30만 미만 최대 4.8억원)으로 최대 30% • 지방비+교육청 70% 부담	강당 겸 체육관 또는 다목적 전용 체육관 중 선택

1. 전국체전시설 건립 지원

정부는 매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운영을 위해 유치가 확정된 시·도의 미보유(규격미달 등) 경기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체전시설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된 대구에는 만촌 자전거 경기장 6억 원, 시민운동장 축구장 6억 원, 두류 수영장 14억 원 등 총 45억 원이 지원되었다.

■ 표 8-6 전국체전시설 건립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개최년도	지역	지원금액	지원대상
'82	경남	1,200	마산야구장(1,200)
'83	인천	200	종합운동장(200)
'84	대구	2,000	종합운동장(500), 수영장(1,500)
'85	강원	4,500	춘천종합운동장(3,000), 벨로드롬(500), 원주운동장(500), 강릉운동장(500)
'87	광주-전남	7,000	광주체육관(2,800), 목포운동장(400), 체육관(600), 수영장(1,700), 나주사격장(700), 벨로드롬(800)
'89	경기	3,000	성남로울러장(300), 의정부벨로드롬(700), 안양수영장(2,000)
'90	충북	7,000	청주수영장(3,600), 로울러장(1,430), 궁도장(170), 사격장(1,100), 음성벨로드롬(600)
'91	전북	8,000	전주수영장(2,500), 벨로드롬(1,500), 롤러스케이트장(1,000), 승마장(500), 군산체육관(1,500), 이리운동장(1,000)
'92	대구	3,843	사격장(360), 로울러장(1,010), 다이빙장(250), 테니스장(505), 승마장(1,168), 궁도장(300), 조정카누장(250)

개최 년도	지 역	지원 금액	지 원 대 상
'93	광주	4,000	수영장(4,000)
'94	대전	4,913	수영장(2,736), 벨로드롬(2,177)
'98	제주	5,500	제주체육관 4개소(2,300), 동흥, 조천, 한경, 안덕, 표선체육관(2,000), 서귀포공도장(600), 서귀포테니스장(600)
'01	충남	14,537	천안종합운동장(12,750), 천안실내체육관(750), 보령요트장(750), 예산운동장(500)
'02	제주	2,500	제주시 주경기장 및 야구장보수(1,250), 서귀포 롤러스케이트장(750), 제주유도체육관(500)
'03	전북	19,200	전북임실도립사격장(6,000), 전주실내수영장(11,200), 전주롤러스케이트장(1,000), 부안요트장(1,000)
'04	충북	12,100	청주운동장(2,500), 청주유도회관(2,000), 청주다이빙장(1,000), 충주체육관(2,500), 충주요트장(500), 제천하키장(1,100), 제천정구장(500), 진천운동장(1,500), 진천카누장(500),
'05	울산	31,100	종합운동장(17,000), 수영장(11,000), 테니스장(1,000), 롤러스케이트장(1,400), 사격장(700)
'06	경북	15,000	실내수영장(2,800), 실내체육관(7,550), 테니스장(900), 롤러스케이트장(710), 종합운동장 조명탑(670), 태권도경기장(1,500), 종합스포츠허브(870)
'07	광주	14,200	핸드볼경기장(4,877), 정구장(349), 하키장(500), 사격장(475), 월드컵경기장증축(1,724), 수영장보수(1,800), 태권도장보수(1,768), 승마장 보수 등 10개소(2,707)
'08	전남	23,000	사격장(3,967), 나주인라인롤러장(1,905), 여수종합경기장보수(7,387), 망마경기장보수(2,797), 목포하키장(1,316), 목포수영장보수(1,181), 사이클경기장 보수 등 18개소(4,437)
'09	대전	19,600	한밭 종합운동장 리모델링(19,600)
'10	경남	21,000	진주 종합운동장(17,000), 창원 종합사격장 리모델링(3,000), 김해 카누조정장(1,000)
'11	경기	18,000	고양 실내체육관(9,300), 고양 야구장(1,220), 고양 종합운동장(1,230), 용인 조정경기장(3,300), 의정부 사이클경기장(1,700), 경기도 사격장 개보수 등 6개소(1,250)
'12	대구	4,514	두류 테니스경기장(105), 만촌 자전거경기장(615), 두류 수영장(1,452),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231), 카누경기장(198), 시민운동장 축구장(660), 시민운동장 야구장(480) 등 6개소(773)

2. 체육진흥시설 지원(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운동장, 체육관 등 시·군 기본체육시설, 종목별 체육시설, 지방체육시설 리모델링, 생활체육공원 등 각종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었고, 2009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면서 포괄보조사업인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특별회계로 전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 및 특성 등을 반영한 운동장,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 전지훈련시설 등 각종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012년에는 서울 2개소 10억 원, 부산 1개소 20억 원, 대구 8개소 85억 원, 광주 3개소 26억 원, 대전 3개소 41억 원, 울산 1개소 24억 원, 세종 1개소 1억 원, 경기 20개소 121억 원, 강원 7개소 86억 원, 충북 13개소 72억 원, 충남 6개소 41억 원, 전북 3개소 24억 원, 전남 17개소 146억 원, 경북 9개소 84억 원, 경남 17개소 91억 원, 제주 3개소 6억 원 등 총 114개소 882억 원이 지원되었다.

■ 표 8-7 2012년 체육진흥시설 예산 지원내역

(금액단위 :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	예산액
합 계		114개소	88,201
서울특별시		2개소	950
서울	강북구	오동공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신규)	500
서울	강동구	고덕동 테니스장 조성(신규)	450
부산광역시		1개소	2,000
부산	북구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시설(계속)	2,000
대구광역시		8개소	8,503
대구	본청	실내빙상장 개보수(계속)	34
대구	본청	야구장 건립(신규)	5,000
대구	본청	방천강변 야구장 조성(신규)	210
대구	북구	다목적스포츠허브 건립(계속)	450
대구	달성군	종합스포츠파크 조성(계속)	1,440
대구	본청	U대회스포츠허브 건립(계속)	879
대구	본청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리모델링(신규)	300
대구	수성구	생활체육공원 조성(계속)	190
광주광역시		3개소	2,690
광주	북구	우산수영장 건립(계속)	240
광주	북구	산동 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 조성(신규)	450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신규)	2,000
대전광역시		3개소	4,112
대전	본청	덕암축구공원 조성(신규)	3,765
대전	본청	월드컵 경기장 노후시설 개선(신규)	234
대전	본청	한밭수영장 리모델링(신규)	113
울산광역시		1개소	2,400
울산	본청	제2장애인체육관 건립(신규)	2,400
세종특별자치시		1개소	150
세종	본청	남리체육시설 건립(신규)	150
경기도		20개소	12,108
경기	수원시	제2체육관 건립(계속)	1,300
경기	김포시	생활 체육관건립(계속)	810
경기	안산시	상록수다목적체육관 건립(계속)	630
경기	구리시	다목적 체육관 건립(계속)	1,274
경기	양평군	양평정(국공장) 설치(계속)	295
경기	가평군	배드민턴구장 건립(계속)	900
경기	수원시	씨름 전용 체육관 건립(신규)	500
경기	시흥시	론볼 경기장 건립(신규)	477
경기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신규)	200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	예산액
경기	파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건립(계속)	795
경기	남양주시	화도 체육문화센터 건립(신규)	420
경기	포천시	선단 체육관 건립(신규)	300
경기	여주군	강천 체육공원 리모델링(신규)	180
경기	연천군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신규)	457
경기	양주시	오산 생활체육공원 조성(계속)	2,135
경기	가평군	설악생활체육공원 조성(계속)	595
경기	양평군	개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신규)	500
경기	가평군	상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신규)	140
경기	양주시	게이트볼장 리모델링(신규)	100
경기	사흥시	게이트볼장 리모델링(신규)	100
강원도		7개소	8,650
강원	원주시	종합체육관 건립(계속)	4,500
강원	동해시	필드 하키장 조성(계속)	580
강원	동해시	종합사격장 건립(신규)	500
강원	속초시	생활체육공원(신규)	400
강원	양구군	양구 실내테니스장 건립(계속)	1,370
강원	고성군	전광판 시설확충(신규)	300
강원	양양군	종합운동장 건립(신규)	1,000
충청북도		13개소	7,221
충북	보은군	중동전천후게이트볼장건립(신규)	75
충북	영동군	추풍령전천후게이트볼장건립(신규)	90
충북	청주시	장애인스포츠센터건립(계속)	900
충북	본청	근대5종훈련장건립(계속)	120
충북	제천시	테니스장건립(계속)	514
충북	영동군	실내테니스장건립(계속)	480
충북	청주시	흥덕지구축구공원조성(신규)	1,605
충북	제천시	국제하키장정비(신규)	690
충북	제천시	봉양축구장시설보강(신규)	210
충북	청원군	종합사격장정비(신규)	542
충북	단양군	정구(테니스장)공원조성(신규)	450
충북	보은군	스포츠파크조성(신규)	900
충북	음성군	설성실내체육관건립(신규)	645
충청남도		6개소	4,104
충남	계룡시	종합운동장 건립(계속)	2,304
충남	부여군	종합운동장시설보강(계속)	300
충남	부여군	군민체육관시설보강(계속)	105
충남	예산군	군민종합체육관건립(계속)	990
충남	부여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신규)	105
충남	태안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신규)	300
전라북도		3개소	2,469
전북	전주시	체육시설 리모델링(신규)	620
전북	장수군	번암면 체육공원 조성(신규)	849
전북	고창군	체육관 건립(계속)	1,000
전라남도		17개소	14,660
전남	여수시	진남수영장 건립사업(신규)	700
전남	여수시	진남 종합테니스장 건립(계속)	300
전남	순천시	원도심 수영장 건립(신규)	600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	예산액
전남	순천시	팔마스포츠시설 조성(계속)	1,000
전남	곡성군	석곡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신규)	300
전남	곡성군	다목적운동장 조성(계속)	1,300
전남	고흥군	생활체육야구장 조성(신규)	450
전남	보성군	국민예교 스포츠시설 조성(계속)	150
전남	화순군	이용대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신규)	2,360
전남	장흥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업(신규)	400
전남	해남군	우슬 실내테니스장 건립(신규)	300
전남	영암군	공도장 및 주변체육시설 설치(계속)	1,500
전남	영암군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계속)	500
전남	무안군	축구보조경기장 조성사업(신규)	600
전남	장성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신규)	500
전남	진도군	생활체육공원 조성(계속)	1,400
전남	신안군	공설운동장 조성(계속)	2,300
경상북도		9개소	8,444
경북	포항시	야구장 건립(계속)	1,055
경북	안동시	인라인롤러경기장 조성(계속)	350
경북	구미시	장애인체육관 건립(계속)	1,200
경북	상주시	실내체육관 건립(계속)	3,520
경북	울릉군	공설운동장 건립(계속)	949
경북	예천군	육상보조경기장 전천후 시설 설치(계속)	300
경북	영양군	생활체육공원 조성(계속)	470
경북	고령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신규)	400
경북	칠곡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신규)	200
경상남도		17개소	9,100
경남	진주시	모덕지구생활체육공원조성(계속)	1,300
경남	사천시	신촌생활체육공원 조성(신규)	100
경남	거제시	둔덕생활체육공원 조성(계속)	500
경남	양산시	웅상생활체육공원 조성(계속)	1,000
경남	의령군	대의생활체육공원 조성(신규)	300
경남	고성군	생활체육공원 조성(계속)	650
경남	하동군	악양생활체육공원 조성(신규)	500
경남	통영시	야구장 조성(계속)	300
경남	사천시	공설운동장 개보수(계속)	800
경남	사천시	공도장(대덕정)이전(신규)	400
경남	거제시	하청야구장 리모델링(신규)	300
경남	거제시	요트학교 조성(신규)	200
경남	의령군	화정공설운동장 조성(신규)	260
경남	고성군	경남역도전용경기장조성(계속)	240
경남	고성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신규)	250
경남	남해군	스포츠파크 보강(신규)	1,500
경남	거창군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신규)	500
제주특별자치도		3개소	640
제주	본청	승마경기장 조성(신규)	300
제주	본청	우도축구장보강(신규)	240
제주	본청	제주시론볼링장설치(신규)	100

3. 생활체육시설 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정부는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생활체육시설을 지원한다. 지원의 목적은 생활체육공간의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접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주요 추진전략은 체육시설 신규조성과 함께 기존시설 이용의 활성화이다. 현재 국민체육센터와 운동장생활체육시설(구 천연잔디구장 및 우레탄 시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등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1) 국민체육센터 확충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민 체육공간을 확충하여 사회복지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복지에 환원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 건립하여 체육서비스의 지역적 균형을 도모하고자 국민체육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시행한 국민생활관 사업을 초석으로 1997년부터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스포츠센터로부터 출발하여 1999년에는 보급형스포츠센터로, 다시 2001년부터는 국민체육센터로 그 명칭이 바뀌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생활체육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균형을 위해 1998년부터 시도별로 각 1개소씩 연차적으로 착공하고 2001년까지는 모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2001년 8월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활성화 대책’에서는 일반 대중이 저렴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형 종합 체육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시·군·구 단위에 각 1개소씩을 추가로 건립하여 기존의 35개소를 포함한 85개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목표를 확대하였으며, 이후 시·군·구에 각 1개소씩을 다시 추가 건립하는 것으로 더 확대되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 시행주체가 되어 설치 지역의 고유특성을 고려해 기본형(4레인×25m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력측정실 등), 체육관 복합형(기본형+체육관), 다목적 체육관형(체육관복합형에서 수영장 제외) 등 3개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지원되고 있다. 다음 <표 8-8>은 국민체육센터 연도별·지역별 건립 지원 현황이다. 2012년에는 부산 진구를 비롯한 9개의 지역자치단체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였다.

■ 표 8-8 국민체육센터 연도별·지역별 건립 지원 현황

구분	국민생활관	'97	'99	'00	'01	'02	'03	'04	'05	
서울 (3/25)	종로	강서(90) <00.7>				성동(30) <04.3>				
부산 (14/16)	해운대		서구(37.5) <01.11>			사하(30) <06.4>	금정(30) <07.11>	영도(30) <09.10>		
대구 (7/8)	달서구		동구(37.5) <03.11>				북구(30) <05.12>	달서(30) <07.4>	서구(30) <09.1>	
인천 (6/10)	남동구		계양(37.5) <01.12>		부평(30) <04.11>		남동(30) <06.7>	서구(30) <08.10>		
광주 (5/5)	서구		광산(37.5) <03.7>		서구(30) <04.11>		북구(30) <06.8>	남구(30) <09.2>		
대전 (5/5)	서구		유성(22) <02.9>			서구(30) <06.8>			대덕(30) <09.6>	
울산 (4/5)			중구(30) <04.9>		동구(30) <05.10>				북구(30) <09.11>	
경기 (24/31)	안산		의왕(30) <02.12> 부천(30) <02.5>			광명(30) <08.7> 평택(30) <05.7>	가평(30) <08.5>	시흥(30) <07.5> 하남(30) <07.6>	화성(30) <10.11> 오산(30)	
강원 (14/18)	춘천		춘천(30) <02.9>	원주(30) <06.7>			고성(30) <06.7>	인제(30) <09.6> 동해(30) <07.3>	강릉(30) <09.4>	
충북 (12/12)	청주	제천(45) <99.5>		충주(30) <05.10>		보은(30) <06.8>	청원(30) <05.10>	음성(30) <09.6>	증평(30) <08.4>	
충남 (14/16)	아산		천안(30) <01.7>	공주(30) <03.3>	금산(30) <06.4>	연기(30) <05.12>	서산(30) <06.7>	보령(30) <06.6>	논산(30) <09.7>	
전북 (14/14)	익산	익산(45) <00.10>		전주(30) <05.11>	군산(30) <04.7>	정읍(30) <06.7>	완주(30) <06.9>	남원(30) <07.1>	장수(30) <09.4>	
전남 (19/22)	순천		강진(30) <02.3> 목포(30) <02.12>		무안(30) <09.12>		영광(30) <07.10> 곡성(30) <07.6>	나주(30) <11.3>	해남(30) <08.6>	
경북 (20/23)	구미		영주(30) <05.10> 군위(20) <03.4>			문경(30) <04.10> 경주(30) <05.12>	안동(30) <06.2>	포항(30) <08.12>	상주(30) <09.10>	
경남 (20/18)	마산		진해(30) <02.12> 밀양(20) <03.11>		함안(30) <04.8>		의령(30) <07.4>	양산(30) <09.12> 진주(30) <08.9>	거제(30) <11.5>	
제주 (5/2)	서귀포		제주(30) <01.10>	서귀포(22) <05.12>				북제주(30) <08.5>		
계	192 (5,440)	15 (-)	3 (180)	17 (512)	5 (142)	7 (210)	10 (300)	13 (390)	16 (480)	12 (360)
	결산액	4,318	276	63	123	228	175	274	269	

구분	'06	'07	'08	'09	'10	'11	'12
서울 (3/25)						-	
부산 (14/16)	남구(30) <10.3>		기장(29)	연제(30) 사상(30) 동래구(31) 북구(31) <11.9>	강서구 (30)	동구(32)	부산진구 (30)
대구 (7/8)				달성(29)		중구(30)	수성구(30)
인천 (6/10)					중구(29)	강화군(32)	
광주 (5/5)				동구(31) <11.8>		-	
대전 (5/5)			중구(30) <10.9>			-	동구(32)
울산 (4/5)			남구(29) <10.11>			-	
경기 (24/31)		양평(29) <10.12>	포천(29) <10.9> 안성(29) <11.6>	남양주(28) <11.7> 김포(27) 성남(27) 여주(28) 고양(27)	이천(29) 파주(28) 양주(28)	구리시(29) 수원시(27)	용인시(27)
강원 (14/18)	평창(30) <10.12>	태백(28) <11.5>	속초(30) 횡성(31)	양구(31) <10.8> 홍천(31) <11.11> 정선(31) <11.12>	영월(32)	-	
충북 (12/12)		영동(30) <09.10>		옥천(31) 단양(31)	진천(31) 괴산(32)	-	
충남 (14/16)	서천(30)		태안(30)	예산(31) 당진(29)	부여(32) 청양(32)	-	
전북 (14/14)			부안(32) <10.4>	김제(31) <11.9> 진안(31)	무주(32) 순창(33) 임실(33)	고창군 (33)	
전남 (19/22)	구례(30) <09.7>	진도(36) <11.7> 여수(27) <10.6>	장흥(32) <10.11>	영암(31) 화순(30) <11.7>	신안(33) 광양(29) <11.12> 완도(33)	-	고흥군(33), 장성군(32)
경북 (20/23)	경산(30) <10.3>	청도(30) <10.6>	칠곡(29)	고령(31) 울릉(32)		김천시(31), 의성군(32), 영양군(32), 성주군(32)	영덕군(32), 울진군(32), 청송군(32)
경남 (20/18)	거창(30) <11.1>	김해(30) <09.9>	통영(31) <10.3>	사천(31) <11.11> 고성(31) 하동(31) 산청(31) <11.5> 창원(27) <11.12>	창녕(32) 합천(32) 남해(32) 함양(32)	-	
제주 (5/2)			남제주(30) <09.12>			-	
계	192 (5,440)	6 (180)	7 (210)	13 (391)	29 (871)	20 (624)	10 (310)
결산액	515	464	460	531	409	530	518

※ 푸른색 : 미완공 / <일자> : 완공일

2) 운동장 생활체육시설(구 잔디·우레탄 체육시설)

축구발전종합대책(1997년 9월)과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1998년-2002년)에 의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은 학교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유망주 육성 등을 통한 전문체육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체육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8년부터 공설운동장과 학교 운동장을 대상으로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였고, 1999년에 공설운동장 34개소를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하였다. 이후 2000년에는 천연잔디구장과 잔디·우레탄 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추진하였으며, 2003년에는 종합운동장 조성지원사업, 2004년에는 인조잔디구장 조성지원사업이 추가되었다. 2005년부터는 사업명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개칭하여 초·중·고·대학교와 공설운동장의 잔디·우레탄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까지 매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초·중·고교 운동장 120개소, 대학(교) 5개소, 지자체 45개소 등 총 170개소를 지원하여 현재까지 1,552개소(천연잔디구장 및 운동장 생활체육시설)를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사업추진계획」 발표 및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간 협약 체결(2008년 10월 15일)에 의하여 교육부와 공동으로 2009년~2012년 기간에 총1,000개 초·중·고교에 다양한 학교운동장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다음 <표 8-9>는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 추진실적 현황이다.

- (내용) 학생들의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운동장을 천연잔디,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 다목적구장 등으로 조성 지원
- (계획) 2009년~2012년 기간 총 1,000개교의 학교운동장 조성(문체부, 교과부(현 교육부) 각 500개교)
 ※ 200개교(2009년)→200개교(2010년)→300개교(2011년)→300개교(2012년)

■ 표 8-9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 추진실적

(단위 : 개소수)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천연잔디구장	'98	37	-	1	-	-	2	-	-	5	4	3	1	4	3	7	6	1
	'99	34	-	1	1	-	2	1	1	2	2	2	2	6	5	4	3	2
	'00	13	1	-	-	-	-	-	-	1	2	-	-	1	2	1	3	2
	'01	11	-	-	1	-	-	-	-	1	2	1	-	1	2	-	1	2
	합계	95	1	2	2	-	4	1	1	9	10	6	3	12	12	12	13	7

(단위 : 개소수)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민 생활 체육 시설	'00-'03	227	27	17	14	6	9	10	7	28	11	8	13	19	13	18	19	8
	'04	104	11	13	8	4	5	4	3	9	4	6	6	5	6	9	9	2
	'05	116	10	11	8	4	6	5	5	11	6	6	7	6	8	10	9	4
	'06	100	11	10	6	3	4	4	3	13	3	4	5	6	5	8	10	4
	'07	141	16	14	8	6	6	5	4	18	9	5	8	5	10	12	12	3
	'08	108	10	10	7	5	4	5	4	15	5	5	6	4	8	9	9	2
	'09	200	18	17	12	7	10	11	5	19	15	8	14	14	12	18	17	3
	'10	140	10	14	11	6	7	6	3	17	8	7	9	8	8	11	12	3
	'11	175	16	14	10	7	5	6	4	21	14	7	10	10	13	18	17	3
	'12	170	17	12	13	7	3	5	5	26	9	5	10	10	15	17	13	3
	합계	1,481	147	132	97	55	59	61	43	177	84	61	88	87	98	130	127	35

※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

3)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우리나라의 체육시설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양질적인 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주요 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시설투자 대부분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편중되어 추진되었다. 따라서 지역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체육복지 제공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읍·면 단위이하 지역에 체육시설 보급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은 기존 한국마사회 경마수익금으로 지원되던 농어민문화체육센터(2004년 종료)의 대안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는데 이는 기금을 국민체육복지에 환원함과 동시에 급격하게 노령화 사회로 진입한 농어촌 체육복지 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도·농간 지역 격차 완화를 통한 국민 화합과 삶의 질의 균형발전, 국민체육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의 읍·면 지역(199개소)이며 그 중 국민체육센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기타 유사 공공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정한다. 2012년 말 현재 총 43개소를 지원하였고 그 중 33개소가 건설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10개소가 건설 추진 중에 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의 구성은 레크리에이션센터, 커뮤니티센터, 아쿠아센터, 다목적구장 등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3가지 유형 중에서 지자체가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표 8-10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연도별·지역별 지원실적 () : 지원금액 (단위 : 개/억 원)

사도	개소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6	남양주(3.5) 포천(5)	양주(5) 여주(5)	파주(5)			여주군(6)	양평군(6)
강원	7	삼척(6)		영월(6)	홍천(4.5) 화천(5) 고성(6)	춘천시(6)	영월군(6)	
충북	1				음성(6)			
충남	3					서천군(6) 예산군(6)	부여군(6)	
전북	4	순창(5)		정읍(5)		부안군(6)	무주군(6)	진안군(6)
전남	4	고흥(6)	영암군(6)	강진(4.5) 신안(6)				함평군(6)
경북	6		구미(4.5) 포항(5) 영주(6)	봉화(6)	청도(5)		의성군(6)	문경시(6)
경남	6	사천(6) 산청(6)	하동(6)	창녕(4.5)	함안(6)	거창군(6)		
제주	1				제주(5)			서귀포(6)
계	38 (210)	7 (37.5)	7 (37.5)	7 (37.5)	7 (37.5)	5(30)	5(30)	5(30)

4)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각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의 체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체육관을 건립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지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학생 및 일반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시범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2009년도에는 지방재정자립도 30% 이하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25개 초·중·고교를 지원하였고, 2010년부터는 재정자립도 30% 이하 조건을 완화하여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중 30%는 체육기금, 나머지

70%는 지방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의에 의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용(정규) 체육관(바닥면적 600㎡ 이상, 천장높이 6m 이상), 강당 겸 용 체육관(평상 시 : 체육활동, 행사 시 : 입학식, 졸업식, 각종 발표회 등) 2개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선택·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사업은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사업추진계획」 발표 및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간 협약 체결(2008년 10월 15일)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와 공동으로 2009년~2012년 기간에 매년 25개교씩 총 100개 초·중·고교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비 및 지방교육청 예산 확보 등의 사전 협의가 선행 완료되어야 한다. 2012년에는 부산중을 비롯한 전국 22개 학교에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지원하였다.

■ 표 8-11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사업 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지역	수량	금액	'09	'10	'11	'12
계	77	37,617	25개소 9,750백만원	27개소 14,597백만원 (대도시 8, 소도시 19)	25개소 13,270백만원 (대도시 8, 소도시 17)	22개소 11,700백만원 (대도시 6, 소도시 16)
서울	1	900	-	동작 동작초 900	-	
부산	2	1,166	-	북구 가림중 686	동신중(480)	부산중(680) 토현중(680)
인천	1	480	-	강화 교동중 480	-	
대구	-	-	-	-	-	
광주	1	900	-	-	광주체고(900)	
대전	2	1,800	-	서구 서원초 900	서중(900)	대전중(680)
울산	-	-	-	-	-	장생포초(500)
경기	8	4,751	양평 개군초 410 가평 상면초 400	성남 이매중 900 고양 화정초 600 안산 미디어고 900	현산초(600) 삼송중(461) 갈매중(480)	양주 회천중(400)
강원	7	2,845	홍천 팔령고 315 횡성 강림중 220	인제 용대초 480 영월 옥동초 480	귀래초(390) 춘천초(480) 화계초(480)	강릉 사천중(400) 삼척 가곡중(940)
충북	4	1,820	진천 이월중 410 영동 황간고 450	청원 미원초 480	진천고(480)	
충남	7	3,164	부여 백제중 400 홍성 광동초 400	공주 정보고 480 금산 금산여고 480	천안초(444) 웅천중고(480) 서야고(480)	당진 당진고(400)
전북	8	4,020	완주 구이중 400 무주 무주초 400 정읍 이평초 400	남원 율북중 480 장수 개남초 480	원광여중(900) 한국한방고(480) 산서초(480)	임실 대리초(400) 익산 금마초(680) 전주 대성초(320)
전남	16	6,531	장흥 관산초 400	목포 대연초 375	대불초(375)	장흥 장흥서초(400)

지역	수량	금액	'09	'10	'11	'12
			보성 예당고 400 진도 군내북초 400 영암 도포중 270 강진 강진여중 400 해남 송지중고 400 순천 매산중 400	목포 임성초 375 담양 고서초 465 강진 중앙초 480 장흥 장평초 351 완도 노화고 480	도사초(480) 금일초(480)	
경북	13	5,790	상주 중모중 400 예천 감천초 420 고령 대가야고 400 영주 대영고 415 의성 의성초 400 영천 전자고 415 영양 영양초 425	구미 선주초 480 안동 경덕중 480 상주 화령초 465	이동중(530) 경일고(480) 영동중고(480)	안동 영문고(400) 상주 남부초(400) 포항 양학초(680)
경남	6	2,970	-	밀양 흥제중 480 창녕 길곡초 480 함양 서하초 480	진해여중(570) 대성일고(480) 남지중(480)	거제 오비초(400) 창녕 계창초(400) 진주 내동초(400)
제주	1	480	-	제주 귀일중 480	-	제주 신성여고(680)

4.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2010년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사용용도에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전문체육시설(실내시설은 500석, 실외시설은 1000석 이상 관람석을 갖춘 시설만 해당)의 개수·보수가 포함되게 되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사업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준에 맞는 대상을 선정하여 개수·보수지원을 추진하였다. 지원체계는 사·도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교부를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2012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 잠실야구장, 구덕운동장 야구장, 사직 실내수영장 등 총 37개소에 253억 원의 지원이 결정되었다.

■ 표 8-12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금액단위 : 백만원)

지역	사업명	지원금액	비고
계	37개소	25,322	
서울	7개소	4,704	
"	장충 체육관 리모델링	2,000	
"	잠실 야구장 개보수	755	
"	잠실 실내체육관 개보수	390	

지 역	사 업 명	지원금액	비 고
"	목동 주경기장 개보수	400	
"	목동 야구장 개보수	539	
"	잠실 주경기장 개보수	400	
"	효창운동장 개보수	220	
부산	6개소	1,292	
"	구덕 실내체육관 개보수	99	
"	구덕운동장 주경기장 개보수	1,008	
"	사직 실내훈련장 개보수	53	
"	사직 실내체육관 개보수	36	
"	사직 실내수영장 개보수	30	
"	구덕운동장 야구장 개보수	66	
광주	1개소	8,100	
"	무등경기장 개보수	8,100	
대전	1개소	300	
"	한밭 야구장 리모델링	300	
경기	3개소	507	
"	성남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300	
"	오산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162	
"	오산 시민회관 체육관 리모델링	45	
강원	3개소	570	
"	양양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171	
"	삼척 종합운동장 보수	354	
"	강릉 종합운동장 보수	45	
충북	2개소	1,500	
"	청주 종합경기장 개보수	780	
"	청주 체육관 개보수	720	
충남	1개소	30	
"	서천 군민체육관 개보수	30	
전북	4개소	2,320	
"	군산 월명야구장 보수	500	
"	익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1,380	
"	무주 등나무운동장 개보수	90	
"	고창 실내체육관 개보수	350	
전남	2개소	465	
"	광양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420	
"	목포 유달경기장 개보수	45	
경북	2개소	330	
"	경주 시민운동장 개보수	240	
"	청송 체육관 개보수	90	
경남	3개소	3,884	
"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3,042	
"	통영 공설운동장 개보수	200	
"	고성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642	
제주	2개소	1,320	
"	제주 애향운동장 보강	720	
"	제주 연정구장 보강	600	

제4절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및 관리·운영 효율화

1. 체육활동공간의 효율적 활용

경제발전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은 모든 국민들에게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건강의 유지와 체력을 증진하는 것에 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되었고 이는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듯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정부는 체육시설의 건립 등 여러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 체육활동 공간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민들의 수요를 아직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공급을 진행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수와 규모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건립된 체육시설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설치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공공체육시설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설치 후 체육시설과 관련된 홍보가 미흡해 지역민들은 체육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았고 건립 후 꾸준한 관리·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시설활용도와 만족도가 민간 체육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의 건립뿐만 아니라 이미 건립된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육시설의 활용도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정책적 방향으로 개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첫째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노후화된 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최신식의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개선작업은 동일한 종류의 체육시설을 새로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대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로 학교운동

장 등과 같은 공공체육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 개방으로 인한 경비 소요가 부담스러운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개정하여 개방된 공공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내에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을 건립하는데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유지·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운동장·체육관과 같은 대형 체육시설은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다목적·다용도의 복합 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체육시설건립 초기단계인 계획단계부터 시설을 직접 이용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해당 건립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 지방체육시설 개수·보수

다중체육시설인 대형운동장이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체육활동 및 경기관람환경이 저하되어 개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이들 노후화된 시설을 개수·보수하기 위해 조치하였으나 기존의 국고보조금 지원체계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의 필요성과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0년 국민체육진흥법(2010년 1월 27일) 및 동법 시행령(2010년 9월 17일)이 개정되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시설 개수·보수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 대상은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전문체육시설(실내시설은 500석 이상, 실외시설은 1,000석 이상 관람석을 갖춘 시설로 제한)로 제한했다.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5%이며, 개수·보수에 들어가는 시설비용의 30%를 지원하도록 정해졌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정부는 2010년부터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노후화된 많은 체육시설들이 편의성을 갖춘 현대화된 시설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2) 공공체육시설 민간투자 여건 조성 및 수익시설 설치기준 완화

프로경기단체가 사용하는 경기장 시설의 단기임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12월 스포츠산업진흥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을 통해 기존 3년간의 단기임대에서 25년간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프로경기단체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투자, 공공체육시설의 현대화 작업 및 다양한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등을 위한 민간투자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2010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법률 개정을 통해 종합운동장의 공간·기능적 다양성을 적극 활용하고 체육시설 고유의 기능을 확대함과 동시에 다양한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함으로써 시설활용도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종래 수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 체육시설은 운동장의 규모가 100만㎡ 이상이거나 6종목 이상의 국제규격 경기장을 갖춘 체육시설이었다. 하지만 개정 후 10만㎡ 이상이거나 3종목 이상의 국제규격 경기장을 갖춘 체육시설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약 20여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운동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운영

국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와 건강증진과 유지에 관한 급격한 관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수와 규모가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체육시설에 대한 홍보와 정보 제공 부족으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2011년 7월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11년 10월에 인터넷 홈페이지(www.sportsmap.or.kr)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정보안내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공공체육시설 정보안내 서비스는 공공체육시설의 위치나 사진, 동영상과 같은 기본적

인 정보와 지도자, 홈페이지, 셔틀버스 정보, 각 공공체육시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보, 운영요금 등의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장애인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 시스템은 국민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안내 뿐 아니라 향후 정책 시뮬레이션 시스템도 구축하여 공공체육시설 및 기금지원시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체육시설 지역별 균형 배치 등 지역설정에 맞는 주민 밀착형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정책 자료로써도 활용될 예정이다.

4) 공공체육시설(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학교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 중 급격하게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다. 따라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은 공공체육시설의 신규 공급과 같은 효과를 내며 건립을 위해 필요한 자원마련과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의 좋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부가 지원한 학교의 공공체육시설 중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야간에도 생활체육이 가능하도록 야간조명시설 의무설치) 및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은 일반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개방하는 학교체육시설의 경우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지역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해 주민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렇듯 종전 공공체육시설은 시설보호 위주로 관리·운영되었으나 현재는 활용 위주로 관리·운영하도록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주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범위 내에서 시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소외계층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및 장애인 이용편의 확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소외계층에 대해 일정부분 이용료를 감면해 주거나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이용편의 시설을 설치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용료 감면은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및 장애인 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를 근거로 하여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그 밖의 지방조례 등을 통하여 할인 대상

자들이 공공체육시설을 감면된 이용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률 제25조」에 의해 편의시설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경사로,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2010년 까지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 2012년 까지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 2015년 까지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에까지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승강기와 같은 편의시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장애를 이유로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2.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효율화

1)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국내외로 환경과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내 스포츠 환경에서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을 위해 관련법을 통한 규제, 행정적·기술적 지원, 일깨움, 참여유도 등의 행정적 방안과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 생활의 실천적 방안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이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다.

최근 환경과 관련한 여러 정책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이 시행되면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응원문화 및 경기운영 방식의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하는 그린스포츠(Green Sports)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5개 프로단체의 경우에는 2010년 3월 ‘그린스포츠 업무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실천행사로 관중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쓰레기 분리수거 유도, 응원문화의 개선 등을 통한 자원 절약 등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및 개수·보수 등을 추진할 경우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조명설치, 조명시설 자동제어기 설치, 물 절약 시설 설치 등 에너지 효율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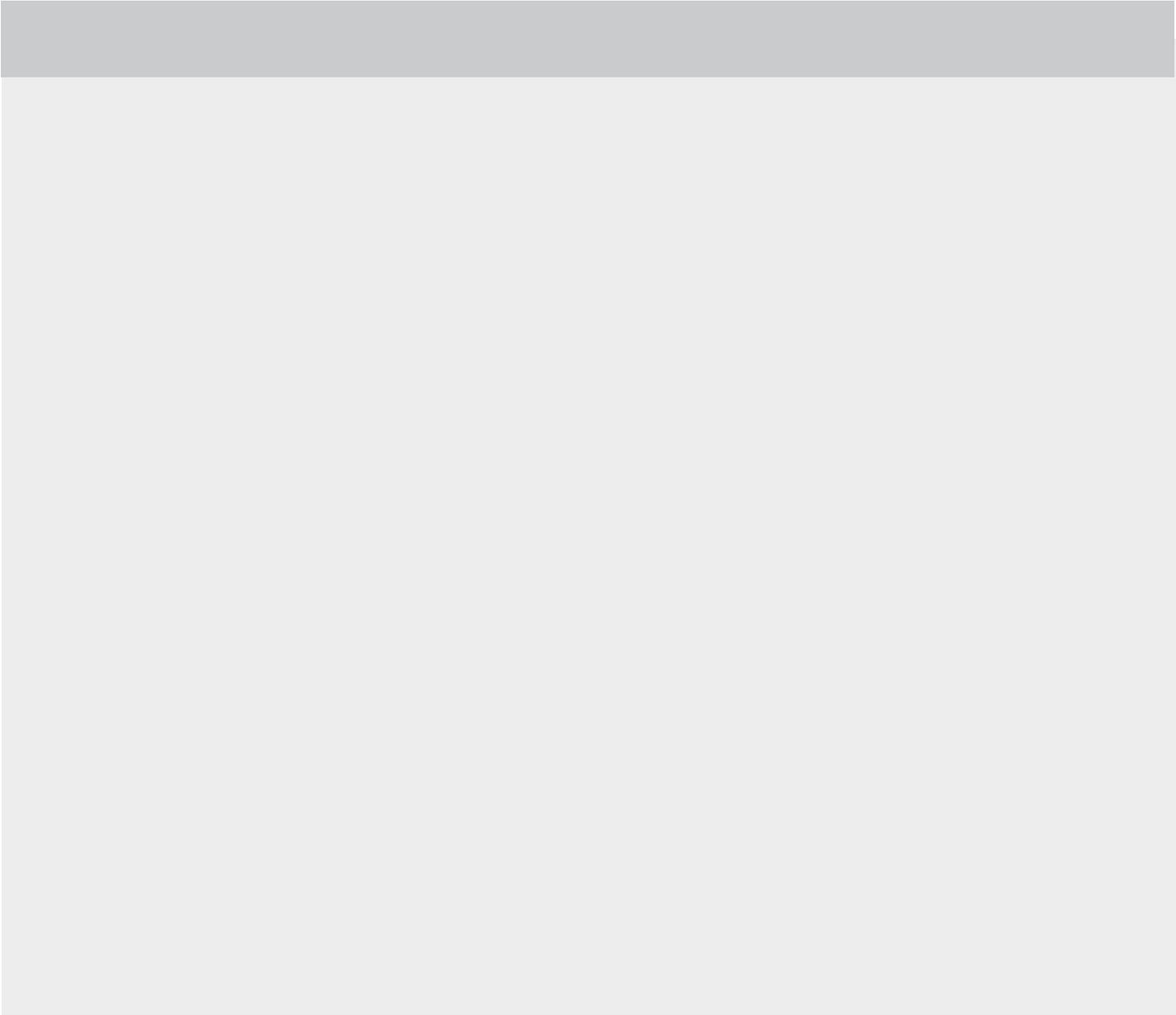
2) 지자체 시설관리자 대상 교육 강화

체육과학연구원은 매년 지방 체육행정 공무원 및 지방 체육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경영마인드의 도입과 시설운영개선을 유도하고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중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과목을 개설하여 체육시설의 시간적·공간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연간 약 80여명의 지방 체육행정 공무원 및 체육시설관리 실무자들이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변화된 체육환경과 체육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실무를 이해함으로써 지방 체육행정의 선진화와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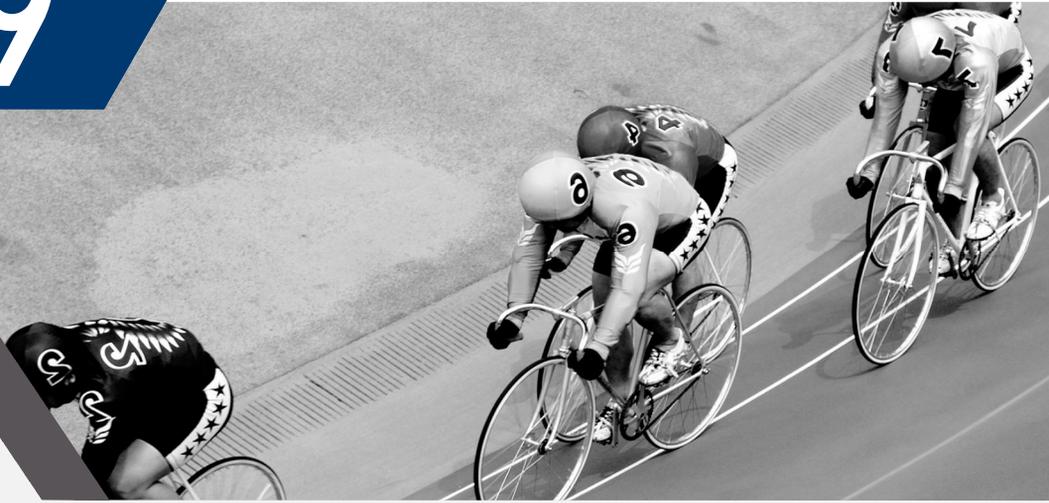
3)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도 체육시설업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배치, 안전·위생 기준 등의 안전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되, 시설의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맞게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동장, 체육관, 야구장, 수영장, 빙상장 등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 및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프로경기 개최시설 등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체육활동 외 공연 행사 등으로 대관 시에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안전관리요원 배치, 안전 관리자 선임, 작업자 안전관리수칙 준수 등)하도록 하고 있다.

2012 Sport White Paper
체육백서



09



체육전문인력

- // 제1절 개관
- // 제2절 체육전문인력 현황
- // 제3절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

Section

09 체육전문인력

제1절 개관

체육분야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과 활용은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체육분야 인력양성 정책은 인력의 수요관리를 정책의 근간으로 하는 가운데 고용 및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교육 및 훈련 등 인력의 공급부문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육분야 전문인력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선수자원의 고갈과 지속적인 경기침체, 청년 실업 문제 심화와 대학과 기업 간 인재상 불일치 등 시장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체육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체육전문인력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국제체육, 스포츠산업, 학교체육 등 체육의 각 하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 지도자, 심판, 교사교수, 학생 등을 말한다. 이들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선발·임용되며, 해당 종목에서 선수로 활동하거나 각 분야에서 체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전문체육은 우수선수를 선발·양성하고 각종 대회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체육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선수, 경기지

도자, 심판 등이 있다. 생활체육은 동호인들이 건강 유지 및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체육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다. 장애인체육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재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체육은 국가 간 체육교류 등 체육외교와 여러 국제체육기구에서 활동하여 국익을 증진하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국제체육과 관련된 전문인력은 국제체육기구의 임원 등을 비롯한 체육외교인력을 들 수 있다. 스포츠산업은 스포츠 용품제조업, 시설업, 서비스업 등 체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은 스포츠용품제조업 종사자, 시설업 종사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들 수 있다. 학교체육은 학교 교육을 통하여 평생체육의 토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학생선수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부문이다. 학교체육과 관련된 전문인력은 체육교사, 체육계학과 학생, 교수 등이 있다. 본 백서에서는 체육전문인력 중 전문체육분야의 선수지도자 생활체육분야의 생활체육지도자, 학교체육분야의 체육교사, 교수 및 체육계학과 학생 등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실태와 주요 변화 등을 다루었다.

제2절 체육전문인력 현황

1. 선수·코치

1) 등록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한 자를 말하며, 종목별 등록선수 현황은 <표 9-1>과 같다. 2012년 현재 등록선수는 128,701명으로 2011년 138,576명에 비하여 9,875명(7.1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감소율이 0.64%에서 7.13%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체적인 인구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되며, 기존 선수의 퇴출과 신규 선수의 유입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급격한 선수자원 고갈과 그에 따른 국가 스포츠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체육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체육분야 전문 선수들의 직업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프로구단뿐만 아니라 실업팀 창단 및 육성 활성화를 통해 운동을 직업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운동선수 시장의 신규 유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신규 실업팀 창단 시 자금지원과 은퇴선수 취업 알선 등 체육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종목별 등록선수는 축구가 25,80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야구(10,100명), 궁도(9,685명), 태권도(8,217명), 육상(6,666명) 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 궁도를 제외하고 최근 4년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종목에 대한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루지(37명), 카바디(131명), 트라이애슬론(181명), 바이애슬론(248명), 수상스키(254명), 봅슬레이(122명), 세팍타크로(256명), 수중(361명), 승마(479명), 소프트볼(436명), 근대5종(473명) 등의 종목은 전체 등록선수가 500명 미만으로 저변이 취약한 실정이다. 2009년까지 등록선수가 500명 미만이었던 바둑(228명)은 2010

년의 경우 1,377명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도와 2012년 모두 급속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종목으로 평가된다. 특히 봅슬레이를 제외하고 루지, 바이애슬론 등 동계종목의 선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져 2018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유치가 동계 비인기종목 활성화의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선수를 성별로 구분할 경우 상위종목에서 남자선수는 전체 종목별 선수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여자선수는 육상(2,604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태권도(1,865명), 수영(1,560명), 궁도(1,086명), 축구(1,63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년도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하위종목은 남자선수의 경우 루지(20명), 항공스포츠(20명), 소프트볼(22명), 카바디(9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선수의 경우에는 씨름(1명), 항공스포츠(2명), 야구(7명), 루지(17명), 럭비(21명), 카바디(3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선호 종목이 차이가 있으며, 연도별로 선수수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선수의 경우 소프트볼이 전년도 1명에서 22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9-1 종목별 등록선수 수

(단위 : 명)

구분	전 체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 반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실업		군		시도		군청
												남	여	남	여	남	여	
전체	128,701	99,687	29,014	23,296	7,074	23,762	7,164	20,528	6,398	10,981	2,855	8,427	2,440	322	7	12,371	3,076	
검도	2,371	2,070	301	284	33	468	50	500	58	397	61	158	2	-	-	263	97	
골프	3,103	2,059	1,044	248	194	558	365	1,063	435	176	50	13	-	-	-	1	-	
공수도	1,154	885	269	162	43	155	36	248	85	215	81	105	24	-	-	-	-	
궁도	9,685	8,599	1,086	-	-	14	4	99	32	17	1	70	2	-	-	8,399	1,047	
근대5종	473	346	127	10	12	125	23	121	40	32	18	11	34	4	-	43	-	
농구	2,414	1,556	858	414	336	424	213	394	160	307	100	-	27	17	-	-	22	
당구	886	814	72	-	-	13	3	35	20	2	-	764	49	-	-	-	-	
댄스스포츠	840	345	495	11	67	33	79	87	127	36	39	159	164	-	-	19	19	
럭비	1,461	1,440	21	-	-	519	-	501	-	303	3	92	18	25	-	-	-	
레슬링	1,808	1,624	184	5	-	767	20	451	86	237	36	34	0	12	-	118	42	
루지	37	20	17	-	-	-	-	3	1	16	14	1	2	-	-	-	-	
바둑	276	209	67	-	-	-	-	9	-	20	6	21	7	-	-	159	54	
바이애슬론	248	160	88	49	38	43	21	30	16	13	2	15	5	3	-	7	6	

구분	전 체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 반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실업		군		시도		군청
												남	여	남	여	남	여	
배구	2,324	1,474	850	404	307	356	223	339	194	224	50	92	34	19	-	40	42	
배드민턴	2,080	1,183	897	462	375	308	195	181	144	125	98	44	37	6	-	57	48	
보디빌딩	1,554	1,413	141	-	-	-	-	164	-	84	3	1,055	133	-	-	110	5	
복싱	2,209	2,054	155	-	-	794	2	590	73	217	16	369	61	17	-	67	3	
볼링	1,521	866	655	31	17	247	156	230	180	157	101	128	124	1	-	72	77	
봅슬레이	122	106	16	-	-	5	-	28	6	11	4	62	6	-	-	-	-	
빙상	1,646	727	919	301	508	127	214	95	82	81	51	52	33	-	-	71	31	
사격	3,378	2,220	1,158	19	6	470	428	421	350	157	107	82	36	35	7	1,036	224	
산악 자전거	1,467	1,084	383	31	25	23	14	178	57	98	39	754	248	-	-	-	-	
세팍 타크로	256	178	78	-	-	13	-	88	34	44	13	6	22	-	-	27	9	
소프트볼	436	22	414	-	-	1	120	20	137	-	108	1	49	-	-	-	-	
수상스키	254	184	70	12	4	21	13	22	12	23	6	105	35	-	-	1	-	
수영	3,751	2,191	1,560	916	759	576	406	339	227	136	66	79	17	11	-	134	85	
수중	361	235	126	-	-	749	20	91	58	50	14	42	24	-	-	3	10	
스쿼시	420	267	153	25	11	40	28	72	50	38	28	84	33	-	-	8	3	
스키	850	582	268	173	84	116	64	108	52	80	35	99	31	-	-	6	2	
승마	479	355	124	20	9	22	16	35	19	52	27	18	0	3	-	205	53	
사이클	862	641	221	-	-	188	59	206	85	111	6	55	27	15	-	66	44	
씨름	1,629	1,628	1	481	1	416	-	307	-	216	-	24	-	-	-	184	-	
아이스 하키	1,973	1,753	220	1,144	180	292	21	133	-	108	-	76	19	-	-	-	-	
야구	10,100	10,093	7	4,361	7	3,125	-	1,663	-	944	-	-	-	-	-	-	-	
양궁	1,617	865	752	314	265	198	192	119	141	66	61	130	51	8	-	30	42	
역도	1,188	826	362	-	-	365	136	277	135	81	22	12	12	11	-	80	57	
오리엔 티어링	674	597	77	248	13	109	13	44	8	1	-	185	41	-	-	10	2	
요트	582	482	100	31	10	74	31	82	12	34	8	174	21	-	-	87	18	
우슈	1,844	1,484	360	355	109	284	82	395	73	144	53	289	43	-	-	17	-	
유도	3,486	2,584	902	492	111	811	307	813	263	307	131	67	28	31	-	63	62	
육상	6,666	4,062	2,604	1,411	1,013	1,067	679	898	488	312	144	108	60	8	-	258	220	
인라인 롤러	790	505	285	157	86	126	67	86	62	30	20	59	14	-	-	47	36	
정구	1,520	879	641	308	252	194	157	138	133	126	14	15	16	-	-	98	69	
조정	650	414	236	-	-	35	36	190	99	114	37	27	14	6	-	42	50	
체조	2,276	787	1,489	279	533	181	313	116	158	127	119	29	309	9	-	46	57	
축구	25,807	24,172	1,635	7,794	493	6,360	467	5,059	344	2,776	128	2,183	203	-	-	-	-	
카누	654	445	209	-	-	144	73	154	69	72	17	14	15	10	-	51	35	
카바디	131	94	37	-	-	-	-	13	-	64	28	17	9	-	-	-	-	
컬링	700	381	319	33	34	117	94	86	74	15	8	27	27	-	-	103	82	
탁구	1,649	852	797	384	351	151	142	135	138	79	78	38	40	6	-	59	48	

구분	전 체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 반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실업		군		시도군청	
												남	여	남	여	남	여
태권도	8,217	6,352	1,865	1,019	147	1,971	599	2,078	328	1,144	359	48	50	18	-	74	82
택견	785	587	198	203	65	137	43	74	21	53	20	120	49	-	-	-	-
테니스	1,546	921	625	318	250	207	128	196	105	125	85	18	15	-	-	57	42
트라이애슬론	181	112	69	-	-	45	22	10	5	2	3	54	39	-	-	1	-
펜싱	1,559	880	679	-	-	347	315	280	186	117	73	44	15	10	-	82	90
하키	1,445	773	672	-	-	293	257	240	233	129	76	35	34	20	-	56	72
항공스포츠	22	20	2	-	-	-	-	-	-	-	-	20	2	-	-	-	-
핸드볼	2,284	1,230	1,054	387	326	238	218	194	203	336	188	44	30	17	-	14	89

※ 대한체육회(2011). 내부자료

한편, 연도별 선수수의 변화추이는 <표 9-2>와 같다. 2012년 등록선수수 역시 전년과 같이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주로 일반선수의 대폭적인 감소(26,643명, 19.76%)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선수 감소 현상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의 영향인지, 선수로서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하는지 또는 학교 체육 부실 및 선수양성시스템 등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인지를 규명하고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생선수들의 경우 2011년의 경우 중학생 선수를 제외하고 소폭이지만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 선수 756명(2.43%), 중학교 선수 322명(1.03%), 고등학교 선수 1,321명(4.68%), 대학선수는 917명(6.22%)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선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운동부 선수들의 구조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9-2 연도별 선수 수의 변화

연도	구분	계	초	중	고	대	일 반
2007		132,815	28,373	30,398	29,006	14,503	30,535
2008		129,242	25,232	29,209	26,567	14,142	34,092
2009		136,557	29,030	31,108	27,507	14,617	34,295
2010		139,142	30,205	31,409	27,957	14,415	35,156
2011		138,576	31,126	31,248	28,247	14,753	33,202
2012		128,701 (▽7.13%)	30,370 (▽2.43%)	30,926 (▽1.03%)	26,926 (▽4.68%)	13,836 (▽6.22%)	26,643 (▽19.76%)

※ 대한체육회, 각 연도. 내부자료

2) 국가대표 코치 및 선수

국가대표 선수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하기 위하여 각 경기단체가 선발·확정한 선수를 말한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경기단체에서 국내외 대회성적 및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 발전가능성, 기초체력 및 기술, 대표코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협회의 강화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고 있다.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는 <표 9-3>과 같다. 2012년 현재 국가대표 선수는 하계 37개 종목, 동계 7개 종목 등 총 44개 종목에 1,207명이며, 코치는 242명이다. 2011년에 비해 종목은 2개(4.76% 증가, 하계종목 2종목 증가) 증가하였고, 선수 64명(5.6%), 코치 47명(24.1%)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9-3 종목별 국가대표 코치 및 선수 수

(단위 : 명)

구분	종목	코치	인원			계
			선수		계	
			남	여		
하계 (37)	골프	2	6	6	12	14
	공수도	2	10	10	20	22
	근대5종	3	7	6	13	16
	농구	4	12	12	24	28
	럭비	3	10	10	20	23
	레슬링	10	28	6	34	44
	배구	6	14	14	28	34
	배드민턴	9	24	24	48	57
	복싱	5	20	3	23	28
	볼링	4	8	8	16	20
	사격	4	12	12	24	28
	사이클	7	14	12	26	33
	세팍타크로	6	13	5	18	24
	소프트볼	2	6	6	12	14
	수영	12	37	22	59	71
	스쿼시	2	5	5	10	12
	승마	3	12	-	12	15
	야구	3	24	-	24	27
	양궁	6	8	8	16	22
	역도	8	16	14	30	38
	요트	4	18	12	30	34
	우슈	3	9	6	15	18
	유도	8	20	20	40	48
	육상	10	42	35	77	87
	정구	2	-	16	16	18
	조정	5	7	7	14	19
체조	12	14	22	36	48	

구분	종목	인원				계
		코치	선수		계	
			남	여		
하계 (37)	축구	4	20	18	38	42
	카누	3	13	4	17	20
	카바디	14	35	29	64	78
	탁구	5	10	10	20	25
	태권도	5	16	16	32	37
	테니스	2	6	6	12	14
	트라이애슬론	2	4	4	8	10
	펜싱	7	22	22	44	51
	하키	8	22	22	44	52
소계	37종목	203	568	456	1,024	1,227
합계	44종목	242	672	535	1,207	1,449
동계 (7)	루지	2	4	4	8	10
	바이애슬론	4	8	8	16	20
	봅슬레이스켈레톤	3	10	4	14	17
	빙상	9	21	25	46	55
	스키	13	33	11	44	57
	아이스하키	5	22	21	43	48
	컬링	3	6	6	12	15
소계	7종목	39	104	79	183	222
합계	44종목	242	672	535	1,207	1,449

※ 대한체육회(2012). 내부자료

2. 심판

심판은 경기단체에서 종목별 자격조건을 가진 자 중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종목별 협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선수출신자 또는 체육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과정과 실기 및 필기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2012년 현재 양성된 종목별 국내 심판 현황은 <표 9-4>와 같다. 국내심판은 총 66,056명으로 태권도(3,070명), 수영(12,138명), 축구(6,915명), 육상(2,74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볼링,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 등은 국내심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심판은 총 3,012명으로 태권도(1,228명), 탁구(260명), 역도(173명), 사격(149명), 체조(13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야구, 승마, 컬링, 봅슬레이·스켈레톤 등은 역시 국제 심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심판은 전년의 62,888명에 비해 3,168명(5%)이 증가하였고, 국제심판도 전년의 2,839명에 비해 173명(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심판 양성을 위한 지원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국내심판수 대비 국제심판수의 비율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해당 종목 심판의 수준이 국제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국내심판수 대비 국제심판수의 비율은 레슬링(272%), 아이스하키(113%), 근대5종(91%), 사격(73%), 역도(51%)의 순으로 나타나 해당 종목 심판들의 역량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국제심판이 선정되는 절차는 종목별로 차이가 있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축구의 경우 대한축구협회가 국내 1급 심판 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추천을 하게 되면 아시아축구연맹은 서류심사와 소정의 절차를 거쳐 3급 국제심판으로 임명하게 된다. 국제심판은 언어, 체력, 규정이해도 등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지만 국제대회 심판경력과 심판능력에 대한 기존 심판들의 정성평가, 구전, 개인의 커리어에 대한 평가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심판 양성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표 9-4 종목별 심판

(단위 : 명)

구분 종목	국내심판						국제심판				
	계	1급	2급	3급	기타	소계	1급	2급	3급	기타	소계
	69,068	5,455	9,272	49,028	2,295	66,056	498	679	1,124	687	3,012
검도	1,695	-	271	1,399	-	1,670	25	-	-	-	25
골프	20	18	-	-	-	18	2	-	-	-	2
공수도	320	52	57	191	-	300	2	4	14	-	20
궁도	2,288	245	343	1,698	-	2,288	-	-	-	-	-
근대5종	86	10	24	11	-	45	20	7	14	-	41
농구	2,401	260	1,037	991	-	2,288	-	-	-	113	113
당구	27	-	-	24	-	24	-	-	-	3	3
댄스스포츠	244	19	35	103	58	215	-	-	-	29	29
럭비	54	8	20	20	-	48	-	1	5	-	6
레슬링	93	-	-	25	-	25	14	6	46	2	68
루지	-	-	-	-	-	-	-	-	-	-	-
바둑	-	-	-	-	-	-	-	-	-	-	-
바이애슬론	67	6	25	17	-	48	19	-	-	-	19
배구	626	135	148	327	-	610	-	-	-	16	16
베드민턴	1,293	26	114	329	808	1,277	4	7	5	-	16
보디빌딩	612	289	292	-	-	581	20	6	52	-	31
복싱	302	271	-	-	-	271	23	7	1	-	31
볼링	-	-	-	-	-	-	-	-	-	-	-

구분 종목	국내심판						국제심판				
	계 69,068	1급 5,455	2급 9,272	3급 49,028	기타 2,295	소계 66,056	1급 498	2급 679	3급 1,124	기타 687	소계 3,012
봅슬레이/스켈레톤	-	-	-	-	-	-	-	-	-	-	-
빙상	280	5	219	6	-	234	7	39	-	-	46
사격	353	204	-	-	-	204	31	118	-	-	149
사이클	115	110	-	-	-	110	5	-	-	-	5
산악	3,217	126	146	49	-	3,211	6	-	-	-	6
세팍타크로	646	33	46	533	-	612	34	-	-	-	34
소프트볼	670	14	9	44	-	655	11	-	-	4	15
수상스키	1,232	11	101	1,072	-	1,184	2	6	-	40	48
수영	12,173	267	939	10,932	-	12,138	1	1	-	33	35
수중	82	-	-	466	-	67	15	-	-	-	15
스쿼시	515	8	29	467	-	504	11	-	-	-	11
스키	597	21	99	467	-	587	5	5	-	-	10
승마	35	-	-	-	24	24	-	-	-	11	11
씨름	287	69	37	181	-	287	-	-	-	-	-
아이스하키	51	-	-	-	24	24	-	21	6	-	27
야구	24	-	-	-	24	24	-	-	-	-	-
양궁	497	106	123	264	-	493	-	-	-	4	4
역도	515	132	93	117	-	342	90	83	-	-	173
요트	62	3	4	53	-	60	2	-	-	-	2
우슈	499	51	110	494	-	466	5	16	12	-	33
유도	318	246	-	-	-	246	42	30	-	-	72
육상	2,743	726	588	1,426	-	2,740	-	3	-	-	3
인라인롤러	199	66	53	54	-	173	8	4	1	13	26
정구	577	32	300	150	-	482	3	50	42	-	95
조정	198	-	-	-	190	190	-	-	-	8	8
체조	533	-	-	-	400	400	1	13	11	108	133
축구	6,942	564	402	5,871	78	6,915	23	-	-	4	27
카누	261	57	58	133	-	248	-	-	-	13	13
컬링	100	-	-	-	100	100	-	-	-	-	-
탁구	1,789	320	182	1,027	-	1,529	-	-	-	260	260
태권도	4,298	798	294	1,978	-	3,070	72	202	954	-	1,228
택견	517	-	85	432	-	517	-	-	-	-	-
테니스	899	29	83	253	519	884	-	1	1	13	15
트라이애슬론	1,525	3	603	910	-	1,516	2	5	2	-	9
펜싱	171	-	81	53	-	134	1	23	-	13	37
하키	78	-	-	-	70	70	1	2	5	-	8
핸드볼	335	115	210	-	-	325	2	8	-	-	10

※ 대한체육회(2012). 내부자료

3. 체육계 고등학교 및 대학(원)

1) 전문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2012년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 체육계 학과와 학생 수는 각각 61개 학과 1,609명이다. 이 중 929명(58%)이 남학생이고 680명(42%)이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골프관리과 15개(372명), 관광골프관리과 6개(148명), 골프환경과 3개(97명), 골프경영관리과 2개(59명), 골프산업경영과 1개(25명), 골프산업관리과 3개(82명), 골프과 1개(25명), 필드매니저과 3개(52명) 등 34개과(55.8%) 860명(53.4%)이 골프와 관련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종목의 학과가 개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도별 체육 전문 고등학교 수를 증설하고 특성을 최대한 살려 우수한 선수 및 전문 지도자 등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표 9-5 체육계 학과 및 학생 수(전문계 고등학교)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계	남	여
계	61	1,609	929	680
골프경영관리과	2	59	49	10
골프관리과	15	372	255	117
골프과	1	25	13	12
골프산업경영과	1	25	18	7
골프산업관리과	3	82	36	46
골프환경과	3	97	46	51
관광골프관리과	6	148	109	39
레저생명산업과	3	80	34	46
레저스포츠경영과	3	45	7	38
레저스포츠과	4	111	58	53
레저웰빙코스	3	90	-	90
마필관리과	3	81	66	15
사회체육과	6	190	124	66
생활체육과	4	118	77	41
필드매니저과	3	52	30	22

※ 한국교육개발원(2012. 12월 기준)

2012년 현재 전문대학 체육계 학과와 학생 수는 각각 253개 학과 20,9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4개의 학과가 증가하였지만, 2012년에는 18개

학과의 감소로 나타나 현재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취업률 등에서 문제가 되는 학과의 통폐합 및 폐지가 이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더불어 학생 수는 전년도에 비해 1,31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1년의 101명 감소에 이어 상당히 큰 폭의 감소가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구직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체육계 학과와 학생 입학정원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고, 전문대학과 대학 간의 통폐합 등 거시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체 학생 중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9.17%, 2011년도에는 18.71%에서 2012년도에는 18.39%로 나타나 2010년 및 2011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대학의 체육계 학과 교수는 2011년 359명에서 2012년에 331명으로 28명(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이후 전체 교수 수는 감소 후 정체를 지속하고 있는데 학과 수의 감소와 관련하여 교수 수 역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1인당 교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고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184명(88.04%)이 증가한 반면 2009년도 이후에는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5년 이후 학생자원 고갈에 따른 대비 등으로 추가적인 교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원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교수 수 산정에 있어서 겸임 및 비정년트랙 교수들에 대한 평가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실제 교원수 변동은 크지 않지만 수치상으로 크게 감소한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표 9-6 체육계학과 학과, 학생 및 교원 수(전문대학)

(단위 : 명)

학과명	학과수	학생 수			교원 수		
		계	남	여	계	남	여
2010	267	22,358	18,072	4,286	357	296	61
2011	271	22,257	18,091	4,166	359	295	64
2012	253	20,945	17,093	3,852	331	272	59
건강관리과	2	264	213	51	4	3	1
경찰경호무도전공	1	13	13	-	-	-	-
경찰경호무도학부	1	29	29	-	-	-	-
경찰경호스포츠과	2	41	28	13	-	-	-
경찰경호태권도과	1	4	4	-	-	-	-
경찰경호합기도과	1	1	1	-	-	-	-

학과명	학과수	학생 수			교원 수		
		계	남	여	계	남	여
경호무도과	4	393	329	64	7	6	1
경호보안과	1	200	192	8	5	5	-
경호스포츠과	3	342	310	32	4	3	1
경호스포츠전공	1	144	120	24	1	1	-
경호스포츠학부	1	156	135	21	-	-	-
경호안전전공	1	26	26	-	-	-	-
경호태권도과	2	18	18	-	-	-	-
경호합기도과	1	14	14	-	-	-	-
경호행정학과	1	12	11	1	-	-	-
골프,스포츠계열	1	3	3	-	-	-	-
골프/프로캐디과	1	68	46	22	2	2	-
골프경기지도과	1	20	19	1	-	-	-
골프과	3	62	51	11	2	2	-
골프-운영지도과	1	2	2	-	-	-	-
골프지도&사회스포츠과	1	25	21	4	2	2	-
골프지도과	2	98	70	28	2	2	-
관광레저스포츠계열	1	294	269	25	5	3	2
관광레저스포츠과	1	154	140	14	2	2	-
관광레저스포츠학과	1	5	3	2	-	-	-
국제스포츠무도계열	1	32	29	3	-	-	-
국제태권도과	1	53	48	5	-	-	-
댄스&스포츠전공	1	44	-	44	-	-	-
레저스포츠계열	5	93	92	1	-	-	-
레저스포츠과	23	1,908	1,519	389	42	36	6
레저스포츠전공	6	492	421	71	4	2	2
레저스포츠학과	2	43	31	12	-	-	-
레저스포츠학부	2	110	93	17	-	-	-
레저스포츠과	2	169	139	30	2	2	-
레크리에이션과	2	292	227	65	4	3	1
레포츠지도과	1	53	51	2	-	-	-
무도과	2	49	47	2	-	-	-
무용&레저스포츠과	2	86	-	86	4	2	2
무용과	1	132	47	85	3	-	3
무용전공	1	1	1	-	-	-	-
사회체육계열	3	49	34	15	4	4	-
사회체육골프과	2	165	132	33	4	3	1
사회체육과	31	4,078	3,373	705	54	48	6
사회체육전공	2	81	69	12	-	-	-
사회체육학과	2	69	45	24	-	-	-
사회체육학부	2	155	118	37	9	7	2
사회체육행정전공	1	2	2	-	-	-	-
생활레저스포츠과	1	21	19	2	-	-	-

학과명	학과수	학생 수			교원 수		
		계	남	여	계	남	여
생활스포츠과	5	666	559	107	10	7	3
생활스포츠학과	2	46	28	18	-	-	-
생활체육계열	1	353	328	25	4	3	1
생활체육계열(무도전공)	1	1	1	-	-	-	-
생활체육계열(생활체육전공)	1	136	117	19	-	-	-
생활체육계열(스포츠재활전공)	1	156	127	29	1	-	1
생활체육과	17	1,502	1,279	223	26	19	7
생활체육레저과	2	258	227	31	3	2	1
생활체육전공	1	9	9	-	-	-	-
생활체육학과	4	49	32	17	-	-	-
생활체육학부	4	956	850	106	9	8	1
스키스노보드전공	1	17	15	2	-	-	-
스트리트댄스과	1	5	5	-	-	-	-
스포츠·건강관리과	1	35	24	11	2	1	1
스포츠·피트니스계열	1	21	19	2	-	-	-
스포츠·피트니스과	1	34	27	7	-	-	-
스포츠건강관리과	4	660	556	104	11	10	1
스포츠건강관리학과	1	107	80	27	-	-	-
스포츠건강복지과	2	2	2	-	-	-	-
스포츠건강학부	1	65	54	11	-	-	-
스포츠경호계열	3	460	406	54	8	7	1
스포츠과학계열	4	496	414	82	6	5	1
스포츠과학부	2	128	102	26	3	3	-
스포츠과학학부	1	254	238	16	7	7	-
스포츠레저과	2	210	196	14	4	4	-
스포츠레저학부	1	80	65	15	2	2	-
스포츠복지과	2	106	92	14	3	3	-
스포츠재활과	2	164	140	24	3	3	-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	2	218	199	19	3	2	1
스포츠지도과	1	90	86	4	1	1	-
스포츠학부	1	41	31	10	2	2	-
승마조련전공	1	21	21	-	-	-	-
실용댄스과	1	159	81	78	1	-	1
실용무용과	1	59	19	40	2	1	1
실용무용전공	1	95	36	59	1	1	-
아동무용지도자과	1	82	-	82	2	-	2
아동스포츠과	1	93	-	93	2	-	2
아동체육과	1	80	-	80	2	1	1
예술체육학부	2	93	69	24	5	4	1
생활체육학과							

학과명	학과수	학생 수			교원 수		
		계	남	여	계	남	여
예체능공학부	2	58	24	34	2	2	-
요가과	1	67	6	61	1	-	1
운동재활과	1	71	58	13	-	-	-
운동처방과	1	38	29	9	-	-	-
웰빙건강관리과	2	4	4	-	-	-	-
유아체육전공	1	8	7	1	-	-	-
이종격투기전공	1	20	20	-	-	-	-
체육경호계열	1	153	149	4	-	-	-
체육과	2	57	52	5	2	2	-
축구과	1	7	7	-	-	-	-
태권도경영과	1	89	81	8	2	2	-
태권도과	9	581	503	78	13	12	1
태권도외교과	3	343	281	62	6	5	1
태권도외교학과	1	9	7	2	-	-	-
태권도지도과	1	23	21	2	-	-	-
태권도 체육계열	1	369	329	40	9	9	-
태권도체육학과	1	64	57	7	-	-	-
태권도학과	1	36	25	11	-	-	-
택견전공	1	2	2	-	-	-	-
특수체육전공	1	21	19	2	-	-	-
해동검도과	1	4	4	-	-	-	-
해양레저스포츠과	1	30	24	6	-	-	-
해양산업잠수과	1	88	86	2	2	2	-
휘트니스건강관리과	2	206	152	54	4	4	1
휘트니스건강관리학과	1	25	8	17	-	-	-

※ 한국교육개발원(2012. 12월 기준)

2) 대학교

대학교 체육계학과 학생수는 2011년 465개학과 69,662명에서 2012년 487개 학과 69,330명으로, 학과수는 22개(4.7%)증가한 반면, 학생수는 332명(0.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학과와 학생수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4년제 대학교의 경우에는 학과수는 증가하였으나, 학생수가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전문대학 보다는 4년제 대학교에 대한 선호가 높고 4년제 대학의 입학이 예년에 비해 쉬워졌기 때문에 전문대학 학생수 감소보다는 적은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도 변화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 유지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지도자나 선수 및 심판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 육성 등 체육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보다 우수하고 많은 인력들이 교육·양성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학생수의 비율은 2010년, 2011년과 비교하여 수나 비율에 있어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학교 교수 현황은 <표 9-7>과 같다. 대학교 체육계 학과 교수는 2011년 1,163명에서 2012년 1,209명으로 46명(4%)의 증가가 있었으며 전문대학과는 달리 4년제 대학교의 경우 지속적인 교원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교육부의 대학평가에서 학생 1인당 교원수가 매우 중요한 평가지표로 사용되고 있고, 정년트랙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교수를 충원하는 등 대학에서 편법적인 교수충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이란 측면에서 충분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요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표 9-7 대학교 체육계 학과 학생 및 교원 수

(단위 : 명)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계	남	여	계	남	여
2010	451	69,197	53,887	15,284	1,161	919	242
2011	465	69,662	54,163	15,499	1,163	915	248
2012	487	69,330	53,826	15,504	1,209	958	251
건강관리전공	1	26	20	6	-	-	-
건강관리학과	2	310	200	110	6	3	3
건강스포츠전공	1	64	61	3	-	-	-
건강스포츠학과	1	290	259	31	4	4	-
건강증진학과	1	234	177	57	4	3	1
검도학과	2	50	45	5	1	1	-
격기지도학과	1	219	198	21	3	3	-
격기학과	1	1	1	-	-	-	-
경기지도전공	1	221	177	44	4	3	1
경기지도학과	2	167	144	23	-	-	-
경기지도학전공	2	118	103	15	-	-	-
경찰무도학과	1	186	154	32	2	2	-
경호·무도학과	1	41	39	2	2	2	-
경호·무도학부	1	6	6	-	-	-	-
경호무도비서학전공	1	33	26	7	-	-	-
경호무도지도학과	1	263	245	18	-	-	-
경호무술학부	1	14	14	-	-	-	-
경호보안전공	1	85	76	9	3	3	-
경호보안학과	1	83	66	17	-	-	-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계	남	여	계	남	여
경호비서학과	5	958	810	148	14	13	1
경호안전학과	1	87	63	24	4	4	-
경호전공	2	239	188	51	6	6	-
경호정보전공	1	5	4	1	-	-	-
경호학과	4	724	639	85	9	7	2
경호학부	4	397	371	26	20	18	2
경호학전공	4	739	622	117	-	-	-
골프과학전공	1	53	39	14	2	2	-
골프산업학과	3	310	258	52	6	5	1
골프시스템학과	1	71	61	10	-	-	-
골프전공	1	30	22	8	6	5	1
골프지도학과	1	193	165	28	3	3	-
골프학과	4	378	318	60	4	3	1
공연영상창작학부(무용전공)	1	231	50	181	6	3	3
공연예술무도학과	1	102	85	17	2	1	1
국선도건강과학전공	1	3	2	1	-	-	-
국제무도경호학부 (경찰경호무도전공)	1	44	41	3	-	-	-
국제무도경호학부 (국제무도교육전공)	1	46	42	4	-	-	-
국제스포츠레저전공	1	149	115	34	-	-	-
국제스포츠레저학부	1	38	29	9	4	4	-
국제스포츠무도학전공	1	53	44	9	3	3	-
국제태권도전공	1	21	17	4	-	-	-
노인체육복지전공	2	153	133	20	-	-	-
댄스스포츠학과	-	-	-	-	1	-	1
동양무예학과	3	505	437	68	7	6	1
레저스포츠건강학과	1	201	167	34	3	2	1
레저스포츠과	1	1	1	-	-	-	-
레저스포츠전공	9	816	656	160	3	2	1
레저스포츠학과	12	1,865	1,615	250	29	27	2
레저스포츠학부	1	27	26	1	-	-	-
레저스포츠학전공	2	116	102	14	3	2	1
레저운동관리학과	1	116	85	31	3	2	1
레저체육학부	1	33	32	1	-	-	-
레포츠과학부	1	167	149	18	3	3	-
무도경찰경호학부	1	177	146	31	4	4	-
무도경찰학과	1	13	13	-	-	-	-
무도경찰학전공	1	6	6	-	-	-	-
무도경호학과	3	182	156	26	6	6	-
무도경호학부	2	97	87	10	-	-	-
무도체육학과	1	201	165	36	2	2	-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계	남	여	계	남	여
무도학과	2	377	352	25	4	4	-
무도학과전공	1	1	1	-	-	-	-
무도학전공	3	73	61	12	-	-	-
무술경기지도전공	2	19	17	2	-	-	-
무술경호학부	1	20	15	5	3	2	1
무용과	10	1,141	114	1,027	32	3	29
무용복지전공	1	35	9	26	2	1	1
무용예술학과	3	413	49	364	10	2	8
무용예술학전공	1	2	-	2	-	-	-
무용전공	5	151	25	126	4	-	4
무용학과	20	2,269	362	1,907	63	8	55
무용학부	2	232	42	190	5	-	5
무용학전공	2	168	42	126	5	2	3
문화스포츠학부	1	9	9	-	-	-	-
민속무용학과	1	92	19	73	4	-	4
바둑학과	1	201	170	31	4	3	1
바둑학전공	1	20	19	1	-	-	-
사회체육과	1	72	70	2	-	-	-
사회체육전공	5	881	721	160	11	11	-
사회체육학과	32	6,232	5,385	847	72	65	7
사회체육학부	8	1,042	860	182	45	37	8
사회체육학전공	6	573	502	71	5	5	-
산업스포츠학과	1	138	125	13	1	1	-
생활무용예술학과	1	178	27	151	4	1	3
생활무용학과	2	183	32	151	4	1	3
생활스포츠학부	1	122	94	28	-	-	-
생활체육전공	3	553	484	69	8	7	1
생활체육정보학과	1	281	248	33	5	4	1
생활체육지도학과	1	119	88	31	4	3	1
생활체육학과	14	2,601	2,017	584	43	35	8
생활체육학부	2	413	382	31	5	4	1
생활체육학전공	1	37	36	1	-	-	-
스포츠건강과학과	1	40	27	13	4	2	2
스포츠건강관리전공	3	237	208	29	-	-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3	180	145	35	4	4	-
스포츠건강관리학부	2	460	390	70	2	2	-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2	322	272	50	3	3	-
스포츠건강복지학부	1	4	4	-	21	16	5
스포츠건강의학전공	1	74	62	12	4	3	1
스포츠건강학부	1	148	128	20	7	7	-
스포츠경호학부	1	7	7	-	-	-	-
스포츠과학과	11	1,421	1,205	216	31	29	2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계	남	여	계	남	여
스포츠과학과군	1	6	6	-	-	-	-
스포츠과학대학(경기지도학전공)	1	6	6	-	-	-	-
스포츠과학대학(사회체육학전공)	1	2	2	-	-	-	-
스포츠과학대학 체육학전공	1	4	4	-	-	-	-
스포츠과학부	9	2,752	2,375	377	67	60	7
스포츠과학부(골프지도전공)	1	236	178	58	3	3	-
스포츠과학부(사회체육학전공)	1	77	70	7	-	-	-
스포츠과학부(생활체육학전공)	1	363	324	39	6	5	1
스포츠과학부(스포츠보건전공)	1	34	27	7	-	-	-
스포츠과학전공	2	299	246	53	-	-	-
스포츠레저복지전공	1	75	63	12	3	3	-
스포츠레저학과	8	1,661	1,199	462	33	29	4
스포츠레저학부	4	591	568	23	9	9	-
스포츠무도복지학과	1	63	48	15	1	1	-
스포츠미디어학과	1	138	119	19	1	1	-
스포츠복지경영학과	1	33	32	1	-	-	-
스포츠복지학과	1	226	196	30	4	4	-
스포츠복지학부	1	51	40	11	-	-	-
스포츠산업과학부	-	-	-	-	6	5	1
스포츠산업과학부 사회체육학전공	1	352	287	65	-	-	-
스포츠산업과학부 골프전공	1	57	54	3	-	-	-
스포츠산업전공	1	384	332	52	7	6	1
스포츠의학과	4	846	684	162	12	10	2
스포츠의학전공	2	212	184	28	-	-	-
스포츠지도학과	3	723	622	101	10	10	-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	1	167	143	24	-	-	-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1	92	77	15	-	-	-
스포츠학과	4	188	171	17	5	4	1
스포츠학부	-	-	-	-	1	1	-
스포츠학전공	1	65	57	8	-	-	-
실버스포츠산업학과	1	177	156	21	2	2	-
실용무용전공	1	60	17	43	3	1	2
실용무용지도과	1	17	5	12	-	-	-
실용무용지도학과	1	58	18	40	4	1	3
요가명상학과	1	662	93	569	4	2	2
요가치유학과	1	1	1	-	-	-	-
요가학과	1	1	-	1	-	-	-
우수경호학부	1	24	19	5	-	-	-
운동건강과학부	1	446	358	88	12	10	2
운동건강관리학과	1	101	81	20	-	-	-
운동건강학과	3	583	476	107	10	7	3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계	남	여	계	남	여
운동복지전공	1	42	16	26	-	-	-
운동처방재활학과	2	373	296	77	9	7	2
운동처방전공	1	99	82	17	-	-	-
운동처방학과	4	569	427	142	10	10	-
운동처방학전공	1	138	112	26	3	2	1
유도경기지도학과	1	312	266	46	8	7	1
유도학과	1	574	540	34	7	7	-
유아·시니어스포츠허용전공	1	1	1	-	-	-	-
임상건강운동학과	1	203	149	54	4	3	1
체육레저학과군	1	2	2	-	-	-	-
체육계열	1	5	5	-	-	-	-
체육과학과	1	115	-	115	-	-	-
체육과학부	2	235	194	41	-	-	-
체육과학전공	2	292	79	213	6	3	3
체육대학	1	5	5	-	-	-	-
체육무용학부(무용전공)	1	1	1	-	-	-	-
체육전공	4	137	108	29	3	2	1
체육학과	32	6,538	5,108	1,430	140	122	18
체육학부	20	4,068	3,556	512	96	89	7
체육학부 경기지도학전공	1	192	170	22	1	1	-
체육학부 생활체육학전공	1	201	179	22	-	-	-
체육학부 체육학전공	1	292	266	26	-	-	-
체육학부 태권도학전공	2	374	336	38	-	-	-
체육학부(사회체육학전공)	1	307	265	42	2	2	-
체육학부(운동과학전공)	1	223	196	27	-	-	-
체육학부(체육학전공)	1	257	231	26	2	2	-
체육학전공	7	1,229	980	249	-	-	-
축구학과	2	319	315	4	6	6	-
태권도경호학과	1	134	114	20	4	4	-
태권도·생활체육학과	1	21	21	-	3	3	-
태권도경기지도학과	1	269	204	65	7	7	-
태권도·경호학과	2	208	187	21	6	5	1
태권도·공연외교전공	1	36	34	2	-	-	-
태권도공연학부	1	18	18	-	-	-	-
태권도외교학과	1	55	47	8	1	1	-
태권도전공	5	116	95	21	-	-	-
태권도학과	24	4,354	3,695	659	57	52	5
태권도학부	1	131	110	21	6	5	1
태권도학전공	2	40	35	5	-	-	-
특수체육전공	2	48	46	2	-	-	-
특수체육학과	4	575	482	93	8	7	1
한국무용전공	1	29	12	17	-	-	-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계	남	여	계	남	여
한방스포츠의학과	1	262	208	54	4	3	1
항공해양스포츠학과	1	140	123	17	2	2	-
해양레저스포츠학과	1	23	21	2	1	1	-
해양레저학과	1	31	26	5	-	-	-
해양스포츠학과	1	241	195	46	6	6	-
해양체육학과	1	157	132	25	3	3	-
현대무용전공	1	7	1	6	-	-	-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2. 12월 기준)

3) 대학원

체육계 학과 석사과정(체육교육계열 미포함)은 2011년 199개 학과 3,419명에서 2012년 213개 학과 3,379명으로 14개학과(7%)가 증가하였으나, 학생수는 41명(1.2%) 감소하였다. 반면, 박사과정은 2011년 95개 학과 1,631명에서 2012년 103개 학과 1,679명으로 학과수는 8개(8.4%), 학생수는 48명(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청년 실업이 지속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함으로써 실업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학력 및 경력을 쌓으면 보다 좋은 구직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표 9-8 대학원 체육계학과 학생 수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	박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0	199	94	3,410	2,050	1,360	1,608	1,033	575	25	16	9
2011	199	95	3,419	1,343	1,029	1,631	1,029	602	19	12	7
2012	213	103	3,378	2,043	1,335	1,679	1,051	628	20	12	8
건강과학과	1	0	5	3	2	0	0	0	0	0	0
건강관리전공	1	0	68	39	29	0	0	0	0	0	0
건강관리학과	1	0	2	2	0	0	0	0	0	0	0
건강레저	1	0	45	34	11	0	0	0	0	0	0
경호무도학과	1	0	10	7	3	0	0	0	0	0	0
경호보안학과	1	1	6	6	0	10	9	1	0	0	0
경호스포츠학과	1	0	6	6	0	0	0	0	0	0	0
경호안전관리학과	1	0	15	13	2	0	0	0	0	0	0
경호안전학과	1	1	10	8	2	12	12	0	0	0	0
경호학과	4	2	36	33	3	29	28	1	0	0	0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	박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골프경영학과	2	0	28	26	2	0	0	0	0	0	0
골프매니지먼트전공	1	0	8	0	8	0	0	0	0	0	0
골프산업전공	1	0	2	2	0	0	0	0	0	0	0
골프산업학과	1	0	19	19	0	0	0	0	0	0	0
골프학과	2	0	37	32	5	0	0	0	0	0	0
뇌교육학과	1	1	86	19	67	81	22	59	8	4	4
레저·스포츠컨설팅전공	1	0	17	12	5	0	0	0	1	0	1
레저스포츠학과	10	3	71	51	20	35	29	6	1	1	0
레저운동관리학과	1	0	8	4	4	0	0	0	0	0	0
무도학과	2	1	8	5	3	15	13	2	0	0	0
무용·공연예술학과	1	1	26	2	24	14	4	10	0	0	0
무용과	1	0	13	0	13	0	0	0	0	0	0
무용예술학과	1	0	12	1	11	0	0	0	0	0	0
무용학과	25	10	397	46	351	185	32	153	0	0	0
무용학전공	1	0	77	26	51	0	0	0	0	0	0
민속무용학과	1	1	8	1	7	6	1	5	0	0	0
바둑학과	1	1	7	4	3	5	3	2	0	0	0
보건체육학과	1	0	1	1	0	0	0	0	0	0	0
비만관리학과	1	0	8	0	8	0	0	0	0	0	0
사회체육학과	16	5	156	130	26	55	48	7	0	0	0
생활무용예술학과	1	1	11	2	9	8	3	5	0	0	0
생활무용전공	1	0	10	0	10	0	0	0	0	0	0
생활스포츠학과	1	1	24	18	6	25	16	9	0	0	0
생활체육교육학과	1	0	39	17	22	0	0	0	0	0	0
생활체육전공	1	0	106	84	22	0	0	0	0	0	0
생활체육정보학과	1	0	10	7	3	0	0	0	0	0	0
생활체육학과	3	2	24	14	10	11	8	3	0	0	0
스포츠·태권도학전공	1	1	18	13	5	21	18	3	2	2	0
스포츠건강관리학과	1	0	11	7	4	0	0	0	0	0	0
스포츠건강학과	2	0	7	6	1	0	0	0	0	0	0
스포츠과학과	12	5	119	92	27	83	54	29	0	0	0
스포츠과학정보전공	1	0	3	2	1	0	0	0	0	0	0
스포츠과학학과	2	0	59	42	17	0	0	0	0	0	0
스포츠기록분석전공	1	1	23	21	2	1	0	1	1	1	0
스포츠레저학과	2	1	43	24	19	45	32	13	0	0	0
스포츠산업정보학과	1	1	22	14	8	10	8	2	0	0	0
스포츠예술산업학과	1	0	7	2	5	0	0	0	0	0	0
스포츠지도전공	2	0	31	30	1	0	0	0	1	1	0
스포츠지도학과	1	0	12	11	1	0	0	0	0	0	0
스포츠학과	2	0	65	48	17	0	0	0	0	0	0
스포츠IT융합학과	1	1	3	3	0	1	1	0	0	0	0

학과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	박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심신통합치유학과	1	1	25	5	20	16	4	12	3	2	1
야구학과	1	0	15	15	0	0	0	0	0	0	0
요가학과	1	0	31	5	26	0	0	0	0	0	0
운동건강학과	1	0	11	8	3	0	0	0	0	0	0
운동생리·처방학과	1	0	6	5	1	0	0	0	0	0	0
운동처방과	1	0	1	1	0	0	0	0	0	0	0
비만클리닉학과	1	0	1	1	0	0	0	0	0	0	0
임상건강운동학과	1	0	4	2	2	0	0	0	0	0	0
전통무용전공	1	0	36	0	36	0	0	0	1	1	0
체력관리학과	1	0	6	6	0	0	0	0	0	0	0
체육 및 여가교육전공	1	0	59	44	15	0	0	0	0	0	0
체육과학과	2	2	56	37	19	17	2	15	0	0	0
체육무도학과	1	0	14	11	3	0	0	0	0	0	0
체육전공	1	0	7	5	2	0	0	0	0	0	0
체육학과	60	57	1,000	682	318	970	684	286	0	0	0
체육학과(사회체육학전공)	1	0	3	2	1	0	0	0	0	0	0
체육학과(체육학전공)	1	0	6	5	1	0	0	0	0	0	0
체육학전공	2	0	33	25	8	0	0	0	0	0	0
축구학과	2	0	44	44	0	0	0	0	0	0	0
태권도교육전공	1	0	10	7	3	0	0	0	0	0	0
태권도전공	1	0	36	34	2	0	0	0	0	0	0
태권도학과	4	1	104	90	14	14	13	1	0	0	0
특수체육학과	2	1	22	15	7	10	7	3	0	0	0
표현예술학과	1	0	7	3	4	0	0	0	2	0	2
항공스포츠학과	1	0	3	3	0	0	0	0	0	0	0

※ 한국교육개발원(2012. 12월 기준)

제3절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

1. 체육지도자 양성제도의 개요

1) 체육지도자 종류

현행 체육지도자 양성제도의 목적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국가가 공인자격을 부여하여 엘리트체육과 국민체육 진흥에 부합할 수 있는 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1조에 의하면 체육지도자는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된다.

경기지도자는 해당 종목 전문체육분야의 코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1급과 2급으로 구분되고, 생활체육지도자는 해당 종목 생활체육분야의 코치로서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 표 9-9 경기지도자의 자격 요건

자 격 구 분		응 시 자 격
1급 경기지도자		①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체육 분야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경기경력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2급 경기지도자	일반과정	① 대학교 졸업(예정)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② 체육 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사람 ③ 전문대학 졸업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④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졸업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대표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부여	① 2005년 이전 입학한 대학교의 경기지도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사람으로서 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사람 ②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2급 경기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평균 80/100 이상인 사람 ③ 학교체육교사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경기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④ 경기지도 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경기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추가취득	①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체육과학연구원(2012). 내부자료

■ 표 9-10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

자격구분		응 시 자 격
1급 생활체육지도자 (운동처방)	일반과정	①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수 경력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체육 분야에 관한 박사나 석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사람 ③ 운동처방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사람
	특별과정	① 운동처방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운동처방분야의 종사기간 또는 연구·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급 생활체육지도자 (운동지도)	일반과정	①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수 경력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체육 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사람 ③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체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선수 경력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특별과정	① 1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② 학교체육교사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자격부여	① 2005년 이전 입학한 대학교의 사회(생활)체육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사람으로서 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사람 ②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2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평균 80/100 이상인 사람
	추가취득	①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급 생활체육지도자 (운동지도)	일반과정	① 만18세 이상인 사람
	특별과정	①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② 체육에 관한 연구·지도 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자격부여	① 2005년 이전 입학한 대학교의 체육 관련학과 및 전문대학의 사회(생활)체육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사람으로서 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사람 ②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서 3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평균 80/100 이상인 사람
	추가취득	①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체육과학연구원(2012). 내부자료

2) 체육지도자 양성 절차

체육지도자 자격은 체육지도자자격검정원이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신문 등 언론에 공고하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이를 보고 지원서를 제출하여 시험과 연수 등 해당 과정을 이수하면 부여된다. 체육과학연구원은 1급 경기지도자와 1급 생활체육지도자 및 2급 생활체육지도자 과정의 접수연수검정업무와 3급 생활체육지도자 검정업

무를 담당하며, 2급 경기지도자 및 2급 생활체육지도자와 3급 생활체육지도자 과정은 체육과학연구원의 지도감독 하에 지정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과학연구원 체육지도자연수원, 급별 지정연수원의 체육지도자 양성 절차는 (그림 9-1)과 같다.



그림 9-1 체육지도자 양성절차

3) 체육지도자 양성 기관 지정 현황

체육지도자 양성기관은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과 경기지도자 연수원으로 구분된다.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의 경우, 체육과학연구원이 1급과 2급 지도자 연수와 자격검정, 3급 지도자 자격 검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원광대학교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이 2008년부터 2급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3급 생활체육지도자 연수는 29개 연수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기관 현황은 <표 9-11>과 같다.

■ 표 9-11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기관 현황

급 별	연 수 원		자 격 검 정 기 관	
	연 수 원 명	지정년도	검 정 기 관 명	지정년도
1 급	체육과학연구원	'95. 5. 3	체육과학연구원	'95. 5. 3
2 급	체육과학연구원 원광대학교	'91. 10. 17 '08. 12. 17	체육과학연구원	'91. 10. 17
3 급 (29개)	용인대 충남대 조성대 동아대 제주대 국기원 계명대 한국프로골프협회 전북대 강원대 충청대 인천대 군부경대 한국국제대 공주대 신라대 경희대 건국대 순천대 안동대 연세대 한국체대 한동대 중앙대 명지전문대 호서대 경남대 송실대	'88. 11. 29 '88. 11. 29 '88. 11. 29 '88. 11. 29 '90. 9. 24 '90. 2. 23 '92. 2. 20 '92. 12. 22 '96. 9. 20 '96. 9. 20 '97. 10. 23 '97. 10. 23 '98. 1. 21 '98. 1. 21 '98. 1. 21 '98. 1. 21 '02. 5. 29 '02. 5. 29 '02. 5. 29 '02. 5. 29 '03. 7. 1 '06. 12. 26 '10. 2. 3 '11. 5. 23 '11. 5. 23 '11. 5. 23 '11. 10. 24 '12. 10. 30 '12. 12. 20	체육과학연구원	'91. 10. 17

※ 체육과학연구원(2012). 내부자료

경기지도자는 체육과학연구원이 1급 경기지도자의 연수와 자격검정, 2급 경기지도자의 자격검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7개 기관이 2급 경기지도자의 연수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지도자 양성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9-12 경기지도자 양성 기관

구 분	급 별	연 수 원		자 격 검 정 기 관	
		연 수 원 명	지정년도	검 정 기 관 명	지정년도
경기 지도자	1 급	체육과학연구원	'89. 11. 1	체육과학연구원	'90. 8. 8
	2 급 (7개)	한체대 국기원 동아대 조선대 전남대 충남대 신라대	'83. 8. 31 '83. 12. 1 '92. 5. 22 '92. 5. 22 '92. 5. 22 '96. 9. 20 '02. 5. 29	체육과학연구원	'94. 1. 1

※ 체육과학연구원(2012). 내부자료

4) 양성 종목

경기지도자 양성종목은 주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종목으로서 1, 2급 경기지도자는 54개 종목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의 운동처방분야 1종목, 2, 3급의 42종목을 대상으로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종목은 매년 체육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조정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경기지도자의 경우, 2004년에는 47종목이었으나 2005년 10월에 당구, 스쿼시, 바이애슬론 종목이, 2010년에는 루지봅슬레이가 루지와 봅슬레이스켈레톤으로 분화되고 공수도, 댄스스포츠, 태권 종목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총 54종목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2004년에는 2급 41종목, 3급 23종목으로 양성 종목이 각각 달랐으나, 2005년 10월에 2급과 3급을 총 42종목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 표 9-13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종목

자격구분	자 격 종 목
1~2급 경기지도자 (54종목)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공수도, 댄스스포츠, 태권
1급 생활체육지도자	운동처방분야
2~3급 생활체육지도자 (42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 체육과학연구원(2012). 내부자료

2. 경기지도자 양성 현황

1) 연도별 양성 현황

연도별 경기지도자 양성현황은 74년 처음으로 경기지도자 양성을 시작한 이래 1급은 90년 전까지는 연도별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양성이 되었다가 90년 이후부터는 매년 지속적으로 양성이 되고 있다. 2급 경기지도자의 경우에는 74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지도자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현재 1급 998명(남: 857명, 여: 141명), 2급 27,544명(남: 23,444명, 여: 4,100명) 등 총 28,542명(남: 24,301명, 여: 4,241명)의 경기지도자가 양성·배출되었다. 경기지도자들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훈련 지원을 통해 엘리트스포츠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표 9-14 연도별 경기지도자 양성 현황

(단위 : 명)

연도	1급경기		2급경기		계		연도	1급경기		2급경기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74	-	-	131	6	131	6	1994	32	3	255	38	287	41
1975	16	1	57	3	73	4	1995	17	1	451	52	468	53
1976	-	-	37	2	37	2	1996	18	2	404	36	422	38
1977	-	-	35	1	35	1	1997	8	2	709	77	717	79
1978	-	-	51	7	51	7	1998	24	4	933	72	957	76
1979	22	-	59	2	81	2	1999	44	1	751	101	795	102
1980	25	2	20	2	45	4	2000	23	3	683	84	706	87
1981	-	-	86	6	86	6	2001	33	3	721	127	754	130
1982	-	-	235	15	235	15	2002	15	6	617	119	632	125
1983	-	-	354	18	354	18	2003	23	7	666	161	689	168
1984	-	-	491	28	491	28	2004	22	4	1,029	175	1,051	179
1985	-	-	474	25	474	25	2005	28	6	901	183	929	189
1986	-	-	530	41	530	41	2006	56	2	1,116	243	1,172	245
1987	-	-	577	56	577	56	2007	59	11	1,162	289	1,221	300
1988	-	-	478	45	478	45	2008	60	16	1,094	275	1,154	291
1989	-	-	275	20	275	20	2009	47	9	1,327	326	1,374	335
1990	17	5	613	73	630	78	2010	55	21	1,454	344	1,509	365
1991	13	1	297	49	310	50	2011	53	13	1,743	424	1,796	437
1992	35	4	600	52	635	56	2012	77	11	1,535	457	1,612	468
1993	35	3	493	66	528	69	계	857	141	23,444	4,100	24,301	4,241

※ 체육과학연구원(2012), 경기지도자연수원

2) 종목별 양성 현황

경기지도자 종목별 양성 현황은 1, 2급을 포함할 경우 태권도가 6,5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육상 1,929명, 야구 1,924명, 축구 1,477명, 수영 1,12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급별로 다시 구분하면, 1급 경기지도자의 경우에는 사격이 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육상 62명, 수영 54명, 태권도 42명, 골프 4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2급 경기지도자의 경우에는 태권도가 6,4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야구 1,914

명, 육상 1,867명, 축구 1,456명, 수영 1,069명 순으로 나타나 전체 경기지도자 순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 경기지도자 양성현황은 <표 9-15>와 같다.

■ 표 9-15 종목별 경기지도자 양성 현황

(단위 : 명)

종목	계	1급 경기	2급 경기	종목	계	1급 경기	2급 경기
검도	244	2	242	씨름	262	2	260
골프	579	41	538	아이스하키	156	24	132
궁도	88	5	83	야구	1,924	10	1,914
근대5종	180	16	164	양궁	521	22	499
농구	749	12	737	역도	451	31	420
당구	180	8	172	요트	282	25	257
력비	130	4	126	우슈	264	14	250
레슬링	454	40	414	유도	643	16	627
루지	10	2	8	육상	1,929	62	1,867
봅슬레이스켈레톤	6	1	5	인라인롤러	180	15	165
바이애슬론	32	5	27	정구	263	8	255
배구	853	29	824	조정	228	12	216
배드민턴	608	35	573	체조	579	39	540
보디빌딩	523	9	514	축구	1,477	21	1,456
복싱	586	22	564	카누	230	15	215
볼링	518	19	499	컬링	102	12	90
빙상	388	15	373	탁구	637	27	610
사격	800	73	727	태권도	6,501	42	6,459
사이클	354	28	326	테니스	863	16	847
산악	326	12	314	트라이애슬론	100	10	90
세팍타크로	62	4	58	펜싱	386	19	367
소프트볼	101	8	93	하키	308	30	278
수상스키	87	4	83	핸드볼	453	21	432
수영	1,123	54	1,069	공수도	31	2	29
수중	48	3	45	댄스스포츠	29	-	29
스쿼시	93	4	89	택견	102	1	101
스키	284	26	258	전체	28,542	998	27,544
승마	235	21	214				

※ 체육과학연구원(2012), 경기지도자 연수원

3.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1) 연도별 양성 현황

연도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현황은 <표 9-16>과 같다. 생활체육지도자는 1987년 2급

783명이 양성된 것을 시작으로, 그리고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에는 1995년 처음으로 17명이 양성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양성·배출되고 있다. 2012년 현재 1급 877명(남: 598명, 여: 279명), 2급 8,224명(남: 6,140명, 여: 2,084명), 3급 159,602명(남: 120,237명, 여: 39,365명) 등 총 168,703명(남: 126,975명, 여: 41,728명)이 양성·배출되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생활체육의 진흥의 중심축으로서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표 9-16 연도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단위 : 명)

연도	1급생활		2급생활		3급생활		계		연도	1급생활		2급생활		3급생활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87			564	219			564	219	2001	34	6	344	137	4,594	1,470	4,972	1,613
1988									2002	32	16	314	102	5,250	1,804	5,596	1,922
1989			331	104	2,126	503	2,457	607	2003	34	13	260	95	5,182	1,752	5,476	1,860
1990					2,231	594	2,231	594	2004	35	15	458	151	6,523	2,076	7,016	2,242
1991					3,127	1,353	3,127	1,353	2005	36	29	341	107	6,423	2,126	6,800	2,262
1992			152	92	691	455	843	547	2006	46	15	353	105	7,704	2,410	8,103	2,530
1993			61	47	2,553	600	2,614	647	2007	43	30	302	70	7,770	2,494	8,115	2,594
1994			145	72	2,520	611	2,665	683	2008	35	22	295	80	8,119	2,564	8,449	2,666
1995	5	12	135	58	2,602	659	2,742	729	2009	49	12	307	62	6,713	2,269	7,069	2,343
1996	17	4	107	30	2,947	830	3,071	864	2010	49	21	258	61	8,200	3,011	8,507	3,093
1997	13	10	125	33	3,223	882	3,361	925	2011	36	21	225	56	7,686	2,744	7,947	2,821
1998	34	18	280	121	4,349	1,367	4,663	1,506	2012	38	13	241	50	7,977	3,037	8,256	3,100
1999	36	12	259	111	7,542	2,402	7,837	2,525	계	598	279	6,140	2,084	120,237	39,365	126,975	41,728
2000	26	10	283	121	4,185	1,352	4,494	1,483									

※ 체육과학연구원(2012),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2) 종목별 양성 현황

종목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현황은 <표 9-17>과 같다. 2012년 현재 종목별 생활체육지도자는 70개 종목에서 168,703명이 양성·배출되었다. 종목별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보디빌딩이 43,7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태권도 21,216명, 수영 20,272명, 에어로빅 11,980명, 배드민턴 9,42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급별로 구분하면,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에는 운동처방 단일 종목으로 877명이 양성되었다. 2급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에는 수영이 1,4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디빌딩 1,455명, 테니스 555명, 축구 469명, 배드민턴 45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에는 보디빌딩이 42,3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태권도 20,917명, 수영 18,814명, 에어로빅 11,766명, 배드민턴 8,97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9-17 종목별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단위 : 명)

종목	계	1급 생활	2급 생활	3급 생활	종목	계	1급 생활	2급 생활	3급 생활
검도	1,504	-	16	1,488	씨름	290	-	22	268
게이트볼	2,086	-	97	1,989	야구	862	-	130	732
격투기	105	-	-	105	양궁	4	-	4	-
골프	9,061	-	443	8,618	에어로빅	11,980	-	214	11,766
공권도	17	-	-	17	오리엔티어링	104	-	20	84
국선도	62	-	-	62	왕도특수무술	10	-	-	10
국술	69	-	-	69	요트	360	-	3	357
궁중무술	33	-	-	33	요가	387	-	-	387
권격도	49	-	-	49	우슈	909	-	28	881
복싱	1,557	-	44	1,513	윈드서핑	279	-	85	194
농구	3,793	-	378	3,415	유도	2,145	-	65	2,080
당구	634	-	26	608	유술	5	-	-	5
도봉술	8	-	-	8	육상	33	-	33	-
라켓볼	222	-	9	213	인라인롤러	541	-	101	440
럭비	96	-	17	79	정구	169	-	23	146
레슬링	352	-	26	326	조정	165	-	6	159
레크리에이션	820	-	113	707	축구	5,655	-	469	5,186
리듬체조	1,021	-	214	807	카누	208	-	21	187
배구	1,927	-	247	1,680	킥복싱	151	-	-	151
배드민턴	9,426	-	450	8,976	탁구	3,202	-	211	2,991
보디빌딩	43,782	-	1,455	42,327	태권도	21,216	-	299	20,917
볼링	6,387	-	261	6,126	태수도	3	-	-	3
볼무도	28	-	-	28	테니스	5,189	-	555	4,634
빙상	963	-	51	912	통일무술	18	-	-	18
사이클	223	-	30	193	특공무술	50	-	-	50
산악자전거	176	-	32	144	한무도	23	-	-	23
세팍타크로	22	-	10	12	합기도	1,677	-	-	1,677
수박도	23	-	-	23	핸드볼	11	-	11	-
수상스키	223	-	57	166	행글라이딩	7	-	3	4
수영	20,272	-	1,485	18,814	활기도	1,018	-	-	1,018
수중	170	-	48	122	활법	596	-	-	596
스쿼시	2,847	-	129	2,718	화랑도	18	-	-	18
스키	1,426	-	286	1,140	회전무술	33	-	-	33
승마	1,089	-	24	1,065	운동처방	877	877	-	-
십팔기	24	-	-	24	전체	168,703	877	8,224	159,602
십팔반무예	11	-	-	11					

※ 체육과학연구원(2012),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

※ 1.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운동처방분야업무 종사자로서 자격종목은 없음

4. 체육지도자 배치·활용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과학적 운동처방과 지도, 그리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각종 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배치된다. 체육지도자 배치는 크게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부문 의무배치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지원을 통한 공공부문에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1) 민간부문 배치·활용

민간부문에서는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의 체육지도자 배치규정에 근거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은 <표 9-18>과 같다.

■ 표 9-18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 모	배치인원
골프장업	•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 골프코스 36홀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스키장업	• 슬로프 10면 이하 • 슬로프 10면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요트장업	• 요트 20척 이하 • 요트 20척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조정장업	• 조정 20척 이하 • 조정 20척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카누장업	• 카누 20척 이하 • 카누 20척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빙상장업	•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 •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승마장업	• 말 20마리 이하 • 말 20마리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수영장업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1인 이상 2인 이상
체육도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골프연습장업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 50타석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체력단련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당해 종목의 체육지도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012년 1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체육지도자 1급 380명, 2급 1,135명, 3급 23,957명이 배치되어 총 25,422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하여 전체 배치인원은 676명(2.7%)이 증가하였는데, 급별로는 1급 체육지도자가 186명(96%)의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급 지도자는 25명(2.3%), 3급은 465명(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사회적 수요와 역할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많은 생활체육 참여자들이 전문적인 지도를 통해 생활체육 참여효과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지도자 양성 및 배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표 9-19 업종별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단위 : 명)

구분	업소수	지도자배치				
		계	1급	2급	3급	
합계	56,422	25,472	380	1,135	23,957	
등록 체육 시설	소계	461	426	6	37	383
	골프장	440	416	6	23	361
	스키장	19	17	-	14	22
	자동차경주장	2	2	-	-	-
신고 체육 시설	소계	55,961	25,046	374	1,098	23,574
	요트장	21	39	3	22	14
	조정장	-	-	-	-	-
	카누장	1	1	-	-	1
	빙상장	38	48	-	15	33
	승마장	138	157	3	27	127
	종합체육시설	236	1,345	9	106	1,230
	수영장	579	1,076	21	58	997
	체육도장	13,660	13,253	176	608	12,469
	골프연습장	9,575	2,044	82	110	1,852
	체력단련장	6,608	7,050	80	151	6,819
	당구장	23,855	1	-	1	-
	썰매장	129	1	-	-	1
	무도장	70	-	-	-	-
무도학원	1,051	31	-	-	31	

※ 비고 1. 체육시설업종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종목은 기재하지 아니함

2. 대상수는 : 업체수 + 규모에 따른 추가 배치 인원수임

※ 경영정보조사(2012). 전국 등록·신고체육시설업 현황(2011년 12월말 기준)

업종별로는 등록체육시설업이 461개소에 426명의 지도자를 배치하여 평균 0.92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신고체육시설업도 55,961개소에 25,046명을 배치하여 평균 0.45명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공공부문의 배치·활용

2000년부터 시작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의 현장 지원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체육활동을 지도하고 신규 프로그램 보급을 확산시킴으로써 대국민 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2006년도에는 ‘청년전문인력 고용 지원계획’에 따라 처음으로 995명의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였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인건비 50%씩을 부담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수당 등을 지원하였다. 이후 국고지원을 기금지원으로 대체하고 matching fund 형태로 지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전일제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일제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은 <표 9-20>과 같다.

■ 표 9-20 2012년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실적

구분	지도자수	운영횟수	참가자수	구분	지도자수	운영횟수	참가자수
계	1400	572,543	11,735,840	강원	109	45,158	909,663
서울	164	54,233	1,501,324	충북	74	24,156	578,418
부산	72	33,485	715,922	충남	80	31,270	541,401
대구	56	27,423	445,591	전북	71	23,782	421,089
인천	50	22,249	364,643	전남	110	49,412	978,367
광주	43	20,134	405,130	경북	117	51,850	929,123
대전	87	38,851	583,426	경남	123	56,285	1,101,958
울산	48	17,996	551,473	제주	25	8,034	189,829
경기	171	68,225	1,518,483	-	-	-	-

※ 국민생활체육회(2012). 내부자료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실적을 살펴보면, 배치인원은 총 1,400명이며 이는 전년도와 변화가 없지만, 2009년, 2010년도와 비교할 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실적의 감소 및 정체 원인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매칭 펀드 지원방식에 따른 재정부담과 임금 및 근무환경 등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문제로 지도자들이 지원을 회피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할 및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도자 양성 및 처우개선 등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인구수가 많은 경기도가 17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이 164명, 경남이 123명, 경북이 117명, 전남 11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배치인원이 작은 시도는 제주 25명, 광주 43명, 울산 48명, 인천 50명, 대구 56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의 총 지도횟수는 572,543회(15,344회, 2.6%)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참가자수는 11,735,840명(694,846명, 6.3%)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내실화가 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2006년도부터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전담지도자 현장배치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방문하여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사업으로서, 노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도가 수월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방문 활동으로 호응도 및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는 노인지도자에서 어르신전담지도자로 명칭을 바꾸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실적은 <표 9-21>과 같다.

■ 표 9-21 2012년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실적

구분	지도자수	운영횟수	참가자수	구분	지도자수	운영횟수	참가자수
계	812	317,735	6,681,879	강원	54	20,724	371,232
서울	116	40,122	948,533	충북	43	15,079	464,555
부산	30	13,572	282,199	충남	46	17,264	363,638
대구	31	14,909	257,486	전북	50	14,629	315,695
인천	28	13,532	219,257	전남	88	32,665	663,348
광주	21	9,394	204,393	경북	78	28,921	587,688
대전	24	12,306	161,608	경남	61	30,330	568,249
울산	15	5,194	105,015	제주	15	3,967	131,549
경기	112	45,127	1,037,434	-	-	-	-

※ 국민생활체육회(2012). 내부자료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실적을 살펴보면, 배치인원은 총 812명이며 상대적으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인원이 변화가 없는 것과는 달리 어르신전담지도자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262명(47.6%)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년 연속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100세 시대 대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노인참여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생활체육지도자와 달리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인 서울이 1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112명,

전남 88명, 경북 78, 경남 6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작은 시도는 대구 31명, 부산 30명, 광주 21명, 대전 24명, 제주 및 울산 15명으로 나타났다. 어르신전담지도자의 총 지도횟수는 317,735회 이며, 참가자수는 6,681,879명에 이른다. 지도횟수(81,792회, 34.7%) 및 참가자수(1,903,652명, 39.8%) 모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고령화 대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생활체육광장지도자는 매일 새벽(06:00~07:00)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리한 시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1일 1시간 이상 지역별 특성과 장소에 맞는 종목을 선정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현장지도와 아침광장에어로빅 및 생활체조 지도가 중심이 되고 있다. 광장지도자 배치실적은 다음 <표 9-2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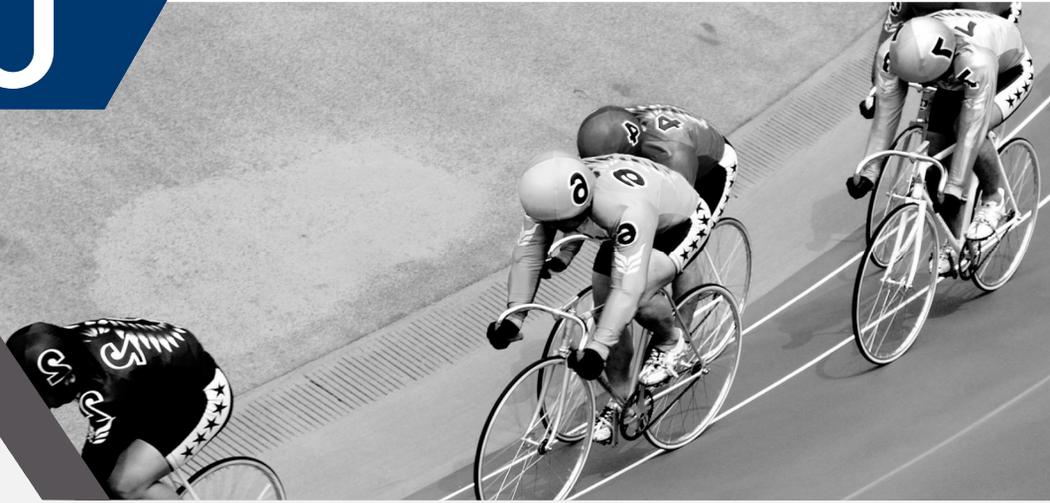
■ 표 9-22 2012년 광장지도자 배치 실적

구분	지도자수	운영횟수	참가자수	구분	지도자수	운영횟수	참가자수
계	434	60,981	1,857,131	강원	30	3,824	86,406
서울	35	5,116	202,864	충북	25	3,574	110,229
부산	32	4,795	146,468	충남	26	3,842	78,128
대구	35	5,165	198,608	전북	31	4,252	99,426
인천	20	2,754	46,592	전남	36	4,808	172,674
광주	21	2,856	96,896	경북	30	4,143	118,171
대전	22	3,173	106,726	경남	37	5,165	128,414
울산	14	1,833	60,752	제주	10	1,605	82,239
경기	30	4,076	122,538	-	-	-	-

※ 국민생활체육회(2011). 내부자료

광장지도자 배치실적을 보면, 총 434명(86명, 16.5%)이 배치되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운영횟수는 4,337회(7.7%)가 증가한 60,981회, 참가자수는 53,628명(3%)이 증가한 1,857,131명인 것으로 나타나 광장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남이 36명, 서울과 대구가 각 35명, 전북 31명, 그리고 경기, 강원, 경북이 각 30명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작은 시도는 제주 10명, 울산 14명, 인천 20명, 광주 21명, 대전 22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



스포츠윤리

- // 제1절 개관
- // 제2절 (성)폭력
- // 제3절 승부조작
- // 제3절 불공정스포츠

Section

10 스포츠윤리

제1절 개관

오랫동안 스포츠는 국민통합 도모, 국가위상 제고, 경제적 창출 효과 등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특히 2008년 베이징하계올림픽과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각각 거둔 종합 5위는 1948년 생모리츠동계올림픽과 1948년 런던 하계올림픽 첫 올림픽 출전 이후 거둔 최고의 성적으로 기록되었다. 무엇보다도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리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4대 주요 국제대회’를 개최한 여섯 번째 국가(독일, 러시아,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로 손꼽히며 스포츠선진국이라 평가되는 해외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과 끊임없는 성장을 선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스포츠 발전과 약진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는 체육계의 근간을 흔드는 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되었다. 체육계 폭력(성폭력), 운동선수 병역기피, 입시비리, 스포츠 경기조작, 학교운동부의 비합리적 운영, 경기단체 비리, 선수 도핑 등 스포츠윤리에 어긋나는 문제점들은 그 동안 스포츠가 쌓은 업적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면서 한국 체육계에 대한 과거로부터 내려온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안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세계 경기력 5위라는 성과에 가려진

체육계의 어두운 단면을 변화시키기에는 늦은 감도 있지만 정부는 스포츠를 통해 선진국으로 한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명박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로 “공정한 사회의 건설”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공정’, ‘정의’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정치, 사회, 경제는 물론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그 동안 스포츠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공정한 ‘규칙’, ‘규정’을 통해 승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등 오랫동안 순수한 본질을 지켜왔다. 즉 어느 분야보다 스포츠분야는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적인 기준을 통해 발전·성장해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스포츠윤리에 관련된 주요어인 폭력, 승부조작, 도핑문제를 통해 한국체육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과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성)폭력

1. 현황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현황’에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현황은 2009년 1만 4,605명, 2010년 1만 9,949명, 2011년 2만 7,021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이러한 학교폭력을 그대로 반영한 듯 체육계 내에서도 지도자와 선배들의 구타, 심리적·신체적 폭력, 가혹행위, 폭언·욕설·비난·협박·괴롭힘·따돌림·놀림 등의 형태로 표출되면서 그 수치 또한 감소하지 않고 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2012년 『선수(성)폭력 실태조사』 2010년 대비 2012년 기준에 의하면 전체 폭력은 약 23% 감소('10년 51.6%, '12년 28.6%) 하였고, 성폭력은 17.1%('10년 26.6%, '12년 9.5%)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0-1 선수(성)폭력 현황

폭력	년 도		성폭력	년 도	
	2010(%)	2012(%)		2010(%)	2012(%)
구타	32.6	16.5	성희롱	26.4	9.5
심리적 폭력	45.4	14.8	성폭행	1.3	1.2
가혹행위	30	13.8	계	26.6	9.5
계	51.6	28.6			

* 출처 : 선수(성)폭력 실태조사(대한체육회, 2012)

학교급별, 종목별(개인·단체종목), 성별(남자·여자)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폭력건수가 대폭적으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별, 종목별, 성별에 따라 폭력 행태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대학 및 일반선수보다 중학생들의 구타, 심리적 폭력, 가혹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또한 대학 및 일반선수 보다 가혹행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단체종목이 개인종목보다 구타, 심리적 폭력, 가혹행위 모두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남자는 여자보다 구타와 가혹행위가 높은 편이지만 반면, 여자는 심리적 폭력이 남자보다 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10-2 2012년도 학교급별, 종목별, 성별 폭력 현황

구분		구타	심리적 폭력 (심리적/언어적)	가혹행위 (기합/얼차려)	계
학교급별	초등학생	9.2	11.2	7.4	16.7
	중학생	26.4	15.7	15.5	32.8
	고등학생	18.0	15.9	19.4	34.1
	대학 및 일반선수	11.8	16.9	14.5	32.6
종목별	개인종목	10.7	9.8	7.4	17.0
	단체종목	20.8	18.4	18.3	37.3
성별	남	19.3	14.7	15.3	30.4
	여	10.7	15.2	10.5	24.8
전체 평균		15.8	14.7	13.5	28.2

* 출처 : 선수(성)폭력실태조사(대한체육회, 2012)

한편, 학교급별, 종목별(개인·단체종목), 성별(남자·여자)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성폭력건수 또한 대폭적으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단체종목이 개인종목보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성희롱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0-3 2012년도 학교급별, 종목별, 성별 성폭력 현황

구분		성희롱	성폭력	계
학교급별	초등학생	9.8	1.3	9.8
	중학생	8.1	1.2	8.1
	고등학생	9.6	1.2	9.6
	대학 및 일반선수	10.6	0.9	10.6
종목별	개인종목	6.8	1.4	6.8
	단체종목	11.4	1.0	11.4
성별	남	8.5	1.4	8.5
	여	11.7	0.7	11.7
전체 평균		9.5	1.1	9.5

* 출처 : 선수(성)폭력실태조사(대한체육회, 2012)

2009년 6월에 구축된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익센터에서 접수된 폭력, 성폭력, 기타 민원 건수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폭력건수가 증가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나 그 동안 정부 및 유관기관의 선수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른 선수들의 인식 개선으로 인한 결과이며, 또한 국민들의 선수인권 인식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10-4 선수인권 침해 신고·상담 접수 현황

연도	폭력			성폭력			기타 민원			계		
	신고	상담	계	신고	상담	계	신고	상담	계	신고	상담	계
2008	7	-	7	2	-	2	-	-	0	9	-	9
2009	19	7	26	3	3	6	4	47	51	26	57	83
2010	34	114	148	5	11	16	47	285	332	86	410	496
2011	28	72	100	8	26	34	46	336	382	82	434	516
2012	39	83	122	8	21	29	13	296	309	60	400	460
계	127	276	403	26	61	87	110	964	1,074	263	1,301	1,564

* 출처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향상 사업결과보고서(2008~2012)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익센터에서 접수된 폭력, 성폭력, 기타 민원 관련 징계건수에 의하면 폭력, 성폭력의 경우 약 47.4%의 징계율을 보이며, 기타 민원을 포함할 경우 약 28.1%의 징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10-5 스포츠인권익센터 신고대비 징계건수

연도	폭력		성폭력		기타 민원		계	
	신고	징계	신고	징계	신고	징계	신고	징계
2008	7	3	2	1	-	-	9	4
2009	19	15	3	3	4	-	26	18
2010	34	16	5	2	47	1	86	19
2011	28	13	8	5	46	-	82	18
2012	39	11	8	3	13	1	60	15
계	127	58	26	14	110	2	263	74
징계비율		45.6%		53.8%		1.8%		28.1%

* 출처 : 대한체육회(2013)

성희롱 가해자는 선배선수(54.4%), 동료선수(26.3%), 코치(22.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지도자 위주로 이루어진 기존 교육에서 선배나 동료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남자선수의 경우 적극적인 대처(51.8%)를 하고 있는 반면 여자선수의 경우 소극적으로 대처(70.6%)하고 있으므로 여자선수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교육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10-6 성희롱 경험 시 대처법 현황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	당혹(혹은 무서움)해서 아무런 행동을 못함	싫다. 하지 말라고 분명히 요구	상대방에게 똑같은 행동을 함	소리를 지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함	기타
남	11.1	18.5	40.7	3.7	3.7	3.7	18.5
여	29.4	41.2	11.8	0	0	0	17.6

아울러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을 위해 2007년 3,328명이었던 것이 2012년 12월 말 기준 24,301명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는 등 예방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실천을 확인할 수 있다.

2. 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정부는 ‘스포츠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체육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현장관계자로 구성된 특별팀(TF)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해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운동선수 및 지도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장애인선수에 대한 실태조사는 용인대학교 특수체육연구소에서 실시하였다. 체육계에 만연되어 있는 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는 ‘즐겁게 운동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스포츠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 ‘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우선 ‘피해선수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지원대상이 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선수와 지도자에 한정되었던 것을 장애인과 프로선수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인선수 전담 상담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장애인선수의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포츠인권익센터의 기능을 보강하도록 조치하였다. 둘째, 각종 대회 및 훈련 현장, 학교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 및 상담을 확대·실시하고,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피해 선수에 대한 의료 및 심리치료 등 통합지원

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신고상담 후 선수생활 지속, 신분노출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한 제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불이익처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넷째, 현재 각 체육단체별 징계 시 폭력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거나, 행위의 경중에 대한 구분 없이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었다. 이에 체육단체별 ‘징계양형기준’을 마련하되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폭력 행위의 종류 및 경중, 과실정도에 따른 구체적 징계 기준을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섯째, 현재 단체별 징계기구 구성 인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부족하고, 객관성 확보 문제가 우선시되어 조사권과 징계권을 분리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여섯째, 현재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조직운영평가에 윤리성 평가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나 지표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조직운영평가의 윤리성 지표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가중치를 확대하여 매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일곱째, 지도자 채용심사 시 과거 폭력지도자가 징계기간 중 현장에 복귀하고, 자질검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 임명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존 선수등록시스템을 보완하여 지도자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취업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채용심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여덟째, 감독과 코치의 지도 경력 및 능력을 선수(팀) 실적으로 평가하는 현실, 관행적으로 지속되어온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훈련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 훈련 기법을 개발·보급하고, 지도자 리더십 우수모델을 발굴·홍보하는 한편 리더십 우수지도자에 대한 시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홉째, 학교운동부의 선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적 위주였던 지도자의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학생선수가 참여하는 대회 시상제도를 개선하는 등 운동부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학교운동부 컨설팅, 학교 내 학생선수 상담을 상시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 열째, 지도자 양성과정에서 폭력, 성폭력 예방 등 사전 교육과 인권교육을 확대 실시하며, 학교 스포츠지도자 인성 교육을 더욱 체계화·공고화하는 것은 물론 선수를 비롯한 지도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연중으로 실시·확대할 계획이다.

제3절 승부조작

1. 현황 및 문제점

2012년 한해 동안 프로스포츠, 온라인게임, 올림픽대회까지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외로 그 충격은 매우 컸다. 2011년부터 시작된 축구(2011), 야구·배구(2012), 농구(2013) 등 4대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자국팀과 대전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저주했던 배드민턴 승부조작, 국가대표 선발경기에서의 승부조작 등으로 인해 한국스포츠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준우승, 2012시즌 프로야구 700만 최다관중 기록,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사상 최초로 축구에서 동메달 획득 등으로 활짝 피었던 한국프로스포츠는 승부조작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승부조작은 대부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으로 불법배팅 등 도박과 관련이 깊고, 이외 심판의 금품수수향응, 지도자 또는 협회관계자의 고의 패배 또는 담합 등 고의적 승패 조정, 선수의 불법도박 등이 있다. 대부분 이들의 공통점은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동안 발생한 국내 대표적인 승부조작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10-7 승부조작 사례

연도	사건	원인	처벌 사항
2010	제5회 성남시장배 전국 중고 남녀 쇼트트랙·스피드 스케이팅대회 경기조작	대회성적 및 대학진학	선수징계, 관계자 전원 사퇴
	고려대 축구부 감독 매수	대회성적 및 대학진학	해임, 구속기소
2011	프로축구 승부조작	불법도박	선수 40명 영구제명, 6명 5년 보호감찰, 사회봉사
2012	프로야구, 프로배구 승부조작	불법도박	선수 영구제명, 무기한 자격정지, 징역 및 추징금 사회봉사, 배구관련 종사 업무 금지
	런던올림픽대회 배드민턴 여자복식에서 고의적으로 저주기	대회성적	국가대표 자격박탈, 감독코치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정지 4년, 향후 6개월 동안 선수들의 국내외 대회 출전정지

특히 불법도박 규모가 팽창하는 시기와 맞물려 선수, 감독, 심판 등이 브로커에 매수되어 승부조작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맞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방지책과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2012년 정부는 스포츠 경기조작 외에 학교운동부 비합리적 운영, 경기단체 비리 등 체육계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부조리를 척결하고, 스포츠에 대한 가치 및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외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대책 추진과 관련된 체육단체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경기조작 관련 대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며, ‘스포츠경기의 공정성 회복’이라는 목표아래 세부과제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10-8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제도(문화체육관광부, 2012)

방 향	내 용
무관용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부조작 관련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 적용 - 소속된 각 구단들은 선수들의 불법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 부여 - 연4회 승부조작 예방 교육 이수 의무화 - 내부고발에 따른 포상금 인상
임행감찰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조작 감시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제 구축 - 자진신고자 감면제 시행 - 프로구단 선수 최저연봉제 도입 및 연금제도 확대 등 선수복지 증진 추진
불법스포츠포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합동 단속 강화 - 불법스포츠포도박 사이트 차단에 소요되는 심의 기간 단축 - 불법스포츠포도박 사이트 운영 상황 등 정보를 프로경기단체에 제공 - 통합콜센터 설치 및 운영

■ 표 10-9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구체적 제도 방안(문화체육관광부, 2012)

과 제	세 부 과 제	주관 및 협조기관
경기조작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 관계자, 구단 처벌강화 및 상벌규정(규약)마련(공동 표준안, 연맹별 규정) - 선수, 지도자 등 영구제명, 자격정지 - 관련구단 지원금 축소 또는 리그퇴출, 구단퇴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체육진흥법 개정 홍보	○ 불법스포츠 도박행위자 처벌 홍보 -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조작 상시모니터링 체제구축운용	○ 경기감독관 기능 확대 - 경기조작 징후포착 시 경기 즉각 중단, 경기 후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 감독관업무포함 매뉴얼 작성보완 ○ 암행감찰제도 도입 : 경기조작 사전 첩보수집, 보고체계 강화 - 야구에서 시범운영 - 야구 → 전 종목 확대 ※ KBO사무총장(위원장), 각 연맹사무총장을 위원으로 구성(축구, 농구, 여자농구, 배구) - 추진경과 : 퇴직경찰 3명 추천 ○ 프로스포츠 공정센터 운영 - 모든 경기내용 사후 모니터링으로 부정행위 의심자 적발 및 조치 - 프로연맹은 구단과 전용 핫라인 설치 (공단의 통합 콜센터와 상시 전용라인 운용)	문화체육관광부
예방교육 및 자정활동 강화	○ 예방교육 강화(연간 1회→4회) - 질적 교육수준 개선 - 총 교육인원 : 4개 종목 1,293명 (축구 613명, 남자농구 166명, 여자농구 164명, 야구 350명) ○ 자정결의 제도화 - 선수입단 및 개막 경기 시 자정결의 시행, 계약서 및 서약서에 선수의무사항 구체화	문화체육관광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 처벌 감면제 도입 및 콜센터 운영	1. 내부고발에 대한 포상제도 대폭강화 ○ 포상금 규모 : 1000만원 ~ 1억원 - 축구(시행중), 기타 종목(4월~) ○ 자진신고 감면제(4월부터 도입) 2. 통합 콜센터 설립 운영 ○ 국민체육진흥공단 내 별도 조직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구단별 선수 최저 연봉제 및 연금지도확대	○ 최저연봉제(연 2,400만원 이상) 도입 및 연금지원금 증액완료	문화체육관광부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보완	1. 관계기관 실무회의 ○ 특별수사 실시 등 단속강화 ○ 연 2회(4월, 10월) 추진 2.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기간 단축(6주→2~3주) *평균 처리기간 12일로 단속 운영 중	공동(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경기조작방지를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및 국민공감대 형성	1. 사행심리 억제를 위한 환경조성(경륜-경정-경마) ○ 장외매장 단계적 축소, 장외매장 복합 레저문화공간 전환, 입장정원제 준수 ○ 전자카드제 도입 2. 국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	공동(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제4절 불공정스포츠

1. 현황 및 문제점

상술한 (성)폭력, 승부조작 외 대표선수 선발 부정,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 여학생의 체육활동 기회 부족, 도핑, 경기단체 회계 비리 및 투명성 부족, 소외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참여 기회 불평등 등 불공정 행태가 체육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우선,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에 관련하여 2008년 기준, 일반학생의 평균 수업일수는 161일 인 반면 운동부는 133일이며, 경기출전으로 인한 수업결손일이 평균 16일로 나타났다. 이는 대회 참여가 주목적이지만 끝내 운동선수의 상급학교 진학, 대학입학 특례, 직업 시장 진출이라는 목표를 위해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수업결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미흡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여학생의 체육활동 기회 부족과 관련하여 2010년 한국 전체 여성 52%가 ‘체육활동에 전혀 참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10대 여성 52%가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10대부터 70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과 참가경험이 부정적이고, 남성 위주의 체육수업 운영으로 여학생의 체육수업에 대한 흥미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기단체 회계 비리 및 투명성 부족과 관련하여 몇몇 경기단체의 체육계 임원 및 직원의 사적 운용, 훈련비 부정사용 등으로 체육계의 공정성을 관리 및 책임져야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넷째, 소외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참여 기회 불평등과 관련하여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제한 및 접근 가능 일상생활시설의 체육시설 설치가 미흡하고, 미디어 노출 비중이 매우 미약하며 또한 국민의 관심과 행정조직이나 인력 배치가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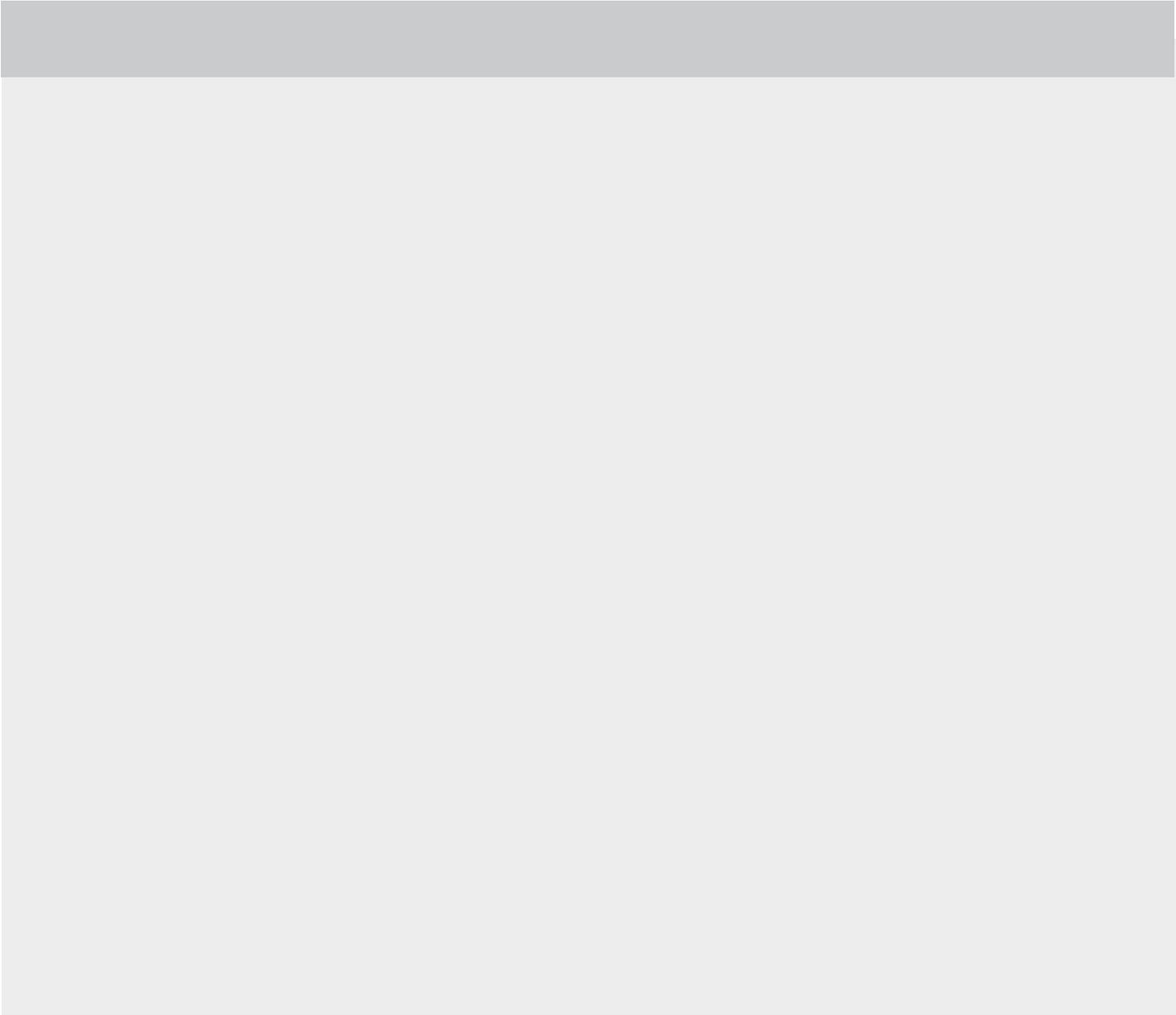
2. 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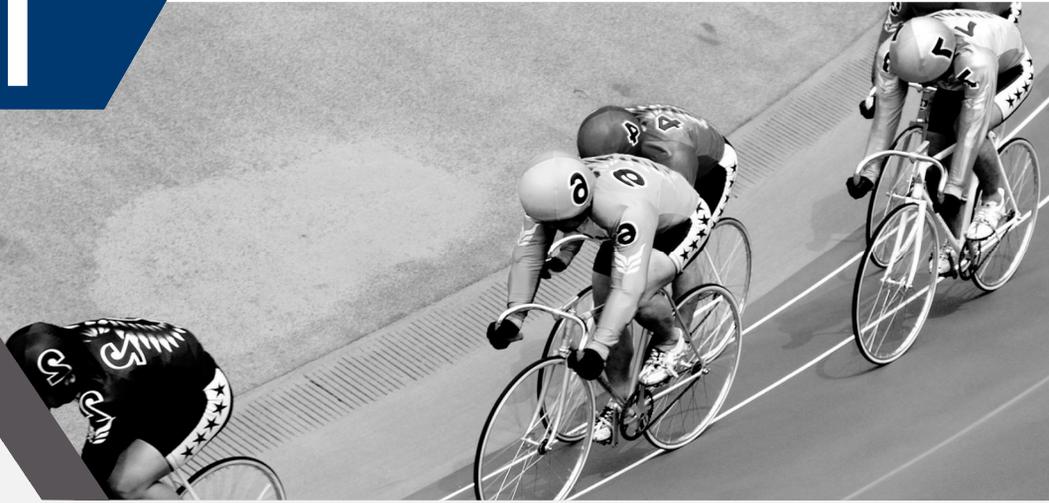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장관은 “경기조작은 체육계 일부의 문제가 잠깐 동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의 일부이자 활력소가 되었던 스포츠를 ‘공모에 의한 사기극’으로 변질시켜 국민들로부터 빼앗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통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향과 실천 의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학교운동부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운동부 수입의 학교회계 편입을 조기 정착화 하고, 개별적인 금전 제공을 금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고용 시 선수인권보호, 교육이수 의무 등을 포함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완, 실시시기도 앞당기기로 하였다. 무엇보다도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록제를 실시하여 비리 관련 지도자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재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구, 야구, 아이스하키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말 리그제를 다른 종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예산 회계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리 관련 임원이 기소되었을 경우, 구속여부에 관계없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 해 경상비 지원을 감축하며, 정기 감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예산 집행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에 의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계업무를 투명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 회계 법인에 위탁하고,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2012 Sport White Paper
체육백서





남북체육교류

- ／ 제1절 개관
- ／ 제2절 남북체육교류협력의 정책 환경
- ／ 제3절 남북체육교류협력 사업 현황

Section

11 남북체육교류

제1절 개관

1. 남북 체육교류·협력의 의의

스포츠는 적대적인 국가와 사회를 화해시키고 소통하는 수단이다. 미·중간 핑퐁(탁구) 외교는 체육교류의 힘을 상징한다. 체육교류의 힘은 오히려 적대적 정치상황을 뚫어낸 스포츠의 힘에서 나온다. 적대감이 커져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대화나, 교류가 단절되었을 때마저도 유일하게 교류를 가능케 하는 것은 체육교류이다. 그것은 스포츠의 속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체육교류가 국제체육기구의 중개 하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 국민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2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10세 이상 국민 중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1%였고,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이 62.9%로서 전체의 70.1%가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남북체육교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 ‘보통이다’고 응답한 사람은 21%이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은 각각 8.1%, 0.9%로 나타났다.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점

수는 3.67점이다. 2010년 조사결과 3.62점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 약화에 대한 우려와 달리 10대와 20대의 인식이 평균보다 낮지 않았다. 10대 20대의 점수는 각각 3.70점, 3.66점으로 나타났다.

남북 교류협력의 가장 효과적 수단은 체육교류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2011년에 실시한 「남북교류협력관련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정부가 현 상황에서라도 사회문화교류에 유연성을 갖는 것에 74.3%가 찬성했고, 반대는 21.2%였다. 현재의 경색 상황에서 향후 교류확대분야로는 스포츠분야 29.2%로 가장 높았다. 문화예술은 28.2%, 시민사회 분야는 14.6%, 교육학술 분야는 10.9%로 나타났다.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는 체육교류·협력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명문화된 바 있다.

첫째, 남과 북은 체육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 자료와 목록 등 정보 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정보자료의 상호교환은 특히 스포츠과학 연구 성과의 교환이 중요하다. 저널이나 국제경기동향분석서, 훈련지도서 등 연구 성과의 교환을 위한 공동 세미나, 연구 성과물의 교환(도서 주고받기), 국제학술회의에의 공동참석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둘째, 남과 북은 체육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기술협력의 예를 들면 훈련방법, 경기의 운용기술, 심리처방, 선수영양관리법 등 선수의 경기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과학적 지원을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다.

셋째, 체육부문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에서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인적 교류에는 체육부문 전문 인력(지도자와 선수, 교사, 교수, 연구자, 체육단체 관리자 등)교류와 생활체육 부문의 인적 교류가 해당될 수 있다.

넷째, 남과 북은 체육관련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도서출판물 등 유관 성과물의 교환 전시회를 진행할 수 있다.

다섯째, 남과 북은 쌍방이 정한데 따라서 상대측의 각종 체육관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여섯째, 국제무대의 교환행위가 특히 많은 체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외사업의 공동 진출 및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을 하는 것이다.

남북체육교류는 FIFA와 IOC 등 국제체육기구가 존재하고, 국제체육 외교의 장에서 남북관계자가 접촉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남북체육교류는 다른 분야의 교류보다 쉽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올림픽 운동 등 국제 스포츠 환경은 평화공존과 화합을 지향한다. 따라서 남북 체육교류는 평화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수월하며 국제적 이목도 끌 수 있는 효과적인 교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남북 간 체육교류·협력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타 분야의 교류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남북한 체육교류는 역사성을 갖는 문화행사로서 전통을 갖고 있다. 경평전은 1929년 시작된 경성(서울)과 평양 간에 축구교류전으로서 당시에는 민족의 관심사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또한 남북체육회담제의는 1960년 제17회 로마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위한 협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각종 국제대회와 올림픽, 아시안게임 개최마다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이 수차례 이루어졌다.

둘째, 체육교류·협력은 스포츠 자체가 갖는 대중성 때문에 민족공동체 성원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크다.

셋째, 남북한 체육은 타 분야에 비해 높은 동질성을 갖고 있다. 스포츠는 동일한 경기 규칙·규정 등에 의해 경기가 진행되므로 남북 간의 이질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류될 프로그램의 내용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남북교류의 장애요인이 없다.

넷째, 체육교류는 국제단체를 통한 중재가 가능하다. 남북한 체육교류는 양 당사자 간에 진행되었지만 국제체육의 장(場)에서 국제체육기구(IOC, OCA 등)라는 중재자가 존재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부문의 교류와 다른 교류의 틀을 갖추고 있다. 국제체육기구는 남북한 체육교류 실현을 위해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 왔다. IOC는 남북체육교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다. 1997년 IOC가 북 NOC측에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체육교류를 제안한 이후 1998년 9월에는 IOC의 특사가 축구, 탁구, 배드민턴 종목에 대한 남북한 교류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국제유도연맹의 경우 1998년 5월 대한유도회가 요청한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승인하면서 1개국에서 1팀만 출전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예외로 적용한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체육교류의 특성 때문에 남북체육교류협력은 다른 부문의 교류·협

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상황과 남북 간 역사적 관계에 비추어 체육교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용이하고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보인다.

2. 남북 체육교류·협력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체육교류가 국가 간의 협력과 화합을 도모한다는 사실은 현대 세계사에서도 적잖게 나타난다. 1972년 미국과 중국 관계를 급변시킨 계기는 평풍경기로부터 시작되었다. 평풍외교라 불리는 미국대통령의 중국방문 후 불과 10개월 만에 미중은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은 1980년 모스크바 하계올림픽과 1984년 LA 하계올림픽에 걸쳐 8년 동안 동서간의 정치적 대결을 접고 동서화합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2) 사회문화적 기능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상대방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이해를 통해 적대적 관계를 극복하는 것이라 할 때 체육교류는 다음과 같은 사회문화적 기능을 하게 된다.

첫째, 남북체육교류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한다. 부산 하계아시안게임이나 시드니 하계올림픽에서처럼 국제대회에서 남·북응원단이 서로 상대방의 경기를 응원해 준다거나 또는 남북 양 팀이 대결하는 경기에서 상대팀에 대한 공평한 응원 등은 민족의 화합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

둘째, 남북체육교류는 민족의 정체성을 정립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은 1991년 일본에서 열렸던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의 ‘코리아 팀’출전과 우승이다. 이 같은 남북 체육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민족의 능력을 평가받음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느끼게 되며, 그것은 곧 민족의 정체성 정립에 기여한다.

제2절 남북체육교류협력의 정책 환경

1. 법·제도적 기반

남북체육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는 1990년 공포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10년 12월 30일 개정발효)이다. 동법의 1조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법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동법 24조는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남북체육교류·협력의 범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1997년 통일원장관의 고시로 발표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2009년 7월 개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주민왕래, 주민 접촉, 교역 및 기타 협력 사업을 규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협력 사업’이란 법률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동법 2조 4항)로 폭넓게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회문화분야 협력 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그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과 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동 규정 3조)로 정의되었다. 이중 체육관련 협력 사업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다음과 같이 범위가 명시되었다.

제3조 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5. ‘문화, 학술연구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체육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의 협력 하에 주도된다.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국제체육과), 통일부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이다. 정부협의체로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위원장 통일부장관)가 있다. 동 추진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 원칙 수립’(동법 6조 1항)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동법 6조 2항) 등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통일부는 기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증하는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해왔다. 2009년도에는 남북한 간의 교역의 대상을 물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형물까지 확대하고, 남북한 왕래 및 남북한 주민 접촉 조항을 보완하며,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협력사업 승인제도로의 일원화 등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1월 30일 동 법률을 크게 개정하였다. 특히 개정 법률은 동법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협의회 구성과 기능, 회의와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제10조부터 제24조까지에 걸쳐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역할과 개별 사안별 처리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통일부는 2009년 7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전면 개정된 것에 맞추어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남북사회문화협력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한 바 있다. 2010년 들어 개정 발효된 동 법의 개정 사유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북간 물품 등의 반출반입 승인과 업무위탁의 절차를 구체화시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송장비 등의 출입관리, 검역, 무역보험법 관련 내용이 개정되었다. 남북 체육교류 협력사업에서도 물품과 장비의 반입과 반출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화된 법령 및 시행령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0년대 후반 들어 활성화되었던 남북간 문화교류·협력사업의 관리를 위해서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남북 문화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지침」(2009년 7월 1일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제정하였다. 동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남북 문화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지침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은 제 4조와 5조 조항이다.

제4조(각 기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각 기관은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에 관한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문화교류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각 기관은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문화교류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각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 요청서를 기획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류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기획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회의 설치)는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회의 기능은 제 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교류 자원

남북체육교류협력사업은 정부의 남북협력사업으로서 승인을 받게 되면 다른 부문교류와 같은 조건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는 체육교류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예술·체육 분야 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 참가사업(2억 5700만원)과 1991년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사업(7억 7500만 원)에 지원된 바 있으며, 이후에는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안게임(21억 2600만 원), 남북통일축구경기(1억 5300만 원), 남북태권도시범단교환(1억 8900만 원), 2003년에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13억 5600만 원), 제주 민족평화축전행사(4억 9700만 원)에 지원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의 남북사회문화협력 사업 활용에 대한 기준을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2009년 12월 1일 개정고시)을 통일부 장관고시로 명문화하고 있다. 동 지침은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4장 제2절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목적(제1조)에서 제정되었다. 동 지침에 따르면 국제체육행사의 단일팀 참가사업이나 국제체육행사 공동 시행 사업은 우선 지원 대상 사업이다(제3조).

한편 동 지침에 의거한 기금지원상의 지원한도(제5조)는 다음과 같다.

제5조(지원한도)

- ① 기금의 지원은 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 등 협력사업 시행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남북협력사업자당 연 1회로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70%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시행에 따른 예상수익금
2. 이미 구성된 조직의 인건비, 행정경비 등 협력사업 시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볼 수 없는 비용
3. 접대비, 기밀비 등 협력사업 시행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4. 협력사업 시행과 관련된 국내외 여비 중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

를 초과하는 금액

5. 찬조금, 후원금, 기탁금 등으로 조달한 금액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시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비용

통일부는 동 지침에서 자금의 집행 및 사용(제6조)과 기금지원의 중단 등(제7조)을 명시하여 남북협력지원자금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명시해두고 있다.

남북체육교류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다. 법제도적으로 남북 체육교류를 위한 재원으로서 사용 근거는 뚜렷이 명시된 바 없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 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11호의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규정이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정관 제22조에 따르면 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남북체육교류의 촉진이 정부의 정책사업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이 가능해진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남북체육 교류에의 지원은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단복제작비 및 2006년 남북단일팀 구성 체육회담 개최비 등에 지원된 바 있다. 또한 2007년도에는 장춘 동계아시안게임 공동입장 단복제작, 북한 청소년축구단 전지훈련비 지원, 남북축구친선교환경기 및 축구장 개보수 지원, 체육용품(축구화)을 지원하였다.

이제까지 남북체육교류 협력 사업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교류사업-주로 국제경기대회에서의 남북 단일팀 구성에 지원되었다. 향후에는 민간단체 활동을 촉진하도록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다소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3절 남북체육교류협력 사업 현황

1. 1990년 이전 남북체육회담을 통한 체육교류의 발전

남북 간의 체육교류를 위한 최초의 접촉은 1964년 도쿄 하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 1963년 1월 스위스 로잔에서 회담한 것이다. 이후 냉전 이데올로기의 강화에 따라 남북체육교류는 회담조차 없이 1978년까지 이어져온다. 그리고 1979년 제35회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문제 토의를 위해 그 해 2월과 3월 판문점에서 4차례 접촉하게 되고, 1984년 LA 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문제,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90년 베이징 하계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문제 등으로 접촉하게 된다. 즉 1990년까지는 실질적인 체육교류라기 보다는 접촉단계로서 의미를 가지며,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서울-평양 교환경기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같은 해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의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체육교류의 장을 열게 된다.

■ 표 11-1 남북체육회담 주요일지

날 짜	장 소	명 칭	내 용
1963. 1. 24	스위스(로잔)	도쿄 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회담	도쿄 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문제 토의(결렬, 별도 참가)
5. 17	홍콩	단일팀 구성 실무 1차 회담	
7. 26	홍콩	단일팀 구성 실무 2차 회담	
1979. 2. 27	판문점	제1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제35회 평양세계탁구선수권 대회 단일팀 구성문제 토의 (결렬, 한국 참가 무산)
3. 5	판문점	제2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3. 9	판문점	제3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3. 12	판문점	제4차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	
1984. 4. 9	판문점	제1차 남북체육회담	LA 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 토의(결렬, 북한 불참)
4. 30	판문점	제2차 남북체육회담	
5. 25	판문점	제3차 남북체육회담	
1985. 10. 8~9	스위스(로잔)	제1차 남북체육회담	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협의(결렬, 북한 측이 IOC수정안 거부, 북한 불참)
1986. 1. 8~9	스위스(로잔)	제2차 남북체육회담	
6. 10~11	스위스(로잔)	제3차 남북체육회담	
1987. 7. 14~15	스위스(로잔)	제4차 남북체육회담	

1989. 3. 9	판문점	제1차 남북체육회담	베이징 하계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논의(결렬, 별도 참가)
3. 28	판문점	제2차 남북체육회담	
10. 20	판문점	제3차 남북체육회담	
1989. 11. 16	판문점	제4차 남북체육회담	
11. 24	판문점	제5차 남북체육회담	
12. 22	판문점	제6차 남북체육회담	
1990. 1. 19	판문점	제7차 남북체육회담	
1. 29	판문점	제8차 남북체육회담	
2. 7	판문점	제9차 남북체육회담	
1990. 11. 29	판문점	제1차 남북체육회담	남북통일축구 정례화,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논의 국제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토의 탁구단일팀 파견 및 청소년 축구대회 논의 탁구단일팀 파견 및 청소년 축구 단일팀 구성 합의
1991. 1. 15	판문점	제2차 남북체육회담	
1. 30	판문점	제3차 남북체육회담	
2. 12	판문점	제4차 남북체육회담	

※ 출처 : 대한올림픽위원회(1992) 남북체육교류자료집

2. 1990년~2000년 남북체육교류

1989년부터 베이징 하계아시안게임의 단일팀 구성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던 남북체육교류는 1990년 4월에 일시 중단되게 된다. 그리고 1990년 9월 베이징 하계아시안게임을 계기로 10월 11일 평양에서 남북통일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이후 남북체육회담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다시 열렸다. 동 체육회담은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를 공동 발표하고 일본 지바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양 대회에 단일팀 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후 정부는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가장 쉽게 교류할 수 있는 분야로서 체육교류 추진에 관심을 두고, 1994년 대통령 업무보고 안에는 문화체육부가 ‘남북문화체육교류 세부합의서’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북한의 폐쇄 정책으로, 남북체육교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1998년에는 방콕 하계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단일팀 구성을 의제로 우리가 남북체육 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 표 11-2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서울평양 교환경기 개최 현황

구 분	평 양 대 회	서 울 대 회
방문기간	1990. 10. 9~10. 13	1990. 10. 21~10. 25
방 문 자	76명(선수단 45명, 인솔 11명, 보도 20명) - 인솔 : 체육부장관(정동성)	78명(선수단 45명, 인솔 11명, 보도 22명) - 인솔 : 국가체육위원회위원장(김유순)
경기일 / 장소	1990. 10. 11 / 5-1경기장	1990. 10. 23 / 잠실주경기장
방문경로	서울-베이징-평양-판문점-서울	평양-판문점-서울
경기결과	북한승리 (2:1)	남한승리 (1:0)

90년대 후반 정부 간 체육 회담이 소강상태에서 민간 교류가 시작되었다. 1999년 8월 노동단체가 주관한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평양에서 열렸으며, 11월에는 현대의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합작 사업으로 평양에 실내종합체육관을 건설하여 기부하였다. 이 실내체육관의 기공식을 전후로 남북 농구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 표 11-3 1991년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참가 현황

구 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일시/장소	1991. 4. 24 ~ 5. 6 / 일본 지바 현	1991. 6. 14 ~ 6. 30 / 포르투갈 리스본
호 칭	『코리아』, 『KOREA』	좌 동
단 기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	좌 동
단 가	1920년 우리나라 『아리랑』	좌 동
선수선발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선발	서울·평양 공개 평가전을 기초로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선발
선수단구성	단장(북측) 총 56명(남북 각 28명, 선수 각 11명씩)	단장(남측) 총 62명(남북 각 31명, 선수 각 9명씩)
선수훈련	일본전지훈련(1991. 3. 26~4. 23)	남·북 왕래훈련(1991. 5. 6~5. 21) - 서울평가전 5. 6~9/70명(잠실) - 평양평가전 5. 10~16/70명(5-1) - 서울강화훈련 및 결단식 5. 17~21 72명(잠실주경기장)
선수단경비	남·북 공동부담	좌 동
장비조달	단복-북측, 운동복 등-남측	좌 동
귀 국	1991. 5. 8(동경에서 서울·평양으로)	1991. 6. 28(북한), 1991. 6. 29(남한)
대회결과	여자단체전우승 및 개인단식준우승(리분희) 남자개인단식 3위(김택수), 혼합단식 3위	8강 진출(예선 1승1무1패) 준준결승전에서 브라질에 패배(5:1)

■ 표 11-4 1990년~2000년 남북체육교류 세부실적

사 업 명	개최지	일 시	참 가 자	비 고
남북(대표팀)통일축구대회 서울-평양 교환경기 개최(1990)	평양	1990. 10. 9 ~10. 13	76명(선수단 45명, 인솔 11명, 보도 20명)	남한 : 체육부장관 인솔
	서울	1990. 10. 21 ~10. 25	78명(선수단 45명, 인솔 11명, 보도 22명)	북한 :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 인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참가(1991)	일본 오사카	1991. 4. 24 ~ 5. 6	총56명(남북 각 28명, 선수 각 11명씩)	한반도기 사용 국가 : 아리랑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구성 참가(1991)	포르투갈 리스본	1991. 6. 14 ~ 6. 30	총62명(남북 각 31명, 선수 각 9명씩)	한반도기 사용 국가 : 아리랑
통일염원 남북노동자 축구대회(1999)	평양	1999. 8. 10 ~ 8. 14	37명 (선수단 22명, 인솔 15명) 남북 노동단체	8.12(남북대결) 8.13(남북혼합팀 구성)
현대 통일농구 교환경기(1999)	평양	1999. 9. 27 ~10. 1	79명(선수단 42명, 현대관계자 31명, TV중계요원 6명)	9.28(혼합경기) 9.29(남북대결)
	서울	1999. 12. 22 ~12. 25	62명(선수단 38명, 교예단 14명, 위성중계 기 술자 2명, 아태관계자 8 명)	12.23(혼합경기) 12.24(남북대결)
금강산 자동차질주 경주대회(2000)	서울, 평양, 금강산	2000. 6. 30 ~ 7. 4	차량 56대(경기차량 23대 포함), 241명	사업대가로 100만 달러 지급
삼성통일탁구 경기대회(2000)	평양	2000. 7. 26 ~ 7. 30	50명 (선수단 13명, 인솔 37명)	남북대결 및 남북혼합팀 구성 경기
시드니 하계올림픽 개막식 공동입장	호주 시드니	2000. 9. 15	남북 각 90명씩 180명	한반도기사용 호칭 : KOREA
제81회 부산전국체전 금강산 성화채화(2000)	금강산 옥류동 무대 바위	2000. 10. 1	50명 (주관 : 부산광역시 - 금강산관광총회사)	

삼성전자는 2000년 7월 평양체육관에 전광판을 기증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통일 탁구대회’를 열었다. 남녀 단복식과 남녀복녀, 북남남녀의 혼합복식 등 5경기가 진행되었다. 2000년에는 우인방커뮤니케이션이 금강산자동차질주경기대회를 7월 3~4일 양일간 남북한 양측을 가로지르는 지역에서 시행하였다.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시드니 하계올림픽 동시입장이 성사되어 남북 팀이 단일 국기와 국가, 복장으로 개회식과 폐회식에 참가하였다. 그 해 10월 제81회 부산전국체전 성화가 금강산에서 채화되기도 하였다.

3. 2001~2012년 현재까지

1) 남북 단일팀 구성 노력

2001년에는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참가문제를 협의하고(3월), 제18회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 북한 측을 초청하기 위한 업무(9월) 및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안게임 북한참여를 추진하기 위한 만남(11월) 등이 이루어졌다. 2001년 4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이 공동응원을 하였고, 공동응원의 경비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5,0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08년 베이징하계올림픽을 앞두고 2005년도 마카오 동아시아경기대회부터 남북 단일팀 구성 노력이 거론된 바 있다. 2005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 김정길 회장과 조선올림픽위원회 문재덕 위원장 간의 회동이 시발점이 되. 이후 2005년 11월초 마카오동아시아대회 기간 중 개최된 남북 체육회담 실무대표단 회의에 남북 양측 6명이 참가했고, 차기 회담은 12월 7일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서 12월 7일 남북 체육 회담이 개성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양측은 서로 다른 입장 차이로 회담을 종료하였다.

2005년 말 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7년 말까지 4차례에 걸쳐 2008년 베이징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참가를 위한 체육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IOC는 2006년 12월 24일자 공문에서 개인종목의 경우는 남북올림픽위원회가 각각 개별적으로 참가자격대회에 참가한 후 IOC가 해당종목의 국제연맹과 최종 참가자격 및 인원에 대해 협의하며 단체종목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예선대회에 참가한 후 IOC가 해당 국제연맹과 종목별로 단일팀에 적용할 참가인원에 대해서 특별 규정을 두어 인정할 것임을 제안했다. 그러나 남북은 선수선발 문제를 제외한 여타 문제(단일팀 명칭, 단가, 단기, 임원구성, 공동기구 등)에 대해서는 다소간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최종 결렬로 끝났다.

한편 2007년 10월 개최된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2008년 베이징하계올림픽을 맞이하여 경의선 열차를 이용, 남북공동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11월 16일 개최된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12월 28일 개성에서 갖기로 합의하였고, 12월에 제1차 실무접촉이 개최되어 응원단 규모, 응원단 이용 열차, 운행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2008년 2월 4일 개최된 제2차 실무접촉에서

는 응원단 규모(지원인원 포함) 남북 각각 150명씩 300명, 응원단의 개·폐막식 참가 등에 대해 합의하고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2008년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면서 결국 베이징 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공동응원단 파견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2000년 이후 계속된 남북 동시입장 또한 무산되고 말았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공동입장을 위한 체육회담 개최를 위해 2008년 전반기에만 수차례 전통문을 보냈지만 북한은 접수조차 거부했다. 특히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한 뒤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었고 체육 분야 또한 마찬가지였다.

4월 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6차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ANOC) 총회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북한올림픽위원회가 나란히 참석했지만 베이징 하계올림픽 경기대회 남북단일팀 및 공동응원단 구성을 위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이처럼 남북한 스스로 공동입장에 대한 해법을 풀어가지 못하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2008년 6월 자크 로게 위원장 명의로 남북한 정상에게 공동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던 IOC는 베이징 현지에서도 북한과 접촉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

공동입장이 무산되자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는 화합 분위기라도 조성하기 위해 입장순서를 한국은 176번, 북한은 177번째로 정했지만 북한은 이마저 거부하고 180번째로 입장하였다.

2010년에는 밴쿠버동계올림픽과 2012 런던올림픽의 개폐회식 공동입장은 이뤄지지 못했다.

런던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남북 간에 어떠한 교류 협력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재한 미국인 선교사인 한인 신명순씨가 런던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대표팀과 동행하여 북한대표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바 있다.

2) 남북 교류 협력

2001년 체육교류를 위한 접촉은 2월 제2차 통일염원 국제랠리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 서 남북 당사자 간 회담이 이루어졌고, 이어 3월에는 남북태권도시범단 교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접촉이 이루어졌다. 2001년 대한양궁협회와 삼성그룹에서 북한 선수들에게 체육용품 및 체육설비 지원이 있었다.

2001년에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 지역에서는 우인방커뮤니케이션이 주최하는 제2회 자동차질주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8월 15일에는 국제모터사이클 투어링이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미국, 일본, 독일 등 12개국 모터사이클 동호인 35명 등 총 399명이 참가하였는데, 남한에서는 46대 차량과 209명이 참가하였다.

남북 체육교류협력 사업 중 지원사업인 평양실내체육관 건설 사업도 지속되었다. 평양실내체육관은 2001년은 현대아산이 건립을 주도하였다.

2001년 9월 15일부터 18일 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는 남북 태권도시범단 교환사업이 합의된 바 있으나 북한의 협의 거부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2002 한일 FIFA월드컵의 경우도 분산 개최와 단일팀 구성이 목표로 논의되면서 남한 축구협회 회장은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과 함께 방북해서 현안 사항을 협상해나갔으나 결국 무산되었다. 그러나 2002년 6월, 남한에서 이루어지던 국제행사에는 무조건 불참하던 북한이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이끌고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아게임에 참가하였다.

남북태권도 시범단 교류도 2002년에 이루어졌다. 북한은 남북 간 태권도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도 실시 등 민간 교류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북한은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였다. 같은 해 남 북은 민간차원의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개최와 같은 대규모 남북체육문화교류사업을 성사시켰다.

2004년은 아테네 하계올림픽 개최식과 폐회식에 남북 선수단은 공동입장은 하였다. 2004 아테네 하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일어난 방송위원회와 북측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간의 협력 사업은 직접적인 체육교류는 아니지만 올림픽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문화교류의 진전이다. 2004년 8월 한국은 북한주민이 아테네 하계올림픽 개막식 이후 국제경기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올림픽 북측방송 중계를 지원하였다.

2005년에는 남측에서 개최한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통일축구대회에 북측 남·여 선수단이 참가하였으며, 제4회 마카오 동아시아경기대회에도 남북한 공동입장이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남북체육학술교류가 이뤄지기도 했다. 사회교류협력 사업으로 승인된 「코리아 민족의 체육발전을 위한 학술토론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남한의 민족통일체육연구원이 베이징에서 추진한 체육학술행사에 북측 조선체육대학교 교수 5명, 체육과학연구소 연구원 3명, 조선족 학자 1인이 참가하여 1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표 11-5 2000년~2011년 남북체육교류 세부실적

사업명	개최지	일시	참가자	비고	
제 2차 금강산 자동차질주 경주대회(2001)	금강산	2001. 7. 29 ~7. 31	차량 56대(경기차량 23대 포함), 241명	사업대가로 지급	
태권도시범단 교환(2002)	평양	2002. 9. 14 ~9. 17	65명(남측35,북측30)	- 7차 남북장관급회의 실무회의 합의에 근거 - 황봉영 조선태권도 위원회의 초청	
	서울	2002. 10. 14 ~10. 10.	62명(남측41,북측21)		
남북통일축구경기(2002)	서울	2002. 9. 5 ~9. 8	리광근 등 49명		
부산 하계아시안게임 참가(2002)	부산	2002. 9. 22 ~10. 15	박명철 등 668명		
	부산	2002. 10. 8 ~ 10. 15	장웅 등 7명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 개폐회식 공동입장(2003)	일본 아오모리	2003. 2. 1 ~2. 8	- 남한 선수단 110명 - 북한 선수단 40명	- 단기 : 한반도기 - 북한 2.30일 밤 전격제안, 남한 수용으로 성사	
22회 대구하계 유니버시아드(2003)	대구	2003. 8. 20 ~9. 1	전극만 등 524명	- 선수단 197명 - 응원단 327명	
남북태권도교류 협의 및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참관(2003)	대구	2003. 8. 17 ~8. 21	장웅 등 3명		
정주영체육관 개관식 및 통일축구대회(2003)	평양	2003. 10. 6 ~10. 7	김운규 등 800여명	- 경의선 임시도로로 육로 방북 - SBS 평양에서 통일 농구대회 중계	
제주민족평화축전(2003)	제주	2003. 10. 23 ~10. 28	김영대 등 190명	- 행사직전 취주단, 예술단 불참정보로 물의 야기	
아테네 하계올림픽 공동입장(2004)	그리스 아테네	2004. 8. 14 ~9.	- 남한선수단 136명 - 북한선수단 50명	- 단기 : 아리랑 - 단기 : 한반도기	
제2회 동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2005)	대구, 전주, 대전	2005. 7. 31 ~8. 7	북 선수단 65명		
남북통일축구(2005)	서울	2005. 8. 14 ~8. 16	남·여 선수단		
제4회 마카오 동아시아 경기대회 공동입장(2005)	마카오	2005. 10. 29 ~11. 6	남북선수단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북강원도겨울철체육경기	춘천	2006. 3. 2 ~3. 5	선수단 36명 (단장 정덕기 북측 민화협 부회장)	- 남북선수단 합동훈련 - 남측대학 선발팀과 북한 선발팀 혼성경기 - 남북 시범경기	
도하 하계아시안게임 개폐회식 공동입장(2006)	카타르 도하	2006. 2. ~12. 15	남북선수단	- 공동기수는 이규섭선수(남측)와 리금숙선수(북측)	
남북유소년 축구선수단 상호교류	북한 청소년팀 방한	제주, 수원, 순천, 광양, 서울	2007. 3. 20 ~4. 20	북 선수단 23명	- 15~17세 - 전지훈련
		강진	2007. 6. 1 ~6. 14	북 선수단 34명	- 15세 이하 - 친선 경기
	남한 청소년팀 방북	평양	2007. 6. 23 ~7. 3	남 선수단 26명	
		평양	2007. 11. 3 ~11. 14	남 선수단 22명	

사업명	개최지	일시	참가자	비고
북한태권도 시범단 방남	서울, 춘천	2007. 4. 6 ~4. 9	북 시범단 48명	- 단장 : 장웅 IOC 위원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	창원	2007. 4. 30		- 5·1절노동자동일대회 행사 - 북 대표단 60명 방한
2007 FIFA 청소년(U-17) 월드컵대회	서울 등 8개 도시	2007. 8. 18 ~9. 9	북 선수단 31명	- 16강 진출 - 2회 연속 8강 진출 실패
제2회 국제청소년 친선 축구대회(0.16-25)	전남 강진	2007. 10. 13 ~10. 25	북 선수단 22명	- 한국, 북한, 프랑스 등 7개국 참가 - 한국 중등축구연맹 주최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준공식	평양	2007.11.9	남 대표단 145명	- 축구장 시설 현대화 사업
제3회 동아시아축구대회	중국 충칭	2008.2.20		- 경기결과 1:1
2008 아시아시니어레슬링 선수권대회	제주도	2008.3.16~24	북선수단 15명	
2008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제주도	2008.4.26~27	북 선수 17명	- 남자 -60kg 3위 - 여자 48kg이하 2위, 52kg이하 1위, 57kg이하 3위, 63kg이하 3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월드컵 3차 예선전	중국 상하이	2008.3.26	남북 축구대표팀	- 경기결과 0:0
	서울	2008.6.22	남북 축구대표팀	- 경기결과 0:0
2008 남북태권도교류행사	평양	2008.6.28~7.1	(사)ITF태권도협회 남북대표단 60명	- 북한의 시범공연 - 남한사범의 북한선수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
남북체육교류협회 유소년축구단 교류	평양	2008.6.14~26	유소년축구선수단 30명	- 4차례 친선 경기
		2008.10.8~15	경수유소년축구단, 임원 등 50여명	- 친선경기 및 합동훈련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월드컵 최종예선전	중국 상하이	2008.09.10	남북축구대표팀	- 경기결과 1:1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 코리아응원단	중국 베이징	2008.8.10~14	응원단 400여명	- 남북한 팀 경기 응원
남북체육교류협회	평양	2009.2.25~28	同협회 관계자 17명	- 「김경성 체육인초대소」준공식 참석 및 체육교류 협의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월드컵 남북예선전	서울	2009.3.29~4. 2	북 선수단 43명	- 경기결과 1:0
피스앤스포츠큐	카타르 도하	2011.11.21~22	남한 선수 2명 북한 선수 2명	- 남자 복식(남북 단일팀) 우승 - 여자 복식(남북단일팀) 준우승

한편 2005년 8월 4일부터 9일에 또 하나의 남북 체육학자들간의 교류·협력사업이 성사되었다. 중국 연길시 연변대학교에서 남한의 한국체육학회, 북한의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연변대학교 체육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스포츠과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동 학술대회의 주제는 「민족체육문화의 회고와 전망」이었다. 동 학술교류 행사에서는 남북 및 중국 거주 조선족 학자에 의해서 총 18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남한의 경우 한국체육학회를 대표한 학자,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원들이 참여하였다. 북한에서는 평양체육대학교 교수와 기관차체육단 연구원, 체육연구소 연구원이 참가했다.

이외에 연변대학교 체육계열 교수가 참여하였다.

2007년에는 축구분야의 남북교류가 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남북체육교류협회(남한)와 4.25 체육단(북한)이 남북유소년축구 상호교환경기 개최에 합의하였다. 양 단체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남북 교환경기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교류 첫 행사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북한 청소년 축구팀 23명(15~17세)이 방한하여 제주와 수원, 전남 순천과 광양, 서울 등지에서 2007 FIFA 청소년(U-17)월드컵 대비 전지훈련을 실시하였다. 15세 이하 북한 청소년 팀 34명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방한하여 강진에서 한국, 중국, 강진중 팀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남한 청소년 팀의 방북도 이어져 6월 23부터 7월 3일까지 12세 이하 유소년 팀 26명이, 그리고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22명이 평양에서 경기를 가졌다.

북한 대표팀은 8월 18일부터 9월 9일까지 서울 등 8개 도시에서 개최된 2007 FIFA 청소년(U-17)월드컵에도 참가하였다. 북한은 선수단 31명을 8월 7일 사전 입국시켜 전남 광양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나 16강 진출에 그쳐 대회 2연속 8강 진출에는 실패하였다. 10월 13일부터 25일에는 북한 청소년 팀 22명이 전남 강진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청소년 친선 축구대회(10.16~25)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하였다. 한국 중등축구연맹이 주최하고 강진군이 주관한 이 대회에는 한국(2개 팀)을 비롯해 북한, 브라질, 프랑스, 일본, 중국, 동티모르 등 7개국 8개 팀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친선경기를 가졌다.

2007년 4월 30일에는 5·1절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의 일환으로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 대항전이 개최되어 또 한 번의 남북축구대결이 벌어졌으며, 남한 팀이 0:1로 북한 팀에게 패배하였다.

이외에도 인천시와 사단법인 평화3000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 하에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현대화사업을 진행하였다. 인조잔디와 우레탄을 설치하는 등 시설 개·보수에 10억 5천만 원이 소요된 이 사업은 11월에 완결되어 11월 9일 평양에서 '축구장 준공식 및 기증식'이 개최되었다. 행사 참여를 위해 안상수 인천시장을 포함하여 남한 대표단 145명이 방북하였고, 준공식이 끝난 후에는 남북 유소년 팀 간에 훈련경기도 열렸다.

축구 이외에 태권도 및 권투분야에서도 남북교류가 진행되었다. 4월 6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의 초청으로 장웅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겸 IOC 위원이 이끄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 48명이 방한하였다. 춘천과 서울에서 2차례의 태권도 시범행사를 실시한 북한 시범

단은 각종 손발 응용동작, 1대1 대련, 건강태권도, 호신술 시범 등을 선보였다.

10월 19일에는 2004년 남북권투대회 개최 이후 여섯 번째로 남북권투대회가 개최되었다. 개성시 학생소년궁전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는 남한의 최신희(24), 손초룡(20) 및 북한의 류영심, 김혜성 간 논타이틀 매치(6R)경기, 남자 아마추어 친선경기 2경기 등 모두 4차례 남북대결이 벌어졌다. 박상권 WBCF 회장 겸 한국권투위원회 회장,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경기를 실황 중계한 KBS-N 오수성 사장 등 남측 관광객 500여명은 개성 시내를 관람한 뒤 남북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관람하였다.

2008년에는 4월 26~27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된 2008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에 남자 3명, 여자 4명 등 북한 선수 7명이 출전하였다. 조선체육지도위원회가 선정한 2007년 10대 최우수선수에 뽑힌 김철수, 2006년 도하 하계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 원옥임 등 지명도가 높은 선수들이 참가해서 남한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지만 북한선수의 남한 방문의 의의를 높였다.

체조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남북체조가 모두 2008년 올림픽 단체전 출전이 좌절된 탓에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남측의 조현주, 북측의 홍은정, 차영화 등 여자 선수 세 명이 조 추점 결과 한조에 편성된 것이다. 이들은 베이징올림픽 예선 경기일인 8일까지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2008년 축구분야에서는 제3회 동아시아축구대회에서 1회,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3차전에서 2회, 최종예선에서 1회 등 4차례의 남북 축구대결이 펼쳐졌다. 첫 남북대결이었던 2008년 2월 20일 중국 충칭 개최 동아시아축구대회에서는 남북이 1:1로 비겼으며, 3월 26일 중국 상하이 홍커우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월드컵 예선전 3차전 1차 대결에서도 0:0으로 다시 비겼다. 이 경기는 원래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을 무시한 채 평양에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제3국인 중국에서 진행되었다. 6월 22일에는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월드컵 3차 예선 2차 남북대결이 치러졌으며, 남북은 0: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종예선에 동반 진출했다. 이 경기에는 약 5만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최종예선에 동반 진출한 남북은 9월 10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월드컵 최종예선 1차 대결을 벌였으나 이 경기 또한 3월 대회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북측이 태극기 게양 및 애국가 제창에 난색을 표명해 평양이 아니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다. 최종예선 1차에서 남북은 1:1로 비겼다. 남북체육교류는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살사건은 체육교류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남북교류의 중단을 가져왔다. 이 때문에 2009년 남북체육교류는 2건, 즉 남북체육교류협회 주관 하에 평양에서 이루어진 체육협회의 FIFA월드컵 예선전 1차례에 지나지 않았다.

■ 표 11-6 체육 관련 북한방문 현황(2001~2012) 건/(명)

구분	신청	승인	불허	철회	성사	
2001년	전체	786(9,148)	737(8,805)	3(30)	-	698(8,551)
	체육	44(362)	43(353)	-	1(9)	37(310)
2002년	전체	802(13,502)	774(12,979)	5(167)	27(349)	753(12,825)
	체육	38(336)	37(326)	-	1(10)	37(326)
2003년	전체	1,060(16,161)	1,028(15,697)	(17)	33(496)	983(15,280)
	체육	19(1,190)	19(1,190)	-	-	19(1,190)
2004년	전체	1,532(30,455)	1,497(29,410)	-	-	1,428(26,213)
	체육	6(8)	5(7)	-	-	4(5)
2005년	전체	6,475(98,945)	6,494(97,464)	1(32)	7(1,604)	6,086(87,028)
	체육	28(804)	28(804)	-	-	27(799)
2006년	전체	11,297(97,343)	11,273(95,251)	3(529)	6(1,50)	12,468(100,838)
	체육	34(266)	32(251)	-	-	34(266)
2007년	전체	12,807(111,650)	12,803(109,476)	3(129)	33(2,078)	29,862(158,170)
	체육	68(1,272)	68(1,272)	-	-	65(1,198)
2008년	전체	71,099(117,020)	70,987(115,174)	107(357)	3(1,677)	119,884(186,443)
	체육	25(308)	25(308)	-	-	22(272)
2009년	전체	93,765(101,934)	92,985(100,810)	27(93)	619(877)	113,083(120,616)
	체육	7(89)	2(23)	-	6(79)	2(23)
2010년	전체	69,224(74,639)	69,086(74,424)	9(65)	135(147)	124,084(130,119)
	체육	1(3)	1(3)	-	-	1(3)
2011년	전체	51,489(53,179)	51,401(52,695)	37(433)	51(51)	14,738(116,047)
	체육	1(2)	-	1(2)	-	0(0)
2012년	전체	49,905(50,169)	49,766(50,022)	10(20)	0(0)	120,152(120,360)
	체육	0(0)	0(0)	-	-	9(0)

※ 자료 : 통일부(<http://www.unikorea.go.kr>)에서 재작성

※ 주 : 전체에는 이산가족, 경제,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관광사업, 교통통신, 과학 환경 경수로, 대북지원 기타 등으로 금강산 관광은 제외함

이러한 과정에서 2010남아프리카공화국 FIFA 월드컵은 남북체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 축구팀의 동반 본선 진출은 역사적으로 1930년 우루과이

FIFA월드컵 시작 이후 무려 70년만의 일이다. 북한 축구대표팀은 아시아지구 최종예선 B조에서 2위를 차지하며 1위인 한국과 나란히 본선무대를 밟게 된 것이다.

■ 표 11-7 체육 관련 북한주민접촉 현황(2001. 8월~2012. 12월)

건/(명)

구 분	신 고	수 리	수리 거부	철회	성 사	
2001년	전 체	1,169(2,332)	1,145(2,283)	17(48)	6(11)	1,211(1,879)
	체 육	26(84)	24(80)	-	1(3)	11(27)
2002년	전 체	1,485(3,434)	1,453(3,367)	5(10)	12(39)	621(1,981)
	체 육	35(194)	34(192)	-	2(3)	24(147)
2003년	전 체	1,581(4,169)	1,527(3,991)	13(57)	18(50)	954(1,964)
	체 육	24(107)	24(107)	-	-	12(31)
2004년	전 체	1,663(6,778)	1,683(6,736)	-	-	1,349(5,385)
	체 육	37(167)	34(163)	-	-	31(51)
2005년	전 체	1,322(3,518)	1,394(3,590)	-	2(2)	1,172(3,301)
	체 육	48(163)	48(163)	-	-	46(136)
2006년	전 체	861(2,853)	860(2,852)	-	-	783(2,744)
	체 육	24(124)	24(124)	-	-	24(124)
2007년	전체	994(2,448)	986(2,441)	-	-	936(2,474)
	체육	2(2)	2(2)	-	-	27(87)
2008년	전체	681(1,465)	681(1,465)	-	-	689(1,600)
	체육	18(175)	18(175)	-	-	18(175)
2009년	전체	30(129)	26(116)	-	-	26(116)
	체육	1(56)	1(56)	-	-	1(56)
2010년	전체	(991)	(991)	-	-	(991)
	체육	15(75)	15(75)	-	-	-
2011년	전체	(590)	(590)	-	-	(590)
	체육	0(0)	0(0)	-	-	0(0)
2012년	전체					
	체육	0(0)	0(0)	-	-	0(0)

※ 자료 : 통일부(<http://www.unikorea.go.kr>)에서 재작성

※ 주 : 전체에 포함된 분야는 이산가족, 경제,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관광사업, 교통통신, 과학 환경, 경수로, 대북지원, 기타 등으로 금강산 관광은 제외함.

2010년에 북한 측은 남북관계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켰다. 천안함 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 관계를 악화되면서 2010년에는 남북 체육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1년, 종합국제대회는 중국 선양의 하계유니버시아드와 터키 에르주룸의 동계 유니버시아드가 전부이다. 그러나 동 대회에서 남북 체육교류관련 어떠한 접촉도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2011년에는 시범단 교류와 같은 방문 교류도 성사되지 못했다. 반면에 국

제탁구연맹과 국제 스포츠 평화교류 비정부기구인 피스앤스포츠라는 단체가 공동 주관하여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회 Peace and Sports Cup대회에서 남북 선수들은 단일팀을 이뤄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었다. 동 대회는 국제탁구연맹이 중국, 일본, 한국, 북한, 인도, 파키스탄, 카타르,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10개국에서 남자 복식과 여자 복식조를 초청하여 치른 친선경기대회였다. 이 대회는 비록 친선경기이기는 하나 1991년 4월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이후 20년만의 단일팀 구성으로 남자복식은 우승, 여자 복식은 준우승하는 결과를 이루었다. 피스앤스포츠큐대회에서의 남북교류에는 대한탁구협회 회장이자 피스앤스포츠 대사인 조양호 회장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피스앤스포츠큐대회의 남북 단일팀의 선전은 정규적 국제경기대회에서의 남북 협력이 단절되고, 정부주도의 남북 체육교류가 경색된 상황에서 가맹단체 차원 또는 민간 차원의 교류 성과로 대안 형태로서의 의의가 크다.

한편 인천광역시시는 4억 5천만 원을 투자해 2011년 지자체 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의 자회사로 중국 단둥에 수제축구화공장을 설립하였다. 단둥에 설립된 단둥 축구화공장은 한·중합작공장으로 공장 관리는 중국인이, 기술 지도는 한국 수제축구화 장인 김봉학씨와 또 다른 한국 기술자가 맡는다. 이 공장은 남북 교류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북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축구화 제작 기술을 전수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고, 여기서 생산된 축구화의 일부는 북한 유소년 및 성인 축구대표팀에 기증되고, 대신 북측은 축구화 금액에 상응하는 현물을 공장 운영을 위해 제공하게 된다는 사업전략도 발표되었다. 이러한 교류형태는 전형적인 체육교류는 아니지만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이 주도하고, 축구화 기술 전수 및 축구화 지원이 궁극적으로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북한의 축구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남북 체육교류 성과이다.

2012년 1월 인천광역시의 노력으로 중국 쿤밍에서 「인천 평화컵 유소년 14세이하 축구대회」 1월 31일부터 2월 3일 사이에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쿤밍시 체육협회가 주관한 대회로 개최 직전 북한측의 대회 거부로 무산되었다. 동 대회에는 남한측은 인천 광성중학교 축구팀, 북한측은 425축구단 유소년팀, 중국 대표로는 운남성 선발팀, 일본 대표는 요코하마 마리노스 유소년팀이 참가하였다. 북한팀은 현장에 참가했으나 수교를 맺지 않은 일본과 경기를 치를 수 없으므로 경기를 거부한 다며 경기 불참을 선언하였고 결과적으로 남북 청소년간 교류전은 성사되지 못했다.

체육교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남북 간에 인적 접촉은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점차 활발해져가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남측의 북한 방문은 점차 늘어나서 2003년 10월에는 1999년에 착공한 「류경 정주영체육관」의 개관식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동 개관식에는 통일농구대회가 함께 기획되어 이루어졌다. 당시 모집된 남한의 참관단은 1,000명 규모로서 이들은 통일농구대회를 참관하고 묘향산 개성단지를 관광하였다. 2005년 북한 방문은 총 27건이며 799명이 체육관련 업무로 북한을 방문하였고, 2006년에는 34건에 266명이 북한을 방문했다. 2007년은 북한 방문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한 해 동안 남북체육교류협력을 위해서 북한을 방문한 건수는 65건에 1,198명이었다. 태권도시범단 교류사업과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준공식에 남측 대표단 145명이 참가하였고, 남북한 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 교류사업으로 2007년 6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서 남한선수단 26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체육관련 북한 방문건수와 방문자 수는 2008년 22건 272명으로 줄어들고 2009년에는 2건에 23명, 2010년에는 2건 3명, 2011년에는 한건도 없다. 2010년의 경우 남북 간 교류를 목적으로 한 방북한 건수는 124,084건, 방북인원수는 130,119명이지만 개성공단 관련 건을 제외하면 사회문화교류 전반이 모두 위축되었고 체육도 예외가 아니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 주민의 남한 방문 건수는 총 392건이며 방문자수는 6,524명이다. 체육과 관련해서 남한을 방문한 건수는 총 21건이며 방문자수는 1,897명이다. 남북 체육교류의 경우 남한방문 건수에 비해서 방문자수가 많은 것은 부산하계아시아안 게임이나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인적 교류규모가 큰 경기대회 개최로 인한 것이다.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의 경우 북한선수단 186명, 응원단 303명 등 489명이 대회 참가를 위해서 남한을 방문했으며, 10월에는 제주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이 개최되어 북한선수 110명, 참가단 80명 등 총 190명의 북한주민이 제주도를 방문한 바 있다. 특히 이 행사는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던 행사로 행사준비과정 및 협상 등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을 야기했다. 그러나 그 동안 각종 국제종합경기대회에서 이루어진 남북교류와는 달리 사상 처음으로 남북만이 참가하는 행사였다는 점과 교류종목이 정식종목 이외에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등 민속경기도 병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일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체육 분야의 경우 북측의 남한 방문은 1건에 불과하며 방문자수는 4명으로 집계되었다. 집계 외의 2006년 남북체육교류로는 강원도청이 주

관하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아이스하키선수단의 남한 방문 및 교환경기가 이루어진 바 있다. 남북 강원도 간에 이루어진 지자체간 남북교류의 일환이었다. 2006년 3월 2일 남한을 방문한 북한선수단은 총 36명으로 알려졌다.

2004년 체육관련 남북한 인적 접촉을 보면 상대적으로 적었다. 2005년 북한주민 접촉 건수는 총 46건이며 관련된 인원은 136명이다. 2006년은 남북 주민 접촉은 24건, 인원은 124명이었다. 2007년은 27건, 87명이었으며 2008년에는 18건, 175명, 2009년은 1건, 56명이었으며 2010년이후 2012년 까지 남북관계 악화로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표 11-8 체육 관련 남한방문 현황(2001~2012) 건/(명)

		신 청	승 인	불 허	철 회	성 사
2001년	전 체	5(191)	5(191)	-	-	5(191)
	체 육	1(1)	1(1)	-	-	1(1)
2002년	전 체	13(1,120)	13(1,120)	-	-	13(1,052)
	체 육	4(883)	4(883)	-	-	4(765)
2003년	전 체	11(1,023)	11(1,023)	-	-	11(1,023)
	체 육	3(717)	3(717)	-	-	3(717)
2004년	전 체	13(321)	13(321)	-	-	13(321)
	체 육	0(0)	0(0)	-	-	0(0)
2005년	전 체	30(1,313)	30(1,313)	-	-	30(1,313)
	체 육	1(78)	1(78)	-	-	1(78)
2006년	전 체	42(888)	42(888)	-	-	41(870)
	체 육	1(4)	1(4)	-	-	1(4)
2007년	전체	69(1,052)	69(1,052)	-	-	69(1,044)
	체육	6(221)	6(221)	-	-	6(213)
2008년	전체	48(332)	48(332)	-	-	48(332)
	체육	4(76)	4(76)	-	-	4(76)
2009년	전체	101(246)	101(246)	-	-	101(246)
	체육	1(43)	1(43)	-	-	1(43)
2010년	전체	61(132)	61(132)	-	-	61(132)
	체육	0(0)	0(0)	-	-	0(0)
2011년	전체	2(14)	2(14)	-	-	2(14)
	체육	0(0)	0(0)	-	-	0(0)
2012년	전체	0(0)	0(0)	-	-	0(0)
	체육	0(0)	0(0)	-	-	0(0)

※ 자료 : 통일부(<http://www.unikorea.go.kr>)에서 재작성

※ 주 : 전체에 포함된 분야는 이산가족, 경제, 교육학술,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관광사업, 교통통신, 대북지원 경수로, 기타 등으로 금강산 관광은 제외함.

책임 기획·편집

- 문화체육관광부
 - 박위진(체육국장)

집필진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 책임집필 : 김권일
 - 집필위원 : 김미숙, 김상훈, 김양례, 노용구, 박영옥, 성문정, 성봉주, 송명규, 이용식, 정지명, 조운용
(가나다 순)
 - 집필보조 : 김민창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 집필총괄 : 박현경, 김봉주
 - 집필위원 : 김재현, 박현경, 박현성, 신인교, 안미란, 이승훈, 이용욱, 이종국, 윤인섭(가나다 순)

감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 책임감수 : 김대현(체육정책과장)
 - 감수위원 : 강수상(체육진흥과장), 이정우(국제체육과장), 정진원(장애인체육과장)



2012 Sport White Paper 체육백서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